



전국범죄피해조사 (Ⅷ)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17



Korean Crime Victim Survey (Ⅷ)
Juvenile Victimization in 2017



전영실·유진·노성훈



머리말

아동·청소년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피해조사를 통하여 피해실태 및 피해 관련 요인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식통계를 통해서도 아동·청소년의 피해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식통계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는 범죄유형에 따른 피해자 연령별, 성별 추세만 제시되어 있으며, 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특성이나 가해자 특성, 범죄특성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격년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국범죄피해조사(국가승인통계)의 경우 만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청소년에 대해 성인과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함으로써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범죄피해 유형이나 관련요인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총 4회(1990, 1991, 1999, 2014년)에 걸쳐 수행한 청소년 범죄피해조사는 중고생 연령대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아동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동은 청소년에 비해 범죄피해에 더 취약할 수 있으며, 피해 영향도 더 심각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피해조사도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범죄피해조사의 필요성은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피해를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특성으로 인한 피해(아동학대 등)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 대상 피해조사는 이들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국범죄피해조사를 보완하는 학교범죄 보충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셋째,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피해의 영향이 심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피해실태조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피해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범죄피해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기본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개략적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피해실태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가 아동·청소년의 범죄피해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피해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이 연구가 향후 정례적인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를 위한 기초적인 토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연구에 많은 지원을 해 준 이승주 인턴연구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선임연구위원 전 영 실

목 차

국문요약 1

| 제1장 | 서 론 · 전영실 11

제1절 연구목적 13

제2절 보고서의 구성 15

| 제2장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선행연구

· 전영실·노성훈 17

제1절 아동·청소년 범죄피해 및 두려움에 대한 선행연구 19

1. 아동·청소년 범죄피해 및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19

2. 아동·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선행연구 35

제2절 국내외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38

1. 국내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38

2. 외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66

3. 시사점 80

| 제3장 | 조사방법 · 전영실·유진 83

제1절 조사개요 85

1. 기존 조사와의 차이 85

2. 조사개요 90

제2절 조사표의 개발과 구성 91

1. 조사표의 타당성 검토 91

2. 조사표 구성 체계 94

- 3. 조사표의 구성 및 주요 조사항목 95
- 제3절 표본설계 및 표본의 특성 112
 - 1. 표본설계 112
 - 2. 표본의 특성 116
- 제4절 조사 실시 방법 120
 - 1. 실사준비 120
 - 2. 조사의 실시 125
 - 3. 자료의 처리 127
- 제5절 학교밖 청소년 조사 방법 130
 - 1. 조사 대상 130
 - 2. 표본의 특성 132
 - 3. 조사실시 방법 136

| 제4장 | 범죄피해 발생 현황 · 유 진 137

- 제1절 일반범죄피해 발생현황 139
 - 1. 범죄피해자수 및 피해자율 139
 - 2. 중복피해와 반복피해 현황 142
 - 3. 생애피해자수 및 피해자율 143
- 제2절 가정내 학대·괴롭힘 피해 발생현황 146
 - 1. 범죄피해자수 및 피해자율 146
 - 2. 중복피해와 반복피해 현황 147
 - 3. 생애피해자수 및 피해자율 148
- 제3절 소결 149
 - 1. 일반범죄피해 149
 - 2. 가정내 학대·또래 괴롭힘·성적 괴롭힘 피해 151

| 제5장 | 범죄피해실태 · 유진 153

제1절 일반범죄피해 실태 155

1. 재산범죄피해 155
2. 폭력범죄피해 174
3. 성폭력피해 196

제2절 가정내 학대·괴롭힘 피해 실태 209

1. 가정내 학대 피해 209
2. 괴롭힘 피해 224
3. 성적 괴롭힘 피해 239

제3절 소결 253

1. 일반범죄피해 실태 253
2. 가정내 학대·괴롭힘피해 실태 258

| 제6장 |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 전영실 263

제1절 일반적인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266

1. 개인적 특성과 범죄피해 266
2. 가족특성과 범죄피해 276
3. 친구특성과 범죄피해 288
4. 학교 특성과 범죄피해 294
5. 거주지역 특성과 범죄피해 304
6.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08

제2절 괴롭힘 및 가정내 학대 피해 취약성 요인 312

1. 괴롭힘 피해 취약성 요인 312
2. 가정내 학대 피해 취약성 요인 327
3. 괴롭힘 및 가정내 학대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노성훈) 336

제3절 소결 338

1.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338
2. 괴롭힘 및 가정내 학대 피해 취약성 요인 343

| 제7장 | 범죄에 대한 두려움 실태 · 전영실 349

제1절 범죄에 대한 두려움 실태 351

- 1. 범죄에 대한 두려움 351
- 2. 피해가능성 및 두려움의 관계 360

제2절 범죄에 대한 두려움 관련요인 362

- 1. 각 특성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 362
- 2.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노성훈) 398

제3절 범죄피해 예방조치 401

제4절 소결 403

- 1. 범죄에 대한 두려움 실태 403
- 2. 두려움 관련요인 405
- 3.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08
- 4. 범죄피해 예방조치 410

| 제8장 | 학교밖 청소년 범죄피해 발생 현황 및 실태

· 유 진 411

제1절 범죄피해 발생 현황 413

- 1. 일반범죄피해 발생 현황 413
- 2. 가정내 학대·괴롭힘피해 발생현황 420

제2절 범죄피해실태 424

- 1. 일반범죄피해 발생 실태 424
- 2. 가정내 학대·괴롭힘 피해 실태 445

제3절 소결 463

- 1. 피해 발생 현황 463
- 2. 피해의 영향 464

 제9장 요약 및 결론 · 전영실	467
제1절 주요 조사결과 요약	469
1. 범죄피해 발생현황	469
2. 범죄피해실태	470
3.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475
4. 범죄에 대한 두려움 실태	478
5. 학교밖 청소년 피해조사 주요결과	480
제2절 조사결과외 정책적 시사점	482
제3절 향후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를 위한 제언	486
1. 학생 특성을 고려한 조사시기 및 피해기간 설정	487
2.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 파악 등을 위한 보완 조사	487
3. 응답자를 배려한 설문지 구성	488
4. 피해유형별 사건조사표 구성	489
5. 성폭력과 성적 괴롭힘의 구분	489
6.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별도 조사 수행	490
참고문헌	491
Abstract	501
부록 [설문지]	505

표 차례

〈표 2-1〉 행정원의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비교	39
〈표 2-2〉 ‘저소득층아동 범죄피해조사’ 범죄피해유형	44
〈표 2-3〉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범죄피해유형	46
〈표 2-4〉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범죄피해 항목	48
〈표 2-5〉 ‘아동종합실태조사’(2013년) 범죄피해항목	50
〈표 2-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범죄피해항목	53
〈표 2-7〉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의 범죄피해항목	56
〈표 2-8〉 국내 아동청소년범죄피해조사 표집방법 비교	58
〈표 2-9〉 국내 아동청소년범죄피해조사 자료수집방법 비교	60
〈표 2-10〉 국내 아동청소년범죄피해조사 피해유형 비교	62
〈표 2-11〉 국내 아동청소년범죄피해조사 조사항목 구성	65
〈표 2-12〉 2015년 SCS 또래괴롭힘 질문항목	69
〈표 2-13〉 피해유형과 정의	72
〈표 2-14〉 외국 아동청소년범죄피해조사 표집방법 비교	76
〈표 2-15〉 외국 아동청소년범죄피해조사 자료수집방법 비교	77
〈표 2-16〉 외국 아동청소년범죄피해조사 피해유형 비교	78
〈표 2-17〉 외국 아동청소년범죄피해조사 조사항목 구성	79
〈표 3-1〉 인지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93
〈표 3-2〉 피해유형 분류 및 회상자극 문항	97
〈표 3-3〉 피해유형별 사건조사표 주요 변수 및 조사항목	111
〈표 3-4〉 조사모집단 규모	113
〈표 3-5〉 학교급별 표본배분	113
〈표 3-6〉 층화 비례 표본배분 결과	114
〈표 3-7〉 학교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학교·지역 특성	117
〈표 3-8〉 학교 조사대상자의 가족 특성	119
〈표 3-9〉 조사원 투입 인력	123
〈표 3-10〉 조사원 교육 내용	124
〈표 3-11〉 조사원 교육 일정	125
〈표 3-12〉 사전접촉 및 조사완료 학교 수	126
〈표 3-13〉 조사시기와 실사 진행률	127
〈표 3-14〉 주요 내검 규칙	128

〈표 3-15〉 학교밖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지역 및 인구학적 특성	133
〈표 3-16〉 학교밖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가족 특성	135
〈표 3-17〉 학교밖 청소년 조사 대상기관 및 표본수	136
〈표 4-1〉 일반범죄 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140
〈표 4-2〉 재산범죄 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141
〈표 4-3〉 폭력범죄 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141
〈표 4-4〉 일반범죄 중복피해 현황	142
〈표 4-5〉 일반범죄 반복피해 현황	143
〈표 4-6〉 일반범죄 생애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144
〈표 4-7〉 재산범죄 생애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145
〈표 4-8〉 폭력범죄 생애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145
〈표 4-9〉 가정내 학대·괴롭힘 피해자수 및 피해자율	146
〈표 4-10〉 가정내 학대·괴롭힘 피해자수 및 피해자율	147
〈표 4-11〉 가정내 학대·괴롭힘 반복피해 현황	148
〈표 4-12〉 가정내 학대·괴롭힘 피해자수 및 피해자율	148
〈표 5-1〉 재산범죄피해 발생 계절	156
〈표 5-2〉 재산범죄피해 발생 시간	157
〈표 5-3〉 재산범죄피해 발생 장소	158
〈표 5-4〉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집'의 구체적 장소	158
〈표 5-5〉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학교나 학교 근처'의 구체적 장소	159
〈표 5-6〉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의 구체적 장소	160
〈표 5-7〉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온라인'의 구체적 장소	161
〈표 5-8〉 재산범죄피해의 가해자 인지 여부	162
〈표 5-9〉 재산범죄피해의 가해자 수	162
〈표 5-10〉 재산범죄피해의 가해자 성별	163
〈표 5-11〉 재산범죄피해의 가해자 연령(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164
〈표 5-12〉 재산범죄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164
〈표 5-13〉 재산범죄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 아는 사람 세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165
〈표 5-14〉 절도 피해물품(중복응답)	166
〈표 5-15〉 사기 피해내용	167
〈표 5-16〉 재산범죄 피해액	168
〈표 5-17〉 재산범죄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169

〈표 5-18〉 재산범죄피해의 행동적 영향(중복응답)	170
〈표 5-19〉 재산범죄피해 보고여부 및 대상(중복응답)	171
〈표 5-20〉 재산범죄피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172
〈표 5-21〉 재산범죄피해 경찰신고 여부	173
〈표 5-22〉 재산범죄피해 경찰 신고자	173
〈표 5-23〉 폭력범죄피해 발생 계절	174
〈표 5-24〉 폭력범죄피해 발생 시각	175
〈표 5-25〉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	176
〈표 5-26〉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집'의 구체적 장소	176
〈표 5-27〉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학교나 학교 근처'의 구체적 장소	177
〈표 5-28〉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의 구체적 장소	178
〈표 5-29〉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온라인'의 구체적 장소	179
〈표 5-30〉 폭력범죄피해의 가해자 수	180
〈표 5-31〉 폭력범죄피해의 가해자 성별	180
〈표 5-32〉 폭력범죄피해의 가해자 연령(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181
〈표 5-33〉 폭력범죄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182
〈표 5-34〉 폭력범죄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 아는 사람 세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182
〈표 5-35〉 폭력범죄피해 당시 가해자 음주여부	183
〈표 5-36〉 폭력범죄피해에서 신체 공격 유무	184
〈표 5-37〉 폭력범죄피해에서 협박 내용(중복응답)	184
〈표 5-38〉 폭력범죄피해에서 신체공격 내용(중복응답)	185
〈표 5-39〉 폭력범죄피해 당시 같이 있던 사람의 존재 여부	186
〈표 5-40〉 폭력범죄피해 당시 같이 있던 사람의 동반피해 여부	186
〈표 5-41〉 폭력범죄피해 당시 피해자의 자기보호 노력(중복응답)	187
〈표 5-42〉 폭력범죄의 신체피해	188
〈표 5-43〉 폭력범죄 신체피해 병원치료 및 입원여부	188
〈표 5-44〉 갈취 피해물품(중복응답)	189
〈표 5-45〉 갈취 피해액	190
〈표 5-46〉 폭력범죄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191
〈표 5-47〉 폭력범죄피해의 행동적 영향(중복응답)	192
〈표 5-48〉 폭력범죄피해 보고여부 및 대상(중복응답)	193
〈표 5-49〉 폭력범죄피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194

〈표 5-50〉 폭력범죄피해 경찰신고 여부	194
〈표 5-51〉 폭력범죄피해 경찰 신고자	195
〈표 5-52〉 성폭력피해 발생 계절	196
〈표 5-53〉 성폭력피해 발생 시각	196
〈표 5-54〉 성폭력피해 발생 장소	197
〈표 5-55〉 성폭력피해가 발생한 '집'의 구체적 장소	197
〈표 5-56〉 성폭력피해가 발생한 '학교나 학교 근처'의 구체적 장소	198
〈표 5-57〉 성폭력범죄피해의 가해자 인지 여부	199
〈표 5-58〉 성폭력범죄피해의 가해자 수	199
〈표 5-59〉 성폭력범죄피해의 가해자 성별	200
〈표 5-60〉 성폭력범죄피해의 가해자 연령(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200
〈표 5-61〉 성폭력범죄피해 당시 가해자 음주여부	201
〈표 5-62〉 성폭력범죄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201
〈표 5-63〉 성폭력범죄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 친인척 세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202
〈표 5-64〉 성폭력범죄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 아는 사람 세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202
〈표 5-65〉 성폭력범죄피해 내용(중복응답)	203
〈표 5-66〉 성폭력범죄피해에서 신체 공격 유무	204
〈표 5-67〉 성폭력범죄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204
〈표 5-68〉 성폭력범죄피해의 행동적 영향(중복응답)	205
〈표 5-69〉 성폭력범죄피해 보고여부 및 대상(중복응답)	206
〈표 5-70〉 성폭력범죄피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207
〈표 5-71〉 성폭력범죄피해 경찰신고 여부	207
〈표 5-72〉 가정내 학대피해 발생 계절	208
〈표 5-73〉 가정내 학대피해 발생 시각	209
〈표 5-74〉 가정내 학대피해 발생 장소	209
〈표 5-75〉 가정내 학대피해가 발생한 '집'의 구체적 장소	210
〈표 5-76〉 가정내 학대피해가 발생한 '학교나 학교 근처'의 구체적 장소	210
〈표 5-77〉 가정내 학대피해가 발생한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의 구체적 장소	211
〈표 5-78〉 가정내 학대피해의 가해자 수	212
〈표 5-79〉 가정내 학대피해의 가해자 성별	212

〈표 5-80〉 가정내 학대피해의 가해자 연령(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	213
〈표 5-81〉 가정내 학대피해 당시 가해자 음주여부 ……	214
〈표 5-82〉 가정내 학대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	214
〈표 5-83〉 가정내 학대피해 지속성 여부 ……	215
〈표 5-84〉 가정내 학대피해지속기간 ……	216
〈표 5-85〉 가정내 학대피해 내용(중복응답) ……	216
〈표 5-86〉 가정내 학대피해 당시 같이 있던 사람의 존재 여부 ……	217
〈표 5-87〉 가정내 학대피해 당시 같이 있던 사람의 동반피해 여부 ……	217
〈표 5-88〉 가정내 학대피해 당시 피해자의 자기보호 노력(중복응답) ……	218
〈표 5-89〉 가정내 학대피해의 신체피해 ……	219
〈표 5-90〉 가정내 학대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	220
〈표 5-91〉 가정내 학대피해의 행동적 영향(중복응답) ……	220
〈표 5-92〉 가정내 학대피해 보고여부 및 대상(중복응답) ……	221
〈표 5-93〉 가정내 학대피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	222
〈표 5-94〉 가정내 학대피해 경찰신고 여부 ……	222
〈표 5-95〉 가정내 학대피해 경찰 신고자 ……	223
〈표 5-96〉 괴롭힘피해 발생 계절 ……	224
〈표 5-97〉 괴롭힘피해 발생 시각 ……	224
〈표 5-98〉 괴롭힘피해 발생 장소 ……	225
〈표 5-99〉 괴롭힘피해가 발생한 '집'의 구체적 장소 ……	226
〈표 5-100〉 괴롭힘피해가 발생한 '학교나 학교 근처'의 구체적 장소 ……	226
〈표 5-101〉 괴롭힘피해가 발생한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의 구체적 장소 ……	227
〈표 5-102〉 괴롭힘피해가 발생한 '온라인'의 구체적 장소 ……	228
〈표 5-103〉 괴롭힘피해의 가해자 수 ……	229
〈표 5-104〉 괴롭힘피해의 가해자 성별 ……	229
〈표 5-105〉 괴롭힘피해의 가해자 연령(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	230
〈표 5-106〉 괴롭힘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	230
〈표 5-107〉 괴롭힘피해 지속성 여부 ……	231
〈표 5-108〉 괴롭힘피해 지속기간 ……	232
〈표 5-109〉 괴롭힘피해 내용(중복응답) ……	233
〈표 5-110〉 괴롭힘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	234
〈표 5-111〉 괴롭힘피해의 행동적 영향(중복응답) ……	235

<표 5-112> 괴롭힘피해 보고여부 및 대상(중복응답)	236
<표 5-113> 괴롭힘피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237
<표 5-114> 괴롭힘피해 경찰신고 여부	237
<표 5-115> 괴롭힘피해 경찰 신고자	238
<표 5-116> 성적 괴롭힘 피해 발생 계절	239
<표 5-117> 성적 괴롭힘 피해 발생 시각	239
<표 5-118> 성적 괴롭힘 피해 발생 장소	240
<표 5-119> 성적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집'의 구체적 장소	241
<표 5-120> 성적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학교나 학교 근처'의 구체적 장소	241
<표 5-121> 성적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의 구체적 장소	242
<표 5-122> 성적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온라인'의 구체적 장소	242
<표 5-123> 성적 괴롭힘 피해의 가해자 인지 여부	243
<표 5-124> 성적 괴롭힘 피해의 가해자 수	244
<표 5-125> 성적 괴롭힘 피해의 가해자 성별	244
<표 5-126> 성적 괴롭힘 피해의 가해자 연령(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	245
<표 5-127> 성적 괴롭힘 피해 당시 가해자 음주여부	245
<표 5-128> 성적 괴롭힘 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246
<표 5-129> 성적 괴롭힘 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 아는 사람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247
<표 5-130> 성적 괴롭힘 피해 내용(중복응답)	248
<표 5-131> 성적 괴롭힘 피해에서 신체 공격 유무(온라인 괴롭힘 제외)	248
<표 5-132> 성적 괴롭힘 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249
<표 5-133> 성적 괴롭힘 피해의 행동적 영향(중복응답)	250
<표 5-134> 성적 괴롭힘 피해 보고여부 및 대상(중복응답)	250
<표 5-135> 성적 괴롭힘 피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251
<표 5-135> 성적 괴롭힘 피해 경찰신고 여부	252
<표 6-1> 개인적 특성과 범죄피해(초등학생)	268
<표 6-2> 개인적 특성과 범죄피해(중학생)	271
<표 6-3> 개인적 특성과 범죄피해(고등학생)	274
<표 6-4> 가족 특성과 범죄피해(초등학생)	278
<표 6-5> 가족 특성과 범죄피해(중학생)	282
<표 6-6> 가족 특성과 범죄피해(고등학생)	286

〈표 6-7〉 친구 특성과 범죄피해(초등학생)	289
〈표 6-8〉 친구 특성과 범죄피해(중학생)	291
〈표 6-9〉 친구 특성과 범죄피해(고등학생)	293
〈표 6-10〉 학교 특성과 범죄피해(초등학생)	296
〈표 6-11〉 학교 특성과 범죄피해(중학생)	299
〈표 6-12〉 학교 특성과 범죄피해(고등학생)	302
〈표 6-13〉 동네 및 등하교길 특성과 범죄피해(초등학생)	304
〈표 6-14〉 동네 및 등하교길 특성과 범죄피해(중학생)	306
〈표 6-15〉 동네 및 등하교길 특성과 범죄피해(고등학생)	307
〈표 6-16〉 일반적인 범죄피해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모형 분석	309
〈표 6-17〉 개인적 특성과 괴롭힘 피해	314
〈표 6-18〉 가족 특성과 괴롭힘 피해	318
〈표 6-19〉 친구 특성과 괴롭힘 피해	321
〈표 6-20〉 학교 특성과 괴롭힘 피해	324
〈표 6-21〉 동네 및 등하교길 특성과 괴롭힘 피해	326
〈표 6-22〉 개인적 특성과 가정내 학대 피해	329
〈표 6-23〉 가족 특성과 가정내 학대 피해	332
〈표 6-24〉 동네 및 등하교길 특성과 가정내 학대 피해	335
〈표 6-25〉 괴롭힘 및 학대피해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모형 분석	337
〈표 7-1〉 범죄유형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초등학생	355
〈표 7-2〉 범죄유형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중학생	357
〈표 7-3〉 범죄유형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 : 고등학생	359
〈표 7-4〉 학교별 두려움	360
〈표 7-5〉 피해가능성과 두려움의 관계(초등학생)	361
〈표 7-6〉 피해가능성과 두려움의 관계 (중학생)	361
〈표 7-7〉 피해가능성과 두려움의 관계 (고등학생)	362
〈표 7-8〉 초등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363
〈표 7-9〉 중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367
〈표 7-10〉 고등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370
〈표 7-11〉 초등학생의 가족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372
〈표 7-12〉 중학생의 가족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375
〈표 7-13〉 고등학생의 가족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378
〈표 7-14〉 초등학생의 친구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381
〈표 7-15〉 중학생의 친구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383

<표 7-16> 고등학생의 친구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385

<표 7-17> 초등학생의 학교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387

<표 7-18> 중학생의 학교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390

<표 7-19> 고등학생의 학교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392

<표 7-20> 초등학생의 동네 및 등하교길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394

<표 7-21> 중학생의 동네 및 등하교길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396

<표 7-22> 고등학생의 동네 및 등하교길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397

<표 7-23> 두려움에 대한 다중회귀모형 분석 399

<표 7-24> 범죄피해 예방 : 초등학생 402

<표 7-25> 범죄피해 예방 : 중학생 403

<표 7-26> 범죄피해 예방 : 고등학생 403

<표 7-27> 학교별 범죄피해 예방 평균비교 404

<표 8-1> 일반범죄 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414

<표 8-2> 재산범죄 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415

<표 8-3> 폭력범죄 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416

<표 8-4> 중복피해 현황 417

<표 8-5> 반복피해 현황 418

<표 8-6> 일반범죄 생애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419

<표 8-7> 재산범죄 생애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419

<표 8-8> 폭력범죄 생애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420

<표 8-9> 가정내 학대·괴롭힘 피해자수 및 피해자율 421

<표 8-10> 중복피해 현황 422

<표 8-11> 반복피해 현황 422

<표 8-12> 가정내 학대·괴롭힘 피해자수 및 피해자율 423

<표 8-13> 절도범죄 피해액 424

<표 8-14> 사기범죄 피해액 425

<표 8-15> 절도범죄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426

<표 8-16> 사기범죄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427

<표 8-17> 절도범죄피해의 행동적 영향(중복응답) 428

<표 8-18> 사기범죄피해의 행동적 영향(중복응답) 428

<표 8-19> 절도범죄피해 보고여부 및 대상(중복응답) 429

<표 8-20> 사기범죄피해 보고여부 및 대상(중복응답) 430

<표 8-21> 절도범죄피해 경찰신고 여부 431

<표 8-22> 사기범죄피해 경찰신고 여부 431

〈표 8-23〉 갈취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	432
〈표 8-24〉 폭행·협박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	433
〈표 8-25〉 갈취의 신체피해 ……	433
〈표 8-26〉 폭행의 신체피해 ……	434
〈표 8-27〉 갈취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	435
〈표 8-28〉 폭행·협박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	436
〈표 8-29〉 갈취피해의 행동적 영향(중복응답) ……	437
〈표 8-30〉 폭행·협박피해의 행동적 영향(중복응답) ……	437
〈표 8-31〉 갈취피해 보고여부 및 대상(중복응답) ……	438
〈표 8-32〉 폭행·협박피해 보고여부 및 대상(중복응답) ……	439
〈표 8-33〉 갈취피해 경찰신고 여부 ……	440
〈표 8-34〉 폭행·협박피해 경찰신고 여부 ……	440
〈표 8-35〉 성폭력범죄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	441
〈표 8-36〉 성폭력범죄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	442
〈표 8-37〉 성폭력범죄피해의 행동적 영향(중복응답) ……	443
〈표 8-38〉 성폭력범죄피해 보고여부 및 대상(중복응답) ……	444
〈표 8-39〉 성폭력피해 경찰신고 여부 ……	444
〈표 8-40〉 가정내 학대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	445
〈표 8-41〉 가정내 학대피해의 지속성 여부 ……	446
〈표 8-42〉 가정내 학대피해의 지속기간 ……	447
〈표 8-43〉 가정내 학대피해의 신체피해 ……	448
〈표 8-44〉 가정내 학대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	449
〈표 8-45〉 가정내 학대피해의 행동적 영향(중복응답) ……	450
〈표 8-46〉 가정내 학대피해 보고여부 및 대상(중복응답) ……	451
〈표 8-47〉 가정내 학대피해 경찰신고 여부 ……	452
〈표 8-48〉 괴롭힘피해 당시 재학여부 ……	452
〈표 8-49〉 괴롭힘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	453
〈표 8-50〉 괴롭힘피해의 지속성 여부 ……	454
〈표 8-51〉 괴롭힘피해의 지속기간 ……	455
〈표 8-52〉 괴롭힘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	456
〈표 8-53〉 괴롭힘피해의 행동적 영향(중복응답) ……	457

<표 8-54> 괴롭힘피해 보고여부 및 대상(중복응답) 458
 <표 8-55> 괴롭힘피해 경찰신고 여부 458
 <표 8-56> 성적 괴롭힘 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459
 <표 8-57> 성적 괴롭힘 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460
 <표 8-58> 성적 괴롭힘 피해의 행동적 영향(중복응답) 461
 <표 8-59> 성적 괴롭힘 피해 보고여부 및 대상(중복응답) 462
 <표 8-60> 성적 괴롭힘 피해 경찰신고 여부 462

그림 차례

[그림 3-6] 조사대상학교에 대한 협조 공문 121
 [그림 3-7] 조사 안내문 122
 [그림 7-1]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353
 [그림 7-2]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밤에 혼자 걸을 때 354

국문요약

1. 조사의 목적 및 개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격년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국범죄피해조사(국가승인통계)의 경우 만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청소년에 대해 성인과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함으로써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범죄피해 유형이나 관련요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전국 대규모 표본조사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범죄피해 실태 및 관련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학생대상 조사로 진행하였으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개략적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피해실태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번 조사는 자기보고식 조사가 가능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방문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동쉼터와 단기쉼터, 보호관찰소 등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청소년을 접촉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한 거점표집방식으로 학교밖 청소년 조사를 진행하였다. 학교조사는 2017년 6월 19일부터 7월 24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학교밖 청소년 조사는 2017년 8월 2일부터 9월 3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학교 조사 대상자는 총 10,338명, 학교밖 청소년 조사 대상자는 440명이었다.

2. 주요 분석 결과

가. 범죄피해 발생현황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가운데 지난 1년간 절도, 사기, 성폭력, 갈취, 폭행·협박 피해경험이 있었던 경우는 786,283명으로 추정되며 피해자 발생률은 20.8%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피해자 발생률이 23.1%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은 22.4%, 초등학생은 17.3%의 피해자 발생률을 보였다. 전체적으

2 전국범죄피해조사 (Ⅷ)

로 피해자 발생률은 재산범죄가 17.6%로 폭력범죄 6.2%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성폭력범죄(초등학생 제외)의 경우 피해자 발생률은 0.6%였다. 학교급별 피해자 발생률은 피해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재산범죄의 경우 고등학생의 피해율이 20.8%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 19.4%, 초등학생 13.0%의 순으로 낮아졌다. 반면, 폭력범죄는 초등학생 중 7.8%가 1건 이상의 피해를 보고하여 피해자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 5.4%, 고등학생 4.4%로 나타났다. 성폭력피해는 초등학생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0.6%의 피해자 발생률을 보여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피해유형으로 가정내 학대·또래 괴롭힘·성적 괴롭힘과 관련해서 지난 1년간의 피해경험을 조사한 결과, 또래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는 8.9%, 가정내 학대는 2.1%, 성적 괴롭힘은 1.7%(초등학생 제외)의 비율을 보였다. 피해유형별로 피해정도를 학교급에 따라 살펴보면, 또래 괴롭힘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 피해경험을 보고한 비율이 각각 9.9%와 10.0%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고등학생은 이보다 다소 낮은 6.2%였다. 반면, 가정내 학대는 고등학생이 가장 높은 피해자 발생률을 보여 2.7%였으며, 중학생 2.1%, 초등학생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 괴롭힘은 중학생 중 피해자 발생률이 2.1%로 고등학생 1.3%보다 약간 높았다.

나. 범죄피해유형별 주요 피해 내용 및 피해 결과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장소는 학교나 학교근처가 가장 많았으며 절도피해 중 62.1%, 사기피해 중 46.8%였다. 그 외에는 절도피해가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 18.3%였으며, 사기피해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20.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가 확인된 사건에 한하여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재산범죄피해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동일한 연령대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으며, 이러한 비율은 특히 초등학생이 높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낮아졌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는 절도 92.6%, 사기 85.7%로 대다수가 아는 사이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피해자 중 27.9%, 사기피해자 중 38.2%는 피해사실에 대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력범죄피해 역시 절반 이상이 학교나 학교근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유형별로는 갈취피해 중 51.2%, 폭행·협박피해 중 55.2%가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가해자의 연령은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재산범죄피해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인 경우는 갈취피해 중 53.5%, 폭행·협박피해 중 78.2%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가해자가 학교친구인 사건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폭력범죄피해로 인하여 한 가지 이상의 정신적 후유증을 보고한 응답자는 갈취피해자 중 12.7%, 폭행·협박피해자 중 22.2%로 재산범죄피해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폭력범죄피해사실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응답자는 갈취피해자 중 45.6%, 폭행·협박피해자 중 36.1%이었다.

강간(미수 포함),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해가 발생한 장소는 학교나 학교근처가 58.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집에서 발생한 사건이 25.0%를 차지하였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누구인지 인지하였다고 답한 경우에 한하여 성폭력피해의 가해자 특성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인 사건은 전체적으로 66.7%였으며, 성인이 가해자인 사건은 33.3%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가족을 포함한 친인척이 가해자인 사건은 30.0%이었으며, 친인척 외 아는 사람인 사건은 66.7%로 이 가운데 79.8%가 학교친구였다.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신적 후유증을 보고한 피해자는 25.3%였으며, 성폭력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피해자 비율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40% 가량으로 비슷하였다.

가정내 학대의 경우, 일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고한 사례는 피해자 중 13.1%였으며, 특히 고등학생이 지속적인 가정내 학대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17.3%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가 학대를 한 경우가 45.8%, 어머니가 학대한 경우는 41.4%였다. 가정내 학대피해자 가운데 정신적 후유증을 한 가지 이상 보고한 비율은 38.2%였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 중 절반이 넘는 52.8%가 후유증을 겪었다고 답하였다.

또래 괴롭힘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64.2%를 차지한 학교나 학교근처였으며, 이외에도 온라인에서 발생한 피해도 13.0%로 조사되었다. 괴롭힘피해의 경우 가해자가 여자인 경우가 37.3%, 남자인 경우는 36.0%였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자가

4 전국범죄피해조사 (Ⅷ)

가해자인 비율이 증가하였다. 괴롭힘 피해가 다수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전체적으로 9.9%였으며, 이러한 비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 괴롭힘 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보고한 응답자는 피해자 중 30.1%였으며, 아무에게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8.9%로 나타났다.

성적 괴롭힘 피해 중 절반이 약간 넘는 51.9%는 학교나 학교근처에서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온라인에서 발생한 피해가 19.8%로 나타났다. 성적 괴롭힘의 가해자인지율은 45.8%로,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해자가 확인된 경우,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인 경우가 95.9%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대다수는 학교친구가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후 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한 가지 이상 보고한 피해자는 26.6%였으며,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43.9%였다.

다.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피해유형별로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재산, 폭력범죄 피해,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재산범죄 피해에는 개인적 특성 중 성별(남)여, 학년(비교집단 고2에 비해 초6의 피해확률이 낮으며, 고1의 피해확률이 높음), 보호, 노출, 유인성, 비행, 학교특성 중 출입문통제여부, 거주지역 특성 중 사회적 무질서가 관련되었다. 보호는 피해가능성을 낮추는 반면, 노출과 유인성, 비행경험은 피해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문을 통제하는 학교의 학생들의 재산범죄 피해 확률이 더 낮았으며,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 피해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 피해는 개인적 특성 중 학년, 신체적 취약성, 보호, 비행경험, 가족특성 중 주관적 계층, 친구 특성 중 친구의 피해, 학교특성 중 학교경찰인지도, 학교폭력예방 노력, 지역 특성 중 사회적 무질서와 관련되었다. 학년의 경우 비교집단 고등학교 2학년에 비해 초등학교 4,5,6학년, 중학교 2학년의 폭력범죄 피해확률이 높았다. 또한

신체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보호수준이 낮을수록, 비행경험이 있는 경우,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친구피해가 많을수록, 학교폭력예방노력이 약할수록, 거주지역의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피해 확률이 높았다.

중고생의 성폭력 등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여>남), 학년(비교집단 고2와 비교해서 중2의 피해확률이 높음), 비행, 학교의 폭력예방노력이었다.

괴롭힘 피해는 남자보다 여자가 피해가능성이 높으며, 학년별로는 비교집단인 고2에 비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피해확률이 높았다. 신체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보호수준이 낮을수록 괴롭힘 피해가능성이 높았으며, 비행경험은 괴롭힘 피해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배우자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의 학생일수록 친구괴롭힘 피해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친구특성과 관련해서는 친구와의 애착이 약할수록, 친구의 비행수준이 높을수록, 친구의 피해경험이 적을수록 괴롭힘 피해가능성이 증가하였다. 학교특성 중 출입문 통제, 학교경찰 신뢰도, 학교폭력예방노력, 학교응집 등의 요인들은 괴롭힘 피해 위험성 감소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학교경찰인지도는 친구괴롭힘 피해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었는데, 이는 앞서 폭력범죄 피해와 마찬가지로 괴롭힘 피해 학생일수록 학교폭력 전담경찰을 인식하거나 이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교사의 지지와 이웃관계 친밀성은 각각 괴롭힘 피해와 정적, 부적 관계를 보였는데, 교사 지지의 경우 괴롭힘당하는 학생이 보다 교사의 지지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가정내 학대 피해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요인은 성별, 비행경험, 주관적 계층, 부모애착, 배우자폭력이다. 남자에 비해 여자가 학대 피해확률이 높았으며, 비행경험도 학대 피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낮을수록, 배우자폭력이 많을수록 학대 피해 위험성은 증가하였다.

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실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일반적 두려움과 유형별 두려움을 통하여 살펴 보았다. 먼저 일반적 두려움의 평균을 보면 초등학생이 2.62점,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2.32점,

2.12점으로 초등학생의 두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유형별 두려움을 보면,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고등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중학생, 초등학생의 순인 반면,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은 중학생의 경우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초등학생, 고등학생의 순이었고, 가정내 학대에 대한 두려움은 초등학생의 경우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고등학생, 중학생의 순이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폭력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중고생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 등에 대한 두려움은 중고생간에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은 성별, 학년, 신체적 취약성, 자기통제력, 피해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저학년의 일반적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컸다. 신체적으로 취약할수록, 범죄피해가 있는 경우,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일반적 두려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특성 중에는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부모감독과 부모애착이 강할수록, 부모 이탈성, 배우자폭력 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높았다. 부모의 감독수준 및 애착수준 관련 결과는 다소 의외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평소 부모가 자녀의 안전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환기시킨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친구 특성 중에는 친구애착, 친구비행, 친구징계경험, 친구피해 등이 일반적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 특성 중에는 학교경찰 인지도, 학교규칙문화가 일반적 두려움과 부적 관계를 보인 반면 학교폭력예방 노력은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 역시 학교 측의 학교폭력예방 노력으로 인해 안전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주지와 관심이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 특성에 있어서는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일반적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 두려움의 경우, 여성의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컸고 초등학생과, 중3학생의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컸다. 신체적으로 취약할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부모감독이 낮을수록, 부모이탈성과 배우자폭력 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특성 중에는 친한 친구 수가 적을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수준이 낮을수록, 주변에 비행을 저지르거나 학폭위에 소환된 친구가 없을수록, 친구피해가 많을수록 재산범죄 두려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특성으로는 예상과 달리 학교경찰신뢰도와 재산

범죄 두려움이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지역 특성으로는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가 두려움 증가 요인이었다.

폭력범죄 두려움은 여자, 초등학생의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신체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특성 중 주관적 계층, 부모감독, 부모애착은 폭력범죄 두려움과 부적 관계를, 부모일탈성과 배우자폭력은 정적 관계를 보였다. 친구 특성의 경우 재산범죄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친한 친구수, 친구애착, 친구비행은 폭력범죄 두려움을 감소시켰고, 반면에 친구피해가 많을수록 두려움이 증가하였다. 학교 특성 중 학교규모에 있어서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 학생의 폭력범죄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200-600명 수준의 중규모 학교 학생의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와 달리 학교경찰신뢰도와 폭력범죄 두려움은 정적 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는 폭력범죄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마. 학교밖 청소년 피해조사 주요결과

12세부터 19세 사이의 학교밖 청소년 440명을 대상으로 한 피해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 1년 간 절도, 사기, 갈취, 폭행·협박,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학교밖 청소년은 31.4%로 학교조사 대상자에 비하여 10% 이상 높은 피해자 발생률을 보였다. 피해 유형별 피해자 발생률은 재산범죄 24.5%, 폭력범죄 14.8%, 성폭력범죄 3.2%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범죄유형별 피해자 발생현황을 살펴본 결과, 재산범죄 중 절도피해자는 응답자 중 17.3%, 사기피해자는 10.9%였으며, 폭력범죄의 경우 갈취피해를 보고한 응답자는 4.1%, 폭행·협박 피해를 보고한 경우는 12.5%로 나타났다. 학교조사 대상자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피해유형은 폭행·협박으로 학생 중 3.8%가 1년 간 폭행·협박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한 것에 비하여, 학교밖 청소년은 이보다 3.3배 가량 피해자 발생률이 높았다.

학교밖 청소년 조사 결과, 지난 1년 간 가정내 학대, 또래 괴롭힘, 성적 괴롭힘을

하나라도 경험한 응답자는 19.1%로, 학교조사 대상자 중 이러한 비율이 10.9%인 것과 비교하면 피해자 발생률이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각 피해유형별 피해자 발생률을 살펴보면, 가정내 학대의 피해자율은 8.0%, 또래 괴롭힘 피해자율은 11.1%, 성적 괴롭힘 피해자율 6.4%로 나타났다. 학교조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또래 괴롭힘 피해자율의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가정내 학대와 성적 괴롭힘 피해자율은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조사 대상자의 4배 가량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학교밖 청소년 중 성별에 따른 피해자율은 일반범죄피해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과 달리, 가정내 학대와 또래 괴롭힘, 성적 괴롭힘은 모두 남자보다 여자 응답자의 피해자 발생률이 더 높았다.

피해의 영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조사 대상자에 비하여 피해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과 행동적 측면의 영향을 보고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 향후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를 위한 제언

이번 연구를 통하여 향후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생 특성을 고려한 조사시기 및 피해기간 설정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는 새롭게 조사표를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 설문조사는 6-7월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기간을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 즉 2017년 7월-2018년 6월로 설정하였다. 향후 조사에서는 이번에 개발된 조사표를 토대로 하여 조사시기를 3월로 하고,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3월부터 올 해 2월까지의 피해를 질문한다면 조사대상자 입장에서 지난 학년을 기준으로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피해 회상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 파악 등을 위한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 부모 교육수준 및 부모 직업유무만 조사하였으나 이러한 내용도 정확히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시 보호자용 조사를 병행하여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해 보다 정확히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호자 조사에서 자녀의 피해나 두려움에 대한 보호자 의견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응답자를 배려한 설문지 구성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각 질문에 모두 응답해야만 설문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모든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사대상자 입장에서는 응답하기 어렵거나 응답을 원치 않는 항목에 대해서도 모두 응답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피해조사의 목적이 피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긴 하지만 응답을 원치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하나의 응답범주로 '응답을 원치 않는다'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피해유형별 사건조사표 구성을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재산범죄(절도, 사기), 폭력범죄(갈취, 가족외 폭행, 가족외 협박), 성폭력·성적 괴롭힘, 가정내 학대, 괴롭힘 등 각 피해유형별로 거의 동일한 사건조사표를 구성하여 피해실태를 파악해 보았다. 그러나 재산범죄나 폭력범죄 등 일반적인 범죄피해와 괴롭힘이나 가정내 학대 피해 등의 경우 피해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건조사표를 달리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피해유형 분류와 관련하여 성폭력과 성적 괴롭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따라서 성폭력과 성적 괴롭힘을 하나의 유형으로 하여 조사하고, 이에 대한 사건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분석단계에서 예시에 나온 응답을 토대로 성폭력과 성적 괴롭힘으로 구분하여 피해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성폭력과 성적 괴롭힘을 구분하여 피해조사를 하고, 별도 사건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별도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 대상 조사에 대한 보완조사로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피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범죄피해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예방 대책 수립과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별도 조사를 통하여 이들의 피해특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면접조사 등 보완적인 자료를 통하여 피해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제 1 장



서 론

전 영 실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피해조사를 통하여 피해실태 및 피해 관련 요인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공식통계를 통해서도 아동·청소년의 피해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에는 범죄유형에 따른 피해자 연령별, 성별 추세만 제시되어 있으며¹⁾, 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특성이나 가해자 특성, 범죄특성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암수범죄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격년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국범죄피해조사(국가승인통계)의 경우 만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청소년에 대해 성인과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함으로써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범죄피해 유형이나 관련요인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총 4회(1990, 1991, 1999, 2014년)에 걸쳐 수행한 청소년 범죄피해조사는 중고생 연령대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아동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아동은 청소년에 비해 범죄피해에

1) 대검찰청 범죄분석의 피해자 연령구분은 6세 이하/12세 이하/15세 이하/20세 이하 등으로 되어 있다. 이 통계에 의하면 2016년 형법범죄 피해자 중 7-20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8.6%이며, 강력범죄(홍악)와 강력범죄(폭력)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각각 27.8%, 11.6%이다(신원미 상제외). 특히 강력범죄(홍악)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대검찰청, 2017: 576-577).

더 취약할 수 있으며, 피해 영향도 더 심각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피해조사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²⁾

이렇듯 아동·청소년의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있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피해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조사는 정기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범죄피해조사의 필요성은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피해를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특성으로 인한 피해(아동학대 등)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 대상 피해조사는 이들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도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다루는 피해유형들이 지표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것들이며, 학교 등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Bouchard et al., 2012: 660). 그리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국범죄피해조사를 보완하는 학교범죄 보충조사(School Crime Supplement)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³⁾

셋째,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피해의 영향이 심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⁴⁾ 따라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피해실태조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전국 대규모 표본조사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범죄피해 실태 및 관련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학생대상 조사로 진행하였으며,⁵⁾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개략적으로 학교

2) 아동에 대한 범죄피해조사 필요성은 제3장 제1절의 1. 기존 조사와의 차이 부분에서 설명하였다.

3) 미국의 학교범죄 보충조사에 대한 내용은 제2장 제2절에서 소개하였다.

4) 이에 관한 경험적 조사를 보면, 어린 시기(0-11세) 학대경험에 대한 30년 후 추적조사를 통하여 피해경험이 건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준 연구(Widom et al., 2012), 어린 시절의 학대피해가 성인기 폭력피해와 관련됨을 보여준 연구(Widom et al., 2008)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대피해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어린 시절 피해경험의 장기간에 걸친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5)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는 학생조사 혹은 가구방문 조사로 실시될 수 있으며, 여기서는 학생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된 내용이 피해조사이며, 피해내용에 가정내 학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아동과 청소년이 있는 가구 모집단 파악이 어렵다는 점, 학교와 학원생활 등으로 인해 가정방문시 아동·청소년을 만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한편 가구방문조사의 경우에도 제외되는 아동·청소년이 있을 수 있다. 일례로 국가승인통계인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경우 가족이 아닌

밖 청소년의 피해실태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⁶⁾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범죄피해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피해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 조사를 통하여 향후 정례적인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를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보고서의 구성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선행연구에서는 국내외 아동·청소년 범죄피해 및 두려움에 대한 최근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피해 및 두려움 관련요인들을 정리하고 설문문항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외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에 대해 검토해 봄으로써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내 조사는 범죄피해조사와 조사의 일부 내용으로 범죄피해가 포함된 조사들에 대해 검토하였고, 외국의 조사는 미국과 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에 대해 살펴 보았다.

제3장 조사방법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청소년범죄피해조사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조사개요에 대해 제시하고, 조사표 개발과정 및 기초조사표와 사전조사표의 주요 항목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표본설계 및 표본의 특성에 대해 간략히 제시하고, 조사의 구체적인 진행과정 및 자료검증, 가중치 처리 등 조사실시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아울러 학교밖 청소년 피해조사 개요(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 특성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제4장 범죄피해 발생현황에서는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초중고생의 일반적인 범죄-재산, 폭력, 성폭력-피해 및 괴롭힘·가정내 학대·성적 괴롭힘 피해의 발생현황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 발생률을 중심으로 피해실태를 제시하였다.

6인 이상 가구, 집단시설 가구, 외국인 가구는 제외하고 있다(백혜정, 2017: 14).

6)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조사방법은 제3장 제5절 참조.

제5장 범죄피해실태에서는 초중고생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폭력범죄(갈취, 폭행·협박), 성폭력범죄, 가정내 학대, 괴롭힘, 성적 괴롭힘의 구체적인 실태, 즉 피해일시 및 장소, 가해자 특성, 피해내용 및 결과, 사후대응 등에 대해 살펴 보았다.

제6장 범죄피해 관련요인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사항목으로 구성한 개인적 특성, 가족·친구·학교·지역특성에 따른 범죄피해를 분석해 보았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각 특성이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제7장 범죄에 대한 두려움 실태에서는 초중고생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실태 및 두려움 관련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두려움 관련요인은 범죄피해와 유사하게 개인적 특성, 가족·친구·학교·지역특성으로 구분하였으며, 개인적 특성으로 범죄피해경험을 추가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각 요인이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제8장 학교밖 청소년 범죄피해 발생현황 및 실태부분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유형별 발생현황 및 영향 등에 대해 살펴 보았다.

제9장 요약 및 결론 부분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 조사결과를 요약하고, 설문조사결과와 실무자 자문 등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를 위한 발전적 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았다.

제 2 장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선행연구

전영실·노성훈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선행연구

제1절 아동·청소년 범죄피해 및 두려움에 대한 선행연구

1. 아동·청소년 범죄피해 및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가. 아동·청소년 범죄피해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아동·청소년의 피해 특성 및 이와 관련되는 요인에 대한 검토는 피해조사를 위한 설문 구성 및 조사자료의 해석에도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이나 청소년의 피해위험과 관련되는 요인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예방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범죄피해 특성 및 관련요인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범죄피해와 관련되는 요인들을 다른 선행연구들을 보면, 개인적 특성(사회인구학적 특성, 자기통제력, 일상활동, 비행가해 등), 가족 특성, 친구 특성, 학교 특성, 지역사회 특성들이 아동·청소년의 피해와 관련됨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개인적 특성과 아동·청소년의 피해에 대해서 보면,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이 피해와 관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인선과 최지현(2014)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패널조사자료 중 중학생 2,126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학교폭력,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한 중복피해 집단별로 관련요인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중복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주관적 성적평가의 경우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가장 높고,

중복피해를 경험한 집단에서 가장 낮았다. 전영실과 기광도(2009)는 서울시 초등학교 4-6학년생 1,1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피해(괴롭힘, 재산, 폭력 범죄 등의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Aho 등(2016)은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족 특성이 피해와 관련됨을 보여 주었다. 이들은 스웨덴에서 17세 고등학생 5,96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피해설문(JVQ)을 이용하여 5가지 영역(인습적 범죄, 아동학대, 동료 및 형제자매에 의한 피해, 성관련 피해, 목격 및 간접 피해)의 34개에 대한 피해를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와 성범죄 피해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에는 인습적 범죄, 목격이나 간접피해가 여자보다 유의미하게 많았다. 이 외에 이주민이 유의미하게 더 피해를 목격(가정폭력목격도 더 많고, 부모의 형제자매 폭력도 더 많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특성과 관련해서는 보호자의 실업이 유의미하게 인습적 피해, 아동학대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와 같이 사는 청소년의 경우 피해가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와 관련해서는 소규모 지역(5만 미만) 거주 청소년의 범죄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습적 범죄와 피해목격 및 간접피해의 경우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10% 이상은 지금까지의 폭력피해가 10번 이상인 다수-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해의 피해 뿐만 아니라 평생 피해를 조사하였지만, 후자의 경우 시간요인이 회상 손실과 관련될 수 있음이 지적되기도 한다(Aho, 2016: 645). Popp 등(2011)의 연구에서도 성별이 학교에서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적 특성 중 자기통제력이나 일상활동 등이 피해와 관련됨이 제시되고 있다. 참고로 최근에는 자기통제력이 비행이나 범죄 뿐만 아니라 피해와 관련해서도 관련요인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된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과 비교할 때 다른 행동을 하고, 이것이 피해가능성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Pratt and Turanovic, 2016: 347). 경험적 연구들을 보면 자기통제가 피해에 관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Schreck et al., 2006; Kulig et al., 2017; Pratt et al., 2014), 자기통제와 생활양식이 피해에 관련되는 것을 보여주기기도 한다(Schreck et al., 2002). Schreck 등(2006)은 미국 6개 도시의 갱저항 교육 및 훈련(The Gang Resistance

Education And Training, GREAT)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통제와 피해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분석을 하였다. 이들은 피해가 범죄-유사행위라고 가정하면서,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피해자로서 더 매력적이고 쉬운 대상이 되도록 하는 행동을 한다고 보았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난 피해, 비행, 사회유대(부모애착, 학교애착), 비행친구 교제 등을 통제할 때에도 낮은 자기통제가 이후 피해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과 생활양식이 피해와 관련됨을 보여 준 연구로는 Kulig 등(2017)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중학생 대상 자기보고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괴롭힘 피해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보면,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 위험한 생활스타일(비행, 불법적 약물사용 등)이 괴롭힘 피해와 관련되지 않았다. 또한 자기통제가 위험한 생활스타일 참여 여부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만, 이런 행동이 괴롭힘 피해가능성을 높이지는 않았다. 대신 자기통제는 피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적 피해 제외). 또한 이들의 연구에서는 낮은 자기통제와 별개로 세가지 다른 요인이 괴롭힘 피해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신체적 취약성인데, 이는 모든 형태의 괴롭힘 피해위험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둘째, 연령요인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괴롭힘 피해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의 애착이 중요하였다. 즉, 부모와의 애착이 강한 청소년이 모든 유형의 괴롭힘 피해를 유의미하게 적게 보고하였다(언어적 피해 제외).

이 외에 Pratt 등(2014)은 66개의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하여 자기통제가 피해에 어느 정도 일관된 예측요인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자기통제와 피해를 다루는 연구들에서는 피해연구에서 주요 분야인 여성대상 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방임 등에 대한 연구가 극히 적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통제 이론은 개인이 위험한 일상행동에 참여하거나 피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율성이 있다고 보고 이것이 피해와 관련된다고 보고 있는데 반해, 아동학대 등의 경우 자율성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통제의 피해에 대한 영향은 비접촉형태(예, 사기 등)에 대해 유의미하게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이러한 신체적 한계에 대한 인식 이외에도 신체적 장애(가시적)와 학습장애(비가시적)가 괴롭힘 피해와 관련됨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즉 이러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장애가 없는 학생에 비해 괴롭힘 피해를 많이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Carter and Spencer, 2006).

Schreck 등(2002)은 자기통제와 생활양식 등이 폭력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앞의 연구와 달리 비행친구를 별도 요인으로 구분하고, 위험한 생활양식은 밤에 누군가와 어울려서 돌아다니려고 나가는 경우, 친구와 어울려 드라이브하는데 보내는 주당 평균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고등학생 1,139명을 대상으로 하여 한 조사결과를 보면, 자기통제와 비행친구, 위험한 생활양식이 폭력피해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유대와 학교유대는 폭력 피해에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 중 마지막으로 비행가해가 피해와 관련될 수 있다. 개인의 가해와 피해가 관련됨을 보여주는 연구로 Henson 등(2010)은 미국 켄터키시에서 남녀 청소년 54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폭력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보았으며, 남녀 청소년 모두 비행(일탈적 생활양식)이 피해에 중요하게 관련되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경미한/심각한 폭력피해에 대한 성의 효과는 특히 비행(일탈적 생활양식)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해-피해의 중첩성이 거주지역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도 제시되었다. Berg 등(2012)은 미국 조지아와 아이오와 지역조사인 가족 및 지역사회 건강 연구(Family and Community Health Study, FACHS)의 종단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폭력피해-가해의 중첩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아프리카계 미국흑인 아동으로 1997년에 10-13세(867명), 1999년에 12-15세(763명)인 아동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 거주지역 변수는 1997년에 조사되었으며, 폭력피해와 가해는 1999년을 기준으로 지난 해 경험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폭력 피해자-가해자 중첩성은 특히 거주지역에서 폭력을 지지하는 문화가 지배적일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폭력을 지지하는 거주지역 문화가 강한 곳에서 폭력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은 피해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폭력을 지지하는 거주지역 문화가 약하거나 매우 약한 곳에서는 폭력 범죄가 폭력피해 위험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폭력가해-피해의 중첩성이 폭력을 지지하는 거주지역 문화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외에 가해와 피해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는데, Averdijk and Bernasco(2015)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와 피해간에 강한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에서 피해사건 중 절반 가까이는 조사대상자의 가해와 피해가 같은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폭력사건이었으며, 전형적으로 또래들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 외에 음주여부, 친구존재, 조사대상자와 상호작용하는 부모(친구 부모), 친척(18세 이상)이나 조부모, 교사, 동네 성인 등 다른 성인보호자의 부재, 공공장소(특히 밤시간)에 있는 것 등도 피해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구조화된(unstructured) 상황에 있는 것이 청소년의 피해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구조화된 상황은 비행 뿐만 아니라 피해에도 관련될 수 있는 것이다. Zaykowski와 Gunter(2012)의 연구에서도 개인의 범법행위(흥기를 이용한 협박, 고의로 때리기)가 경미한/심각한 피해에 관련됨을 보여 주었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가족특성을 중심으로 피해와의 관련성을 살펴 본 연구들을 보면, 가족의 구조적 특성 및 기능성 특성 등이 피해와 관련됨을 보여주고 있다. Fisher 등(2015)은 1,116쌍의 쌍둥이 2,23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하여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범죄, 가정폭력, 학대, 방임의 피해 유형과 관련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즉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또래나 형제자매에 의한 피해와는 관련이 적었으며, 인터넷/휴대폰 피해나 성범죄 피해와는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에 가정내에서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절반 이상은 청소년기에 심각한 신체적 폭력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는 유전적 특성보다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Sam-pasa-Kanyinga(2017)는 캐나다에서 중고생 4,8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이버괴롭힘과 학교 괴롭힘 피해를 경험하는 학생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피해와 관련되는 요인도 살펴 보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남자보다는 여자가, 부모의 교육수준과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사이버괴롭힘과 학교괴롭힘 피해 모두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가족의 구조적 특성, 즉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아동·청소년의 피해를 다루는 연구들을 보면, 전영실과 기광도(2009)의 초등학교 대상 연구에서는 부모의 감독이 약할수록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tavrinides 등(2015)의 연구에서도 부모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이들은 초기 청소년(평균 13.5세)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6개월의 간격을 두고 두 시점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연구결과를 보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자녀는 부모에게 알리려는 노력이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해를 당한 자녀는 자신의 경험을 부모에게 숨기려고 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부모가 자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행동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는 부모의 모니터링과 자녀의 노출(자녀가 무엇을 하고, 누구와 어울리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와 유사하게 부모의 지지가 괴롭힘 피해와 관련되기도 한다. Bowes 등(2013)은 2,232명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자료는 아동의 5-10세와 11-16세 기간 동안 괴롭힘 피해에 대한 어머니와 자녀의 응답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들은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일부 아동의 경우 괴롭힘 피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양 시점에 피해를 경험한 사람을 만성적 피해자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만성적 피해의 위험요인은 이른 시기의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어머니의 낮은 사회적 지지, 아동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개인적 특성으로 외현화 증상(externalizing symptom)과 내면화 문제 등이 만성적 피해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만성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족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친구특성과 피해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연구를 보면 친한 친구 수가 피해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결과가 있다. Wang 등(2009)은 학교에서의 괴롭힘 가해,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 친구 특성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 가족특성은 부모의 지지, 친구 특성은 친구 수(친한 친구수가 3명 미만/3명 이상으로 구분)를 통하여 파악하였으며, 괴롭힘은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사이버 괴롭힘의 4가지 형태를 통하여 살펴 보았다. 이 연구는 미국의 학령기 아동에 대한 건강 행동연

구(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HBSC) 자료를 이용하여 6-10학년 7,5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친구수와 괴롭힘 피해의 관계를 보면, 친구수는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괴롭힘, 즉 전통적 형태의 괴롭힘 피해에 대해 부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이버 괴롭힘 피해의 경우 친구수가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연령의 경우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6학년에 비해 7,8학년은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괴롭힘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9,10학년의 경우도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피해가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이버 괴롭힘의 경우에는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9,10학년이 6학년에 비해 사이버 괴롭힘 피해율이 보다 낮은 것을 제외하고는). 또한 이들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지가 4가지 형태의 괴롭힘 피해 모두에 대해 일관되게 보호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지는 괴롭힘 피해 뿐만 아니라 괴롭힘 가해에 대해서도 보호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친한 친구가 없는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지지가 적을수록 괴롭힘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친한 친구 수와 더불어 비행친구가 피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Schreck과 Fisher(2004)는 7-12학년 3,500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친구 특성이 폭력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간에 서로 이해하고, 친밀한 가정의 청소년은 폭력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 정서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청소년은 피해위험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가 일상활동/생활양식이론과 일관되지만(가정분위기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보다 나은 감시자가 되게 하며, 동기화된 범법자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청소년이 매력적인 대상자가 되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이것이 유일한 해석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애착이 강한 경우에는 애착의 대상을 고려해서 피해위험(호전적으로 행동하는 등)으로 이끌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Schreck and Fisher, 2004: 1034). 한편 비행친구의 존재는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가족과 친구 상황이 청소년의 폭력피해 위험을 이해하는데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Wilcox 등(2009)의 연구에서도 비행친구, 친구에 대한 애착 등이 피해에 관련되었으며, 이외에도 개인적, 가족적 특성이 피해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학년에서의 폭력, 절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친구, 학교 특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들은 미국 켄터키 111개 중고등학교에서 남녀청소년 10,5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남녀청소년 모두에게 있어서 자기보고식 비행이 피해에 정적(+)으로 관련되었다. 특히 여자청소년의 경우 비행이 절도, 폭력피해의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모두에게서 충동성, 스포츠 참여, 비행친구가 절도피해와 정적(+)으로 관련되었으며, 성적은 부적(-)으로 관련되었다. 폭력피해의 경우에는 친구에 대한 애착, 성적이 부적(-)으로 관련되었으며, 충동성, 비행친구 등은 폭력피해와 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개인의 충동성, 개인과 친구의 비행이 피해에 정적으로 관련되며, 친구에 대한 애착과 성적이 비행에 부적으로 관련됨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 본 Schreck 등(2002)의 연구에서도 비행친구가 피해에 관련되었다.

Wiesner와 Rab(2015)의 연구도 친구 일탈 등이 피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히스패닉과 아프리카계 미국흑인 11학년(2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친구의 비행수준에 대한 인식(인지된 친구의 일탈수준)이 폭력피해 등에 관련됨을 보여 주었다. 인지된 친구일탈의 수준이 높을수록 비행가해, 피해, 간접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거주 지역 위험이 직간접 피해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거주지역 특성이 피해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보여 주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자기통제와 일탈적 생활양식(즉, 친구 일탈)이 폭력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으며, 전자보다는 후자가 피해에 중요하게 관련됨을 보여 주었다. Zaykowski와 Gunter(2012)의 연구에서도 친구의 범죄가 피해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 특성도 아동·청소년의 피해와 관련될 수 있다.⁸⁾ Popp 등(2011)은 학교 요인으로 주로 학교의 객관적 특성을 다루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요인은 학교안전성(접근통제와 관련되는 항목들), 학교크기, 학교 다양성(학교내 소수민족이나 인종

8) 학교분위기는 괴롭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괴롭힘 피해를 당한 학생의 학교활동 참여에도 관련됨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 Yang 등(2018)은 긍정적인 학교분위기(학생들이 인지한)가 학생(빈번하게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학생을 포함하여)의 학교활동 참여(정서적, 인지/행동적 측면에서)와 강하게 관련됨을 보여 주었다.

학생 비율), 학교 빈곤(무상급식, 혹은 감액된 급식비 내는 학생비율), 학교위치(도시/비도시) 등이었다. 여기서는 학교에서의 학생의 과외활동, 학교관련 요인 등이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를 보면, 성은 개인의 범죄피해위험에 중요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과외 일상활동과 학생, 학교 특성을 통제할 때에도 성과 피해의 관계는 줄어들지 않았다. 또한 성은 과외일상활동과 범죄피해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교내 스포츠 활동 참여가 학교에서의 폭력피해위험을 증가시키는 반면, 남자의 경우에는 교내스포츠와 피해간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클럽활동 참여의 경우에는 반대로 나타남). 학교대항 스포츠 참여는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우 폭력피해로부터의 보다 큰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조사결과 몇 가지를 보면, 학생특성 중 문제행동과 학업성취 등이 각각 폭력, 재산범죄피해에 관련되었다. 즉 문제행동이 많을수록, 학업성취가 낮을수록 피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차원의 변수 중에서는 학교의 다양성(학교내 소수민족이나 인종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폭력피해가 감소하였으며, 학교 빈곤(무료, 감액된 급식비를 내는 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재산범죄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차원의 변수 중 학교의 안전성, 위치, 크기 등은 학교내에서의 피해와 관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학교의 객관적 특성과 더불어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 등이 아동·청소년의 피해와 관련될 수도 있다. Bouchard 등(2012)은 2007 전국범죄피해조사(NCVS): 학교범죄 추가조사(School Crime Supplement, SCS) 자료를 활용하여 5,39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에 기반한 폭력과 절도 피해의 관련요인을 살펴 보았다. 이들은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조사하는 폭력피해의 경우 지표범죄들로서 보다 심각한 내용이며, 학교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 연구에서 폭력피해는 ① 밀치고 붙잡는 것, 넘어지게 하거나 침뱉는 것 ② 협박하는 것 ③ 원치 않는 것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절도피해는 지난 6개월 동안 학교에서 도난당한 횟수로 측정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교에서의 폭력피해에는 연령과 성, 도시거주 여부, 과외활동, 수업빠지기, 학교 갱의 존재여부, 학교에서 신뢰하고 도울 수 있는 성인 존재(사회적 자본)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여자보다는 남자가, 시골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과외활동이 많을수록, 수업을 빠지는 경우가 많을수록, 학교에 갱이 존재하는 경우, 학교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성인이

적을수록 폭력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피해의 경우에는 공립학교를 다니는 경우, 과외활동이 많을수록, 수업을 빠지는 경우가 많을수록, 학교에 갱이 존재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 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폭력과 절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본 결과 폭력과 절도 피해 모두에서 시골에 거주하는 경우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폭력과 절도 피해에서 기회요인이 중요함을 보여 주며, 사회적 자본이 특히 폭력피해로부터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Sulkowski와 Simmons(2018)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들은 미국 남서부 도시에서 중간 크기의 고등학교 재학생 5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사-학생간의 관계는 또래피해 및 그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우울, 불안,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Zaykowski와 Gunter(2012)의 연구는 학교의 객관적 특성 및 사회적 응집 등이 피해와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들은 델라웨어 학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33개학교에서 11학년 5,613명을 대상으로 학교관련요인과 개인의 일탈적 생활양식(법법행위)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위계적 분석을 한 결과, 개인의 법법행위가 경미한(말로 하는 위협, 괴롭힘), 심각한 피해(밀치거나 때리기, 발로 차기, 흉기를 이용한 협박 등)의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이었지만 학교관련 요인도 피해에 관련되었다. 학교수준의 요인 중 학교의 사회적 응집은 심각한 폭력피해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학교크기도 피해와 유의미하게 관련되었으며(부적으로), 비-백인 학생의 비율이 높을수록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소수집단 학생이 피해위험이 높지만, 주로 백인으로 구성된 학교에 다닐 때 보다 위험이 높을 수 있음).

Tillyer 등(2011)은 7학년 청소년 2,644명에 대한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수준의 요인 중 학교내 비행이 많을수록 피해가 많은 것을 보여 주었다. 이 외에도 학교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학교스포츠 활동에 참여할수록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개인, 친구 특성으로 여자보다는 남자가, 충동성이 높을수록, 자기보고식 비행이 많을수록, 비행친구가 있을수록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uhy 등(2017)은 학교피해에 대한 최근 조사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학교 피해와 관련되는 요인들을 정리하였다. 여기서는 개인적 수준의 관련요인으로 인구학

적 특성(성별, 연령, 외국출생 등)과 행동 및 인성특성(피해-가해 중첩, 이전 피해, 약물남용, 자기통제), 또래관계(친구비행, 친구피해-학교에서 피해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는 청소년이 더 피해를 경험), 학업관련 요인(학업수행, 학교유대, 결석, 학교에서의 소외, 학교에서의 과외활동 등)이 제시되었다. 학교수준의 관련요인으로는 학교크기, 학교위치, 학교유형(공립/사립), 학교수준의 일탈과 범죄, 안전수단(CCTV, 경비원, 자물쇠사용, 금속탐지기 등)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최근 조사연구들에서 시골 학교 학생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수준의 일탈과 범죄는 학교피해의 강력한 예측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수단 중에는 금속탐지기가 있는 학교의 경우 피해가 좀 더 적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 학교에서의 피해는 개인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친구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들이 같은 피해를 당할까봐 피해학생을 피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 조사연구들에서 학교 피해의 결과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는 부모, 학교, 친구에 대한 애착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학교에서의 괴롭힘 피해자를 방어해 주려는 동기에도 교사-학생간의 온정적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Jungert et al., 2016). 즉 교사-학생간의 관계가 온정적일수록 학교내에서 괴롭힘 피해를 목격할 경우 자율적으로 피해자를 방어해 주려는 동기가 강한 것이다.

다섯째, 지역사회 특성이 피해에 관련될 수 있다. 전영실과 노성훈(2011)은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의 피해와 관련되는 요인을 살펴 보았으며, 이 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이웃관계를 의미)은 저소득층 아동의 신체적 학대 피해와 관련되었다. 또한 거주 지역 안정성(지역 무질서를 재부호화)은 일반아동의 신체적 학대 피해, 친구 등으로부터의 폭력피해, 저소득층아동과 일반아동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피해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영실과 신동준(2012)의 연구에서도 동네 무질서가 일반 가정 청소년의 괴롭힘/따돌림 피해와 비행피해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iesner과 Rab(2015)은 히스패닉과 아프리카계 미국흑인 11학년 23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거주지역 특성이 청소년의 폭력피해와 관련됨을 보여주었다(청소년의 범죄 및 간접피해에도 관련됨). 이들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청소년 범죄 가해나 피해연구에서 거주지역 특성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들

은 거주지역의 특성이 아동 및 청소년의 피해에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 외에 피해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Turner 등(2016)은 미국 전국아동폭력피해조사(National Survey of Children Exposure to Violence II) 자료를 이용하여 폭력유형 및 피해정도에 따른 피해자 특성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적으로 10-17세 2,312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전화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폭력피해와 관련하여 여섯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즉 피해가 없는 사람/가정에서의 피해자/학교에서의 피해자/가정과 학교에서의 피해자/지역사회에서의 피해자/다수피해자로 구분하였다. 다수피해자의 경우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유형의 피해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특성이 있었다. 즉, 무질서한 거주지역, 비행 참여, 낮은 가족지지, 트라우마 징후 등의 점수가 높은 것이다. 또한 모든 피해자 집단이 비-피해자집단보다 위험요인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지만, 다수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단일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비해 더 심각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피해특성에 따라 피해자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정에서만 피해를 입은 사람, 형제자매에 의해 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경우 문제가 되는 특성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만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 약물, 재산비행 수준이 높지만, 다른 위험요인은 가정 피해자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정이나 학교에서만 피해를 입은 사람에 비해 관련없는 성인 가해자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외에 가족지지는 보다 낮았으며, 약물비행은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트라우마 징후 점수는 가정이나 학교에서만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피해유형에 따라 피해자 특성이 다르며, 다수-피해자의 경우 가장 위험요인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피해유형을 고려한 피해예방 및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특히 다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나.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의 영향

아동과 청소년 범죄피해의 영향을 다루는 연구들은 주로 특정 피해유형의 영향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피해의 정서적 영향과 행동적 영향으로 구분해서 살펴 보았다.

1) 정서적 영향

범죄피해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으로는 정서적 부적응, 사회불안, 내재화 문제, 자살 충동 등이 제시되고 있다. 피해경험이 정서적 부적응과 관련됨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보면, 앞서 살펴 본 이인선과 최지현(2014)의 연구에서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중복피해 모두 심리적 적응(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유형에 관계없이 피해경험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문경(2015)은 서울·경기 중고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피해로 구분)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보여 주었다. 여기서 사회적 지지 등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로부터의 피해가 정서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도 있다 (Raskauskas, 2010; Schwartz et al., 2015; Wu et al., 2015). Raskauskas(2010)는 초등학교 4-5학년 86명을 대상으로 또래피해에 대한 자기보고식 피해경험조사를 수행하였다. 여기서는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피해에 대해 살펴 보았으며, 이 중 두 가지 유형 이상의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피해경험이 없거나 단지 한 가지 형태의 피해만 경험한 사람에 비해 우울감, 피해에 대한 자기비난이 높았으며, 자존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chwartz 등(2015)도 아동기 중기(3, 4학년)의 또래피해가 청소년기 후기의 내재화 문제행동-우울장애 등-과 관련됨을 보여 주었다. Wu 등(2015)은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 피해 영향에 대한 연구들에 대해 메타분석을 하였다. 여기서 또래피해는 또래로부터의 반복적인 신체적, 언어적, 대인 관계 공격으로 정의되었다. 이 연구에서 또래피해는 정서적 부적응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로움과의 상관관계수가 가장 크고, 다음은 우울증, 불안의 순이었다. 또한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또래피해와 정서적 부적응의 상관관계가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관련하여 여자 피해자는 남자에 비해 반추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이들로 하여금 부정적 사건에 머물도록 해서 더 정서적 문제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남자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래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고 외부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관계적 피해가 공공연한 피해보다 정서적 적응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Moses와 Williford(2017)는 7개 학교에서 초등학교 3-5학년 854명을 대상으로 또래 피해와 관련하여 잠재계층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피해가 없는 집단과 주로 관계적 피해가 있는 집단, 일반적인 피해(관계적, 신체적, 언어적 피해) 집단으로 구분되었고, 일반적인 피해집단의 경우 공격성, 우울징후, 불안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수용, 자아존중감 등은 가장 낮았다. 반면 피해가 없는 집단의 경우 가장 긍정적인 발달 상태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로부터 여러 가지 유형의 피해를 경험하는 집단의 경우 발달 상태가 가장 좋지 못하며, 이러한 집단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앞서 살펴 본 Bowes 등(2013)의 연구에서도 만성적인 괴롭힘 피해가 정신건강문제나 학업 어려움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다수-피해가 정서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되었다. Turner 등(2017)은 10-17세의 전국적으로 대표성있는 종단적 표본을 이용하여 다수피해가 심리사회적 자원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 정신건강(심리적 고통, psychological distress)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아동·청소년의 자기보고식 조사가 아닌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도 학교폭력 피해자는 의욕상실, 우울, 자신감 상실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홍지영·유정이, 2013: 119).

피해경험이 정서적인 문제와 더불어 자살충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노윤채 등(2012)은 전문계(실업계) 남녀 고등학생 298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우울, 자살충동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가족, 친구, 교사의 지지는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우울관계에서(자살충동관계에서도) 긍정적 보호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절변수로서 역할). 특히 가족의 지지는 자살충동과 우울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조절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김재엽과 황성결(2017)은 중1-고2 1,032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폭력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조절변수로서 유의미하였으며 상호작용항(긍정적 의사소통이 잘 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성폭력피해에 따른 자살생각의 영향이 적음)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학교폭력이나 성폭력피해경험이 자살충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Sampasa-Kanyinga(2017)의 연구도 노운채 등(2012)의 연구와 유사하게 피해경험이 심리적 문제, 자살생각 및 시도 등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캐나다 중고생 4,886명을 대상으로 학교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 피해가 정신건강, 심리적 고충(우울 및 불안징후), 자살생각 및 시도가능성과 관련됨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이버 괴롭힘과 학교 괴롭힘 피해를 모두 경험한 경우 피해와 정신건강 문제가 더 강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 형태의 괴롭힘 피해를 경험하는 사람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보다 큰 것이다.

2) 행동적 영향

다음으로 피해경험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연구를 보면 공격성, 중퇴, 가해, 또 다른 피해 등과 관련됨을 보여 주고 있다. 이충권과 양혜린(2017)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초등학교 4학년생 자료를 이용하여 가정내에서의 학대, 방임 경험이 아동의 대표적인 문제행동 유형인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이들의 연구에서 가정내 학대, 방임은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또래애착, 부모애착, 교사지지 모두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Peguero(2011)는 학교에서의 폭력피해와 중퇴와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이 연구는 미국 2002년 교육종단연구(Education Longitudinal Study)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백인이나 아시아계 미국인의 경우에는 폭력피해가 중퇴가능성을 높이지 않은 반면,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계 미국인 학생은 학교에서 폭력피해를 입을 경우 중퇴할 위험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연구결과는 학교에서의 폭력피해가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 청소년에게 특히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피해가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피해경험이 가해와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최은희와 황미영(2017)은 학교밖 청소년(1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의 가정폭력 피해가 지난 1년간의 또래폭력 가해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운오(2012)는 십티이용청소년 854명에 대한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학교폭력피해경험이 타인공격행위(절도와 강도) 및 자신에 대한 공격행위(약물 및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Pereda 등(2017)은 소년범죄자를 대상으로 피해경험을 살펴봄으로써 피해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이들은 스페인 구금센터, 개방시설, 법원에서 갱생보호 명령을 받은 14-17세 청소년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청소년범죄피해설문지(JVQ)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의 폭력피해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조사대상자의 92.1%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해에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의 피해가 가해와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아동기 학대피해가 학교폭력 가해와 관련됨을 보여주는 연구(한시연·장재홍, 2017) 등이 있다.

피해가 또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이는 특히 가정내에서의 학대가 가정밖에서의 피해와 관련됨을 보여주고 있다. 장현석(2017)은 남녀청소년 2,280명에 대한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가정내에서의 학대가 학교폭력피해와 관련됨을 보여주었다. 즉, 부모의 학대가 학교폭력피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우울, 낮은 자존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학교폭력피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가정내에서의 학대가 가정밖에서의 피해에 관련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피해가 다음 해의 학교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의 경우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한시연과 장재홍(2017)의 중고생 502명 대상 조사에서도 아동기 학대경험이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됨을 보여 주고 있다.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Widom 등(2008)은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기의 학대 피해가 성인기의 폭력 피해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특히 모든 유형의 아동기 피해(신체적, 성적 학대, 방임)가 재피해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학대가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범죄피해에 관련되는 요인을 다루는 연구들은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자기통제력(혹은 충동성), 비행가해, 일상활동 등의 개인적 특성, 가족의 구조적 특성 및 부모(혹은 보호자)와의 애착이나 감독, 부모의 일탈성 등 가족특성, 친한 친구 수 및 친구와의 애착, 친구의 비행이나 피해 등의 친구특성, 학교의 구조적 특성 및 학교응집성이나 교사와의 애착 등 학교 특성, 거주지역 특성 등이 피해와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피해실태 뿐만 아니라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가족·친구·학교·지역사회 특성과 피해의 관련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행동적 영향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2. 아동·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선행연구

아동·청소년의 체감안전은 이들의 복지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긍정적 발달과 학업 등의 생활을 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범죄피해 실태이외에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았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연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두려움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기존 연구들을 보면, 개인적 특성으로 피해경험이 두려움과 관련됨을 보여주는 연구들(노성호, 2013; Addington and Yablon, 2011; Keith, 2018)이 있으며,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가족, 친구, 학교, 거주지역 특성 등이 두려움과 관련됨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

먼저 피해경험이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로 노성호(2013)의 연구에서 는 가정폭력 피해와 폭력 피해가 각각 구체적 두려움과 일반적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였는데 연구결과를 보면 폭력피해가 구체적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ddington과 Yablon(2011)은 미국과 이스라엘(이스라엘내 아랍학생 대상)의 빈곤한 지역 학생의 학교에서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 보았다. 두 국가 청소년대상 조사에서 공통적인 것은 괴롭힘 피해가 두려움과 관련되는 것이었다. 이외에 미국의 경우 학교에서 사회적으로 거부되는 경험이 두려움과 관련되었으며, 이스라엘 아랍학생의 경우 증오나 경멸하는 단어로 불린 경험이 두려움과 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연구에서는 피해횟수보다 피해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에 중요하게 관련됨을 보여 주었다. Keith(2018)는 미국의 전국범죄 피해조사의 추가조사인 학교폭력 추가조사(School Crime Supplement: SCS) 자료(2009년)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괴롭힘(전통적인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 피해가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피행동(avoidance behavior)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가정, 친구, 학교, 지역사회 특성 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관련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노성호(2009)는 부모관련요인이 청소년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부모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의 두려움과 관련됨을 보여 주었다. 즉,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에서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수(2018)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특성이 청소년의 두려움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와 부모애착, 사회적 관계 만족 등이 전체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었으며,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인 재산·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에는 재산·폭력범죄 피해, 물리적 무질서, 괴롭힘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는 재산·폭력범죄피해와 괴롭힘범죄 피해,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관계 만족 등이 관련되었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지역의 무질서와 사회적 관계 등이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구체적인 피해유형에 대한 두려움에는 범죄피해경험이 관련됨을 알 수 있다. 김준범과 김정현(2018)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가정형편이 나쁠수록,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을수록, 거주지역 규모가 클수록 두려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 본 Tillyer 등(2011)의 연구에서는 두려움관련 요인도 살펴 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학년 동안 학교에서 혹은 학교관련 활동 중에 심각한 폭력피해를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는 개인적, 학교 수준요인에 대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개인적 요인 중에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충동성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심각한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의 심각한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 특성 중에는 비행친구가 있는 경우 심각한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준의 변수 중에는 금속탐지기가 있는 학교에서 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일반적 두려움에, 경찰에 대한 신뢰, 사회적 유대, 경찰과 주민간의 친밀도가 구체적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전용태, 2018), 거주지역 무질서와 직간접적인 폭력 피해경험이 초등학생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련됨을 보여주는 연구 등이 있다(신재현·김상운, 2015).

아동·청소년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는 연구들을 보면, 앞에서 살펴 본 피해관련요인이 두려움에도 관련됨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개인적 특성으로 성별, 충동성, 가족특성으로 주관적 경제 수준, 부모와의 애착, 친구특성으로 친구의 비행, 학교 특성으로 학교의 구조적 특성이나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 거주지역 특성으로 거주지역 무질서나 규모 등이 두려움과 관련되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적인 피해경험이 두려움과 관련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피해관련 요인인 개인·가족·친구·학교·거주지역 특성과 함께 피해경험(개인적 특성)과 두려움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제2절 국내외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1. 국내외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가. 현황 분석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범죄피해조사는 조사내용이 전체적으로 범죄 피해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사와 조사내용의 일부분으로서 범죄피해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조사로 구분된다. 전자의 대표적인 경우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행정원)이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실시해 온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와 2011년 실시한 ‘저소득층아동 범죄피해조사’를 들 수 있다. 후자에는 여러 관련분야 연구기구들과 연구자들이 수행해온 다양한 연구들이 포함된다. 이중 국가승인통계로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 항목이 포함된 조사로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가)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Juvenile Victimization in Korea)

행정원은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목적은 경찰과 검찰이 생산하는 공식범죄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암수범죄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청소년 범죄피해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조기개입을 통해 청소년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청소년에게는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다(홍영오·연성진, 2014: 35). 1990년 1차 조사를 실시하고 1999년에 동일한 방법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한 이후로 3차, 4차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표본추출과정, 조사방법, 그리고 조사내용에 상당한 변화를 주었다.

〈표 2-1〉 행정원의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비교

	1990년 1차조사 1999년 2차조사	2008년 3차조사	2014년 4차조사
모집단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전국 만 13세~18세 청소년 비재학생 포함	전국 중고등학생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별도 조사
표본크기	90년 5,587명 91년 2,224명	2,500명	7,100명
조사방법	집단면접조사	개인면접조사	온라인조사
피해유형	폭력범죄	폭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재산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성범죄	성범죄
		가정폭력	가정폭력
		도래폭력	도래폭력
		간접피해	간접피해
			사이버폭력

출처: 홍영오·연성진(2014)의 내용 일부를 변경함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을 서울 소재 남녀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정하였다. 다단계층화표집의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는데 1단계에서는 학교를, 2단계에서는 학급을 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990년 조사에서 학교를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한 뒤 비율을 고려하여 66개 중학교와 55개 고등학교를 선정하였는데, 각 구별 학교 숫자를 고려하여 구마다 2~4개 학교가 선정되도록 정한 뒤 무작위로 학교를 표집 하였다. 그런 다음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별로 조사대상이 될 1개 학급을 무작위로 표집 하였다. 다만 중학교 1학년 학급은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중학교 1학년의 경우 범죄피해 조사기간에 초등학교 학업기간에 포함되고 또한 아직 독해능력이 떨어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입시험 준비로 인한 부담을 고려하여 3학년 학급을 제외하였다(김준호·노성호, 1990: 76). 2차 조사에서는 계통표집방법을 활용하여 1차 조사의 대상학교 중 절반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조사대상 학급에 있어서는 1차 조사와 달리 선정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각각 2학년 학급 중 1개 반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1차 조사에는 총 5,587명을, 2차 조사에서는 총 2,224명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의 경우 1, 2차 조사 모두 조사원이 직접 선정된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

을 대상으로 집단면접방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구조화된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는 자기기입식 방법을 사용하였다(노성호 외, 1999:24-25).

2008년 3차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모집단은 전국 16개 시도의 만 13세~18세 청소년으로 총 2,5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중·고등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니지 않는 비재학생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표집방법은 일차적으로 읍면동을 표집단위로 하여 규모비례확률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2007년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모집단 인구수를 고려하여 총 264개의 조사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조사대상 청소년의 선정은 할당표집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대상 읍면동의 학교, 학원 등 학생밀집지역에서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 기준에 맞추어 대상을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거주지역을 찾아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개인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원칙적으로 조사원이 하되 필요시에는 자기기입식 방법을 병행하였다(홍영오, 2008:33-36).

2014년에 실시한 4차 조사에서는 3차 조사와 동일하게 전국의 일반 청소년과 비재학생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조사모집단과 표본추출과정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모집단은 전국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다만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피해 실태를 확인하고자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재학생 조사의 경우 2차 조사 때와 같은 이유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본추출과정은 다단계층화군집표집방법을 따랐는데 1단계에서 학교를 표집하고 2단계에서 학급을 표집하는 방식이다. 조사대상 학교를 선정할 때 층화 기준은 학교급, 지역, 학교유형이다. 학교급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지역은 17개 시도, 학교유형은 중학교의 경우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 특성하고, 특목/자율고로 구분하였다. 각 층별로 미리 할당된 조사대상 학교 수를 추출 순위에 따라 계통추출방식으로 추출하였으며 선 순위 학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 순위 학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 학급은 각 학교별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학급을 선정하는 편의표집방법을 따랐으며 학교 당 2개 학급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담임교사의 안내를 받아 학교 내 정보화교실에서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사를 완료한 학생 수가 7,109명이었다.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조사는 전국의 15개 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지소에서 각 기관별로 10명 ~ 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보호관찰기관에 개시교육을 받으러 온 청소년들이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홍영오·연성진, 2014:39-44).

조사내용에는 기본적으로 범죄피해여부, 범죄피해상황, 생활양식(위험요인), 범죄피해 두려움, 범죄피해 영향, 그리고 배경요인 등이 포함된다. 다만 조사연도에 따라 범죄피해의 유형, 조사항목, 측정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1·2차 조사의 경우 범죄피해유형을 폭력범죄, 재산범죄, 성범죄(여학생의 경우)로 구분하고 폭력범죄에는 금품갈취, 폭행, 협박을, 재산범죄에는 절도, 사기, 소매치기를, 성범죄에는 강간, 강간미수,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 성희롱을 포함시켰다. 피해상황에는 계절, 요일, 시각, 장소, 피해 당시 피해자의 대응, 타인 동반 여부, 흥기사용 여부와 피해사건 이후의 대응으로 경찰 신고여부 및 미신고 이유 등이 포함된다. 또한 피해상황의 가해자 특성 항목에는 가해자 수, 성별, 신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포함된다. 생활양식은 범죄피해의 위험성 증감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측정하는 항목이다. 크게 근접성, 노출, 유인성, 보호로 구분하였는데 근접성에는 동네, 학교 내, 학교 주변에 불량배나 비행청소년이 있는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지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노출은 저녁시간 잤은 외출, 야간에 밖에서 보내는 시간, 대중교통 이용 빈도 등, 유인성은 평소 돈을 많이 소지하거나 비싼 옷과 물건을 자주 이용하는지 등, 그리고 보호는 밖에서 다닐 때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지 아니면 혼자 다니는지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범죄피해 두려움은 각 피해유형별 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두려움과 이러한 두려움이 일상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배경요인에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신장, 체중, 가족 월수입, 부모의 학력과 직업 등이 포함되었다.

2008년도 3차 조사에서는 기존의 조사항목 중 범죄피해유형에 청소년 범죄피해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정폭력, 형제자매 또는 또래폭력(학교폭력 등) 및 범죄 상황 목적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추가하였다. 가정폭력은 신체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형제자매 또는 또래폭력은 형제자매폭력, 폭력써클의 폭력, 또래 괴롭힘, 또래 따돌림,

또래 욕설, 데이트 폭력으로, 간접피해는 부모 간 폭력 목격, 부모의 자녀폭력 목격, 폭행목격, 금품갈취목격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범죄피해 영향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생활만족도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불안, 우울, 적대감 및 생활만족도 항목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 동안의 피해경험에 추가하여 전 생애에 걸친 피해경험도 조사하였다(홍영오, 2008: 51).

4차 조사에서는 기존의 범죄피해유형에 사이버 폭력(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신상정보유출, 따돌림)을 추가하였다. 또래폭력은 또래 괴롭힘, 또래 따돌림, 폭력써클의 폭력, 데이트 폭력으로, 간접피해는 폭행목격, 금품갈취목격, 살인목격으로 조사 항목을 일부 개선하였다. 또한, 전통적 범죄피해의 위험요인인 생활양식 이외에 사이버 폭력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양식 항목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인터넷이용시간, 개인정보유출, 낯선 사람과 채팅경험 및 제공한 정보유형, 바이러스에 방백신 업데이트여부 등 사이버범죄피해 취약성과 관련된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청소년범죄피해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인 가해자·피해자 중첩성을 고려하여 범죄피해 항목 이외에 범죄 및 비행경험 항목이 추가되었다. 여기에는 폭행, 절도, 강간 등과 같은 일반범죄뿐만 아니라 술, 흡연, 무단결석 등의 지위비행 및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환경과 관련된 항목들로서 학교폭력 전담경찰 배치여부, 학교폭력 예방교육수강여부, 담임교사의 학교폭력 관심도 등이 추가되었다(홍영오·연성진, 2014: 61).

나) 저소득층아동 범죄피해조사(Children in Low Income Family Crime Victimization Survey)

201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 실태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중산층이나 상류층의 아동에 비해 저소득층 아동들의 폭력피해 정도가 더 심각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보다 빈번하다(전영실·노성훈, 2011: 25). 저소득층아동 범죄피해조사는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 간의 피해정도 및 피해 위험요인에서의 차이를 비교하여 저소득층 아동에 특화된 범죄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조사의 목적을 두었다.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이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아동과 비저소득층아동(이하 일반아동)이 포함된다. 조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의 아동으로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학교교사나 주민센터 등에서 빈곤층으로 인정한 가정의 아동을 포함시켰다. 표본추출과정은 확률 표집방법이 아닌 편의표집과 판단표집 등 비확률표집방법에 의존하였다. 주요조사대상인 저소득층아동의 숫자가 적고 '저소득층'이라는 부정적 낙인의 우려 때문에 학교측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웠던 것이 이유였다. 연구자들은 저소득층 아동의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단지 주변의 초등학교 목록을 확보한 뒤 각 학교별로 협조요청을 하였다. 총 49개 초등학교에게 협조를 구했으나 불과 4개 학교로부터 조사 승낙을 받을 수 있었다. 둘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목록을 확보하고 이중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주변 학교들을 명단에서 제외하였다. 총 112개 학교를 접촉하여 4개 학교로부터 조사 승낙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접촉하였다. 총 230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협조요청을 하였고 이중 24개 센터에서 조사에 동의하였다. 조사대상 학교에서는 각 학교별 사정에 따라 2~4개 학급을 조사하였다. 저소득층 아동만 별도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학급에 저소득층 아동이 몇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급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방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집단면접조사방식이었다. 일반아동과 저소득층아동 구분 없이 조사를 실시한 후 담임교사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에 동의한 총 8개 초등학교와 24개 지역아동센터로부터 선정된 저소득층 아동 657명과 일반아동 993명 등 총 1,6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전영실·노성훈, 2011: 53-58).

조사내용은 범죄피해, 가족특성, 학교 및 친구특성, 거주 지역 및 일상생활 특성, 심리적 특성, 비행 등으로 구성되었다. 범죄피해의 유형은 크게 가정에서의 피해와 가정밖에서의 피해로 구분하였고 가정에서의 피해는 부모(보호자)로부터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을 포함하고 가정밖에서의 피해는 친구·선후배로부터의 피해, 절도피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피해를 포함하였다. 피해유형별 구체적인 측정항목은 <표 2-2>와 같다. 가족특성은 구조적 특성으로 부모 결혼상태, 직업, 동거 가족

수, 다문화가정여부, 이사 횟수 등이 포함되고 기능적 특성으로 가족활동(가족과 보내는 시간), 부모의 감독, 부모와의 애착, 부모의 음주와 폭력성 등이 포함된다. 학교 및 친구특성에는 학교분위기, 교사와의 애착, 학교성적, 친구와의 애착 등이 포함되고 거주 지역 및 일상생활 특성에는 지역사회 무질서, 지역사회 통합 정도, 방과 후 보호자 유무, 비구조화된 활동 등이 포함된다. 아동의 심리적 특성에는 자아존중감, 우울감, 분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비행은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전영실·노성훈, 2011: 58-64).

〈표 2-2〉 ‘저소득층아동 범죄피해조사’ 범죄피해유형

구분	피해항목	피해유형
가정내 피해	부모의 신체적 학대	뺨이나 머리를 맞는 것 나를 밀쳐서 쓰러지는 것 발에 차이거나 주먹에 맞는 것 물건 등을 던져 맞는 것 몽둥이나 굵은 막대기, 혁대 등으로 맞는 것 칼이나 다른 흉기(송곳, 못 등)로 겁을 주거나 찌르는 것
	부모의 정서적 학대	심한 욕을 듣는 것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것
	부모의 방임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젖은 이부자리에서 잠자는 것 열이 많이 나가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나쁜 짓을 해도 모른 채 하는 것 혼자서 밤을 보내는 것 연락 없이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가정밖 피해	친구·선후배의 폭력	겁주는 것 맞는 것 겁주거나 맞아서 돈이나 물건을 빼기는 것
	절도	누군가가 내 물건이나 돈을 훔쳐간 것
	모르는 사람의 폭력	겁주는 것 맞는 것 겁주거나 맞아서 돈이나 물건을 빼기는 것

출처: 전영실·노성훈(2011: 58-59)의 내용을 표로 구성

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통계청 승인을 받은 통계조사로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에서 실시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전반적인 성장발달 및 발달환경을 종단적으로 관찰하여 구축된 자료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이종원 외, 2016). 2010년에 서로 다른 학년으로부터 3개 패널을 표집하여 2016년까지 7차에 걸쳐 추적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조사 결과는 매년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로 발간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2010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그 보호자이다. 조사대상 학교를 선정하기 위한 표집틀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작성한 2009년 전국 학교일람표가 활용된다. 최초 패널을 구성할 때 목표표본은 학년별 2,200명씩, 총 6,600명으로 정하였다. 표출방법은 다단계층화집락표출법을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 2010년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로 추출할 표본의 규모를 결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확률비례통계추출법을 활용하여 표본학교를 추출하였다. 초등학생 표본은 지역(시·도, 도시 규모)만을 기준으로 층화하고⁹⁾, 중학생 표본은 여기에 남녀공학(남녀공학/남학교/여학교) 구분을 추가하여 층화하였다. 3단계에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무작위로 표본학급을 추출하였다. 한 학교 당 한 학급씩 선정하고 해당 학급 학생 전원을 조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선정된 학교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에 동의를 받았다.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미리 확보한 학교 목록에서 인접한 학교를 대체표본으로 선정하여 접촉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7,071명(초1: 2,342명, 초4: 2,378명, 중1: 2,351명)을 추출하여 패널을 구성하였고 매년 패널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오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a:32-39).

조사방법은 청소년 조사의 경우 조사원과의 개별 접촉을 통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보호자 조사의 경우 CATI(컴퓨터를 활용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초등학교 1학년 패널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전에 해당 학교에 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걸고 약속된 날짜에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이때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하여 특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모여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학교로부터 학교 내 조사에 대한 협조를 얻지 못하는 경우 대상 학생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면접을 진행한다. 초등학교 4학년과 중1학년 패널의 경우에는 조사원이 개별면접조사로 진행한다. 담당 조사원은 사전에

9) 총 27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16개 시도를 기본으로 하고 규모가 큰 서울과 경기를 각각 2개, 3개 집락으로 나누고 도 지역은 중소도시와 군을 구분하였다.

대상 학생에게 연락하여 면접일정을 잡고 학교(도서관, 강당, 교실 등) 또는 집 근처(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에서 면접을 실시한다. 청소년조사의 경우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종이설문지와 펜이다(PAPI). 이에 반해 보호자 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로서 학생 조사가 완료된 후 실시된다. 조사자는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자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알린 후 조사를 진행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a:40-41).

조사표는 청소년용과 보호자용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원칙적으로 청소년에게 직접 질문해야 하지만 가구소득과 같이 청소년이 잘 알지 못하는 문항은 보호자용 조사표에 포함시켰다. 청소년용 조사표에 있어서도 조사대상의 연령을 고려하여 문항의 난이도에 차이를 두었다. 조사항목은 크게 개인발달과 발달환경으로 구분되고 전자에는 신체발달, 지적발달, 사회정서발달, 진로계획, 비행, 생활시간 등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가정환경, 친구관계, 교육환경, 지역사회환경, 매체환경, 활동·문화 환경이 포함된다. 범죄피해와 관련된 조사항목으로는 다른 청소년에 의한 범죄피해와 부모에 의한 학대(신체, 언어)가 있다. 구체적인 피해유형은 <표2-3>과 같다.

<표 2-3>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범죄피해유형

항목	피해유형
청소년에 의한 피해	심한놀림이나 조롱당하기 집단따돌림(왕따) 당하기 심하게 맞기(폭행) 협박당하기 돈이나 물건 뺏기기(빙뜰기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심한 욕설
부모에 의한 학대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잘못하면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출처: 이종원 외(2016),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Ⅶ: 사업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53면, 156면.

라)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urveys)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실태조사 등)를 근거로 매

년 다문화가족청소년의 성장발달 및 성장환경에 대한 종단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비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비교하여 두 집단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다문화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2010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2011년, 2012년까지 1단계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단계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1년과 2012년 조사에서는 조사명칭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였고 이후 조사부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양계민 외, 2014:8-13). 매년 패널로 선정된 전국의 다문화 청소년 및 학부모, 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보고서에 담아 발간하고 있다.

목표 모집단은 국내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 및 학부모이지만 실제 조사 모집단은 이중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학부모이다. 패널은 2011년 당시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중에서 추출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범위에는 국제결혼가정자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자녀가 포함된다. 부모를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대체양육자에 대한 조사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교사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패널을 구성하는 대신 매년 조사대상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해당 학교의 다문화담당교사(약 300명)를 조사하였고 2014년부터 패널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조사대상을 담임교사로 한정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는 학업중단청소년들을 위한 설문지를 추가적으로 개발하였는데 조사대상자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 학업을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양계민·강경균, 2017:69-72).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학생현황 및 다문화가정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목록을 표집틀로 활용하였다. 표본추출방식은 지역(16개 시도)을 기준으로 층화한 뒤 다문화가정 학생 수에 비례하여 표본학교를 선정한 뒤 선정된 학교 내 다문화가정 4학년 학생을 전수조사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1,625 가구(청소년 1,635명, 학부모 1,625명)를 추출하여 패널을 구성하였다(양계민 외, 2014:31-33). 조사대상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17년까지 총 7차에 걸쳐 매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7년 조사에는 총 1,322가구가 참여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면접조사이다. 자료수집방법으로 컴퓨터를 통한 구조화된 조사표(CAPI)를 활용하였다. 청소년조사표는 한국어로만 구성된 반면 학부모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포함한 총 9개 언어로 제공되는 조사표 중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양계민·강경균, 2017:113).

조사내용은 크게 다문화적 특성, 개인 특성,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된다. 다문화적 특성에는 언어능력, 이중문화 경험, 다문화지원정책에 대한 태도가 포함되고, 개인 특성에는 신체 특성, 사회·정서·행동 특성, 그리고 인지적 특성이 포함되며, 환경적 특성에는 부모와의 관계, 친구, 학교생활, 지역사회 지지망, 진로 결정, 학업중단 요인, 학습활동 등이 포함된다. 범죄피해와 관련된 조사항목은 청소년조사표에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집단 괴롭힘과 관련된 질문들이다. 해당 학기동안 다른 학생들로부터 <표2-4>와 같은 유형의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와 피해 횟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양계민 외, 2014:3 5-36).

<표 2-4>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범죄피해 항목

항목	피해문항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 다른 학생들로부터 욕을 듣거나 심한 집적거림이나 또는 놀림을 당했다 다른 학생들이 나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완전히 무시했다 다른 학생들로부터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위협을 당했다 나에게 대해 거짓소문을 퍼뜨려서 다른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게 되었다 다른 학생들로부터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에 대해 험한 욕설을 듣거나 놀림을 당했다

출처: 양계민·박주희(2014),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연구원, 81-86면.

조사결과는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 담아 발간된다. 2014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장 빈번한 집단 괴롭힘 피해유형은 욕을 듣거나 심한 집적거림, 또는 놀림을 당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 학생은 5.2%가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반면 다른 학생들로부터 한번 이상 신체적 폭행이나 위협을 당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1.7%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양계민 외, 2014:81-86).

마) 아동종합실태조사(Korean Youth General Survey)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5년 마다 아동의 양육,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보건복지부, 2017:1). 2008년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총 6,923가구의 아동,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3년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아동종합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총 4,002 가구의 아동과 부모를 조사하였다(보건복지부, 2017:3-5). 수집된 자료는 아동의 성장발달과 복지 상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주기는 5년이며 조사결과는「아동종합실태조사」간행물로 발간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이다. 이중 빈곤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빈곤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상 보호대상 및 지원 대상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원 대상 아동을 포함한다. 표집틀은 2010년 통계청 작성 인구주택총조사이다. 전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개 층으로 층화한 뒤, 연령대를 6개로 나누어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조사구 내에서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하는 층화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표본의 규모는 각 층별로 조사구 규모에 비례하여 결정하였다. 표본조사구를 추출할 때에는 표본의 해당 지역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세대수와 조사구 특성(아파트 조사구, 일반조사구)을 고려한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국 600개 표본조사구를 추출한 뒤 인접 조사구 3개를 묶어 하나의 조사구 클러스터로 사용하였다. 각 표본조사구 클러스터로부터 27가구를 추출하고 선정된 가구의 주양육자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17:19-22).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아동과 보호자를 상대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0세~8세 까지의 아동은 부모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9세~18세 아동은 응답자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에 따라 질문을 하면 응답자가 직접 종이조사표에 기입하는 방식(PAPI)을 따랐다(보건복지부, 2017:24-25).

조사내용은 아동용 설문지의 경우 크게 사회성 및 정서, 가정생활, 언어생활, 학교

생활, 방과 후 생활, 건강 및 안전, 진로 및 아르바이트 등 항목으로 구성되고 부모용 설문지에는 여기에 가구일반사항, 사교육 및 특별활동, 주거생활, 지출 및 소득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 조사내용 중 범죄피해와 관련된 항목에는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경험 등이 있다(김미숙 외, 2013). 구체적인 피해유형과 피해문항은 <표 2-5>와 같다.

<표 2-5> '아동종합실태조사'(2013년) 범죄피해항목

항목	피해 유형	피해문항
학교폭력 피해	놀림	다른 아이들이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며 나를 놀리거나 조롱한 적이 있다
	따돌림	다른 아이들이 나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따돌리고 무시한 적이 있다
	소문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대한 나쁜 혹은 잘못된 소문을 퍼트리거나 뒤에서 그 소문을 수군거린 적이 있다
	협박	다른 아이들로부터 시키는 대로하지 않으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갈취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겁을 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
	폭행	다른 아이들이 나를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
	성희롱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성적인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말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진 적이 있다.
사이버 폭력피해	욕설	아이들로부터 인터넷, 휴대폰(스마트폰), SNS, 카페 등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등을 올린 적이 있다(욕설, 나쁜 소문, 불쾌한 글·사진)
	따돌림	아이들이 인터넷 휴대폰(스마트폰), SNS, 카페 등에서 나를 왕따시킨 적이 있다.
아동학대·방임	신체 학대	부모님이 나를 밀쳐서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 부모님이 주위의 물건(재떨이, 그릇, 의자 등)을 던져서 내가 맞았다 부모님의 발에 차이거나 깨물리거나 주먹에 맞았다 부모님이 휘두르는 몽둥이나 굵은 막대기, 혁대로 맞았다 부모님이 칼이나 흉기(송곳, 못, 도끼 등)로 나를 찔렀다
	정서 학대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부모님이 나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였다 부모님이 나에게 '멍청한 것', '개만 못한 것', '바보자식'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방임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나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내가 원할 때 나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 내가 필요한 음식들을 챙겨주지 않았다 내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술이나 약물에 취해 나를 돌보아주지 못했다

항목	피해 유형	피해문항
성폭력 피해	성희롱	지난 1년동안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가족이외의 어른이 성적으로 만지거나, 만지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
	성관계 요구	지난 1년동안 가족이나 가족이외의 어른에게 성관계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출처: 김미숙외(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40-555면.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아동의 32.2%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폭력 피해는 전체 아동의 2.8%만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경험율은 신체학대 6.1%, 정서학대 11.9%, 방임 40.7%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경험과 성관계 요구 피해경험은 각각 1.0%, 0.5%의 아동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숙 외, 2013:17-21).

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The Survey on Rights of the Children and Youths)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한국정부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b:6). 2014년까지는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등 총 6개의 영역에 대해 조사하였고 2015년부터 폭력 및 학대 영역이 추가되었다(김영지·김희진, 2015:3). 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변화추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또한 한국정부가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보고서 작성의 기초자료가 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b:1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를 주관하고 조사결과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로 발간된다.

조사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다. 목표모집단은 전국의 아동·청소년이며 모집단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재학 중인 학생이다. 표집들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이며 여기에는 초·중·고 학교별, 학년별 구분, 학급수, 학생수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표본추

출방법은 기본적으로 모집단을 지역과 학교유형으로 층화하여 각 층의 학생 수에 비례하여 표본크기를 할당하는 방법을 따랐다. 지역은 16개 광역시도로 구분하고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목고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자율고와 특성화고는 광역시도별로 층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 경기, 강원·충청, 전라, 경상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였고 특목고는 지역별 층화는 적용하지 않았다(김영지·김희진, 2015:42). 표본추출과정은 먼저 각 학년별로 지역과 학교급을 고려한 층 내에 포함된 조사대상 학생 수에 비례하여 표본학교를 선정하였다. 다만 각 학년별 학급수가 초등학교는 2개 이상, 중·고등학교는 3개 이상인 학교를 추출하였다.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하였다. 다음으로 표본학교에서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였고 선정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하였다(김영지·김희진, 2015:45). 목표 표본크기는 초등학생 3,100명, 중학생 3,200명, 고등학생 3,200 등 총 9,500명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조사원이 직접 표본학교를 방문하여 집단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조사원은 표본으로 선정된 학급을 방문하여 담임교사와 학생들에게 조사개요와 목적, 설문지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한 뒤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종이설문지(PAPI)이며 조사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이다.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보호자 동의서를 수령하였는데 이를 위해 조사원은 사전에 조사 대상 학급의 담임교사를 접촉하여 보호자 동의서를 배부하고 약속된 날짜에 취합하였다. 설문조사는 자녀의 조사 참여에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들에 대해서만 실시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b:42-44).

조사내용은 총 7개 영역, 148개 지표를 포함한다. 조사항목은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견 표명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등), 폭력 및 학대(체벌·고문·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아동학대·유기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부모의 지도와 책임,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등),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등),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교육에의 권리, 여가·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등), 특별보호조치(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소년사범아동, 경제적 착취, 성적착취)로 구성되어있다. 이중 범죄 피해관련 항목은 '폭력 및 학대'와 '특별보호조치'이다. 체벌·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하여 정서적 학대 경험, 폭력피해 경험,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경험, 체벌 경험이 포함되어 있고 아동학대·유기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에 관련해서는 방임유형과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특별보호조치 항목 중 경제적 착취와 관련해서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이, 성적 착취와 관련해서는 성적 피해 경험이 포함되어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b:6, 20, 23). 구체적인 범죄 피해유형은 <표2-6>과 같다.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29.8%와 18.4%가 각각 부모(보호자)와 교사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의 경우 부모에 의한 경우가 24.8%, 교사에 의한 경우가 18.4%로 나타났다. 또래로부터 폭행 및 구타, 따돌림, 성적희롱 및 추행을 당한 비율은 각각 5.5%, 5.2%, 3.2%였다. 사이버 폭력피해의 경우 심한모욕이나 욕설, 따돌림, 사생활 침해의 피해를 당한 응답자가 각각 15.8%, 1.7%, 5%를 차지했다(김영지 외, 2015:207-227).

<표 2-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범죄피해항목

항목	피해문항
부모(보호자)의 체벌, 언어폭력	신체적 벌 모욕적인 말(욕설)
학교선생님의 체벌, 언어폭력	신체적 벌 모욕적인 말(욕설)
방임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적이 있다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불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또래폭력·괴롭힘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따돌림을 당함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협박을 당함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 강제적인 심부름
사이버 폭력·괴롭힘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협박을 당함 성희롱(놀림)을 당함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 페이스북 등)에서 따돌림을 당함

항목	피해문항
아르바이트 폭력·착취	일을 하고 나서 임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성적 피해(성희롱, 성추행)를 경험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성폭력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 경험

출처: 김영지외(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Ⅴ: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81-589면.

사)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Korean Youth Media Use & Harmful Environments Survey)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를 근거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통계조사로서 국가승인통계이다. 2016년 기존에 별도로 실시되어왔던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가 통합·개편되었다. 조사목적은 청소년들의 매체이용 실태 및 유해환경 접촉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청소년 보호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는데 있다(여성가족부, 2017:1-3). 2년마다 전국의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가출청소년,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발간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으로 구분된다. 일반청소년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2016년 조사에서 조사모집단의 기준이 되는 표집틀은 한국교육개발원의 ‘2015년 교육기본통계’로 하였다. 16,500명의 목표표본을 확률표집방식으로 추출하였다. 위기청소년은 가출하거나, 범죄 또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의미한다. 2,000명의 목표표본을 비확률표집(유의표집)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일반청소년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은 먼저 지역과 학교급에 따라 모집단을 층화한 뒤 각 층별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표본을 배분하는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지역은 17개 시도로 구분하고 학교급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한 뒤 고등학교는 다시 일반계(일반고, 자율고, 특목고)와 특성화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로 구분하였다. 표본배분 방식은 17개 시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12개(초등학교 2개, 중학교 3개, 일반계 고등학교 3개, 특성화 고등학교 3개)의 표본학교를 할당한 뒤 나머지 표본은 각 층별 학생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였다. 다음으로 각 표본학교별 조사대상이 될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해당 학급의 전체 학생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기청소년은 소년원, 쉼터, 보호관찰소의 협조를 받아 조사대상자를 확보하였다(황여정 외, 2016:7-14).

자료수집은 종이조사표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집단면접조사(PAPI)를 통해 진행되었다. 일반청소년의 경우 조사원이 표본학교에 방문하여 임의로 선정된 1개 학급에 대해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조사원이 소년원과 쉼터를 방문하여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보호관찰소에서의 위기청소년 조사는 일차적으로 조사원이 기관을 방문하여 담당자들을 교육시킨 뒤 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조사를 실시하면 조사원이 나중에 재차 방문하여 설문지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적으로 15,646명의 일반청소년과 1,876명의 위기청소년이 조사에 참여하였다(여성가족부, 2017:30).

조사내용은 성인용 매체(간행물, 영상물, TV 프로그램, 게임 등) 이용, 성인 대상 업소(주점, 무도장) 이용, 약물(음주, 흡연, 환각성 물질) 이용, 그리고 이러한 유해환경과 관련된 행동(청소년폭력, 성적인 접촉, 성관계, 성폭력)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된다. 범죄피해 항목은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과 괴롭힘 및 성폭력 피해를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장소, 가해자, 피해신고 여부, 문제해결 유무 등을 조사하였다(여성가족부, 2017:4). 구체적인 범죄피해유형은 <표2-7>과 같다. 2016년 조사결과 언어폭력피해율과 신체폭력피해율이 각각 6.9%,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폭력피해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는 학교 교실 안으로서 전체 폭력피해의 56.8%를 차지했다(황여정 외, 2016).

〈표 2-7〉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의 범죄피해항목

항목	피해문항
또래 폭력·괴롭힘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음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또는 물건으로 인해 다침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당함 왕따(따돌림)을 당함 강제 심부름(빵 셔틀 등)을 당함 사이버(인터넷)상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함
또래 성폭력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을 당함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거나 괴롭힘을 당함 고의로 신체를 건드리거나 몸을 밀착시킴을 당함 강제로 성관계 시도를 당함 사이버(인터넷)상의 스토킹이나 성희롱을 당함

출처: 황여정외(2016), 2016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338, 340면.

나. 연구방법 검토

가) 조사대상과 표집

아동·청소년 피해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은 대상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과 초중고 재학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행정원의 제3차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2008)와 아동종합실태조사만이 전자에 해당하고 나머지 피해조사는 후자에 해당한다. 행정원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을 만 13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조사대상 범위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데 스스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 여부를 고려하여 0세~8세 사이 아동은 보호자를 대신 조사하였고 그 이상의 연령대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진행했다. 재학생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의 범위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초중고 재학생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조사(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와 일부 학교급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초등: 저소득층아동 범죄피해조사,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초중등: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중고등: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로 구분된다. 조사대상 최저 학년은 초등학교 4학년이 다수였으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처럼 초등학교 1학년생까지 대상으로 하는 조사도 있다. 행정원의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범죄피해 조사기간에 초등

학교 재학기간이 겹치는 문제가, 후자의 경우에는 대입시험 준비로 인한 부담이 고려되었다.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및 청소년이 조사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연구들은 비재학생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별도로 진행했다. 형정원의 제4차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에서는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들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에서는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주 조사대상인 아동, 청소년 외에 보호자나 교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연구들이 있다. 아동종합실태조사처럼 응답이 불가능한 저연령대 아동을 대신하여 보호자가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처럼 아동과 청소년이 응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보호자에게 묻거나,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보호자와 교사를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표집틀은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로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교육기본통계 상의 학교목록을 활용하고 특정 연령집단을 모집단으로 할 때에는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통계를 활용하였다. 다만 저소득층아동 범죄피해조사와 같이 표집틀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조사대상인 전국 저소득층 아동(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아동)의 목록이 없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표집틀로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단지 주변의 초등학교 목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목록, 지역아동센터 목록을 활용하였다.

표집방법의 경우 대부분의 조사에서 확률표집인 다단계층화군집방법을 활용하였다. 층화기준은 주로 학교급, 지역, 학교유형인데 지역과 학교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지역은 주로 16(또는 17)개 광역시도로 구분하였으나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였고,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에서는 자율고와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학교유형의 경우 중학교는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으로 구분하거나 아예 구분하지 않는 경우로 나뉘었다. 고등학교는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목고의 4가지 유형(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자율고의 3가지 유형(형정원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일반계(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계(특성화고, 마이스티고)

의 2가지 유형(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으로 구분하였다. 표집틀이 없거나 조사대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확률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에서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을 조사하기 위해 보호관찰기간에 개시교육을 받으러 온 청소년들에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에서도 소년원, 쉼터, 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조사 가능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저소득층아동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임대아파트 주변에 위치하거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인 학교에 저소득층 아동이 재학 중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이러한 학교를 접촉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조사대상 아동들과 접촉하였다.

〈표 2-8〉 국내 아동청소년범죄피해조사 표집방법 비교

	JVK (2014)	CLIFCVS (2011)	KCYPS (2016)	MAPS (2011)	KYGS (2013)	SRCY (2015)	KYMUHES (2016)
조사 대상	중·고등학교 재학생 학교밖 청소년	저소득층아동 초등학교 재학생	초·중학교 재학생 및 보호자	다문화청소년, 보호자 및 교사	만 18세 미만 아동 및 보호자	초중고 재학생	초중고 재학생 위기청소년
모집단	전국 중2·3, 고1·2 재학생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서울 소재 초4~6 재학 저소득층아동 서울 소재 초4~6 재학 일반아동	전국 초1·4, 중1 재학생	전국 초4 재학 다문화청소년	전국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전국 초4~6, 중1~3, 고1~3 재학생	전국 초4~고3 재학생 가출·범죄·비행 청소년
표집틀	학교목록 (학교 알리미:schoolinfo.go.kr)	임대아파트 목록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학교 목록 지역아동센터 목록	학교목록 (교육부)	다문화가정 학생 재학 학교목록 (교육부)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교육기본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한국교육개발원)
표집 방법	일반: 확률표집(다 단계층화군집) 학교밖: 비확률표집(판단)	비확률표집 (편의, 판단)	확률표집 (다단계층화 군집)	확률표집 (다단계층화 군집)	확률표집 (다단계층화 군집)	확률표집 (다단계층화 군집)	일반: 확률표집 (다단계층화군집) 위기: 비확률표집 (판단)
표본 크기	일반: 7,109 학교밖: 400	저소득: 657 일반: 993	7,071	1,635	4,002	10,453	일반: 15,646 위기: 1,876

나) 자료수집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조사방법은 면접조사이다. 학교방문조사는 학교 내의 특정 장소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학급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면접으로 진행하였다. 아동종합실태조사와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서는 조사가원이 조사대상 가정의 보호자로부터 사전승낙을 얻은 후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개별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패널도 개별면접조사로 진행되었는데, 다만 조사장소를 학교 내 공간이나 집 근처의 조사가 용이한 곳으로 하였다. 조사원은 보호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자녀에 대한 조사의 진행상황을 알리도록 하였다. 면접조사방식으로는 주로 조사원이 조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배포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응답자가 직접 응답하는 자기기입식을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면접조사에서 조사도구는 종지와 펜이었지만(PAPI)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서는 컴퓨터를 통한 구조화된 조사표(CAPI)를 활용하였다.

면접조사가 아닌 다른 조사방법도 활용되었다. 행정원의 제4차 청소년대상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이전의 면접조사 방식 대신에 온라인조사방식을 적용했다. 조사대상 학급의 학생들이 학교 내의 정보화교실에 모여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에 접속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에 응답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경우 보호자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로 진행되었다. 패널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면접조사가 완료된 후 조사원이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컴퓨터 화면의 설문항목을 읽고 이에 대한 응답자의 대답을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표 2-9〉 국내 아동청소년범죄피해조사 자료수집방법 비교

	JVK (2014)	CLIFCVS (2011)	KCYPS (2016)	MAPS (2011)	KYGS (2013)	SRCY (2015)	KYMUHES (2016)
조사 방법	일반: 온라인조사 학교밖: 면접조사	면접조사	초1: 집단면접조사 초4, 중1: 개별면접조사 보호자: 전화조사	면접조사	면접조사	면접조사	면접조사
조사 도구	일반: 컴퓨터 학교밖: PAPI	PAPI	아동·청소년: PAPI 보호자: CATI	CAPI	PAPI	PAPI	PAPI
특징			초1은 학교 내 정해진 장소에서, 초4·중1은 개별 장소에서 실시	보호자는 외국어 조사표 중 선택가능	8세 이하 아동은 부모조사, 9세 이상 아동은 응답자 자기기입 식 조사	일부 조사대상 에 대해 사전 부모동의 를 받고 조사 진행	일반청소년 은 조사원이, 위기청소년 은 기관담당자 가 조사 진행

다) 조사항목

피해유형은 폭력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등 일반적 유형의 범죄피해와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및 환경적 특성과 관련 있는 특별한 유형의 범죄피해로 구분된다. 후자에는 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을 중심으로 주로 또래라는 준거집단에 의해 발생하는 또래(학교)폭력이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기가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시기라는 점에서 부모(보호자)에 의한 학대나 방임 역시 아동 및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특별한 유형의 범죄피해이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피해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집단이다. 더욱이 사이버 폭력이 주로 또래집단 내에서 발생하는데 오프라인에서의 또래관계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반대로 온라인에서의 또래관계가 오프라인에서의 폭력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기는 정서적, 인지적으로 성장과정에 있는 단계로서 환경적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주변에서 발생하는(특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범죄행위를 목격함으로써 간접피해를 당할 수 있다.

분석에 포함된 국내의 아동·청소년 범죄피해 관련 조사 7개 중 행정원의 제4차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만 일반적 범죄피해와 함께 앞에서 열거한 4가지 특별 유형의 범죄피해 모두를 조사내용에 포함하였다. 모든 조사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피해유형은 또래(학교)폭력 피해였으며 5개의 조사에서 일반적 범죄피해와 부모에 의한 학대·방임이 피해유형에 포함되었다. 사이버폭력은 3개 조사에서, 간접피해는 2개 조사에서만 피해유형으로 포함되었다.

동일한 범죄피해유형이더라도 세부적인 피해유형 분류, 조사의 범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행정원의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에는 일반적 범죄피해를 크게 폭력범죄, 재산범죄, 성범죄로 구분하였고 다시 폭력범죄는 폭행, 협박, 금품갈취, 재산범죄는 절도, 사기, 소매치기, 성범죄는 강간(미수), 강제추행, 성희롱으로 구분하였다. 저소득층아동 범죄피해에서는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만을 조사했고 재산범죄에 절도만을 포함시켰다. 일반적 범죄피해를 조사항목에 포함한 나머지 3개의 조사들은 공통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조사하였다.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청소년이 특별히 성과 관련된 범죄피해에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피해가 포함되어 있는 점이다.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 고용주로부터 겪게 되는 노동력 착취, 최저임금 위반, 열악한 근로환경, 폭언·폭행 등을 별도의 피해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성범죄 피해는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스토킹 등으로 피해유형을 구분하였다. 일부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어린 나이를 감안하여 성희롱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유형의 피해에 대해서만 질문하거나(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예 성범죄를 피해유형에서 배제하기도 하였다(저소득층아동 범죄피해조사).

또래(학교)폭력 피해는 폭행, 협박,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괴롭힘(조롱), 언어폭력, 성희롱 등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분석에 포함된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들이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유형을 분류하였는데, 다만 몇몇 조사에서는 간소화된 피해유형을 적용하였다. 부모학대·방임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으로 피해유형을 구분하였다. 사이버폭력의 피해유형에는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개인정보유포, 집단따돌림이 포함된다. 행정원 제4차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가 가장 광범위한

유형의 사이버폭력 피해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반해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의 2개 유형만을 조사하였다. 간접피해는 행정원의 청소년대상 범죄피해조사와 저소득층아동 범죄피해조사에서만 조사되었다. 3차 청소년대상 범죄피해조사에서는 부모간 폭력목적, 부모의 자녀폭력목적, 폭행목적, 금품갈취목적으로 구분하였으나 4차 조사에서는 폭행목적, 금품갈취목적, 살인목적으로 피해유형 항목을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저소득층아동 범죄피해조사에서는 범죄행위주체에 따라 간접피해를 보다 세분화하였다. 행위주체를 부모, 또래, 모르는 사람으로 나누고 범죄피해는 폭행, 금품갈취, 절도, 또래(괴롭힘), 언어폭력으로 구분하였다.

〈표 2-10〉 국내 아동청소년범죄피해조사 피해유형 비교

	JVK (2014)	CLIFCVS (2011)	KCYPs (2016)	MAPS (2011)	KYGS (2013)	SRCY (2015)	KYMUHES (2016)
일반 범죄	폭력범죄 - 금품갈취 - 폭행 - 협박 재산범죄 - 절도 - 사기 - 소매치기 성범죄 - 강간(미수) - 강제추행 - 성희롱	폭력범죄 - 금품갈취 - 협박 재산범죄 - 절도			성희롱 성관계 요구	폭행 성희롱 강제추행 아르바이트 폭력·착취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스토킹
또래 (학교) 폭력	폭행(폭력서클) 폭행(데이트폭력) 괴롭힘(조롱) 집단따돌림	폭행 협박 금품갈취	폭행 집단따돌림 협박 금품갈취 괴롭힘(조롱) 성희롱(성폭행) 언어폭력	폭행 집단따돌림 협박 괴롭힘(조롱) 언어폭력	폭행 집단따돌림 협박 금품갈취 괴롭힘(조롱) 성희롱 거짓소문	폭행 집단따돌림 협박 금품갈취 성희롱(추행) 괴롭힘 언어폭력	폭행 따돌림 협박 금품갈취 괴롭힘(조롱) 언어폭력
부모 학대· 방임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신체학대 정서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언어폭력 협박 성희롱(농림)	집단따돌림 스토킹 성폭력

	JVK (2014)	CLIFCVS (2011)	KCYPS (2016)	MAPS (2011)	KYGS (2013)	SRCY (2015)	KYMUHES (2016)
	성폭력 개인정보유포 집단따돌림					개인정보유포 집단따돌림	
간접 피해	폭행목격 금품갈취목격 살인목격	폭행목격(부 모, 또래, 모르 는 사람) 금품갈취목격 (또래, 모르는 사람) 절도목격 또래괴롭힘 (왕따) 목격 언어폭력목격 (부모)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항목은 크게 범죄피해 관련 정보, 범죄사건 관련 정보, 범죄피해취약요인들, 그리고 범죄피해 위험성 인식 등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를 주된 조사목적으로 하고 있는 행정원의 연구들이 가장 광범위한 피해 관련 항목들을 수집하였고 나머지 연구들은 피해 취약성 관련 요인들에 대해 주로 조사하였다.

범죄피해 관련 정보에는 피해율 등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유무, 피해횟수 등의 항목과 신체적 피해, 금전적 피해, 정서적·관계적 피해 등 피해정도, 그리고 피해신고 등 범죄피해를 당한 후 취한 조치 유무와 유형 등이 포함된다.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구별하여 추후 사건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대부분의 피해조사에서 피해유무와 피해횟수는 기본적인 조사항목이었다. 반면에 피해정도와 피해신고 등 구체적인 피해 관련 정보는 행정원의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에서만 수집되었다. 범죄사건 관련 정보는 발생한 범죄의 시간적, 공간적, 상황적 특성에 관한 것이다. 통상 범죄피해를 당한 응답자들만을 상대로 사건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집된다. 여기에는 피해 발생시간, 발생장소, 범행시 흥기사용 여부, 범죄자의 성별·나이·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공범유무와 범죄자 수 등이 포함된다. 범죄사건 관련 구체적인 항목들은 행정원의 두 피해조사에서만 비교적 상세히 다루어졌고 다른 조사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 학교요인, 가족요인, 친구요인, 지역사회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요인에는 주로 폭력범죄 피해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 있는 체격, 몸무게 등 신체적 특성이 포함되고 자아통제력, 우울감, 자존감 등 심리적 자원이 포함된다. 또한 범죄피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범죄 기회적 요인들과 관련된 야간 외출빈도, 고가품 소지유무, 인터넷 사용 등 생활양식 특성과 비행·범죄 가담 유무 및 정도 등도 개인적 요인에 포함된다. 가족요인에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및 사회적 지지를 반영하는 부모애착,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정도와 자녀관리·감독의 정도 등의 범죄피해 보호요인이 포함된다. 아울러 범죄피해 위험요인으로서 부모의 음주 및 폭력성 정도와 부부싸움 등 가족 간 갈등과 불화 정도가 포함된다. 친구관련 요인에는 친구와의 정서적 유대 및 사회적 지지 등 친구애착과 주변에 비행을 저지르는 친구의 유무 및 빈도 등이 포함된다. 학교관련 요인으로는 범죄피해 보호요인으로서 학교생활 몰입정도를 나타내는 학업성취도, 교사와의 정서적 유대 및 사회적 지지를 반영하는 교사지지 등이 있다. 또한 범죄피해 위험요인으로서 학교 내와 학교 주변의 범죄발생 위험정도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학교가 얼마나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유무, 범죄피해 신고 및 상담을 위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교칙위반에 대한 엄정한 적용 등이 해당된다. 지역사회 요인으로서 동네의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 정도, 이웃들 간의 유대감 및 집합적 효능성, 동네의 범죄위험 정도, 경찰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경찰신뢰 정도 등이 포함된다.

아동·청소년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중 가장 많이 조사된 항목은 개인적 요인으로서 심리적 특성 및 비행·범죄 가담, 가족 요인으로서 부모애착이었다. 그 다음으로 개인 요인 중 생활양식, 학교 요인으로서 학업성취도, 교사와의 애착, 가족 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 그리고 친구 요인으로서 친구와의 애착 등이 다수의 연구에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학교 내와 주변의 범죄위험 정도, 학교의 범죄대응 노력, 부모의 음주·폭력성, 가족 간의 갈등·불화, 동네 범죄위험 정도, 경찰에 대한 인식은 소수의 연구에서만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범죄인식 관련 조사항목은 범죄발생 위험에 대한 감정적, 인지적, 행위적

반응을 측정한다. 여기에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예방을 위한 방어적·회피적 행위가 포함된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청소년대상 범죄피해조사와 저소득층아동 범죄피해조사에서, 예방적 행위는 청소년대상 범죄피해조사에서만 조사되었다.

〈표 2-11〉 국내 아동청소년범죄피해조사 조사항목 구성

구분	세부항목	내용	JVK (2014)	CLIFCVS (2011)	KCYPS (2016)	MAPS (2011)	KYGS (2013)	SRCY (2015)	KYMU HES (2016)
범죄 피해 정보	피해유무	범죄피해 발생유무	○	○	○	○	○	○	○
	피해횟수	범죄유형별 피해횟수	○	○	○	○	○	○	
	신체피해	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정도	○	○					
	금전피해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정도	○						
	정서·관계피 해	우울, 두려움, 부적응 등 피해정도		○					
	피해신고	경찰·지인 피해신고유무, 미신고 이유	○	○				○	○
범죄 사건 정보	발생시간	주중/주말, 시간대 등	○	○					
	발생장소	구체적 범죄피해 발생장소	○	○					○
	흥기소지	칼, 총기 등 사용여부	○	○					
	범죄자특성	범죄자 성별,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	○					○
	범죄자 수	공범 유무 및 범죄자 수	○	○					
개인 특성	신체특성	신체, 몸무게 등 방어력 관련 특성	○		○	○	○		
	심적특성	자아통제, 우울감, 자존감 등	○	○	○	○	○		
	생활양식	야간외출, 고가품 소지, 인터넷 사용 등	○	○	○		○		○
	비행·범죄	비행, 범죄행위 유무, 빈도	○	○	○	○	○		○
학교 특성	학교성적	학업성취도		○	○	○	○	○	
	교사지지	교사와의 정서적 유대, 사회적 지지		○	○	○		○	○
	범죄위험	학교내, 주변 범죄위험 정도	○						
	범죄대응	학교폭력예방, 교사·학생 관계, 교직엄격성	○						○
가족 특성	부모애착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사회적 지지		○	○	○	○	○	○
	부모양육태도	부모관심, 자녀관리·감독		○	○	○	○	○	

구분	세부항목	내용	JVK (2014)	CLIFCVS (2011)	KCYPS (2016)	MAPS (2011)	KYGS (2013)	SRCY (2015)	KYMU HES (2016)
	부모음주· 폭력성	음주정도, 폭력성		○			○		
	가족갈등	가족 간 갈등·불화		○				○	
친구 특성	친구애착	친구와의 정서적 유대, 사회적 지지		○	○	○	○		○
	비행친구	비행·교착위반 친한 친구 유무, 친구 수	○		○	○	○		
지역 사회 특성	지역무질서	동네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	○			○		
	지역유대	이웃 간 유대감, 집합적 효능성		○	○	○	○		
	범죄위험	동네 범죄위험 정도	○					○	
	경찰인식	경찰신뢰·만족도, 경찰활동인식	○						
범죄 인식	범죄두려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					
	예방행위	범죄예방 위한 방어적, 회피적 행위	○						

2. 외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가. 현황 분석

대표적인 외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로 미국에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추가조사 성격의 ‘학교폭력 보충조사’와 전국 단위 아동 폭력피해 실태조사인 ‘전국 아동폭력피해조사’가 있으며, 영국에는 전국범죄피해조사인 ‘영국범죄피해조사’ 내에 10세~15세 대상 확대조사가 있다.

가) 미국 학교범죄 보충조사(School Crime Supplement: 이하 SCS)

미국의 학교범죄 보충조사는 미국의 전국범죄피해조사(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이하 NCVS)의 추가조사 형태로서 학교 내와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폭력피해를 조사한다. NCVS 자료수집 주무부서인 미국 통계국(U.S. Census Bureau)이 국립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와 사법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SCS의 주된 목적은 정책결정자, 연구자, 그리고 실무자들이 학교 내 범죄에 관한 정책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SCS조사는 1989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현재 까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다.¹⁰⁾

NCVS는 패널조사로서 패널로 선정된 가구의 구성원을 상대로 6개월마다 총 7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표본가구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 층화집락표집의 방법으로 선정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대도시 지역, 카운티, 인접 카운티집단 등의 지리적 단위로 구성된 주요표집단위(primary sampling units: 이하 PSU) 중에서 표본을 추출한다. 원칙적으로 최소 인구 7,500명 이상의 PSU만 표집대상이며 10년에 한 번씩 표집을 실시한다. 2010년도 표집에서 총 542개의 PSU가 표집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표본PSU 내에서 단위가구와 집단거주지(기숙사, 하숙집, 집단종교숙소 등) 표본을 추출한다. 미국의 공식주소지목록인 원주소지파일(Master Address File)이 표집틀이며 계통표집방법을 활용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다. 목표 표본크기는 240,000가구이다.¹¹⁾

SCS 조사는 NCVS 패널로 선정된 모든 가구들을 대상으로 1월부터 6월 사이에 6개월 동안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조사대상 가구의 가족구성원 중 연령이 12세에서 18세 사이인 자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와 자퇴, 퇴학, 정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더라도 조사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학교에 등록된 적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홈스쿨 중인 아동과 청소년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989년과 1995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최고연령을 19세로 하였으나 1999년 조사부터 18세로 하향조정하였다. 2015년 조사에서는 총 5,500명 학생이 SCS 조사에 참여하였다.¹²⁾

조사방법의 경우 비용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전화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만 패널로 선정된 후 처음 실시되는 조사인 경우, 대상가구에 전화가 없거나 또는 전화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전화조사는 CATI, 면접조사는 CAPI로 진행되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다. SCS 추가조사는 NCVS 본조사가 완료된 가구에 한해서만 진행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National Victimization Survey 2016 Technical Documentation, 2017, pp.15-18(<https://www.bjs.gov/content/pub/pdf/ncvstd16.pdf>, 최종검색: 2018. 6. 25)

11) *ibid.*, pp.15-18.

12) Musu-Gillette, L., et al.,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16, NCES, 2017, p.216(<https://nces.ed.gov/pubs2017/2017064.pdf>, 최종검색: 2018. 8. 16).

12세~18세인 자를 대신해서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대리조사가 허용된다.¹³⁾ 예를 들어, 자녀가 조사 받는 것에 대해 부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조사대상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또는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인해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¹⁴⁾

조사항목은 총 8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있다. 스크린 질문, 환경조사 질문, 또래괴롭힘 관련 질문, 회피적 행동 관련 질문, 두려움 관련 질문, 무기 관련 질문, 폭력집단 관련 질문, 개인적 특성에 대한 질문 등이다. 환경조사 질문에는 학교유형, 학년, 통학방법, 학내 과외활동, 학교안전시설, 학교규범, 학교에 대한 애착, 학교주변유해환경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회피적 행동 관련 질문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며 학생들이 학교나 학교 내 특정 장소를 회피하거나 학내 과외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지에 관해 질문한다. 두려움 질문은 다른 학생들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 정도, 무기 질문은 자기방어 차원에서 학교에 무기(예를 들어, 총)를 가져오는지 여부, 폭력집단 질문은 학교 내 폭력집단이 존재하는지 여부, 개인적 특성은 학교출석, 학교성적, 대학진학 계획 등을 질문한다.

또래괴롭힘 관련 질문에는 피해유무와 더불어 피해빈도, 발생장도, 대응방식 등이 조사항목에 포함된다. 아울러 또래괴롭힘이 학업, 친구관계, 가족관계, 자아인식, 신체적 건강에 미친 영향과 또래괴롭힘의 원인으로서 인종, 종교, 민족, 장애, 성별, 성적지향성, 외모 등에 관해 질문한다.¹⁵⁾

학교폭력 피해는 또래 괴롭힘(bullying)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의 질문들로 측정한다. 2013년 조사까지는 또래 괴롭힘을 응답학생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학교 내에서 경험한 괴로움을 간략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정의하였다. 구체적인 또래 괴롭힘 피해 유형에는 놀림, 소문내기, 위협, 신체적 접촉, 강요, 따돌림, 재물파손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다가 2014년 미국 교육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이하 CDCP)가 또래 괴롭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를 발표하였

13) ICPSR,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School Crime Supplement, 2015, Codebook (ICPSR 36354), p.8(<https://www.icpsr.umich.edu/icpsrweb/NACJD/studies/36354#>, 최종검색: 2018. 8. 17).

14) Musu-Gillette, L., et al., op.cit., 2017, p.216.

15) SCS 설문지(양식 SCS-1, 12-18세용)의 내용을 참조(설문지 출처: https://www.bjs.gov/content/pub/pdf/scs13_q.pdf, 최종검색: 2018. 8. 5)

다. 새로운 또래 괴롭힘의 정의에는 괴롭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최소한 반복될 것으로 피해자가 염려할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행위자와 피해자 간에 힘의 불균형 상태가 있을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였다.¹⁶⁾ 국립교육통계센터는 SCSS가 이러한 정의에 부합되도록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두 가지 유형의 질문항목을 개발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기존의 또래 괴롭힘 질문에 또래 괴롭힘의 반복성과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힘의 불균형에 관한 2개의 질문을 추가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반복성과 힘의 불균형 요소를 포함한 또래 괴롭힘의 새로운 정의를 먼저 제시하고 난 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언어적, 신체적, 사회적 차원의 또래 괴롭힘을 경험했는지 질문하였다(〈표2-12〉).

〈표 2-12〉 2015년 SCSS 또래괴롭힘 질문항목

	유형1	유형2
기본 질문	<p>지금부터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당신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괴롭게 만들었던 일들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일들을 또래 괴롭힘을 당했다고 표현합니다. 이번 학년도에 어떤 학생으로부터 또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나요? 다시 말해서 다른 학생이....</p> <p>a. 당신을 놀리거나, 욕설을 하거나 또는 모욕을 해서 마음을 상하게 했나요?</p> <p>b. 당신에 관해 소문을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하게 만들려고 시도한 적이 있나요?</p> <p>c. 위해를 가하겠다고 당신을 협박한 적이 있나요?</p> <p>d. 당신을 세계 밀치거나,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침을 뱉은 적이 있나요?</p> <p>e.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만들려고 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돈이나 물건 등을 달라고 하는 것)</p> <p>f. 어떤 활동에서 일부로 당신을 따돌린 적이 있나요?</p> <p>g. 고의로 당신의 물건을 망가뜨린 적이 있나요?</p>	<p>지금부터 학교에서 경험한 또래 괴롭힘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또래 괴롭힘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학생이 다른 학생을 놀리거나, 위협하거나, 소문을 퍼뜨리거나, 때리거나, 세계 밀치거나, 다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체력이나 힘을 가진 학생들끼리 다투거나 싸우거나 또는 친근하게 서로 놀리는 것은 또래 괴롭힘이 아닙니다. 괴롭히는 학생은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에 비해 보통 신체적으로 더 힘이 세거나, 더 많은 친구와 돈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떤 다른 힘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통상 또래 괴롭힘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또래 괴롭힘의 의미가 이와 같을 때 당신은 이번 학년도에 다른 학생으로부터 학교에서 또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나요?</p>

16) Lessne, D., & Cidade, M., Split-Half Administration of the 2015 School Crime Supplement to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Methodology Report(NCES 2017-004), U.S. Department of Education,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17, pp.4-5(<http://nces.ed.gov/pubsearch>, 최종검색: 2018. 9. 2).

	유형1	유형2
추가 질문	이번 학년도 당신이 당한 또래 괴롭힘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또는 반복해서 발생할지 모른다고 염려했나요?	당신이 당한 또래 괴롭힘이 언어적이었나요? 다시 말해 누군가 당신을 놀리거나, 당신에게 욕설을 하거나 또는 당신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나요?
	이번 학년도 당신이 당한 또래 괴롭힘이 당신보다 힘이 세거나 체력이 강한 누군가에 의한 것인가? 당신보다 몸집이 크거나 당신보다 인기가 있거나 더 많은 돈을 가졌거나 또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당신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당신이 당한 또래 괴롭힘이 신체적이었나요? 다시 말해 누군가 당신을 때리거나, 세계 밀치거나,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신체적으로 아프게 하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했나요?
		당신이 당한 또래 괴롭힘이 사회적이었나요? 다시 말해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줄 목적으로 당신을 무시하거나 활동에서 고의로 따돌렸나요?

출처: Lessne, D., & Cidade, M. (2017), p.8.

2015년 조사에서는 두 유형의 또래 괴롭힘 측정도구를 비교하기 위해 반분법(split-half method)을 적용한 무작위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 전에 두 유형의 설문지를 대상가구에 무작위로 배정하였고 동일 가구 내의 구성원들에게는 같은 설문지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반분법 실험연구 조사결과 추가질문 없는 유형1 설문지의 또래 괴롭힘 피해율이 20.8%로 나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2013년 조사의 21.5%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유형2 설문지를 적용한 피해율은 8.1%였고 유형1 설문지에 2개의 추가질문을 모두 고려한 피해율은 4.4%에 불과했다.¹⁷⁾

나) 미국 전국아동폭력피해조사(National Survey of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이하 NatSCEV)

미국의 전국아동폭력피해조사는 아동의 폭력피해에 대한 미국 최초의 전국 단위 피해조사로서 피해의 규모와 성격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1999년 소년사범 및 비행 예방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이하 OJJDP)이 CDCP의 지원을 받아 시작하였으며 조사는 미국 뉴햄프셔 대학교의 ‘아동 대상 범죄연구센터’(Crimes Against Children Research Center) 소속 연구진에 의해 설계되었다. 조사

17) Lessne, D., & Cidade, M. op.cit., 2017, p.17.

의 주된 목적은 아동과 청소년이 겪는 일반적 범죄, 아동학대, 폭력범죄, 성범죄로 인한 피해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¹⁸⁾

조사는 만 17세 이하의 아동이 거주하며 해당 아동이 실제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단은 전국의 0세~17세 사이 아동이다. 표집틀은 미국우편국(USPS)에서 관리하는 주소록 파일이다. 무작위로 주소지를 추출한 뒤 전화번호가 주소지에 매칭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는 ‘주소지기반 표집방법’(address based sampling: 이하 ABS)을 사용한다. 2014년 조사부터 이와 같은 단일 표집틀 대신에 여러 표집틀을 혼합하여 활용하여 단일 표집틀에 누락되어 있는 하위 집단들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해졌다. ABS 표본과 연계된 무선전화번호, 최근의 무작위전화걸기(random digit dialing: 이하 RDD)를 활용한 다른 전화조사에서 아동의 존재가 확인된 전화번호 목록, RDD방법으로 추출된 무선전화번호 목록 등을 모두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총 4,000개의 전화조사를 완료하였다.¹⁹⁾

자료수집방법은 CATI이다. 전화를 건 후 우선 성인보호자(주로 부모)를 대상으로 간단한 가구조사를 실시한 후 가구 구성원 중 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아동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선정된 아동이 10세~17세이면 아동을 직접 조사하고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의 일상생활과 경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호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다.²⁰⁾

조사에 사용하는 설문지는 뉴햄프셔대학교 연구진이 개발한 ‘청소년피해 설문지’(Juvenile Victimization Questionnaire: 이하 JVQ)이다. 범죄피해 관련 질문은 범죄피해를 당했는지 여부를 묻는 스크린 질문과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자에 대한 후속 질문으로 구성된다. 후속질문은 사건, 행위자, 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30개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되는데, 모든 후속질문을 포함하는 정식양식과 질문의 일부만 포함하는 간이양식이 있다. NatSCV는 정식양식의 JVQ를 사용한다. 범죄피해 스크린 질문에서

18) Hamby, S., Finkelhor, D., Turner, H., & Ormrod, R., Children's Exposure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Other Family Violence. U.S. Department of Justice, 2011, p.2.(<https://www.ncjrs.gov/pdffiles1/ojdp/232272.pdf>, 최종검색: 2018. 7. 25)

19) Finkelhor, D., & Turner, H.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III, 1997-2014, User Guide, 2014a, pp.1-3(<https://www.icpsr.umich.edu/icpsrweb/NACJD/studies/36523/staff#>, 최종검색: 2018. 7. 25)

20) Finkelhor, D., & Turner, H. op.cit., 2014a, pp.2-3.

다루는 피해유형은 <표 2-13>과 같다.

<표 2-13> 피해유형과 정의

분류	피해유형	정의
일반적 범죄	강도	소지하거나 착용하고 있는 어떤 것을 강제로 빼앗음
	절도	물건을 훔쳐가고 돌려주지 않음
	손괴	고의로 물건을 부수거나 망가뜨림
	흉기사용 폭행	막대기, 돌, 총, 칼, 등 흉기로 공격
	일반폭행	흉기 사용하지 않고 공격
	폭행시도	폭행을 하려고 했으나 어떤 이유로 인해 발생하지 않음
	폭행협박	해치겠다고 협박
	납치	해칠 의도가 있는 자에 의해 강제로 납치당함
	혐오폭력	피부색, 종교, 출신지, 신체적 문제 등으로 공격
아동 학대	신체적 학대	어른이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신체적 해를 가함(엉덩이 때리며 혼내는 것 제외)
	정서적 학대	어른이 욕설을 하거나 못된 말을 하거나 너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서 무섭거나 기분이 매우 나쁨
	방임	어른이 충분한 음식을 주지 않거나 아플 때 의사에게 보이지 않거나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음
	양육권 방해/가족아동탈취	부모 중 한 명이 아이가 다른 부모와 함께 있지 못하도록 데려가거나 숨김.
또래/형 제 자매 피해	집단폭행	또래 집단에 의해 폭행
	또래·형제자매 폭행	다른 또래나 형제자매에 의해 폭행
	성기폭행	‘중요부위’를 때리거나 발로 차서 아프게 함
	또래 신체적 괴롭힘	쫓아다니거나 잡아채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해서 괴롭힘
	또래 관계적 괴롭힘	아이들이 욕설을 하거나 못된 말을 하거나 네가 주변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서 무섭거나 기분이 매우 나쁨
데이트 폭력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는 데이트상대가 폭력을 행사	
성범죄	아는 성인 성폭력	아는 성인이 ‘중요부위’를 만지거나 그들의 ‘중요부위’를 만지도록 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함
	모르는 성인 성폭력	모르는 성인이 ‘중요부위’를 만지거나 그들의 ‘중요부위’를 만지도록 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함
	또래/형제자매 성행위	또래아이들, 남자·여자친구, 또는 형제자매가 성적인 행위를 함
	강제 성관계 시도	강제로 성교를 하려고 시도함
	성적노출	누군가 자신의 ‘중요부위’를 억지로 또는 갑자기 노출
	언어적 성희롱	아동 및 아동의 신체 대하여 성적인 말을 하거나 글로 표현하여 기분을 상하게 함

분류	피해유형	정의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이 원해서 18세 이상의 누군가와 성적인 행위를 함
	준강간(시도)	취하거나 마약복용 상태에 있을 때 누군가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거나 하려고 시도함
목격 /간접 피해	가정폭력 목격	부모끼리 또는 부모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맞거나 발로 차이는 것을 목격
	부모의 자녀폭행 목격	부모가 형제나 자매를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을 목격(영당이 때리면서 혼내는 것 제외)
	흥기사용폭행 목격	막대기, 돌, 총, 칼, 기타 흥기로 공격당하는 것을 목격
	일반폭행 목격	흥기 없이 공격 당하는 것을 목격
	주거침입절도피해	거주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침
	가족·친구의 살해	친구, 이웃, 가족구성원 등 가까운 사람이 살해당함
	총격/테러리즘/폭동 노출	사람들이 총격을 당하거나 폭탄이 터지거나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목격
	전쟁/인종분쟁노출	총이나 폭탄을 사용하여 실제로 싸우는 전쟁에 노출
총기 폭력	총기공격	진짜 총으로 해를 입거나 협박 당함
	총기공격목격	누군가 진짜 총으로 해를 입거나 협박 당하는 것을 목격

이 밖에 범죄피해 관련 항목으로서 사이버범죄 피해, 또래 괴롭힘에 관한 질문들이 있다. 사이버범죄피해에는 인터넷 사용 괴롭힘·유포, 휴대폰 사용 괴롭힘·유포, 성적 접근으로 포함된다. 또래 괴롭힘에는 조롱, 따돌림, 소문유포, 소지품훼손, 폭행 등이 포함된다. 범죄피해 항목 외에 배경질문(아동의 학업, 스포츠 활동, 교우관계 등), 사회적 지원(가족관계, 교우관계, 이성교제), 정신건강(소외감, 분노, 우울증 등), 부정적 경험(재해, 사고, 질병, 보호자 실직, 부모갈등 등), 지역사회 무질서, 비행, 대인관계 의존도, 부모갈등, 부모양육방법, 음주 등에 관한 질문 등이 포함된다.²¹⁾

다) 영국범죄피해조사(10~15세 확대조사)

영국범죄피해조사(British Crime Survey: 이하 BCS)는 영국 내무부(Home Office)가 실시하는 전국단위 범죄피해조사이다. 1982년 처음으로 실시된 이래 2001년까지 2년마다 실시하였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실시하고 있다. 16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만 조사를 실시하여 오다가 2009-2010년 조사부터 10~15세까지 조사대상의 범위를

21) Finkelhor, D., & Turner, H.,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III, 1997-2014: Questionnaire, 2014b, (<https://www.icpsr.umich.edu/icpsrweb/NACJD/studies/36523/staff#>, 최종검색: 2018. 7. 25)

확대하였다. 아동 및 청소년의 범죄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된 결과이다.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한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별도의 사전준비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어 아동과 청소년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이해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아동과 청소년의 설문지 인지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였다.²²⁾

BCS는 다단계층화집락표집을 활용해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총 42개인 경찰관할지역(Police Force Area) 당 최소 1,000개의 면접이 실시되도록 표본을 추출하며 인구가 적은 경찰관할지역에서는 과대표집을 한다. 인구밀도를 고려한 차등적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는데 우선 경찰관할지역을 인구밀도에 따라 고밀도, 중밀도, 저밀도 지역으로 구분한다. 고밀도 지역에서는 집락화되지 않은 주소지에서 조사대상가구 표본을 추출한다. 중밀도 지역에 대해서는 1단계에서 주표집단위(primary sampling units: 이하 PSU)인 MSOA(middle layer super output areas)를 무작위로 추출한 뒤 2단계에서 각 PSU당 32개의 주소지를 무작위로 추출한다. 저밀도 지역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MSOA를 표집하고 2단계에서 각 MSOA 내에서 PSU인 2개의 LSOA(lower layer output areas)를 표집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각 PSU에서 16개의 주소지를 무작위로 표집한다. 표집틀로는 우편번호·주소지 파일을 사용한다.

조사대상인 10~15세 아동·청소년은 BCS를 위해 표집된 가구를 활용하여 선정한다. 기본조사인 BCS가 완료된 가구들 중에서 해당 연령의 대상자가 있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확대조사를 진행한다. 이때 조사대상의 가구에 여러 명의 아동, 청소년이 거주하는 경우 무작위로 1명을 선정하여 조사한다. 조사대상의 자격을 정상적 거주자로 한정하는데 해당 주소지를 유일한 거주지로 하고 있거나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6개월 이상 해당 주소지에 거주한 경우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2009-2010년 조사에서 총 4,000명의 아동·청소년을 조사하였다.²³⁾

22) Millard, B. & Flatley, J., Experimental Statistics on Victimization of Children Aged 10 to 15: Findings from the British Crime Survey for the Year Ending December 2009, Home Office, Home Office Statistical Bulletin 2010(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16413/hosb1110.pdf, 최종검색: 2018. 8. 13)

23) BMRB, British Crime Survey 2009-10 Technical Report: TNS-BMRB Report, 2010, pp. 5-8.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16673/bcs0910tech1.pdf, 최종검색: 2018. 7. 22)

조사방법은 면접조사(CAPI)이다. 조사대상 주소지에 내무성이 사전에 편지를 보내 조사에 관해 안내를 한다. 편지에는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이유가 설명되어 있고 몇 주 내에 조사원이 전화연락을 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한다. 16세 이하 조사에서는 부모나 보호자의 사전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조사대상자에게 특정 질문에 대해서 원하면 응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아동이 조사 도중 응답을 거부하고 싶으면 사전에 받은 빨간색 카드와 녹색 카드 중 빨간색 카드를 조사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이때 조사원은 해당 설문항목을 '응답거부'로 기록하고 다음 질문으로 조사를 진행한다.²⁴⁾

조사항목은 크게 스크린 질문, 범죄피해, 경찰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반사회적 행동, 범죄예방 및 안전조치, 자기기입형 질문, 인구통계적 특성 등으로 구성된다. 스크린 질문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며 여기에는 가구 내 범죄피해는 제외되고 개인적 범죄피해만이 포함된다. 피해항목은 절도, 손괴, 폭행, 협박 등 4가지 유형으로만 구분된다. 범죄피해에 관한 상세 질문은 '간이 피해양식'(mini victim form)과 '정식 피해양식'(full victim form)으로 나누어 기록한다. 간이 피해양식은 상대적으로 사소한(relatively minor) 사건에 사용되며 피해사실과 관련된 몇 가지 추가질문이 포함된다. 상대적으로 사소한 사건이란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가해자가 피해자 학교의 학생이고, 가해자가 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을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훔친 물건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의도로 가져간 것이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정식 피해양식에는 범죄피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조사항목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사건발생일시, 피해횟수, 구체적 사건경위(개방형 응답), 사건의 주요특성(흉기사용 여부, 발생장소, 침입방법, 범행동기, 범죄자 특성 등)이 포함된다. 자기기입형 질문은 응답자가 특별히 민감하게 여길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질문이다. 인터넷 사용, 개인안전조치(보호용 칼 소지 등), 지역 내 조직폭력의 심각성, 범죄발생에 대한 의견, 학교결석, 음주·마약 복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여기에는 또래 괴롭힘 피해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는데 만약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으면 피해횟수, 반복성, 피해유형 등에 관한 추가질문이 이어진다.²⁵⁾

24) BMRB, op.cit., 2010, pp.101-102.

나. 연구방법 검토

가) 조사대상과 표집

미국과 영국의 대표적인 3가지 아동청소년범죄피해조사는 조사대상 연령대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SCS는 12~18세, NatSCEV는 0~17세, 그리고 BCS는 10~15세의 아동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하한연령은 설문내용을 이해하기에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NatSCEV의 경우 하한연령을 0세로 정한 것은 저연령 아동이 특별히 부모에 의한 학대·방임, 간접·목격피해 등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9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조사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를 대신 조사하게 된다. 전 연령대의 아동과 청소년을 조사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연령에 따른 범죄피해의 양상을 상호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저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어려움과 보호자조사가 가지는 한계 등은 약점이다. 표집방법에 있어서 SCS와 BCS는 지리적 단위, 인구밀도 등으로 층화한 다단계 층화집락표집을 활용하였고 NatSCEV는 주소지파일을 표집틀로 사용하여 단순무작위표집방법을 채택하였다.

〈표 2-14〉 외국 아동청소년범죄피해조사 표집방법 비교

	SCS(2015)	NatSCEV(2014)	BCS(2009-2010)
조사대상	12~18세 초중고 재학생 12~18세 조사시점부터 6개월 내 학교에 등록된 적이 있는 자	10~17세 아동·청소년 0~9세 아동의 보호자	BCS 완료된 가구의 10~15세 아동·청소년
모집단	12~18세 아동·청소년	17세 이하 아동·청소년	10~15세 아동·청소년
표집틀	원주소지파일(Master Address File)	미국우편국 주소지파일	우편번호·주소지파일
표집방법	다단계층화집락표집	단순무작위표집	다단계층화집락표집
표본크기	5,500	4,000	4,000

25) BMRB, op.cit., 2010, pp.96-101.

나) 자료수집

자료수집방법으로는 SCS와 NatSCEV가 전화조사를, BCS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전화조사는 조사대상지역이 광범위하고 이로 인해 조사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유리하다. 미국의 두 가지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가 전화조사를 활용한 주된 이유도 이와 같은 지리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SCS는 몇몇 특별한 상황에서 면접조사를 병행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도구는 전화조사에서는 CATI를 사용하고 면접조사의 경우 SCS는 CAPI를, BCS는 PAPI를 사용한다.

〈표 2-15〉 외국 아동청소년범죄피해조사 자료수집방법 비교

	SCS(2015)	NatSCEV(2014)	BCS(2009-2010)
조사 방법	기본: 전화조사 예외: 면접조사	전화조사	면접조사
조사 도구	기본: CATI 예외: CAPI	CATI	PAPI
특징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대리조사 실시		조사도중 응답거부가 용이하도록 색상 카드를 활용

다) 조사항목

세 가지 아동·청소년범죄피해조사는 조사의 주된 목적과 중점사항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조사항목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범죄피해유형의 경우 SCS는 미국범죄피해조사에 추가해서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항목만을 포함한다. NatSCEV는 아동과 청소년이 경험하는 범죄피해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범죄피해부터, 또래폭력, 학대·방임, 간접피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의 범죄피해유형을 아우른다. BCS는 기존에 16세 이상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범죄피해조사를 10세 이상 15세 이하까지 확대실시한 조사이다. 따라서 16세 이상 조사와의 내용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15세 이하 조사의 피해항목을 일반범죄인 폭행, 협박, 절도, 손괴로만 한정하고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또래폭력 피해항목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표 2-16〉 외국 아동청소년범죄피해조사 피해유형 비교

	SCS(2015)	NatSCEV(2014)		BCS(2009-2010)
일반범죄	-	폭력범죄 - 일반폭행 - 흉기폭행 - 폭행시도 - 폭행협박 - 강도 - 납치 - 혐오폭력 - 총기공격 재산범죄 - 절도 - 손괴	성범죄 -성폭력 -도래 등 성행위 -강제성관계시도 -성적 노출 -미성년자의제강간 -준강간(시도)	폭행 협박 절도 손괴
도래(학교, 형제)폭력	조롱 거짓소문 신체적 접촉 강요 집단따돌림 재물파손	집단폭행 도래·형제자매 폭행 성기폭행 신체적 괴롭힘 관계적 괴롭힘 데이트 폭력		폭행 협박 절도 금품절취 재물파손 조롱 집단따돌림 거짓소문
부모학대·방임	-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양육권행사방해/가족아동탈취		-
간접피해	-	가정폭력목격 부모의 자녀폭행 목격 흉기사용폭행 목격 일반폭행 목격 주거침입절도피해 가족·친구의 살해 총격/테러리즘/폭동 노출 전쟁/인종분쟁 노출 총기공격 목격		-

범죄피해정보에 있어서 피해유무, 피해횟수, 피해정도, 그리고 피해신고 등과 같은 기본적 피해정보가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범죄사건정보의 경우에는 BCS가 범행 시간, 장소, 수법, 가해자 특징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들을 조사항목에 포함시킨 반면 SCS와 NatSCEV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이 조사내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범죄피해 영향요인 관련 항목들 중 개인적 특성은 응답자의 비행·범죄행위 유무가 세 조사에 공통으로 속한 항목이다. SCS는 학교 특성 관련 항목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으며 NatSCEV는 가족, 친구, 지역사회 특성을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표 2-17〉 외국 아동청소년범죄피해조사 조사항목 구성

구분	세부항목	내용	SCS (2015)	NatSCEV (2014)	BCS (2009-2010)
범죄 피해 정보	피해유무	범죄피해 발생유무	○	○	○
	피해횟수	범죄유형별 피해횟수	○	○	○
	신체피해	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정도	○		○
	금전피해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정도			○
	정서·관계피해	우울, 두려움, 부적응 등 피해정도	○	○	
	피해신고	경찰·지인 피해신고유무, 미신고 이유	○	○	○
범죄 사건 정보	발생시간	주중/주말, 시간대 등			○
	발생장소	구체적 범죄피해 발생장소	○	○	○
	흥기소지	칼, 총기 등 사용여부			○
	범죄자특성	범죄자 성별,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	○
	범죄자 수	공범 유무 및 범죄자 수			○
개인 특성	신체특성	신체, 몸무게 등 방어력 관련 특성			
	심적특성	자아통제, 우울감, 자존감 등		○	
	생활양식	야간외출, 고가품 소지, 인터넷 사용 등			○
	비행·범죄	비행, 범죄행위 유무, 빈도	○	○	○
학교 특성	학교성적	학업성취도	○		
	교사지지	교사와의 정서적 유대, 사회적 지지	○		
	범죄위험	학교내, 주변 범죄위험 정도	○		
	범죄대응	학교폭력예방, 교사·학생 관계, 교칙엄격성	○		
가족 특성	부모애착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사회적 지지		○	
	부모양육태도	부모관심, 자녀관리·감독		○	
	부모음주·폭력성	음주정도, 폭력성		○	
	가족갈등	가족 간 갈등·불화		○	
친구 특성	친구애착	친구와의 정서적 유대, 사회적 지지	○	○	
	비행친구	비행·교칙위반 친한 친구 유무, 친구 수		○	
지역 사회 특성	지역무질서	동네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	
	지역유대	이웃 간 유대감, 집합적 효능성			
	범죄위험	동네 범죄위험 정도	○	○	○
	경찰인식	경찰신뢰·만족도, 경찰활동인식			○
범죄 인식	범죄두려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예방행위	범죄예방 위한 방어적, 회피적 행위	○		○

3. 시사점

국내외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본 조사에 있어서 다음의 몇 가지 점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조사대상의 선정 기준을 연령 또는 학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연령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의 장점은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성장발달단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범죄피해가 성인의 범죄피해와 구별되어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은 이러한 연령대에 속한 자들이 공유하는 고유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환경적 특성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모든 법률에서도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19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령을 기준으로 할 때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과 청소년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홈스쿨링을 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포함된다. 그러나 연령을 기준으로 할 때 통상 가구를 표집단위로 해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로 인한 몇 가지 조사 상의 어려움이 뒤따른다. 먼저 현실적으로 해당 연령대가 있는 가구의 표집률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또한 조사대상의 특성(예를 들어,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표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더욱이 면접조사의 경우 학교 및 학원시간을 피해 가정에서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직접조사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반해 학년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의 가장 큰 장점은 조사의 편의성이다. 기본적으로 재학 중인 학생이 모집단이기 때문에 집락표집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정방문조사에 비해 학교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에 대한 접근성도 높으며 조사과정을 관리하고 통제하기도 용이하다. 다만 학교 밖 아동·청소년이 조사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전체 아동과 청소년에게 적용하기에 어려운 단점이 있다. 종합하건데 미국의 아동·청소년 피해조사와 같이 전화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연령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피해조사처럼 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년을 기준으로 대

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조사모집단에서 배제되는 학교 밖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청소년을 조사했던 행정원의 2014년 조사처럼 별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다.

둘째, 자료수집방법에 있어서 국내외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들은 전화조사와 면접조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 가지 수집방법만을 사용하는 조사도 있고 몇 가지 방법을 상황에 맞게 혼용하는 경우도 있다. 전화조사를 사용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 CATI방식을 택하고 있다. 전화조사의 가장 큰 장점은 모집단이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을 때 저렴한 비용과 짧은 시간을 들여 효율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면접조사는 현장에서 조사과정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내용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연령대가 낮은 대상자를 상대로 조사할 때에는 설문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는 동시에 설문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면접조사의 경우 한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타인으로부터의 영향이다. 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할 때 보호자가 동석하면 조사대상 아동이 피해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피해내용에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방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응답자가 피해사실을 숨길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학교 내에서 조사를 실시할 때에도 응답자들은 함께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범죄피해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밀보장을 위한 섬세한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기기입식 면접조사를 할 때에도 한 공간에 모여 종이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하는 것보다 각 응답자가 개별적으로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또한 집단조사를 할 때 조사를 일찍 마친 응답자가 먼저 퇴실하는 것을 방지하여 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입력할 때 다른 학생들을 의식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청소년의 범죄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유형의 선정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조사에서는 피해유형을 크게 재산범죄피해와 폭력범죄피해로 구분하고 전자는 절도, 주거침입절도, 손괴, 사기 등, 후자는 폭행(상해), 협박, 성폭력 등으로 세분화한다. 이러한 피해유형은 형법 상 피해법익에

따른 구분이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연령대의 성장환경에서 비롯된 특수성으로 인해 이와 같은 보편적 범죄피해 구분만으로는 범죄피해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범죄피해 유형 외에 행위주체와 피해발생환경을 고려한 피해유형이 추가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주로 학교 내 또는 주변에서 또래에 의해 저질러지는 피해와 가정 내에서 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포함된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온라인이라는 환경에서의 활동이 활발하고 이로 인해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특히 또래에 의한 사이버폭력)가 빈번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이버폭력피해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간접피해(목적피해) 항목으로 행정원의 피해조사를 제외하고 다른 국내의 아동·청소년 피해조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성인과 달리 아동과 청소년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환경적 영향에 취약하기 때문에 폭력성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범죄피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NatSCEV의 JVQ에는 간접(목적)피해에 대한 상세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관련 조사항목의 선정 문제이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조사에는 생활양식 등 기회요인, 무질서 등 지역사회 요인, 성별·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 등이 범죄피해 영향요인으로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외에 이러한 연령대의 특수성을 반영한 요인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앞의 선행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요인들에는 주로 가족특성, 친구관계, 학교 환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으로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그리고 이들과의 애착관계 형성이 범죄피해 저항력 및 회복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학교의 물리적 차원의 범죄예방조치(예: 출입문통제, 방범카메라 등), 정책적 차원의 학교폭력 노력(예: 예방교육, 엄격한 교칙 적용 등) 등도 범죄피해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위험요인(risk factors)으로서 주변의 비행친구, 학교 내 일진, 가정폭력, 부모의 음주 등이 아동과 청소년의 범죄피해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외에 개인적 요인으로서 자기통제력 등 심리적 특성과 왜소한 체격 등 신체적 특성이 범죄피해 취약성과 관련될 수 있다.

제 3 장



조사방법

전영실 · 유진

조사방법

제1절 조사개요

1. 기존 조사와의 차이

여기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였던 청소년범죄피해조사²⁶⁾와의 주요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조사대상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청소년범죄피해와 달리 조사대상에 아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고자 하였다. 참고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4차례에 걸쳐 수행한 청소년범죄피해조사의 경우 주로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8년 조사를 제외하고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4년도 조사에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었다. 반면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외에 아동을 포함시키고, 학생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학교밖 청소년 대상 조사를 통하여 학교밖 청소년의 피해 특성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살펴 보고자 하였다.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보호관찰소 이외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²⁷⁾

청소년범죄피해조사와 더불어 아동을 대상으로도 피해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은 다

26)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청소년범죄피해조사에 대한 내용은 제2장 제2절에 소개되어 있다.

2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조사방법을 참조.

음의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아동의 피해는 청소년과 다를 수 있다.²⁸⁾ 또한 아동의 피해율이 중고생에 비해 높다는 결과도 있다. 즉, 교육부의 학교폭력실태 조사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생의 피해율이 2.8%로 중학생(0.7%), 고등학생(0.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²⁹⁾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아동을 포함하여 피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동의 경우 자기보고식 조사가 가능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앞에서 살펴 본 국내 자기보고조사의 경우도 대부분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모집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조사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학교밖 청소년과 관련되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개략적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피해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나. 연구설계

1) 피해측정

이번 조사에서는 피해회상을 돕기 위하여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측정하였다. 기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청소년범죄피해조사는 주로 폭력, 금품갈취,

28) 참고로 남자를 대상으로 10-17세까지 연령대별로 피해-가해 중첩성을 살펴 본 자료에 의하면, 10-12세까지는 피해만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13세 이상, 특히 14세부터는 피해-가해가 같이 발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uevas et al.,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and the Intersection Between Delinquency and Victimization, OJJDP Juvenile Justice Bulletin 2013.10(<https://www.ojjdp.gov/pubs/240555.pdf>, 최종검색: 2018.10.1.)

또한 12세미만/12-17세를 비교한 조사에서는 후자의 경우 전자에 비해 가족에 의한 피해 비율은 낮은 반면, 아는 사람과 낯선 사람에 의한 피해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nkelhor and Ormrod, Characteristics of Crimes against Juveniles, OJJDP Juvenile Justice Bulletin, 2000.6. p.11(<https://www.ncjrs.gov/pdffiles1/ojjdp/179034.pdf>, 최종검색: 2018.7.4.) 이러한 자료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범죄피해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9) 교육부 보도자료,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18.8.27.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5144&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503&opType=N>, 최종검색: 2018. 9.5).

절도, 괴롭힘 등 피해유형별로 질문하였다. 또한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도 단순히 강도, 절도 피해로 측정하기도 한다(Schreck et al., 2006: 327). 다만 괴롭힘 피해에 대한 연구들은 구체적인 유형을 통하여 피해를 측정하는 경우들이 있다(Bowes et al., 2013; Kulig et al., 2017).

이전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피해 회상을 돕기 위해 각 피해유형별로 구체적인 사례 제시를 통하여 피해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가 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피해 회상을 통한 정확한 보고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리고 피해회상을 위해서는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유형을 제시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조사에서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는 것이 피해보고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Vaillancourt et al., 2010; Huang and Cornell, 2015). Huang와 Cornell(2015)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처치집단(treatment group)과 통제집단으로 무작위로 구분하였으며 조사절차상 유일한 차이는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는지의 여부였다. 즉, 처치집단의 경우 4가지 특별한 괴롭힘 피해유형(발로 차거나 고의로 약한 사람 밀치기 등)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다음에 세 가지 일반적 질문(지난 달, 이번 학년에 괴롭힘 당했다, 이번 학년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혔다 등)을 하였으며,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질문들을 먼저 하고 특수한 질문들을 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특수한 질문들을 먼저 한 처치집단의 경우 괴롭힘 피해를 더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치집단의 경우 통제집단에 비해 구체적 유형별 괴롭힘과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해 괴롭힘 피해경험을 더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구체적인 질문이 조사대상자의 회상을 도울 수 있으며, 특정 유형의 괴롭힘들을 통한 조사가 단일 질문을 통한 조사에 비해 괴롭힘 발생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Huang and Cornell, 2015: 1490). 이 외에 다른 연구(Vaillancourt et al., 2010)에서도 구체적인 괴롭힘 유형을 통해 질문할 경우 피해를 보고하는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피해유형별로 가능한 구체적인 유형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각각의 유형에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여부를 측정하였다. 단 설문에서 제시하는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피해유형별로 '기타'를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 피해 및 두려움 관련 요인 조사

아동 및 청소년의 피해위험과 관련되는 기본요인에 대한 이해가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Kulig et al., 2017: 905).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피해와 관련될 수 있는 개인적 특성, 가족·친구·학교·지역사회 특성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청소년범죄피해조사와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경우 범죄피해와 관련되는 요인으로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일상활동, 지역특성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것에 비해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피해위험과 관련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요인과 피해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의 관련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3) 피해경험이 없는 대상자에 대한 가짜(Fake) 질문 활용

범죄피해조사의 경우 피해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피해내용에 대해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특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학급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조사에서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조사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정확한 응답을 꺼리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해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가 긴 시간 응답함으로써 해당 학급의 다른 친구들이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을 알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조사시 피해경험이 없는 조사대상자에 대해서 가짜(Fake) 질문을 하여 피해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설문조사 시간이 비슷하게 소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짜(Fake) 질문의 경우 본 조사와 연관되도록 하기 위해 피해유형별로 피해목적 등으로 구성하여서 조사대상자들이 가짜(Fake) 질문인지의 여부를 알기 어렵도록 하였다.

4) 조사원을 통한 학교의 객관적 특성 파악

이전 조사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학교의 객관적 특성을 파악하는 자료를 추가하였다. 앞에서 아동·청소년의 피해나 피해 두려움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학교의 객관적 특성이 피해와 두려움에 관련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Zaykowski and Gunter, 2012; Chouhy et al., 2017).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조사원에게 별도로 조사표를 배부하여 학교의 객관적 특성에 대해 파악하도록 하였다. 즉, 조사원이 해당 학교에 방문할 때 학교의 위치, 규모, 출입문 통제, 경비원 유무, 방범카메라 등에 대해 파악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5) 피해유형별 발생실태 파악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청소년범죄피해조사의 경우 폭력과 재산, 성범죄 유형별로 피해 발생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반해, 이 연구에서는 각 범죄행위의 하위 유형별로 발생실태를 파악하였다. 예를 들면, 폭력범죄의 경우 갈취, 가족외 협박, 가족외 폭행 등 세 하위유형 각각에 대해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각각 피해발생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이 경험하는 피해특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였다.

6) 조사대상자에 따른 설문구성 차이

이 연구는 초·중·고생 및 학교밖 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문을 달리 구성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피해유형 중 성폭력 등 유형을 제외하였다. 이는 어린 아동에게 성폭력이나 성적 괴롭힘 피해 질문을 할 경우 질문에 응답하는 것 자체가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였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질문을 추가하거나 기존 질문을 수정하였다. 먼저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한 질문은 학업중단 횟수 및 기간, 학업중단 사유 및 학업중단시 처리형태,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질문이었다. 또한 기존 질문을 수정한 것은 각 피해유형별 사건조사표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 현재 학교에 다니는 동안인지, 그 이전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 질문의 경우 학교에

다닌 동안이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하였다.

2. 조사개요

가.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번 조사는 자기보고식 조사가 가능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조사시기가 수능시험과 입시 등을 앞두고 있어 조사협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방법은 전국범죄피해조사와 같은 가구방문조사와 학교방문조사의 장단점을 고려해본 결과 학교방문조사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본 조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내용에 가정내 학대피해가 포함되므로 가구방문 조사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독립적인 조사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피해사실에 대해 솔직하게 응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조사대상자가 본인의 피해사실을 부모 등 가족 구성원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 보고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외에도 학생인 조사대상자가 학교나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는 경우 조사원과 접촉할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방문 조사가 아닌 학교방문조사로 진행하였다.

학교방문조사로 진행할 경우, 조사시기에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은 조사에서 제외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는 학교조사 외에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학교밖 청소년은 현재 모집단의 규모와 특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므로 확률표집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동쉼터와 단기쉼터, 보호관찰소 등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청소년을 접촉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한 거점표집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학교조사와 동일한 11세부터 19세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조사가 진행된 기관에서 11세 대상자를 접할 수 없었으며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연령은 12세부터 19세였다.

조사설계 단계에서 목표로 한 표본규모는 학교조사의 경우 10,000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것은 학교조사 10,338명이며, 학교밖 청소년은 440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기간과 조사체계

학교조사는 2017년 6월 19일부터 7월 24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학교밖 청소년 조사는 2017년 8월 2일부터 9월 3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학교조사의 경우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학교밖 청소년 조사는 그 후에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주)칸타퍼블릭에서 실사를 수행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전체 조사계획 및 조사방법과 전략을 수립하고 조사표를 개발하였으며, 조사대상 학교 접촉 및 조사홍보를 지원하며 실사 진행을 지도하였다. (주)칸타퍼블릭은 표본추출, 온라인 조사 시스템 구축, 조사원 채용 및 관리, 실사관리와 자료처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조사가 완료된 후 형사정책연구원이 조사자료를 최종 검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제2절 조사표의 개발과 구성

1. 조사표의 타당성 검토

가. 인지면접

본 조사는 국내외의 범죄피해조사 및 아동·청소년 피해조사를 비롯하여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조사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조사표 개발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조사표를 확정하였다. 또한 조사표를 확정하기 전에 초안을 작성한 후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인지면접과 예비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인지적 발달 수준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성인 대상 범죄피해조사에서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 문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조사표 구성 과정에서 이 점에 특히 유념하여 아동·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실제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들이 문항을 이해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형성과정을 살펴보는 인지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인지면접조사는 본조사 대상자와 동일한 연령대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총 34명을 섭외하였다. 사전에 조사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발송하여 대상자가 기입한 설문응답을 미리 취합한 후, 면접 당일 설문응답에 대한 인지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은 서울 거주자의 경우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은 학교급별로 묶어 집단면접을 하였고 고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성별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면접을 진행하였다. 서울 외 광역시에 거주하는 참여자의 경우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참여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개별면접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지면접에서 면접대상자에 따라 용어에 대한 이해방식이 크게 다른 경우, 해당 용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는 “‘요즘 자주 어울리는 친구’로 예전 학교친구, 동네친구 및 선후배도 포함”될 수 있음을 조사표에 명시하였다. ‘나는 내 또래들보다 신체적으로 더 강하다’라는 문항 역시 응답자에 따라 ‘체육을 잘 하는 것’, ‘힘이 센 것’, ‘병이 없는 것’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문항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나는 내 또래 아이들보다 힘이 세다’로 수정하였다. 지난 1년 간 ‘술 마시기’ 경험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 대하여 미성년자에게 소량의 음주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제사, 성찬식에서 마시는 것은 제외’한다는 조건을 추가하였다. 또한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징계(근신, 정학, 퇴학 등)’는 학교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를 반영하여 ‘징계(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등)’로 수정하였다.

〈표 3-1〉 인지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그룹	연번	이름	성별	나이	학년	거주지	면접일자
Group 1 (초등학교 4~6학년)	1	이OO	남	11	초4	서울	2018.6.6.
	2	정OO	여	11	초4	서울	
	3	박OO	남	12	초5	서울	
	4	김OO	여	12	초5	서울	
	5	이OO	여	12	초5	서울	
	6	김OO	남	13	초6	서울	
	7	주OO	여	13	초6	서울	
Group 2 (중학교 1~3학년)	8	임OO	남	14	중1	서울	2018.6.6.
	9	윤OO	여	14	중1	서울	
	10	채OO	여	14	중1	서울	
	11	김OO	남	15	중2	서울	
	12	윤OO	여	15	중2	서울	
	13	김OO	남	16	중3	서울	
	14	노OO	여	16	중3	서울	
Group 3 (고등학교1~2학 년남)	15	김OO	남	17	고1	서울	2018.6.6.
	16	이OO	남	17	고1	서울	
	17	김OO	남	18	고2	서울	
	18	윤OO	남	18	고2	서울	
Group 4 (고등학교1~2학 년 여)	19	이OO	여	17	고1	서울	2018.6.6.
	20	김OO	여	17	고1	서울	
	21	조OO	여	18	고2	서울	
	22	권OO	여	18	고2	서울	
개별인터뷰	23	조OO	여	12	초5	광주	2018.6.6. ~ 6.7.
	24	안OO	여	11	초4	광주	
	25	이OO	남	12	초5	광주	
	26	조OO	남	13	초6	경북	
	27	김OO	여	13	초6	대구	
	28	김OO	남	12	초5	대구	
	29	김OO	남	14	중1	대전	
	30	천OO	여	16	중3	대전	
	31	정OO	남	14	중1	대전	
	32	김OO	남	17	고1	부산	
	33	문OO	여	18	고2	부산	
	34	정OO	여	17	고1	부산	

나. 예비조사

본 조사에 앞서 초·중·고등학교 각 학교급별로 2개 학년(초등학교 4, 5학년,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각 1학급을 대상으로 6월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조사 대상 학교에 방문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학교방문 조사의 특성 상 조사에 참여할 학교 섭외와 장소 및 시간 조정이 필수적이며, 특히 대부분 학교에서 방과 후가 아닌 수업 시간 중 조사를 진행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업일정에 맞춰 정해진 시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각 학교에서 온라인 조사를 위한 컴퓨터실 상황과 집단면접 시 조사진행의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예비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응답 소요시간은 대체로 기초조사표는 20분~35분, 사건조사표는 5분~10분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의 수업시간인 40분에서 50분 내에 조사를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학교에서 한 학급을 대상으로 집단조사를 진행할 경우 학생들의 주의력이 흐트러지며 분위기가 산만해지는 순간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본 조사에서는 조사원이 모든 학생들이 응답을 마칠 때까지 조사에 집중하도록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 조사표 구성 체계

이번 조사에서 범죄피해 조사문항은 기존 전국범죄피해조사와 마찬가지로 지난 한 해 동안 겪은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선별질문 문항을 포함한 기초조사표와 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한해 답하도록 한 사건조사표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기초조사표는 피해경험에 대한 선별질문 문항 외에 ① 사회인구학적 특성, 자기통제력, 일상활동과 관련된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② 가족특성, ③ 친구특성, ④ 학교특성, ⑤ 동네 및 등학교길 특성, ⑥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⑦ 범죄예방 조치 관련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건조사표는 기초조사표에서 각 유형의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해 피해유형별로 가장 최근의 피해사건에 대해 답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2번 이상 입은 경우 가장 심각한 일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기도

한다(Fisher et al., 2015: 1401).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피해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가장 심각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기보다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피해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피해가 여러 번 있었을 경우 가장 최근의 일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집단조사 시 피해경험 유무에 따라 총 응답시간에 차이가 남으로써 피해경험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 때문에 피해를 보고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피해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는 주변에서 피해경험에 대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묻는 가짜(fake) 문항을 사건조사표에 추가로 제시하여 피해 유무와 무관하게 총 응답시간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하였다.

3. 조사표의 구성 및 주요 조사항목

가. 기초조사표

1) 피해

기존 전국범죄피해조사가 일대 일 대면조사를 통해 조사원이 기입하도록 한 것과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학교방문 집단조사 형식의 자기보고식 조사이므로 기초조사표의 범죄피해 선별 문항의 구성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전국 범죄피해조사의 경우, 기초조사표에서 응답자의 회상을 돕기 위한 회상자극 방식으로 구성된 범죄피해 선별 문항을 통해 피해 경험 유무와 피해 횟수를 파악하되 피해경험 수는 조사원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범죄피해 유형과 무관하게 피해 횟수에 따라 사건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한 후 분석 단계에서 폭행 여부, 신체공격 및 피해 여부, 탈취 피해 여부 등을 조합하는 판별조건식을 통해 범죄피해 유형을 분류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응답 내용을 점검하여 사건 수를 결정하는 조사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각각의 범죄피해 선별 문항이 배타적인 유형을 지시하도록 하여 보다 간명하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해유형은 아동·청소년이 노출되기 쉬운 범죄피해에 대한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기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청소년범죄피해조사에서

는 재산범죄(절도, 사기, 소매치기)와 폭력범죄(금품갈취, 폭행, 협박), 성범죄(강간, 강간미수,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 성희롱)를 기본으로 하고 추가로 기타 피해(학대, 따돌림, 데이트 폭력 등, 폭력목격)와 사이버폭력피해(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 훼손, 스토킹,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를 조사하였다(홍영오·연성진, 2014: 36-37).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청소년범죄피해조사와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피해에 대해 전통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① 절도, ② 사기, ③ 금품갈취, ④ 폭행(가족 외), ⑤ 협박(가족외),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경험할 수 있는 피해인 ⑥ 가정내 신체적 학대, ⑦ 괴롭힘 피해에 대해 조사하였다.³⁰⁾ 한편 아동을 제외한 청소년에게는 ⑧ 성적 괴롭힘에 대한 피해 조사 문항을 추가하였는데, 여기에는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에 해당하는 성범죄와 기타 성희롱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조사는 절도, 사기, 갈취의 경우 기존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유형분류를 따랐으나 폭행·협박피해는 가족의 폭행·협박과 가정내 학대피해를 구분하여 조사표를 구성하였다. 아동·청소년은 가족관계 밖에서 발생하는 폭행피해뿐만 아니라 가정내 폭행에 노출되는 경우가 성인에 비해 많고, 특히 가족구성원에 의한 폭행과 가족의 폭행의 중복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본 조사에서는 기초조사표를 통해 피해유무를 파악한 후 사건조사표에서 피해가 보고된 각 유형 당 가장 최근에 겪은 피해 한 건에 대해서만 응답하도록 조사표를 구성했기 때문에, 가해자 유형에 따른 폭행 피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선별문항으로 질문할 경우 가족의 폭행과 가정내 신체적 학대의 중복피해를 포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폭행·협박은 가해자가 가족구성원인지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피해유형으로 나누어 문항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또래 괴롭힘은 언어적 괴롭힘과 사회적 따돌림 외에도 폭행과 갈취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조사원의 추가질문과 현장검토를 통해 여러 유형의 피해가 한 사건에서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본 조사에서는 괴롭힘 유형에서 신체적 폭력요소를 제외함으로써 폭행, 갈취, 괴롭힘을 배타적 범주로 분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적 괴롭힘 문항은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법률상

30) 이 연구에서 폭력범죄피해는 금품갈취와 가족의 폭행, 협박 등을 통하여 살펴 보았다. 참고로 Popp 등의 연구에서도 폭행, 협박, 돈이나 물건을 뺏기 위해 신체적 힘이나 강압적 방법 사용 등 세 가지 형태로 청소년의 폭력피해를 측정하였다(Popp et al., 2011: 2421).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유형과 언어를 통한 성적 괴롭힘 등 성희롱을 모두 포함하되, 각각의 유형에 대한 피해유무를 답하도록 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후 분석 단계에서는 이를 성폭력과 성적 괴롭힘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성폭력과 성적 괴롭힘은 초등학생에게 질문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중·고등학생용 조사표에만 포함시켰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피해조사에서 피해기간은 연구에 따라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30일 동안(Zaykowski and Gunter, 2012), 혹은 지난 두 달 동안(Wang, 2009; Chester et al., 2015), 지난 6개월 동안(Bouchard et al., 2012) 등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피해기간은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이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의 청소년범죄피해조사나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도 지난 1년간의 피해경험을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조사와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도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의 피해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의 생애 피해경험도 조사하였다.

기초조사표에서는 각 유형의 범죄피해에 대해서 회상촉진을 위한 자극문항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물품을 제시하였는데, 응답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각의 자극문항에 대해 지난 1년간의 피해경험 유무를 답하도록 하였다. ‘있다’는 응답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지난 1년간 피해 경험이 총 몇 회였는지 질문하였다. 또한, 생애피해여부 및 피해횟수를 측정하기 위해 조사기간인 2017년 6월 이전에 피해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있었다면 모두 몇 번 있었는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3-2〉 피해유형 분류 및 회상자극 문항

대 분류	중 분류	소 분류	문항
일반 범죄 피해	재산 범죄	절도	<p>여러분의 돈이나 물건을 도둑맞은 적이 지난 1년간(2017.7.~2018.6.) 한 번이라도 있나요? 다음에서 해당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 여러분이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나, 다른 사람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겁을 주어서 빼앗아간 것은 제외하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수표, 상품권 •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 • 학용품, 책, 공책, 가방 등 • 휴대전화, 노트북, 게임기 등

대 분류	중 분류	소 분류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 신발, 시계 등 • 화장품, 악세사리 등 • 키보드, 롤러블레이드, 자전거, 오토바이 혹은 그 부속품 • 그 외 다른 물건 	
		사기 (속임)	<p>물건을 도둑맞는 것 외에도, 속아서 돈이나 물건을 잃거나 손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속아서 돈이나 물건을 잃거나 손해 본 적이 지난 1년간(2017.7.~2018.6.) 한 번이라도 있나요? 다음에서 해당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겁을 주어서 빼앗아간 것은 제외하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이 내 돈이나 물건을 빌려가서 일부러 돌려주지 않음 • 인터넷 중고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였으나 구매한 물건을 배송 받지 못함 • 인터넷 중고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으나 구매한 것과 다르거나 가짜 상품을 배송 받음 • 인터넷 중고매장에서 내 물건을 사기로 한 사람이 물건만 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음 •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공짜, 할인, 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하게 함 •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하게 속여 판매함 • 그 외 속임(사기)으로 인한 돈이나 물건 피해 	
	폭력 범죄	갈취		<p>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맞아서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적이 지난 1년간(2017.7.~2018.6.) 한 번이라도 있나요? 다음에서 해당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수표, 상품권 •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 • 학용품, 책, 공책, 가방 등 • 휴대전화, 노트북, 게임기 등 • 옷, 신발, 시계 등 • 화장품, 악세사리 등 • 게임 아이템, 사이버머니 등 • 키보드, 롤러블레이드, 자전거, 오토바이 혹은 그 부속품 • 그 외 다른 물건
			가족외 폭행	<p>여러분은 친구, 선후배, 주변의 어른, 모르는 사람 등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맞는 등 폭행을 당한 적이 지난 1년간(2017.7.~2018.6.) 한 번이라도 있나요? 다음에서 해당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리거나 발로 참 •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거칠게 밀거나 목을 조름 • 여러 사람이 무리지어 나에게 달려들거나 공격함 •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다른 도구로 때림 • 그 외 다른 방식으로 맞음

대 분류	중 분류	소 분류	문항
가정내 학대· 괴롭힘 피해	가족외 협박		여러분은 친구, 선후배, 주변의 어른, 모르는 사람 등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맞지는 않았지만 때리겠다고 겁을 주거나 협박당한 적이 지난 1년간(2017.7.~2018.6.) 한 번이라도 있나요? 다음에서 해당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때리겠다고 등 말로 겁을 주거나 협박함 • 막대기나 다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겁을 주거나 협박함 • SNS나 온라인에서 나를 실제로 찾아와 때리겠다고 등의 겁을 주거나 협박함 • 뒤쫓아오거나 주위를 에워싸서 겁을 주거나 협박함 • 그 외 다른 방식으로 때리겠다고 겁을 주거나 협박함
	성폭력범죄		<p>강제적이거나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은 가족, 친구, 애인, 학교 선후배, 주변의 어른,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이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적이 지난 1년간(2017.7.~2018.6.) 한 번이라도 있나요? 다음에서 해당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원치 않거나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성적인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갖게 하는 사진을 찍음 • 강간을 하거나 강간을 시도함 •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내 몸을 만짐 •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상대방의 몸을 만지도록 강요함
	가정내 학대		<p>여러분은 부모님이나 같이 살고 있는 다른 보호자(할아버지, 할머니 등)에게 맞는 등 폭행을 당한 적이 지난 1년간(2017.7.~2018.6.) 한 번이라도 있나요? 다음에서 해당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 또는 나와 같이 사는 어른이 나를 때리거나 발로 차 • 부모님 또는 나와 같이 사는 어른이 나를 거칠게 밀거나 목을 조름 • 부모님 또는 나와 같이 사는 어른이 그릇, 의자 등을 나에게 던짐 • 그 외 다른 방식으로 맞음
		또래 괴롭힘	<p>다른 사람이 위협이나 실제로 때리는 것 외에도 다른 식으로 괴롭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협이나 신체적인 폭력이 아닌 다른 식으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지난 1년간(2017.7.~2018.6.) 한 번이라도 있나요? 다음에서 해당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심한 욕을 하거나 내 약점이나 외모(키, 몸무게, 얼굴 생김새 등)를 가지고 놀림 •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거나 소문을 냄 • 일부 아이들이 일부러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따돌림 • 다른 아이들이 채팅방에 강제로 초대해서 괴롭힘 • 다른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SNS(메세지, 카톡, 페이스북 등)에 나에게 대한 안 좋은 이야기나 사진을 올림 • 다른 아이들이 나를 일부러 발을 걸어 넘어뜨림 • 다른 아이들이 강제로 숙제를 대신 시키거나, 가방이나 짐을 들게 함 • 다른 아이들이 나를 화장실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고 나오지

대 분류	중 분류	소 분류	문항
			못하게 함 • 그 외 다른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거나 따돌림
	성적 괴롭힘		강제적이거나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은 가족, 친구, 애인, 학교 선후배, 주변의 어른,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이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적이 지난 1년간(2017.7.~2018.6.) 한 번이라도 있나요? 다음에서 해당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 • 나에게 성적인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갖게 하는 말을 함 • 인터넷이나 SNS, 온라인게임 상에서 성적모욕이나 성희롱을 함 •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성적으로 접촉하거나 괴롭힘

2) 피해에 대한 두려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 두려움에 대한 항목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은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등 2항목이다(최수형·조영오, 2017: 233). 각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청소년 범죄피해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집 근처 거리를 밤에 혼자 걸을 때’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홍영오·연성진, 2014: 57).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질문방식과 관련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청소년범죄피해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범죄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대해 얼마나 두려우십니까’로 질문하였으며, 전국범죄피해조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로 질문하고 있다(홍영오·연성진, 2014: 289).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두려움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나요’로 질문하고, 구체적 유형별 두려움에 대한 질문은 ‘다음의 일을 당할까봐 얼마나 두려워하나요’로 질문하였다.

일반적 두려움에 이어서 피해유형별 두려움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피해유형별 두려움은 본 연구에서 살펴 보는 피해유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절도, 사기, 손괴 등 재산피해, 금품갈취, 폭행(가족외) 등 폭력피해, 가정내 신체적 학대, 괴롭힘, 성폭력 등 피해의 8가지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 보았다.³¹⁾

한편,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연구 대부분이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논의되기도 한다. 범죄에 대한 정서적 두려움과 범죄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인 인지된 위험간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Henson and Reyns, 2015: 93). 이러한 맥락에서 두려움과 인지된 위험을 구분하여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Ferguson and Mindel, 2007; May et al., 2010; Hinkle, 2015).

이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되 조사대상자의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아울러 살펴 보고자 한다.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피해유형별 두려움에 대한 항목들과 동일하게 하되 각 피해가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매우 낮다부터 매우 높다까지 5점 척도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피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3) 범죄예방 조치

범죄피해예방 조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와 기존의 청소년범죄피해조사에서 사용한 세 가지 항목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구(호신용 스프레이나 호신 앱 등)를 가지고 다닌다',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이다. 이 중 첫 번째 항목은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사용한 항목이다(최수형·조영오, 2017: 243). 다만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경우 호신도구의 예시를 호루라기로 제시하였는데 비해, 이 연구에서는 호신용 스프레이나 호신 앱 등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나머지 두 항목은 전국범죄피해조사와 청소년범죄피해조사에서 모두 사용한 항목이다(홍영오·연성진, 2014: 59; 최수형·조영오, 2017: 243).

31) 미국 전국범죄피해조사의 학교폭력 추가조사(School Crime Supplement)의 경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학교, 버스, 기타 교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받거나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측정하고 있다(Keith, 2018: 73). 이렇듯 학교라는 장소에 초점을 둔 범죄에 대한 두려움 조사는 학교와 관련된 추가조사이기 때문이다.

4) 개인적 특성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지역규모, 학교와 학년, 최근 5년간 이사횟수, 현 거주지역 거주기간, 신체적 특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신체적 특성과 관련하여 장애유무를 조사할 경우 어린 아동이나 청소년이 응답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신체적 한계(혹은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는 고려하에 신체적 취약성을 '나는 신체적 문제 때문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로 측정하였다(Kulig et al., 2017: 898).

나)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은 범죄행위와 관련되는 요인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점차 피해 연구에서도 의미있는 관련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홍영오·연성진, 2014; Pratt et al., 2014; Schreck et al., 2006; Kulig et al., 2017). 일례로 2014 청소년범죄피해조사에서도 재산범죄피해를 제외하고는 전 범죄유형에서 피해경험있는 사람의 자기통제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자기통제력과 범죄피해가 관련됨을 보여주고 있다(홍영오·연성진, 2014: 335).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경우 2017년도에 수행된 조사에서 자기통제력 항목이 추가되기도 하였다(최수형·조영오, 2017: 208).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피해와 관련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자기통제력을 포함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은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사용된 항목을 위주로 구성하되 전영실과 기광도(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도 사용하였다(최수형·조영오, 2017: 352; 전영실·기광도, 2009: 69). 이 연구에서 측정한 자기통제력은 ① 일이 복잡해지면 포기하는 편이다 ② 쉽게 화를 낸다 ③ 머리쓰는 일보다는 몸으로 하는 일을 좋아한다 ④ 앞으로 일어날 일보다는 지금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있다 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더라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등 6문항이며, 이 문항들은 재부호화하여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이 6문항의 평균은 22.50, 표준편차는 3.75, 이 항목들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63이었다.

다) 일상활동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활동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기존 청소년범죄피해조사에서 사용한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일부 수정하였다(홍영오·연성진, 2014: 56). 일상활동은 보호와 노출, 유인성의 세 가지로 살펴 보았으며, 보호는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주로 혼자 다닌다’, ‘혼자서 잘 돌아다닌다’의 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문항들은 재부호화하여서 점수가 높을수록 보호가 강한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이 문항들의 평균은 6.51, 표준편차는 2.17, 신뢰도(Cronbach’s α)는 0.58이었다.

노출은 ‘친구들과 특별한 일 없이 오랜 시간 길거리를 잘 돌아다닌다’,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여기저기 잘 돌아다닌다’, ‘PC방이나 노래방, 공원, 당구장 등에 자주 다닌다’ 등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3문항의 평균은 7.52, 표준편차는 3.13, 신뢰도(Cronbach’s α)는 0.70이었다. 참고로 외국의 연구에서는 위험한 생활양식으로 노출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밤에 누군가와 돌아다니려고 나간 적이 있는지, 친구와 드라이브하는데 보내는 주당 평균 시간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Schreck et al., 2002: 169).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국에서 사용하는 항목과 기존 청소년범죄피해조사의 항목들을 고려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유인성은 ‘평소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 ‘유명브랜드의 비싼 옷이나 물건을 자주 이용한다’의 2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이 2문항의 평균은 4.04, 표준편차는 1.79, 신뢰도(Cronbach’s α)는 0.66이었다.

라) 비행

비행가해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의 비행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비행유형(팔호안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비행경험이 있는 비율)은 담배피우기(4.2%), 술마시기(제사나 성찬식에서 마시는 것은 제외)(12.3%), 부모 허락 없이 결석하기(3.0%), 가출(2일 이상 허락없이 집에 안 들어가기)(2.0%), 음란물(음란 사진이나 음란동영상) 보기(24.2%), 다른 친구를 괴롭히거나 왕따시키기(3.3%), 다른 사람 때리기(14.6%), 물건이나 돈 훔치기(2.0%), 다른 사람에게 겁줘서 돈이나 물건 뺏기(1.2%), 일부러 남의 물건이나 학교 기물 망가뜨리기(2.5%) 등 10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각각에 대해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6개월에 1-2번’, ‘1달에 1-2

번', '1주일에 1-2번', '매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5) 가족특성

이 연구에서는 가족특성으로 가족의 구조적 특성인 부모 결혼상태, 다문화가정 여부, 부모 각각의 교육수준 및 직업 유무, 동거가족을 살펴 보았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계층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이와 더불어 가족의 기능적 특성에 해당될 수 있는 부모의 감독, 부모와의 애착, 부모의 일탈성, 배우자폭력 등에 대해서 파악해 보았다. 부모의 감독은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되는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내가 집밖에 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집밖에 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있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집밖에 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 등 3문항이다(Hirschi, 1969: 88-89; 전영실·노성훈, 2011: 60). 이 3문항의 평균은 11.90, 표준편차는 2.76, 신뢰도(Cronbach's α)는 0.89였다.

부모와의 애착은 Hirschi(1969)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애정적 동일시를 참고로 하고(Hirschi, 1969: 90-92) 전영실과 노성훈(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을 사용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애착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신뢰, 온정 등으로 측정하고 있다(Schreck et al., 2006: 328). 이 중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은 부모의 지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기도 한다(Wang et al., 2009: 370).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은 '나는 부모님과 매우 가깝다고 느낀다', '나는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에게 잘 얘기한다',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이신다' 등 3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전영실·노성훈, 2011: 60), 이 3문항의 평균은 12.71, 표준편차는 2.52, 신뢰도(Cronbach's α)는 0.85였다.

부모의 일탈성은 부모가 각각 술취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참고로 기존 연구에서도 부모음주를 부모 일탈성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고 있다(Schreck and Fisher, 2004: 1030). 부모의 배우자폭력은 서로 다투거나 싸우실 때 '욕을 한다', '때린다',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다' 등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6) 친구특성

이 연구에서 친구특성은 친한 친구수, 친구와의 애착, 친구의 비행, 피해 정도 등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여기서 친구와의 애착은 ‘내가 도움을 구하면 내 친구들은 나를 돕는다’,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내 친구들에게 잘 얘기한다’, ‘나는 내 친구들과 매우 가깝다고 느낀다’ 등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전영실·노성훈, 2011: 62). 기존 연구에서도 친한 친구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을 통하여 친구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고 있다(Wilcox et al., 2009: 255). 이 3문항의 평균은 12.18, 표준편차는 2.34, 신뢰도(Cronbach's α)는 0.81이었다.

친구의 비행은 조사대상자들이 인지하는 친구의 비행수준과 더불어 객관적인 질문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이 인지하는 친구의 비행은 ‘내 친구들은 술, 담배를 하는 편이다’,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편이다’,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때리는 편이다’ 등 3문항으로 살펴 보았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친구의 범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문항으로 친구가 경찰에 잡혀 간 적이 있는지를 묻기도 한다(Zaykowski and Gunter, 2012: 438).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 질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여기서는 친한 친구의 지난 1년간 징계경험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경험 유무에 대해 질문하였다. 여기서 징계경험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①의 징계종류(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등)를 예시로 들어서 공식적인 징계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친구의 피해경험이 개인의 피해와 관련될 수 있다는 연구(Chouhy et al., 2017)를 고려하여 친구의 피해경험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친구의 피해경험은 아동·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괴롭힘이나 폭력 피해를 통하여 살펴 보았다. 이에 대한 내용을 보면,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편이다’,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자주 맞는다’ 등 2문항이다.

7) 학교 특성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아동이나 청소년의 피해와 관련되는 학교 요인으로 학교에 대한 애착과 관여(Schreck et al., 2006), 학교 응집과 학교 문화에 대한 인식

(Zaykowski and Gunter, 2012), 교사와의 애착과 학교에 대한 태도(Wilcox et al., 2009), 교사지지 등 사회적 자본(Bouchard et al., 2012), 성적(Wiesner and Rab, 2015)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여 학교 특성으로 학교의 범죄예방노력 정도, 학교 응집성, 학교규칙(문화)에 대한 인식, 교사의 지지(사회적 자본) 등을 조사하였다.

학교의 범죄예방노력은 ‘우리 학교는 괴롭힘이나 폭력이 없게 하려고 노력한다’, ‘우리 학교는 학생간의 싸움이나 괴롭힘 등이 일어날 경우 잘 해결한다’의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2문항의 평균은 7.55, 표준편차는 1.75, 신뢰도(Cronbach's α)는 0.78이었다.

학교의 응집과 학교규칙에 대한 인식은 Zaykowski and Gunter(201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의 응집은 ‘나는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낸다’,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잘 지낸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서로 존중한다’, ‘우리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은 서로를 존중한다’ 등 4문항이다(Zaykowski and Gunter, 2012: 438). 이 4문항의 평균은 15.76, 표준편차는 2.98, 신뢰도(Cronbach's α)는 0.82였다. 학교규칙문화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은 ‘학생들은 학교 규칙을 잘 지킨다’, ‘학교규칙을 어긴 학생에 대해서는 누구든 상관없이 똑같이 처벌한다’, ‘학교규칙은 엄격하게 적용된다’의 3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Zaykowski and Gunter, 2012: 438). 이 3문항의 평균은 10.31, 표준편차는 2.44, 신뢰도(Cronbach's α)는 0.67이었다.

교사의 지지는 ‘나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 ‘내게 걱정거리나 문제가 생길 경우 도와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 ‘우리 학교 선생님은 학생에게 관심이 있다’ 등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Bouchard et al., 2012: 662). 이 3문항의 평균은 11.59, 표준편차는 2.73, 신뢰도(Cronbach's α)는 0.86이었다.

이 외에 학교의 객관적 특성으로 학교 규모, 학교의 외부인 접근통제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피해와 관련되는 학교의 객관적 특성을 다룬 연구들을 보면 학교 규모(학생수), 학교의 안전수준(접근통제), 학교의 위치(도시/비도시 여부) 등을 포함한 연구(Peguero, 2011), 경비원이나 경찰 배치, 방법카메라 설치 등을 포함한 연구(Bouchard et al., 2012) 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 규모, 학교의 출입문 통제 유무, 경비원 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인지 및 신뢰에 대한 문항도 조사하였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하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선도보호를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³²⁾ 이러한 학교전담 경찰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와 피해를 당할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잘 도와 줄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8) 동네 및 등학교길 특성

앞서 살펴 본 선행연구들에서 거주지역의 특성이 아동·청소년의 피해와 관련될 수 있음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거주지역의 특성을 살펴 보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동네나 등학교길의 특성을 살펴 보았다. 기존의 범죄피해조사에서는 동네 주위환경을 파악하고 있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학교 주변 등의 특성도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의 경우는 동네와 학교 주변이 일치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으로 동네나 등학교길에 해당하는 내용을 질문하였다. 동네 및 등학교길 특성으로는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이웃관계, 이웃참여, 경찰에 대한 태도 등을 살펴 보았다. 물리적·사회적 무질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아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몇 단어를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물리적 무질서는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어둡고 구석진 곳이 많다’, ‘주변에 내버려진 차나 빈 건물이 많다’ 등 3 항목이다(최수형·조영오, 2017: 192). 이 3항목의 평균은 6.95, 표준편차는 2.33, 신뢰도(Cronbach's α)는 0.69였다. 사회적 무질서는 ‘기초질서(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등)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무리지어 다니는 불량청소년들이 많다’, ‘큰 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등 3항목이다(최수형·조영오, 2017: 192). 이 3항목의 평균은 6.98, 표준편차는 2.48, 신뢰도(Cronbach's α)는 0.71이었다.

이웃관계는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사용하는 항목을 통하여 측정하였으며, 구체적

32) 경찰청 홈페이지, 분야별 치안자료 1. 학교전담경찰관 운영(<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838>, 최종검색: 2018. 11.1).

으로 보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등 3항목이다(최수형·조영오, 2017: 192). 이 3항목의 평균은 8.67, 표준편차는 2.56, 신뢰도(Cronbach's α)는 0.77이었다. 이웃참여는 범죄나 괴롭힘 피해에 대한 이웃주민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사용하는 항목 중 하나인 ‘우리 동네 사람들은 동네 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 줄 것 같다’(최수형·조영오, 2017: 192), ‘우리 동네 사람들은 동네에서 범죄피해를 당하는 사람을 본다면 도와 줄 것 같다’ 등 2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이 2항목의 평균은 7.27, 표준편차는 1.87, 신뢰도(Cronbach's α)는 0.84였다.

동네 경찰에 대한 태도는 영국의 10-15세 대상 범죄피해조사에서 사용되는 항목을 참고로 구성하였다. 영국의 조사에서 사용되는 항목은 6개이며, 이 중 4개 항목을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동네 경찰이 잘 도와줄 것이다’, ‘우리 동네 경찰은 우리들에게 친절하다’, ‘우리 동네 경찰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 ‘우리 동네 경찰은 우리들이 겪는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계신다’ 등이다.³³⁾ 이 4항목의 평균은 15.11, 표준편차는 3.24, 신뢰도(Cronbach's α)는 0.90이었다.

나. 사건조사표

사건조사 항목은 피해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건조사표에 포함된 조사항목은 크게 피해발생 일시와 장소, 피해내용과 결과, 피해상황과 피해자의 대응, 가해자 특성, 피해의 영향, 피해자의 사후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건조사표는 기본적으로 기존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토대로 하되 아동·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최수형·조영오, 2017: 364-379).

1) 피해발생 일시와 장소

피해발생 일시와 장소 관련 문항에서는 먼저 해당 피해가 현재 다니는 학교에 재학

33)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7-18 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 10-15 year old questionnaire (from April 2017), 2017, p.39.

하는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다음으로 피해의 발생년월과 시간, 발생장소를 공통적으로 질문하였으며, 가족외 폭행과 협박, 가정내 학대와 또래 괴롭힘에 대해서는 피해의 지속성과 지속기간을 추가로 질문하였다. 발생장소는 크게 집, 학교나 학교 근처,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 온라인, 그 외의 장소로 나누어 답하도록 한 후 각 범주의 세부장소를 제시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발생장소는 각 피해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고려하여 피해유형별로 제시하였다.

2) 피해내용과 결과

피해내용은 각 피해유형별로 기초조사표의 피해선별질문에서 회상자극문항으로 제시하였던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제시하여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한 절도, 사기, 갈취피해의 경우 피해물품과 피해액에 대한 항목을 포함시켰다. 신체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갈취, 가족외 폭행, 가족외 협박, 성적 괴롭힘 유형에서는 신체적 공격 여부와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에 관한 항목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피해내용의 항목은 기존 범죄피해조사에서 사용한 문항을 아동·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 외에 피해결과와 관련하여 신체적 피해 여부와 정도, 병원 치료 및 입원 여부를 질문하였다.

3) 피해상황과 피해자의 대응

피해발생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현장에 피해자와 가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를 질문하고, 다른 사람이 있었을 경우 동반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그 외에 피해 당시 피해자의 대응방식에 대한 항목을 통해 자기보호 노력에 관해 질문하였다.

4) 가해자 특성

가해자 특성은 피해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물리적 대면이 이루어지는 폭행, 가정내 학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유형에 대하여 가해자가 누구인지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다음으로 가해자의 수와 성별, 연령대를 공통적으로 질문한 후,

각 피해유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대한 항목을 구성하였다. 또한, 갈취, 가족의 폭행, 가족의 협박, 가정내 학대, 성적 괴롭힘의 경우 피해 당시 가해자가 음주상태였는지 질문하였다.

5) 피해의 영향

피해의 영향은 정신적 후유증과 행동적 측면의 영향으로 나누어 문항을 구성하였다. 먼저, 정신적 후유증은 ① 우울함(무력감, 자신감 상실), ② 고립감(외로움, 갇힌 느낌), ③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 등), ④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⑤ 부정적 자존감(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가치가 없다는 느낌), ⑥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⑦ 가족관계나 친구관계의 어려움에 대하여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앞의 네 가지 문항은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사용하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부정적 자존감과 학교생활 적응 및 가족관계·친구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문항은 조사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고려하여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외에 전국범죄피해조사와 마찬가지로 피해로 인하여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적 어려움 때문에 심리 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질문하였다(최수형·조영오, 2017: 375).

행동적 측면의 영향은 ① ‘사람을 피해서 이사(또는 전학)’, ②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학교에 결석함’, ③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하룻밤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음’의 세 가지 문항을 제시하여 피해로 인해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여부를 답하도록 하였다. 이사·전학 경험은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도 사용한 문항이며, 무단결석과 가출 경험은 이번 조사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하였다(최수형·조영오, 2017: 375). 피해의 영향은 모든 피해유형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질문하였다.

6) 피해자의 사후 대응

피해가 발생한 후 피해자의 대응에 관하여,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 이야기하였는지 질문하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경찰신고와 관련하여서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는지 여부를 먼저 물은 후, 경찰에 신고된 경우 신고자가 누구인지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는지 여부만 질문하는데,

주요 변수	주요 항목	피해유형							
		절도	사기	갈취	가족외 폭행	가족외 협박	가정내 학대	괴롭힘	성적 괴롭힘
	가해자 음주 여부			○	○	○	○		○
피해의 영향	정신적 후유증	○	○	○	○	○	○	○	○
	상담·치료 여부	○	○	○	○	○	○	○	○
	행동적 측면의 영향	○	○	○	○	○	○	○	○
사후 대응	피해사실 공유여부 및 대상	○	○	○	○	○	○	○	○
	경찰신고 여부 및 신고자	○	○	○	○	○	○	○	○

제3절 표본설계 및 표본의 특성

이번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방문조사와 동일 연령대의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이루어진다. 학교밖 청소년 조사는 학교조사의 특성상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동·청소년의 피해현황과 실태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본 조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학교조사의 표본설계 및 표본의 특성을 먼저 기술하고 학교밖 청소년 조사의 표집방법 및 조사방법은 뒤에서 살펴보겠다.

1. 표본설계

가. 모집단과 표집틀

본 조사의 목표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조사모집단은 2017년 4월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며, 폐교와 분교장은 제외하였다. 연구 설계 단계에서 설정한 목표 표본규모는 10,000명이다.

〈표 3-4〉 조사모집단 규모

학교급	모집단 크기(명)
초등학교 4~6학년	1,315,271
중학교 1~3학년	1,370,152
고등학교 1~2학년	1,093,247
계	3,778,670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 교육통계연보)

나. 층화 및 표본배분

표본배분을 위한 층화변수로는 학교급, 권역, 도시규모를 고려하였다. 우선 전국을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한 6개 권역으로 층화하고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의 동부) 및 중소도시(도지역의 동부), 읍면지역을 고려하여 각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16개 층으로 구성하였다.

표본은 조사모집단의 학교급별 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의 목표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조사 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본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전국 아동·청소년의 범죄피해율을 추정하는 데 있어 모집단의 분포를 반영하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고등학생의 표본을 변형 비례배분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배분된 학교급별 표본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3-5〉 학교급별 표본배분

학교급	모집단 크기 (고3 제외)	비례 배분 (고3 제외)	변형 비례 배분 (고3 포함)
초등학교	1,315,271명 (34.8%)	3,482 (34.8)	3,030 (30.3%)
중학교	1,370,152명 (36.3%)	3,626 (36.3%)	3,155 (31.6%)
고등학교	1,093,247명 (28.9%)	2,892 (28.9%)	3,815 (38.2%)
계	3,778,670 (100.0%)	10,000 (100.0%)	10,000 (100.0%)

조사대상 학교를 선정하기 위하여 목표 표본수를 학교급, 권역과 도시규모를 고려한 각 층별로 비례배분한 후 해당 층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로 나누어 조사대상 표본 학교 수를 산출하였다. 학교 수를 결정한 후에는 각 층 내에서 조사대상 학년에 고르게 반영되도록 배분하였다. 각 층별 표본 학생 수와 조사대상 학교 수의 배분은 아래와 같다.

〈표 3-6〉 층화 비례 표본배분 결과

학교급	층	권역	도시규모	표본 학생 수(명)	학급 평균 학생 수(명)	표본 학교 수
초등학교	1	서울	대도시	491	23.7	22
	2	인천+경기	대도시	172	24.2	7
	3		중소도시(시지역)	697	26.6	28
	4		읍면지역(군지역)	135	22.4	6
	5	부산+울산+경남	대도시	218	23.1	11
	6		중소도시(시지역)	131	24.3	6
	7		읍면지역(군지역)	105	19.7	6
	8	대구+경북+강원	대도시	130	23.8	6
	9		중소도시(시지역)	151	25.2	7
	10		읍면지역(군지역)	93	16.5	5
	11	광주+전북+전남+제주	대도시	102	22.6	6
	12		중소도시(시지역)	180	25.1	7
	13		읍면지역(군지역)	81	14.6	5
	14	대전+세종+충북+충남	대도시	114	22.2	6
	15		중소도시(시지역)	132	25.0	7
	16		읍면지역(군지역)	98	17.3	5
계				3,030	23.2	140
중학교	1	서울	대도시	519	26.2	21
	2	인천+경기	대도시	176	28.9	7
	3		중소도시(시지역)	716	30.8	24
	4		읍면지역(군지역)	126	28.2	4
	5	부산+울산+경남	대도시	235	26.8	9
	6		중소도시(시지역)	144	29.8	6
	7		읍면지역(군지역)	95	25.3	4
	8	대구+경북+강원	대도시	145	26.2	6
	9		중소도시(시지역)	169	27.2	6

학교급	층	권역	도시규모	표본 학생 수(명)	학급 평균 학생 수(명)	표본 학교 수
	10	광주+전북+전남+ 제주	읍면지역(군지역)	88	19.8	4
	11		대도시	110	26.7	4
	12		중소도시(시지역)	193	30.5	6
	13		읍면지역(군지역)	87	20.4	4
	14	대전+세종+충북+ 충남	대도시	118	28.0	4
	15		중소도시(시지역)	149	29.8	6
	16		읍면지역(군지역)	85	22.6	3
계				3,155	27.5	118
고등 학교	1	서울	대도시	645	29.1	24
	2	인천+경기	대도시	204	27.9	8
	3		중소도시(시지역)	840	29.7	29
	4		읍면지역(군지역)	134	28.4	6
	5	부산+울산+경남	대도시	296	27.3	11
	6		중소도시(시지역)	175	29.1	6
	7		읍면지역(군지역)	106	27.7	4
	8	대구+경북+강원	대도시	187	29.1	6
	9		중소도시(시지역)	205	27.8	8
	10		읍면지역(군지역)	114	25.1	6
	11	광주+전북+전남+ 제주	대도시	135	31.7	4
	12		중소도시(시지역)	242	29.8	10
	13		읍면지역(군지역)	109	23.8	6
	14	대전+세종+충북+ 충남	대도시	137	28.5	6
	15		중소도시(시지역)	181	31.4	6
	16		읍면지역(군지역)	105	26.4	4
계				3,815	28.7	144

다. 표집단위 및 표본추출

표본추출은 각 층 내에서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계통추출방법을 사용하되, 각 학년별 학급수가 2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유형에 따라 피해율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 유형이 표본에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학교유형을 ① 일반고등학교, ② 특성화고등학교,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로 분류하고 각 층 내에서 이를 기준으로 목록을 정렬한

후 계통추출하였다. 최종 추출단위는 학급이며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하였는데, 각 층 내에서 조사대상 학년이 고르게 분포하도록 학급을 선정하였다. 추출된 학교 층의 거절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로 대체하였다.

2. 표본의 특성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학교·지역 특성

학교조사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남자 51.9%, 여자 48.1%로 구성되었다. 학교급에 따른 성별분포는 초등학생의 경우 남자 51.5%, 여자 48.5%이며, 중학생은 남자 52.1%, 여자 47.9%, 고등학생은 남자 52.2%, 여자 47.8%이다. 조사대상자의 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중소도시가 43.1%로 가장 많고 대도시는 41.2%, 읍면지역은 15.7%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중 40.5%가 대도시 지역의 학교에 재학중이고 중소도시는 42.6%, 읍면지역 16.9%이며, 중학생은 대도시 41.3%, 중소도시 43.5%, 읍면지역 15.2%, 고등학생은 대도시 42.1%, 중소도시 43.1%, 읍면지역 14.9%이다.

조사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의 남녀공학 여부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모두 남녀공학의 학생이며, 중학생 중 77.2%는 남녀공학교 학생, 12.8%는 남학교 학생, 10.0%는 여학교 학생이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남녀공학교 학생의 비율이 57.9%, 남학교 학생과 여학교 학생은 각각 23.6%와 18.5%이었으며, 학교유형별 조사대상자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고등학교가 73.7%, 특성화고등학교 15.4%, 자율형고등학교 6.8%, 특수목적고등학교 4.1%의 순이었다.

〈표 3-7〉 학교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학교·지역 특성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854	(51.5)	1,951	(52.1)	1,561	(52.2)	5,366	(51.9)
	여자	1,754	(48.5)	1,797	(47.9)	1,430	(47.8)	4,972	(48.1)
도시 규모	대도시	1,457	(40.5)	1,549	(41.3)	1,258	(42.1)	4,264	(41.2)
	중소도시(시지역)	1,534	(42.6)	1,629	(43.5)	1,288	(43.1)	4,451	(43.1)
	읍면지역(군지역)	607	(16.9)	570	(15.2)	445	(14.9)	1,622	(15.7)
남녀 공학 구분	남학교	0	(0.0)	480	(12.8)	706	(23.6)	1,186	(11.5)
	여학교	0	(0.0)	373	(10.0)	554	(18.5)	927	(9.0)
	남녀공학	3,599	(100)	2,895	(77.2)	1,731	(57.9)	8,224	(79.6)
학교 유형	일반고	-	-	-	-	2,205	(73.7)	2,205	(73.7)
	자율고	-	-	-	-	204	(6.8)	204	(6.8)
	특성화고	-	-	-	-	461	(15.4)	461	(15.4)
	특수목적고	-	-	-	-	122	(4.1)	122	(4.1)

나. 조사대상자의 가족 특성

학생 조사대상자의 가족특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님의 결혼상태를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결혼이 92.6%, 이혼 4.3%, 사별 1.3%, 별거 1.2%, 재혼 0.6% 등이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결혼 88.7%, 이혼 6.6%, 사별, 별거, 재혼이 각각 1.8%, 1.5%, 1.3% 등이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결혼 87.7%, 이혼 6.6%, 사별 2.4%, 별거와 재혼이 각각 1.8%, 1.2% 등이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가 결혼한 상태인 비율이 중고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이나 사별 등의 비율은 중고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높았다. 다문화 가정 여부를 보면, 일반 가정 비율은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각각 97.7%, 97.1%였으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95.9%였다. 반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외국인이거나 귀화한 비율이 2.2%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1.2%, 0.9%에 비해 높았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외국인이거나 귀화한 경우는 중학생이 1.3%,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각각 1.2%, 1.0%였다.

아버지 교육수준을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잘 모른다는 응답이 45.2%로 상당히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중퇴)과 대학원 이상이 각각 22.0%였으며, 고졸(중퇴)의 비율이 8.7% 등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대졸(중퇴)의 비율이 31.1%, 잘 모른다는

응답이 28.0%, 대학원 이상과 고졸(중퇴)의 비율이 각각 19.6%, 18.5% 등이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대졸(중퇴)의 비율이 41.1%였으며, 고졸(중퇴)이 24.8%, 대학원 이상이 15.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4.9%였다. 어머니 교육수준을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3.2%였으며, 대졸(중퇴)이 22.8%, 대학원 이상이 21.9%, 고졸(중퇴)이 10.6% 등이었다. 중학생의 어머니 교육수준을 보면, 대졸(중퇴)이 33.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6.4%, 고졸(중퇴)이 20.9%, 대학원 이상이 16.7% 등이었다. 고등학생의 응답을 보면, 대졸(중퇴)과 고졸(중퇴)이 각각 41.0%, 30.5%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4.0%, 대학원 이상이 12.1%였다. 조사대상자 부모의 교육수준을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 교육수준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40%대로 나타났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각각 20%대, 10%대였다. 즉 조사대상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의 직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므로 직업유무에 대해서만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서 보면, 아버지가 직업이 있는 경우는 초중고생 각각 96.6%, 95.8%, 95.5%였다.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는 초중고생 각각 69.3%, 74.4%, 73.4%였다.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계층에 대해서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중간에 속한다는 응답이 44.5%였으며, 잘 사는 층에 속한다는 응답(5-7)이 50.1%, 못 사는 층(1-3)이라는 응답이 5.4%였다. 중학생의 경우는 중간 층이 46.0%, 잘 사는 층과 못 사는 층이라는 응답이 각각 43.8%, 10.2%였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중간 층이 43.3%, 잘 사는 층과 못 사는 층이라는 응답이 각각 42.9%, 13.8%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잘 사는 층에 속한다는 응답이 절반 정도로 가장 많은 반면, 중고생의 경우에는 중간 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중고생 모두 잘 사는 층이라는 응답이 못 사는 층이라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한편 못 사는 층이라는 응답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8〉 학교 조사대상자의 가족 특성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3333 (92.6)	3324 (88.7)	2624 (87.7)	9281 (89.8)
	이혼	154 (4.3)	247 (6.6)	199 (6.6)	599 (5.8)
	사별	46 (1.3)	66 (1.8)	72 (2.4)	185 (1.8)
	재혼	22 (0.6)	47 (1.3)	36 (1.2)	105 (1.0)
	별거	43 (1.2)	56 (1.5)	55 (1.8)	153 (1.5)
	두 분 모두 돌아가심	0 (0.0)	8 (0.2)	6 (0.2)	15 (0.1)
부모님 중 외국인이나 귀화한 분 여부	두 분 다 아님	3450 (95.9)	3641 (97.1)	2923 (97.7)	10014 (96.9)
	아버지	25 (0.7)	14 (0.4)	11 (0.4)	50 (0.5)
	어머니	82 (2.2)	47 (1.2)	27 (0.9)	155 (1.5)
	아버지와 어머니	42 (1.2)	47 (1.3)	30 (1.0)	119 (1.1)
아버지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중퇴)	12 (0.3)	14 (0.4)	9 (0.3)	35 (0.3)
	중학교 졸업(중퇴)	22 (0.6)	32 (0.9)	42 (1.4)	96 (0.9)
	고등학교 졸업(중퇴)	311 (8.7)	693 (18.5)	743 (24.8)	1747 (16.9)
	대학교 졸업(중퇴)	792 (22.0)	1164 (31.1)	1229 (41.1)	3185 (30.8)
	대학원 이상	792 (22.0)	733 (19.6)	475 (15.9)	2001 (19.4)
	잘 모름	1627 (45.2)	1049 (28.0)	445 (14.9)	3122 (30.2)
	아버지 안계심	41 (1.1)	63 (1.7)	48 (1.6)	152 (1.5)
어머니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중퇴)	13 (0.4)	9 (0.3)	8 (0.3)	31 (0.3)
	중학교 졸업(중퇴)	11 (0.3)	29 (0.8)	26 (0.9)	67 (0.6)
	고등학교 졸업(중퇴)	380 (10.6)	785 (20.9)	913 (30.5)	2078 (20.1)
	대학교 졸업(중퇴)	819 (22.8)	1263 (33.7)	1226 (41.0)	3307 (32.0)
	대학원 이상	788 (21.9)	625 (16.7)	362 (12.1)	1775 (17.2)
	잘 모름	1555 (43.2)	989 (26.4)	418 (14.0)	2962 (28.7)
	어머니 안계심	32 (0.9)	49 (1.3)	37 (1.2)	118 (1.1)
아버지 직업유무	있음	3475 (96.6)	3589 (95.8)	2857 (95.5)	9921 (96.0)
	없음	83 (2.3)	96 (2.6)	86 (2.9)	265 (2.6)
	아버지 안계심	41 (1.1)	63 (1.7)	48 (1.6)	152 (1.5)
어머니 직업유무	있음	2494 (69.3)	2790 (74.4)	2195 (73.4)	7479 (72.3)
	없음	1073 (29.8)	910 (24.3)	759 (25.4)	2741 (26.5)
	어머니 안계심	32 (0.9)	49 (1.3)	37 (1.2)	118 (1.1)
주관적 계층	1(제일 못 사는 집)	13 (0.4)	11 (0.3)	17 (0.6)	41 (0.4)
	2	19 (0.5)	46 (1.2)	67 (2.2)	133 (1.3)
	3	164 (4.5)	325 (8.7)	329 (11.0)	818 (7.9)
	4(중간)	1600 (44.5)	1726 (46.0)	1296 (43.3)	4622 (44.7)
	5	996 (27.7)	1103 (29.4)	872 (29.2)	2971 (28.7)
	6	549 (15.2)	382 (10.2)	308 (10.3)	1238 (12.0)
	7(제일 잘 사는 집)	258 (7.2)	156 (4.2)	101 (3.4)	515 (5.0)

제4절 조사 실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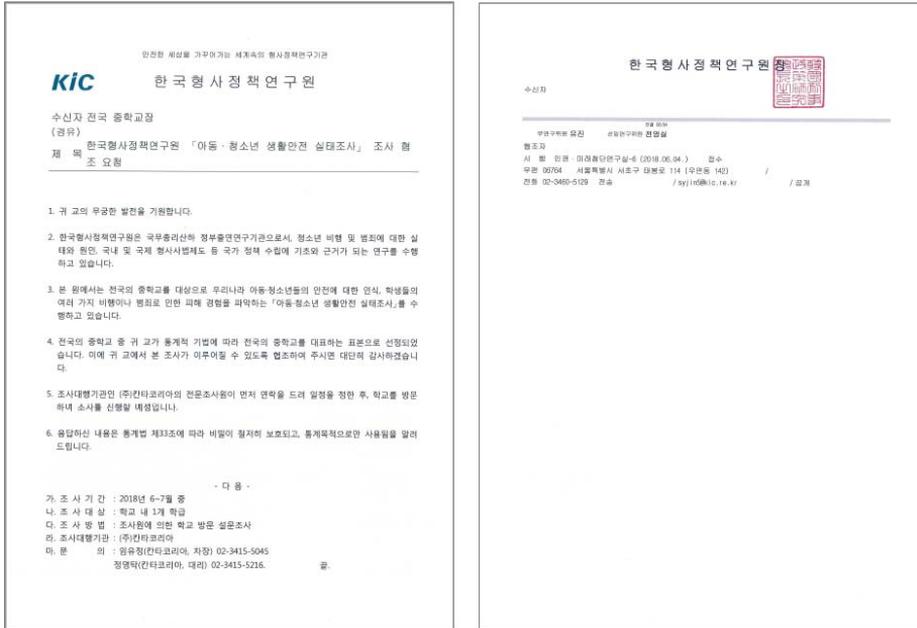
1. 실사준비

가. 조사도구 준비

1) 명부작성 및 협조율을 높이기 위한 준비

조사대상 학교는 2017년 4월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폐교, 휴교, 분교장을 제외하고 앞서 기술한 표본설계 기준에 따라 명부를 작성하였다. 일차적으로 선정된 학교가 조사협조를 거절하는 경우 다른 학교로 대체할 것을 고려하여 각 층별로 대체 순위의 학교명부까지 사전에 작성하였다.

조사대상 학교의 협조율을 높이기 위하여 ① 공문 발송, ② 조사 안내문 제작, ③ 답례품 제공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우선, 본 조사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조사임을 확인하여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원 명의의 전자공문을 조사대상 학교에 직접 발송하였다. 조사협조 공문에는 연구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협조 요청사항 및 관련 연락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와 별도로, 조사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사 안내문을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에 협조한 학교의 담당 교사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사례로 제공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학용품 세트를 답례품으로 제공하였다.



[그림 3-1] 조사대상학교에 대한 협조 공문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실태조사

이후 청소년에 관련된 상담도요기 뭐예요?

이후 청소년에 관련된 상담도요기 뭐예요?



- 01** | 국무총리 신하 국가정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전문조사기관인 **칸타코리아**는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비행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02** | 전국의 학교 중에서 통계적인 학교 표본 추출 기법에 따라 총 390개 학교가 추출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학년의 1개 학급 전체 학생을 조사하며, 학교 내 컴퓨터실에서 온라인 조사(CAW)로 실시됩니다.
- 03** | 학교명을 포함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제33조 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조사 결과는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ANTAR PUBLI.C=

아동·청소년 생활안전실태조사 조사·안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통계법 제15조에 의거,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작성 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 ▶ **조사기간** 2018년 6월 ~ 7월
- ▶ **조사대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 ▶ **조사지역** 전국 17개 시·도
- ▶ **조사방법** 1개 학급 전체 집단 조사로, 온라인으로 응답
- ▶ **응답주소** www.kyca.kr
- ▶ **주관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관련 문의처

지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52 신백빌딩	☎ 02) 3415-5045
부산	부산 동구 초당동 1194-10 대명빌딩 9층	☎ 051) 441-0520
대구	대구시 남구 봉곡3동 632-22 대명빌딩 4층	☎ 053) 476-4383
광주	광주시 남구 서동 71-14 화남빌딩 5층	☎ 062) 675-2693
대전	대전시 서구 단방동 727번지 대명빌딩 7층	☎ 042) 487-8324
제주	제주시 이도2동 370-4	☎ 064) 755-0073

[그림 3-2] 조사 안내문

2) 온라인 조사 시스템 구축

본 조사는 조사표를 탑재한 온라인 시스템에 조사대상자가 접속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경험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 학급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방문을 통한 학급 집단조사에서 응답내용이 서로 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온라인 조사 방식은 종이 설문지 방식에 비하여 응답내용 보호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온라인 조사 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온라인 조사 시스템은 조사대상자가 한 문항에 대한 응답을 완료하면 다음 문항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구성하여, 조사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결측값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이번 조사를 위해 도메인(www.kyca.kr)을 구매하여 조사 현장에서 설문 링크 입력의 오류를 줄이고 조사대상자가 편리하게 해당 조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조사원 선발과 교육

1) 조사원 선발기준과 투입 현황

본 조사는 학급을 표집단위로 하여 조사가 진행되므로, 조사대상 학교를 섭외하는 연락원과 학교방문 조사원을 구분하여 선발하였다. 학교섭외를 담당하는 연락원은 유사 업무경험이 있는 자를 선발하였다. 학교조사의 특성상 조사일시를 학교일정에 맞추어야 하며 일정조정이 가능한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학교접촉과 일정조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사대행업체의 각 7개 지방 사무소별로 연락원을 별도로 투입하였다.

학교방문 조사원의 경우, 기존 범죄피해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조사원을 우선 순위로 하여 학교방문 조사 경험이 있는 조사원 등, 본 조사에 적합한 조사원을 선발하였다. 학교방문 조사시에는 조사원 2명이 팀을 이루어 학교를 방문하게 되므로 학교방문 조사 경험자와 범죄피해조사 경험자를 한 팀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에 투입된 각 지방 사무소별 인력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3-9〉 조사원 투입 인력

구분	조사원 인원(명)			
	소계	수퍼 바이저	학교 연락원	학교방문 조사원
서울/경기/인천	64	3	4	45
부산/울산/경남	35	1	2	27
대구/경북	31	1	2	24
대전/충남/충북	27	1	2	20
광주/전남/전북	29	1	2	22
강원	8	1	1	4
제주	7	1	1	3
계	201	9	14	145

2) 조사원 교육 내용 및 일정

학교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원들의 본 조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사지침서를 작성하여 조사원 교육에 활용하였다. 조사지침

서에는 본 조사의 목적과 개요, 조사대상 학교 접촉 과정, 조사진행 방법, 조사표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였다. 조사지침서는 교육 시 조사원들에게 배부하고 숙지하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4단계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1단계 교육내용은 본 조사의 목적과 개요, 2단계는 실사 진행 방안, 3단계는 조사표 내용 교육 및 온라인 실습, 4단계는 관련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본 조사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 온라인 조사 화면과 진행 과정을 조사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였다. 조사원 교육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3-10〉 조사원 교육 내용

단계	교육 내용	주요 내용
1단계	조사 목적과 개요	- 본 조사 취지 및 목적 소개 - 조사 주관기관 소개 - 전체 진행 절차 및 조사방법
2단계	실사 진행 방안 교육	- 학교 컨택 과정 소개 - 학교 방문 시 진행 방안 - 기관(학교밖 아동·청소년 대상) 방문 시 진행 방안 - 방문 수칙 및 주의 사항
3단계	조사표 내용교육 및 온라인/TAPI 실습	- 조사표 내용 교육(기초조사표 및 사건조사표) - 사건조사표 응답 대상 선정 방법 - 온라인 설문 구성 화면 소개 - 온라인 설문 진행 과정 및 입력 방법 확인(학교 대상) - TAPI 시스템 및 응답 입력 방법 실습(학교밖 청소년 대상)
4단계	질의응답	-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조사원 교육은 7개 조사권역의 각 거점지역에서 해당지역의 담당 조사원과 수퍼바이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표준화된 교육을 위해 전 지점에서 동일하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6월 18일부터 1주일간 진행되었다. 각 권역별 교육일자와 지역은 다음과 같다.

〈표 3-11〉 조사원 교육 일정

조사지역	교육지역	교육일자
서울/경기/인천	서울	06.18
부산/울산/경남	부산	06.19
대구/경북	대구	
대전/세종/충북/충남	대전	06.20
광주/전북/전남	광주	
강원	강원	06.22
제주	제주	

2. 조사의 실시

가. 조사대상 학교 접촉 및 대체

실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 사전접촉하여 조사일정을 확정된 후 방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전접촉은 대상학교에 미리 조사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후 해당 지역 담당 연락원이 전화를 하여 협조를 구하는 단계이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학교조사는 협조여부 및 대상학급 선정, 조사일정 확정에 이르기까지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이 길고, 조사일시를 방학이나 시험기간 등을 피하여 학교사정에 맞추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학교 섭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협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락을 전담하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연락 시나리오를 교육하였다. 사전 접촉 단계에서는 대상학교의 협조를 구하고 일정을 확정하는 것 외에도, 조사대상이 되는 학년과 학급을 결정하고 해당 학급의 인원수를 파악하였다.

사전접촉 단계에서 대상학교가 조사 협조를 거절한 경우, 학교 표집틀의 동일층 내에서 1순위 학교와 학교목록상 근접한 순으로 대체하였다. 사전접촉이 이루어진 학교와 최종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학교 수는 다음과 같다.

〈표 3-12〉 사전접촉 및 조사완료 학교 수

학교급	지역	전체 학교 수	접촉대상 학교 수	조사 완료		평균 접촉 학교 수
				완료 수	비율(%)	
초등학교	서울	603	101	22	21.8%	4.6
	인천+경기	1,490	169	40	23.7%	4.2
	부산+울산+경남	929	68	23	33.8%	3.0
	대구+경북+강원	1,047	65	18	27.7%	3.6
	광주+전라+제주	1,115	42	16	38.1%	2.6
	대전+세종+충청	856	54	17	31.5%	3.2
	계	6,040	499	136	27.3%	3.7
중학교	서울	384	89	22	24.7%	4.0
	인천+경기	759	133	37	27.8%	3.6
	부산+울산+경남	502	49	19	38.8%	2.6
	대구+경북+강원	551	61	18	29.5%	3.4
	광주+전라+제주	593	40	15	37.5%	2.7
	대전+세종+충청	424	36	14	38.9%	2.6
	계	3,213	408	125	30.6%	3.3
고등학교	서울	320	113	25	22.1%	4.5
	인천+경기	597	175	46	26.3%	3.8
	부산+울산+경남	393	61	23	37.7%	2.7
	대구+경북+강원	398	88	23	26.1%	3.8
	광주+전라+제주	373	55	21	38.2%	2.6
	대전+세종+충청	279	44	16	36.4%	2.8
	계	2,360	536	154	28.7%	3.5

나. 자료수집방법 및 조사기간

학교조사는 미리 정해진 방문 일시에 조사원이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먼저 학교장이나 교감을 만나 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대상 학급의 담임교사를 만나 조사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조사대상 학급의 학생들은 정보화 교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자 조사표가 탑재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문항에 응답하도록 안내하고, 조사원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실 내에서 조사진행과정을 모니터링 하였다. 본 조사의 주제가 갖는 특수성과 민감성을 고려하여 담임교사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실에서 자리를 비우도록 하였다.

본 조사는 학교에 방문하여 진행되었으므로, 각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조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조사일정을 진행하였다. 조사는 6월 19일부터 7월 24일 까지 약 5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시기와 진행률은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표 3-13〉 조사시기와 실사 진행률

단위: 명

학교급	지역	6월	7월			
		4주	1주	2주	3주	4주
초등학교	서울	62	343	495	510	510
	인천+경기	103	701	1,000	1,023	1,026
	부산+울산+경남	25	269	313	453	501
	대구+경북+강원	34	297	358	430	433
	광주+전라+제주	28	204	317	362	363
	대전+세종+충청	34	285	366	366	397
중학교	서울	78	129	238	540	540
	인천+경기	101	337	604	934	1,025
	부산+울산+경남	45	123	282	444	465
	대구+경북+강원	39	59	219	385	431
	광주+전라+제주	46	112	237	310	377
	대전+세종+충청	21	52	155	316	372
고등학교	서울	76	95	148	523	649
	인천+경기	131	242	422	969	1,208
	부산+울산+경남	25	46	225	504	583
	대구+경북+강원	54	134	151	554	554
	광주+전라+제주	30	101	196	438	486
	대전+세종+충청	39	199	226	418	418
계		971	3,728	5,952	9,479	10,338
누적진행률		9.4%	36.1%	57.6%	91.8%	100.0%

3. 자료의 처리

가. 자료의 검증

본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조사대상자의 응답은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온라인 조사시스템에 저장되며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조사자료에 대한 사후 검증 과정을

거렸다. 조사 종료 후 진행한 자료검증의 내검 규칙은 아래와 같다.

〈표 3-14〉 주요 내검 규칙

구분	내용
기초 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코드 오류: 학교코드와 실제 학교명과 맞지 않는 경우 • 지역 오류: 학교코드와 실제 시도 및 시군구가 맞지 않는 경우 • 학년 오류: 학교코드의 조사된 학년과 응답한 학생의 학년 비교 • 공학여부 오류: 학교코드와 남자-여자-남녀공학 코드가 맞지 않는 경우 • 출생년도 오류: 각 학년별 출생년도가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경우 • 학교유형 오류: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코드와 학교유형이 맞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 오류: II-15에서 "◎형제자매가 없다"고 응답했는데, VII-3에서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한 경우 • 피해횟수 불일치: 각 피해유형 별 응답한 개수에 비해 '지난 1년간 피해경험 횟수'가 지나치게 작거나 많은 경우 • 이사 오류: 이사횟수에서 "①이사한 적 없음" 응답 후, 거주기간에서 "①1년미만 ~ ③2년-4년미만"을 응답한 경우 • 피해유형 불일치: [사건조사표]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피해유형이 [기초조사표]에서 지난 1년간 일어난 피해유형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건 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여부 오류: 중1과 고1 학년 외의 학년에서 "②현재 학교에 다니기 이전"에 응답한 경우 • 피해액수 오류: '피해물품'에 비해 '피해액수'가 지나치게 적거나 많은 경우 • 가해자 특성 오류: '가해자 중 아는 사람 여부'에서 ①에 라고 응답 후, 하위 문항 '가해자(들) 수', '구체적인 가해자(들)', '가해자(들)의 성별', '가해자(들)의 연령대'에서 모두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 입원일수 오류: 입원일수가 지나치게 길거나 짧은 경우 • 동반피해자 수 오류: 피해 입은 사람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 중복응답 오류: 모두 선택 문항에서 1개도 응답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가해자 수 오류: 가해자(들) 수에서 ①1명 이라고 응답했는데, A6-2 '구체적인 가해자(들)'에서 ①아는사람 과 ②모르는사람 을 같이 선택한 경우 • 대응 오류: '피해자의 구체적 대응방법'(중복응답 가능)에서 '가만히 있었음'과 다른 대응방법을 복수로 응답한 경우 • 기타값: 응답자들이 기타값에 "기초조사표에서 잘못 기입했음", "없어요" 등의 응답을 적은 경우 사건을 삭제함. 그 외에 포함할 수 있는 응답값은 해당 보기코드로 리코드함 • 피해보고 오류: '피해사실 공유 대상'(중복응답 가능)에서 ⑥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와 ① ~ ⑦까지 복수로 응답한 경우

나. 가중치 작성

본 조사는 개인을 추출단위로 하지 않고 학교 및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모집단의 성별 분포가 편향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표본설계에 근거하여 표본 가중치를 산출한 후 학교급별로 모집단의 성별분포에 따른 사후층화를 통해 벤치마킹을 수행하여 최종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먼저 표본설계 가중치는 학교급, 권역, 지역에 따라 층화한 각 층별로 학교추출률과 학급추출률을 곱한 값인 추출률의 역수로서 각 층에 포함된 응답자들은 모두 동일한 값을 갖게 된다. 층 h 에 속한 학교 i 의 j 학년 표본 학생에게 부여되는 표본설계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d_{hij} = \frac{\sum_{i'}^{N_h} \alpha_{hi'}}{n_h \alpha_{hi}} \times \frac{M_{hij}}{1} \times 1$$

N_h : 층 h 에 속한 모집단 학교 수

α_{hi} : 층 h 에 속한 i 번째 학교의 총 학생 수

n_h : 층 h 에 속한 표본 학교 수

M_{hij} : 층 h 에 속한 학교 i 의 j 학년의 전체 학급 수

다음으로 모집단의 성별분포에 따른 사후층화 가중치는 학교급별로 각 성별의 학생에게 부여된 표본설계 가중치의 합인 각 성별 추정 학생수를 구한 후, 해당 학교급별로 각 성별의 모집단 수를 추정 학생수로 나눈 값이다. 사후층화 가중치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a_{hij} = \begin{cases} \frac{t_f}{\hat{t}_f}, & \text{if 표본학생이 여성인 경우,} \\ \frac{t_m}{\hat{t}_m}, & \text{if 표본학생이 남성인 경우.} \end{cases}$$

$(t_f, t_m) = (\text{모집단 여학생 수}, \text{모집단 남학생 수})$

$$(\hat{t}_f, \hat{t}_m) = \sum_h \sum_i \sum_j d_{hij} (x_{hij}, 1 - x_{hij})$$

$$x_{hij} = \begin{cases} 1, & \text{if 표본학생이 여성인 경우,} \\ 0, & \text{if 표본학생이 남성인 경우.} \end{cases}$$

최종 가중치는 표본설계 가중치와 사후층화 조정계수를 곱한 값이며, 표준화 가중치는 최종 가중치를 모집단 수로 나눈 값을 표본수로 곱한 값을 사용하였다. 최종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w_{hij} = d_{hij} \times a_{hij}$$

제5절 학교밖 청소년 조사 방법

1. 조사 대상

이 연구에서는 학교밖 청소년 전체에 대한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의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참고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참고로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2017년 학업중단율은 초중고의 경우 각각 0.6%, 0.7%, 1.5%로 전체 학업중단률은 0.9%이다.³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기존 조사로는 여성가족부의 조사가 있으며, 이 실태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 역시 학교밖 청소년 전체를 모집단으로 설정할 경우 표집률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에서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최인재 외, 2015: 4). 여성가족부의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경우 조사모집단은 조사기간 동안 각 기관을 이용한 학교밖 청소년이다(최인재 외, 2015: 9). 여기서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취업사관학교, 단기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이동쉼

34) 2017년 학업중단자수는 초중고 각각 16,422명, 9,129명, 24,506명으로 총 50,057명이며, 학업중단율(학업중단자수/학생수×100)은 초중고의 경우 각각 0.6%, 0.7%, 1.5%로 전체 학업중단률은 0.9%이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 최종검색: 2018.1 0.2.). 그러나 이는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둔 사람만 포함되며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밖 청소년을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다.

터, 미인가대안학교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고 있다(최인재 외, 2015: 3-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15.5.29)」 제6조에 의해 2015년부터 매 3년마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조사는 학교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조사는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중단 시기 및 사유, 생활실태, 지원욕구 등을 다루고 있다.

청소년연구 전문가와의 자문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실태조사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교육부 인가가 나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 학교밖 청소년 범주에 들어가기에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으나 해당기관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경우 일반적인 학교밖 청소년들과 성향이나 특성, 사회경제적 지원 현황들이 다르다고 한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의 일반적 실태에 대한 조사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목적에 부합되는 설문과 대상자들을 설정하였다고 한다. 또한 확률표집은 표집틀이 확보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대상 조사에서는 적절하나 표집틀을 확보하기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사실상 확률표집이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들은 그 대상의 특성상 많은 수의 청소년들을 조사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학교 밖 청소년 조사'의 난점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기관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즉, 완전한 확률표집은 아니나 조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한적 범위에서 가급적 확률표집의 기본틀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즉 각 시설이나 기관의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거나 전수조사가 어려운 곳은 조사기간(3개월) 동안 해당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한 청소년 수를 해당 기관의 학교밖 청소년 모수로 조작적 정의를 하고 조사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밖 청소년의 범죄피해 실태 및 특성을 살펴 보는 것이며 대략적인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조사하는 기관 중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³⁵⁾, 쉼터³⁶⁾ 기관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³⁷⁾

35)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최인재 외, 2015: 212).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다.

앞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4년도 청소년대상 범죄피해조사에서는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조사하였는데(홍영오·연성진, 2014), 이 연구는 이 외에 몇 개 기관을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의 학교밖 청소년조사에 포함되는 미인가대안학교와 검정고시 학원과 소년원은 제외하였는데,³⁶⁾ 소년원의 경우 시설내에 있는 특성상 사회에서의 피해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민간기관인 미인가대안학교와 검정고시학원의 경우 조사거절률이 높아서 조사가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하였다(최인재 외, 2015: 7).

2. 표본의 특성

가. 조사대상자의 지역 및 인구학적 특성

학교밖 청소년 조사는 총 4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조사가 실시된 대상자는 170명(38.6%), 쉼터 조사대상자는 39명(8.9%), 보호관찰 대상자는 231명(52.5%)이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중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12세에서 16세 사이의 대상자는 8.0%, 고등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17세부터 19세 사이의 대상자는 92.0%로, 학교밖 청소년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통해 접촉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고등학생 연령대가 많았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12~16세가 5.9%, 17~19세는 94.1%였으며, 쉼터는 12~16세 12.8%, 17~19세 87.2%, 보호관찰 대상자는 12~16세 8.7%, 17~19세 91.3%의 분포를 보였다. 학교밖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62.0%, 여자 38.0%로 학교조사에 비해 남자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기관유형별로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조사대상자는 남자 40.0%, 여자 60.0%였으며, 쉼터를 통한 조사대상자는 남자 66.7%, 여자 33.3%, 보호관찰 대상자는 남자 77.5%, 여자 22.5%였다. 조사대상자

36)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과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의 1).

37) 참고로 학교밖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위기청소년'은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을 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4항).

38) 참고로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소년원과 미인가 대안학교, 검정고시학원의 비율은 각각 15.3%, 9.6%, 8.6%였다(최인재 외, 2015: 8).

를 접촉한 기관을 기준으로 지역분포를 살펴보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대도시가 37.6%, 중소도시 38.8%, 읍면지역 23.5%였으며, 쉼터는 84.6%가 대도시, 15.4%가 중소도시였고, 보호관찰소는 대도시 68.8%, 중소도시 31.2%의 분포를 보였다.

〈표 3-15〉 학교밖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지역 및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소		계	
연령	12-16세	10	(5.9)	5	(12.8)	20	(8.7)	35	(8.0)
	17-19세	160	(94.1)	34	(87.2)	211	(91.3)	405	(92.0)
성별	남자	68	(40.0)	26	(66.7)	179	(77.5)	273	(62.0)
	여자	102	(60.0)	13	(33.3)	52	(22.5)	167	(38.0)
도시규모	대도시	64	(37.6)	33	(84.6)	159	(68.8)	256	(58.2)
	중소도시(시지역)	66	(38.8)	6	(15.4)	72	(31.2)	144	(32.7)
	읍면지역(군지역)	40	(23.5)	0	(0.0)	0	(0.0)	40	(9.1)
계		170	(100)	39	(100)	231	(100)	440	(100)

나. 조사대상자의 가족 특성

학교밖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가족특성 중 부모님의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결혼 67.6%, 이혼 16.5%, 재혼 8.2%, 사별 4.1%, 별거 3.5%의 순이었다. 쉼터 응답자 가운데 부모님이 결혼한 상태인 경우는 17.9%에 불과했으며, 이혼이 46.2%, 재혼 30.8%였고 사별 또는 두 분 모두 돌아가신 경우가 각각 2.6%였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부모님의 결혼상태는 결혼이 46.8%, 이혼 36.4%, 재혼 4.8%, 별거 4.8%, 사별 4.3%, 두 분 모두 돌아가신 경우가 1.3%였다. 전체적으로 부모님이 결혼한 상태인 응답자의 비율은 52.3%로 학교조사 대상자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았다.

다문화 가정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5.7%가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귀화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기관 유형별로는 어머니가 외국인이거나 귀화한 응답자의 비율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4.7%, 쉼터 5.1%, 보호관찰소 3.5%였다. 아버지

가 외국인이거나 귀화한 경우, 그리고 부모님 두 분 모두 외국인이거나 귀화한 경우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각각 0.9%와 2.2%로 조사되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중퇴)이 32.9%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중퇴) 28.2%, 대학원 이상 11.8% 등이었고 모른다는 응답도 19.4%로 나타났다. 쉼터 응답자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중퇴)이 38.5%였으며, 대학교 졸업(중퇴) 17.9%, 중학교 졸업(중퇴) 7.7%, 대학원 이상이 2.6%였으며 모른다는 응답은 28.2%였다. 보호관찰 대상자 역시 쉼터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중퇴)인 경우가 41.1%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중퇴) 14.3%, 중학교 졸업(중퇴) 12.1% 등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중퇴)이 34.1%로 고등학교 졸업(중퇴) 31.8%보다 약간 많았고 모른다는 응답이 19.4%였다. 쉼터 응답자는 어머니의 최종학력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28.2%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중퇴)과 대학교 졸업(중퇴)이 25.6%로 동일하였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중퇴)이 43.3%, 잘 모른다는 응답이 22.9% 등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유무를 살펴 보면, 직업이 있다는 응답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응답자 중 82.9%, 쉼터 응답자 중 82.1%, 보호관찰대상자 중 83.1%였다. 어머니가 직업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72.4%, 쉼터 64.1%, 보호관찰소 68.4%로 나타났다.

학교밖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계층인식은 중간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았으며 못 사는 층(1-3)에 속한다는 응답은 37.5%, 잘 사는 층(5-7)에 속한다는 응답은 23.7%였다. 기관유형별로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못사는 층에 속한다는 응답이 40.6%, 중간층이 34.7%, 잘 사는 층이 24.7%의 순이었으며, 쉼터 응답자는 이러한 비율이 각각 43.5%, 28.2%, 28.2%였고 보호관찰 대상자는 각각 34.2%, 43.7%, 22.1%였다.

〈표 3-16〉 학교밖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가족 특성

단위: 명(%)

구분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소		계		
	명	(%)	명	(%)	명	(%)	명	(%)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115	(67.6)	7	(17.9)	108	(46.8)	230	(52.3)
	이혼	28	(16.5)	18	(46.2)	84	(36.4)	130	(29.5)
	사별	7	(4.1)	1	(2.6)	10	(4.3)	18	(4.1)
	재혼	14	(8.2)	12	(30.8)	15	(6.5)	41	(9.3)
	별거	6	(3.5)	0	(0.0)	11	(4.8)	17	(3.9)
	두 분 모두 돌아가심	0	(0.0)	1	(2.6)	3	(1.3)	4	(0.9)
부모님 중 외국인이나 귀화한 분 여부	두 분 다 아님	162	(95.3)	37	(94.9)	216	(93.5)	415	(94.3)
	아버지	0	(0.0)	0	(0.0)	2	(0.9)	2	(0.5)
	어머니	8	(4.7)	2	(5.1)	8	(3.5)	18	(4.1)
	아버지와 어머니	0	(0.0)	0	(0.0)	5	(2.2)	5	(1.1)
부 최종학력	초등학교 졸업(중퇴)	2	(1.2)	0	(0.0)	4	(1.7)	6	(1.4)
	중학교 졸업(중퇴)	5	(2.9)	3	(7.7)	28	(12.1)	36	(8.2)
	고등학교 졸업(중퇴)	48	(28.2)	15	(38.5)	95	(41.1)	158	(35.9)
	대학교 졸업(중퇴)	56	(32.9)	7	(17.9)	33	(14.3)	96	(21.8)
	대학원 이상	20	(11.8)	1	(2.6)	12	(5.2)	33	(7.5)
	잘 모름	33	(19.4)	11	(28.2)	47	(20.3)	91	(20.7)
	아버지 안계심	6	(3.5)	2	(5.1)	12	(5.2)	20	(4.5)
모 최종학력	초등학교 졸업(중퇴)	2	(1.2)	0	(0.0)	3	(1.3)	5	(1.1)
	중학교 졸업(중퇴)	3	(1.8)	1	(2.6)	14	(6.1)	18	(4.1)
	고등학교 졸업(중퇴)	54	(31.8)	10	(25.6)	100	(43.3)	164	(37.3)
	대학교 졸업(중퇴)	58	(34.1)	10	(25.6)	37	(16.0)	105	(23.9)
	대학원 이상	14	(8.2)	1	(2.6)	10	(4.3)	25	(5.7)
	잘 모름	33	(19.4)	11	(28.2)	53	(22.9)	97	(22.0)
	어머니 안계심	6	(3.5)	6	(15.4)	14	(6.1)	26	(5.9)
부 직업유무	있음	141	(82.9)	32	(82.1)	192	(83.1)	365	(83.0)
	없음	15	(8.8)	5	(12.8)	27	(11.7)	47	(10.7)
	아버지 안계심	14	(8.2)	2	(5.1)	12	(5.2)	28	(6.4)
모 직업유무	있음	123	(72.4)	25	(64.1)	158	(68.4)	306	(69.5)
	없음	40	(23.5)	5	(12.8)	59	(25.5)	104	(23.6)
	어머니 안계심	7	(4.1)	9	(23.1)	14	(6.1)	30	(6.8)
주관적 계층	1(제일 못 사는 집)	1	(0.6)	3	(7.7)	13	(5.6)	17	(3.9)
	2	21	(12.4)	7	(17.9)	20	(8.7)	48	(10.9)
	3	47	(27.6)	7	(17.9)	46	(19.9)	100	(22.7)
	4(중간)	59	(34.7)	11	(28.2)	101	(43.7)	171	(38.9)
	5	35	(20.6)	11	(28.2)	37	(16.0)	83	(18.9)
	6	7	(4.1)	0	(0.0)	11	(4.8)	18	(4.1)
	7(제일 잘 사는 집)	0	(0.0)	0	(0.0)	3	(1.3)	3	(0.7)

3. 조사실시 방법

학교밖 청소년 조사는 2017년 8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약 4주간 진행하였다. 조사는 전국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36개, 쉼터 10개, 보호관찰소 10개 기관에 접촉하여 협조를 구한 후 해당 기관에서 지원 및 보호서비스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쉼터의 경우 학교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대상 기관에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한 후, 조사를 진행하기로 약속된 날짜에 조사원이 기관을 방문하여 태블릿 PC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하였다. 보호관찰소의 경우, 조사원이 각 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각 소별 담당자에게 조사 진행방법을 설명한 후 태블릿 PC를 2대씩 배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권역별 조사 대상 기관과 표본 수의 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3-17〉 학교밖 청소년 조사 대상기관 및 표본수

구분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소	
	기관수	표본수(명)	기관수	표본수(명)	기관수	표본수(명)
서울	4	19	2	3	5	84
인천+경기	6	39	2	13	3	37
부산+울산+경남	9	36	2	4	3	30
대구+경북+강원	5	24	1	3	2	24
광주+전라+제주	6	26	2	4	2	18
대전+세종+충청	6	26	1	6	2	38
계	36	170	10	33	17	231

제 4 장



범죄피해 발생 현황

유진

범죄피해 발생 현황

4장에서는 학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경험한 범죄피해와 가정내 학대 및 괴롭힘 피해자 발생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절에서는 절도, 사기, 성폭력, 갈취, 폭행·협박 피해자 발생률을 살펴보고 2절에서는 성인과 달리 아동·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정내 학대와 또래괴롭힘을 중심으로 피해자 발생률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기초조사표의 범죄피해 선별질문 항목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피해자 발생률을 분석하였다.

제1절 일반범죄피해 발생현황

1. 범죄피해자수 및 피해자율

아래의 표는 기초조사표에서 지난 1년간 절도, 사기, 성폭력, 갈취, 폭행·협박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성폭력의 경우, 기초조사표에서 '성적 괴롭힘' 항목에 관한 문항 중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강간("강간을 하거나 강간을 시도함"), 강제추행("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내 몸을 만짐",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상대방의 몸을 만지도록 강요함"), 카메라등이용촬영("내가 원치 않거나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성적인 부끄러움이 나 불쾌감을 갖게 하는 사진을 찍음")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해당한다.

먼저, 절도나 사기피해를 경험한 피해자수는 665,498(17.6%)명으로 추정되며 피해자 발생률은 고등학생이 20.8%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은 19.4%, 초등학생은 13.0%였

다. 갈취, 폭행·협박 중 하나라도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는 224,625명(5.9%)으로 추정되어 재산범죄보다 피해자 발생률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재산범죄와 달리 폭력범죄는 초등학교의 피해자 발생률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 5.4%, 고등학생 4.4%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 피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0.6%의 피해자 발생률을 보였다. 피해유형과 상관없이 1건 이상의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추정피해자수는 786,283명으로 5명 중 1명이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 중 1건이라도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비율이 23.1%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가 17.3%로 가장 낮았고 중학생은 22.4%였다.

〈표 4-1〉 일반범죄 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단위: 명(%)

	추정피해자수 (추정피해자율)			
	초등	중등	고등	계
재산범죄	171,485 (13.0)	266,136 (19.4)	227,877 (20.8)	665,498 (17.6)
폭력범죄	102,232 (7.8)	74,170 (5.4)	48,223 (4.4)	224,625 (5.9)
성폭력범죄	-	8,269 (0.6)	6,571 (0.6)	14,840 (0.6)
전체범죄	227,307 (17.3)	306,919 (22.4)	252,057 (23.1)	786,283 (20.8)
총응답자	1,315,271 (100)	1,370,152 (100)	1,093,247 (100)	3,778,670 (100)

재산범죄 피해자 발생률을 피해유형별로 나누어보면, 절도피해가 사기피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1번이라도 절도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2.6%였으며, 전체 재산범죄와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의 피해자 발생률이 15.1%로 가장 높았다. 사기피해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자 중 피해경험률은 7.1%였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피해자 발생률이 각각 8.3%와 8.2%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절도 피해경험률이 9.4%, 사기 피해경험률이 4.9%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4-2〉 재산범죄 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단위: 명(%)

	추정피해자수 (추정피해자율)			
	초등	중등	고등	계
절도	124,261 (9.4)	184,380 (13.5)	165,611 (15.1)	474,252 (12.6)
사기	65,099 (4.9)	113,067 (8.3)	89,298 (8.2)	267,464 (7.1)
총응답자	1,315,271 (100)	1,370,152 (100)	1,093,247 (100)	3,778,670 (100)

폭력범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피해자 비율이 3.8%로 가장 높았으며 폭행 및 협박을 동반하여 금품을 갈취당한 피해자 비율은 2.4%,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비율은 0.6%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갈취와 폭행·협박을 경험한 피해자 비율이 각각 3.1%와 5.1%로 가장 높았다. 중학생은 폭행·협박 피해자 비율이 3.6%로 갈취 피해자 비율보다 높았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갈취와 폭행·협박 피해자 비율이 각각 2.1%와 2.5%로 중학생에 비해 차이가 다소 작게 나타났다.

〈표 4-3〉 폭력범죄 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단위: 명(%)

	추정피해자수 (추정피해자율)			
	초등	중등	고등	계
갈취	40,707 (3.1)	28,081 (2.0)	22,664 (2.1)	91,452 (2.4)
폭행·협박	66,658 (5.1)	48,830 (3.6)	27,376 (2.5)	142,864 (3.8)
총응답자	1,315,271 (100)	1,370,152 (100)	1,093,247 (100)	3,778,670 (100)

2. 중복피해와 반복피해 현황

이번 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반복하여 여러 번 경험하거나 다른 유형의 피해를 중복적으로 경험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절도, 사기, 갈취, 폭행·협박, 성폭력으로 피해유형을 분류하고 지난 1년간 여러 유형의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 비율을 살펴보았다. 범죄유형과 상관없이 1건이라도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1유형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3%로, 나머지 24.7%는 2가지 이상의 피해유형을 중복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피해 경험률은 초등학생이 28.4%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은 22.2%, 고등학생은 21.4%였다. 이 가운데 총 5가지 피해유형 중 4가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초등학생 0.7%, 중학생 0.5%, 고등학생 0.2%로 조사되었다.

〈표 4-4〉 일반범죄 중복피해 현황

단위: 명(%)

	추정피해자수 (추정피해자율)			
	초등	중등	고등	계
1유형	162,738 (71.6)	238,866 (77.8)	198,094 (78.6)	599,698 (76.3)
2유형	51,782 (22.8)	55,705 (18.1)	46,110 (18.3)	153,597 (19.5)
3유형	11,083 (4.9)	10,696 (3.5)	7,438 (3.0)	29,217 (3.7)
4유형	1,704 (0.7)	1,652 (0.5)	415 (0.2)	3,771 (0.5)
계	227,307 (100)	306,919 (100)	252,057 (100)	786,283 (100)

각 범죄유형별로 동일유형의 피해를 다수 경험한 피해자 비율을 살펴보았다.³⁹⁾ 반복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폭행·협박으로, 절반이 넘는 53.3%가 2회 이상 피해를 경험했으며 21.6%는 5회 이상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39) 성폭력의 경우, 기초조사표에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외에도 언어적 성희롱 등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함께 응답하도록 하여 이 가운데 성폭력 경험횟수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반복범죄 피해를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반복피해자 비율이 가장 낮은 피해유형은 사기였으며 71.9%가 1회의 피해경험에 그쳤다. 절도와 갈취의 경우 2회 이상 반복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1.1%와 40.1%로 나타났으며, 5회 이상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절도가 4.1%, 갈취는 4.9%였다.

〈표 4-5〉 일반범죄 반복피해 현황

단위: 명(%)

	추정피해자수 (추정피해자율)			
	절도	사기	갈취	폭행·협박
1회	279,499 (58.9)	192,428 (71.9)	54,757 (59.9)	66,699 (46.7)
2회	120,370 (25.4)	46,552 (17.4)	21,163 (23.1)	24,167 (16.9)
3회	42,246 (8.9)	16,264 (6.1)	8,253 (9.0)	14,229 (10.0)
4회	12,581 (2.7)	4,165 (1.6)	2,771 (3.0)	6,970 (4.9)
5회 이상	19,557 (4.1)	8,055 (3.0)	4,507 (4.9)	30,799 (21.6)
계	474,253 (100)	267,465 (100)	91,452 (100)	142,864 (100)

3. 생애피해자수 및 피해자율

본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경험한 피해 외에도 조사기간 이전에 범죄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여 전생애 피해율을 조사하였다. 여기에서는 지난 1년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이라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응답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위에서 살펴본 피해유형 중 하나라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9%로 모집단 중 1,090,885명이 범죄피해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학교급별 피해자 발생률은 고등학생이 31.6%로 가장 높았으나 중학생의 경우에도 30.4%로 고등학생과 유사한 피해수준을 보였다. 피해유형 가운데 절도나 사기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25.2%였으며 갈취, 폭행·협박 중 하나라도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0.2%였다.⁴⁰⁾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재산범죄의 경우 고등학생의 생애피

해자 발생률이 29.1%로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폭력범죄는 초등학교생의 피해보고율이 1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6〉 일반범죄 생애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단위: 명(%)

	추정피해자수 (추정피해자율)			
	초등	중등	고등	계
재산범죄	264,357 (20.1)	371,011 (27.1)	318,213 (29.1)	953,581 (25.2)
폭력범죄	164,969 (12.5)	132,076 (9.6)	87,657 (8.0)	384,702 (10.2)
전체범죄	329,119 (25.0)	416,586 (30.4)	345,180 (31.6)	1,090,885 (28.9)
총응답자	1,315,271 (100)	1,370,152 (100)	1,093,247 (100)	3,778,670 (100)

재산범죄의 유형별 생애피해자수와 피해자 발생률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 중 19.7%가 절도피해를 당한 적이 있으며 10.4%는 사기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절도범죄 피해자 발생률이 22.8%, 사기범죄 피해자 발생률이 11.8%로 가장 높았다. 반면, 초등학교생은 15.8%가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절도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사기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8.5%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절도피해자 발생률이 20.9%, 사기피해자 발생률이 11.1%로 고등학생 피해자 비율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40) 성폭력피해의 경우 성폭력과 성희롱을 통합하여 생애피해경험을 묻는 방식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성폭력 피해경험을 따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4-7〉 재산범죄 생애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단위: 명(%)

	추정피해자수 (추정피해자율)			
	초등	중등	고등	계
절도	208,210 (15.8)	286,430 (20.9)	249,582 (22.8)	744,222 (19.7)
사기	111,540 (8.5)	151,537 (11.1)	129,082 (11.8)	392,159 (10.4)
총응답자	1,315,271 (100)	1,370,152 (100)	1,093,247 (100)	3,778,670 (100)

폭력범죄의 생애피해자 발생률은 재산범죄와 달리 초등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해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갈취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은 6.6%로, 중학생 4.8%, 고등학생 4.0%보다 높았다. 폭행·협박피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의 생애피해자 발생률이 8.7%, 중학생 6.0%, 고등학생 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폭행·협박의 생애피해자 발생률은 6.6%로 갈취피해자 발생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8〉 폭력범죄 생애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단위: 명(%)

	추정피해자수 (추정피해자율)			
	초등	중등	고등	계
갈취	86,835 (6.6)	65,513 (4.8)	43,367 (4.0)	195,715 (5.2)
폭행·협박	114,249 (8.7)	81,551 (6.0)	53,461 (4.9)	249,261 (6.6)
총응답자	1,315,271 (100)	1,370,152 (100)	1,093,247 (100)	3,778,670 (100)

제2절 가정내 학대·괴롭힘 피해 발생현황

1. 범죄피해자수 및 피해자율

가정내 학대와 또래 괴롭힘,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성적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먼저, 지난 1년간 가정내 학대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였으며, 초등학생 1.6%, 중학생 2.1%에 비하여 고등학생이 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을 보고한 응답자 비율은 전체적으로 8.9%로 가정내 학대 피해자 발생률보다 4배 이상 높았다. 또래 괴롭힘의 경우, 중학생 가운데 피해경험을 보고한 비율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9.9%로 중학생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피해가 보고되었다. 반면 고등학생 중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로 나타나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성적 괴롭힘 유형의 피해자 발생률은 기초조사표의 관련항목 중 “나에게 성적인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갖게 하는 말을 함”, “인터넷이나 SNS, 온라인 게임 상에서 성적모욕이나 성희롱을 함”,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성적으로 접촉하거나 괴롭힘”에 대한 응답여부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중학생 중 2.1%, 고등학생 중 1.3%가 성적 괴롭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초등학생을 제외한 전체 응답자 중 1.7%에 해당한다.

〈표 4-9〉 가정내 학대·괴롭힘 피해자수 및 피해자율

단위: 명(%)

	추정피해자수 (추정피해자율)			
	초등	중등	고등	계
가정내 학대	20,436 (1.6)	28,335 (2.1)	29,645 (2.7)	78,416 (2.1)
또래 괴롭힘	130,601 (9.9)	137,044 (10.0)	67,333 (6.2)	334,978 (8.9)
성적 괴롭힘	-	28,149 (2.1)	14,666 (1.3)	42,815 (1.7)
전체피해	144,599 (11.0)	170,076 (12.4)	98,341 (9.0)	413,016 (10.9)
총응답자	1,315,271 (100)	1,370,152 (100)	1,093,247 (100)	3,778,670 (100)

2. 중복피해와 반복피해 현황

지난 1년 간 가정내 학대, 또래 괴롭힘, 성적 괴롭힘 중 2가지 이상을 경험한 중복피해자 비율은 전체 피해자 중 9.6%로 나타났다. 이 중 2가지 유형의 피해를 보고한 비율은 8.8%, 3가지 피해유형을 모두 경험한 비율은 0.8%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중복피해자 비율이 4.5%로 가장 낮았으며, 중학생은 12.5%, 고등학생은 12.2%였다. 특히 3가지 유형 모두 경험한 비율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중 1.3%로 나타났다.

〈표 4-10〉 가정내 학대·괴롭힘 피해자수 및 피해자율

단위: 명(%)

	추정피해자수 (추정피해자율)			
	초등	중등	고등	계
1유형	138,161 (95.5)	148,825 (87.5)	86,330 (87.8)	373,316 (90.4)
2유형	6,438 (4.5)	19,052 (11.2)	10,719 (10.9)	36,209 (8.8)
3유형	-	2,200 (1.3)	1,292 (1.3)	3,492 (1.3)
계	144,599 (100)	170,077 (100)	98,341 (100)	413,017 (100)

가정내 학대와 또래 괴롭힘 피해를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경험한 응답자 비율은 각각 73.8%와 51.1%로 절반을 상회하는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정내 학대를 5회 이상 경험한 응답자 비율은 25.1%로 4명 중 1명꼴로 조사되었으며, 또래 괴롭힘을 5회 이상 경험한 비율은 15.7%로 이러한 피해유형들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11〉 가정내 학대·괴롭힘 반복피해 현황

단위: 명(%)

	추정피해자수 (추정피해자율)	
	가정내 학대	또래 괴롭힘
1회	20,558 (26.2)	163,660 (48.9)
2회	18,249 (23.3)	73,597 (22.0)
3회	13,577 (17.3)	34,584 (10.3)
4회	6,383 (8.1)	10,708 (3.2)
5회 이상	19,649 (25.1)	52,429 (15.7)
계	78,416 (100)	334,978 (100)

3. 생애피해자수 및 피해자율

지난 1년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내 학대피해를 경험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4.3%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 중 5.1%, 초등학생 4.1%, 중학생 4.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래 괴롭힘의 생애피해자 발생률은 12.1%였고 초등학생 중 13.2%가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중학생 가운데 또래 괴롭힘 생애피해자 발생률 역시 13.1%로 초등학생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고등학생은 9.5%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4-12〉 가정내 학대·괴롭힘 피해자수 및 피해자율

단위: 명(%)

	추정피해자수 (추정피해자율)			
	초등	중등	고등	계
가정내 학대	54,305 (4.1)	54,373 (4.0)	55,438 (5.1)	164,116 (4.3)
또래 괴롭힘	173,339 (13.2)	179,393 (13.1)	104,204 (9.5)	456,936 (12.1)
전체피해	203,095 (15.4)	209,618 (15.3)	140,275 (12.8)	552,988 (14.6)
총응답자	1,315,271 (100)	1,370,152 (100)	1,093,247 (100)	3,778,670 (100)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피해경험을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범죄피해

가. 피해자 발생률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가운데 지난 1년간 절도, 사기, 성폭력, 갈취, 폭행·협박 피해경험이 있었던 경우는 786,283명으로 추정되며 피해자 발생률은 20.8%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피해자 발생률이 23.1%로 가장 높았으며 252,057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학생 역시 피해자 발생률이 22.4%로 고등학생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며, 초등학생은 이보다 5% 가량 낮은 17.3%의 피해자 발생률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피해자 발생률은 재산범죄가 17.6%로 폭력범죄 6.2%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성폭력범죄(초등학생 제외)의 경우 피해자 발생률은 0.6%였다. 재산범죄의 구체적인 피해유형에 따라 피해자 발생률을 살펴본 결과, 절도 피해자율이 12.6%로 사기 피해자율 7.1%에 비해 다소 높았다. 폭력범죄의 경우, 갈취 피해자율은 2.4%, 폭행·협박 피해자율은 3.8%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피해자 발생률은 피해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재산범죄의 경우 고등학생의 피해율이 20.8%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 19.4%, 초등학생 13.0%의 순으로 낮아졌다. 반면, 폭력범죄는 초등학생 중 7.8%가 1건 이상의 피해를 보고하여 피해자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 5.4%, 고등학생 4.4%로 나타났다. 성폭력피해는 초등학생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0.6%의 피해자 발생률을 보여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기간을 포함한 생애 피해자 발생률은 전체적으로 28.9%였으며, 재산범죄피해(25.2%)가 폭력범죄피해(10.2%)보다 높았다. 피해유형에 따른 학교급별 생애 피해자

발생률은 지난 1년간 피해경험과 마찬가지로 재산범죄의 경우 고등학생의 피해자율이 가장 높은 반면 폭력범죄의 피해자율은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4년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결과와 비교해보았다. 2014년 조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번 조사결과 중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응답결과를 중심으로 비교해보면, 재산범죄의 경우 절도와 사기 피해자 발생률이 2014년 조사에서는 각각 7.6%와 4.5%인데 비해(홍영오·연성진, 2014: 82), 이번 조사에서는 14.2%와 8.2%로 높게 나타났다. 폭력범죄의 경우에도 2014년 조사에서 나타난 갈취, 폭행, 협박 피해자 발생률은 1.3%, 0.7%, 1.2%였으나(홍영오·연성진, 2014: 82),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비율이 각각 2.1%, 1.8%, 1.7%로 비교적 높았다. 즉, 모든 피해유형에서 2014년 조사결과보다 올해 조사에서 피해자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4년 조사와 이번 조사의 문항구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두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청소년의 범죄피해가 지난 4년 간 증가하였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이번 전국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는 이전 조사와 달리 각 피해유형에 대하여 회상자극 문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응답자가 피해사실을 보다 쉽게 회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사표 구성방식의 변화로 인한 피해보고율 증가가 이번 조사결과의 피해자 발생률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중복피해와 반복피해

절도, 사기, 갈취, 폭행·협박, 성폭력 가운데 1가지라도 피해경험을 보고한 응답자 가운데 2가지 유형 이상의 피해를 보고한 비율은 24.7%로 4명 중 1명은 중복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피해는 특히 초등학생에서 28.4%로 많이 나타났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 중 중복피해자 비율은 각각 22.2%와 21.4%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2회 이상 경험한 반복피해는 폭행·협박 유형에서 가장 많았으며, 폭행·협박 피해자 중 53.3%가 2회 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고 5회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도 21.6%로 조사되어 폭행·협박피해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절도 반복피해율과

갈취 반복피해율 역시 각각 41.1%와 40.0%였으나 5회 이상 반복피해는 폭행·협박에 비해 많지 않았다.

2. 가정내 학대·또래 괴롭힘·성적 괴롭힘 피해

가. 피해자 발생률

이번 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피해유형으로 가정내 학대, 또래 괴롭힘, 성적 괴롭힘의 피해정도를 알아보았다. 지난 1년간의 피해경험을 조사한 결과, 또래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는 8.9%, 가정내 학대는 2.1%, 성적 괴롭힘은 1.7%(초등학생 제외)의 비율을 보였다. 피해유형별 피해정도를 학교급에 따라 살펴보면, 또래 괴롭힘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 피해경험을 보고한 비율이 각각 9.9%와 10.0%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고등학생은 이보다 다소 낮은 6.2%였다. 반면, 가정내 학대는 고등학생이 가장 높은 피해자 발생률을 보여 2.7%였으며, 중학생 2.1%, 초등학생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 괴롭힘은 중학생 중 피해자 발생률이 2.1%로 고등학생 1.3%보다 약간 높았다.

2014년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는 가정폭력을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정서학대와 방임을 제외하고 가정내 보호자에 의한 신체학대 피해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2014년 조사결과 중 가정내 신체학대 피해수준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이번 조사에서 가정내 학대피해를 보고한 중·고등학생은 2.4%로, 2014년 조사결과 가정내 신체학대 피해자 발생률 2.7%에 비하여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홍영오·연성진, 2014: 94). 반면 또래 괴롭힘의 경우, 2014년 조사에서 또래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자 발생률이 각각 1.5%와 2.5%인데 비하여(홍영오·연성진, 2014: 94), 올해 조사결과에서는 중·고등학생 중 8.3%가 괴롭힘 피해를 보고하여 크게 증가하였다.⁴¹⁾

41) 앞서 일반범죄피해 결과에 대한 논의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014년 조사와 이번 조사는 문항구성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조사결과를 직접 비교하여 피해현황의 변화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괴롭힘피해의 경우, 2014년 조사에서는 또래 괴롭힘과 따돌림에서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피해를 제외하고, 사이버폭력 유형에 가해자의 연령대와 상관없이 모든 온라인 피해를 포함시켰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또래 괴롭힘 피해유형에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피해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기존 조사와 이번 조사의 피해자 발생률을 비교할 때에는 이러한 피해유

나. 중복피해와 반복피해

가정내 학대, 또래 괴롭힘, 성적 괴롭힘 중 2가지 유형 이상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는 9.6%였으며, 이러한 비율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12.5%와 12.2%로 유사한 수준이었고 초등학생은 4.5%였다.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2회 이상 경험한 경우는 가정내 학대의 경우 73.8%, 또래 괴롭힘은 51.1%로 반복피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회 이상 반복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정내 학대 25.1%, 또래 괴롭힘 15.7%로, 가정내 학대와 또래 괴롭힘은 폭행·협박피해와 마찬가지로 다수에 걸쳐 피해가 반복경험되는 경우가 많았다.

형 분류의 차이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제 5 장



범죄피해실태

유 진

범죄피해실태

5장에서는 구체적인 피해실태를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장소, 가해자의 특성, 피해 상황과 결과, 사건 당시와 이후의 피해자 대응 및 신고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피해의 내용과 결과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4장과 마찬가지로 1절에서 절도, 사기, 성폭력, 갈취, 폭행·협박 피해실태를 먼저 살펴보고 2절에서는 가정내 학대, 또래 괴롭힘, 성적 괴롭힘 피해실태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분석하는 내용은 본조사의 사건조사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초조사표의 선별질문 문항에서 각 유형의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최근에 경험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당 유형의 사건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아래의 분석 내용은 응답자가 동일 유형의 피해경험이 다수 있을 경우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또한 피해실태 분석은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여 통계표를 작성한 것으로, 가중값이 정수가 아닌 경우 반올림하였으므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절 일반범죄피해 실태

1. 재산범죄피해

가. 피해발생 일시와 장소

1) 피해발생 일시

먼저 지난 1년간 절도와 사기피해가 발생한 계절을 살펴보았다. 절도피해의 경우

1,297건 중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에 발생한 사건이 761건으로 58.7%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봄에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19.9%, 가을 15.5%, 겨울 5.9%였다. 이와 유사하게 사기피해의 경우도 총 732건 중 여름에 발생한 사건이 437건(5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봄 17.5%, 가을 19.7%, 겨울 7.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 재산범죄피해 발생 계절

단위: 명(%)

	절도				사기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봄(3~5월)	62 (18.2)	104 (20.6)	92 (20.3)	258 (19.9)	29 (16.3)	70 (22.6)	29 (11.9)	128 (17.5)
여름(6~8월)	212 (62.4)	297 (58.9)	252 (55.6)	761 (58.7)	106 (59.6)	181 (58.4)	150 (61.5)	437 (59.7)
가을(9~11월)	41 (12.1)	82 (16.3)	78 (17.2)	201 (15.5)	28 (15.7)	43 (13.9)	48 (19.7)	119 (16.3)
겨울(12~2월)	25 (7.4)	21 (4.2)	31 (6.8)	77 (5.9)	15 (8.4)	16 (5.2)	17 (7.0)	48 (6.6)
계	340 (100)	504 (100)	453 (100)	1,297 (100)	178 (100)	310 (100)	244 (100)	732 (100)

구체적인 발생시각을 살펴보면 절도범죄의 경우 언제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응답이 전체 1,298건 중 632건으로 48.7%에 달하였다. 그 외에 발생시각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한낮부터 오후사이(12~18시)에 발생한 경우가 35.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침부터 오전사이(06~12시)가 9.6%, 심야부터 새벽사이(24~06시)가 4.2%, 저녁부터 밤사이(18~24시)가 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죄 역시 발생시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응답이 733건 중 383건으로 52.3%였으며, 발생시각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한낮부터 오후사이(12~18시)가 30.6%로 가장 많았다.

〈표 5-2〉 재산범죄피해 발생 시각

단위: 명(%)

	절도				사기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아침-오전 (06~12시)	42 (12.4)	55 (10.9)	28 (6.2)	125 (9.6)	27 (15.1)	29 (9.4)	12 (4.9)	68 (9.3)
한낮-오후 (12~18시)	116 (34.1)	179 (35.4)	164 (36.2)	459 (35.4)	59 (33.0)	97 (31.3)	68 (27.9)	224 (30.6)
저녁-밤 (18~24시)	10 (2.9)	18 (3.6)	17 (3.8)	45 (3.5)	7 (3.9)	13 (4.2)	14 (5.7)	34 (4.6)
심야-새벽 (24~06시)	9 (2.6)	9 (1.8)	19 (4.2)	37 (2.9)	5 (2.8)	8 (2.6)	11 (4.5)	24 (3.3)
알 수 없음	163 (47.9)	244 (48.3)	225 (49.7)	632 (48.7)	81 (45.3)	163 (52.6)	139 (57.0)	383 (52.3)
계	340 (100)	505 (100)	453 (100)	1,298 (100)	179 (100)	310 (100)	244 (100)	733 (100)

2) 피해발생 장소

재산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절도와 사기 모두 학교나 학교근처에서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먼저, 절도의 경우 학교나 학교근처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62.1%로 절반을 훨씬 웃돌았고 다음으로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에서 발생한 비율이 18.3%로 나타났다. 사기피해 역시 학교나 학교근처에서 발생한 비율이 46.8%로 가장 높았으나, 절도와 달리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에서 발생한 피해는 13.2%에 그쳤으며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비율이 20.2%로 이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집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절도 14.0%, 사기 16.6%로 조사되었다.

〈표 5-3〉 재산범죄피해 발생 장소

단위: 명(%)

	절도				사기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집	71 (20.9)	67 (13.3)	44 (9.7)	182 (14.0)	41 (23.0)	46 (14.8)	35 (14.3)	122 (16.6)
학교나 학교근처	181 (53.2)	329 (65.1)	296 (65.3)	806 (62.1)	70 (39.3)	147 (47.4)	126 (51.4)	343 (46.8)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	66 (19.4)	80 (15.8)	91 (20.1)	237 (18.3)	27 (15.2)	49 (15.8)	21 (8.6)	97 (13.2)
온라인	0 (0.0)	0 (0.0)	0 (0.0)	0 (0.0)	32 (18.0)	59 (19.0)	57 (23.3)	148 (20.2)
기타	22 (6.5)	29 (5.7)	22 (4.9)	73 (5.6)	8 (4.5)	9 (2.9)	6 (2.4)	23 (3.1)
계	340 (100)	505 (100)	453 (100)	1,298 (100)	178 (100)	310 (100)	245 (100)	733 (100)

재산범죄피해가 집에서 발생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피해자 본인의 집에서 일어난 비율이 절도 70.7%, 사기 72.1%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의 집에서 피해가 발생한 비율은 절도 6.1%, 사기 10.7%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며, 제3자의 집에서 절도나 사기가 발생한 경우가 각각 23.2%와 17.2%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피해자 본인의 집에서 절도나 사기피해가 발생한 비율이 각각 62.8%와 62.9%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5-4〉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집'의 구체적 장소

단위: 명(%)

	절도				사기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우리집	51 (71.8)	50 (74.6)	27 (62.8)	128 (70.7)	30 (73.2)	36 (78.3)	22 (62.9)	88 (72.1)
상대방의 집	7 (9.9)	1 (1.5)	3 (7.0)	11 (6.1)	6 (14.6)	2 (4.3)	5 (14.3)	13 (10.7)
다른 사람의 집	13 (18.3)	16 (23.9)	13 (30.2)	42 (23.2)	5 (12.2)	8 (17.4)	8 (22.9)	21 (17.2)
계	71 (100)	67 (100)	43 (100)	181 (100)	41 (100)	46 (100)	35 (100)	122 (100)

학교나 학교 근처에서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발생장소를 살펴보았다. 먼저, 절도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교실이었으며 총 807건 중 75.2%인 599건이 이곳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83.1%가 교실에서 절도피해가 발생했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절도피해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운동장(6.4%), 복도·계단·옥상(4.3%), 도서관, 매점 등 학교 내부시설(3.8%), 화장실·라커룸(3.6%) 등의 순이었다. 사기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 역시 교실로 나타났다. 사기피해 총 343건 중 245건(71.4%)이 교실에서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복도·계단·옥상과 운동장이 각각 7.0%, 학교 근처 공터나 주차장이 6.4%로 조사되었다.

〈표 5-5〉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학교나 학교 근처’의 구체적 장소

단위: 명(%)

	절도				사기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교실	115 (63.2)	239 (72.4)	245 (83.1)	599 (74.2)	48 (68.6)	102 (69.4)	95 (75.4)	245 (71.4)
복도·계단·옥상	9 (4.9)	18 (5.5)	8 (2.7)	35 (4.3)	5 (7.1)	14 (9.5)	5 (4.0)	24 (7.0)
화장실·라커룸	3 (1.6)	23 (7.0)	3 (1.0)	29 (3.6)	1 (1.4)	5 (3.4)	2 (1.6)	8 (2.3)
도서관, 체육관, 강당, 매점 등 학교 내부시설	8 (4.4)	9 (2.7)	14 (4.7)	31 (3.8)	2 (2.9)	2 (1.4)	7 (5.6)	11 (3.2)
운동장	28 (15.4)	14 (4.2)	10 (3.4)	52 (6.4)	7 (10.0)	10 (6.8)	7 (5.6)	24 (7.0)
학교 담장 주변, 학교 근처 골목	3 (1.6)	5 (1.5)	2 (0.7)	10 (1.2)	1 (1.4)	1 (0.7)	1 (0.8)	3 (0.9)
학교 근처 공터나 주차장	12 (6.6)	11 (3.3)	9 (3.1)	32 (4.0)	4 (5.7)	10 (6.8)	8 (6.3)	22 (6.4)
학교 뒷산	1 (0.5)	4 (1.2)	1 (0.3)	6 (0.7)	0 (0.0)	1 (0.7)	1 (0.8)	2 (0.6)
기타	3 (1.6)	7 (2.1)	3 (1.0)	13 (1.6)	2 (2.9)	2 (1.4)	0 (0.0)	4 (1.2)
계	182 (100)	330 (100)	295 (100)	807 (100)	70 (100)	147 (100)	126 (100)	343 (100)

절도피해가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절반 이상인 52.3%는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학원이나 독서실에

서 절도피해를 당한 비율이 66.7%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독서실에서 피해가 발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PC방·노래방·당구장 등에서 절도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각각 28.8%와 34.1%를 차지하였다. 사기피해의 경우 전체적으로 학원·독서실에서 발생한 비율이 40.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많은 것은 PC방·노래방·당구장 등(35.1%)이었다. 그러나 중학생 가운데 52.1%는 PC방·노래방·당구장 등에서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하여 학교급별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5-6〉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의 구체적 장소

단위: 명(%)

	절도				사기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학원, 독서실	44 (66.7)	39 (48.8)	41 (45.1)	124 (52.3)	15 (55.6)	11 (22.9)	13 (59.1)	39 (40.2)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4 (6.1)	23 (28.8)	31 (34.1)	58 (24.5)	3 (11.1)	25 (52.1)	6 (27.3)	34 (35.1)
상점이나 상업건물	16 (24.2)	17 (21.3)	12 (13.2)	45 (19.0)	5 (18.5)	9 (18.8)	2 (9.1)	16 (16.5)
극장, 공연장	1 (1.5)	1 (1.3)	6 (6.6)	8 (3.4)	0 (0.0)	3 (6.3)	0 (0.0)	3 (3.1)
기타	1 (1.5)	0 (0.0)	1 (1.1)	2 (0.8)	4 (14.8)	0 (0.0)	1 (4.5)	5 (5.2)
계	66 (100)	80 (100)	91 (100)	237 (100)	27 (100)	48 (100)	22 (100)	97 (100)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기피해 중 20.2%는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체적인 발생경로를 살펴보면 온라인 중고매장 등 쇼핑몰에서 발생한 피해가 26.2%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게임에서 사기피해를 입은 경우도 22.1%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 카카오톡, 라인 등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한 사기피해가 19.3%,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사기피해가 17.2%로 나타났다.

〈표 5-7〉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온라인’의 구체적 장소

단위: 명(%)

	사기			계
	초등	중등	고등	
인스턴트 메신저	1 (3.1)	17 (29.3)	10 (18.2)	28 (19.3)
SNS	3 (9.4)	9 (15.5)	13 (23.6)	25 (17.2)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 등	5 (15.6)	2 (3.4)	9 (16.4)	16 (11.0)
온라인 게임	17 (53.1)	10 (17.2)	5 (9.1)	32 (22.1)
온라인 쇼핑몰	5 (15.6)	17 (29.3)	16 (29.1)	38 (26.2)
이메일	1 (3.1)	3 (5.2)	2 (3.6)	6 (4.1)
계	32 (100)	58 (100)	55 (100)	145 (100)

나. 가해자 특성

1) 가해자 인지 여부 및 인구학적 특성

재산범죄 가해자의 특성과 관련하여 먼저 가해자가 누구인지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절도피해의 경우 전체적으로 가해자를 인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비율은 1,298명 중 173명으로 13.3%에 불과하였다. 특히 고등학생 피해자 중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5%였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17.1%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기 피해의 가해자 인지 비율은 전체적으로 37.2%로 절도피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사기 피해의 경우 가해자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학교급별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8〉 재산범죄피해의 가해자 인지 여부

단위: 명(%)

	절도				사기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예	58 (17.1)	63 (12.5)	52 (11.5)	173 (13.3)	63 (35.4)	117 (37.7)	92 (37.7)	272 (37.2)
아니오	282 (82.9)	442 (87.5)	401 (88.5)	1,125 (86.7)	115 (64.6)	193 (62.3)	152 (62.3)	460 (62.8)
계	340 (100)	505 (100)	453 (100)	1,298 (100)	178 (100)	310 (100)	244 (100)	732 (100)

다음으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절도피해의 경우 가해자가 1명인 경우는 80.9%였으며 나머지 19.1%는 2명 이상이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절도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가 2명 이상인 사건이 25.0%로 나타났다. 사기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1명인 비율이 88.2%로 절도범죄에 비해 높았다.

〈표 5-9〉 재산범죄피해의 가해자 수

단위: 명(%)

	절도				사기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1명	48 (82.8)	53 (84.1)	39 (75.0)	140 (80.9)	54 (87.1)	105 (90.5)	80 (86.0)	239 (88.2)
2명	5 (8.6)	8 (12.7)	5 (9.6)	18 (10.4)	3 (4.8)	4 (3.4)	7 (7.5)	14 (5.2)
3명	0 (0.0)	1 (1.6)	3 (5.8)	4 (2.3)	0 (0.0)	1 (0.9)	1 (1.1)	2 (0.7)
4명 이상	0 (0.0)	0 (0.0)	2 (3.8)	2 (1.2)	0 (0.0)	1 (0.9)	0 (0.0)	1 (0.4)
모르겠다	5 (8.6)	1 (1.6)	3 (5.8)	9 (5.2)	5 (8.1)	5 (4.3)	5 (5.4)	15 (5.5)
계	58 (100)	63 (100)	52 (100)	173 (100)	62 (100)	116 (100)	93 (100)	271 (100)

절도피해 사건에서 가해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남자가 53.4%로 절반을 넘었으며 여자는 40.8%였다. 가해자의 성별차이는 초등학생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남자인 사건의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기피해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남자인 경우가 58.5%로 여자가 가해자인 사건 비율보다 높았다.

〈표 5-10〉 재산범죄피해의 가해자 성별

단위: 명(%)

	절도				사기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남자	28 (47.5)	36 (57.1)	29 (55.8)	93 (53.4)	41 (65.1)	69 (59.5)	49 (52.7)	159 (58.5)
여자	28 (47.5)	23 (36.5)	20 (38.5)	71 (40.8)	19 (30.2)	41 (35.3)	36 (38.7)	96 (35.3)
남녀 모두	0 (0.0)	0 (0.0)	1 (1.9)	1 (0.6)	1 (1.6)	0 (0.0)	0 (0.0)	1 (0.4)
모르겠다	3 (5.1)	4 (6.3)	2 (3.8)	9 (5.2)	2 (3.2)	6 (5.2)	8 (8.6)	16 (5.9)
계	59 (100)	63 (100)	52 (100)	174 (100)	63 (100)	116 (100)	93 (100)	272 (100)

재산범죄피해 사건에서 가해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초등학생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절도의 가해자 중 89.9%, 사기 가해자 중 88.6%가 13세 이하로 조사되었다. 중학생이 피해를 보고한 경우, 가해자가 14세에서 16세인 비율이 절도 77.0%, 사기 76.5%였으며, 고등학생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17~19세인 경우가 절도 68.2%, 사기 65.1%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인 경우를 살펴보면, 절도피해 중 4.2%, 사기 피해 중 6.4%가 20대 이상이 가해자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5-11〉 재산범죄피해의 가해자 연령(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단위: 명(%)

	절도				사기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13세 이하	52 (89.9)	13 (21.0)	1 (1.4)	66 (38.1)	56 (88.6)	8 (7.0)	1 (1.0)	65 (23.8)
14~16세	4 (7.5)	48 (77.0)	12 (23.0)	65 (37.4)	5 (8.3)	89 (76.5)	16 (17.0)	110 (40.6)
17~19세	1 (1.0)	1 (2.0)	36 (68.2)	38 (21.7)	0 (0.0)	10 (8.7)	60 (65.1)	70 (25.9)
20~30대	0 (0.0)	3 (4.5)	2 (3.2)	4 (2.6)	2 (2.9)	3 (2.7)	12 (12.6)	17 (6.1)
40세 이상	0 (0.0)	2 (2.9)	1 (1.7)	3 (1.6)	0 (0.0)	0 (0.0)	1 (0.8)	1 (0.3)
모르겠음	1 (1.6)	1 (1.6)	3 (5.5)	5 (2.8)	1 (1.9)	11 (9.3)	11 (11.7)	23 (8.4)
계	58 (100)	63 (100)	52 (100)	173 (100)	63 (100)	117 (100)	92 (100)	272 (100)

2)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인지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먼저 절도피해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92.6%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가해자를 인지한 사건 모두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기피해의 경우,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비율은 절도피해보다 다소 낮은 85.7%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절도피해와 마찬가지로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사건의 비율이 초등학생에서 97.1%로 가장 높았다.

〈표 5-12〉 재산범죄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단위: 명(%)

	절도				사기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아는 사람	58 (100)	55 (85.9)	47 (89.7)	160 (92.6)	61 (97.1)	103 (88.2)	69 (74.7)	233 (85.7)
모르는 사람	0 (0.0)	9 (14.1)	5 (10.3)	14 (8.4)	2 (2.9)	14 (11.8)	23 (25.3)	39 (14.3)
계	58 (100)	64 (100)	52 (100)	173 (100)	63 (100)	117 (100)	92 (100)	272 (100)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인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살펴본 결과, 절도피해의 87.6%는 학교친구가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학교 선후배로 7.3%였으며, 초등학생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학교 선후배가 가해자인 사건의 비율은 11.8%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피해를 입은 사건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학교친구나 학교선후배가 가해자로 확인된 절도 피해사건의 비율은 94.9%에 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사기피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가해자가 학교친구인 사건의 비율이 83.6%, 학교 선후배인 사건은 7.4%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 동네친구가 사기피해의 가해자인 사건 비율이 4.5%, 얼굴만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사건의 비율은 4.8%로 나타났다.

〈표 5-13〉 재산범죄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 아는 사람 세분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단위: 명(%)

	절도				사기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학교친구	46 (80.0)	51 (92.1)	43 (91.6)	140 (87.6)	50 (81.8)	87 (84.3)	58 (84.1)	195 (83.6)
동네친구	2 (2.9)	0 (0.0)	0 (0.0)	2 (1.1)	3 (4.4)	2 (2.4)	5 (7.7)	10 (4.5)
학교 선후배	7 (11.8)	2 (4.3)	2 (5.2)	12 (7.3)	6 (10.5)	8 (7.5)	3 (4.7)	17 (7.4)
동네 선후배	2 (4.1)	1 (1.7)	1 (1.0)	4 (2.4)	2 (3.7)	2 (1.9)	1 (1.4)	5 (2.2)
잘 아는 이웃	3 (4.7)	1 (0.8)	0 (0.0)	3 (2.0)	0 (0.0)	1 (1.4)	0 (0.0)	1 (0.6)
얼굴만 아는 사람	2 (2.7)	0 (0.0)	2 (5.3)	4 (2.5)	2 (3.8)	5 (4.9)	4 (5.4)	11 (4.8)
기타	1 (2.1)	1 (1.2)	0 (0.0)	2 (1.2)	1 (2.2)	1 (1.0)	0 (0.0)	2 (1.0)
계	58 (100)	55 (100)	47 (100)	160 (100)	61 (100)	103 (100)	69 (100)	233 (100)

다. 피해 내용 및 피해 결과

1) 구체적인 피해 내용 및 상황

재산범죄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절도 피해물품과 사기 피해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먼저 절도피해에서 도난당한 물품은 학용품·책·공책·가방 등인 경우가 39.5%로 가장 많았으며 현금·수표·상품권을 도난당한 경우는 34.4%였다. 그 외의 피해물품은 화장품·악세사리 등(11.1%), 체크카드·교통카드(9.3%), 옷·신발·시계 등(8.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학용품 등을 도난당한 비율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금 등을 도난당한 경우는 20.6%였다. 이와 달리 고등학생의 경우 현금 등을 도난당한 비율이 43.4%였으며 학용품 등을 도난당한 경우는 이보다 다소 낮은 35.4%로 나타났다.

〈표 5-14〉 절도 피해물품(중복응답)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현금, 수표, 상품권	70 (20.6)	180 (35.6)	197 (43.4)	447 (34.4)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	19 (5.6)	45 (8.9)	56 (12.4)	120 (9.3)
학용품, 책, 공책, 가방 등	152 (44.8)	200 (39.6)	160 (35.4)	513 (39.5)
휴대전화, 노트북, 게임기 등	17 (4.9)	5 (1.0)	11 (2.5)	33 (2.6)
옷, 신발, 시계 등	35 (10.3)	40 (7.9)	40 (8.8)	114 (8.8)
화장품, 악세사리 등	34 (9.9)	66 (13.2)	44 (9.7)	144 (11.1)
키패드, 롤러블레이드, 자전거, 오토바이 혹은 그 부속품	31 (9.1)	30 (5.9)	7 (1.5)	67 (5.2)
기타	21 (6.3)	22 (4.4)	21 (4.6)	65 (5.0)
계	340 (100)	504 (100)	453 (100)	1,298 (100)

사기피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빌려가서 일부러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70.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터넷 중고매장이나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였으나 물건을 배송받지 못한 경우가 12.6%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인터넷 매장에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결제한 후 물건을 배송받지 못하거나 다른 상품을 배송 받은 경우, 또는 판매할 물품을 배송하였으나 돈을 지불받지 못하는 등 사기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8.5%로 조사되었다.

〈표 5-15〉 사기 피해내용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다른 사람이 내 돈이나 물건을 빌려가서 일부러 돌려주지 않음	125 (70.6)	227 (73.5)	164 (67.5)	516 (70.8)
인터넷 중고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였으나 구매한 물건을 배송 받지 못함	15 (8.5)	39 (12.6)	38 (15.6)	92 (12.6)
인터넷 중고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으나 구매한 것과 다르거나 가짜 상품을 배송받음	17 (9.6)	10 (3.2)	10 (4.1)	37 (5.1)
인터넷 중고매장에서 내 물건을 사기로 한 사람이 물건만 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음	4 (2.3)	0 (0.0)	2 (0.8)	6 (0.8)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공짜, 할인, 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속여 판매함	3 (1.7)	9 (2.9)	11 (4.5)	23 (3.2)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하게 속여 판매함	1 (0.6)	6 (1.9)	4 (1.6)	11 (1.5)
그 외의 속임(사기)으로 인한 돈이나 물건을 잃음	12 (6.8)	18 (5.8)	14 (5.8)	44 (6.0)
계	177 (100)	309 (100)	243 (100)	729 (100)

2) 피해 결과

재산범죄의 피해 결과를 피해액과 정신적 후유증, 행동적 영향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피해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도피해의 평균 피해액은 전체적으로 3만3천원, 사기피해의 평균 피해액은 2만9천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최대 피해액은 절도와 사기의 경우 모두 30만 9천원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피해액은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고등학생이 절도와 사기 평균 피해액이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생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 재산범죄 피해액

단위: 천원, 건

	절도				사기			
	초등	중등	고등	전체	초등	중등	고등	전체
평균 피해액	22.2	27.9	43.0	33.4	22.5	27.6	35.9	29.7
표준편차	28.3	37.2	59.4	47.7	30.7	48.0	60.0	50.4
최소값	1	1	1	1	1	1	1	1
최대값	200	300	309	309	120	230	309	309
사례수	91	205	223	520	46	114	92	253

3) 피해의 영향

재산범죄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절도피해를 당한 1,298명 중 16.4%인 113명, 사기피해를 당한 732명 중 13.4%인 98명이 한 가지 이상의 후유증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절도피해를 당한 응답자 가운데 11.4%가 우울함을 겪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사기피해 응답자 가운데 이러한 비율은 7.8%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절도피해로 인한 우울함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초등학생 11.3%, 중학생 9.9%, 고등학생 13.2%였으며, 사기피해로 인한 우울함을 경험한 비율은 초등학생 10.6%, 중학생 7.4%, 고등학생 6.3%였다. 나아가 재산범죄 피해로 인해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적 어려움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거나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절도피해자 중 1.9%, 사기피해자 중 3.0%로 나타났다.

〈표 5-17〉 재산범죄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단위: 명(%)

	절도				사기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우울함	38 (11.3)	50 (9.9)	60 (13.2)	148 (11.4)	19 (10.6)	23 (7.4)	15 (6.3)	57 (7.8)
고립감	25 (7.5)	23 (4.5)	18 (4.0)	66 (5.1)	9 (5.3)	12 (3.7)	8 (3.3)	29 (4.0)
두려움	17 (4.9)	19 (3.7)	20 (4.5)	56 (4.3)	6 (3.6)	9 (2.9)	5 (2.1)	21 (2.8)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19 (5.6)	24 (4.7)	16 (3.6)	59 (4.5)	8 (4.5)	9 (3.1)	5 (1.9)	22 (3.0)
부정적 자존감	16 (4.7)	24 (4.8)	16 (3.4)	56 (4.3)	5 (3.0)	14 (4.6)	8 (3.2)	27 (3.7)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	10 (2.9)	19 (3.8)	11 (2.5)	40 (3.1)	9 (5.2)	10 (3.2)	8 (3.1)	27 (3.7)
가족관계·친구관계 어려움	14 (4.1)	18 (3.6)	13 (2.8)	45 (3.5)	6 (3.6)	13 (4.1)	7 (2.9)	26 (3.6)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받음	8 (2.3)	11 (2.2)	6 (1.4)	25 (1.9)	7 (4.0)	13 (4.3)	1 (0.6)	22 (3.0)
해당 없음	283 (83.2)	424 (84.0)	378 (83.5)	1,085 (83.6)	149 (83.4)	266 (86.0)	219 (89.7)	634 (86.6)
사례수	340 (100)	504 (100)	453 (100)	1,298 (100)	178 (100)	309 (100)	244 (100)	732 (100)

절도피해로 인하여 사람을 피해서 이사 또는 전학을 간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4%였으며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알려지지 않고 학교에 결석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1.4%,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하룻밤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응답자는 1.7%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행동적 영향이 없었던 응답자 비율은 97.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사기피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사·전학, 무단결석이나 가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97.2%였다.

〈표 5-18〉 재산범죄피해의 행동적 영향(중복응답)

단위: 명(%)

	절도				사기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이사 또는 전학	10 (2.8)	6 (1.3)	2 (0.5)	18 (1.4)	4 (2.2)	6 (2.0)	2 (0.9)	12 (1.7)
무단결석	5 (1.4)	7 (1.3)	7 (1.6)	19 (1.4)	4 (2.3)	2 (0.8)	1 (0.5)	8 (1.0)
가출	6 (1.9)	10 (2.0)	6 (1.3)	22 (1.7)	2 (1.3)	3 (0.9)	2 (1.0)	7 (1.0)
해당 없음	326 (96.0)	493 (97.7)	442 (97.6)	1,261 (97.2)	171 (96.1)	300 (97.1)	240 (98.2)	711 (97.2)
사례수	340 (100)	504 (100)	453 (100)	1,298 (100)	178 (100)	309 (100)	244 (100)	732 (100)

라. 피해자의 사후 대응

재산범죄 피해경험 후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응답자의 비율은 절도피해자 중 27.9%, 사기피해자 중 38.2%로 나타났다. 절도피해의 경우, 사건에 대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응답자 비율은 초등학생이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 28.4%, 고등학생 23.8%의 순이었다. 한편, 절도피해에 대해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초등학생이 51.8%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 44.6%, 고등학생 43.7%였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친구에게 이야기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8.6%로 부모님에게 이야기한 응답자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기피해의 경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응답자 비율이 초등학생 31.5%, 중학생 41.4%, 고등학생 38.9%였으며, 부모님에게 이야기한 경우는 초등학생 53.9%, 중학생 34.3%, 고등학생 31.0%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고등학생의 경우 절도피해보다 사기피해를 입은 경우 부모님에게 이를 알리는 비율이 낮으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비율이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19〉 재산범죄피해 보고여부 및 대상(중복응답)

단위: 명(%)

	절도				사기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부모님	176 (51.8)	225 (44.6)	198 (43.7)	599 (46.2)	96 (53.9)	106 (34.3)	76 (31.0)	278 (38.0)
부모님 외 가족	26 (7.6)	67 (13.3)	49 (10.8)	142 (10.9)	13 (7.3)	29 (9.4)	15 (6.1)	57 (7.8)
선생님	49 (14.4)	112 (22.2)	92 (20.3)	253 (19.5)	12 (6.7)	30 (9.7)	18 (7.4)	60 (8.2)
친구	84 (24.7)	198 (39.3)	220 (48.6)	502 (38.7)	46 (25.8)	85 (27.5)	78 (31.8)	209 (28.6)
경찰관	4 (1.2)	4 (0.8)	5 (1.1)	13 (1.0)	3 (1.7)	6 (1.9)	5 (2.0)	14 (1.9)
상담가, 의사	3 (0.9)	0 (0.0)	6 (1.3)	9 (0.7)	1 (0.6)	6 (1.9)	1 (0.4)	8 (1.1)
그 외 다른 사람	9 (2.6)	20 (4.0)	15 (3.3)	44 (3.4)	8 (4.5)	11 (3.6)	10 (4.1)	29 (4.0)
보고 안함	111 (32.6)	143 (28.4)	108 (23.8)	362 (27.9)	56 (31.5)	128 (41.4)	95 (38.9)	279 (38.2)
계	340 (100)	504 (100)	453 (100)	1,297 (100)	178 (100)	309 (100)	244 (100)	731 (100)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피해가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도피해의 경우 78.3%, 사기피해의 경우 8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특히 중학생 응답자 가운데 높았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하여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자 비율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다소 낮았다. 절도피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초등학생 중 약 19%는 증거가 없거나 피해사실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알리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표 5-20〉 재산범죄피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절도				사기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77 (69.4)	122 (84.7)	86 (78.9)	285 (78.3)	42 (76.4)	105 (82.7)	77 (81.1)	224 (80.9)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해서	1 (0.9)	0 (0.0)	1 (0.9)	2 (0.5)	4 (7.3)	4 (3.1)	3 (3.2)	11 (4.0)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11 (9.9)	9 (6.3)	8 (7.3)	28 (7.7)	4 (7.3)	2 (1.6)	5 (5.3)	11 (4.0)
이야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7 (6.3)	0 (0.0)	4 (3.7)	11 (3.0)	1 (1.8)	6 (4.7)	6 (6.3)	13 (4.7)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서	2 (1.8)	3 (2.1)	1 (0.9)	6 (1.6)	0 (0.0)	5 (3.9)	0 (0.0)	5 (1.8)
보복이 두려워서	3 (2.7)	0 (0.0)	2 (1.8)	5 (1.4)	1 (1.8)	0 (0.0)	0 (0.0)	1 (0.4)
내가 겪은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10 (9.0)	10 (6.9)	7 (6.4)	27 (7.4)	3 (5.5)	5 (3.9)	4 (4.2)	12 (4.3)
계	111 (100)	144 (100)	109 (100)	364 (100)	55 (100)	127 (100)	95 (100)	277 (100)

그렇다면 재산범죄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는 피해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한 경우를 모두 질문한 후 경찰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구체적으로 누가 신고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 먼저 절도피해사실이 경찰에 신고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298명 중 47명으로 3.6%에 불과하였다. 사기피해가 경찰에 신고된 경우는 733명 중 4.8%인 35명으로 절도피해에 비해 신고율이 약간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재산범죄피해가 경찰에 신고되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표 5-21〉 재산범죄피해 경찰신고 여부

단위: 명(%)

	절도				사기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신고했다	13 (3.8)	19 (3.8)	15 (3.3)	47 (3.6)	10 (5.6)	14 (4.5)	11 (4.5)	35 (4.8)
신고하지 않았다	327 (96.2)	486 (96.2)	438 (96.7)	1251 (96.4)	168 (94.4)	296 (95.5)	234 (95.5)	698 (95.2)
계	340 (100)	505 (100)	453 (100)	1,298 (100)	178 (100)	310 (100)	245 (100)	733 (100)

절도피해사실이 경찰에 신고된 경우,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57.4%였다. 이러한 비율은 학교급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고등학생 중 본인이 직접 신고한 비율은 66.7%, 중학생 63.2%인데 비하여 초등학생 중 본인이 신고했다고 보고한 사례는 38.5%였다. 사기피해를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비율 역시 중학생은 76.9%, 고등학생이 72.7%인데 비하여 초등학생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30.0%에 그쳤다. 초등학생의 경우 절도와 사기피해 모두 본인보다 가족이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2〉 재산범죄피해 경찰 신고자

단위: 명(%)

	절도				사기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본인	5 (38.5)	12 (63.2)	10 (66.7)	27 (57.4)	3 (30.0)	10 (76.9)	8 (72.7)	21 (61.8)
가족	3 (23.1)	1 (5.3)	2 (13.3)	6 (12.8)	5 (50.0)	2 (15.4)	1 (9.1)	8 (23.5)
선생님	0 (0.0)	1 (5.3)	2 (13.3)	3 (6.4)	0 (0.0)	0 (0.0)	0 (0.0)	0 (0.0)
친구	5 (38.5)	3 (15.8)	1 (6.7)	9 (19.1)	2 (20.0)	0 (0.0)	0 (0.0)	2 (5.9)
상담가, 의사	0 (0.0)	2 (10.5)	0 (0.0)	2 (4.3)	0 (0.0)	1 (7.7)	1 (9.1)	2 (5.9)
그 외 다른 사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9.1)	1 (2.9)
계	13 (100)	19 (100)	15 (100)	47 (100)	10 (100)	13 (100)	11 (100)	34 (100)

2. 폭력범죄피해

가. 피해발생 일시와 장소

1) 피해발생 일시

폭력범죄의 피해실태에서는 갈취와 폭행·협박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⁴²⁾ 먼저, 사건조사표에서 가장 최근에 경험한 갈취피해의 발생시기를 질문한 결과 6월에서 8월 사이인 여름에 갈취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59.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을 15.9%, 겨울 12.3%, 봄 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폭행이나 협박피해를 당한 시기 역시 여름이 56.2%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갈취피해와 달리 폭행·협박피해는 봄에 발생하는 비율이 24.6%로 다소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을 15.4%, 겨울 6.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3〉 폭력범죄피해 발생 계절

단위: 명, 건(%)

	갈취				폭행·협박(중복응답)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봄(3~5월)	10 (8.8)	13 (16.9)	7 (11.3)	30 (11.9)	41 (22.5)	31 (23.0)	25 (32.9)	96 (24.6)
여름(6~8월)	71 (62.8)	46 (59.7)	34 (54.8)	151 (59.9)	108 (59.4)	81 (60.9)	30 (40.1)	220 (56.2)
가을(9~11월)	18 (15.9)	11 (14.3)	11 (17.7)	40 (15.9)	23 (12.5)	22 (16.3)	15 (20.7)	60 (15.4)
겨울(12~2월)	14 (12.4)	7 (9.1)	10 (16.1)	31 (12.3)	13 (7.4)	4 (3.3)	7 (9.4)	25 (6.4)
계	113 (100)	77 (100)	62 (100)	252 (100)	182 (100)	134 (100)	75 (100)	391 (100)

갈취피해가 발생한 시각은 한낮부터 오후사이(12~18시)가 24.4%로, 구체적인 발생 시각을 회상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폭행·협박피해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대에 발생한 비율이 38.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폭력범죄피

42) '폭행·협박'의 피해실태는 사건조사표에서 폭행과 협박피해를 각각 구분하여 조사한 것을 합하여 통계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폭행·협박 피해실태는 건수 기준으로 하였으며, 아래 분석에서는 폭행과 협박피해를 모두 경험한 응답자의 경우 2건으로 파악하였다.

해가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아침부터 오전사이(06~12시)로 갈취피해 중 13.6%, 폭행·협박피해 중 13.0%가 이 시간대에 발생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저녁부터 새벽사이(18~06시)에 갈취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16.1%, 폭행·협박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24.1%로 조사되었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도 이 시간대에 폭행·협박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한 비율이 21.4%로 나타나 해당 시간대에 피해를 보고한 비율이 낮은 초등학생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5-24〉 폭력범죄피해 발생 시각

단위: 명, 건(%)

	갈취				폭행·협박(중복응답)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아침-오전 (06~12시)	21 (18.9)	10 (13.0)	3 (4.8)	34 (13.6)	19 (10.4)	22 (16.4)	10 (13.4)	51 (13.0)
한낮-오후 (12~18시)	26 (23.4)	21 (27.3)	14 (22.6)	61 (24.4)	78 (43.0)	45 (33.3)	26 (34.8)	149 (38.1)
저녁-밤 (18~24시)	2 (1.8)	4 (5.2)	3 (4.8)	9 (3.6)	4 (2.0)	20 (14.9)	14 (18.6)	38 (9.6)
심야-새벽 (24~06시)	4 (3.6)	1 (1.3)	7 (11.3)	12 (4.8)	3 (1.7)	9 (6.5)	4 (5.5)	16 (4.1)
알 수 없음	58 (52.3)	41 (53.2)	35 (56.5)	134 (53.6)	86 (47.4)	48 (36.3)	24 (32.2)	159 (40.7)
계	111 (100)	77 (100)	62 (100)	250 (100)	182 (100)	134 (100)	75 (100)	391 (100)

2) 피해발생 장소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갈취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학교나 학교근처로 51.2%였으며 집에서 발생한 경우가 24.6%,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에서 발생한 경우는 20.6%였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경우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에서 갈취피해가 발생한 비율이 30.2%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보다 높았으며, 초등학생은 집에서 갈취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28.6%로 다소 높았다. 폭행이나 협박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 역시 학교나 학교근처가 55.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집에서 폭행·협박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17.6%,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가 13.8%였으며, 온라인 상에서 협박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한 비율도 11.5%에 달하였다.

〈표 5-25〉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

단위: 명, 건(%)

	갈취				폭행·협박(중복응답)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집	32 (28.6)	19 (24.7)	11 (17.5)	62 (24.6)	31 (17.2)	26 (19.5)	11 (14.9)	69 (17.6)
학교나 학교근처	52 (46.4)	45 (58.4)	32 (50.8)	129 (51.2)	103 (56.5)	73 (54.7)	40 (53.0)	216 (55.2)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	23 (20.5)	10 (13.0)	19 (30.2)	52 (20.6)	30 (16.3)	15 (11.5)	9 (11.7)	54 (13.8)
온라인	0 (0.0)	0 (0.0)	0 (0.0)	0 (0.0)	12 (6.5)	18 (13.8)	15 (19.6)	45 (11.5)
기타	5 (4.5)	3 (3.9)	1 (1.6)	9 (3.6)	14 (7.6)	9 (6.8)	4 (4.9)	27 (6.8)
계	112 (100)	77 (100)	63 (100)	252 (100)	182 (100)	134 (100)	75 (100)	391 (100)

폭력범죄피해가 집에서 발생한 경우 구체적으로 누구의 집에서 발생하였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본인의 집에서 갈취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71.0%, 폭행·협박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6.3%였다. 다음으로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이 아닌 제3자의 집에서 갈취피해를 입은 비율은 17.7%였으며,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 중 이러한 비율은 각각 26.3%와 27.3%로 나타났다. 폭행·협박피해의 경우에도 제3자의 집에서 피해를 경험한 사건비율이 17.6%였으며 이러한 비율은 고등학생 중 29.3%로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표 5-26〉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집'의 구체적 장소

단위: 명, 건(%)

	갈취				폭행·협박(중복응답)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우리집	23 (71.9)	14 (73.7)	7 (63.6)	44 (71.0)	26 (81.6)	19 (74.5)	7 (65.8)	52 (76.3)
상대방의 집	6 (18.8)	0 (0.0)	1 (9.1)	7 (11.3)	3 (9.2)	2 (8.4)	2 (13.9)	7 (9.7)
다른 사람의 집	3 (9.4)	5 (26.3)	3 (27.3)	11 (17.7)	4 (13.9)	4 (17.1)	3 (29.3)	12 (17.6)
계	32 (100)	19 (100)	11 (100)	62 (100)	31 (100)	26 (100)	11 (100)	69 (100)

갈취피해가 학교나 학교 근처에서 발생한 경우 교실에서 사건이 일어난 비율은 68.2%였으며,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곳은 운동장(10.1%)이었다. 학교급별로는 교실에서 갈취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한 응답자 비율이 초등학생의 경우 57.7%, 중학생 75.6%, 고등학생 75.0%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운동장에서 갈취피해를 입은 비율이 13.5%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하여 다소 높았다. 폭행·협박피해가 발생한 장소 역시 교실이 58.1%로 가장 높았다. 폭행·협박피해가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장소는 운동장(12.6%)과 복도·계단·옥상(10.9%)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운동장에서 폭행·협박피해 사건이 발생한 비율이 19.1%였으며, 중학생은 복도·계단·옥상에서 피해를 입은 사건비율이 20.5%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5-27〉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학교나 학교 근처'의 구체적 장소

단위: 명, 건(%)

	갈취				폭행·협박(중복응답)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교실	30 (57.7)	34 (75.6)	24 (75.0)	88 (68.2)	58 (56.4)	43 (59.4)	24 (60.3)	126 (58.1)
복도·계단·옥상	1 (1.9)	4 (8.9)	0 (0.0)	5 (3.9)	5 (5.0)	15 (20.5)	4 (8.8)	24 (10.9)
화장실·라커룸	3 (5.8)	2 (4.4)	1 (3.1)	6 (4.7)	1 (0.8)	2 (3.0)	1 (3.5)	4 (2.0)
도서관, 체육관, 강당, 매점 등 학교 내부시설	3 (5.8)	0 (0.0)	2 (6.3)	5 (3.9)	8 (7.8)	3 (4.7)	5 (13.6)	17 (7.8)
운동장	7 (13.5)	4 (8.9)	2 (6.3)	13 (10.1)	20 (19.1)	6 (8.4)	1 (3.5)	27 (12.6)
학교 담장 주변, 학교 근처 골목	1 (1.9)	0 (0.0)	0 (0.0)	1 (0.8)	3 (2.8)	0 (0.0)	2 (4.0)	4 (2.1)
학교 근처 공터나 주차장	6 (11.5)	1 (2.2)	2 (6.3)	9 (7.0)	5 (4.8)	5 (6.3)	3 (8.7)	13 (6.0)
학교 뒷산	0 (0.0)	0 (0.0)	1 (3.1)	1 (0.8)	2 (1.8)	1 (1.2)	0 (0.0)	3 (1.3)
기타	1 (1.9)	0 (0.0)	0 (0.0)	1 (0.8)	6 (5.9)	0 (0.0)	1 (1.4)	7 (3.1)
계	52 (100)	45 (100)	32 (100)	129 (100)	103 (100)	73 (100)	40 (100)	216 (100)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에서 갈취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한 응답자 가운데 53.1%, 폭행·협박피해 사건 가운데 64.6%가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답했다. 갈취피해가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장소는 PC방·노래방·당구장 등으로 16.3%, 상점이나 상업건물이 18.4%였으며,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이러한 장소에서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생은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갈취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한 비율이 72.7%로 중고등학생에 비해 높았다. 폭행·협박피해 사건의 경우에도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사건이 발생한 비율이 64.6%였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이러한 비율은 74.8%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생이 폭행이나 협박피해를 경험한 사건 중 PC방·노래방·당구장이나 상점·상업건물에서 발생한 사건의 비율은 각각 33.7%와 36.4%로,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과 달리 학원·독서실을 제외하면 다른 공간에서 폭행·협박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표 5-28〉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의 구체적 장소

단위: 명, 건(%)

	갈취				폭행·협박(중복응답)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학원, 독서실	16 (72.7)	2 (22.2)	8 (44.4)	26 (53.1)	22 (74.8)	7 (47.6)	5 (60.0)	35 (64.6)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1 (4.5)	4 (44.4)	3 (16.7)	8 (16.3)	1 (4.2)	5 (33.7)	2 (18.2)	8 (14.9)
상점이나 상업건물	3 (13.6)	2 (22.2)	4 (22.2)	9 (18.4)	4 (13.5)	6 (36.4)	2 (21.8)	12 (21.4)
극장, 공연장	1 (4.5)	1 (11.1)	3 (16.7)	5 (10.2)	0 (0.0)	0 (0.0)	0 (0.0)	0 (0.0)
기타	1 (4.5)	0 (0.0)	0 (0.0)	1 (2.0)	2 (7.5)	0 (0.0)	0 (0.0)	2 (4.1)
계	22 (100)	9 (100)	18 (100)	49 (100)	30 (100)	15 (100)	9 (100)	54 (100)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물리적 대면이 이루어지는 갈취나 폭행피해 사건과 달리 협박은 온라인 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협박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 이 중 절반은 SNS에서 피해를 당했으며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해 협박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3.6%였고 온라인 게임 상에서 협박을 당한 경우도 11.4%로 나타났다.

〈표 5-29〉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온라인'의 구체적 장소

단위: 명(%)

	협박			계
	초등	중등	고등	
인스턴트 메신저	3 (27.3)	1 (5.6)	2 (13.3)	6 (13.6)
SNS	3 (27.3)	10 (55.6)	9 (60.0)	22 (50.0)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 등	1 (9.1)	0 (0.0)	1 (6.7)	2 (4.5)
온라인 게임	2 (18.2)	2 (11.1)	1 (6.7)	5 (11.4)
온라인 쇼핑몰	0 (0.0)	2 (11.1)	1 (6.7)	3 (6.8)
이메일	2 (18.2)	3 (16.7)	1 (6.7)	6 (13.6)
계	11 (100)	18 (100)	15 (100)	44 (100)

나. 가해자 특성

1) 가해자의 인구학적 특성

폭력범죄피해의 가해자 수를 살펴본 결과, 피해발생 사건 중 가해자가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비율은 갈취피해 중 5.2%, 폭행·협박피해 중 24.3%였다. 갈취피해의 경우 가해자가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2.8%였으며, 초등학생 중 44.1%, 중학생 중 28.6%, 고등학생 중 17.7%가 여기에 해당하였다. 폭행·협박피해 사건 중 가해자가 1명이었다고 보고된 비율은 이보다 다소 높은 49.2%였고, 특히 고등학생이 피해를 입은 사건 중 55.4%는 가해자가 1명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5-30〉 폭력범죄피해의 가해자 수

단위: 명, 건(%)

	갈취				폭행·협박(중복응답)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1명	49 (44.1)	22 (28.6)	11 (17.7)	82 (32.8)	93 (50.8)	58 (43.4)	42 (55.4)	192 (49.2)
2명	3 (2.7)	2 (2.6)	1 (1.6)	6 (2.4)	12 (6.4)	15 (11.3)	9 (11.4)	35 (9.0)
3명	1 (0.9)	1 (1.3)	1 (1.6)	3 (1.2)	6 (3.5)	9 (6.9)	11 (15.2)	27 (6.9)
4명 이상	0 (0.0)	1 (1.3)	3 (4.8)	4 (1.6)	12 (6.7)	16 (12.3)	4 (5.5)	33 (8.4)
모르겠다	58 (52.3)	51 (66.2)	46 (74.2)	155 (62.0)	69 (37.7)	43 (32.0)	14 (18.8)	125 (32.1)
계	111 (100)	77 (100)	62 (100)	250 (100)	182 (100)	134 (100)	75 (100)	391 (100)

폭력범죄피해의 가해자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갈취 피해자 중 가해자가 남자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26.2%, 여자가 가해자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11.9%였으며, 가해자의 성별차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피해를 입은 사건보다 고등학생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폭행·협박피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남자인 사건 비율은 50.6%, 여자인 사건 비율은 18.2%로 가해자의 성별 비율 차이가 갈취피해보다 크게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이 폭행·협박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가해자가 남자인 사건 비율은 49.6%로 여자가 가해자인 사건 비율 11.7%보다 4배 이상 높았다.

〈표 5-31〉 폭력범죄피해의 가해자 성별

단위: 명, 건(%)

	갈취				폭행·협박(중복응답)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남자	37 (33.0)	15 (19.5)	14 (22.2)	66 (26.2)	97 (53.5)	66 (49.6)	34 (45.4)	198 (50.6)
여자	19 (17.0)	8 (10.4)	3 (4.8)	30 (11.9)	39 (21.4)	16 (11.7)	16 (22.0)	71 (18.2)
남녀 모두	1 (0.9)	0 (0.0)	1 (1.6)	2 (0.8)	11 (6.0)	13 (9.8)	11 (14.8)	35 (9.0)
모르겠다	55 (49.1)	54 (70.1)	45 (71.4)	154 (61.1)	40 (22.2)	46 (34.2)	18 (23.5)	104 (26.5)
계	112 (100)	77 (100)	63 (100)	252 (100)	182 (100)	134 (100)	75 (100)	391 (100)

폭력범죄피해의 가해자 연령을 질문한 문항에서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인 사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행·협박피해 사건에서 초등학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가 13세 이하인 사건 비율이 67.7%였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같은 연령대의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사건 비율이 각각 54.7%와 70.0%로 조사되었다. 20세 이상의 성인에게 피해를 입은 사건 비율은 갈취피해 3.3%, 폭행·협박피해 7.8%로 확인되었다.

〈표 5-32〉 폭력범죄피해의 가해자 연령(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단위: 명, 건(%)

	갈취				폭행·협박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13세 이하	49 (43.6)	6 (7.3)	5 (7.4)	59 (23.2)	124 (67.7)	12 (8.9)	3 (3.5)	138 (35.3)
14~16세	13 (11.6)	20 (25.6)	6 (9.1)	38 (15.1)	8 (4.2)	73 (54.7)	9 (11.8)	89 (22.9)
17~19세	2 (1.8)	5 (5.9)	12 (18.8)	18 (7.2)	5 (3.0)	9 (7.0)	45 (60.0)	60 (15.3)
20~30대	1 (1.2)	1 (1.9)	1 (1.2)	4 (1.4)	6 (3.0)	8 (5.8)	5 (6.0)	18 (4.5)
40세 이상	3 (2.8)	1 (0.9)	1 (1.6)	5 (1.9)	4 (2.2)	4 (3.2)	5 (6.3)	13 (3.3)
모르겠음	46 (41.1)	46 (59.7)	38 (61.8)	130 (51.2)	45 (24.7)	42 (31.8)	15 (19.9)	102 (26.2)
계	111 (100)	77 (100)	62 (100)	250 (100)	182 (100)	134 (100)	75 (100)	391 (100)

2)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갈취피해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응답자 중 절반이 약간 넘는 53.5%는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었다고 답했으며, 이러한 비율은 초등학생이 69.2%로 중학생(45.5%)이나 고등학생(35.1%)보다 다소 높았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모르는 사람에게 갈취피해를 입은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협박피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8.2%로 갈취피해보다 25% 가량 높았으며, 학교급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표 5-33〉 폭력범죄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단위: 명, 건(%)

	갈취				폭행·협박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아는 사람	77 (69.2)	35 (45.5)	22 (35.1)	134 (53.5)	150 (82.2)	98 (73.3)	58 (77.2)	306 (78.2)
모르는 사람	38 (34.3)	44 (57.8)	43 (68.6)	125 (50.0)	45 (24.5)	42 (31.1)	22 (29.7)	108 (27.7)
계	111 (100)	77 (100)	62 (100)	250 (100)	182 (100)	134 (100)	75 (100)	391 (100)

폭력범죄피해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아는 사람인 경우, 학교친구가 가해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갈취피해와 폭행·협박피해 모두 74% 이상이었다. 이러한 비율은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학교친구가 가해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이보다 다소 낮았다. 피해자의 학교 선후배가 가해자인 사건 비율은 갈취피해 중 8.2%, 폭행·협박피해 중 11.9%를 차지하였으며, 폭행·협박피해 사건 중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비율은 각각 19.1%와 17.0%였다. 그 외에 얼굴만 아는 사람이나 잘 아는 이웃이 가해자인 사건의 비율은 갈취피해의 경우 9.3%와 7.4%, 폭행·협박피해 사건은 각각 5.8%와 5.6%로 조사되었다.

〈표 5-34〉 폭력범죄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 아는 사람 세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단위: 명, 건(%)

	갈취				폭행·협박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학교친구	57 (74.5)	27 (78.1)	15 (70.9)	100 (74.9)	120 (79.8)	76 (77.4)	32 (55.3)	227 (74.4)
동네친구	8 (10.3)	0 (0.0)	2 (8.1)	10 (7.2)	9 (6.1)	7 (6.8)	3 (4.5)	18 (6.0)
학교 선후배	8 (10.7)	1 (1.8)	2 (9.7)	11 (8.2)	8 (5.4)	19 (19.1)	10 (17.0)	37 (11.9)
동네 선후배	2 (2.1)	0 (0.0)	1 (2.9)	2 (1.7)	6 (3.8)	1 (1.5)	2 (3.4)	9 (3.0)
잘 아는 이웃	3 (3.7)	4 (10.4)	3 (15.6)	10 (7.4)	5 (3.0)	5 (5.3)	7 (12.9)	17 (5.6)
얼굴만 아는 사람	8 (9.8)	4 (12.6)	1 (2.2)	12 (9.3)	9 (6.2)	3 (3.2)	5 (9.2)	18 (5.8)
기타	1 (1.9)	1 (2.8)	0 (0.0)	2 (1.8)	5 (3.1)	2 (2.2)	3 (4.8)	10 (3.2)
계	77 (100)	35 (100)	22 (100)	134 (100)	150 (100)	98 (100)	58 (100)	306 (100)

폭력범죄피해 사건의 가해자 특성과 관련하여 피해당시 가해자의 음주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갈취피해 당시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응답은 1.2%로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폭행·협박피해 사건의 경우 3.5%가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갈취피해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5-35〉 폭력범죄피해 당시 가해자 음주여부

단위: 명, 건(%)

	갈취				폭행·협박(중복응답)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그렇다	2 (1.8)	0 (0.0)	1 (1.6)	3 (1.2)	6 (3.0)	3 (2.5)	5 (6.8)	14 (3.5)
아니다	53 (47.7)	28 (36.4)	16 (25.8)	97 (38.8)	132 (72.4)	87 (65.5)	47 (62.3)	266 (68.1)
모르겠다	56 (50.5)	49 (63.6)	45 (72.6)	150 (60.0)	49 (27.0)	47 (35.3)	25 (34.0)	122 (31.1)
계	111 (100)	77 (100)	62 (100)	250 (100)	182 (100)	134 (100)	75 (100)	391 (100)

다. 피해 내용 및 피해 결과

1) 구체적인 피해 내용 및 상황

가) 신체공격 유무 및 피해 내용

갈취피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신체공격을 한 경우는 12.4%였으며, 직접적인 신체공격은 하지 않았지만 폭행하겠다고 겁을 주는 등 협박을 한 경우는 87.6%였다. 갈취피해 당시 신체공격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생이 14.3%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생 12.5%, 고등학생 9.7%의 순으로 나타났다. 폭행이나 협박피해를 당했다고 보고한 응답자 가운데 폭행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66.3%였으며, 협박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46.8%로 조사되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이 폭행피해를 입은 비율이 76.4%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은 협박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54.7%로 폭행피해보다 높았다.

〈표 5-36〉 폭력범죄피해에서 신체 공격 유무

단위: 명, 건(%)

	갈취				폭행·협박(중복응답)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신체공격을 했다	14 (12.5)	11 (14.3)	6 (9.7)	31 (12.4)	139 (76.4)	78 (58.6)	41 (55.4)	258 (66.3)
신체공격은 없었으나 폭행의 위협을 했다	98 (87.5)	66 (85.7)	56 (90.3)	220 (87.6)	69 (37.9)	73 (54.5)	41 (54.7)	183 (46.8)
계	112 (100)	77 (100)	62 (100)	251 (100)	182 (100)	134 (100)	75 (100)	391 (100)

가해자가 직접적인 신체공격 없이 피해자를 협박한 갈취피해 사건에서는 뒤쫓아 오거나 주위를 에워싸서 협박한 경우가 8.2%, 때리거나 죽이겠다고 말로 겁을 준 경우가 7.2%였다. 협박피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말로 협박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2%로 가장 많았으며, SNS나 온라인에서 협박을 당한 경우도 26.0%에 달하였다. 그 외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을 보여주며 협박한 사건의 비율은 9.4%였는데, 이러한 비율은 초등학생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18.4%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5-37〉 폭력범죄피해에서 협박 내용(중복응답)

단위: 명(%)

	갈취				협박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때리거나 죽이겠다고 말로 겁을 줌	8 (8.4)	4 (6.5)	3 (5.8)	16 (7.2)	27 (38.9)	23 (32.0)	16 (39.3)	66 (36.2)
칼이나 막대기 등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을 보여주며 겁을 줌	1 (0.9)	2 (3.1)	1 (1.7)	4 (1.8)	13 (18.4)	0 (0.0)	3 (6.2)	15 (8.4)
뒤쫓아 오거나 주위를 에워싸서 겁을 주거나 협박함	8 (8.4)	2 (3.7)	7 (13.1)	18 (8.2)	4 (5.3)	13 (17.4)	4 (9.7)	20 (11.1)
SNS나 온라인에서 나를 실제로 찾아와 때리겠다는 등의 겁을 줌	-	-	-	-	15 (22.3)	20 (27.0)	13 (30.6)	48 (26.0)
그 외 다른 방법으로 겁을 줌	80 (82.5)	59 (88.9)	48 (84.9)	187 (85.0)	17 (24.9)	24 (33.1)	11 (26.5)	52 (28.5)
계	98 (100)	66 (100)	56 (100)	220 (100)	69 (100)	73 (100)	41 (100)	183 (100)

폭행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신체공격 내용을 살펴보았다. 갈취피해 당시 신체공격은 발로 차거나 손이나 주먹으로 때린 경우가 44.6%로 가장 많았으며, 여러 사람이 무리지어 달려들거나 공격한 경우가 13.2%, 물건을 던진 경우가 10.7% 등이었다. 금품 갈취 없이 폭행만 발생한 사건에서도 발로 차거나 손이나 주먹으로 때린 경우가 53.6%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몸을 거칠게 밀거나 목을 조른 사건이 20.6%, 여러 사람이 무리지어 공격한 경우가 9.4%였다.

〈표 5-38〉 폭력범죄피해에서 신체공격 내용(중복응답)

단위: 명(%)

	갈취				폭행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발로 차거나 손이나 주먹으로 때림	6 (42.5)	5 (43.8)	3 (50.7)	14 (44.6)	66 (47.1)	48 (61.3)	25 (60.8)	139 (53.6)
몸을 거칠게 밀거나 목을 조름	1 (8.9)	0 (0.0)	1 (13.1)	2 (6.6)	32 (23.0)	13 (17.0)	8 (19.5)	53 (20.6)
막대기, 유리병 등 물건을 사용하여 때림	1 (5.8)	0 (0.0)	2 (32.9)	3 (9.1)	4 (2.7)	5 (6.6)	1 (2.3)	10 (3.8)
돌, 의자 등 무거운 물건을 나에게 던짐	0 (0.0)	1 (13.6)	2 (29.8)	3 (10.7)	1 (0.9)	5 (6.1)	2 (4.5)	8 (3.0)
여러 사람이 무리지어 나에게 달려들거나 공격함	1 (3.4)	2 (18.6)	2 (26.3)	4 (13.2)	9 (6.5)	10 (12.6)	5 (12.9)	24 (9.4)
그 외 다른 폭행	6 (46.2)	5 (47.4)	2 (25.8)	13 (42.6)	48 (34.5)	29 (37.4)	10 (24.0)	87 (33.7)
계	14 (100)	11 (100)	6 (100)	30 (100)	139 (100)	78 (100)	41 (100)	259 (100)

나) 피해 당시 피해자의 상황 및 행동

폭력범죄피해 당시 피해자의 상황 및 행동을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 유무 및 동반피해, 그리고 피해자의 자기보호 노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갈취피해가 발생한 당시 현장에 피해자와 가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응답 비율은 17.7%였으며, 나머지 82.3%는 현장에 가해자와 피해자 본인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폭행·협박피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사건 비율은 46.9%로 절반에 가까웠다.

〈표 5-39〉 폭력범죄피해 당시 같이 있던 사람의 존재 여부

단위: 명, 건(%)

	갈취				폭행·협박(중복응답)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있었다	22 (19.8)	13 (17.1)	9 (14.5)	44 (17.7)	89 (49.0)	62 (46.2)	32 (43.1)	183 (46.9)
없었다	89 (80.2)	63 (82.9)	53 (85.5)	205 (82.3)	96 (52.8)	77 (58.0)	45 (59.6)	218 (55.9)
계	111 (100)	76 (100)	62 (100)	249 (100)	182 (100)	134 (100)	75 (100)	391 (100)

그렇다면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피해자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갈취피해 사건 당시 응답자 본인 외에도 다른 사람이 동반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된 사건은 다른 사람이 현장에 있었던 사건 중 21.7%였으며, 폭행·협박피해 사건의 경우 이러한 비율은 3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0〉 폭력범죄피해 당시 같이 있던 사람의 동반피해 여부

단위: 명, 건(%)

	갈취				폭행·협박(중복응답)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있었다	5 (22.7)	3 (21.4)	2 (20.0)	10 (21.7)	38 (42.1)	21 (34.5)	12 (37.5)	71 (38.7)
없었다	17 (77.3)	11 (78.6)	8 (80.0)	36 (78.3)	52 (57.9)	45 (72.0)	20 (62.5)	116 (63.5)
계	22 (100)	14 (100)	10 (100)	46 (100)	89 (100)	62 (100)	32 (100)	183 (100)

폭력범죄피해 당시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갈취피해 사건 중 26.3%, 폭행·협박피해 사건 중 25.0%로 4명 중 1명은 적극적인 자기보호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에게 맞서 몸싸움을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갈취피해자 중 10.2%, 폭행·협박피해 사건 중 14.5%였으며, 특히 중학생의 경우 이러한 비율은 각각 13.1%와 17.6%로 비교적 높았다. 그 외에 폭행·협박피해 사건 당시 가해자에게 사정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하고자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0%였으며,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경고를 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망가거나 숨는 등 자리를 피한 경우는 모두 10% 가량으로 조사되었다.

〈표 5-41〉 폭력범죄피해 당시 피해자의 자기보호 노력(중복응답)

단위: 명, 건(%)

	갈취				폭행·협박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상대방에게 맞서 몸싸움을 함	11 (9.8)	10 (13.1)	4 (7.2)	26 (10.2)	22 (12.2)	23 (17.6)	11 (14.8)	57 (14.5)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경고를 함	7 (6.2)	1 (1.4)	4 (6.8)	12 (4.9)	19 (10.3)	13 (9.6)	9 (12.7)	41 (10.5)
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사정함	11 (10.0)	11 (14.2)	3 (5.4)	25 (10.1)	46 (25.0)	21 (15.8)	19 (25.8)	86 (22.0)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함	10 (9.1)	5 (6.6)	5 (7.6)	20 (8.0)	16 (9.0)	17 (12.7)	9 (11.7)	42 (10.8)
도망가거나 숨는 등 자리를 피함	6 (5.1)	6 (8.3)	6 (8.9)	18 (7.0)	16 (8.7)	17 (12.7)	7 (9.9)	40 (10.3)
가만히 있었음	31 (27.7)	22 (28.0)	13 (21.7)	66 (26.3)	46 (25.3)	33 (24.7)	19 (24.9)	98 (25.0)
그 외의 행동	48 (42.7)	30 (39.0)	32 (52.1)	110 (43.9)	56 (30.9)	49 (36.8)	22 (29.4)	127 (32.6)
계	111 (100)	77 (100)	62 (100)	250 (100)	182 (100)	134 (100)	75 (100)	391 (100)

2) 피해 결과

갈취피해를 보고한 응답자 가운데 이로 인해 신체피해를 입은 비율은 6.4%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가벼운 멍이 드는 등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는 2.8%, 집이나 학교 의무실에서 가벼운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2.4%였고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의 신체피해를 입은 경우도 3건이 있었다. 폭행피해 사건의 경우 신체피해를 입은 비율은 갈취피해 사건보다 다소 높은 29.7%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의 신체피해를 당한 경우는 13건으로 폭행피해 사건 중 5.0%였다.

〈표 5-42〉 폭력범죄의 신체피해

단위: 명(%)

	갈취				폭행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다치지 않았음	104 (93.7)	71 (93.4)	58 (93.5)	233 (93.6)	112 (80.6)	52 (66.7)	18 (42.9)	182 (70.3)
가벼운 멍이 드는 등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 다침	4 (3.6)	2 (2.6)	1 (1.6)	7 (2.8)	20 (14.4)	16 (20.5)	15 (35.7)	51 (19.7)
집이나 학교 의무실 등에서 가벼운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다침	1 (0.9)	2 (2.6)	3 (4.8)	6 (2.4)	3 (2.2)	6 (7.7)	4 (9.5)	13 (5.0)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다침	2 (1.8)	1 (1.3)	0 (0.0)	3 (1.2)	4 (2.9)	4 (5.1)	5 (11.9)	13 (5.0)
계	111 (100)	76 (100)	62 (100)	249 (100)	139 (100)	78 (100)	42 (100)	259 (100)

폭력범죄피해로 인하여 실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갈취피해자 중 1명이었으며, 폭행피해자의 경우 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 중 1명은 입원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5-43〉 폭력범죄 신체피해 병원치료 및 입원여부

단위: 명(%)

	갈취				폭행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병원치료	1 (0.9)	0 (0.0)	0 (0.0)	1 (0.4)	1 (0.7)	2 (2.5)	1 (2.4)	4 (1.5)
입원	0 (0.0)	0 (0.0)	0 (0.0)	0 (0.0)	1 (0.7)	0 (0.0)	0 (0.0)	1 (0.4)
계	111 (100)	77 (100)	62 (100)	250 (100)	139 (100)	79 (100)	41 (100)	259 (100)

갈취피해 사건에서 피해물품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다. 가장 많은 것은 학용품·책·공책·가방 등으로 42.0%였으며, 현금·수표·상품권을 갈취당한 경우는 21.5%였다. 그 외에 옷·신발·시계 등을 갈취당한 피해자가 9.7%, 화장품·악세사리 등을 갈취

당한 피해자는 9.8%였으며,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등을 갈취당했다고 보고한 응답자도 8.9%로 나타났다.

〈표 5-44〉 갈취 피해물품(중복응답)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현금, 수표, 상품권	19 (17.1)	19 (25.3)	15 (24.6)	54 (21.5)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	2 (1.8)	4 (5.4)	7 (11.4)	13 (5.3)
학용품, 책, 공책, 가방 등	52 (47.0)	25 (33.1)	27 (44.3)	105 (42.0)
휴대전화, 노트북, 게임기 등	7 (6.1)	4 (5.1)	3 (4.1)	13 (5.3)
옷, 신발, 시계 등	11 (9.9)	6 (8.2)	7 (11.5)	24 (9.7)
화장품, 악세사리 등	7 (6.1)	9 (12.3)	8 (13.3)	24 (9.8)
게임 아이템, 사이버머니 등	8 (7.0)	8 (10.9)	6 (9.9)	22 (8.9)
키보드, 롤러블레이드, 자전거, 오토바이 혹은 그 부속품	14 (12.2)	4 (5.0)	3 (4.0)	20 (8.0)
기타	11 (9.5)	4 (4.7)	0 (0.0)	14 (5.7)
계	111 (100)	77 (100)	62 (100)	250 (100)

전체 갈취피해자의 평균 피해액은 3만원 가량이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평균 피해액이 4만9천원 가량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피해액수가 많았다. 가장 많은 피해액을 보고한 피해자는 초등학생 11만2천원,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19만9천원이었다.

〈표 5-45〉 갈취 피해액

단위: 천원, 건

	초등	중등	고등	전체
평균 피해액	26.7	25.5	49.3	30.5
표준편차	32.7	31.0	61.3	38.8
최소값	1	4	1	1
최대값	112	100	199	199
사례수	22	11	8	41

3) 피해의 영향

폭력범죄피해의 영향을 정신적 후유증과 행동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응답자는 갈취피해자 중 12.7%였으며, 폭행·협박피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22.2%가 한 가지 이상의 후유증을 보고하였다. 정신적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갈취피해자 중 5.8%가 우울함을 겪었으며, 폭행·협박피해 사건 이후 우울함을 겪었다고 보고한 경우는 13.4%였다. 폭행·협박피해 사건의 경우, 우울함 외에도 고립감, 두려움, 부정적 자존감,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각각 10% 가량으로 조사되었다. 나아가 폭력범죄피해로 인해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 의학과 진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갈취의 경우 2.4%, 폭행·협박의 경우 8.5%로 나타났다.

〈표 5-46〉 폭력범죄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단위: 명, 건(%)

	갈취				폭행·협박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우울함	6 (5.3)	4 (5.1)	5 (7.5)	14 (5.8)	23 (12.5)	20 (14.7)	10 (13.4)	52 (13.4)
고립감	5 (4.3)	5 (6.2)	3 (4.1)	12 (4.8)	16 (9.0)	15 (11.4)	8 (11.2)	40 (10.3)
두려움	3 (2.3)	1 (1.8)	1 (1.9)	5 (2.0)	22 (11.8)	12 (8.7)	13 (17.3)	46 (11.8)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5 (4.4)	3 (3.4)	1 (1.0)	8 (3.2)	13 (7.0)	16 (11.8)	9 (12.1)	38 (9.6)
부정적 자존감	3 (2.6)	2 (2.4)	3 (4.4)	7 (3.0)	15 (8.1)	12 (8.7)	15 (19.4)	41 (10.5)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	4 (3.5)	5 (6.8)	1 (1.8)	10 (4.1)	16 (9.0)	11 (8.3)	13 (17.6)	41 (10.4)
가족관계·친구관계 어려움	5 (4.9)	2 (2.3)	3 (4.9)	10 (4.1)	13 (7.0)	9 (6.5)	9 (12.6)	31 (7.9)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받음	4 (3.3)	0 (0.0)	2 (3.7)	6 (2.4)	13 (7.0)	12 (9.2)	8 (10.7)	33 (8.5)
해당 없음	98 (87.8)	68 (88.7)	52 (84.7)	218 (87.3)	142 (77.9)	112 (83.5)	50 (67.1)	304 (77.8)
사례수	111 (100)	77 (100)	62 (100)	250 (100)	182 (100)	134 (100)	75 (100)	391 (100)

갈취피해를 경험한 후 이로 인해 이어나 전학을 갔다고 보고한 응답자는 5.6%였으며, 폭행·협박피해 사건 이후 이어나 전학을 간 경우는 6.2%였다. 피해경험 이후 무단결석을 한 응답자는 갈취피해자 중 4.0%, 폭행·협박사건의 경우 4.3%였으며, 가출을 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이와 같았다. 폭행·협박피해를 경험한 후 이어나 전학, 무단결석, 가출 형태의 행동적 영향을 하나라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등학생이 15.1%로 초등학생 7.3%, 중학생 6.6%에 비하여 다소 높았다.

〈표 5-47〉 폭력범죄피해의 행동적 영향(중복응답)

단위: 명, 건(%)

	갈취				폭행·협박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이사 또는 전학	5 (4.5)	4 (5.2)	5 (8.1)	14 (5.6)	8 (4.2)	6 (4.3)	11 (14.6)	24 (6.2)
무단결석	5 (4.5)	4 (5.2)	1 (1.6)	10 (4.0)	6 (3.4)	7 (5.6)	3 (4.0)	17 (4.3)
가출	2 (1.8)	5 (6.5)	3 (4.8)	10 (4.0)	7 (3.6)	5 (4.1)	5 (6.4)	17 (4.3)
해당 없음	103 (92.8)	70 (90.9)	56 (90.3)	229 (91.6)	169 (92.7)	125 (93.4)	64 (84.9)	357 (91.5)
사례수	111 (100)	77 (100)	62 (100)	250 (100)	182 (100)	134 (100)	75 (100)	391 (100)

라. 피해자의 사후 대응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후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갈취피해자 중 45.6%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비율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취피해를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의 경우 41.4%였으나, 중학생은 24.7%, 고등학생 22.6%로 많지 않았다. 폭행·협박피해 사건의 경우 이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6.1%였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39.4%로 가장 높았다. 폭행·협박피해 사실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한 경우는 갈취피해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이 44.0%로 가장 높았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폭행·협박피해 사실에 대해 부모님에게 이야기한 비율보다 친구에게 이야기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48〉 폭력범죄피해 보고여부 및 대상(중복응답)

단위: 명, 건(%)

	갈취				폭행·협박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부모님	46 (41.4)	19 (24.7)	14 (22.6)	79 (31.6)	80 (44.0)	41 (30.9)	23 (31.2)	145 (37.0)
부모님 외 가족	9 (8.1)	4 (5.2)	7 (11.3)	20 (8.0)	11 (6.1)	9 (6.4)	9 (12.4)	29 (7.4)
선생님	10 (8.9)	7 (9.1)	5 (8.1)	22 (8.8)	26 (14.4)	22 (16.3)	13 (17.6)	61 (15.7)
친구	17 (15.3)	19 (24.7)	12 (19.4)	48 (19.2)	41 (22.6)	48 (35.9)	31 (40.9)	120 (30.7)
경찰관	0 (0.0)	1 (1.3)	4 (6.5)	5 (2.0)	1 (0.6)	11 (7.9)	6 (7.6)	17 (4.4)
상담가, 의사	1 (0.9)	2 (2.6)	2 (3.2)	5 (2.0)	1 (0.7)	8 (6.4)	3 (4.0)	13 (3.3)
그 외 다른 사람	5 (4.5)	6 (7.8)	5 (8.1)	16 (6.4)	11 (6.2)	10 (7.8)	6 (7.5)	27 (7.0)
보고 안함	44 (39.6)	36 (46.8)	34 (54.8)	114 (45.6)	65 (35.7)	53 (39.4)	23 (30.9)	141 (36.1)
계	111 (100)	77 (100)	62 (100)	250 (100)	182 (100)	134 (100)	75 (100)	391 (100)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갈취피해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로는 별 일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3.5%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라고 답한 경우는 11.5%,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7.1%였다. 폭행·협박 피해의 경우, 63.9%가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답하였는데, 고등학생의 경우 이러한 비율이 47.5%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고등학생 가운데 폭행·협박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이 29.6%로, 초등학생(12.4%)과 중학생(6.7%)에 비하여 이러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49〉 폭력범죄피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건(%)

	갈취				폭행·협박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34 (77.3)	26 (72.2)	23 (69.7)	83 (73.5)	40 (61.6)	39 (74.1)	11 (47.5)	90 (63.9)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해서	0 (0.0)	1 (2.8)	1 (3.0)	2 (1.8)	2 (3.0)	4 (7.9)	0 (0.0)	6 (4.3)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1 (2.3)	2 (5.6)	5 (15.2)	8 (7.1)	8 (12.8)	2 (3.9)	2 (7.5)	12 (8.6)
이야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0 (0.0)	0 (0.0)	0 (0.0)	0 (0.0)	3 (4.1)	3 (4.8)	1 (3.9)	6 (4.3)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서	0 (0.0)	1 (2.8)	0 (0.0)	1 (0.9)	1 (1.6)	0 (0.0)	2 (9.1)	3 (2.2)
보복이 두려워서	1 (2.3)	4 (11.1)	1 (3.0)	6 (5.3)	4 (5.9)	3 (5.2)	1 (2.4)	7 (5.1)
내가 겪은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8 (18.2)	2 (5.6)	3 (9.1)	13 (11.5)	8 (12.4)	4 (6.7)	7 (29.6)	18 (13.1)
계	44 (100)	36 (100)	33 (100)	113 (100)	65 (100)	53 (100)	23 (100)	141 (100)

갈취피해자 중 사건이 경찰에 신고되었다고 보고한 비율은 6.8%였으며, 폭행·협박 피해 사건이 경찰에 신고된 경우는 7.3%였다. 사건이 경찰에 신고된 비율은 초등학교 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학생이 피해를 입은 갈취피해 사건은 9.1%가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폭행·협박피해 사건의 경찰신고율은 8.1%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갈취피해 신고율은 8.1%, 폭행·협박피해 신고율이 11.9%로 나타났다.

〈표 5-50〉 폭력범죄피해 경찰신고 여부

단위: 명, 건(%)

	갈취				폭행·협박(중복응답)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신고했다	5 (4.5)	7 (9.1)	5 (8.1)	17 (6.8)	9 (4.7)	11 (8.1)	9 (11.9)	28 (7.3)
신고하지 않았다	107 (95.5)	70 (90.9)	57 (91.9)	234 (93.2)	175 (95.9)	126 (94.6)	66 (88.1)	367 (94.0)
계	112 (100)	77 (100)	62 (100)	251 (100)	182 (100)	134 (100)	75 (100)	391 (100)

사건이 경찰에 신고된 경우, 구체적으로 누가 신고하였는지 살펴보면 피해자 본인이 신고한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갈취피해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 본인 외에 가족과 친구 각각 2건, 3건이었으며, 폭행·협박사건은 가족이 신고한 사건이 5건, 친구 4건, 선생님 2건이었으며 상담가나 의사가 신고한 것으로 보고된 사건도 4건이 있었다.

〈표 5-51〉 폭력범죄피해 경찰 신고자

단위: 명, 건(%)

	갈취				폭행·협박(중복응답)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본인	3 (60.0)	3 (50.0)	4 (80.0)	10 (62.5)	1 (13.1)	9 (80.3)	5 (54.5)	15 (51.7)
가족	0 (0.0)	1 (16.7)	1 (20.0)	2 (12.5)	3 (36.8)	1 (8.1)	1 (15.6)	5 (19.2)
선생님	0 (0.0)	0 (0.0)	0 (0.0)	0 (0.0)	1 (5.4)	1 (11.7)	1 (6.5)	2 (8.1)
친구	2 (40.0)	1 (16.7)	0 (0.0)	3 (18.8)	3 (34.9)	0 (0.0)	1 (15.6)	4 (15.5)
상담가, 의사	0 (0.0)	1 (16.7)	0 (0.0)	1 (6.3)	2 (27.3)	0 (0.0)	1 (15.6)	4 (13.2)
계	5 (100)	6 (100)	5 (100)	16 (100)	9 (100)	11 (100)	9 (100)	28 (100)

3. 성폭력피해

가. 피해발생 일시와 장소

1) 피해발생 일시

아래에서는 강간(미수 포함),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해실태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이러한 성폭력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계절은 6월부터 8월사이인 여름으로 32.4%가 이 시기에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봄(3~5월)과 가을(9~11월)에 발생한 성폭력피해가 각각 24.3%였다. 그러나 성폭력피해 사건은 사례수가 많지 않고 계절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52〉 성폭력피해 발생 계절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봄(3~5월)	4 (19.0)	5 (31.3)	9 (24.3)
여름(6~8월)	7 (33.3)	5 (31.3)	12 (32.4)
가을(9~11월)	8 (38.1)	1 (6.3)	9 (24.3)
겨울(12~2월)	2 (9.5)	5 (31.3)	7 (18.9)
계	21 (100)	16 (100)	37 (100)

성폭력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시각은 한낮에서 오후사이(12~18시)로 이 시간대에 발생한 사건은 12건(33.3%)이었다. 다음으로 아침과 오전사이(06~12시)와 저녁에서 밤사이(18~24시)에 각각 7건이 발생하였다. 중학생의 경우 한낮에서 오후사이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한 비율이 42.9%였으며, 고등학생은 발생 시간대에 따른 빈도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5-53〉 성폭력피해 발생 시각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아침-오전(06~12시)	4 (19.0)	3 (20.0)	7 (19.4)
한낮-오후(12~18시)	9 (42.9)	3 (20.0)	12 (33.3)
저녁-밤(18~24시)	6 (28.6)	1 (6.7)	7 (19.4)
심야-새벽(24~06시)	0 (0.0)	1 (6.7)	1 (2.8)
알 수 없음	2 (9.5)	7 (46.7)	9 (25.0)
계	21 (100)	15 (100)	36 (100)

2) 피해발생 장소

성폭력피해가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학교나 학교근처가 58.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집에서 발생한 사건이 25.0%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 1건 있었으며, 온라인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피해를 당한 경우 등이 3건으로 보고되었다.

〈표 5-54〉 성폭력피해 발생 장소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집	6 (28.6)	3 (20.0)	9 (25.0)
학교나 학교근처	13 (61.9)	8 (53.3)	21 (58.3)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	0 (0.0)	1 (6.7)	1 (2.8)
온라인	2 (9.5)	1 (6.7)	3 (8.3)
기타	0 (0.0)	2 (13.3)	2 (5.6)
계	21 (100)	15 (100)	36 (100)

성폭력피해가 집에서 발생한 경우 가운데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가 발생한 비율이 60.0%로 가장 많았으며, 가해자의 집에서 발생했다고 보고된 사례는 없었다.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닌 제3자의 집에서 성폭력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4건으로 조사되었다.

〈표 5-55〉 성폭력피해가 발생한 '집'의 구체적 장소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우리집	4 (66.7)	2 (50.0)	6 (60.0)
다른 사람의 집	2 (33.3)	2 (50.0)	4 (40.0)
계	6 (100)	4 (100)	10 (100)

학교나 학교 근처에서 발생한 성폭력피해 사건 가운데 교실에서 발생한 사건은 전체적으로 57.1%였으며, 중학생이 피해를 당한 경우 절반에 가까운 6건이, 고등학생이 피해를 당한 사건 4건 중 3건이 교실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도서관·체육관·강당·매점 등 학교 내부시설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21건 중 6건(28.6%)이었으며, 운동장, 학교 근처 공터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각 1건이었다.

〈표 5-56〉 성폭력피해가 발생한 ‘학교나 학교 근처’의 구체적 장소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교실	6 (46.2)	6 (75.0)	12 (57.1)
도서관, 체육관, 강당, 매점 등 학교 내부시설	5 (38.5)	1 (12.5)	6 (28.6)
운동장	0 (0.0)	1 (12.5)	1 (4.8)
학교 근처 공터나 주차장	1 (7.7)	0 (0.0)	1 (4.8)
기타	1 (7.7)	0 (0.0)	1 (4.8)
계	13 (100)	8 (100)	21 (100)

그 외에 성폭력피해가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1건이었으며, 학원 또는 독서실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한 성폭력피해는 1건, SNS를 통한 피해는 2건으로 나타났다.

나. 가해자 특성

1) 가해자 인지 여부 및 인구학적 특성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안다고 답한 응답자는 41.7%였으며,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58.3%였다. 아래에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다고 답한 경우에 한하여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5-57〉 성폭력범죄피해의 가해자 인지 여부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예	8 (38.1)	7 (46.7)	15 (41.7)
아니오	13 (61.9)	8 (53.3)	21 (58.3)
계	21 (100)	15 (100)	36 (100)

성폭력피해의 가해자는 1명인 경우가 15건 중 1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고등학생이 피해를 입은 사건 중 1건은 가해자가 4명 이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중학생이 피해를 입은 사건은 모두 가해자가 1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8〉 성폭력범죄피해의 가해자 수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1명	8 (100.0)	5 (71.4)	13 (86.7)
4명 이상	0 (0.0)	1 (14.3)	1 (6.7)
모르겠다	0 (0.0)	1 (14.3)	1 (6.7)
계	8 (100)	7 (100)	15 (100)

성폭력피해의 가해자는 남자가 75.0%였으며 여자가 가해자인 사건은 25.0%였다. 고등학생이 성폭력피해를 입은 경우, 1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남자가 가해자였으나, 중학생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는 6건의 가해자가 남자였고 3건은 가해자가 여성이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5-59〉 성폭력범죄피해의 가해자 성별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남자	6 (66.7)	6 (85.7)	12 (75.0)
여자	3 (33.3)	1 (14.3)	4 (25.0)
계	9 (100)	7 (100)	16 (100)

중학생이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가해자가 같은 연령대인 사건은 75.3%였으며, 17세에서 19세 사이인 사건이 1건, 20대에서 30대 사이인 경우가 2건으로 보고되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같은 연령대의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사건은 7건 중 절반이 약간 넘는 4건이었고 가해자가 20대에서 30대 사이인 사건이 1건, 40세 이상인 사건이 2건이었다.

〈표 5-60〉 성폭력범죄피해의 가해자 연령(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14~16세	6 (75.3)	0 (0.0)	6 (41.4)
17~19세	1 (4.2)	4 (52.6)	4 (26.0)
20~30대	2 (20.5)	1 (15.8)	3 (18.4)
40세 이상	0 (0.0)	2 (31.6)	2 (14.2)
계	8 (100)	7 (100)	15 (100)

성폭력피해 당시 가해자가 음주상태였는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 중학생의 피해사건 중에는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경우는 없었으며, 고등학생이 피해를 입은 사건 중 가해자가 음주상태였던 경우는 1건 있었다.

〈표 5-61〉 성폭력범죄피해 당시 가해자 음주여부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그렇다	0 (0.0)	1 (14.3)	1 (6.7)
아니다	8 (100.0)	5 (71.4)	13 (86.7)
모르겠다	0 (0.0)	1 (14.3)	1 (6.7)
계	8 (100)	7 (100)	15 (100)

2)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성폭력피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가족을 포함한 친인척이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 사건 중 30.0%였으며,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인 경우가 66.7%였다. 이러한 비율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5-62〉 성폭력범죄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친인척(가족 포함)	3 (31.2)	2 (28.5)	5 (30.0)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6 (68.8)	4 (64.1)	10 (66.7)
모르는 사람	0 (0.0)	1 (7.5)	1 (3.4)
계	8 (100)	7 (100)	15 (100)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및 친인척인 경우,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고등학생이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건은 모두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중학생의 경우,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형제·자매가 가해자인 사건이 2건, 기타 친인척인 경우가 1건이었다.

〈표 5-63〉 성폭력범죄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 친인척 세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부모	0 (0.0)	2 (100.0)	2 (42.8)
형제·자매	2 (65.7)	0 (0.0)	2 (37.6)
기타 친인척	1 (34.3)	0 (0.0)	1 (19.6)
계	3 (100)	2 (100)	5 (100)

가족 및 친인척을 제외한 아는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인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학교친구인 사건이 10건 중 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선생님이 가해를 저지른 사건이 1건 있었으며, 중학생이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애인인 사건과 얼굴만 아는 사람인 사건이 각 1건이었다.

〈표 5-64〉 성폭력범죄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 아는 사람 세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학교친구	5 (78.1)	4 (82.1)	8 (79.8)
애인	1 (15.9)	0 (0.0)	1 (9.0)
선생님	0 (0.0)	1 (17.9)	1 (7.8)
얼굴만 아는 사람	1 (6.1)	0 (0.0)	1 (3.4)
계	6 (100)	4 (100)	10 (100)

다. 피해 내용 및 피해 결과

1) 구체적인 피해 내용 및 상황

성폭력피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성적으로 몸을 만진 경우가 55.6%로 가장 많았으며 가해자의 몸을 만지도록 강요한 경우도 16.7%로 나타났다. 이러한 강제추행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좀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강간이나 강간미수는 고등학생의 경우 1건에 그쳤으나 중학생이 피해를 입은 사건은 3건으로 보고되었다. 그 외에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해는 전체적으로 30.6%로 조사되었으며, 중학생 피해자 가운데 38.1%, 고등학생 피해자 가운데 20.0%가 이러한 피해를 보고하였다.

〈표 5-65〉 성폭력범죄피해 내용(중복응답)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성적인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갖게 하는 사진을 찍음	8 (38.1)	3 (20.0)	11 (30.6)
성적으로 상대방의 몸을 만지도록 강요함	2 (9.5)	4 (26.7)	6 (16.7)
성적으로 내 몸을 만짐	11 (52.4)	9 (60.0)	20 (55.6)
강간을 하거나 강간을 시도함	3 (14.3)	1 (6.7)	4 (11.1)
계	21 (100)	15 (100)	36 (100)

고등학생이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보고된 사례는 없었으나 중학생의 경우 성폭력피해 사건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사건의 비율은 27.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폭행이 발생한 사건은 2건이었으며 폭행은 없었으나 협박이 동반된 사건은 4건이었다. 협박이 동반된 경우 구체적인 협박수법은 가해자가 뒤쫓아 오거나 주위를 에워싼 경우가 3건으로 조사되었다.

〈표 5-66〉 성폭력범죄피해에서 신체 공격 유무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신체공격을 했다	2 (9.1)	0 (0.0)	2 (5.4)
신체공격은 없었으나 폭행의 위협을 했다	4 (18.2)	0 (0.0)	4 (10.8)
신체 공격이나 위협(협박)은 없었다	16 (72.7)	15 (100)	31 (83.8)
계	22 (100)	15 (100)	37 (100)

2) 피해의 영향

성폭력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한 가지 이상의 후유증을 보고한 응답자 비율은 25.3%였다. 이러한 비율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 피해자의 경우에 높게 나타나 29.0%가 후유증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성폭력피해를 보고한 중학생 21명 가운데 3명은 불면증·악몽·두통 등을 겪었다고 보고하였으며, 부정적 자존감을 보고한 경우가 2명이었다.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 때문에 심리 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피해자는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5-67〉 성폭력범죄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우울함	1 (1.6)	1 (4.9)	1 (3.0)
고립감	1 (1.6)	1 (4.9)	1 (3.0)
두려움	2 (10.7)	1 (9.0)	4 (10.0)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3 (15.8)	1 (4.9)	4 (11.4)
부정적 자존감	2 (8.2)	1 (5.4)	3 (7.1)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	1 (1.6)	1 (8.1)	2 (4.3)

	중등	고등	계
가족관계·친구관계 어려움	1 (1.6)	1 (5.4)	1 (3.2)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받음	2 (7.3)	1 (2.7)	2 (5.4)
해당 없음	15 (71.0)	12 (80.1)	27 (74.7)
계	21 (100)	15 (0.0)	36 (100)

성폭력피해의 정신적 후유증 외에 행동적 측면의 영향을 살펴보면 피해사건으로 인해 이사나 전학을 갔다고 응답한 비율이 21.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피해사건 이후 무단결석이나 가출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각 5건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행동적 영향은 학교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5-68〉 성폭력범죄피해의 행동적 영향(중복응답)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이사 또는 전학	5 (22.7)	3 (20.0)	8 (21.6)
무단결석	3 (13.6)	2 (14.3)	5 (13.9)
가출	3 (14.3)	2 (14.3)	5 (14.3)
해당 없음	17 (77.3)	11 (78.6)	28 (77.8)
계	22 (100)	14 (100)	36 (100)

라. 피해자의 사후 대응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사실을 누구에게 이야기했는지 알아보았다. 성폭력피해자 가운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5%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경우, 그 대상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중학생의 경우 피해사실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한 비율이 40.9%, 선생님에게 이야기한 경우는 22.7%였으며 친구

에게 이야기한 경우는 19.0%에 그쳤다. 반면, 고등학생은 부모님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로 중학생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선생님에게 이야기한 비율도 7.1%로 낮았다. 고등학생이 피해사실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 대상은 친구로 33.3%를 차지하였다.

〈표 5-69〉 성폭력범죄피해 보고여부 및 대상(중복응답)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부모님	9 (40.9)	3 (20.0)	12 (32.4)
부모님 외 가족	1 (4.8)	0 (0.0)	1 (2.9)
선생님	5 (22.7)	1 (7.1)	6 (16.7)
친구	4 (19.0)	5 (33.3)	9 (25.0)
경찰관	0 (0.0)	1 (6.7)	1 (2.8)
상담가, 의사	0 (0.0)	1 (6.7)	1 (2.8)
그 외 다른 사람	1 (4.8)	0 (0.0)	1 (2.9)
보고 안함	9 (40.9)	6 (40.0)	15 (40.5)
계	21 (100)	15 (100)	36 (100)

성폭력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로 피해사실이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생 33.3%, 고등학생 83.3%로 차이를 보였다. 중학생의 경우,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서 또는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각 2명, 이야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또는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 1명이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없었다.

〈표 5-70〉 성폭력범죄피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3 (33.3)	5 (83.3)	8 (53.3)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해서	0 (0.0)	1 (16.7)	1 (6.7)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0 (0.0)	0 (0.0)	0 (0.0)
이야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1 (11.1)	0 (0.0)	1 (6.7)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서	2 (22.2)	0 (0.0)	2 (13.3)
보복이 두려워서	2 (22.2)	0 (0.0)	2 (13.3)
내가 겪은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1 (11.1)	0 (0.0)	1 (6.7)
계	9 (100)	6 (100)	15 (100)

성폭력피해사실이 경찰에 신고된 경우는 총 2건에 불과하였다. 이 가운데 중학생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의 친구였으며, 고등학생이 피해를 입은 사건의 경우 상담가·의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5-71〉 성폭력범죄피해 경찰신고 여부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신고했다	1 (4.8)	1 (6.7)	2 (5.6)
신고하지 않았다	20 (95.2)	14 (93.3)	34 (94.4)
계	21 (100)	15 (100)	36 (100)

제2절 가정내 학대·괴롭힘 피해 실태

1. 가정내 학대 피해

가. 피해발생 일시와 장소

1) 피해발생 일시

조사대상기간 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가정내 학대피해는 6월부터 8월 사이인 여름에 발생한 경우가 51.6%로 절반이 약간 넘었다. 다음으로 많이 보고된 시기는 3월부터 5월 사이인 봄으로 20.9%를 차지하였고, 가을(9~11월)은 16.7%, 겨울(12~2월)은 10.7%로 나타났다.

〈표 5-72〉 가정내 학대피해 발생 계절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봄(3~5월)	9 (16.1)	18 (23.1)	18 (22.2)	45 (20.9)
여름(6~8월)	36 (64.3)	42 (53.8)	33 (40.7)	111 (51.6)
가을(9~11월)	6 (10.7)	12 (15.4)	18 (22.2)	36 (16.7)
겨울(12~2월)	5 (8.9)	6 (7.7)	12 (14.8)	23 (10.7)
계	56 (100)	78 (100)	81 (100)	215 (100)

가정내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저녁부터 밤사이(18~24시)로 32.7%였으며, 한낮부터 오후사이(12~18시)에 발생한 사건은 21.0%였다. 다음으로 아침부터 오전사이(06~12시)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11.2%, 심야에서 새벽사이(24~06시)에 발생한 경우는 4.7%로 조사되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저녁부터 밤사이에 가정내 학대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한 비율은 중학생이 39.0%, 고등학생 34.6%로 초등학생(21.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5-73〉 가정내 학대피해 발생 시각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아침-오전(06~12시)	7 (12.5)	9 (11.7)	8 (9.9)	24 (11.2)
한낮-오후(12~18시)	13 (23.2)	14 (18.2)	18 (22.2)	45 (21.0)
저녁-밤(18~24시)	12 (21.4)	30 (39.0)	28 (34.6)	70 (32.7)
심야-새벽(24~06시)	1 (1.8)	6 (7.8)	3 (3.7)	10 (4.7)
알 수 없음	23 (41.1)	18 (23.4)	24 (29.6)	65 (30.4)
계	56 (100)	77 (100)	81 (100)	214 (100)

2) 피해발생 장소

가정내 학대피해의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집에서 발생한 사건이 83.2%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피해경험을 보고한 응답자 가운데 87.7%가 집에서 발생하였다고 답하였다. 그 외에 가정내 학대가 학교나 학교근처에서 발생한 경우도 9.8%로 조사되었으며,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4.7%였다.

〈표 5-74〉 가정내 학대피해 발생 장소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집	44 (78.6)	63 (81.8)	71 (87.7)	178 (83.2)
학교나 학교근처	6 (10.7)	8 (10.4)	7 (8.6)	21 (9.8)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	1 (1.8)	6 (7.8)	3 (3.7)	10 (4.7)
기타	5 (8.9)	0 (0.0)	0 (0.0)	5 (2.3)
계	56 (100)	77 (100)	81 (100)	214 (100)

가정내 학대가 집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구체적인 장소를 살펴보면 피해유형의 특성상 피해자 본인의 집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98.3%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학생이 가정내 학대피해를 경험한 사건에서 제3자의 집에서 학대가 발생한 사건도 2건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5-75〉 가정내 학대피해가 발생한 '집'의 구체적 장소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우리집	42 (95.5)	63 (100.0)	70 (98.6)	175 (98.3)
상대방의 집	0 (0.0)	0 (0.0)	1 (1.4)	1 (0.6)
다른 사람의 집	2 (4.5)	0 (0.0)	0 (0.0)	2 (1.1)
계	44 (100)	63 (100)	71 (100)	178 (100)

학교나 학교 근처에서 가정내 학대를 경험하였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71.4%는 교실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높게 나타나 6명 중 5명이 교실에서 가정내 학대를 경험하였다. 그 외에 복도·계단·옥상이나 학교 내부시설, 또는 학교 근처 공터나 주차장에서 가정내 학대가 발생한 사건도 소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76〉 가정내 학대피해가 발생한 '학교나 학교 근처'의 구체적 장소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교실	5 (83.3)	6 (75.0)	4 (57.1)	15 (71.4)
복도·계단·옥상	1 (16.7)	1 (12.5)	1 (14.3)	3 (14.3)
도서관, 체육관, 강당, 매점 등 학교 내부시설	0 (0.0)	1 (12.5)	1 (14.3)	2 (9.5)
학교 근처 공터나 주차장	0 (0.0)	0 (0.0)	1 (14.3)	1 (4.8)
계	6 (100)	8 (100)	7 (100)	21 (100)

그밖에 중고등학생은 학원·독서실, PC방·노래방·당구장 등, 상점·상업건물에서 가정내 학대피해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사례가 일부 있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집이나 학교 외의 다른 곳에서 가정내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장소는 극장·공연장으로 나타났다.

〈표 5-77〉 가정내 학대피해가 발생한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의 구체적 장소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학원, 독서실	0 (0.0)	2 (33.3)	1 (33.3)	3 (30.0)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0 (0.0)	1 (16.7)	1 (33.3)	2 (20.0)
상점이나 상업건물	0 (0.0)	2 (33.3)	1 (33.3)	3 (30.0)
극장, 공연장	1 (100.0)	1 (16.7)	0 (0.0)	2 (20.0)
계	1 (100)	6 (100)	3 (100)	10 (100)

나. 가해자 특성

1) 가해자의 인구학적 특성

가정내 학대가 발생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1명으로 조사된 사건은 72.9%였으며, 가해자가 2명 이상이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0.2%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가정내 학대의 가해자가 1명이었다고 보고한 비율은 초등학생 76.8%, 고등학생 77.8%인데 비하여 중학생은 64.9%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5-78〉 가정내 학대피해의 가해자 수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1명	43 (76.8)	50 (64.9)	63 (77.8)	156 (72.9)
2명	2 (3.6)	4 (5.2)	6 (7.4)	12 (5.6)
3명	0 (0.0)	1 (1.3)	4 (4.9)	5 (2.3)
4명 이상	0 (0.0)	4 (5.2)	1 (1.2)	5 (2.3)
모르겠다	11 (19.6)	18 (23.4)	7 (8.6)	36 (16.8)
계	56 (100)	77 (100)	81 (100)	214 (100)

가정내 학대의 가해자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가해자인 사건의 비율이 46.3%로 여자가 가해자인 사건 비율 34.1%보다 다소 높았다. 가해자가 여성이라고 답한 비율은 초등학생이 42.9%, 중학생 27.3%, 고등학생 34.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해자가 남녀 모두라고 응답한 경우는 고등학생의 경우 13.6%로 초등학생 1.8%, 중학생 5.2%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5-79〉 가정내 학대피해의 가해자 성별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남자	23 (41.1)	38 (49.4)	38 (46.9)	99 (46.3)
여자	24 (42.9)	21 (27.3)	28 (34.6)	73 (34.1)
남녀 모두	1 (1.8)	4 (5.2)	11 (13.6)	16 (7.5)
모르겠다	8 (14.3)	14 (18.2)	4 (4.9)	26 (12.1)
계	56 (100)	77 (100)	81 (100)	214 (100)

가정내 학대피해 사건의 가해자는 40대가 54.5%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은 가정내 학대피해의 특성상, 가해자의 연령대는 학년이 올라갈 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가해자가 30대인 사건의 비율이 23.2%였으나 이러한 비율은 중학생 7.5%, 고등학생 4.4%로 낮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이 가정내 학대피해를 경험한 경우, 가해자가 50대라고 보고한 비율은 35.4%로 초등학생 5.2%, 중학생 11.7%에 비해 높았다.

〈표 5-80〉 가정내 학대피해의 가해자 연령(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20대	0 (0.0)	4 (5.4)	6 (6.9)	10 (4.6)
30대	13 (23.2)	6 (7.5)	4 (4.4)	22 (10.4)
40대	26 (46.9)	46 (59.1)	45 (55.2)	117 (54.5)
50대	3 (5.2)	9 (11.7)	29 (35.4)	41 (19.0)
60세 이상	1 (1.6)	3 (3.3)	2 (2.0)	5 (2.4)
모르겠음	13 (23.0)	15 (19.1)	3 (3.7)	31 (14.3)
계	56 (100)	78 (100)	81 (100)	215 (100)

피해 당시 가정내 학대의 가해자가 음주상태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6.0%,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1.2%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사건 당시 음주상태였다고 보고된 비율은 초등학생 3.6%, 중학생 7.7%, 고등학생 6.2%로 나타났다.

〈표 5-81〉 가정내 학대피해 당시 가해자 음주여부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그렇다	2 (3.6)	6 (7.7)	5 (6.2)	13 (6.0)
아니다	41 (73.2)	48 (61.5)	64 (79.0)	153 (71.2)
모르겠다	13 (23.2)	24 (30.8)	12 (14.8)	49 (22.8)
계	56 (100)	78 (100)	81 (100)	215 (100)

2)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정내 학대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피해자의 아버지가 학대를 한 비율이 45.8%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가 가해자인 비율은 41.4%였다. 학교급별로 비교해보면 아버지가 가정내 학대를 했다는 응답비율은 초등학생의 경우 29.0%로 다소 낮았으며 중학생은 50.8%, 고등학생은 52.6%였다. 어머니가 학대를 한 경우는 초등학생 45.0%, 중학생 37.5%, 고등학생 42.6%로 아버지가 가해자인 경우보다 학교급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5-82〉 가정내 학대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아버지	16 (29.0)	39 (50.8)	43 (52.6)	98 (45.8)
어머니	25 (45.0)	29 (37.5)	35 (42.6)	89 (41.4)
조부모	1 (1.6)	5 (6.5)	4 (4.4)	10 (4.4)
기타 다른 보호자	15 (27.5)	10 (12.5)	8 (10.1)	33 (15.5)
계	56 (100)	78 (100)	81 (100)	215 (100)

다. 피해 내용 및 피해 결과

1) 구체적인 피해 내용 및 상황

가) 피해의 지속성 및 피해 내용

가정내 학대피해의 내용 및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의 지속성 여부와 기간을 알아보았다. 가정내 학대피해를 보고한 응답자 가운데 피해가 일회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86.9%였다. 반면, 학대피해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생한 경우는 13.1%였는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피해자 중 17.3%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답하였다. 초등학생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8.9%로 고등학생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중학생의 경우는 11.7%로 나타났다.

〈표 5-83〉 가정내 학대피해 지속성 여부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일시적으로 한번	51 (91.1)	68 (88.3)	67 (82.7)	186 (86.9)
지속적으로 꾸준히	5 (8.9)	9 (11.7)	14 (17.3)	28 (13.1)
계	56 (100)	77 (100)	81 (100)	214 (100)

가정내 학대피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된 경우 피해의 지속기간은 1년 내내라고 답한 경우가 32.1%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비율은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각각 40.0%와 44.4%로 높게 나타난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35.7%는 가정내 학대피해가 지속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고 답하였다.

〈표 5-84〉 가정내 학대피해지속기간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1개월 미만	0 (0.0)	0 (0.0)	5 (35.7)	5 (17.9)
1~2개월 미만	1 (20.0)	3 (33.3)	2 (14.3)	6 (21.4)
2~3개월 미만	0 (0.0)	1 (11.1)	2 (14.3)	3 (10.7)
1학기 (6개월)	2 (40.0)	1 (11.1)	2 (14.3)	5 (17.9)
1년	2 (40.0)	4 (44.4)	3 (21.4)	9 (32.1)
계	5 (100)	9 (100)	14 (100)	28 (100)

가정내 학대피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로 차거나 손이나 주먹으로 때린 경우가 70.8%로 가장 많았으며 막대기, 허리띠 등 물건을 사용하여 때린 경우는 26.6%로 나타났다. 그 외에 몸을 거칠게 밀거나 목을 조른 경우는 14.9%, 그릇이나 의자 등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진 경우는 12.1%로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피해내용은 특히 중학생의 경우에 각각 23.1%와 16.7%로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5-85〉 가정내 학대피해 내용(중복응답)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발로 차거나 손이나 주먹으로 때림	38 (67.9)	57 (73.1)	58 (70.7)	153 (70.8)
몸을 거칠게 밀거나 목을 조름	3 (5.4)	18 (23.1)	11 (13.6)	32 (14.9)
막대기, 허리띠 등 물건을 사용하여 때림	16 (28.6)	22 (28.6)	19 (23.5)	57 (26.6)
그릇, 의자 등 무거운 물건을 나에게 던짐	3 (5.4)	13 (16.7)	10 (12.3)	26 (12.1)
그 외 다른 폭행	10 (17.9)	15 (19.2)	3 (3.7)	28 (13.0)
계	56 (100)	78 (100)	81 (100)	215 (100)

나) 피해 당시 피해자의 상황 및 행동

가정내 학대피해가 발생한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같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 피해를 보고한 응답자 가운데 54.9%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비율은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61.0%로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은 51.8%, 중학생은 50.6%로 이보다 다소 낮았다.

〈표 5-86〉 가정내 학대피해 당시 같이 있던 사람의 존재 여부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있었다	29 (51.8)	39 (50.6)	50 (61.0)	118 (54.9)
없었다	27 (48.2)	38 (49.4)	32 (39.0)	97 (45.1)
계	56 (100)	77 (100)	82 (100)	215 (100)

그렇다면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도 피해자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피해자 외에도 동반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는 응답이 34.2%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가정내 학대피해를 입었을 경우 동반피해가 발생한 비율은 42.9%로 다소 높았으며, 중학생의 경우 30.8%, 고등학생은 32.0%가 같이 있던 사람도 함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하였다.

〈표 5-87〉 가정내 학대피해 당시 같이 있던 사람의 동반피해 여부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있었다	12 (42.9)	12 (30.8)	16 (32.0)	40 (34.2)
없었다	16 (57.1)	27 (69.2)	34 (68.0)	77 (65.8)
계	28 (100)	39 (100)	50 (100)	117 (100)

가정내 학대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자기보호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면, 가해자에게 맞서 몸싸움을 했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20.9%였으며 중학생의 경우 이러한 응답비율이 32.0%로 나타났다. 반면, 적극적인 보호노력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이 45.5%로 중학생 31.8%, 고등학생 37.4%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외에 가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사정했다는 응답비율은 전체적으로 17.6%였으며, 도망가거나 숨는 등 자리를 피했다는 응답은 11.1%,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경고를 하였다는 응답은 9.6%로 나타났다.

〈표 5-88〉 가정내 학대피해 당시 피해자의 자기보호 노력(중복응답)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상대방에게 맞서 몸싸움을 함	4 (7.7)	25 (32.0)	16 (19.4)	45 (20.9)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경고를 함	1 (2.5)	10 (12.3)	10 (11.8)	21 (9.6)
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사정함	4 (8.0)	20 (25.5)	14 (16.8)	38 (17.6)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함	3 (5.7)	7 (8.9)	4 (4.9)	14 (6.5)
도망가거나 숨는 등 자리를 피함	9 (15.4)	6 (7.5)	9 (11.6)	24 (11.1)
가만히 있었음	25 (45.5)	25 (31.8)	30 (37.4)	80 (37.5)
그 외의 행동	14 (25.3)	10 (12.4)	11 (13.3)	35 (16.1)
계	56 (100)	78 (100)	81 (100)	215 (100)

2) 피해결과

가정내 학대로 인한 신체피해를 입은 경우는 46.3%였으며, 이 가운데 가벼운 멍이 드는 등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한 비율은 36.0%, 가벼운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7.9%였고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의 신체피해를 보고한 경우는 2.3%였다.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신체피해를 보고한 비율은 초등학생이 5.4%로 가장 낮았으며, 고등학생 8.8%, 중학생 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로

가정내 학대피해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총 3명으로 모두 중학생이었으며 이 가운데 입원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표 5-89〉 가정내 학대피해의 신체피해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다치지 않았음	33 (58.9)	39 (50.0)	43 (53.8)	115 (53.7)
가벼운 멍이 드는 등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 다침	20 (35.7)	27 (34.6)	30 (37.5)	77 (36.0)
집이나 학교 의무실 등에서 가벼운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다침	3 (5.4)	8 (10.3)	6 (7.5)	17 (7.9)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다침	0 (0.0)	4 (5.1)	1 (1.3)	5 (2.3)
계	56 (100)	78 (100)	80 (100)	214 (100)

3) 피해의 영향

가정내 학대피해 이후 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피해자 중 38.2%로 조사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가운데 26.1%가 한 가지 이상의 후유증을 경험한 반면, 중학생은 31.7%, 고등학생은 절반이 넘는 52.8%가 후유증을 보고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정내 학대피해의 정신적 후유증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유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울함과 부정적 자존감을 보고한 비율이 각각 22.9%와 23.6%였으며, 고립감은 17.5%, 두려움은 16.3%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우울함을 보고한 비율이 12.0%로 다른 종류의 후유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고등학생은 부정적 자존감을 보고한 비율이 37.3%로 가장 많았다. 가정내 학대피해 이후 가족관계나 친구관계의 어려움을 겪은 경우는 초등학생은 6.7%에 그쳤으나 중학생은 13.0%, 고등학생은 24.2%에 달하였다. 가정내 학대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8.7%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14.4%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5-90〉 가정내 학대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우울함	7 (12.0)	17 (21.6)	26 (31.7)	49 (22.9)
고립감	3 (6.2)	12 (15.6)	22 (27.1)	37 (17.5)
두려움	4 (6.5)	11 (14.1)	20 (25.2)	35 (16.3)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3 (5.1)	8 (11.0)	14 (17.0)	25 (11.7)
부정적 자존감	5 (8.6)	16 (20.2)	30 (37.3)	51 (23.6)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	2 (3.8)	6 (7.2)	4 (5.4)	12 (5.6)
가족관계·친구관계 어려움	4 (6.7)	10 (13.0)	20 (24.2)	33 (15.6)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받음	3 (4.9)	4 (5.6)	12 (14.4)	19 (8.7)
해당 없음	41 (73.9)	53 (68.3)	38 (47.2)	133 (61.8)
계	56 (100)	78 (100)	81 (100)	215 (100)

가정내 학대피해가 발생한 이후 행동적 측면의 영향이 있었던 경우는 전체적으로 9.8%였다. 이 가운데 이사나 전학을 간 비율은 6.1%, 가출은 5.6%, 무단결석은 4.2%로 조사되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가정내 학대피해 이후 가출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초등학생 중 2명,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5명이었다.

〈표 5-91〉 가정내 학대피해의 행동적 영향(중복응답)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이사 또는 전학	1 (1.8)	8 (10.3)	4 (4.9)	13 (6.1)
무단결석	1 (1.8)	4 (5.1)	4 (4.9)	9 (4.2)
가출	2 (3.6)	5 (6.4)	5 (6.2)	12 (5.6)
해당 없음	53 (94.6)	66 (84.6)	75 (92.6)	194 (90.2)
계	55 (100)	78 (100)	81 (100)	214 (100)

라. 피해자의 사후 대응

가정내 학대피해가 발생한 이후 피해사실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경우는 41.1%였다. 가정내 학대피해에 대해 이야기한 상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친구로 28.0%였으며, 부모님이나 부모님 외 가족에게 이야기한 경우는 각각 21.9%와 11.6%로 나타났다. 그 외에 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응답자는 11.6%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학대피해 사실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한 경우가 28.6%로 중학생 19.2%, 고등학생 19.8%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친구와 이야기하였다고 답한 비율은 초등학생이 16.1%로 중학생 36.4%, 고등학생 28.4%보다 낮았다.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답한 응답자는 학교급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표 5-92〉 가정내 학대피해 보고여부 및 대상(중복응답)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부모님	16 (28.6)	15 (19.2)	16 (19.8)	47 (21.9)
부모님 외 가족	7 (12.5)	9 (11.5)	9 (11.1)	25 (11.6)
선생님	4 (7.1)	4 (5.2)	5 (6.2)	13 (6.1)
친구	9 (16.1)	28 (36.4)	23 (28.4)	60 (28.0)
경찰관	0 (0.0)	5 (6.5)	2 (2.5)	7 (3.3)
상담가, 의사	1 (1.8)	5 (6.4)	5 (6.2)	11 (5.1)
그 외 다른 사람	3 (5.4)	3 (3.9)	0 (0.0)	6 (2.8)
보고 안함	24 (42.9)	29 (37.7)	35 (43.2)	88 (41.1)
계	56 (100)	78 (100)	81 (100)	215 (100)

가정내 학대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로는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64.8%였으며,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서라고 답한 경우는 12.1%,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9.9%였다.

피해 사실이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생이 83.3%로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이야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응답이 16.2%로 다소 높았다.

〈표 5-93〉 가정내 학대피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12 (50.0)	25 (83.3)	22 (59.5)	59 (64.8)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해서	5 (20.8)	1 (3.3)	5 (13.5)	11 (12.1)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0 (0.0)	2 (6.7)	1 (2.7)	3 (3.3)
이야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2 (8.3)	1 (3.3)	6 (16.2)	9 (9.9)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서	1 (4.2)	0 (0.0)	1 (2.7)	2 (2.2)
보복이 두려워서	1 (4.2)	0 (0.0)	1 (2.7)	2 (2.2)
내가 겪은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3 (12.5)	1 (3.3)	1 (2.7)	5 (5.5)
계	24 (100)	30 (100)	37 (100)	91 (100)

그렇다면 가정내 학대피해 사실이 경찰에 신고된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가정내 학대의 신고율은 4.7%였으며, 학교급별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94〉 가정내 학대피해 경찰신고 여부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신고했다	3 (5.4)	4 (5.1)	3 (3.7)	10 (4.7)
신고하지 않았다	53 (94.6)	74 (94.9)	78 (96.3)	205 (95.3)
계	56 (100)	78 (100)	81 (100)	215 (100)

가정내 학대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가족이 54.5%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각각 1건을 제외하면 모두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고등학생 1명이었으며, 선생님이 신고한 경우는 중학생이 피해를 입은 사건 1건이 있었다.

〈표 5-95〉 가정내 학대피해 경찰 신고자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본인	0 (0.0)	0 (0.0)	1 (25.0)	1 (9.1)
가족	2 (66.7)	3 (75.0)	1 (25.0)	6 (54.5)
선생님	0 (0.0)	1 (25.0)	0 (0.0)	1 (9.1)
친구	0 (0.0)	0 (0.0)	1 (25.0)	1 (9.1)
상담가, 의사	0 (0.0)	0 (0.0)	1 (25.0)	1 (9.1)
그 외 다른 사람	1 (33.3)	0 (0.0)	0 (0.0)	1 (9.1)
계	3 (100)	4 (100)	4 (100)	11 (100)

2. 괴롭힘 피해

가. 피해발생 일시와 장소

1) 피해발생 일시

지난 1년 간 포래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가장 최근에 발생한 피해가 6월부터 8월 사이인 여름에 일어났다고 보고한 비율은 56.6%였다. 다음으로 봄(3~5월)에 피해가 발생한 비율은 21.2%, 가을(9~11월)은 15.2%, 겨울(12~2월)은 7.1%였다. 최근 사건의 발생계절은 학교급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96〉 괴롭힘피해 발생 계절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봄(3~5월)	77 (21.6)	72 (19.2)	45 (24.3)	194 (21.2)
여름(6~8월)	208 (58.3)	213 (56.8)	98 (53.0)	519 (56.6)
가을(9~11월)	46 (12.9)	64 (17.1)	29 (15.7)	139 (15.2)
겨울(12~2월)	26 (7.3)	26 (6.9)	13 (7.0)	65 (7.1)
계	357 (100)	375 (100)	185 (100)	917 (100)

괴롭힘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한낮부터 오후사이(12~18시)로 32.8%가 이 시간대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12.0%가 발생한 아침부터 오전사이(06~12시)였으며, 저녁부터 밤사이(18~24시)와 심야부터 새벽사이(24~06시)에 괴롭힘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각각 3.2%와 1.7%였다.

〈표 5-97〉 괴롭힘피해 발생 시각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아침-오전(06~12시)	52 (14.5)	45 (12.0)	13 (7.1)	110 (12.0)
한낮-오후(12~18시)	130 (36.3)	114 (30.4)	57 (31.0)	301 (32.8)
저녁-밤(18~24시)	9 (2.5)	9 (2.4)	11 (6.0)	29 (3.2)
심야-새벽(24~06시)	10 (2.8)	4 (1.1)	2 (1.1)	16 (1.7)
알 수 없음	157 (43.9)	203 (54.1)	101 (54.9)	461 (50.3)
계	358 (100)	375 (100)	184 (100)	917 (100)

2) 피해발생 장소

괴롭힘피해의 발생 장소는 학교나 학교근처가 6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장소는 13.0%를 차지한 온라인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교나 학교근처에서 괴롭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비율은 초등학생 60.8%, 중학생 65.4%, 고등학생 68.1%였으며, 온라인에서 괴롭힘피해를 당했다고 보고한 비율은 초등학생 9.5%, 중학생 14.6%, 고등학생 16.2%였다. 즉, 학교나 학교근처, 또는 온라인에서 괴롭힘피해를 당하는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집 또는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에서 괴롭힘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각각 14.0%와 9.2%로 중고등학생에 비해 이러한 장소에서 피해를 입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5-98〉 괴롭힘피해 발생 장소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집	50 (14.0)	41 (10.9)	16 (8.6)	107 (11.7)
학교나 학교근처	217 (60.8)	246 (65.4)	126 (68.1)	589 (64.2)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	33 (9.2)	22 (5.9)	12 (6.5)	67 (7.3)
온라인	34 (9.5)	55 (14.6)	30 (16.2)	119 (13.0)
기타	23 (6.4)	12 (3.2)	1 (0.5)	36 (3.9)
계	357 (100)	376 (100)	185 (100)	918 (100)

괴롭힘피해가 집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의 발생 장소가 피해자 본인의 집이었다고 보고한 비율이 79.4%였으며 가해자의 집에서 괴롭힘피해가 발생한 비율은 10.3%였다. 이외에도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집에서 괴롭힘피해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경우도 10.3%로 조사되었다.

〈표 5-99〉 괴롭힘피해가 발생한 '집'의 구체적 장소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우리집	38 (76.0)	34 (82.9)	13 (81.3)	85 (79.4)
상대방의 집	7 (14.0)	3 (7.3)	1 (6.3)	11 (10.3)
다른 사람의 집	5 (10.0)	4 (9.8)	2 (12.5)	11 (10.3)
계	50 (100)	41 (100)	16 (100)	107 (100)

학교나 학교 근처에서 괴롭힘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교실에서 괴롭힘이 일어난 경우가 77.2%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괴롭힘피해가 발생한 장소는 복도·계단·옥상이 8.5%, 운동장이 4.4%, 도서관·체육관·강당·매저 등 학교 내부시설이 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교실에서 괴롭힘피해를 당한 비율이 81.7%로 초등학생 73.9%, 중학생 77.7%보다 약간 높았다.

〈표 5-100〉 괴롭힘피해가 발생한 '학교나 학교 근처'의 구체적 장소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교실	161 (73.9)	192 (77.7)	103 (81.7)	456 (77.2)
복도·계단·옥상	17 (7.8)	26 (10.5)	7 (5.6)	50 (8.5)
화장실·라커룸	0 (0.0)	5 (2.0)	2 (1.6)	7 (1.2)
도서관, 체육관, 강당, 매점 등 학교 내부시설	11 (5.0)	7 (2.8)	7 (5.6)	25 (4.2)
운동장	14 (6.4)	9 (3.6)	3 (2.4)	26 (4.4)
학교 담장 주변, 학교 근처 골목	4 (1.8)	0 (0.0)	1 (0.8)	5 (0.8)
학교 근처 공터나 주차장	6 (2.8)	3 (1.2)	2 (1.6)	11 (1.9)
학교 뒷산	0 (0.0)	1 (0.4)	0 (0.0)	1 (0.2)
기타	5 (2.3)	4 (1.6)	1 (0.8)	10 (1.7)
계	218 (100)	247 (100)	126 (100)	591 (100)

괴롭힘피해가 발생한 방과 후 활동장소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학원이나 독서실이 78.8%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학원·독서실에서 피해가 발생한 비율이 각각 42.9%와 46.2%로 다른 장소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중학생의 경우 PC방·노래방·당구장 등에서 괴롭힘피해를 당했다고 보고한 비율이 38.1%였으며, 고등학생은 상점이나 상업건물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38.5%로 나타났다.

〈표 5-101〉 괴롭힘피해가 발생한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의 구체적 장소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학원, 독서실	26 (78.8)	9 (42.9)	6 (46.2)	41 (61.2)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2 (6.1)	8 (38.1)	1 (7.7)	11 (16.4)
상점이나 상업건물	3 (9.1)	4 (19.0)	5 (38.5)	12 (17.9)
극장, 공연장	1 (3.0)	0 (0.0)	0 (0.0)	1 (1.5)
기타	1 (3.0)	0 (0.0)	1 (7.7)	2 (3.0)
계	33 (100)	21 (100)	13 (100)	67 (100)

또래 괴롭힘피해가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경우, 가장 많은 피해경로는 페이스북 등 SNS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42.9%가 SNS를 통해 괴롭힘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 20.0%, 중학생 46.3%, 고등학생 63.3%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SNS를 통한 괴롭힘피해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카카오톡 등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피해가 보고된 비율은 24.4%였다. 그 외에 온라인 게임을 통한 괴롭힘피해가 13.4%로 조사되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이러한 비율은 22.9%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5-102〉 괴롭힘피해가 발생한 '온라인'의 구체적 장소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인스턴트 메신저	11 (31.4)	11 (20.4)	7 (23.3)	29 (24.4)
SNS	7 (20.0)	25 (46.3)	19 (63.3)	51 (42.9)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 등	2 (5.7)	0 (0.0)	1 (3.3)	3 (2.5)
온라인 게임	8 (22.9)	7 (13.0)	1 (3.3)	16 (13.4)
온라인 쇼핑몰	3 (8.6)	6 (11.1)	0 (0.0)	9 (7.6)
이메일	3 (8.6)	5 (9.3)	2 (6.7)	10 (8.4)
기타	1 (2.9)	0 (0.0)	0 (0.0)	1 (0.8)
계	35 (100)	54 (100)	30 (100)	119 (100)

나. 가해자 특성

1) 가해자의 인구학적 특성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 수를 조사한 결과, 가해자가 1명이었다는 응답은 28.4%에 불과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피해자 중 1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이 35.6%였으나, 중학생은 25.9%, 고등학생 19.6%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수에 의한 괴롭힘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2명이었다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14.0%, 3명은 7.5%였으며, 4명 이상이라고 보고한 비율은 12.8%였다.

〈표 5-103〉 괴롭힘피해의 가해자 수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1명	127 (35.6)	97 (25.9)	36 (19.6)	260 (28.4)
2명	58 (16.2)	46 (12.3)	24 (13.0)	128 (14.0)
3명	34 (9.5)	22 (5.9)	13 (7.1)	69 (7.5)
4명 이상	22 (6.2)	64 (17.1)	31 (16.8)	117 (12.8)
모르겠다	116 (32.5)	146 (38.9)	80 (43.5)	342 (37.3)
계	357 (100)	375 (100)	184 (100)	916 (100)

괴롭힘 가해자의 성별은 여자가 37.3%로, 남자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해자의 성별은 학교급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초등학생이 괴롭힘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가 남자인 비율은 38.7%로 가해자가 여자인 사건의 비율보다 높았다. 반면, 중학생이 괴롭힘피해를 경험하였을 때는 가해자가 여자인 경우가 39.2%로 남자가 가해자인 경우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가해자의 성별차이는 보다 두드러져 남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29.3%, 여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45.1%로 조사되었다.

〈표 5-104〉 괴롭힘피해의 가해자 성별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남자	138 (38.7)	138 (36.8)	54 (29.3)	330 (36.0)
여자	112 (31.4)	147 (39.2)	83 (45.1)	342 (37.3)
남녀 모두	30 (8.4)	23 (6.1)	12 (6.5)	65 (7.1)
모르겠다	77 (21.6)	67 (17.9)	35 (19.0)	179 (19.5)
계	357 (100)	375 (100)	184 (100)	916 (100)

괴롭힘 가해자의 연령대는 피해자와 동일한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같은 연령대의 가해자에게 괴롭힘피해를 당한 비율이 각각 97.3%와 97.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고등학생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연령대인 경우가 77.3%였으며, 중학생 연령대인 14세에서 16세사이의 가해자에게 괴롭힘피해를 경험한 비율도 27.3%로 나타났다.

〈표 5-105〉 괴롭힘피해의 가해자 연령(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13세 이하	348 (97.3)	16 (4.3)	0 (0.0)	364 (39.7)
14~16세	6 (1.6)	366 (97.7)	50 (27.3)	422 (46.1)
17~19세	6 (1.7)	11 (3.0)	142 (77.3)	160 (17.5)
계	357 (100)	375 (100)	184 (100)	916 (100)

2)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괴롭힘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학교친구인 경우가 85.1%로 가장 많았으며, 이러한 비율은 학교급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그 외에 동네친구에게 괴롭힘피해를 당한 비율은 3.0%, 학교 선후배는 2.4%, 동네 선후배는 1.1%로 나타났다.

〈표 5-106〉 괴롭힘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학교친구	300 (83.9)	324 (86.4)	156 (84.7)	780 (85.1)
동네친구	9 (2.5)	15 (4.0)	3 (1.7)	27 (3.0)
학교 선후배	8 (2.2)	8 (2.1)	6 (3.3)	22 (2.4)
동네 선후배	5 (1.4)	3 (0.9)	2 (1.3)	11 (1.1)
잘 아는 이웃	3 (1.0)	6 (1.6)	1 (0.3)	10 (1.1)

	초등	중등	고등	계
얼굴만 아는 사람	33 (9.1)	19 (5.0)	19 (10.3)	70 (7.7)
기타	14 (4.0)	15 (4.0)	2 (1.3)	32 (3.5)
계	357 (100)	375 (100)	184 (100)	916 (100)

다. 피해 내용 및 피해 결과

1) 구체적인 피해 내용 및 상황

괴롭힘피해의 지속성 여부를 알아본 결과, 피해가 일회성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고한 비율은 90.1%였다. 괴롭힘피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였다고 답한 비율은 초등학교생의 경우 7.3%, 중학생 10.7%, 고등학생 13.6%의 순으로 증가하였다.

〈표 5-107〉 괴롭힘피해 지속성 여부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일시적으로 한번	331 (92.7)	335 (89.3)	159 (86.4)	825 (90.1)
지속적으로 꾸준히	26 (7.3)	40 (10.7)	25 (13.6)	91 (9.9)
계	357 (100)	375 (100)	184 (100)	916 (100)

괴롭힘피해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된 경우, 지속기간은 1개월 미만에서 6개월 이내 사이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에 걸쳐 꾸준히 지속되었다고 보고한 비율은 22.0%였으며, 1년 내내 지속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15.4%에 달하였다.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는 초등학교생 38.4%, 중학생 35.0%, 고등학생 40.0%였다.

〈표 5-108〉 괴롭힘피해 지속기간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1개월 미만	7 (26.9)	11 (27.5)	2 (8.0)	20 (22.0)
1~2개월 미만	4 (15.4)	11 (27.5)	4 (16.0)	19 (20.9)
2~3개월 미만	5 (19.2)	4 (10.0)	9 (36.0)	18 (19.8)
1학기 (6개월)	5 (19.2)	10 (25.0)	5 (20.0)	20 (22.0)
1년	5 (19.2)	4 (10.0)	5 (20.0)	14 (15.4)
계	26 (100)	40 (100)	25 (100)	91 (100)

괴롭힘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심한 욕을 하거나 피해자의 약점이나 외모를 가지고 놀린 경우가 56.1%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이러한 비율은 63.9%로 중학생 52.8%, 고등학생 47.8%에 비해 다소 높았다. 반면, 피해자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거나 소문을 내는 방식으로 괴롭힌 경우는 전체적으로 41.0%였으며, 이러한 피해유형은 고등학생이 5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중학생은 44.5%, 초등학생 29.4%로 나타났다. 그 외에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따돌린 경우는 12.4%, 인터넷이나 SNS에 피해자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나 사진을 올린 경우는 6.5%였다.

〈표 5-109〉 괴롭힘피해 내용(중복응답)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심한 욕을 하거나 내 약점이나 외모를 가지고 놀림	228 (63.9)	198 (52.8)	88 (47.8)	514 (56.1)
나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거나 소문을 냄	105 (29.4)	167 (44.5)	104 (56.5)	376 (41.0)
일부 아이들이 일부러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따돌림	35 (9.8)	60 (16.0)	19 (10.3)	114 (12.4)
채팅방에 강제로 초대해서 괴롭힘	12 (3.4)	11 (2.9)	1 (0.5)	24 (2.6)
인터넷이나 SNS에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나 사진을 올림	17 (4.7)	28 (7.5)	15 (8.2)	60 (6.5)
일부러 발을 걸어 넘어뜨림	12 (3.4)	8 (2.1)	3 (1.6)	23 (2.5)
강제로 숙제를 대신 시키거나, 가방이나 짐을 들게 함	4 (1.1)	6 (1.6)	0 (0.0)	10 (1.1)
화장실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함	3 (0.8)	0 (0.0)	1 (0.5)	4 (0.4)
그 외 다른 방법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림	46 (12.9)	24 (6.4)	15 (8.2)	85 (9.3)
계	357 (100)	375 (100)	184 (100)	916 (100)

2) 피해의 영향

괴롭힘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30.1%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후유증의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우울함으로 23.2%가 괴롭힘피해로 인해 우울함을 겪었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고립감을 보고한 비율이 14.2%, 부정적 자존감 14.0%,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13.0%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괴롭힘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보고한 경우가 43.5%로 매우 높았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이보다 낮은 23.9%와 29.7%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우울함, 고립감, 부정적 자존감을 보고한 비율이 각각 34.7%, 25.0%, 23.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괴롭힘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해 심리 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6.0%였다.

〈표 5-110〉 괴롭힘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우울함	61 (17.0)	88 (23.4)	64 (34.7)	212 (23.2)
고립감	32 (9.1)	51 (13.7)	46 (25.0)	130 (14.2)
두려움	27 (7.7)	29 (7.7)	21 (11.6)	78 (8.5)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21 (5.9)	26 (6.8)	17 (9.5)	64 (7.0)
부정적 자존감	37 (10.4)	47 (12.5)	44 (23.9)	128 (14.0)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	33 (9.2)	48 (12.7)	39 (21.1)	119 (13.0)
가족관계·친구관계 어려움	27 (7.5)	42 (11.3)	35 (19.1)	104 (11.4)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받음	19 (5.3)	21 (5.5)	15 (8.3)	55 (6.0)
해당 없음	272 (76.1)	263 (70.3)	106 (57.5)	641 (69.9)
계	357 (100)	375 (100)	184 (100)	916 (100)

괴롭힘피해를 경험한 후 이로 인해 이사나 전학을 갔다고 보고한 응답자는 2.1%였으며 무단결석을 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경우는 2.0%, 가출은 1.3%로 나타났다. 괴롭힘피해가 미친 이러한 영향은 고등학생의 경우에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111〉 괴롭힘피해의 행동적 영향(중복응답)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이사 또는 전학	5 (1.4)	9 (2.4)	5 (2.7)	19 (2.1)
무단결석	5 (1.4)	6 (1.6)	7 (3.8)	18 (2.0)
가출	3 (0.8)	6 (1.6)	3 (1.6)	12 (1.3)
해당 없음	347 (96.9)	362 (96.5)	176 (95.1)	885 (96.4)
계	357 (100)	375 (100)	184 (100)	916 (100)

라. 피해자의 사후 대응

괴롭힘피해가 발생한 후 피해사실을 누구에게 이야기하였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다고 보고한 비율은 41.4%, 선생님에게 이야기한 경우는 18.2%였다. 선생님에게 괴롭힘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비율은 학교급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부모님에게 이야기한 비율은 초등학생 50.8%, 중학생 34.7%, 고등학생 37.0%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1.9%와 45.9%였으며, 초등학생은 25.4%에 불과하였다. 괴롭힘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28.9%로 나타났다.

〈표 5-112〉 괴롭힘피해 보고여부 및 대상(중복응답)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부모님	182 (50.8)	130 (34.7)	68 (37.0)	380 (41.4)
부모님 외 가족	31 (8.7)	39 (10.4)	24 (13.0)	94 (10.3)
선생님	60 (16.8)	71 (18.9)	36 (19.6)	167 (18.2)
친구	91 (25.4)	157 (41.9)	85 (45.9)	333 (36.3)
경찰관	0 (0.0)	4 (1.1)	2 (1.1)	6 (0.7)
상담가, 의사	10 (2.8)	10 (2.7)	13 (7.1)	33 (3.6)
그 외 다른 사람	20 (5.6)	20 (5.3)	8 (4.3)	48 (5.2)
보고 안함	105 (29.4)	112 (29.9)	47 (25.5)	264 (28.9)
계	357 (100)	375 (100)	184 (100)	916 (100)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라고 답한 경우가 70.2%였으며,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라는 답변이 11.3%, 이야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는 답변이 7.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경우 피해가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1.7%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다소 낮았으며, 피해사실이 수치스러워서라고 답한 비율은 17.0%, 이야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는 답변은 14.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5-113〉 괴롭힘피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75 (71.4)	82 (72.6)	29 (61.7)	186 (70.2)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해서	9 (8.6)	7 (6.2)	1 (2.1)	17 (6.4)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1 (1.0)	1 (0.9)	2 (4.3)	4 (1.5)
이야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5 (4.8)	8 (7.1)	7 (14.9)	20 (7.5)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는 사람이어서	1 (1.0)	2 (1.8)	0 (0.0)	3 (1.1)
보복이 두려워서	3 (2.9)	2 (1.8)	0 (0.0)	5 (1.9)
내가 겪은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11 (10.5)	11 (9.7)	8 (17.0)	30 (11.3)
계	105 (100)	113 (100)	47 (100)	265 (100)

괴롭힘피해의 경찰신고 여부를 살펴보면, 피해사실이 경찰에 신고된 경우는 2.2%였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피해를 입은 사건 중 2.0%, 중학생은 1.9%, 고등학생이 피해를 입은 사건은 3.3%가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14〉 괴롭힘피해 경찰신고 여부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신고했다	7 (2.0)	7 (1.9)	6 (3.3)	20 (2.2)
신고하지 않았다	351 (98.0)	368 (98.1)	178 (96.7)	897 (97.8)
계	358 (100)	375 (100)	184 (100)	917 (100)

괴롭힘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 본인이 신고한 경우가 52.6%로 가장 많았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괴롭힘피해를 입은 7명 중 5명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 외에 가족,

선생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초등학생은 본인 외에는 모두 가족이 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15〉 괴롭힘피해 경찰 신고자

단위: 명(%)

	초등	중등	고등	계
본인	3 (50.0)	5 (71.4)	2 (33.3)	10 (52.6)
가족	3 (50.0)	1 (14.3)	1 (16.7)	5 (26.3)
선생님	0 (0.0)	1 (14.3)	2 (33.3)	3 (15.8)
친구	0 (0.0)	0 (0.0)	1 (16.7)	1 (5.3)
계	6 (100)	7 (100)	6 (100)	19 (100)

3. 성적 괴롭힘 피해

가. 피해발생 일시와 장소

1) 피해발생 일시

아래에서 살펴볼 성적 괴롭힘 피해는 사건조사표의 '성적 괴롭힘' 항목 가운데 강간(미수 포함),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 촬영에 해당하는 피해경험을 보고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나에게 성적인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갖게 하는 말을 함", "인터넷이나 눈, 온라인 게임 상에서 성적모욕이나 성희롱을 함",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성적으로 접촉하거나 괴롭힘"에 대한 피해경험만을 보고한 경우의 피해실태를 분석하였다.

먼저, 가장 최근에 성적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계절은 여름(6~8월)이 41.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봄(3~5월)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29.3%, 가을(9~11월)은 23.2%였으며, 겨울(12~2월)에 성적 괴롭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한 경우는 6.1%로 나타났다.

〈표 5-116〉 성적 괴롭힘 피해 발생 계절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봄(3~5월)	15 (26.8)	9 (34.6)	24 (29.3)
여름(6~8월)	23 (41.1)	11 (42.3)	34 (41.5)
가을(9~11월)	16 (28.6)	3 (11.5)	19 (23.2)
겨울(12~2월)	2 (3.6)	3 (11.5)	5 (6.1)
계	56 (100)	26 (100)	82 (100)

성적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시각은 한낮부터 오후사이(12~18시)가 2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아침부터 오전사이(06~12시)로 12.2%였다. 그 외에 저녁부터 밤사이(18~24시)에 성적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8.5%, 심야에서 새벽사이(24~06시)는 3.7%였다.

〈표 5-117〉 성적 괴롭힘 피해 발생 시각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아침-오전(06~12시)	6 (10.9)	4 (14.8)	10 (12.2)
한낮-오후(12~18시)	16 (29.1)	6 (22.2)	22 (26.8)
저녁-밤(18~24시)	2 (3.6)	5 (18.5)	7 (8.5)
심야-새벽(24~06시)	3 (5.5)	0 (0.0)	3 (3.7)
알 수 없음	28 (50.9)	12 (44.4)	40 (48.8)
계	55 (100)	27 (100)	82 (100)

2) 피해발생 장소

피해가 발생한 장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교나 학교근처에서 성적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비율이 51.9%로 절반이 넘었으며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곳은 온라인으로 19.8%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성적 괴롭힘 피해를 당한 경우 학교나 학교근처에서 피해가 일어난 비율이 56.4%로 고등학생(42.3%)보다 다소 높았다. 반면,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에서 성적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고등학생이 19.2%로 중학생(7.3%)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118〉 성적 괴롭힘 피해 발생 장소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집	7 (12.7)	3 (11.5)	10 (12.3)
학교나 학교근처	31 (56.4)	11 (42.3)	42 (51.9)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	4 (7.3)	5 (19.2)	9 (11.1)
온라인	11 (20.0)	5 (19.2)	16 (19.8)
기타	2 (3.6)	2 (7.7)	4 (4.9)
계	55 (100)	26 (100)	81 (100)

성적 괴롭힘 피해가 일어난 장소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집에서 발생한 성적 괴롭힘 피해 중 81.8%는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가해자의 집과 제3자의 집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각 1건이 있었으며, 중학생의 경우는 이러한 사례가 없었다.

〈표 5-119〉 성적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집'의 구체적 장소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우리집	7 (100.0)	2 (50.0)	9 (81.8)
상대방의 집	0 (0.0)	1 (25.0)	1 (9.1)
다른 사람의 집	0 (0.0)	1 (25.0)	1 (9.1)
계	7 (100)	4 (100)	11 (100)

학교나 학교 근처에서 성적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실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67.4%였으며, 중학생 32명 중 24명(75.0%)은 교실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하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이러한 비율은 45.5%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교실 외에도 복도·계단·옥상, 도서관 등 학교 내부시설, 학교 근처 공터나 주차장, 학교 뒷산 등 다양한 장소에서 성적 괴롭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20〉 성적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학교나 학교 근처'의 구체적 장소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교실	24 (75.0)	5 (45.5)	29 (67.4)
복도·계단·옥상	5 (15.6)	1 (9.1)	6 (14.0)
도서관, 체육관, 강당, 매점 등 학교 내부시설	2 (6.3)	2 (18.2)	4 (9.3)
학교 담장 주변, 학교 근처 골목	1 (3.1)	0 (0.0)	1 (2.3)
학교 근처 공터나 주차장	0 (0.0)	1 (9.1)	1 (2.3)
학교 뒷산	0 (0.0)	1 (9.1)	1 (2.3)
기타	0 (0.0)	1 (9.1)	1 (2.3)
계	32 (100)	11 (100)	43 (100)

중학생이 성적 괴롭힘 피해를 보고한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는 모두 학원·독서

실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고등학생이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성적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한 사례는 1건이었으며, 그 외에 PC방·노래방·당구장 등에서 피해를 경험한 사례와 상점·상업건물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각각 2건과 3건이 보고되었다.

〈표 5-121〉 성적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의 구체적 장소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학원, 독서실	4 (100.0)	1 (16.7)	5 (50.0)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0 (0.0)	2 (33.3)	2 (20.0)
상점이나 상업건물	0 (0.0)	3 (50.0)	3 (30.0)
계	4 (100)	6 (100)	10 (100)

성적 괴롭힘 피해가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로는 페이스북 등 SNS가 44.4%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중학생은 12명 중 7명(58.3%)가 SNS를 통해서 피해를 경험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SNS보다 카카오톡 등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해서 성적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6건 중 4건으로 66.7%를 차지하였다.

〈표 5-122〉 성적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온라인’의 구체적 장소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인스턴트 메신저	1 (8.3)	4 (66.7)	5 (27.8)
SNS	7 (58.3)	1 (16.7)	8 (44.4)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 등	1 (8.3)	0 (0.0)	1 (5.6)
온라인 게임	0 (0.0)	1 (16.7)	1 (5.6)
이메일	3 (25.0)	0 (0.0)	3 (16.7)
계	12 (100)	6 (100)	18 (100)

나. 가해자 특성

1) 가해자 인지 여부 및 인구학적 특성

피해자가 성적 괴롭힘의 가해자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가해자 인지율은 45.8%로 나타나 성적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2%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하였다. 가해자 인지율은 중학생이 51.8%로 고등학생 33.3%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123〉 성적 괴롭힘 피해의 가해자 인지 여부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예	29 (51.8)	9 (33.3)	38 (45.8)
아니오	27 (48.2)	18 (66.7)	45 (54.2)
계	56 (100)	27 (100)	83 (100)

가해자가 누구인지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 가운데 44.7%는 가해자가 1명이었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가해자가 2명인 사례는 18.4%, 3명은 7.9%였으며, 4명 이상인 경우도 13.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가해자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된 비율은 41.3%로 가해자가 1명인 경우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표 5-124〉 성적 괴롭힘 피해의 가해자 수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1명	13 (44.8)	4 (44.4)	17 (44.7)
2명	6 (20.7)	1 (11.1)	7 (18.4)
3명	1 (3.4)	2 (22.2)	3 (7.9)
4명 이상	5 (17.2)	0 (0.0)	5 (13.2)
모르겠다	4 (13.8)	2 (22.2)	6 (15.8)
계	29 (100)	9 (100)	38 (100)

성적 괴롭힘의 가해자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62.2%로 가해자가 여자인 경우(21.6%)보다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성별차이는 고등학생이 피해를 보고한 사건에서 더욱 두드러져 남자가 가해자인 사건은 77.8%, 여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11.8%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성적 괴롭힘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가 남자인 사건은 57.1%, 여자인 사건은 25.0%였다.

〈표 5-125〉 성적 괴롭힘 피해의 가해자 성별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남자	16 (57.1)	7 (77.8)	23 (62.2)
여자	7 (25.0)	1 (11.1)	8 (21.6)
남녀 모두	3 (10.7)	1 (11.1)	4 (10.8)
모르겠다	2 (7.1)	0 (0.0)	2 (5.4)
계	28 (100)	9 (100)	37 (100)

가해자의 연령대는 중학생이 성적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경우 87.4%가 14세에서 16세 사이로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가 대다수였다.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가해자가

같은 연령대인 17세에서 19세 사이인 사건의 비율은 44.3%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으며, 40세 이상의 가해자에게 성적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한 사례가 9건 중 2건으로 나타났다.

〈표 5-126〉 성적 괴롭힘 피해의 가해자 연령(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13세 이하	4 (15.4)	0 (0.0)	4 (11.8)
14~16세	25 (87.4)	1 (11.8)	26 (69.9)
17~19세	1 (3.1)	4 (44.3)	5 (12.7)
20~30대	0 (0.0)	0 (0.0)	0 (0.0)
40세 이상	1 (1.5)	2 (25.9)	3 (7.2)
모르겠음	0 (0.0)	2 (18.1)	2 (4.2)
계	29 (100)	9 (100)	37 (100)

성적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당시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확인된 경우는 고등학교이 피해자인 사건 1건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의 사건은 가해자가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7〉 성적 괴롭힘 피해 당시 가해자 음주여부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그렇다	0 (0.0)	1 (11.1)	1 (2.7)
아니다	24 (85.7)	8 (88.9)	32 (86.5)
모르겠다	4 (14.3)	0 (0.0)	4 (10.8)
계	28 (100)	9 (100)	37 (100)

2)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성적 괴롭힘 피해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중학생이 보고한 모든 사건은 가해자가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고등학생이 경험한 성적 괴롭힘 피해사건에서도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9건 중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가족을 포함한 친인척이 가해자인 사건이 1건,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1건이었다.

〈표 5-128〉 성적 괴롭힘 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친인척(가족 포함)	0 (0.0)	1 (8.8)	1 (2.0)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29 (100.0)	7 (82.5)	36 (95.9)
모르는 사람	0 (0.0)	1 (8.8)	1 (2.0)
계	29 (100)	9 (100)	37 (100)

가해자가 친인척이라고 보고한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가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알아본 결과,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아닌 삼촌·사촌 등 기타 친인척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친인척이 아닌 아는 사람에게 성적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친구가 92.4%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성적 괴롭힘의 가해자는 동네친구, 학교 및 동네 선후배인 경우가 일부 보고되었다.

〈표 5-129〉 성적 괴롭힘 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 아는 사람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학교친구	28 (98.5)	5 (68.3)	33 (92.4)
동네친구	1 (3.1)	1 (11.3)	2 (4.8)
학교 선후배	1 (3.1)	0 (0.0)	1 (2.5)
동네 선후배	3 (11.8)	0 (0.0)	3 (9.4)
선생님	1 (1.5)	0 (0.0)	1 (1.2)
잘 아는 이웃	0 (0.0)	1 (11.0)	1 (2.2)
얼굴만 아는 사람	0 (0.0)	2 (21.9)	2 (4.4)
기타	0 (0.0)	1 (8.5)	1 (1.7)
계	29 (100)	7 (100)	36 (100)

다. 피해 내용 및 피해 결과

1) 구체적인 피해 내용 및 상황

성적 괴롭힘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성적인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갖게 하는 말을 한 경우가 61.0%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이나 SNS, 온라인 게임 상에서 성적모욕이나 성희롱을 한 경우는 17.1%로 조사되었다. 성적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급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표 5-130〉 성적 괴롭힘 피해 내용(중복응답)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나에게 성적인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갖게 하는 말을 함	34 (60.7)	16 (61.5)	50 (61.0)
인터넷이나 SNS, 온라인게임 상에서 성적모욕이나 성희롱을 함	10 (18.2)	4 (14.8)	14 (17.1)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성적으로 접촉하거나 괴롭힘	14 (25.0)	7 (25.9)	21 (25.3)
계	56 (100)	27 (100)	83 (100)

성적 괴롭힘 피해를 온라인상에서 경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물리적 대면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한 경우에 한하여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학생의 경우 성적 괴롭힘과 함께 폭행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비율이 17.8%, 폭행은 없었지만 협박이 동반되었다고 보고한 경우는 6.7%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이러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각 1건으로 조사되었다.

〈표 5-131〉 성적 괴롭힘 피해에서 신체 공격 유무(온라인 괴롭힘 제외)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신체공격을 했다	8 (17.8)	1 (4.3)	9 (13.2)
신체공격은 없었으나 폭행의 위협을 했다	3 (6.7)	1 (4.3)	4 (5.9)
신체 공격이나 위협(협박)은 없었다	34 (75.6)	21 (91.3)	55 (80.9)
계	45 (100)	23 (100)	68 (100)

2) 피해의 영향

성적 괴롭힘 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피해자 중 26.6%는 하나 이상의 후유증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후유증을 보고한 비율은 중학생 26.0%, 고등학생 28.1%로 큰 차이는 없었다. 세부적인 후유증의 내용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부정적 자존감을 보고한 비율이 1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이 18.6%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생 가운데 부정적 자존감을 보고한 사례는 1건에 그쳤으며, 가장 많이 보고된 후유증은 두려움(15.1%), 우울함(15.0%), 고립감(13.7%)이었다. 성적 괴롭힘 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해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2건으로 피해자는 모두 중학생이었다.

〈표 5-132〉 성적 괴롭힘 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우울함	6 (11.2)	4 (15.0)	10 (12.5)
고립감	4 (6.8)	4 (13.7)	7 (9.1)
두려움	5 (9.4)	4 (15.1)	9 (11.3)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4 (6.8)	2 (7.0)	6 (6.9)
부정적 자존감	11 (19.1)	1 (5.4)	12 (14.6)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	10 (18.6)	4 (13.1)	14 (16.8)
가족관계·친구관계 어려움	7 (12.8)	2 (8.9)	9 (11.5)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받음	2 (3.0)	0 (0.0)	2 (2.0)
해당 없음	41 (74.0)	19 (71.9)	60 (73.4)
계	56 (100)	27 (100)	82 (100)

행동적 측면에서 나타난 성적 괴롭힘 피해의 영향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이사·전학, 무단결석, 가출을 보고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중학생은 이사 또는 전학을 갔다고 답한 경우가 2건, 무단결석 1건, 가출이 2건 있었다.

〈표 5-133〉 성적 괴롭힘 피해의 행동적 영향(중복응답)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이사 또는 전학	2 (3.6)	0 (0.0)	2 (2.4)
무단결석	1 (1.8)	0 (0.0)	1 (1.2)
가출	2 (3.6)	0 (0.0)	2 (2.4)
해당 없음	53 (96.4)	27 (100.0)	80 (97.6)
계	56 (100)	27 (100)	83 (100)

라. 피해자의 사후 대응

성적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후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비율은 56.1%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모님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경우는 19.5%에 불과하였으며, 친구에게 이야기한 비율은 39.8%로 부모님에게 이야기한 경우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중학생의 경우 부모님과 친구 외에도 선생님에게 이야기한 경우가 17.9%, 경찰관과 상담가·의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경우도 각각 5.4%와 3.6%로 조사되었다.

〈표 5-134〉 성적 괴롭힘 피해 보고여부 및 대상(중복응답)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부모님	10 (18.2)	6 (22.2)	16 (19.5)
부모님 외 가족	4 (7.1)	2 (7.4)	6 (7.2)
선생님	10 (17.9)	1 (3.7)	11 (13.3)
친구	25 (44.6)	8 (29.6)	33 (39.8)
경찰관	3 (5.4)	0 (0.0)	3 (3.6)

	중등	고등	계
상담가, 의사	2 (3.6)	0 (0.0)	2 (2.4)
그 외 다른 사람	1 (1.8)	2 (7.4)	3 (3.7)
보고 안함	24 (43.6)	12 (44.4)	36 (43.9)
계	56 (100)	27 (100)	83 (100)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한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68.4%였으며 다음으로 많은 것은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라고 답한 경우로 15.8%를 차지하였다. 후자의 경우 고등학생 가운데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중학생보다 다소 높은 23.1%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서 또는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례는 없었다.

〈표 5-135〉 성적 괴롭힘 피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19 (76.0)	7 (53.8)	26 (68.4)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해서	0 (0.0)	2 (15.4)	2 (5.3)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2 (8.0)	0 (0.0)	2 (5.3)
이야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1 (4.0)	1 (7.7)	2 (5.3)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서	0 (0.0)	0 (0.0)	0 (0.0)
보복이 두려워서	0 (0.0)	0 (0.0)	0 (0.0)
내가 겪은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3 (12.0)	3 (23.1)	6 (15.8)
계	25 (100)	13 (100)	38 (100)

성적 괴롭힘 피해사실이 경찰에 신고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하였다. 해당 사건은 모두 고등학생이 피해를 경험한 경우이며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 본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35〉 성적 괴롭힘 피해 경찰신고 여부

단위: 명(%)

	중등	고등	계
신고했다	0 (0.0)	2 (7.4)	2 (2.4)
신고하지 않았다	56 (100.0)	25 (92.6)	81 (97.6)
계	56 (100)	27 (100)	83 (100)

제3절 소결

이 장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간 경험한 재산범죄(절도, 사기), 폭력범죄(갈취, 폭행·협박), 성폭력범죄, 가정내 학대, 또래 괴롭힘, 성적 괴롭힘의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범죄피해 실태

가. 재산범죄피해 실태

1) 피해발생 일시와 장소

기초조사표에서 절도나 사기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최근에 발생한 피해를 기준으로 사건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한 결과,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계절은 여름이 가장 많았으며 절도피해 중 58.7%, 사기피해 중 59.7%가 6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하였다. 구체적인 발생시각은 알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

면 한낮부터 오후사이(12~18시)에 발생한 경우가 절도 35.4%, 사기 30.6%로 가장 많았다.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장소는 학교나 학교근처가 가장 많았으며 절도피해 중 62.1%, 사기피해 중 46.8%였다. 그 외에는 절도피해 중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 18.3%였으며, 사기피해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20.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 가해자 특성

재산범죄피해의 경우, 가해자가 누구인지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절도피해자 중 13.3%, 사기피해자 중 37.2%에 불과하여 피해가 발생한 후 사건처리과정에서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가 확인된 사건에 한하여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재산범죄피해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동일한 연령대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으며, 이러한 비율은 특히 초등학생이 높았으며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낮아졌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는 절도 92.6%, 사기 85.7%로 대다수가 아는 사이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피해 내용 및 피해 결과

절도피해에서 피해 물품은 학용품·책·공책·가방 등(39.5%)이 가장 많았으며 현금·수표·상품권(34.4%)이 다음으로 많았다. 사기피해의 경우 다른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빌려가서 일부러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70.8%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거래 과정에서 사기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8.5%로 보고되었다. 평균 재산피해액은 절도 3만3천원, 사기 2만 9천원 가량이었으며 고등학생의 평균 피해액이 가장 많고 중학생, 초등학생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하였는지 알아본 결과, 절도피해자 중 16.4%, 사기피해자 중 13.4%가 한 가지 이상의 심리적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었다고 답하였다. 정신적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울함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절도피해자 중 11.4%, 사기피해자 중 7.8%가 우울함을 보고하였다. 재산범죄피해로 인하여 이사·전학, 무단결석, 가출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적으로 2.8%였다.

4) 피해자의 사후 대응

재산범죄피해자의 사후 대응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절도피해자 중 27.9%, 사기피해자 중 38.2%는 피해사실에 대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피해가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80% 전후로 나타났다. 피해사실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한 응답자의 비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님보다 친구에게 이야기했다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산범죄피해의 경찰 신고율은 절도피해 3.6%, 사기피해 4.8%에 불과하였다.

나. 폭력범죄피해 실태

1) 피해발생 일시와 장소

폭력범죄의 발생계절은 재산범죄와 마찬가지로 여름이 많았다. 갈취피해의 경우 여름에 발생한 사건이 59.9%였으며 다음으로 가을에 발생한 사건 비율이 15.9%였다. 폭행·협박 역시 여름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사건이 56.2%로 가장 많았으나 갈취와 달리 봄에 발생한 사건이 24.6%로 가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발생시각은 갈취피해 중 24.4%, 폭행·협박피해 중 38.1%가 한낮부터 오후사이(12~18시)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폭행·협박피해의 경우 저녁부터 심야사이(18~06시)에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등학생 중 24.1%, 중학생 중 21.4%로 초등학생에 비해 늦은 시간대에 폭행·협박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폭력범죄피해는 절반 이상이 학교나 학교근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유형별로는 갈취피해 중 51.2%, 폭행·협박피해 중 55.2%가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2) 가해자 특성

폭력범죄의 가해자 성별을 살펴보면, 갈취의 경우 남자가 26.2%, 여자가 11.9%였으며, 폭행협박의 경우 남자가 50.6%, 여자가 18.2%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연령은 피해

자와 같은 연령대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재산범죄피해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폭행·협박피해 중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대가 동일한 사건의 비율은 초등학생이 피해를 보고한 사건 중 67.7%, 중학생은 54.7%, 고등학생은 70.0%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인 경우는 갈취피해 중 53.5%, 폭행·협박피해 중 78.2%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가해자가 학교친구인 사건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3) 피해 내용 및 피해 결과

폭력범죄피해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인 자기보호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갈취피해 사건 중 26.3%, 폭행·협박피해 사건 중 25.0%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에게 맞서 몸싸움을 한 경우는 갈취피해자 중 10.2%, 폭행·협박피해 사건 중 14.5%였으며, 특히 중학생의 경우 이러한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피해 당시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고 보고한 경우는 갈취피해의 경우 17.7%였으나, 폭행·협박피해의 경우 46.9%는 동반자가 있었으며 동반자가 함께 피해를 입은 비율은 38.7%로 나타났다.

폭력범죄피해 당시 실제 신체공격이 이루어진 경우는 갈취피해 사건 중 12.4%, 폭행·협박 사건 중 66.3%였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신체공격을 당한 비율이 갈취피해자 중 9.7%, 폭행·협박피해자 중 55.4%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 피해결과 신체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한 경우는 갈취피해자 중 6.4%, 폭행피해자 중 29.7%였다.

폭력범죄피해로 인하여 한 가지 이상의 정신적 후유증을 보고한 응답자는 갈취피해자 중 12.7%, 폭행·협박피해자 중 22.2%로 재산범죄피해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폭행·협박피해자 중 13.4%는 피해로 인하여 우울함을 겪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외에도 고립감, 두려움, 부정적 자존감,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각각 10% 가량으로 조사되었다. 갈취피해로 인하여 이사·전학, 무단결석, 결석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4%였으며, 폭행·협박피해자 중에는 8.5%였다.

4) 피해자의 사후 대응

폭력범죄피해 사실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응답자는 갈취피해자

중 45.6%, 폭행·협박피해자 중 36.1%였으며, 이 가운데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73.5%와 63.9%였다. 폭력범죄피해 사실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한 피해자의 비율은 재산범죄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높았다. 경찰에 신고된 사건 비율은 갈취피해 중 6.8%, 폭행·협박피해 중 7.3%로 재산범죄피해보다 경찰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건 신고율은 초등학생이 4%대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절반 수준이었다.

다. 성폭력피해 실태

1) 피해발생 일시와 장소

강간(미수 포함),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활용 피해는 여름에 발생한 사건이 32.4%로 가장 많았으나 봄과 가을에 발생한 사건도 각각 24.3%로 나타나 재산범죄나 폭력범죄에 비해 계절의 편향성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발생시각은 33.3%가 한낮에서 오후사이(12~18시)에 발생하였으며, 아침과 오전사이(06~12시)와 저녁에서 밤사이(18~24시)에 각각 7건(19.4%)이 발생하였다. 성폭력피해가 발생한 장소는 학교나 학교근처가 58.3%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교실에서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집에서 발생한 사건이 25.0%를 차지하였다.

2) 가해자 특성

피해자가 가해자가 누구인지 인지하였다고 답한 경우에 한하여 성폭력피해의 가해자 특성을 살펴보면, 가해자의 성별은 남자가 75.0%, 여자가 25.0%였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인 사건은 전체적으로 66.7%였으며, 성인이 가해자인 사건은 33.3%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가족을 포함한 친인척이 가해자인 사건은 30.0%이었으며, 친인척 외 아는 사람인 사건은 66.7%로 이 가운데 79.8%가 학교친구였다.

3) 피해 내용 및 피해 결과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은 강간(미수 포함)이 11.1%,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성적으로

로 몸을 만진 경우가 55.6%, 가해자의 몸을 만지도록 강요한 경우는 16.7%였으며,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피해는 30.6%로 나타났다.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신적 후유증을 보고한 피해자는 25.3%였으며 이러한 비율은 중학생 피해자의 경우 29.0%로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정신적 후유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면증·악몽·환청·두통을 보고한 사례가 11.4%로 가장 많았으며, 두려움(10.0%), 부정적 자존감(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동적 측면에서 나타난 피해의 영향을 살펴보면 성폭력피해로 인해 이사나 전학을 갔다고 보고한 응답자가 21.6%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4) 피해자의 사후 대응

성폭력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피해자 비율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40% 가량으로 비슷하였으나, 중학생은 부모님에게 이야기한 비율이 친구에게 이야기한 경우보다 2배 이상이었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님보다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로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는 응답은 고등학생(83.3%)보다 중학생(33.3%)의 경우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성폭력피해 사실이 경찰에 신고된 경우는 총 2건(5.6%)에 불과하였다.

2. 가정내 학대·괴롭힘피해 실태

가. 가정내 학대피해 실태

1) 피해발생 일시와 장소

가장 최근에 발생한 가정내 학대피해의 발생일시를 조사한 결과, 6월부터 8월 사이인 여름이 51.6%로 가장 많았으며, 봄, 가을, 겨울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발생 시각은 저녁부터 밤사이(18~24시)가 32.7%로 가장 많았고, 이러한 비율은 중학생 39.0%, 고등학생 34.6%로 초등학생 21.4%보다 다소 높았다. 피해유형의 특성상 집에서 발생한 사건이 83.2%로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학교나 학교근처에서 보호자에 의한 학대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9.8%로 나타났다.

2) 가해자 특성

가정내 학대 가해자의 성별은 남자가 46.3%로 여자 34.1%보다 많았으며, 남녀 모두 라고 응답한 비율도 7.5%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피해자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40대가 절반이 넘는 54.5%였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가 학대를 한 경우가 45.8%, 어머니가 학대한 경우는 41.4%였으며,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달리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 학대피해를 입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당시 가해자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고된 사건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6.0%였다.

3) 피해 내용 및 피해 결과

가정내 학대가 일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고한 경우는 피해자 중 13.1%였으며, 특히 고등학생이 지속적인 가정내 학대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17.3%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집에서 발생하는 가정내 학대의 특성상 피해 당시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4.9%였으며, 이 중 34.2%는 동반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하였다. 피해발생 당시 가만히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5%였으며, 상대방에게 맞서 몸싸움을 하였다고 답한 경우는 20.9%였다.

가정내 학대로 인한 신체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한 경우는 46.3%였으며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신체피해를 보고한 경우는 10.2%로 조사되었다. 가정내 학대피해자 가운데 정신적 후유증을 한 가지 이상 보고한 비율은 38.2%였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 중 절반이 넘는 52.8%가 후유증을 겪었다고 답하였다.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정적 자존감을 보고한 응답자가 23.6%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함 22.9%, 고립감 17.5%, 두려움 16.3%로 나타났다.

4) 피해자의 사후 대응

가정내 학대피해가 발생한 후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한 상대는 친구가 28.0%로 가장 많았으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41.1%였다.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라고 답한 경우가 64.8%였으며,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결해서라는 응답이 12.1%, 이야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은 9.9%로 조사되었다. 가정내 학대피해의 경찰신고율은 4.7%였으며, 신고자는 가족이 가장 많았다.

나. 괴롭힘피해 실태

1) 피해발생 일시와 장소

또래 괴롭힘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계절 역시 다른 피해유형과 마찬가지로 여름이 5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봄, 가을, 겨울의 순이었다. 피해발생시각은 아동·청소년이 주로 학교에서 생활하는 한낮부터 오후사이(12~18시)와 아침부터 오전사이(06~12시)가 각각 32.8%와 12.0%로 나타났다.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64.2%를 차지한 학교나 학교근처였으며, 이외에도 온라인에서 발생한 피해도 13.0%로 조사되었다. 온라인에서 괴롭힘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한 경우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14.6%와 16.2%로 초등학생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2) 가해자 특성

괴롭힘피해의 경우 가해자가 여자인 경우가 37.3%, 남자인 경우는 36.0%였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자가 가해자인 비율이 증가하였다. 동일한 연령대의 가해자에게 괴롭힘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초등학생의 경우 97.3%, 중학생 97.7%, 고등학생 77.3%로 대다수가 동일 연령대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학교친구가 85.1%로 가장 많았다.

3) 피해 내용 및 피해 결과

괴롭힘피해가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전체적으로 9.9%였으며, 이러한 비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 괴롭힘의 내용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심한 욕을 하거나 피해자의 약점이나 외모를 가지고 놀린 경우가 각각 63.9%와 52.8%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피해자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거나 소문을 내는 방식의 괴롭힘이 56.5%로 가장 많았다. 괴롭힘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보고한 응답자는 피해자 중 30.1%였으며, 우울함을 보고한 사례가 23.2%로 가장 많았고 고립감 14.2%, 부정적 자존감 14.0%,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괴롭힘피해로 인하여 이사·전학, 무단결석, 가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3.6%의 비율을 보였다.

4) 피해자의 사후 대응

괴롭힘피해 사실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한 피해자는 41.4%, 선생님에게 이야기한 피해자는 18.2%였으며, 아무에게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8.9%로 나타났다.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70.2%였으며,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라는 응답이 11.3%, 이야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은 7.5%였다. 괴롭힘피해 사실의 경찰신고율은 2.2%로 조사되었다.

다. 성적 괴롭힘 피해

1) 피해발생 일시와 장소

성적 괴롭힘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계절은 여름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봄, 가을, 겨울의 순이었다.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한낮부터 오후사이(12~18시)로 26.8%였으며, 다음으로 아침부터 오전사이(06~12시)에 발생한 사건은 12.2%를 차지하였다. 성적 괴롭힘 피해 중 절반이 약간 넘는 51.9%는 학교나 학교근처에서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온라인에서 발생한 피해가 19.8%로 나타났다. 성적 괴롭힘 피해가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 페이스북 등 SNS와 카카오톡 등 인스턴트 메신저에서 발생한 사건이 각각 44.4%와 27.8%로 조사되었다.

2) 가해자 특성

성적 괴롭힘의 가해자 인지율은 45.8%로,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해자가 확인된 사건에 한하여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가해자인 사건이 62.2%, 여자가 가해자인 사건은 21.6%였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중학생 피해자의 경우 87.4%가 동일 연령대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반면, 고등학생 중 동일 연령대의 가해자에게 성적 괴롭힘 피해를 입은 사례는 44.3%였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인 경우가 95.9%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대다수는 학교친구가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피해 내용 및 피해 결과

성적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갖게 하는 말을 한 경우가 61.0%였으며, 인터넷이나 SNS, 온라인게임 상에서 성적모욕이나 성희롱을 한 경우는 17.1%였다. 성적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후 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한 가지 이상 보고한 피해자는 26.6%였다. 중학생의 경우, 부정적 자존감과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피해자가 각각 19.1%와 18.5%인데 반하여, 고등학생 피해자의 경우 두려움(15.1%), 우울함(15.0%), 고립감(13.7%)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고되었다.

4) 피해자의 사후 대응

피해자의 사후 대응을 살펴본 결과,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43.9%였으며, 부모님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경우는 19.5%에 불과하였고 친구에게 이야기한 비율은 이보다 높은 39.8%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부모님과 친구 외에 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경우가 17.9%로 조사되었다.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이유로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68.4%였으며,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라고 답한 경우도 15.8%로 나타났다. 성적 괴롭힘 피해사실의 경찰 신고율은 2.4%였다.

제 6 장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전 영 실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제6장에서는 일반적인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폭력·성적 괴롭힘의 피해와 관련되는 요인을 살펴 보았으며,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관련될 수 있는 괴롭힘피해, 부모(혹은 보호자)에 의한 신체적 학대 피해와 관련되는 요인을 파악해 보았다.

분석방향을 제시해 보면, 첫째, 피해유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범죄는 재산범죄(절도와 사기), 폭력범죄(갈취, 가족외 협박, 가족외 폭행), 성폭력 등(성폭력과 성적 괴롭힘)으로 구성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경우 성폭력·성적 괴롭힘 피해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피해에는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만 포함되었다. 또한 중고생의 경우 성폭력과 성적 괴롭힘을 같이 포함한 이유는 제4장에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율이 극히 낮은 점, 성폭력과 성적 괴롭힘이 공통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 앞에서 살펴 본 국내외 범죄피해조사(청소년범죄피해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미국의 전국아동폭력피해조사 등)의 성폭력(혹은 성범죄) 조사에 성폭력과 성적 괴롭힘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둘째, 초중고생별로 앞의 선행연구들에서 주요 관련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개인적 특성, 가족·친구·학교·지역사회 특성을 중심으로 피해관련 요인을 살펴 보았다. 재산, 폭력, 성폭력 등, 괴롭힘 피해의 경우 동일한 관련요인을 살펴 보았으며, 학대피해의 경우에는 개인적 특성(일상활동 제외), 가족, 지역사회 특성을 중심으로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는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학대피해의 경우 친구나 학교 관련요인을 분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의 기존 연구들에서도

학대피해의 경우 개인이나 가족특성, 지역사회 특성을 중심으로 관련요인을 파악하고 있다.

셋째, 초중고생을 합하여 각 피해유형별로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해 보았다.

여기서의 분석결과는 표준화된 가중치를 적용한 것이며, 분석결과의 단위는 반올림을 한 정수로 표시하였다.

제1절 일반적인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1. 개인적 특성과 범죄피해

가. 초등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범죄피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에 따른 범죄피해 유무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성별로 폭력범죄 피해유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는 폭력범죄 피해가 있는 경우가 9.5%로 여자의 6.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초등학생이 여자 초등학생에 비해 폭력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재산범죄 피해도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많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년에 따라서 폭력범죄 피해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폭력범죄 피해경험은 4학년이 9.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5학년이 8.1%, 6학년이 5.8%로 나타났다. 학년이 낮을수록 폭력피해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년에 따른 재산범죄 피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규모와 관련해서 보면, 재산범죄의 경우 읍, 면지역에서 피해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도시, 중소도시순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폭력범죄 피해의 경우도 읍, 면지역에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개인의 신체적 취약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는 재산범죄, 폭력범죄 피해가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 신체적 한계가 많을수록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 중 하나인 자기통제력 수준에 따라서도 재산, 폭력범죄 피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자기통제력 수준이 낮을수록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개인의 일상활동은 보호, 노출, 유인성의 세 측면에서 파악해 보았으며, 이 각각에 따른 재산, 폭력범죄 피해를 살펴 보았다. 보호수준에 따른 재산범죄, 폭력범죄 피해는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보호수준에 따른 재산범죄 피해를 보면, 보호수준인 중간인 경우 피해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보호수준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의 순이었다. 폭력범죄의 경우에는 보호수준이 낮을수록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혼자서 다니는 경우가 많을수록 폭력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에 따른 재산, 폭력범죄 피해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노출이 많을수록 재산범죄 피해가 많았으며, 폭력범죄 피해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성에 따른 재산, 폭력범죄 피해도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평소 돈이나 비싼 물건을 많이 이용할수록 재산범죄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피해는 유인성이 낮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높은 경우, 중간 순이었다.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의 경비행경험 유무에 따른 재산, 폭력범죄 피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 피해는 경비행경험이 있는 경우가 21.2%로 경비행경험이 없는 경우의 12.0%에 비해 높았다. 폭력범죄 피해도 경비행경험이 있는 경우가 16.3%로 경비행경험이 없는 경우의 6.7% 보다 높았다.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 중비행 유무에 따른 재산, 폭력범죄피해 유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중비행 경험이 있는 집단은 재산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이 20.1%로 중비행 경험이 없는 집단의 11.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폭력범죄 피해도 중비행 경험이 있는 집단(14.8%)에서 중비행 경험이 없는 집단(6.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개인적 특성과 범죄피해(초등학생)

단위: 명(%)

구분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성별	남자	1,606(86.7)	247(13.3)	1,853(100)	1,678(90.5)	176(9.5)	1,854(100)	
	여자	1,523(87.3)	222(12.7)	1,745(100)	1,641(94.0)	104(6.0)	1,745(100)	
	χ^2	.293			15.640***			
학년	4학년	891(86.2)	143(13.8)	1,034(100)	933(90.1)	102(9.9)	1,035(100)	
	5학년	1,089(87.5)	156(12.5)	1,245(100)	1,144(91.9)	101(8.1)	1,245(100)	
	6학년	1,149(87.1)	170(12.9)	1,319(100)	1,243(94.2)	77(5.8)	1,320(100)	
	χ^2	.881			13.379**			
지역 규모	대도시	1,263(86.7)	193(13.3)	1,456(100)	1,357(93.2)	99(6.8)	1,456(100)	
	중소도시	1,342(87.5)	192(12.5)	1,534(100)	1,408(91.7)	127(8.3)	1,535(100)	
	읍,면	523(86.2)	84(13.8)	607(100)	554(91.3)	53(8.7)	607(100)	
	χ^2	.772			3.245			
신체적 취약성	낮음	2,439(87.8)	340(12.2)	2,779(100)	2,599(93.5)	181(6.5)	2,780(100)	
	중간	431(85.9)	71(14.1)	502(100)	457(91.0)	45(9.0)	502(100)	
	높음	259(81.7)	58(18.3)	317(100)	263(83.0)	54(17.0)	317(100)	
	χ^2	9.856**			45.066**			
자기 통제력	낮음	793(83.6)	155(16.4)	948(100)	838(88.4)	110(11.6)	948(100)	
	중간	1,062(87.6)	151(12.4)	1,213(100)	1,128(93.1)	84(6.9)	1,212(100)	
	높음	1,274(88.7)	163(11.3)	1,437(100)	1,352(94.1)	85(5.9)	1,437(100)	
	χ^2	13.188**			27.573***			
일상 활동	보호	낮음	1,023(83.4)	204(16.6)	1,227(100)	1,099(89.6)	128(10.4)	1,227(100)
		중간	995(89.4)	118(10.6)	1,113(100)	1,036(93.2)	76(6.8)	1,112(100)
		높음	1,112(88.3)	147(11.7)	1,259(100)	1,184(94.0)	75(6.0)	1,259(100)
		χ^2	21.826***			19.299***		
	노출	낮음	1,145(89.0)	141(11.0)	1,286(100)	1,218(94.8)	67(5.2)	1,285(100)
		중간	1,175(87.1)	174(12.9)	1,349(100)	1,225(90.9)	123(9.1)	1,348(100)
		높음	810(83.9)	155(16.1)	965(100)	875(90.8)	89(9.2)	964(100)
		χ^2	12.669**			18.071***		
	유인 성	낮음	1,199(89.7)	137(10.3)	1,336(100)	1,256(94.0)	80(6.0)	1,336(100)
		중간	1,222(87.0)	182(13.0)	1,404(100)	1,279(91.1)	125(8.9)	1,404(100)
		높음	709(82.5)	150(17.5)	859(100)	784(91.3)	75(8.7)	859(100)
		χ^2	23.976***			9.531**		
경비행	없음	2,811(88.0)	383(12.0)	3,194(100)	2,980(93.3)	214(6.7)	3,194(100)	
	있음	319(78.8)	86(21.2)	405(100)	339(83.7)	66(16.3)	405(100)	
	χ^2	27.096***			46.133***			
중비행	없음	2,563(88.7)	327(11.3)	2,850(100)	2,716(94.0)	174(6.0)	2,890(100)	
	있음	566(79.9)	142(20.1)	708(100)	603(85.2)	105(14.8)	708(100)	
	χ^2	38.335***			61.703***			

p < .01, *p < .001

나. 중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범죄 피해

중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범죄피해를 살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먼저 성별로 보면, 남자는 재산범죄 피해가 없는 경우가 81.1%로 여자의 80.0%에 비해 많았다. 여자는 재산범죄 피해가 있는 경우가 20.0%로 남자에 비해 많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폭력범죄 피해의 경우를 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폭력범죄 피해가 없는 비율이 90%대이며, 폭력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조금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폭력 등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경험이 있는 비율이 여자의 경우 2.7%로 남자의 1.4%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는 2학년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3학년, 1학년의 순이었다. 폭력범죄의 경우도 피해경험은 2학년에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3학년, 1학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폭력 등 피해의 경우 중학교 1학년에서 가장 많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피해경험이 있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년에 따른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폭력 등 피해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거주지역 규모별로 살펴 보면, 중소도시의 경우 재산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이 21.2%였으며, 읍면지역과 대도시는 각각 18.1%, 18.0%였다. 즉 중소도시의 중학생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재산범죄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폭력범죄의 경우는 대도시에서 피해경험이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중소도시, 읍, 면지역의 순이었다. 성폭력 등 피해의 경우에는 대도시, 중소도시의 경우 피해경험이 있는 비율이 각각 2.1%였으며, 읍, 면지역은 1.9%였다. 폭력범죄와 성폭력 등의 경우는 지역규모에 따라 피해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사대상자가 응답한 자신의 신체적 문제 때문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고 한 정도에 따라 피해유무를 보면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폭력 등 피해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신체적 한계를 인식할수록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폭력 등 피해를 당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 중 하나로 자기통제력에 따라서 피해유무를 보면,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죄, 성폭력 등 피해 모두에서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피해가 있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이러한 유형의 피해가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상활동 특성 중 보호의 수준별로 피해유무를 분석해 보면, 폭력범죄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보호수준이 낮은 경우 폭력피해가 있는 비율이 7.4%였으며, 보호수준이 높은 경우, 중간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각각 4.2%, 3.9%였다. 재산범죄와 성폭력 등 피해의 경우에는 보호수준에 따른 피해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노출의 수준별로 피해유무를 보면, 재산범죄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노출의 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폭력범죄와 성폭력 등 피해유무는 노출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일상활동 특성 중 마지막으로 유인성 정도에 따른 피해유무를 보면, 재산범죄와 성폭력 등 피해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유인성 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평소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거나 비싼 물건을 사용할수록 재산범죄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유인성 수준이 높을수록 성폭력 등 피해가 있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유인성 수준에 따라 폭력범죄 피해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의 경비행경험 유무에 따라서 보면, 경비행 경험이 없는 경우는 재산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16.8%인데 비해 경비행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23.7%로 나타났다. 즉 경비행 경험이 있는 경우 재산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폭력범죄의 경우에도 경비행 경험이 있는 경우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8.1%로 경비행 경험이 없는 경우의 3.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등 피해가 있는 비율도 경비행 경험이 있는 경우가 3.4%로 경비행 경험이 없는 경우의 1.2%에 비해 높았다. 즉 경비행 경험이 있는 중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재산, 폭력범죄 피해와 성폭력 등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중비행 경험 유무별로 피해유무를 분석해 보면, 중비행 경험이 있는 경우는 재산범죄 피해를 당한 비율이 23.6%로 중비행 경험이 없는 사람의 18.5%에 비해 높았다. 폭력범죄 피해의 경우에도 중비행 경험이 있는

사람은 피해를 당한 비율이 10.4%로 중비행 경험이 없는 사람의 4.3%에 비해 높았다. 성폭력 등 피해도 중비행 경험이 있는 경우(4.2%)가 그렇지 않은 경우(1.6%)에 비해 많았다.

〈표 6-2〉 개인적 특성과 범죄피해(중학생)

단위: 명(%)

구분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성별	남자	1,583 (81.1)	368 (18.9)	1,951 (100)	1,833 (94.0)	118 (6.0)	1,951 (100)	1,923 (98.6)	28 (1.4)	1,951 (100)
	여자	1,438 (80.0)	360 (20.0)	1,798 (100)	1,713 (95.3)	85 (4.7)	1,798 (100)	1,749 (97.3)	49 (2.7)	1,798 (100)
	χ^2	.805			3.187			7.741**		
학년	1학년	936 (81.5)	213 (18.5)	1,149 (100)	1,096 (95.3)	54 (4.7)	1,150 (100)	1,116 (97.1)	33 (2.9)	1,149 (100)
	2학년	949 (79.9)	239 (20.1)	1,188 (100)	1,111 (93.5)	77 (6.5)	1,188 (100)	1,168 (98.3)	20 (1.7)	1,188 (100)
	3학년	1,135 (80.4)	276 (19.6)	1,411 (100)	1,338 (94.9)	72 (5.1)	1,410 (100)	1,387 (98.4)	23 (1.6)	1,410 (100)
	χ^2	.959			4.061			5.946		
지역 규모	대도시	1,270 (82.0)	279 (18.0)	1,549 (100)	1,456 (94.0)	93 (6.0)	1,549 (100)	1,517 (97.9)	32 (2.1)	1,549 (100)
	중소도시	1,283 (78.8)	346 (21.2)	1,629 (100)	1,546 (94.8)	84 (5.2)	1,630 (100)	1,595 (97.9)	34 (2.1)	1,629 (100)
	읍.면	467 (81.9)	103 (18.1)	570 (100)	544 (95.3)	27 (4.7)	571 (100)	559 (98.1)	11 (1.9)	570 (100)
	χ^2	6.074*			1.780			.054		
신체적 취약성	낮음	2,234 (81.5)	526 (18.5)	2,850 (100)	2,740 (96.1)	110 (3.9)	2,850 (100)	2,802 (98.3)	48 (1.7)	2,850 (100)
	중간	457 (80.1)	117 (19.9)	588 (100)	542 (92.0)	47 (8.0)	589 (100)	572 (97.3)	16 (2.7)	588 (100)
	높음	225 (72.6)	85 (27.4)	310 (100)	264 (84.9)	47 (15.1)	311 (100)	298 (95.8)	13 (4.2)	311 (100)
	χ^2	14.452**			77.785***			10.226**		
자기 통제력	낮음	828 (78.0)	234 (22.0)	1,062 (100)	974 (91.6)	89 (8.4)	1,063 (100)	1,021 (96.1)	41 (3.9)	1,062 (100)
	중간	1,263 (80.8)	301 (19.2)	1,564 (100)	1,493 (95.4)	72 (4.6)	1,565 (100)	1,537 (98.3)	27 (1.7)	1,564 (100)
	높음	929 (82.9)	192 (17.1)	1,121 (100)	1,079 (96.3)	42 (3.7)	1,121 (100)	1,113 (99.3)	8 (0.7)	1,121 (100)

구분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χ^2 8.437**			26.273***			28.411***			
일상 활동	보호	낮음	1,244 (78.8)	334 (21.2)	1,578 (100)	1,462 (92.6)	116 (7.4)	1,578 (100)	1,553 (98.5)	24 (1.5)	1,577 (100)
		중간	1,060 (81.8)	236 (18.2)	1,296 (100)	1,245 (96.1)	50 (3.9)	1,295 (100)	1,263 (97.5)	32 (2.5)	1,295 (100)
		높음	717 (81.8)	159 (18.2)	876 (100)	839 (95.8)	37 (4.2)	876 (100)	855 (97.6)	21 (2.4)	876 (100)
		χ^2	5.184			20.082***			3.851		
	노출	낮음	1,062 (83.2)	214 (16.8)	1,276 (100)	1,208 (94.7)	68 (5.3)	1,276 (100)	1,258 (98.6)	18 (1.4)	1,276 (100)
		중간	1,084 (82.2)	235 (17.8)	1,319 (100)	1,252 (94.9)	67 (5.1)	1,319 (100)	1,290 (97.8)	29 (2.2)	1,319 (100)
		높음	875 (75.8)	279 (24.2)	1,154 (100)	1,085 (94.0)	69 (6.0)	1,154 (100)	1,123 (97.4)	30 (2.6)	1,153 (100)
		χ^2	24.576**			1.015			4.482		
	유인성	낮음	1,199 (84.4)	221 (15.6)	1,420 (100)	1,344 (94.7)	75 (5.3)	1,419 (100)	1,398 (98.5)	21 (1.5)	1,419 (100)
		중간	1,136 (79.3)	297 (20.7)	1,433 (100)	1,349 (94.1)	85 (5.9)	1,434 (100)	1,406 (98.1)	27 (1.9)	1,433 (100)
		높음	686 (76.6)	210 (23.4)	896 (100)	853 (95.2)	43 (4.8)	896 (100)	867 (96.9)	28 (3.1)	895 (100)
		χ^2	24.301***			1.445			7.749*		
경비행	없음	1,944 (83.2)	393 (16.8)	2,337 (100)	2,249 (96.2)	88 (3.8)	2,337 (100)	2,308 (98.8)	29 (1.2)	2,337 (100)	
	있음	1,077 (76.3)	335 (23.7)	1,412 (100)	1,297 (91.9)	115 (8.1)	1,412 (100)	1,363 (96.6)	48 (3.4)	1,411 (100)	
	χ^2	26.849***			32.955***			20.471***			
중비행	없음	2,493 (81.5)	565 (18.5)	3,058 (100)	2,928 (95.7)	130 (4.3)	3,058 (100)	3,010 (98.4)	48 (1.6)	3,058 (100)	
	있음	527 (76.4)	163 (23.6)	690 (100)	618 (89.6)	72 (10.4)	690 (100)	661 (95.8)	29 (4.2)	690 (100)	
	χ^2	9.529**			42.217***			19.400***			

*p < .05, **p < .01, ***p < .001

다. 고등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범죄 피해

고등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범죄피해를 살펴 보면, 먼저 성별에 따라 재산범죄 피해 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자는 재산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이 23.4%로 남자

의 18.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폭력범죄와 성폭력 등 피해의 경우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년별로 피해유무를 보면, 재산범죄 피해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 1학년은 재산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22.6%로 2학년의 19.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와 성폭력 등 피해의 경우에는 2학년이 1학년에 비해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많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폭력 등 피해가 있는 비율이 높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신체적 한계에 대한 인식 정도별로 각 범죄 피해유무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재산범죄 피해의 경우에는 신체적 한계가 중간인 경우 피해가 있는 비율이 25.6%였으며, 다음은 신체적 한계수준이 높은 경우 20.5%, 낮은 경우 20.0%로 나타났다. 폭력범죄와 성폭력 등 피해의 경우에는 신체적 한계수준이 높을수록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신체적 어려움이 있을수록 대인범죄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기통제력과 관련해서 보면, 자기통제력에 따른 재산범죄, 폭력범죄 피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재산범죄,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낮았다. 반면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등 피해의 경우에는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2.1%), 자기통제력이 높거나 중간인 경우에는 각각 피해가 있는 비율이 1.2%, 1.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일상활동 특성 중 보호와 관련해서 보면, 대체로 보호수준이 높을수록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노출과 관련해서 보면, 노출이 많을수록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성폭력 등 피해의 경우에는 노출수준이 낮은 경우, 높은 경우, 중간의 순으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지만 이러한 차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유인성과 관련해서 보면, 유인성 수준이 높을수록 폭력범죄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유인성 수준에 따른 재산범죄와 성폭력 등 피해유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1년간의 경비행 경험 유무와 관련해서 보면, 경비행 경험 유무에 따라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비행 경험이 있는 경우는 경비행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재산범죄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23.8%, 17.1%). 폭력범죄 피해의 경우도 경비행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피해경험이 (5.8%) 경비행 경험이 없는 사람(2.9%)에 비해 많았다. 성폭력 등 피해의 경우도 경비행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피해경험이 많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지난 1년간의 중비행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폭력범죄, 성폭력 등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폭력범죄 피해의 경우 중비행 경험이 있는 경우의 피해경험이 10.7%로 중비행 경험이 없는 사람의 3.7%에 비해 높았다. 성폭력 등 피해의 경우도 중비행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4.3%, 1.0%). 재산범죄의 경우도 중비행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피해를 더 많이 경험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6-3〉 개인적 특성과 범죄피해(고등학생)

단위: 명(%)

구분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성별	남자	1,271 (81.5)	289 (18.5)	1,560 (100)	1,428 (95.0)	78 (5.0)	1,560 (100)	1,544 (99.0)	16 (1.0)	1,560 (100)
	여자	1,096 (76.6)	334 (23.4)	1,430 (100)	1,377 (96.2)	54 (3.8)	1,431 (100)	1,405 (98.3)	25 (1.7)	1,430 (100)
	χ^2	10.557**			2.661			2.881		
학년	1학년	1,101 (77.4)	322 (22.6)	1,423 (100)	1,361 (95.6)	62 (4.4)	1,423 (100)	1,405 (98.7)	18 (1.3)	1,423 (100)
	2학년	1,267 (80.8)	301 (19.2)	1,568 (100)	1,498 (95.5)	70 (4.5)	1,568 (100)	1,545 (98.5)	23 (1.5)	1,568 (100)
	χ^2	5.328*			.020			.225		
지역 규모	대도시	990 (78.7)	268 (21.3)	1,258 (100)	1,214 (96.5)	44 (6.5)	1,258 (100)	1,240 (98.6)	18 (1.4)	1,258 (100)

구분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중소도시	1,022 (79.3)	266 (20.7)	1,288 (100)	1,222 (94.9)	66 (5.1)	1,288 (100)	1,270 (98.7)	17 (1.3)	1,287 (100)	
	읍,면	355 (79.8)	90 (20.2)	445 (100)	422 (94.8)	23 (5.2)	445 (100)	439 (98.7)	6 (1.3)	445 (100)	
	χ^2	.292			4.604			.059			
신체적 취약성	낮음	1,880 (80.0)	470 (20.0)	2,350 (100)	2,263 (96.3)	87 (3.7)	2,350 (100)	2,327 (99.0)	23 (1.0)	2,350 (100)	
	중간	314 (74.4)	108 (25.6)	422 (100)	398 (94.1)	25 (5.9)	423 (100)	413 (97.6)	10 (2.4)	423 (100)	
	높음	174 (79.5)	45 (20.5)	219 (100)	199 (90.9)	20 (9.1)	219 (100)	209 (95.9)	9 (4.1)	218 (100)	
	χ^2	6.796*			16.631***			17.573***			
자기 통제력	낮음	616 (74.9)	206 (25.1)	822 (100)	759 (92.2)	64 (7.8)	823 (100)	805 (97.9)	17 (2.1)	822 (100)	
	중간	977 (79.3)	255 (20.7)	1,232 (100)	1,188 (96.4)	44 (3.6)	1,232 (100)	1,219 (98.9)	13 (1.1)	1,232 (100)	
	높음	774 (82.6)	163 (17.4)	937 (100)	913 (97.4)	24 (2.6)	937 (100)	926 (98.8)	11 (1.2)	937 (100)	
	χ^2	15.616**			31.764***			4.133			
일상 활동	보호	낮음	780 (77.0)	233 (23.0)	1,013 (100)	966 (95.4)	47 (4.6)	1,013 (100)	999 (98.6)	14 (1.4)	1,013 (100)
		중간	879 (79.5)	227 (20.5)	1,106 (100)	1,054 (95.4)	51 (4.6)	1,105 (100)	1,085 (98.1)	21 (1.9)	1,106 (100)
		높음	708 (81.2)	164 (18.8)	872 (100)	839 (96.1)	34 (3.9)	873 (100)	865 (99.2)	7 (0.8)	872 (100)
		χ^2	5.113			.787			4.236		
	노출	낮음	865 (80.3)	212 (19.7)	1,077 (100)	1,038 (96.4)	39 (3.6)	1,077 (100)	1,060 (98.4)	17 (1.6)	1,077 (100)
		중간	851 (80.1)	211 (19.9)	1,062 (100)	1,013 (95.4)	49 (4.6)	1,062 (100)	1,051 (99.0)	11 (1.0)	1,062 (100)
		높음	651 (76.4)	201 (23.6)	852 (100)	808 (94.8)	44 (5.2)	852 (100)	839 (98.5)	13 (1.5)	852 (100)
		χ^2	5.385			2.842			1.377		
유인 성	낮음	757 (81.1)	176 (18.9)	933 (100)	901 (96.5)	33 (3.5)	934 (100)	917 (98.2)	17 (1.8)	934 (100)	
	중간	1,015 (79.1)	268 (20.9)	1,283 (100)	1,232 (96.1)	50 (3.9)	1,282 (100)	1,266 (98.7)	17 (1.3)	1,283 (100)	
	높음	595 (76.9)	179 (23.1)	774 (100)	726 (93.7)	49 (6.3)	775 (100)	767 (99.0)	8 (1.0)	775 (100)	

구분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χ^2	4.664			9.212*			2.000		
경비형	없음		1,201 (82.3)	259 (17.1)	1,460 (100)	1,417 (97.1)	43 (2.9)	1,460 (100)	1,445 (99.0)	15 (1.0)	1,460 (100)
	있음		1,167 (76.2)	364 (23.8)	1,531 (100)	1,442 (94.2)	89 (5.8)	1,531 (100)	1,505 (98.3)	26 (1.7)	1,531 (100)
		χ^2	16.509***			14.572***			2.488		
중비형	없음		2,134 (79.3)	558 (20.7)	2,692 (100)	2,592 (96.3)	100 (3.7)	2,692 (100)	2,664 (99.0)	28 (1.0)	2,692 (100)
	있음		233 (77.9)	66 (22.1)	299 (100)	267 (89.3)	32 (10.7)	299 (100)	286 (95.7)	13 (4.3)	299 (100)
		χ^2	.295			31.148***			21.778***		

*p < .05, **p < .01, ***p < .001

2. 가족특성과 범죄피해

가. 초등학생의 가족특성과 범죄피해

초등학생의 가족특성에 따른 범죄피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 결혼상태에 따라 폭력범죄 피해유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가 이혼, 사별, 재혼, 별거 등인 경우에는 폭력범죄 피해가 있는 경우가 10.9%로 부모가 결혼상태인 경우(7.5%)에 비해 높았다. 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른 재산범죄 피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동거가족 특성에 따른 재산범죄, 폭력범죄 피해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재산범죄 피해의 경우를 보면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 피해가 있는 비율이 1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편부/편모와 형제자매 등이 같이 사는 경우(18.1%), 부모와 형제자매 등이 같이 사는 경우(12.1%), 형제자매나 친척 등과 같이 사는 경우(10.8%), 편부/편모와 사는 경우(5.7%)의 순이었다. 폭력범죄 피해의 경우에는 편부/편모와 사는 경우 피해경험이 있는 비율이 13.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부모와 사는 경우(10.5%), 편부/편모와 형제자매 등이 같이 사는 경우(10.1%), 형제자매나 친척 등과 사는 경우(7.9%), 부모 및 형제자매 등과 사는 경우(7.1%)의 순이었다.

부모 각각의 교육수준별로 보면, 재산범죄 피해는 대체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많았으며, 폭력범죄 피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많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부모 각각의 직업유무에 따른 피해를 보면, 아버지와 관련해서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해 피해가 많았으며, 어머니와 관련해서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피해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주관적 계층과 관련해서 보면 주관적 계층이 낮은 경우 재산범죄, 폭력범죄 피해가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부모의 감독수준에 따른 피해를 보면,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 피해도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적었으며, 부모의 감독이 약할수록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부모와의 애착수준에 따른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와의 애착이 약할수록 재산범죄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았다. 반면 부모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이러한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부모 각각의 술취하는 정도를 통해 측정한 부모 일탈성에 따라서 재산범죄 피해와 폭력범죄 피해는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부모의 일탈성이 강할수록 재산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부모의 일탈성이 강할수록 폭력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배우자폭력수준에 따라서도 초등학생의 재산범죄, 폭력범죄 피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폭력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배우자폭력수준이 높을수록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도 높았다.

〈표 6-4〉 가족 특성과 범죄피해(초등학생)

단위: 명(%)

구 분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부모 결혼 상태	결혼	2,900(87.0)	433(13.0)	3,333(100)	3,082(92.5)	251(7.5)	3,333
	이혼 등	230(86.5)	36(13.5)	266(100)	237(89.1)	29(10.9)	266
	χ^2	.064			3.903*		
동거 가족	편부/편모	50(94.3)	3(5.7)	53(100)	46(86.8)	7(13.2)	53(100)
	부모	302(81.6)	68(18.4)	370(100)	331(89.5)	39(10.5)	370(100)
	부모 +형제자매 등	2,550(87.9)	351(12.1)	2,901(100)	2,694(92.9)	207(7.1)	2,901(100)
	편부/편모 +형제자매 등	194(81.9)	43(18.1)	237(100)	213(89.9)	24(10.1)	237(100)
	형제자매, 친척 등	33(89.2)	4(10.8)	37(100)	35(92.1)	3(7.9)	39(100)
	χ^2	19.720**			9.605*		
아버지 교육 수준	중졸(중퇴)이하	29(82.9)	6(17.1)	35(100)	30(85.7)	5(14.3)	35(100)
	고졸(중퇴)이하	276(88.7)	35(11.3)	311(100)	287(92.3)	24(7.7)	311(100)
	대졸(중퇴)이상	1,366(86.2)	219(13.8)	1,585(100)	1,462(92.2)	123(7.8)	1,585(100)
	χ^2	1.880			2.023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중퇴)이하	24(96.0)	1(4.0)	25(100)	22(91.7)	2(8.3)	24(100)
	고졸(중퇴)이하	339(89.2)	41(10.8)	380(100)	348(91.6)	32(8.4)	380(100)
	대졸(중퇴)이상	1,373(85.4)	234(14.6)	1,607(100)	1,483(92.3)	124(7.7)	1,607(100)
	χ^2	5.714			.219		
아버지 직업 유무	없음	67(81.7)	15(18.3)	82(100)	73(88.0)	10(12.0)	83(100)
	있음	3,024(87.0)	451(13.0)	3,475(100)	3,208(92.3)	267(7.7)	3,475(100)
	χ^2	1.987			2.151		
어머니 직업 유무	없음	942(87.9)	130(12.1)	1,072(100)	996(92.8)	77(7.2)	1,073(100)
	있음	2,158(86.5)	336(13.5)	2,494(100)	2,296(92.1)	198(7.9)	2,494(100)
	χ^2	1.195			.614		
주관적 계층	하	164(83.7)	32(16.3)	196(100)	180(91.8)	16(8.2)	196(100)
	중	1,407(87.9)	193(12.1)	1,600(100)	1,484(92.8)	116(7.3)	1,600(100)
	상	1,558(86.4)	245(13.6)	1,803(100)	1,655(91.8)	147(8.2)	1,802(100)
	χ^2	3.688			1.024		
부모 감독	낮음	787(83.9)	151(16.1)	938(100)	830(88.4)	109(11.6)	939(100)
	중간	1,066(86.9)	161(13.1)	1,227(100)	1,132(92.3)	94(7.7)	1,226(100)
	높음	1,276(89.0)	151(11.0)	1,433(100)	1,356(94.6)	77(5.4)	1,433(100)

구분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χ^2	13.235**			30.761***		
부모 애착	낮음	798(82.5)	169(17.5)	967(100)	861(89.0)	106(11.0)	967(100)
	중간	909(88.4)	119(11.6)	1,028(100)	953(92.7)	75(7.3)	1,028(100)
	높음	1,422(88.7)	181(11.3)	1,603(100)	1,505(93.9)	98(6.1)	1,603(100)
	χ^2	23.060***			20.243***		
부모 일탈	낮음	1,563(87.8)	217(12.2)	1,780(100)	1,670(93.8)	110(6.2)	1,780(100)
	중간	1,008(87.6)	143(12.4)	1,151(100)	1,061(92.2)	90(7.8)	1,151(100)
	높음	558(83.7)	109(16.3)	667(100)	588(88.0)	80(12.0)	668(100)
	χ^2	7.932*			22.748***		
배우자 폭력	낮음	1,608(90.3)	172(9.7)	1,780(100)	1,686(94.7)	94(5.3)	1,780(100)
	중간	1,132(84.9)	201(15.1)	1,333(100)	1,215(91.1)	118(8.9)	1,333(100)
	높음	389(80.2)	96(19.8)	485(100)	418(86.2)	67(13.8)	485(100)
	χ^2	42.311***			42.371***		

*p < .05, **p < .01, ***p < .001

나. 중학생의 가족특성과 범죄피해

중학생의 가족특성에 따른 범죄피해를 보면, 먼저 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폭력 등의 피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부모가 결혼상태인 경우에 비해 이혼, 사별, 재혼, 별거 등인 경우 재산, 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가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거가족에 따른 재산범죄피해를 보면, 부모없이 형제자매나 친척등과 사는 경우 피해가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편부/편모와 형제자매 등과 사는 경우, 편부/편모와 사는 경우, 부모와 사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 등과 사는 경우의 순이었다.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도 부모없이 형제자매나 친척 등과 사는 경우 피해가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동거가족 구성에 따른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폭력 등 피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나지는 않았다.

부모 각각의 교육수준에 따른 피해를 보면,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폭력 등 피해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졸(중퇴) 이하인 경우 재산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이 39.1%였으며, 고졸(중퇴) 이하인

경우와 대졸(중퇴)이상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각각 20.2%, 18.8%였다. 즉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재산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많았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폭력범죄 피해를 보면, 아버지 교육수준이 중졸(중퇴) 이하인 경우 폭력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이 15.2%였으며, 대졸(중퇴) 이상인 경우는 5.4%, 고졸(중퇴) 이하인 경우는 3.9%였다. 성폭력 등의 피해에 대해서 보면, 아버지 교육수준이 중졸(중퇴) 이하인 경우 피해경험이 있는 비율이 8.7%였으며, 대졸(중퇴) 이상인 경우와 고졸(중퇴) 이하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각각 2.2%, 0.1%였다. 재산범죄 피해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폭력범죄와 성폭력 등 피해의 경우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일관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중졸(중퇴) 이하)에서 피해가 있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피해를 보면, 재산범죄 피해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성폭력 등 피해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부모 각각의 직업유무에 따른 피해를 보면, 폭력범죄 피해의 경우 아버지의 직업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가 직업이 없는 경우는 폭력 피해가 있는 비율이 12.5%로 아버지 직업이 있는 경우의 5.3%에 비해 높았다. 재산범죄 피해는 아버지가 직업이 있는 경우 더 많았으며, 성폭력 등 피해는 아버지가 직업이 없는 경우에 더 많았지만, 이러한 차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서도 중학생의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폭력 등 피해 유무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폭력범죄 피해는 어머니 직업이 없는 경우가, 성폭력 등 피해의 경우는 어머니 직업이 있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에 따른 피해를 보면, 재산범죄 피해는 하층에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상, 중의 순이었다. 폭력범죄 피해와 성폭력 등 피해의 경우도 각각 하층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상, 중의 순이었다. 피해유형에 관계없이 주관적 계층이 낮은 경우 피해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지만, 그 차이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가정의 기능적 특성에 해당할 수 있는 부모의 감독수준에 따른 피해를 보면,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폭력 등 피해 모두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감독수준이 낮을수록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부모와의 애착정도와 관련해서 보면, 재산범죄 피해는 부모와의 애착이 낮을수록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폭력범죄의 경우는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피해가 있는 비율이 낮았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등 피해의 경우는 부모와의 애착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애착이 가장 낮은 경우 피해가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부모와의 애착이 높은 경우와 중간인 경우의 순이었다. 세 가지 피해유형 중 폭력범죄 피해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수준에 따라 피해경험이 있는 비율이 일관되게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일탈성 수준에 따른 피해를 보면, 부모의 일탈성 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폭력 등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부부간의 폭력성 정도에 따른 재산범죄,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보면, 배우자폭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배우자폭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를 경험한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났다.

〈표 6-5〉 가족 특성과 범죄피해(중학생)

단위: 명(%)

구 분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부모님 결혼 상태	결혼	2,693 (81.0)	632 (19.0)	3,325 (100)	3,148 (94.7)	176 (5.3)	3,324 (100)	3,260 (98.1)	64 (1.9)	3,324 (100)
	이혼 등	328 (77.2)	97 (22.8)	425 (100)	398 (93.6)	27 (6.4)	425 (100)	412 (96.9)	13 (3.1)	425 (100)
	χ^2	3.504			.824			2.406		
동거 가족	편부/편모	50 (79.4)	13 (20.6)	63 (100)	61 (98.4)	1 (1.6)	62 (100)	61 (98.4)	1 (1.6)	62 (100)
	부모	281 (80.5)	68 (19.5)	349 (100)	322 (95.1)	17 (4.9)	349 (100)	341 (97.7)	8 (2.3)	349 (100)
	부모 +형제자매 등	2,411 (81.3)	556 (18.7)	2,967 (100)	2,806 (94.5)	162 (5.5)	2,968 (100)	2,908 (98.0)	60 (2.0)	2,968 (100)
	편부/편모 +형제자매 등	239 (76.4)	74 (23.6)	313 (100)	293 (93.6)	20 (6.4)	313 (100)	308 (98.4)	5 (1.6)	313 (100)
	형제자매, 친척 등	39 (69.6)	17 (30.4)	56 (100)	53 (93.0)	4 (7.0)	57 (100)	53 (94.6)	3 (5.4)	56 (100)
	χ^2	8.784			2.811			3.535		
아버지 교육 수준	중졸(중퇴)이하	28 (60.9)	18 (39.1)	46 (100)	39 (84.8)	7 (15.2)	46 (100)	42 (91.3)	4 (8.7)	46 (100)
	고졸(중퇴)이하	553 (79.8)	140 (20.2)	693 (100)	665 (96.1)	27 (3.9)	692 (100)	691 (99.9)	4 (0.1)	692 (100)
	대졸(중퇴)이상	1,541 (81.2)	357 (18.8)	1,898 (100)	1,796 (94.6)	102 (5.4)	1,898 (100)	1,856 (97.8)	41 (2.2)	1,897 (100)
	χ^2	12.071**			11.926**			25.207***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중퇴)이하	29 (76.3)	9 (23.7)	38 (100)	38 (100)	0 (0.0)	38 (100)	38 (100)	0 (0.0)	38 (100)
	고졸(중퇴)이하	635 (80.9)	150 (19.1)	785 (100)	754 (96.1)	31 (3.9)	785 (100)	779 (99.2)	6 (0.8)	785 (100)
	대졸(중퇴)이상	1,526 (80.9)	361 (19.1)	1,887 (100)	1,784 (94.5)	103 (5.5)	1,887 (100)	1,843 (97.6)	45 (2.4)	1,888 (100)
	χ^2	.503			4.692			8.614*		
아버지 직업 유무	없음	78 (81.3)	18 (18.8)	96 (100)	84 (87.5)	12 (12.5)	96 (100)	92 (95.8)	4 (4.2)	96 (100)
	있음	2,893 (80.6)	697 (19.4)	3,590 (100)	3,401 (94.7)	189 (5.3)	3,590 (100)	3,520 (98.1)	69 (1.9)	3,589 (100)
	χ^2	.026			9.494**			2.425		
어머니 직업 유무	없음	735 (80.8)	175 (19.2)	910 (100)	855 (94.0)	55 (6.0)	910 (100)	897 (98.6)	13 (1.4)	910 (100)
	있음	2,253 (80.8)	537 (19.2)	2,790 (100)	2,644 (94.8)	146 (5.2)	2,790 (100)	2,726 (97.7)	64 (2.3)	2,790 (100)

구분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χ^2	.000			.878			2.521		
주관적 계층	하	298 (77.8)	85 (22.2)	383 (100)	355 (92.9)	27 (7.1)	382 (100)	373 (97.4)	10 (2.6)	383 (100)
	중	1,412 (81.8)	314 (18.2)	1,726 (100)	1,643 (95.2)	83 (4.8)	1,726 (100)	1,697 (98.3)	29 (1.7)	1,726 (100)
	상	1,311 (79.9)	330 (20.1)	1,641 (100)	1,548 (94.3)	93 (5.7)	1,641 (100)	1,602 (97.6)	39 (2.4)	1,641 (100)
	χ^2	4.039			3,480			2,594		
부모 감독	낮음	802 (77.0)	240 (23.0)	1,042 (100)	947 (91.0)	94 (9.0)	1,041 (100)	1,007 (96.6)	35 (3.4)	1,042 (100)
	중간	1,225 (80.9)	289 (19.1)	1,514 (100)	1,449 (95.7)	65 (4.3)	1,514 (100)	1,490 (98.4)	24 (1.6)	1,514 (100)
	높음	993 (83.3)	199 (16.7)	1,192 (100)	1,149 (96.4)	43 (3.6)	1,192 (100)	1,174 (98.5)	18 (1.5)	1,192 (100)
	χ^2	14.452**			38.037***			12.224**		
부모 애착	낮음	886 (78.3)	245 (21.7)	1,131 (100)	1,047 (92.5)	85 (7.5)	1,132 (100)	1,094 (96.7)	37 (3.3)	1,131 (100)
	중간	805 (81.4)	184 (18.6)	989 (100)	937 (94.7)	52 (5.3)	989 (100)	996 (97.7)	23 (0.6)	989 (100)
	높음	1,329 (81.6)	299 (18.4)	1,628 (100)	1,562 (95.9)	66 (4.1)	1,628 (100)	1,612 (99.0)	17 (1.0)	1,629 (100)
	χ^2	5.209			15.625***			16.963***		
부모 일탈	낮음	1,431 (81.3)	330 (18.7)	1,761 (100)	1,679 (95.3)	83 (4.7)	1,762 (100)	1,732 (98.4)	29 (1.6)	1,761 (100)
	중간	1,005 (80.3)	247 (19.7)	1,252 (100)	1,183 (94.4)	70 (5.6)	1,253 (100)	1,223 (97.7)	29 (2.3)	1,252 (100)
	높음	584 (79.5)	151 (20.5)	735 (100)	684 (93.2)	50 (6.8)	734 (100)	716 (97.5)	18 (2.5)	734 (100)
	χ^2	1.191			4.576			2.477		
배우자 폭력	낮음	1,338 (82.2)	290 (17.8)	1,628 (100)	1,560 (95.8)	68 (4.2)	1,628 (100)	1,602 (98.4)	26 (1.6)	1,628 (100)
	중간	1,081 (80.1)	269 (19.9)	1,350 (100)	1,278 (94.7)	72 (5.3)	1,350 (100)	1,325 (98.1)	25 (1.9)	1,350 (100)
	높음	602 (78.1)	169 (21.9)	771 (100)	708 (91.8)	63 (8.2)	771 (100)	745 (96.6)	26 (3.4)	771 (100)
	χ^2	16.326***			16.326***			8.624*		

*p < .05, **p < .01, ***p < .001

다. 고등학생의 가족특성과 범죄 피해

고등학생의 가족특성에 따른 범죄 피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결혼상태로 보면, 재산범죄 피해의 경우 부모결혼상태에 따른 피해 차이가 없었다. 폭력범죄 피해와 성폭력 등 피해의 경우에는 부모 결혼상태가 이혼 중인 경우가 결혼인 경우에 비해 피해가 있는 비율이 조금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동거가족 구성에 따른 피해를 보면, 재산범죄 피해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이 같이 사는 경우가 피해경험이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부모와 사는 경우, 편부/편모와 형제자매 등이 같이 사는 경우 등의 순이었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폭력범죄 피해의 경우는 형제자매, 친척 등과 같이 사는 경우에 피해가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편부/편모와 사는 경우, 부모 및 형제자매 등과 같이 사는 경우 등의 순이었지만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성폭력 등 피해의 경우도 형제자매, 친척 등과 같이 사는 경우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편부/편모 및 형제자매 등과 같이 사는 경우, 부모 및 형제자매 등과 같이 사는 경우의 순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등학생의 재산, 폭력, 성폭력 등 피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중졸(중퇴) 이하인 집단에서 세 가지 유형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각각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피해를 보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성폭력 등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 교육수준이 중졸(중퇴) 이하인 경우 성폭력 등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5.7%였으며, 고졸(중퇴) 이하인 경우와 대졸(중퇴) 이상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각각 2.0%, 1.2%였다. 즉 어머니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성폭력 등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재산범죄, 폭력범죄 피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 각각의 직업유무에 따른 피해를 보면, 재산범죄 피해는 아버지가 직업이 있는 경우가 피해경험이 있는 비율이 더 높으며, 폭력범죄, 성폭력 등 피해는 아버지 직업이 없는 집단에서 피해경험이 있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어머니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재산범죄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 직업이 없는 경우는 재산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이 23.4%로 어머니 직업이 있는 경우의 20.0%에 비해 높았다. 폭력범죄와 성폭력 등 피해는 어머니 직업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사대상자가 응답한 주관적 계층에 따라서 재산범죄, 성폭력 등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재산범죄 피해는 주관적 계층이 낮은 집단에서 피해가 있는 비율이 25.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주관적 계층이 높은 집단이 20.3%, 중간인 집단이 19.8%였다. 성폭력 등 피해가 있는 비율은 주관적 계층이 낮은 집단에서 3.9%였으며, 주관적 계층이 중간인 집단과 높은 집단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각각 1.1%, 0.9%였다. 즉 주관적 계층이 낮은 집단일수록 성폭력 등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계층에 따른 폭력범죄 피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감독수준에 따라서는 고등학생의 폭력범죄 피해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모의 감독수준이 낮을수록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감독수준이 낮을수록 재산범죄, 성폭력 등 피해를 경험한 비율도 높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부모와의 애착정도에 따라서는 폭력범죄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낮을수록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으며,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낮았다.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낮을수록 재산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를 경험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모의 일탈성 수준에 따른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배우자폭력정도에 따라서는 폭력범죄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폭력수준이 높을수록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배우자폭력정도에 따라서 고등학생의 재산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부모의 배우자폭력이 많은 가정일수록 자녀(고등학생)가 가정 밖에서 폭력 피해를 더 많이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6〉 가족 특성과 범죄피해(고등학생)

단위: 명(%)

구 분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부모님 결혼 상태	결혼	2,076 (79.1)	547 (20.9)	2,623 (100)	2,511 (95.7)	113 (4.3)	2,624 (100)	2,590 (98.7)	33 (1.3)	2,623 (100)
	이혼 등	291 (79.3)	76 (20.7)	367 (100)	113 (94.8)	19 (5.2)	367 (100)	359 (97.8)	8 (2.2)	367 (100)
	χ^2	.004			.579			2.023		
동거 가족	편부/편모	71 (86.6)	11 (13.4)	82 (100)	76 (92.7)	6 (7.3)	82 (100)	81 (98.8)	1 (1.2)	82 (100)
	부모	268 (79.5)	69 (20.5)	337 (100)	326 (96.7)	11 (3.3)	337 (100)	333 (98.8)	4 (1.2)	337 (100)
	부모 +형제자매 등	1,778 (78.7)	482 (21.3)	2,260 (100)	2,163 (95.7)	98 (4.3)	2,261 (100)	2,232 (98.7)	29 (1.3)	2,261 (100)
	편부/편모 +형제자매 등	201 (79.4)	52 (20.6)	253 (100)	242 (96.0)	10 (4.0)	252 (100)	247 (97.6)	6 (2.4)	253 (100)
	형제자매, 친척 등	49 (83.1)	10 (16.9)	59 (100)	52 (89.7)	6 (10.3)	58 (100)	57 (96.6)	2 (3.4)	59 (100)
	χ^2	3.644			7.729			3.768		
아버지 교육 수준	중졸(중퇴)이하	38 (74.5)	13 (25.5)	51 (100)	48 (94.1)	3 (5.9)	51 (100)	50 (98.0)	1 (2.0)	51 (100)
	고졸(중퇴)이하	568 (76.5)	174 (23.5)	742 (100)	714 (96.1)	29 (3.9)	743 (100)	732 (98.5)	11 (1.5)	743 (100)
	대졸(중퇴)이상	1,358 (79.7)	346 (20.3)	1,704 (100)	1,621 (95.1)	83 (4.9)	1,704 (100)	1,679 (98.5)	25 (1.5)	1,704 (100)
	χ^2	3.578			1.297			.083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중퇴)이하	25 (71.4)	10 (28.6)	35 (100)	31 (91.2)	3 (8.8)	34 (100)	33 (94.3)	2 (5.7)	35 (100)
	고졸(중퇴)이하	726 (79.4)	188 (20.6)	914 (100)	882 (96.5)	32 (3.5)	914 (100)	896 (98.0)	18 (2.0)	914 (100)
	대졸(중퇴)이상	1,245 (78.4)	342 (21.6)	1,587 (100)	1,512 (95.2)	76 (4.8)	1,588 (100)	1,569 (98.8)	19 (1.2)	1,588 (100)
	χ^2	1.455			3.916			6.380*		
아버지 직업 유무	없음	73 (85.9)	12 (14.1)	85 (100)	81 (94.2)	5 (5.8)	86 (100)	83 (96.5)	3 (3.5)	86 (100)
	있음	2,254 (78.9)	603 (21.1)	2,857 (100)	2,735 (95.7)	123 (4.3)	2,858 (100)	2,820 (98.7)	37 (1.3)	2,857 (100)
	χ^2	2.438			.458			2.996		
어머니 직업 유무	없음	581 (76.6)	177 (23.4)	758 (100)	731 (96.4)	27 (3.6)	758 (100)	750 (98.8)	9 (1.2)	759 (100)
	있음	1,757 (80.0)	438 (20.0)	2,195 (100)	2,096 (95.5)	99 (4.5)	2,195 (100)	2,164 (98.6)	31 (1.4)	2,195 (100)

구분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χ^2	3.942*			1.240			.217		
주관적 계층	하	306 (74.1)	107 (25.9)	413 (100)	392 (94.7)	22 (5.3)	414 (100)	398 (96.1)	16 (3.9)	414 (100)
	중	1,040 (80.2)	257 (19.8)	1,297 (100)	1,248 (96.2)	49 (3.8)	1,297 (100)	1,282 (98.9)	14 (1.1)	1,296 (100)
	상	1,021 (79.7)	260 (20.3)	1,281 (100)	1,219 (95.2)	61 (4.8)	1,280 (100)	1,269 (99.1)	11 (0.9)	1,280 (100)
	χ^2	7.479*			2.414			22.324***		
부모 감독	낮음	596 (78.7)	161 (21.3)	757 (100)	704 (93.0)	53 (7.1)	757 (100)	741 (97.8)	17 (2.2)	758 (100)
	중간	1,083 (78.5)	296 (21.5)	1,379 (100)	1,329 (96.4)	50 (3.6)	1,379 (100)	1,364 (98.8)	15 (1.1)	1,379 (100)
	높음	688 (80.6)	166 (19.4)	854 (100)	826 (96.7)	28 (3.3)	854 (100)	845 (98.9)	9 (1.1)	854 (100)
	χ^2	1,428			16.761***			5.714		
부모 애착	낮음	696 (77.5)	202 (22.5)	898 (100)	843 (93.8)	56 (6.2)	899 (100)	883 (98.2)	16 (1.8)	899 (100)
	중간	676 (78.3)	187 (21.7)	863 (100)	828 (95.9)	35 (4.1)	863 (100)	848 (98.3)	15 (1.7)	863 (100)
	높음	995 (81.0)	234 (19.0)	1,229 (100)	1,188 (96.6)	42 (3.4)	1,230 (100)	1,219 (99.1)	11 (0.9)	1,230 (100)
	χ^2	4,264			10.119**			3.922		
부모 일탈	낮음	1,140 (80.0)	285 (20.0)	1,425 (100)	1,367 (96.0)	57 (4.0)	1,424 (100)	1,407 (98.7)	18 (1.3)	1,425 (100)
	중간	756 (77.6)	218 (22.4)	974 (100)	931 (95.7)	42 (4.3)	973 (100)	961 (98.8)	12 (1.2)	973 (100)
	높음	472 (79.6)	121 (20.4)	593 (100)	560 (94.4)	33 (5.6)	593 (100)	582 (98.0)	12 (2.0)	594 (100)
	χ^2	2,080			2,454			2,039		
배우자 폭력	낮음	1,049 (80.5)	254 (19.5)	1,303 (100)	1,257 (96.5)	46 (3.5)	1,303 (100)	1,289 (98.9)	14 (1.1)	1,303 (100)
	중간	867 (78.5)	238 (21.5)	1,105 (100)	1,054 (95.5)	50 (4.5)	1,104 (100)	1,090 (98.6)	15 (1.4)	1,105 (100)
	높음	452 (77.5)	131 (22.5)	583 (100)	548 (93.8)	36 (6.2)	584 (100)	571 (98.7)	13 (2.2)	584 (100)
	χ^2	2,699			6,688*			3,891		

*p < .05, **p < .01, ***p < .001

3. 친구특성과 범죄피해

가. 초등학생의 친구특성과 범죄피해

친구특성에 따른 범죄피해를 초중고별로 살펴 보았다. 여기서의 친구특성은 선행연구들에서 아동·청소년의 피해와 관련될 수 있다고 제시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를 보면, 재산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은 친한 친구수가 5명 이상인 경우가 그 이하인 경우보다 높았으며, 폭력범죄 피해는 친한 친구수가 4명 이하인 집단에서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더 많았지만 이러한 차이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친구와의 애착수준에 따라서는 폭력범죄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친구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친구와의 애착수준이 낮을수록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친구와의 애착수준에 따른 재산범죄 피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친구의 비행수준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의 재산범죄, 폭력범죄 피해유무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친구의 비행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친구의 비행수준이 높을수록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도 높았다. 친구의 비행수준은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므로 주관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적인 변수로 친한 친구의 지난 1년간 징계경험과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경험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았다. 이와 관련된 피해여부를 살펴 보면, 친한 친구의 징계경험 유무에 따라서 재산범죄, 폭력범죄 피해 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앞에서 살펴 본 친구의 비행수준에 따른 결과와 일관되게, 친한 친구의 징계경험이 있는 경우는 재산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21.3%로 친한 친구의 징계경험이 없는 경우(12.2%)보다 높았다. 폭력범죄 피해의 경우도 친한 친구의 징계경험이 있는 경우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14.9%로 친한 친구 징계경험이 없는 경우의 7.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의 지난 1년간 학폭위 회부경험 유무에 따라서도 재산범죄 피해와 폭력범죄 피해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친한 친구의 학폭위 회부경험이 있는 경우는 재산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이 20.2%로 친한 친구의 학폭위 회부경험이 없는 경우의 12.7%보다 높았다.

친한 친구의 지난 1년간 학폭위 회부경험이 있는 경우 폭력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은 12.1%로 친한 친구의 학폭위 회부경험이 없는 경우의 7.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의 괴롭힘, 폭력피해로 측정한 친구의 피해정도에 따라서도 재산범죄, 폭력범죄 피해 유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친구의 피해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으며,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도 높았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친구의 비행수준이 높을수록, 피해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 폭력범죄 피해경험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7〉 친구 특성과 범죄피해(초등학생)

단위: 명(%)

구분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친한 친구 수	4명 이하	468(87.3)	68(12.7)	536(100)	489(91.2)	47(8.8)	536(100)
	5명 이상	2,661(86.9)	401(13.1)	3,062(100)	2,830(92.4)	233(7.6)	3,063(100)
	χ^2	.067			.858		
친구 애착	낮음	757(85.5)	128(14.5)	885(100)	792(89.5)	93(10.5)	885(100)
	중간	1,297(87.3)	188(12.7)	1,485(100)	1,377(92.8)	107(7.2)	1,484(100)
	높음	1,076(87.6)	153(12.4)	1,229(100)	1,149(93.6)	79(6.4)	1,228(100)
	χ^2	2.149			12.992**		
친구 비행	낮음	1,358(90.4)	144(9.6)	1,502(100)	1,423(94.7)	80(5.3)	1,503(100)
	중간	1,146(86.1)	185(13.9)	1,331(100)	1,236(92.9)	94(7.1)	1,330(100)
	높음	625(81.7)	140(18.3)	765(100)	660(86.2)	106(13.8)	766(100)
	χ^2	35.339***			52.774***		
친구 징계경험 유무	없음	2,860(87.8)	396(12.2)	3,256(100)	3,027(93.0)	229(7.0)	3,256(100)
	있음	269(78.7)	73(21.3)	342(100)	292(85.1)	51(14.9)	343(100)
	χ^2	23.022***			26.555***		
친구 학폭위 회부유무	없음	2,991(87.3)	434(12.7)	3,425(100)	3,166(92.4)	259(7.6)	3,425(100)
	있음	138(79.8)	35(20.2)	173(100)	152(87.9)	21(12.1)	173(100)
	χ^2	8.302**			4.807*		
친구 피해	낮음	2,220(88.8)	280(11.2)	2,500(100)	2,361(94.4)	139(5.6)	2,500(100)
	중간	359(82.9)	74(17.1)	433(100)	391(90.3)	42(9.7)	433(100)
	높음	550(82.6)	16(17.4)	666(100)	567(85.3)	98(14.7)	665(100)
	χ^2	24.949***			64.447***		

*p < .05, **p < .01, ***p < .001

나. 중학생의 친구특성과 범죄피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친구특성에 따른 피해를 분석해 보았다. 친한 친구수에 따라서는 폭력범죄 피해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친한 친구수가 4명 이하인 경우는 폭력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이 7.3%로 친한 친구수 5명 이상인 경우의 5.0%에 비해 높았다. 친한 친구수에 따른 재산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친구와의 애착수준에 따른 중학생의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폭력 등 피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재산범죄 피해는 친구와의 애착수준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피해가 있는 비율이 비슷하였으며, 다음은 친구와의 애착수준이 중간인 경우였다. 폭력범죄와 성폭력 등 피해는 친구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친구와의 애착이 낮을수록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폭력성 범죄의 경우 친구와의 애착수준이 낮을수록 피해를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구의 비행수준에 따른 범죄유형별 피해유무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재산범죄와 성폭력 등 피해의 경우는 친구 비행수준이 중간인 경우가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비행수준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의 순이었다. 폭력범죄 피해는 친구의 비행수준이 높을수록 피해가 많았다.

친한 친구의 지난 1년간 징계경험과 학폭위 회부경험 유무에 따라서 중학생의 재산, 폭력, 성폭력 등 피해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친한 친구의 징계경험이 있는 경우, 학폭위 회부경험이 있는 경우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친구의 피해수준별로 보면, 재산범죄 피해는 친구 피해수준이 중간인 경우 피해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친구 피해수준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순이었다. 폭력범죄와 성폭력 등 피해의 경우에는 친구의 피해수준이 높을수록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표 6-8〉 친구 특성과 범죄피해(중학생)

단위: 명(%)

구 분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친한 친구 수	4명 이하	498 (82.0)	109 (18.0)	607 (100)	562 (92.7)	44 (7.3)	606 (100)	589 (97.0)	18 (3.0)	607 (100)
	5명 이상	2,523 (80.3)	619 (19.7)	3,142 (100)	2,983 (95.0)	158 (5.0)	3,141 (100)	3,083 (98.1)	59 (1.9)	3,142 (100)
	χ^2	.988			4.955*			2.991		
친구 애착	낮음	614 (78.9)	164 (21.1)	778 (100)	715 (91.9)	63 (8.1)	778 (100)	750 (96.4)	28 (3.6)	778 (100)
	중간	1,423 (28.5)	301 (17.5)	1,724 (100)	1,633 (94.8)	90 (5.2)	1,723 (100)	1,690 (98.1)	33 (1.9)	1,723 (100)
	높음	894 (78.8)	264 (21.2)	1,248 (100)	1,198 (96.0)	50 (4.0)	1,248 (100)	1,231 (98.7)	16 (1.3)	1,247 (100)
	χ^2	7.995*			15.891***			13.077**		
친구 비행	낮음	1,462 (83.4)	290 (16.6)	1,752 (100)	1,696 (96.8)	56 (3.2)	1,752 (100)	1,735 (99.0)	18 (1.0)	1,753 (100)
	중간	778 (77.1)	231 (22.9)	1,009 (100)	941 (93.3)	68 (6.7)	1,009 (100)	977 (96.8)	32 (3.2)	1,009 (100)
	높음	780 (79.0)	207 (21.0)	987 (100)	908 (92.0)	79 (8.0)	987 (100)	960 (97.3)	27 (2.7)	987 (100)
	χ^2	18.505***			33.204***			17.737***		
친구징계 경험유무	없음	2,416 (81.5)	549 (18.5)	2,965 (100)	2,824 (95.3)	140 (4.7)	2,964 (100)	2,913 (98.2)	52 (1.8)	2,965 (100)
	있음	605 (77.2)	179 (22.8)	784 (100)	721 (92.0)	63 (8.0)	784 (100)	759 (96.8)	25 (3.2)	784 (100)
	χ^2	7.380**			13.279***			6.347*		
친구 학폭위 회부유무	없음	2,625 (81.7)	588 (18.3)	3,213 (100)	3,064 (95.4)	149 (4.6)	3,213 (100)	3,154 (98.2)	58 (1.8)	3,212 (100)
	있음	396 (73.9)	140 (26.1)	536 (100)	482 (89.9)	54 (10.1)	536 (100)	517 (96.5)	19 (3.5)	536 (100)
	χ^2	17.947***			26.516***			6.904**		
친구 피해	낮음	2,161 (81.6)	486 (18.4)	2,647 (100)	2,537 (95.9)	109 (4.1)	2,646 (100)	2,607 (98.5)	40 (1.5)	2,647 (100)
	중간	614 (76.8)	186 (23.3)	800 (100)	747 (93.3)	54 (6.7)	801 (100)	778 (97.1)	23 (2.9)	801 (100)
	높음	245 (81.4)	56 (18.6)	301 (100)	262 (86.8)	40 (13.2)	302 (100)	287 (95.0)	15 (5.0)	302 (100)
	χ^2	9.525**			47.576***			19.026***		

*p < .05, **p < .01, ***p < .001

다. 고등학생의 친구특성과 범죄피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친구특성에 따른 범죄피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9>와 같다. 친한 친구수에 따라서는 폭력범죄 피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친한 친구수가 4명 이하인 경우는 폭력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이 5.9%로 친한 친구수 5명 이상인 경우의 4.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친한 친구수가 적은 경우 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비율이 높은 것이다. 재산범죄 피해는 친한 친구수가 5명 이상인 경우가 더 많았으며, 성폭력 등 피해는 친한 친구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더 높지만 이러한 차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친구와의 애착수준에 따라서도 폭력범죄 피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다. 친구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았으며, 친구와의 애착수준이 낮을수록 폭력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재산범죄와 성폭력 등 피해는 친구와의 애착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친구의 비행은 조사대상자가 응답한 친구의 비행정도, 친한 친구의 지난 1년간 징계경험 및 학폭위 회부경험 유무로 측정하였으며, 각각에 따른 피해 유무를 살펴 보았다. 친구의 비행수준에 따라서는 폭력범죄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친구의 비행수준이 높을수록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재산범죄와 성폭력 등 피해의 경우에도 대체로 친구의 비행이 많을수록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지만,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친한 친구의 지난 1년간 징계경험 유무에 따라서도 폭력범죄 피해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친한 친구가 징계경험이 있는 경우는 폭력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이 6.5%로 친한 친구의 징계경험이 없는 경우의 3.8%에 비해 높았다. 재산범죄와 성폭력 등 피해의 경우에도 친한 친구의 징계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피해가 있는 비율이 높지만, 이러한 차이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친한 친구의 지난 1년간 학폭위 회부경험 유무별로 보면 폭력범죄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친한 친구가 학폭위에 회부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8.0%로 학폭위에 회부된 친한 친구가 없는 경우의 3.8%에 비해 높았다. 재산범죄 피해와 성폭력 등 피해도 친한 친구의 학폭위 회부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피해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친구의 괴롭힘, 폭력피해를 통해 살펴 본 친구 피해정도에 따라서는 폭력범죄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친구의 피해가 높거나 중간인 경우는 낮은 경우에 비해 폭력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의 괴롭힘이나 폭력피해가 많을수록 폭력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친구특성이 폭력범죄 피해와 관련됨을 보여준다. 재산범죄나 성폭력 등 피해의 경우에는 친구특성보다는 다른 특성들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표 6-9〉 친구 특성과 범죄피해(고등학생)

단위: 명(%)

구 분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친한 친구 수	4명 이하	539 (79.7)	137 (20.3)	676 (100)	636 (94.1)	40 (5.9)	676 (100)	664 (98.2)	12 (1.8)	676 (100)
	5명 이상	1,828 (79.0)	487 (21.0)	2,315 (100)	2,224 (96.0)	92 (4.0)	2,316 (100)	2,286 (98.7)	29 (1.3)	2,315 (100)
	χ^2	.188			4.693*			1.056		
친구 애착	낮음	701 (77.5)	203 (22.5)	904 (100)	845 (93.5)	59 (6.5)	904 (100)	886 (98.0)	18 (2.0)	904 (100)
	중간	922 (80.9)	217 (19.1)	1,139 (100)	1,095 (96.1)	44 (3.9)	1,139 (100)	1,125 (98.8)	14 (1.2)	1,139 (100)
	높음	745 (78.6)	203 (21.4)	948 (100)	918 (96.9)	29 (3.1)	947 (100)	938 (98.9)	10 (1.1)	948 (100)
	χ^2	3.829			14.480**			3.337		
친구 비행	낮음	937 (81.3)	215 (18.7)	1,152 (100)	1,122 (97.4)	30 (2.6)	1,152 (100)	1,139 (98.9)	13 (1.1)	1,152 (100)
	중간	882 (77.7)	253 (22.3)	1,135 (100)	1,088 (95.9)	47 (4.1)	1,135 (100)	1,119 (98.6)	16 (1.4)	1,135 (100)
	높음	549 (77.9)	156 (22.1)	705 (100)	649 (92.2)	55 (7.8)	704 (100)	692 (98.2)	13 (1.8)	705 (100)
	χ^2	5.462			28.420***			1.618		
친구징계 경험유무	없음	1,829 (79.5)	471 (20.5)	2,300 (100)	2,213 (96.2)	87 (3.8)	2,300 (100)	2,270 (98.7)	29 (1.3)	2,299 (100)
	있음	539 (77.9)	153 (22.1)	692 (100)	647 (93.5)	45 (6.5)	692 (100)	679 (98.3)	12 (1.7)	691 (100)
	χ^2	.858			9.334**			.887		
친구	없음	2,041	525	2,566	2,468	98	2,566	2,532	33	2,565

구분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학폭위 회부유무		(79.5)	(20.5)	(100)	(96.2)	(3.8)	(100)	(98.7)	(1.3)	(100)
	있음	327 (76.8)	99 (23.2)	426 (100)	391 (92.0)	34 (8.0)	425 (100)	418 (98.1)	8 (1.9)	426 (100)
	χ^2	1.710			15.108***			.945		
친구 피해	낮음	1,753 (79.6)	450 (20.4)	2,203 (100)	2,126 (96.5)	77 (3.5)	2,203 (100)	2,172 (98.6)	31 (1.4)	2,203 (100)
	중간	428 (76.6)	131 (23.4)	559 (100)	520 (93.0)	39 (7.0)	559 (100)	555 (99.3)	4 (0.7)	559 (100)
	높음	187 (81.7)	42 (18.3)	229 (100)	213 (93.0)	16 (7.0)	229 (100)	222 (97.4)	6 (2.6)	228 (100)
	χ^2	3.378			16.705***			4.476		

*p < .05, **p < .01, ***p < .001

4. 학교 특성과 범죄피해

학교 특성은 객관적인 특성으로 학교규모와 경비원 유무, 출입문 통제 유무 등을 살펴 보았다. 또한 학교폭력의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 여부 및 신뢰정도, 학교의 폭력예방노력, 응집성, 교사의 지지, 학교 규칙문화, 성적 등에 대하여 살펴 본 후 이러한 요인들과 피해와의 관련성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 학교 특성은 학교와 관련된 특성이므로 성적을 학교 특성에 포함하여 살펴 보았다.

가. 초등학생의 학교특성과 범죄피해

초등학생의 학교 특성에 따른 범죄피해를 살펴 보면, 학교규모에 따라서는 재산범죄, 폭력범죄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의 경비원 유무, 출입문 통제 유무에 따라서도 재산범죄, 폭력범죄 피해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전혀 모른다’와 ‘거의 모른다’는 모름으로, ‘어느 정도 안다’와 ‘매우 잘 안다’는 알고 있음으로 분류한 후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인지여부에 따른 피해유무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학교전담경찰관을 알고 있는

경우는 모르는 경우에 비해 재산범죄, 폭력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이 조금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피해를 당할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잘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전혀 도와 주지 못할 것이다’와 ‘별로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는 신뢰수준이 낮은 것으로, ‘그저 그렇다’는 중간, ‘잘 도와 줄 것이다’와 ‘매우 잘 도와 줄 것이다’는 신뢰가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분류하였다. 이러한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정도에 따라서 재산범죄, 폭력범죄 피해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재산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이 2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중간과 높은 경우의 순이었다(각각 15.8%, 12.1%).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수준에 따른 폭력범죄 피해를 보면, 폭력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은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17.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신뢰수준이 중간인 집단이 10.7%, 신뢰수준이 높은 집단이 6.6%였다. 초등학교의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재산범죄,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았다.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가 피해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경험이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괴롭힘이나 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괴롭힘이나 폭력발생시 잘 해결하는 정도로 측정한 학교의 폭력예방노력과 관련해서 보면, 학교의 폭력예방노력 수준에 따라서 초등학교의 재산범죄, 폭력범죄 피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의 폭력예방노력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았다. 반면 학교의 폭력예방노력수준이 낮을수록 재산범죄,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친구, 교사와 좋은 관계 유지, 학생간, 학생과 교사간의 존중 등을 통하여 파악한 학교 응집성의 수준에 따라서도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응집성이 높을수록 재산범죄,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았으며, 학교응집성이 낮을수록 재산범죄, 폭력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이 높았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규칙준수, 학교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의 일관성, 학교규칙 적용의 엄격성으로 측정한 학교규칙 문화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보면, 학교규칙 문화의

적정성이 폭력범죄 피해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칙 문화가 적정하다고 인식할수록 폭력피해가 있는 비율은 낮았다. 반면 학교규칙 문화가 적정하다는 인식이 낮을수록 폭력피해가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칙의 적정성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이 낮았지만,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교사의 지지도도 폭력범죄 피해와 관련되었다.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폭력범죄를 경험한 비율이 낮았으며, 교사의 지지가 낮을수록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재산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도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사대상자들이 보고한 성적 수준별로 보면 재산범죄의 경우 성적에 따른 일관된 차이가 없었으며, 폭력범죄 피해의 경우 성적이 낮을수록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6-10〉 학교 특성과 범죄피해(초등학생)

단위: 명(%)

구분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학교 규모	200명 미만	87(89.7)	10(10.3)	97(100)	89(91.8)	8(8.2)	97(100)
	200-600명 미만	702(86.3)	111(13.7)	813(100)	745(91.7)	67(8.3)	812(100)
	600명 이상	2,341(87.1)	348(12.9)	2,689(100)	2,485(92.4)	205(5.7)	2,690(100)
	χ^2	.931			.376		
경비원 유무	없음	287(88.0)	39(12.0)	326(100)	297(91.1)	29(8.9)	326(100)
	있음	2,842(86.9)	430(13.1)	3,272(100)	3,022(92.4)	250(7.6)	3,272(100)
	χ^2	.363			.653		
출입문 통제	없음	295(85.3)	51(14.7)	346(100)	310(89.6)	36(10.4)	346(100)
	있음	2,834(87.1)	418(12.9)	3,252(100)	3,009(92.5)	244(7.5)	3,253(100)
	χ^2	.982			3.676		
학교전담 경찰관 인지여부	모름	1,658(87.1)	245(12.9)	1,903(100)	1,766(92.8)	137(7.2)	1,903(100)
	알고 있음	1,471(86.8)	224(13.2)	1,695(100)	1,552(91.6)	143(8.4)	1,695(100)
	χ^2	.092			1.913		
학교전담 경찰관 신뢰	낮음	128(80.0)	32(20.0)	160(100)	132(82.5)	28(17.5)	160(100)
	중간	486(84.2)	91(15.8)	577(100)	515(89.3)	62(10.7)	577(100)
	높음	2,515(87.9)	346(12.1)	2,861(100)	2,672(93.4)	190(6.6)	2,862(100)

구분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χ^2	12.894**			33.336***		
학교폭력 예방노력	낮음	1,015(83.9)	195(16.1)	1,210(100)	1,066(88.2)	143(11.8)	1,203(100)
	중간	1,416(88.6)	183(11.4)	1,599(100)	1,500(93.8)	100(6.3)	1,600(100)
	높음	698(88.5)	91(11.5)	789(100)	752(95.3)	37(4.7)	789(100)
	χ^2	15.267***			43.325****		
학교응집	낮음	811(84.7)	146(15.3)	957(100)	851(88.9)	106(11.1)	957(100)
	중간	1,418(87.2)	209(12.8)	1,627(100)	1,515(93.1)	112(6.9)	1,627(100)
	높음	901(88.8)	114(11.2)	1,015(100)	953(93.9)	62(6.1)	1,015(100)
	χ^2	7.130*			20.267***		
학교규칙 문화 적정성	낮음	927(85.8)	153(14.2)	1,080(100)	969(89.7)	111(10.3)	1,080(100)
	중간	1,370(87.1)	203(12.9)	1,573(100)	1,455(92.6)	117(7.4)	1,572(100)
	높음	833(88.1)	113(11.9)	946(100)	895(94.6)	51(5.4)	946(100)
	χ^2	2.235			17.214***		
교사지지	낮음	674(84.8)	121(15.2)	795(100)	705(88.7)	90(11.3)	795(100)
	중간	1,100(87.2)	161(12.8)	1,261(100)	1,172(92.9)	90(7.1)	1,262(100)
	높음	1,356(87.9)	186(12.1)	1,542(100)	1,442(93.5)	100(6.5)	1,542(100)
	χ^2	4.721			18.235***		
학교성적	하	236(85.5)	40(14.5)	276(100)	253(91.7)	23(8.3)	276(100)
	중	879(88.3)	117(11.7)	996(100)	919(92.3)	77(7.7)	996(100)
	상	1,587(85.9)	261(14.1)	1,848(100)	1,177(92.6)	137(7.4)	1,848(100)
	χ^2	3.463			.327		

*p < .05, **p < .01, ***p < .001

나. 중학생의 학교특성과 범죄피해

중학생의 학교 특성에 따른 범죄피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규모별 피해를 보면 폭력범죄 피해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규모가 600명 이상인 경우 폭력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이 6.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200-600명 미만인 경우가 4.6%, 200명 미만인 경우가 3.6%의 순이었다. 즉 학교규모가 클수록 폭력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재산범죄의 경우 학교규모에 따른 일관된 차이가 없었으며, 성폭력 등 피해의 경우에는 학교규모가 클수록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교의 경비원 유무에 따라서는 중학생의 재산, 폭력, 성폭력 등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의 출입문 통제여부에 따라서는 재산범죄 피해가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의 출입문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는 재산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이 23.6%로 출입문을 통제하는 경우의 18.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이나 성폭력 등 피해는 학교출입문 통제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인지여부에 따른 피해를 보면,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모르는 경우는 아는 경우에 비해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폭력 등의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정도에 따른 피해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신뢰할수록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피해 등을 경험한 비율이 각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폭력예방노력 정도에 따라서도 재산, 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재산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은 학교폭력예방 노력이 낮은 수준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학교폭력예방 노력이 높은 경우, 중간인 경우의 순이었다. 폭력범죄 피해는 학교폭력예방노력이 낮은 집단에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학교폭력예방 노력이 중간, 높은 집단의 순이었다. 성폭력 등의 피해가 있는 비율도 학교폭력예방 노력이 낮을수록 높았으며, 학교의 폭력예방노력수준이 높을수록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응집성에 따라서 폭력, 성폭력 등 피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의 응집성이 높을수록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응집성이 높을수록 성폭력 등의 피해를 경험한 비율도 낮게 나타났다. 한편 재산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도 학교응집성이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규칙문화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보면, 학교규칙문화가 적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재산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이 낮았다. 또한 학교규칙문화가 적정하다고 인식할수록 폭력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 성폭력 등의 피해가 있는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칙문화의 적정성 수준에 따른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폭력 등 피해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교사의 지지정도에 따라서는 폭력범죄, 성폭력 등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사의 지지가 강할수록 폭력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등의 피해가 있는 비율은 교사의 지지가 낮은 경우에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지지가 높은 경우, 중간인 경우의 순이었다. 한편 재산범죄 피해도 교사의 지지가 강할수록 피해가 있는 비율이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중학생이 보고한 성적 수준에 따른 피해유무를 보면, 재산범죄의 경우 성적에 따른 일관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성적이 낮을수록 각각 폭력범죄 피해와 성폭력 등의 피해가 있는 비율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표 6-11〉 학교 특성과 범죄피해(중학생)

단위: 명(%)

구분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학교 규모	200명 미만	108 (79.4)	28 (20.6)	136 (100)	132 (96.4)	5 (3.6)	137 (100)	135 (98.5)	2 (1.5)	137 (100)
	200-600명 미만	1,418 (82.1)	310 (17.9)	1,728 (100)	1,649 (95.4)	79 (4.6)	1,728 (100)	1,700 (98.4)	28 (1.6)	1,728 (100)
	600명 이상	1,495 (79.4)	389 (20.6)	1,884 (100)	1,765 (93.7)	119 (6.3)	1,884 (100)	1,836 (97.5)	48 (2.5)	1,884 (100)
	χ^2	4.355			6.221*			4.074		
경비원 유무	없음	769 (80.4)	188 (19.6)	957 (100)	908 (94.9)	49 (5.1)	957 (100)	941 (98.3)	16 (1.7)	957 (100)
	있음	2,252 (80.7)	540 (19.3)	2,792 (100)	2,637 (94.5)	154 (5.5)	2,791 (100)	2,730 (97.8)	61 (2.2)	2,791 (100)
	χ^2	.042			.220			.935		
출입문 통제	없음	624 (76.4)	193 (23.6)	817 (100)	775 (94.9)	42 (5.1)	817 (100)	802 (98.3)	14 (1.7)	816 (100)
	있음	2,396 (81.7)	535 (18.3)	2,931 (100)	2,771 (94.5)	161 (5.5)	2,932(100)	2,869 (97.9)	63 (2.1)	2,932 (100)
	χ^2	11.771**			.153			.595		
학교전담 경찰관 인지여부	모름	1,792 (80.4)	438 (19.6)	2,230 (100)	2,098 (94.1)	132 (5.9)	2,230 (100)	2,179 (97.7)	51 (2.3)	2,230 (100)
	알고 있음	1,229 (80.9)	290 (19.1)	1,519 (100)	1,447 (95.3)	71 (4.7)	1,518 (100)	1,493 (98.3)	26 (1.7)	1,519 (100)
	χ^2	.175			2.720			1.487		
학교전담 경찰관 신뢰	낮음	231 (73.8)	82 (26.2)	313 (100)	279 (89.1)	34 (10.9)	313 (100)	300 (95.8)	13 (4.2)	313 (100)
	중간	864 (79.9)	217 (20.1)	1,081 (100)	1,019 (94.2)	63 (5.8)	1,082 (100)	1,048 (96.9)	33 (3.1)	1,081 (100)
	높음	1,925 (81.8)	429 (18.2)	2,354 (100)	2,248 (95.5)	106 (4.5)	2,354 (100)	2,323 (98.7)	31 (1.3)	2,354 (100)
	χ^2	11.634**			22.311***			18.570***		

구분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학교폭력 예방노력	낮음	878 (77.0)	263 (23.0)	1,141 (100)	1,058 (92.7)	83 (7.3)	1,141 (100)	1,098 (96.1)	44 (3.9)	1,142 (100)
	중간	1,329 (82.8)	276 (17.2)	1,605 (100)	1,526 (95.1)	78 (4.9)	1,604 (100)	1,580 (98.5)	24 (1.5)	1,604 (100)
	높음	813 (81.1)	190 (18.9)	1,003 (100)	961 (95.9)	41 (4.1)	1,002 (100)	994 (99.1)	9 (0.9)	1,003 (100)
	χ^2	14.809**			12.128**			27.521***		
학교응집	낮음	1,084 (78.6)	295 (21.4)	1,379 (100)	1,266 (91.8)	113 (8.2)	1,379 (100)	1,335 (96.8)	44 (3.2)	1,379 (100)
	중간	1,086 (81.4)	248 (18.6)	1,334 (100)	1,268 (95.1)	66 (4.9)	1,334 (100)	1,312 (98.4)	22 (1.6)	1,334 (100)
	높음	851 (82.1)	185 (17.9)	1,036 (100)	1,012 (97.7)	24 (2.3)	1,036 (100)	1,025 (98.9)	11 (1.1)	1,036 (100)
	χ^2	5.632			40.787***			15.014**		
학교규칙 문화 적정성	낮음	1,002 (76.5)	308 (23.5)	1,310 (100)	1,206 (92.1)	104 (7.9)	1,310 (100)	1,259 (96.1)	51 (3.9)	1,310 (100)
	중간	908 (82.3)	195 (17.1)	1,103 (100)	1,053 (95.4)	54 (4.6)	1,104 (100)	1,037 (98.9)	12 (1.1)	1,103 (100)
	높음	1,110 (83.1)	225 (16.9)	1,335 (100)	1,287 (96.3)	49 (3.7)	1,336 (100)	1,321 (99.0)	14 (1.0)	1,335 (100)
	χ^2	11.764***			25.506***			33.841***		
교사지지	낮음	1,134 (80.4)	276 (19.6)	1,410 (100)	1,316 (93.3)	94 (6.7)	1,410 (100)	1,364 (96.7)	46 (3.3)	1,410 (100)
	중간	1,154 (80.6)	278 (19.4)	1,432 (100)	1,357 (94.8)	95 (5.2)	1,432 (100)	1,414 (98.7)	18 (1.3)	1,432 (100)
	높음	733 (80.7)	175 (19.3)	908 (100)	873 (96.3)	34 (3.7)	907 (100)	894 (98.6)	13 (1.4)	907 (100)
	χ^2	.033			9.319**			16.494***		
학교성적	하	777 (81.1)	181 (18.9)	958 (100)	898 (93.8)	59 (6.2)	957 (100)	936 (97.8)	21 (2.2)	957 (100)
	중	851 (82.1)	186 (17.9)	1,037 (100)	975 (94.0)	62 (6.0)	1,037 (100)	1,014 (97.8)	23 (2.2)	1,037 (100)
	상	1,204 (79.0)	321 (21.0)	1,525 (100)	1,454 (95.3)	71 (4.7)	1,525 (100)	1,494 (98.0)	30 (2.0)	1,524 (100)
	χ^2	4.159			3.376			.239		

*p < .05, **p < .01, ***p < .001

다. 고등학생의 학교특성과 범죄피해

고등학생의 학교 특성에 따른 범죄피해를 살펴 보면, 학교규모별로는 학교규모가 클수록 재산범죄,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가 있는 비율이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의 또다른 객관적 특성인 경비원 유무, 출입문통제 유무에 따라서도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의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전담경찰관 인지여부에 따른 피해를 보면,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아는 경우에 비해 각각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피해를 당할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잘 도와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서는 재산범죄,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집단일수록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는 피해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경험이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신뢰하는 학생일수록 피해를 당하기 이전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신뢰가 피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의 폭력예방노력에 따른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의 폭력예방노력이 많다는 집단일수록 재산범죄, 성폭력 등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폭력범죄 피해의 경우는 학교의 폭력예방노력이 낮은 집단에서 피해가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학교폭력예방노력이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의 순이었다.

학교의 응집성은 재산범죄, 폭력범죄 피해와 관련되었다. 학교의 응집성이 높을수록 재산범죄를 경험한 비율이 낮았으며,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도 낮았다. 한편 성폭력 등의 피해가 있는 비율도 학교응집성이 높을수록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학교규칙문화의 적정성에 따라서도 재산범죄,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의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규칙문화 적정성 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등 피해의 경우에는 학교규

칙문화 적정성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피해가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적정성 수준이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에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지지정도별로 재산범죄 피해와 폭력범죄 피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사의 지지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재산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지지수준이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의 순이었다. 폭력범죄 피해의 경우에도 재산범죄 피해와 같이 교사의 지지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피해경험이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지지수준이 높은 경우, 중간인 경우의 순이었다. 이 두 유형의 피해 모두 교사의 지지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보여준다. 성폭력 등의 피해는 교사의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고등학생이 보고한 성적에 따라서는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의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12〉 학교 특성과 범죄피해(고등학생)

단위: 명(%)

구분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학교 규모	200명 미만	28 (77.8)	8 (22.2)	36 (100)	32 (91.4)	3 (8.6)	35 (100)	35 (97.2)	1 (2.8)	36 (100)
	200-600명 미만	447 (79.0)	119 (21.0)	566 (100)	537 (94.9)	29 (5.1)	566 (100)	555 (98.1)	11 (1.9)	566 (100)
	600명 이상	1,893 (79.2)	496 (20.8)	2,389 (100)	2,289 (95.9)	99 (4.1)	2,388 (100)	2,360 (98.8)	29 (1.2)	2,389 (100)
	χ^2	.062			2.527			2.335		
경비원 유무	없음	495 (79.2)	130 (20.8)	625 (100)	600 (96.0)	25 (4.0)	625 (100)	620 (99.0)	6 (1.0)	626 (100)
	있음	1,872 (79.1)	494 (20.9)	2,366 (100)	2,259 (95.5)	107 (4.5)	2,366 (100)	2,330 (98.5)	36 (1.5)	2,366 (100)
	χ^2	.002			.320			1.134		
출입문 통제	없음	426 (78.3)	118 (21.7)	544 (100)	523 (96.1)	21 (3.9)	544 (100)	538 (98.7)	7 (1.3)	545 (100)
	있음	1,941 (79.4)	505 (20.6)	2,446 (100)	2,336 (95.5)	111 (4.5)	2,447 (100)	2,412 (98.6)	35 (1.4)	2,447 (100)
	χ^2	.295			.482			.069		
학교전담 경찰관 인지여부	모름	1,530 (78.5)	418 (21.5)	1,948 (100)	1,856 (95.2)	93 (4.8)	1,949 (100)	1,920 (98.6)	28 (1.4)	1,948 (100)
	알고 있음	837 (80.3)	205 (19.7)	1,042 (100)	1,003 (96.3)	39 (3.7)	1,042 (100)	1,029 (98.7)	14 (1.3)	1,043 (100)

구분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학교전담 경찰관 신뢰	χ^2	1.310			1.704			.044		
	낮음	293 (76.5)	90 (23.5)	383 (100)	353 (92.2)	30 (7.8)	383 (100)	372 (97.1)	11 (2.9)	383 (100)
	중간	781 (77.5)	227 (22.5)	1,008 (100)	965 (95.8)	42 (4.2)	1,007 (100)	993 (98.5)	15 (1.5)	1,008 (100)
	높음	1,294 (80.8)	307 (19.2)	1,601 (100)	1,541 (96.3)	60 (3.7)	1,601 (100)	1,585 (99.1)	15 (0.9)	1,600 (100)
	χ^2	6.050*			12.439**			8.709*		
학교폭력 예방노력	낮음	829 (77.4)	242 (22.6)	1,071 (100)	1,005 (93.8)	66 (6.2)	1,071 (100)	1,048 (97.9)	23 (2.1)	1,071 (100)
	중간	1,007 (78.7)	272 (21.3)	1,279 (100)	1,236 (96.6)	43 (3.4)	1,279 (100)	1,265 (98.9)	14 (1.1)	1,279 (100)
	높음	531 (82.8)	110 (17.2)	641 (100)	619 (96.4)	23 (3.6)	642 (100)	637 (99.2)	5 (0.8)	642 (100)
		χ^2	7.395*			12.173**			6.976*	
학교응집	낮음	804 (75.8)	256 (24.2)	1,060 (100)	994 (93.8)	66 (6.2)	1,060 (100)	1,041 (98.2)	19 (1.8)	1,060 (100)
	중간	911 (79.4)	236 (20.6)	1,147 (100)	1,107 (96.6)	39 (3.4)	1,146 (100)	1,130 (98.6)	16 (1.4)	1,146 (100)
	높음	653 (83.2)	132 (16.8)	785 (100)	758 (96.6)	27 (3.4)	785 (100)	779 (99.2)	6 (0.8)	785 (100)
		χ^2	14.792**			12.797**			3.535	
학교규칙 문화 적정성	낮음	701 (75.8)	224 (24.2)	925 (100)	872 (94.2)	54 (5.8)	926 (100)	905 (97.8)	20 (2.2)	925 (100)
	중간	1,073 (79.2)	281 (20.8)	1,354 (100)	1,296 (95.8)	57 (4.2)	1,353 (100)	1,340 (99.0)	13 (1.0)	1,353 (100)
	높음	594 (83.4)	118 (16.6)	712 (100)	691 (97.1)	21 (2.9)	712 (100)	704 (98.9)	8 (1.1)	712 (100)
		χ^2	14.261**			8.161*			6.286*	
교사지지	낮음	672 (75.6)	217 (24.4)	889 (100)	837 (94.2)	52 (5.8)	889 (100)	871 (98.0)	18 (2.0)	889 (100)
	중간	962 (80.8)	228 (19.2)	1,190 (100)	1,147 (96.4)	43 (3.6)	1,190 (100)	1,174 (98.7)	16 (1.3)	1,190 (100)
	높음	734 (80.4)	179 (19.6)	913 (100)	875 (95.9)	37 (4.1)	912 (100)	905 (99.2)	7 (0.8)	912 (100)
		χ^2	9.740**			6.425*			5.273	
학교성적	하	773 (80.3)	190 (19.7)	963 (100)	920 (95.5)	43 (4.4)	963 (100)	952 (98.9)	11 (1.1)	963 (100)
	중	717 (78.4)	197 (21.6)	914 (100)	875 (95.7)	39 (4.3)	914 (100)	901 (98.6)	13 (1.4)	914 (100)
	상	769 (78.7)	208 (21.3)	977 (100)	934 (95.6)	43 (4.5)	977 (100)	962 (98.5)	15 (1.5)	977 (100)
		χ^2	1.121			.046			.587	

*p < .05, **p < .01, ***p < .001

5. 거주지역 특성과 범죄피해

가. 초등학생의 거주지역 특성과 범죄피해

거주지역 특성은 동네나 등하교길 특성을 통하여 살펴 보았다. 초등학생의 거주지역 특성에 따른 범죄피해를 보면,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재산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으며,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재산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거주지역의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도 높았다. 거주지역의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 수준에 따른 재산범죄, 폭력범죄 피해유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한편 동네주민간의 친밀성을 나타내는 이웃관계, 피해나 괴롭힘 발생시 주민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이웃참여 수준에 따라서는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경찰에 대한 신뢰정도에 따라서는 폭력범죄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경찰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은 집단에서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지역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찰에 대한 신뢰정도에 따라서 재산범죄 피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13〉 동네 및 등하교길 특성과 범죄피해(초등학생)

단위: 명(%)

구분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물리적 무질서	낮음	992(88.9)	124(11.1)	1,116(100)	1,061(95.1)	55(4.9)	1,116(100)
	중간	1,521(87.6)	216(12.4)	1,737(100)	1,605(92.3)	133(7.7)	1,738(100)
	높음	616(82.7)	129(17.3)	745(100)	653(87.7)	92(12.3)	745(100)
	χ^2	16.236***			34.365***		
사회적 무질서	낮음	1,101(89.2)	133(10.8)	1,234(100)	1,175(95.3)	58(4.7)	1,233(100)
	중간	1,349(87.3)	196(12.7)	1,545(100)	1,423(92.1)	122(7.9)	1,545(100)
	높음	679(82.8)	141(17.2)	820(100)	720(87.8)	100(12.2)	820(100)
	χ^2	18.200***			38.559***		
이웃 관계	약함	811(85.6)	136(14.4)	947(100)	560(90.9)	86(9.1)	946(100)
	중간	1,446(87.7)	202(12.3)	1,648(100)	1,523(92.4)	125(7.6)	1,648(100)

구분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강함	873(86.9)	132(13.1)	1,005(100)	935(93.1)	69(6.9)	1,004(100)
	χ^2	2.353			3.505		
이웃 참여	낮음	872(87.4)	126(12.6)	998(100)	902(90.5)	95(9.5)	997(100)
	중간	1,527(86.7)	235(13.3)	1,762(100)	1,638(93.0)	124(7.0)	1,762(100)
	높음	731(87.1)	108(12.9)	839(100)	778(92.7)	61(7.3)	839(100)
	χ^2	.309			5.905		
지역 경찰에 대한 신뢰	낮음	1,044(85.6)	175(14.4)	1,219(100)	1,090(89.4)	129(10.6)	1,219(100)
	중간	1,228(87.8)	170(12.2)	1,398(100)	1,311(93.8)	87(6.2)	1,398(100)
	높음	857(87.3)	125(12.7)	982(100)	917(93.5)	64(6.5)	981(100)
	χ^2	2.895			20.218***		

***p < .001

나. 중학생의 거주지역 특성과 범죄피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따른 범죄피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14>와 같다. 지역의 물리적 무질서 정도별로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지역의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으며,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의 피해를 경험한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사회적 무질서에 따라서도 세 유형의 피해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의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지역의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폭력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도 높았으며, 성폭력 등의 피해가 있는 비율도 높았다.

거주지역 특성 중 이웃관계에 따라서는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의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웃참여와 관련해서는 폭력범죄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동네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거나 괴롭힘 당하는 사람을 볼 때 도와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참여에 따른 재산범죄 피해, 성폭력 등의 피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주지역 특성 중 하나로 동네 경찰에 대한 신뢰정도에 따라서는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의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동네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은 집단일수록 폭력범죄피해가 있는 비율이 낮았으며, 성폭력 등의 피해가 있는 비율도 낮았다.

재산범죄 피해의 경우도 동네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은 집단일수록 피해경험이 있는 비율이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6-14〉 동네 및 등하교길 특성과 범죄피해(중학생)

단위: 명(%)

구분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물리적 무질서	낮음	753 (82.0)	165 (18.0)	918 (100)	882 (96.2)	35 (3.8)	917 (100)	909 (99.1)	8 (0.9)	917 (100)
	중간	1,472 (81.3)	339 (18.7)	1,811 (100)	1,713 (94.6)	97 (5.4)	1,810 (100)	1,763 (97.4)	47 (2.6)	1,810 (100)
	높음	796 (78.0)	225 (22.0)	1,021 (100)	951 (93.1)	71 (6.9)	1,022 (100)	1,000 (97.8)	22 (2.2)	1,022 (100)
	χ^2	6.259*			9.269*			9.063*		
사회적 무질서	낮음	745 (83.7)	145 (16.3)	890 (100)	867 (97.4)	23 (2.6)	890 (100)	876 (98.4)	14 (1.6)	890 (100)
	중간	1,416 (81.9)	312 (18.1)	1,728 (100)	1,638 (94.8)	90 (5.2)	1,728 (100)	1,699 (98.3)	30 (1.7)	1,729 (100)
	높음	859 (76.1)	270 (23.9)	1,129 (100)	1,040 (92.1)	89 (7.9)	1,129 (100)	1,097 (97.1)	33 (2.9)	1,130 (100)
	χ^2	22.212***			27.607***			6.114*		
이웃 관계	약함	972 (79.9)	245 (20.1)	1,217 (100)	1,140 (93.7)	77 (6.3)	1,217 (100)	1,189 (97.7)	28 (2.3)	1,217 (100)
	중간	1,429 (81.6)	323 (18.4)	1,752 (100)	1,662 (94.9)	89 (5.1)	1,751 (100)	1,718 (98.1)	34 (1.9)	1,752 (100)
	강함	620 (79.4)	161 (20.6)	781 (100)	744 (95.3)	37 (4.7)	781 (100)	765 (98.1)	15 (1.9)	780 (100)
	χ^2	2.187			3.054			.547		
이웃 참여	낮음	1,132 (79.9)	285 (20.1)	1,417 (100)	1,319 (93.1)	98 (6.9)	1,417 (100)	1,381 (97.5)	36 (2.5)	1,417 (100)
	중간	1,300 (80.7)	310 (19.3)	1,610 (100)	1,531 (95.1)	79 (4.9)	1,610 (100)	1,577 (98.0)	33 (2.0)	1,610 (100)
	높음	589 (81.6)	133 (18.4)	722 (100)	696 (96.3)	27 (3.7)	723 (100)	714 (98.8)	9 (1.2)	723 (100)
	χ^2	.923			10.980**			3.959		
지역 경찰에 대한 신뢰	낮음	722 (78.6)	197 (21.4)	919 (100)	846 (92.1)	73 (7.9)	919 (100)	888 (96.5)	32 (3.5)	920 (100)
	중간	1,446 (80.8)	344 (19.2)	1,790 (100)	1,703 (95.1)	87 (4.9)	1,790 (100)	1,752 (97.9)	38 (2.1)	1,790 (100)
	높음	852 (82.0)	187 (18.0)	1,039 (100)	996 (95.9)	43 (4.1)	1,039 (100)	1,032 (99.2)	8 (0.8)	1,040 (100)
	χ^2	3.776			15.848***			17.621***		

*p < .05, **p < .01, ***p < .001

다. 고등학생의 거주지역 특성과 범죄피해

고등학생의 지역특성에 따른 범죄피해를 보면, 중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네의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의 피해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동네의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동네의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 성폭력 등의 피해를 경험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동네의 사회적 무질서 수준과 관련해서 보면, 동네의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 피해가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의 피해가 있는 비율도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 특성 중 이웃관계에 따라서는 고등학생의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의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웃참여에 따라서는 성폭력 등의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웃참여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성폭력 등의 피해가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이웃참여 수준이 높은 집단, 중간 집단의 순이었다. 이웃참여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아서 동네 주민들의 주변 범죄나 괴롭힘에 대한 무관심 및 소극적인 대응이 고등학생의 성폭력 피해에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웃참여에 따른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동네 경찰에 대한 신뢰 정도에 따라서 고등학생의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의 피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15〉 동네 및 등하교길 특성과 범죄피해(고등학생)

단위: 명(%)

구분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물리적 무질서	낮음	634 (81.4)	145 (18.6)	779 (100)	754 (96.8)	25 (3.2)	779 (100)	773 (99.4)	5 (0.6)	778 (100)
	중간	1,101 (80.2)	271 (19.8)	1,372 (100)	1,320 (96.2)	52 (3.8)	1,372 (100)	1,358 (99.0)	14 (1.0)	1,372 (100)
	높음	633 (75.3)	208 (24.7)	841 (100)	785 (93.5)	55 (6.5)	840 (100)	819 (97.4)	22 (2.6)	841 (100)
	χ^2	11.042**			13.011**			13.941**		
사회적	낮음	727	153	880	854	26	880	875	6	881

구분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무질서		(82.6)	(17.4)	(100)	(97.0)	(3.0)	(100)	(99.3)	(0.7)	(100)
	중간	1,062 (78.8)	285 (21.2)	1,347 (100)	1,295 (96.1)	52 (3.9)	1,347 (100)	1,331 (98.8)	16 (1.2)	1,347 (100)
	높음	578 (75.8)	185 (24.2)	763 (100)	710 (92.9)	54 (7.1)	764 (100)	744 (97.4)	20 (2.6)	764 (100)
	χ^2	11.814**			18.179***			11.915**		
이웃 관계	약함	908 (78.1)	254 (21.9)	1,162 (100)	1,109 (95.4)	54 (4.6)	1,163 (100)	1,140 (98.0)	23 (2.0)	1,163 (100)
	중간	1,009 (80.1)	251 (19.9)	1,260 (100)	1,213 (96.2)	48 (3.8)	1,261 (100)	1,249 (99.1)	11 (0.9)	1,260 (100)
	강함	450 (79.2)	118 (20.8)	568 (100)	537 (94.7)	30 (5.3)	567 (100)	561 (98.8)	7 (1.2)	568 (100)
	χ^2	1.378			2.282			5.558		
이웃 참여	낮음	978 (77.8)	279 (22.2)	1,257 (100)	1,192 (94.8)	65 (5.2)	1,257 (100)	1,230 (97.9)	26 (2.1)	1,256 (100)
	중간	1,034 (80.2)	256 (19.8)	1,290 (100)	1,243 (96.3)	48 (3.7)	1,291 (100)	1,281 (99.2)	10 (0.8)	1,291 (100)
	높음	355 (80.1)	88 (19.9)	443 (100)	424 (95.5)	20 (4.5)	444 (100)	438 (98.6)	6 (1.4)	444 (100)
	χ^2	2.430			3.170			7.728*		
지역 경찰에 대한 신뢰	낮음	729 (77.9)	207 (22.1)	936 (100)	894 (95.4)	43 (4.6)	937 (100)	919 (98.2)	17 (1.8)	936 (100)
	중간	1,159 (79.8)	294 (20.2)	1,453 (100)	1,386 (95.4)	67 (4.6)	1,453 (100)	1,434 (98.7)	19 (1.3)	1,453 (100)
	높음	479 (79.7)	122 (20.3)	601 (100)	579 (96.3)	22 (4.6)	601 (100)	596 (99.2)	5 (0.8)	601 (100)
	χ^2	1.353			1.011			2.706		

*p < .05, **p < .01, ***p < .001

6.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앞서 살펴본 개인적 특성, 가족 특성, 친구 특성, 학교 특성, 거주지역 특성 변수들을 포함하는 다변량 분석을 시도하였다. 독립변수의 수가 42개⁴³⁾에 달하고 일부 변수들은 상호 관련성이 크거나(예, 경비행경

43) 개인적 특성 10개, 가족 특성 11개, 친구 특성 6개, 학교 특성 10개, 지역 특성 5개

험 vs. 중비행경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은(예, 성적, 부모 교육수준) 등의 문제가 있어 분석모형에 투입될 변수를 정리했다. 우선 이변량 분석(카이제곱검정)에서 종속 변수와의 유의한 상관이 확인된 변수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들 간 상관성이 크거나 결측치가 많은 변수들을 제외 또는 병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33개의 독립변수들로 이루어진 모형이 구축되었다. 다만 학대 피해와 관련해서는 이론적 관련성이 적어 이변량 분석에서 제외된 일상활동(보호, 노출, 유인성)과 친구 특성, 학교 특성 변수들은 다변량 분석에서도 제외되었다. 분석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은 이론적으로 중요하면서 이변량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와의 상관성도 어느 정도 검증된 변수들이다, 다만 여러 독립변수들이 선형결합해서 나타나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여전히 우려되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살펴보고 상태지수 검증(condition number 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심각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모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결과보고는 지면관계상 생략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종속변수가 범죄피해 유무의 두 가지 범주로 이루어진 이산형 범주변수이기 때문에 로지스틱회귀모형을 구축·분석하였다.

〈표 6-16〉 일반적인 범죄피해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모형 분석

구분	변수	항목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	
			b	exp(b)	b	exp(b)	b	exp(b)
개인 특성	성별(남성=1)	-	-.24***	.79	.13	1.13	-.89***	.41
	학년	초4	-.01	.99	1.40***	4.04	na	na
		초5	-.21	.82	1.16***	3.19	na	na
		초6	-.25*	.78	.65***	1.91	na	na
		중1	.12	1.13	.38	1.46	.96**	2.60
		중2	.11	1.11	.53**	1.69	.19	1.21
		중3	.09	1.10	.27	1.32	.17	1.19
		고1	.27***	1.31	.15	1.16	.00	1.00
		고2 ^a						
	신체적 취약성	na	.05	1.05	.20***	1.22	.18	1.20
	자기통제력	na	.06	1.10	-.01	.99	-.22	.80
	일상 활동	보호	na	-.12***	.89	-.13**	.88	.23*

구분	변수		항목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	
				b	exp(b)	b	exp(b)	b	exp(b)
		노출	na	.07*	1.07	.06	1.07	.06	1.06
		유인성	na	.12***	1.13	-.09	.92	.04	1.05
		비행경험(있음=1)	-	.41***	1.51	.70***	2.02	.92***	2.51
가족 특성	부모결혼상태	이혼·사별 등		-.01	.99	.11	1.11	.20	1.22
		결혼 ^a							
	주관적계층	na	.07	1.07	.09*	1.10	-.06	.95	
	부모감독	na	-.03	.97	-.10	.91	-.09	.92	
	부모애착	na	-.05	.96	-.01	.99	-.04	.96	
	부모일탈성	na	-.02	.98	-.04	.96	-.00	1.00	
	배우자폭력	na	.06	1.06	.08	1.08	.04	1.04	
친구 특성	친한친구수	na	.04	1.04	-.03	.97	-.03	.97	
	친구애착	na	.06	1.06	-.03	.97	-.24	.79	
	친구비행	na	-.03	.97	.06	1.07	-.06	.95	
	친구징계경험(있음=1)	-	.07	1.07	.18	1.19	.25	1.28	
	친구학폭위소환(있음=1)	-	.16	1.17	.23	1.25	.19	1.21	
	친구피해	na	.01	1.01	.22**	1.25	.20	1.22	
학교 특성	학교규모	200명 미만		-.02	.98	-.08	.93	-.36	.70
		200-600명 미만		-.06	.94	-.08	.92	-.24	.78
		600명 이상 ^a							
		출입문통제(있음=1)	-	-.19***	.83	.04	1.04	.18	1.19
		학교경찰인지도	na	.05	1.05	.12*	1.13	.00	1.00
		학교경찰신뢰도	na	-.05	.95	-.11	.90	-.00	1.00
		학교폭력예방노력	na	-.07	.93	-.22**	.81	-.48**	.62
		학교응집	na	-.10	.91	-.00	1.00	-.14	.87
		학교규칙문화	na	-.06	.94	-.07	.94	-.08	.93
지역 특성		교사지지	na	.05	1.05	.05	1.05	.21	1.23
		물리적무질서	na	.06	1.06	.06	1.06	-.09	.91
		사회적무질서	na	.09*	1.10	.22**	1.24	.19	1.21
		이웃관계	na	-.04	.96	-.01	.99	.03	1.03
		이웃참여	na	.05	1.05	-.02	.98	-.08	.93
	지역경찰신뢰도	na	.06	1.06	.07	1.07	.03	1.03	
-2 Log Likelihood(카이제곱)				9266.08 (357.72***)		4198.54 (462.64***)		1046.97 (145.159***)	
Cox & Snell R ² / Nagelkerke R ²				.034 / .056		.044 / .121		.021 / .131	

^a : 기준값 ***p<.001 **p<.01 *p<.05 (2-tailed)

재산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개인 특성 중 성별, 학년, 일상활동요인(보호, 노출, 유인성), 비행경험, 학교 특성 중 출입문통제, 그리고 지역 특성 중 사회적 무질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재산범죄 피해 위험성이 높았다. 학년의 경우 비교집단(고등학교 2학년)에 비해 초등학교 6학년의 피해확률이 낮았고, 고등학교 1학년의 피해확률이 높았다. 일상활동요인 중 보호요인은 재산범죄 피해 가능성을 낮추는 반면, 노출요인, 유인성 요인은 유의한 수준에서 재산범죄 피해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비행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재산범죄 피해를 당할 확률이 비교집단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비행의 특징인 '가해-피해 중첩'으로 해석된다. 출입문을 통제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재산범죄 피해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성 중 사회적 무질서만 재산범죄 피해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는데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피해가능성도 증가하였다.

폭력범죄 피해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개인 특성으로는 학년, 신체적 취약성, 일상활동 요인 중 보호요인, 비행경험, 가족 특성으로는 주관적 계층, 친구 특성으로는 친구피해, 학교 특성으로는 학교경찰 인지도, 학교폭력예방 노력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으로 사회적 무질서가 있다. 재산범죄 피해와 달리 폭력범죄 피해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학년의 경우 비교집단에 비해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폭력범죄 피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등학교 4, 5학년의 폭력범죄 피해 확률이 고등학교 2학년에 비해 각각 4배, 3배 증가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신체적으로 취약하다고 여기는 응답자일수록 폭력범죄 피해 확률이 높았다. 재산범죄 피해와 마찬가지로 일상활동의 보호요인은 폭력범죄 피해 가능성을 낮추는 유의한 요인이었다. 비행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폭력범죄 피해 확률이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해-피해 중첩 가설을 지지하였다. 주관적 차원에서 자기 가족의 사회경제적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학생일수록 폭력범죄 피해의 위험성이 높았다. 어울리는 친구들이 폭력과 괴롭힘 피해를 당할수록 폭력범죄 피해 확률은 증가하였다. 학교 특성에 있어서는 학교폭력 전담경찰을 인지하는 학생일수록 폭력범죄 피해 확률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학생일수록 학교폭력 전담경찰과 접촉했거나 또는 학교폭력 전담경찰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의 노력은 폭력범죄 피해 확률을 낮추는 유의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사회의 사회적 무질서는 폭력범죄 피해 위험성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에는 성별, 학년, 일상활동 보호요인, 비행경험, 학교폭력예방 노력 등의 요인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피해 확률이 높았고 중학교 1학년이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성폭력 피해 위험성이 높았다.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와 마찬가지로 비행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성폭력 피해의 가능성이 높았다(약 2.5배).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예방 노력은 성폭력 피해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었다.

제2절 괴롭힘 및 가정내 학대 피해 취약성 요인

1. 괴롭힘 피해 취약성 요인

가. 개인적 특성과 괴롭힘 피해

개인적 특성에 따른 괴롭힘 피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과 관련해서는 초중고생 모두 성별에 따른 괴롭힘 피해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여자는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12.6%로 남자의 7.4%에 비해 높았다. 중학생의 경우도 괴롭힘 피해가 있는 비율은 여자가 13.0%로 남자의 7.2%에 비해 높았다. 고등학생 역시 괴롭힘 피해가 있는 비율은 여자가 8.0%로 남자의 4.5%에 비해 높았다. 초중고생에 관계없이 여자가 남자에 비해 괴롭힘 피해를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학년이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11.2%였으며, 5학년은 10.5%, 4학년은 7.6%였다. 중학생의 경우는 학년이 낮을수록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괴롭힘 피해가 있는 비율이 11.8%였으며, 2학년과 3학년은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각각 10.8%, 7.9%였다. 한편 고등학생의 경우

는 학년에 따른 괴롭힘 피해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규모에 따른 괴롭힘 피해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면, 괴롭힘 피해가 있는 비율은 중소도시의 경우 11.5%로 가장 높았으며, 읍면 지역은 9.2%, 대도시는 8.6%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중소도시에서 괴롭힘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대도시의 경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학생의 경우도 중소도시에서 괴롭힘 피해가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읍면지역에서 괴롭힘 피해비율이 가장 높고 대도시에서 가장 낮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개인적 특성 중 하나로 신체적 취약성에 따른 괴롭힘 피해유무를 보면 초중고생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신체적 취약성 수준이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에 관계없이 신체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이 괴롭힘 피해에 많이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자기통제력에 따른 괴롭힘 피해유무도 초중고생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았으며,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상활동 특성 중 하나인 보호수준에 따른 괴롭힘 피해는 초중고생 모두에게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중고생에 관계없이 보호의 수준이 낮을수록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혼자서 다니는 학생일수록 괴롭힘 피해를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상활동 특성 중 노출정도에 따른 괴롭힘 피해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노출수준이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별한 일 없이, 보호자 없이 잘 돌아다닐수록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중고생의 경우에는 노출수준에 따른 괴롭힘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상활동 특성 중 마지막으로 유인성에 따른 괴롭힘 피해도 초등학생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유인성 수준이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가 있는 비율이 높았다. 즉 평소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거나 비싼 옷, 물건을 자주 이용할수록 괴롭힘 피해가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중고생의 경우에는 유인성 수준

에 따른 괴롭힘 피해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개인적 특성 중 경비행과 중비행 경험에 따른 괴롭힘 피해유무를 분석해 보았다. 경비행경험 유무에 따른 괴롭힘 피해를 보면 초중고생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초중고생 모두 경비행 경험이 있는 경우가 경비행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비행 경험과 관련해서도 초중고생 모두 괴롭힘 피해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비행 경험과 마찬가지로 중비행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에 비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가해-피해의 증첩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6-17〉 개인적 특성과 괴롭힘 피해

단위: 명(%)

특성		괴롭힘 피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성별	남자	1,716 (92.6)	138 (7.4)	1,854 (100)	1,811 (92.8)	141 (7.2)	1,952 (100)	1,491 (95.5)	70 (4.5)	1,561 (100)			
	여자	1,525 (87.4)	220 (12.6)	1,745 (100)	1,563 (87.0)	234 (13.0)	1,797 (100)	1,316 (92.0)	114 (8.0)	1,430 (100)			
	χ^2	26.762***			34.944***			15.725***					
학년	초4 중1고1	956 (92.4)	79 (7.6)	1,035 (100)	1,014 (88.2)	136 (11.8)	1,150 (100)	1,329 (93.5)	93 (6.5)	1,422 (100)			
	초5 중2고2	1,114 (89.5)	131 (10.5)	1,245 (100)	1,060 (89.2)	128 (10.8)	1,188 (100)	1,477 (94.2)	91 (5.8)	1,568 (100)			
	초6 중3	1,172 (88.8)	148 (11.2)	1,320 (100)	1,300 (92.1)	111 (7.9)	1,411 (100)	-	-	-			
	χ^2	9.008*			12.184**			.700					
지역 규모	대도시	1,332 (91.4)	125 (8.6)	1,457 (100)	1,402 (90.5)	147 (9.5)	1,549 (100)	1,189 (94.5)	69 (5.5)	1,258 (100)			
	중소도시	1,358 (88.5)	177 (11.5)	1,535 (100)	1,451 (89.1)	178 (10.9)	1,629 (100)	1,210 (93.9)	78 (6.1)	1,288 (100)			
	읍.면	552 (90.8)	56 (9.2)	608 (100)	520 (91.2)	50 (8.8)	570 (100)	407 (91.5)	38 (8.5)	445 (100)			
	χ^2	7.712*			2.957			5.350					
신체적 취약성	낮음	2,546 (91.6)	233 (8.4)	2,779 (100)	2,598 (91.2)	251 (8.8)	2,849 (100)	2,229 (94.9)	120 (5.1)	2,349 (100)			
	중간	441 (87.8)	61 (12.2)	502 (100)	515 (87.6)	73 (12.4)	588 (100)	383 (90.5)	40 (9.5)	423 (100)			
	높음	254	63	317	260	51	311	195	24	219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80.1)	(19.1)	(100)	(83.6)	(16.4)	(100)	(89.0)	(11.0)	(100)	
χ^2		45.270***			22.430***			21.194***			
자기 통제력	낮음	813 (85.7)	136 (14.3)	949 (100)	916 (86.3)	146 (13.7)	1,062 (100)	751 (91.3)	72 (8.7)	823 (100)	
	중간	1,096 (90.4)	117 (9.6)	1,213 (100)	1,405 (89.8)	159 (10.2)	1,564 (100)	1,155 (93.8)	77 (6.3)	1,232 (100)	
	높음	1,333 (92.8)	104 (7.2)	1,437 (100)	1,052 (93.8)	70 (6.2)	1,122 (100)	901 (96.3)	35 (3.7)	936 (100)	
	χ^2	32.340***			34.240***			19.068***			
일상 활동	보 후	낮음	1,066 (86.9)	161 (13.1)	1,227 (100)	1,390 (88.1)	187 (11.9)	1,577 (100)	923 (91.1)	90 (8.9)	1,013 (100)
		중간	1,006 (90.5)	106 (9.5)	1,112 (100)	1,182 (91.2)	114 (8.8)	1,296 (100)	1,041 (94.1)	65 (5.9)	1,106 (100)
		높음	1,169 (92.9)	90 (7.1)	1,259 (100)	802 (91.6)	74 (8.4)	876 (100)	843 (96.6)	30 (3.4)	873 (100)
		χ^2	25.077***			10.479**			24.276***		
	노 출	낮음	1,193 (92.8)	92 (7.2)	1,285 (100)	1,150 (90.1)	126 (9.9)	1,276 (100)	1,013 (94.1)	64 (5.9)	1,077 (100)
		중간	1,216 (90.2)	132 (9.8)	1,348 (100)	1,185 (89.8)	134 (10.2)	1,319 (100)	1,003 (94.4)	59 (5.6)	1,062 (100)
		높음	831 (86.2)	133 (13.8)	964 (100)	1,038 (90.0)	115 (10.0)	1,153 (100)	791 (92.8)	61 (7.2)	852 (100)
		χ^2	27.183***			.060			2.235		
	유 인 성	낮음	1,230 (92.1)	106 (7.9)	1,336 (100)	1,288 (90.8)	131 (9.2)	1,419 (100)	879 (94.1)	55 (5.9)	934 (100)
		중간	1,257 (89.6)	146 (10.4)	1,403 (100)	1,276 (89.0)	158 (11.0)	1,434 (100)	1,203 (93.8)	79 (6.2)	1,282 (100)
		높음	754 (87.8)	105 (12.2)	859 (100)	810 (90.4)	86 (9.6)	896 (100)	725 (93.5)	50 (6.5)	775 (100)
		χ^2	11.366**			2.742			.233		
경비행	없음	2,909 (91.1)	285 (8.9)	3,194 (100)	2,125 (90.9)	212 (9.1)	2,337 (100)	1,394 (95.5)	66 (4.5)	1,460 (100)	
	있음	332 (82.0)	73 (18.0)	405 (100)	1,249 (88.5)	163 (11.5)	1,412 (100)	1,413 (92.3)	118 (7.7)	1,531 (100)	
	χ^2	33.240***			5.977*			13.146***			
중비행	없음	2,654 (91.8)	236 (8.2)	2,890 (100)	2,770 (90.6)	288 (9.4)	3,058 (100)	2,530 (94.0)	162 (6.0)	2,692 (100)	
	있음	587 (82.9)	121 (17.1)	708 (100)	603 (87.4)	87 (12.6)	690 (100)	227 (92.6)	22 (7.4)	299 (100)	
	χ^2	50.675***			6.365*			.837			

*p < .05, **p < .01, ***p < .001

나. 가족특성과 괴롭힘 피해

가족특성에 따른 괴롭힘 피해를 보면, 중고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중학생의 경우 부모가 이혼, 사별, 재혼, 별거 등인 집단은 괴롭힘 피해가 있는 비율이 13.2%로 부모가 결혼상태인 경우의 9.6%에 비해 높았다. 고등학생의 경우도 부모가 이혼 등인 경우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8.7%로 부모가 결혼상태인 경우의 5.8%에 비해 높았다. 즉 중고생의 경우 부모가 이혼, 사별, 재혼, 별거 등인 경우 괴롭힘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도 부모가 이혼 등인 경우 괴롭힘 피해가 더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동거가족구성에 따른 괴롭힘 피해는 중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 내용을 보면, 괴롭힘 피해가 있는 비율은 부모없이 형제자매나 친척 등과 사는 경우가 21.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편부/편모와 사는 경우가 16.1%, 편부/편모 및 형제자매 등과 같이 사는 경우가 13.7%, 부모와 사는 경우가 9.7%, 부모 및 형제자매 등과 사는 경우가 9.3%의 순이었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양 부모없이 사는 경우 괴롭힘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동거가족 구성에 따른 괴롭힘 피해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 각각의 교육수준에 따른 괴롭힘 피해에 대해 살펴 보면,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등학생의 괴롭힘 피해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졸(중퇴) 이하인 경우 1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고졸(중퇴) 이하인 경우가 6.2%, 대졸(중퇴) 이상인 경우가 5.9%의 순이었다. 즉 고등학생의 경우 아버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괴롭힘 피해가 있는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괴롭힘 피해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괴롭힘 피해는 초중고생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각각의 직업유무에 따른 괴롭힘 피해를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직업유무에 따른 괴롭힘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가 직업이 없는 경우는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16.9%로 아버지가 직업이 있는 경우의 9.8%에 비해

높았다. 아버지 직업이 없는 집단에서 괴롭힘 피해가 많은 것이다. 중고생의 경우는 아버지 직업유무에 따른 괴롭힘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괴롭힘 피해는 초중고생 모두에게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응답한 주관적 계층에 따른 괴롭힘 피해유무는 초중고생 모두에게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생 모두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서 괴롭힘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부모의 감독수준에 따른 괴롭힘 피해는 초등학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가 있는 비율이 낮았으며, 부모감독이 약할수록 괴롭힘 피해가 있는 비율이 높았다. 부모의 감독이 초등학생의 괴롭힘 피해여부에 중요함을 보여준다. 중고생의 경우는 부모의 감독수준에 따른 괴롭힘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와의 애착수준에 따른 괴롭힘 피해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았다. 반면 애착이 약할수록 괴롭힘 피해가 있는 비율이 높았다. 중학생의 경우는 부모와의 애착에 따른 괴롭힘 피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일탈성 수준에 따른 괴롭힘 피해유무는 초등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일탈성 수준이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고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일탈성 수준에 따른 괴롭힘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배우자폭력에 따른 괴롭힘 피해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배우자폭력이 많을수록 괴롭힘 피해가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도 부모의 배우자폭력이 많을수록 괴롭힘 피해가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여기서의 결과는 부모 결혼상태, 동거가족, 아버지 교육수준 등 가족의 구조적 특성은 주로 중고생의 괴롭힘 피해와 관련되는 반면, 부모의 감독, 애착, 일탈성, 배우자폭력 등 기능적 특성은 초등학생의 괴롭힘 피해와 더 관련되는 것을 보여준다.

〈표 6-18〉 가족 특성과 괴롭힘 피해

단위: 명(%)

특성	괴롭힘 피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부모님 결혼 상태	결혼	3,007 (90.2)	326 (9.8)	3,333 (100)	3,005 (90.4)	319 (9.6)	3,324 (100)	2,471 (94.2)	152 (5.8)	2,623 (100)
	이혼 등	234 (88.3)	31 (11.7)	265 (100)	369 (86.8)	56 (13.2)	425 (100)	335 (91.3)	32 (8.7)	367 (100)
	χ^2	1.009			5.364*			4.768*		
동거 가족	편부/편모	47 (88.7)	6 (11.3)	53 (100)	52 (83.9)	10 (16.1)	62 (100)	75 (91.5)	7 (8.5)	82 (100)
	부모	344 (93.0)	26 (7.0)	370 (100)	315 (90.3)	34 (9.7)	349 (100)	320 (95.0)	17 (5.0)	337 (100)
	부모 +형제자매 등	2,609 (89.9)	292 (10.1)	2,901 (100)	2,692 (90.7)	276 (9.3)	2,968 (100)	2,131 (94.3)	129 (5.7)	2,260 (100)
	편부/편모 +형제자매 등	207 (87.3)	30 (12.7)	237 (100)	270 (86.3)	43 (13.7)	313 (100)	228 (90.1)	25 (9.9)	253 (100)
	형제자매, 친척 등	34 (91.9)	3 (8.1)	37 (100)	45 (78.9)	12 (21.1)	57 (100)	53 (91.4)	5 (8.6)	58 (100)
	χ^2	5.774			16.825**			9.041		
아버지 교육 수준	중졸(중퇴)이하	29 (85.3)	5 (14.7)	34 (100)	38 (82.6)	8 (17.4)	46 (100)	43 (84.3)	8 (15.7)	51 (100)
	고졸(중퇴)이하	285 (91.6)	26 (8.4)	311 (100)	619 (89.3)	74 (10.7)	693 (100)	697 (93.8)	46 (6.2)	743 (100)
	대졸(중퇴)이상	1,418 (89.5)	166 (10.5)	1,584 (100)	1,706 (89.9)	191 (10.1)	1,897 (100)	1,603 (94.1)	101 (5.9)	1,704 (100)
	χ^2	2.036			2.699			8.104*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중퇴)이하	22 (91.7)	2 (8.3)	24 (100)	33 (86.8)	5 (13.2)	38 (100)	30 (85.7)	5 (14.3)	35 (100)
	고졸(중퇴)이하	344 (90.5)	36 (9.5)	380 (100)	707 (90.1)	78 (9.9)	785 (100)	589 (94.0)	55 (6.0)	914 (100)
	대졸(중퇴)이상	1,439 (89.5)	168 (10.5)	1,607 (100)	1,691 (89.6)	197 (10.4)	1,888 (100)	1,495 (94.1)	93 (5.9)	1,588 (100)
	χ^2	.418			.482			4.294		
아버지 직업 유무	없음	69 (83.1)	14 (16.9)	83 (100)	83 (86.5)	13 (13.5)	96 (100)	79 (91.9)	7 (8.1)	86 (100)
	있음	3,134 (90.2)	341 (9.8)	3,475 (100)	3,235 (90.1)	354 (9.9)	3,589 (100)	2,682 (93.9)	175 (6.1)	2,857 (100)
	χ^2	4.491*			1.411			.584		
어머니 직업 유무	없음	970 (90.5)	102 (9.5)	1,072 (100)	820 (90.1)	90 (9.9)	910 (100)	716 (94.3)	43 (5.7)	759 (100)
	있음	2,242 (89.9)	252 (10.1)	2,494 (100)	2,510 (90.0)	280 (10.0)	2,790 (100)	2,057 (93.7)	138 (6.3)	2,195 (100)
	χ^2	.291			.016			.379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주관적 계층	하	164 (84.1)	31 (15.9)	195 (100)	322 (84.3)	60 (15.7)	382 (100)	369 (89.1)	45 (10.9)	414 (100)
	중	1,444 (90.3)	156 (9.7)	1,600 (100)	1,557 (90.2)	160 (9.8)	1,726 (100)	1,220 (94.1)	77 (5.9)	1,297 (100)
	상	1,632 (90.6)	170 (9.4)	1,802 (100)	1,495 (91.2)	145 (8.8)	1,640 (100)	1,219 (95.2)	62 (4.8)	1,281 (100)
	χ^2	8.321*			16.382***			19.889***		
부모 감독	낮음	822 (87.5)	117 (12.5)	939 (100)	928 (89.1)	114 (10.9)	1,042 (100)	703 (92.9)	54 (7.1)	757 (100)
	중간	1,099 (89.6)	128 (10.4)	1,227 (100)	1,362 (90.0)	152 (10.0)	1,514 (100)	1,290 (93.5)	89 (6.5)	1,379 (100)
	높음	1,320 (92.1)	113 (7.9)	1,433 (100)	1,083 (90.9)	109 (9.1)	1,192 (100)	813 (95.2)	41 (4.8)	854 (100)
	χ^2	13.741**			1.995			4.179		
부모 애착	낮음	842 (87.0)	126 (13.0)	968 (100)	1,002 (88.5)	130 (11.5)	1,132 (100)	821 (91.4)	77 (8.6)	898 (100)
	중간	920 (89.5)	108 (10.5)	1,028 (100)	897 (90.7)	92 (9.3)	989 (100)	814 (94.3)	49 (5.7)	863 (100)
	높음	1,480 (92.3)	124 (7.7)	1,604 (100)	1,474 (90.5)	154 (9.5)	1,628 (100)	1,172 (95.3)	58 (4.7)	1,230 (100)
	χ^2	19.341***			3.820			13.862**		
부모 일탈	낮음	1,625 (91.3)	155 (8.7)	1,780 (100)	1,580 (89.7)	181 (10.3)	1,761 (100)	1,346 (94.5)	78 (5.5)	1,424 (100)
	중간	1,035 (89.9)	116 (10.1)	1,151 (100)	1,136 (90.7)	116 (9.3)	1,252 (100)	908 (93.2)	66 (6.8)	974 (100)
	높음	581 (87.1)	86 (12.9)	667 (100)	657 (89.5)	77 (10.5)	734 (100)	553 (93.3)	40 (6.7)	593 (100)
	χ^2	9.557**			1.099			2.141		
배우자 폭력	낮음	1,667 (93.7)	113 (6.3)	1,780 (100)	1,480 (91.0)	147 (9.0)	1,627 (100)	1,235 (94.9)	67 (5.1)	1,302 (100)
	중간	1,172 (87.9)	161 (12.1)	1,333 (100)	1,206 (89.3)	144 (10.7)	1,350 (100)	1,036 (93.8)	68 (6.2)	1,104 (100)
	높음	402 (82.9)	83 (17.1)	485 (100)	687 (89.1)	84 (10.9)	771 (100)	535 (91.8)	48 (8.2)	583 (100)
	χ^2	60.431***			3.035			6.682*		

*p < .05, **p < .01, ***p < .001

다. 친구특성과 괴롭힘 피해

친구특성에 따른 괴롭힘 피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친한 친구수에 따른 괴롭힘 피해는 초중고생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친한 친구수가 4명 이하인 경우는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12.9%로 친한 친구수가 5명 이상인 경우의 9.4%에 비해 높았다. 중학생의 경우도 친한 친구수가 4명 이하인 경우 괴롭힘 피해가 있는 비율이 13.0%로 친한 친구수 5명 이상인 경우(9.4%)에 비해 높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친한 친구수가 4명 이하인 집단에서 괴롭힘 피해가 있는 비율이 8.3%로 친한 친구수가 5명 이상인 경우의 5.5%에 비해 높았다. 즉 초중고생 모두 친한 친구수가 적은 경우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친구와의 애착에 따른 괴롭힘 피해도 초중고생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친구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구와의 애착수준이 낮을수록 괴롭힘 피해가 있는 비율이 높았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친구와의 애착이 낮은 집단에서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친구와의 애착이 높은 집단, 중간 집단의 순이었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친구와의 애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괴롭힘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친구의 비행수준에 따른 괴롭힘 피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친구의 비행수준이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중학생의 경우는 친구의 비행수준이 중간인 집단에서 괴롭힘 피해가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친구의 비행수준이 높은 집단, 낮은 집단의 순이었다. 대체로 친구의 비행수준이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가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친구의 비행수준에 따른 괴롭힘 피해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친구의 비행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로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 친한 친구의 징계경험 유무 및 학폭위 회부경험 유무를 살펴 보았다. 먼저 친한 친구의 징계경험 유무별 괴롭힘 피해는 초등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친한 친구의 징계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괴롭힘 피해가 있는 비율은 15.2%로 친한 친구의 징계경험이 없는 집단의 9.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생의 경우에

는 친한 친구의 지난 1년간 징계경험 여부에 따라서 괴롭힘 피해 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친한 친구의 지난 1년간 학폭위 회부경험 유무에 따른 괴롭힘 피해 유무는 초중고생 모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친구의 괴롭힘, 폭력피해를 중심으로 측정된 친구의 피해정도에 따른 괴롭힘 피해 유무를 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친구의 피해가 중간 정도인 경우 괴롭힘 피해가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친구의 피해수준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의 순이었다.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친구의 피해가 가장 적은 집단에서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낮다는 점이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친구의 피해수준에 따른 괴롭힘 피해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19〉 친구 특성과 괴롭힘 피해

단위: 명(%)

특성	괴롭힘 피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친한 친구 수	4명 이하	467 (87.1)	69 (12.9)	536 (100)	528 (87.0)	79 (13.0)	607 (100)	620 (91.7)	56 (8.3)	676 (100)
	5명 이상	2,774 (90.6)	288 (9.4)	3,062 (100)	2,846 (90.6)	296 (9.4)	3,142 (100)	2,187 (94.5)	128 (5.5)	2,315 (100)
	χ^2	6.137*			7.300**			6.878**		
친구 애착	낮음	769 (86.9)	116 (13.1)	885 (100)	671 (86.4)	106 (13.6)	777 (100)	820 (90.6)	85 (9.4)	905 (100)
	중간	1,348 (90.8)	136 (9.2)	1,484 (100)	1,556 (90.3)	167 (9.7)	1,723 (100)	1,087 (95.4)	52 (4.6)	1,139 (100)
	높음	1,124 (91.5)	105 (8.5)	1,229 (100)	1,146 (91.9)	101 (8.1)	1,247 (100)	900 (94.9)	48 (5.1)	948 (100)
	χ^2	13.613**			16.665***			23.255***		
친구 비행	낮음	1,414 (94.1)	88 (5.9)	1,502 (100)	1,602 (91.4)	150 (8.6)	1,752 (100)	1,094 (95.0)	57 (5.0)	1,151 (100)
	중간	1,176 (88.4)	154 (11.6)	1,330 (100)	886 (87.8)	123 (12.2)	1,009 (100)	1,053 (92.8)	82 (7.2)	1,135 (100)
	높음	650 (85.0)	115 (15.0)	765 (100)	885 (89.7)	102 (10.3)	987 (100)	659 (93.6)	45 (6.4)	704 (100)
	χ^2	54.172***			9.524**			5.200		
친구징계경험 유무	없음	2,951 (90.6)	305 (9.4)	3,256 (100)	2,677 (90.3)	288 (9.7)	2,965 (100)	2,157 (93.8)	142 (6.2)	2,299 (100)
	있음	290	52	342	697	87	784	649	42	691

특성	괴롭힘 피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84.8)	(15.2)	(100)	(88.9)	(11.1)	(100)	(93.9)	(6.1)	(100)
	χ^2	11.799**			1.319			.009		
친구 학폭위 소환유무	없음	3,091 (90.2)	335 (9.8)	3,426 (100)	2,901 (90.3)	311 (9.7)	3,212 (100)	2,406 (93.8)	159 (6.2)	2,565 (100)
	있음	151 (86.8)	23 (13.2)	174 (100)	472 (88.2)	63 (11.8)	535 (100)	400 (94.1)	25 (5.9)	425 (100)
	χ^2	2.188			2.237			.063		
친구 피해	낮음	2,278 (91.1)	222 (8.9)	2,500 (100)	2,410 (91.0)	237 (9.0)	2,647 (100)	2,077 (94.3)	126 (5.7)	2,203 (100)
	중간	379 (87.5)	54 (12.5)	433 (100)	699 (87.3)	102 (12.7)	801 (100)	514 (91.9)	45 (8.1)	559 (100)
	높음	584 (87.8)	81 (12.2)	665 (100)	265 (88.0)	36 (12.0)	301 (100)	216 (94.7)	12 (5.3)	228 (100)
	χ^2	9.980**			11.156**			4.531		

*p < .05, **p < .01, ***p < .001

라. 학교특성과 괴롭힘 피해

학교특성에 따른 괴롭힘 피해유무를 보면, 먼저 학교규모별 괴롭힘 피해유무는 고등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규모가 200-600명 미만인 경우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9.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200명 미만인 경우가 8.3%, 600명 이상인 경우가 5.4%의 순이었다. 학생수가 600명 이상인 학교의 경우 괴롭힘 피해가 있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는 학교규모에 따른 괴롭힘 피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의 경비원 유무에 따른 괴롭힘 피해유무는 초중고생 모두에게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의 출입문통제 여부에 따른 괴롭힘 피해는 중학생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출입문 통제가 없는 경우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11.9%로 출입문 통제가 있는 경우의 9.5%에 비해 높았다.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인지 및 신뢰정도에 따른 괴롭힘 피해를 보면, 초중고생 모두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인지여부에 따라서는 괴롭힘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초중고생 모두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정도에 따라서는 괴롭힘 피해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전담경찰

관이 피해를 당할 경우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는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가 중간인 경우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신뢰가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의 순이었다. 초중고생의 경우를 보면, 대체로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의 폭력예방노력정도에 따른 괴롭힘 피해유무는 초중고생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초중고생 모두에게서 학교가 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간 싸움이나 괴롭힘에 대해 잘 해결할수록 괴롭힘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중고생 공통적으로 학교의 폭력예방 및 폭력발생시 적절한 해결이 괴롭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학교의 응집성에 따른 괴롭힘 피해유무도 초중고생 모두에게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응집성이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가 있는 비율이 낮았다. 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좋고, 서로 존중할수록 괴롭힘 피해가 적은 것이다.

학교 규칙문화의 적정성에 따른 괴롭힘 피해도 초중고생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규칙문화가 적정할수록 중고생의 괴롭힘 피해가 있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학교규칙문화의 적정성이 중간인 집단과 높은 집단에서 괴롭힘 피해가 있는 비율이 각각 9.0%, 9.2%로 비슷하였으며, 학교규칙문화의 적정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11.9%로 나타났다. 대체로 학교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준수될수록 괴롭힘 피해가 있는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사의 지지정도에 따른 괴롭힘 피해유무는 고등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지지정도가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가 있는 비율이 낮았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도 교사의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가 있는 비율이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교성적에 따른 괴롭힘 피해를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고식 성적이 하인 경우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15.6%로 가장 높았으며, 성적이 중, 상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각각 10.5%, 9.1%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자기보고식 성적이 낮을수록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중고생의 경우에는 자기보고식 성적수준에 따른 괴롭힘 피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20> 학교 특성과 괴롭힘 피해

단위: 명(%)

특성	괴롭힘 피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학교 규모	200명 미만	86 (88.7)	11 (11.3)	97 (100)	126 (92.0)	11 (8.0)	137 (100)	33 (91.7)	3 (8.3)	36 (100)
	200-600명 미만	736 (90.6)	76 (9.4)	812 (100)	1,573 (91.0)	156 (9.0)	1,729 (100)	514 (90.8)	52 (9.2)	566 (100)
	600명 이상	2,419 (90.0)	270 (10.0)	2,689 (100)	1,675 (88.9)	209 (11.1)	1,884 (100)	2,259 (94.6)	130 (5.4)	2,389 (100)
	χ^2	.548			4.915			11.354**		
경비원 유무	없음	288 (88.3)	38 (11.7)	326 (100)	853 (89.0)	105 (11.0)	958 (100)	593 (94.9)	32 (5.1)	625 (100)
	있음	2,953 (90.3)	319 (9.7)	3,272 (100)	2,521 (90.3)	270 (9.7)	2,791 (100)	2,214 (93.6)	152 (6.4)	2,366 (100)
	χ^2	1.206			1.311			1.457		
출입문 통제	없음	308 (89.3)	37 (10.7)	345 (100)	720 (88.1)	97 (11.9)	817 (100)	508 (93.2)	37 (6.8)	545 (100)
	있음	2,933 (90.2)	320 (9.8)	3,253 (100)	2,654 (90.5)	278 (9.5)	2,932 (100)	2,299 (94.0)	147 (6.0)	2,446 (100)
	χ^2	.275			4.058*			.469		
학교전담 경찰관 인지여부	모름	1,708 (89.8)	195 (10.2)	1,903 (100)	2,015 (90.4)	215 (9.6)	2,230 (100)	1,832 (94.0)	116 (6.0)	1,948 (100)
	알고 있음	1,533 (90.4)	162 (9.6)	1,695 (100)	1,359 (89.5)	160 (10.5)	1,519 (100)	974 (93.5)	68 (6.5)	1,042 (100)
	χ^2	.477			.799			.383		
학교전담 경찰관 신뢰	낮음	121 (75.6)	39 (24.4)	160 (100)	275 (87.9)	38 (12.1)	313 (100)	353 (92.2)	30 (7.8)	383 (100)
	중간	513 (88.9)	64 (11.1)	577 (100)	944 (87.2)	138 (12.8)	1,082 (100)	935 (92.9)	72 (7.1)	1,007 (100)
	높음	2,607 (91.1)	254 (8.9)	2,861 (100)	2,155 (91.5)	199 (8.5)	2,354 (100)	1,519 (94.9)	82 (5.1)	1,601 (100)
	χ^2	41.767***			16.963***			6.555*		
학교폭력에 방노력	낮음	1,060 (87.7)	149 (12.3)	1,209 (100)	989 (86.6)	153 (13.4)	1,142 (100)	984 (92.0)	86 (8.0)	1,070 (100)
	중간	1,454 (90.9)	146 (9.1)	1,600 (100)	1,451 (90.5)	153 (9.5)	1,604 (100)	1,211 (94.7)	68 (5.3)	1,279 (100)
	높음	727 (92.1)	62 (7.9)	789 (100)	934 (93.1)	69 (6.9)	1,003 (100)	611 (95.3)	30 (4.7)	641 (100)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χ^2	12.704**			25.873***			10.536**		
학교응집	낮음	828 (86.5)	129 (13.5)	957 (100)	1,203 (87.2)	176 (12.8)	1,379 (100)	969 (91.4)	91 (8.6)	1,060 (100)
	중간	1,462 (89.9)	165 (10.1)	1,627 (100)	1,197 (89.7)	137 (10.3)	1,334 (100)	1,076 (93.9)	70 (6.1)	1,146 (100)
	높음	951 (93.8)	63 (6.2)	1,014 (100)	974 (94.0)	62 (6.0)	1,036 (100)	762 (97.1)	23 (2.9)	785 (100)
	χ^2	29.247***			30.357***			24.987***		
학교규칙 문화 적정성	낮음	952 (88.1)	129 (11.9)	1,081 (100)	1,143 (87.3)	167 (12.7)	1,310 (100)	845 (91.3)	81 (8.7)	926 (100)
	중간	1,431 (91.0)	142 (9.0)	1,573 (100)	1,006 (91.2)	97 (8.8)	1,103 (100)	1,284 (94.9)	69 (5.1)	1,353 (100)
	높음	858 (90.8)	87 (9.2)	945 (100)	1,224 (91.6)	112 (8.4)	1,336 (100)	678 (95.2)	34 (4.8)	712 (100)
	χ^2	6.826*			16.608***			15.735***		
교사지지	낮음	701 (88.2)	94 (11.8)	795 (100)	1,251 (88.7)	159 (11.3)	1,410 (100)	811 (91.3)	77 (8.7)	888 (100)
	중간	1,137 (90.2)	124 (9.8)	1,261 (100)	1,296 (90.5)	136 (9.5)	1,432 (100)	1,128 (94.8)	62 (5.2)	1,190 (100)
	높음	1,403 (91.0)	139 (9.0)	1,542 (100)	827 (91.2)	80 (8.8)	907 (100)	868 (95.1)	45 (4.9)	913 (100)
	χ^2	4.650			4.357			13.956**		
학교성적	하	233 (84.4)	43 (15.6)	276 (100)	863 (90.2)	94 (9.8)	957 (100)	894 (92.8)	69 (7.2)	963 (100)
	중	891 (89.5)	105 (10.5)	996 (100)	940 (90.6)	97 (9.4)	1,037 (100)	864 (94.5)	50 (5.5)	914 (100)
	상	1,680 (90.9)	169 (9.1)	1,849 (100)	1,365 (89.6)	159 (10.4)	1,524 (100)	918 (94.0)	59 (6.0)	977 (100)
	χ^2	11.151**			.826			2.402		

*p < .05, **p < .01, ***p < .001

마. 거주지역 특성과 범죄 피해

동네 및 등하교길 특성에 따른 괴롭힘 피해유무를 보면, 먼저 동네나 등하교길의 물리적 무질서와 관련해서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괴롭힘 피해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동네나 등하교길의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동네나 등하교길의 사회적 무질서 수준에 따른 괴롭힘 피해유무는 초중고생 모두에게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 초중고생 각각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동네나 등하교길에 기초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 불량청소년,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이 많을수록 괴롭힘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동네 주민간의 친밀성, 교류를 의미하는 이웃관계에 따라서 괴롭힘 피해유무를 분석해 보면 중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이웃관계가 친밀할수록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았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도 이웃관계가 친밀할수록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동네에서 범죄피해나 괴롭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동네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라는 정도를 의미하는 이웃참여 수준에 따른 괴롭힘 피해를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이웃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가 있는 비율이 낮았다. 중고생의 경우에는 이웃참여 수준에 따른 괴롭힘 피해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동네 경찰에 대한 신뢰정도에 따른 괴롭힘 피해유무를 분석해 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동네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은 집단일수록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는 동네 경찰에 대한 신뢰가 중간인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각각 11.3%, 10.3%였으며, 동네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은 집단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7.4%였다. 대체로 동네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은 집단에서 괴롭힘 피해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네 경찰에 대한 신뢰에 따라서 괴롭힘 피해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21〉 동네 및 등하교길 특성과 괴롭힘 피해

단위: 명(%)

괴롭힘 피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특성	물리적 무질서	낮음	1,034 (92.7)	82 (7.3)	1,116 (100)	833 (90.8)	84 (9.2)	917 (100)	746 (95.9)	32 (4.1)	778 (100)
		중간	1,554 (89.4)	184 (10.6)	1,738 (100)	1,636 (90.4)	174 (9.6)	1,810 (100)	1,283 (93.5)	89 (6.5)	1,372 (100)
		높음	653 (87.7)	92 (12.3)	745 (100)	905 (88.6)	117 (11.4)	1,022 (100)	777 (92.4)	64 (7.6)	841 (100)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χ^2	14.010**			3.400			8.914*		
사회적 무질서	낮음	1,151 (93.3)	83 (6.7)	1,234 (100)	822 (92.4)	68 (7.6)	890 (100)	845 (96.0)	35 (4.0)	880 (100)
	중간	1,394 (90.2)	151 (9.8)	1,545 (100)	1,565 (90.6)	163 (9.4)	1,728 (100)	1,262 (93.7)	85 (6.3)	1,347 (100)
	높음	697 (85.0)	123 (15.0)	820 (100)	986 (87.3)	144 (12.7)	1,130 (100)	699 (91.6)	64 (8.4)	763 (100)
	χ^2	37.807***			15.565***			13.870**		
이웃 관계	약함	836 (88.4)	110 (11.6)	946 (100)	1,070 (87.9)	147 (12.1)	1,217 (100)	1,083 (93.1)	80 (6.9)	1,163 (100)
	중간	1,486 (90.2)	161 (9.8)	1,647 (100)	1,584 (90.5)	167 (9.5)	1,751 (100)	1,186 (94.1)	75 (5.9)	1,261 (100)
	강함	919 (91.4)	86 (8.6)	1,005 (100)	719 (92.2)	61 (7.8)	780 (100)	538 (94.7)	30 (5.3)	568 (100)
	χ^2	5.214			10.372**			1.886		
이웃 참여	낮음	884 (88.7)	113 (11.3)	997 (100)	1,259 (88.8)	158 (11.2)	1,417 (100)	1,183 (94.1)	74 (5.9)	1,251 (100)
	중간	1,583 (89.8)	179 (10.2)	1,762 (100)	1,456 (90.4)	154 (9.6)	1,610 (100)	1,202 (93.1)	89 (6.9)	1,291 (100)
	높음	774 (92.3)	65 (7.7)	839 (100)	659 (91.3)	63 (8.7)	722 (100)	423 (95.3)	21 (4.7)	444 (100)
	χ^2	6.774*			3.723			2.940		
지역 경찰에 대한 신뢰	낮음	1,066 (87.4)	153 (12.6)	1,219 (100)	825 (89.7)	95 (10.3)	920 (100)	868 (92.7)	68 (7.3)	936 (100)
	중간	1,271 (90.9)	127 (9.1)	1,398 (100)	1,587 (88.7)	203 (11.3)	1,790 (100)	1,366 (94.0)	87 (6.0)	1,453 (100)
	높음	904 (92.1)	78 (7.9)	982 (100)	962 (92.6)	77 (7.4)	1,039 (100)	573 (95.2)	29 (4.8)	602 (100)
	χ^2	14.793**			11.420**			3.934		

*p < .05, **p < .01, ***p < .001

2. 가정내 학대 피해 취약성 요인

가. 개인적 특성과 가정내 학대 피해

부모(혹은 보호자)에 의한 신체적 학대 피해를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성별에 따른 학대 피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학대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4.1%로 남자의 1.5%에 비해 높았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남자가, 중학생의 경우는 여자가 학대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더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년별로 학대피해를 보면, 중학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중학교 2학년의 경우 학대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2.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중학교 3학년이 2.1%, 1학년이 1.2%의 순이었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년에 따른 학대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규모별 학대 피해는 중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소도시의 경우 학대피해가 있는 비율이 2.7%였으며, 대도시와 읍, 면지역은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각각 1.9%, 0.7%였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대도시에서 학대피해 비율이 높고, 읍, 면지역에서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신체적 취약성 수준에 따른 학대피해의 경우는 고등학생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신체적 취약성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신체적 학대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도 신체적 취약성 수준이 높을수록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자기통제력에 따른 신체적 학대 피해는 중고생의 경우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중고생 각각 자기통제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학대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도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학대 피해가 적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나지는 않았다.

비행경험에 따른 학대 피해를 보면, 지위비행에 해당하는 경비행 경험 유무에 따라서 중학생의 학대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중학생의 경우 경비행 경험이 있는 경우는 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3.5%로 경비행 경험이 없는 집단의 1.2%에 비해 높았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도 경비행경험이 있는 경우 학대 피해를 더 많이 당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재산, 폭력 비행에 해당하는 중비행 경험 유무에 따른 학대 피해유무는 초중고생 모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생 각각 중비행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학대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연령에 관계없이 부모(혹은 다른 보호자)의 신체적 학대가 아동·청소년 자녀의 재산, 폭력 비행 등 중비행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6-22〉 개인적 특성과 가정내 학대 피해

단위: 명(%)

특성	학대 피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성별	남자		1,817 (98.1)	36 (1.9)	1,853 (100)	1,919 (98.4)	32 (1.6)	1,951 (100)	1,538 (98.5)	23 (1.5)	1,561 (100)
	여자		1,725 (98.9)	20 (1.1)	1,745 (100)	1,752 (97.5)	45 (2.5)	1,797 (100)	1,372 (95.9)	58 (4.1)	1,430 (100)
	χ^2		3.723			3.470			18.892***		
학년	초4	중1고1	1,017 (98.4)	17 (1.6)	1,034 (100)	1,135 (98.8)	14 (1.2)	1,149 (100)	1,377 (96.8)	45 (3.2)	1,422 (100)
	초5	중2고2	1,229 (98.8)	15 (1.2)	1,244 (100)	1,154 (97.1)	34 (2.9)	1,188 (100)	1,532 (97.7)	36 (2.3)	1,568 (100)
	초6	중3	1,296 (98.2)	24 (1.8)	1,320 (100)	1,382 (97.9)	29 (2.1)	1,411 (100)	-	-	-
	χ^2		1.640			7.840*			2.135		
지역 규모	대도시		1,431 (98.2)	26 (1.8)	1,457 (100)	1,519 (98.1)	30 (1.9)	1,549 (100)	1,220 (97.0)	38 (3.0)	1,258 (100)
	중소도시		1,508 (98.2)	27 (1.8)	1,535 (100)	1,586 (97.3)	44 (2.7)	1,630 (100)	1,255 (97.4)	33 (2.6)	1,288 (100)
	읍,면		604 (99.5)	3 (0.5)	607 (100)	567 (99.3)	4 (0.7)	571 (100)	435 (97.8)	10 (2.2)	445 (100)
	χ^2		5.377			8.561*			.929		
신체적 취약성	낮음		2,740 (98.6)	39 (1.4)	2,779 (100)	2,798 (98.2)	52 (1.8)	2,850 (100)	2,297 (97.7)	53 (2.3)	2,350 (100)
	중간		493 (98.2)	9 (1.8)	502 (100)	574 (97.6)	14 (2.4)	588 (100)	405 (95.7)	18 (4.3)	423 (100)
	높음		310 (97.8)	7 (2.2)	317 (100)	299 (96.5)	11 (3.5)	310 (100)	209 (95.4)	10 (4.6)	219 (100)
	χ^2		1.495			4.498			8.544*		
자기 통제력	낮음		932 (98.2)	17 (1.8)	949 (100)	1,020 (96.0)	43 (4.0)	1,063 (100)	779 (94.8)	43 (5.2)	822 (100)
	중간		1,194 (98.4)	19 (1.6)	1,213 (100)	1,539 (98.4)	25 (1.6)	1,564 (100)	1,201 (97.5)	31 (2.5)	1,232 (100)
	높음		1,417 (98.6)	20 (1.4)	1,437 (100)	1,112 (99.1)	10 (0.9)	1,122 (100)	930 (99.3)	7 (0.7)	937 (100)
	χ^2		.597			29.713***			33.708***		
경비행	없음		3,147 (98.6)	46 (1.4)	3,193 (100)	2,908 (98.8)	29 (1.2)	2,997 (100)	1,429 (97.9)	31 (2.1)	1,460 (100)
	있음		395 (97.5)	10 (2.5)	405 (100)	1,363 (96.5)	49 (3.5)	1,412 (100)	1,481 (96.7)	50 (3.3)	1,531 (100)

특성 \ 학대 피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χ^2	2.481			21.473***			3.703		
중비행	없음	2,858 (98.9)	32 (1.1)	2,890 (100)	3,009 (98.4)	49 (1.6)	3,058 (100)	2,627 (97.6)	64 (2.4)	2,691 (100)
	있음	684 (96.6)	24 (3.4)	708 (100)	662 (95.9)	28 (4.1)	690 (100)	282 (94.3)	17 (5.7)	299 (100)
	χ^2	19.338***			16.871***			11.168**		

*p < .05, **p < .01, ***p < .001

나. 가족특성과 가정내 학대 피해

초중고생의 가족특성에 따른 학대피해를 보면, 먼저 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학대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동거가족 구성에 따라서는 중학생의 학대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없이 형제자매나 친척 등과 같이 사는 경우 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편부/편모와 사는 경우가 3.2%, 부모 및 형제자매 등과 사는 경우가 2.0%, 부모와 사는 경우, 편부/편모 및 형제자매 등과 사는 경우가 각각 1.7%, 1.6%의 순이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부모없이 형제자매나 친척 등과 사는 집단에서 학대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부모 각각의 교육수준에 따른 학대 피해를 보면,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는 중학생의 학대 피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 교육수준이 중졸(중퇴) 이하인 경우 학대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8.7%로 가장 높았으며, 대졸(중퇴) 이상은 2.5%, 고졸(중퇴) 이하는 0.9%였다. 아버지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학대 피해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른 학대 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학대 피해는 초중고생 모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부모 각각의 직업유무에 따른 학대 피해를 보면 중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직업이 없는 경우는 학대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6.3%로 아버지가 직업이 있는 경우의 1.9%에 비해 높았다. 중학생의 경우 아버지가 직업이 없는 집단에서 학대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도 아버지가 직업이 없는 경우 학대 피해가 더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초중고생의 학대 피해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의 경제적 특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관적 계층에 따라 학대 피해를 보면 초중고생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초중고생 모두 주관적 계층이 하인 집단에서 학대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주관적 계층이 상인 집단과 중간인 집단의 순이었다. 초중고생 모두 공통적인 것은 주관적 계층이 하층인 집단에서 학대 피해가 가장 많다는 점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에 따른 학대 피해유무는 초중고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생의 경우는 부모 감독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학대 피해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부모감독 수준이 높은 경우와 중간인 경우의 순이었다. 중고생의 경우에는 각각 부모의 감독수준이 낮을수록 학대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초중고생 모두 공통적인 것은 부모의 감독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신체적 학대 피해가 가장 많은 점이다. 평소 자녀의 행동에 대해 적절하게 모니터링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의 잘못에 대해 감정적인, 비합리적인 반응을 하기 쉬우며, 이는 학대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부모-자녀간의 애착수준에 따라서도 초중고생의 학대 피해 유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초중고생 모두 부모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학대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와의 정서적 애착은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인 학대를 삼가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모로부터의 학대 피해 경험이 애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모 각각의 술취하는 정도로 측정한 부모 일탈성 수준에 따라서도 초중고생의 학대 피해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초중고생 모두 부모의 일탈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학대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부모가 술취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해 신체적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부모의 배우자폭력에 따른 학대 피해도 초중고생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생 모두 배우자폭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학대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배우자폭력이 자녀에 대한 폭력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6-23〉 가족 특성과 가정내 학대 피해

단위: 명(%)

특성	학대 피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부모님 결혼 상태	결혼	3,283 (98.5)	50 (1.5)	3,333 (100)	3,260 (98.1)	64 (1.9)	3,324 (100)	2,555 (97.4)	68 (2.6)	2,623 (100)
	이혼 등	260 (97.7)	6 (2.3)	266 (100)	411 (96.9)	13 (3.1)	424 (100)	355 (96.5)	13 (3.5)	368 (100)
	χ^2	.918			2.431			1.083		
동거 가족	편부/편모	51 (96.2)	2 (3.8)	53 (100)	60 (96.8)	2 (3.2)	62 (100)	81 (98.8)	1 (1.2)	82 (100)
	부모	359 (97.0)	11 (3.0)	370 (100)	343 (98.3)	6 (1.7)	349 (100)	329 (97.3)	9 (2.7)	338 (100)
	부모 +형제자매 등	2,863 (98.7)	38 (1.3)	2,901 (100)	2,908 (98.0)	60 (2.0)	2,968 (100)	2,200 (97.3)	60 (2.7)	2,260 (100)
	편부/편모 +형제자매 등	233 (98.3)	4 (1.7)	237 (100)	308 (98.4)	5 (1.6)	313 (100)	246 (97.2)	7 (2.8)	253 (100)
	형제자매, 친척 등	36 (97.3)	1 (2.7)	37 (100)	52 (91.2)	5 (8.8)	57 (100)	55 (93.2)	4 (6.8)	59 (100)
	χ^2	8.041			13.559**			4.433		
아버지 교육 수준	중졸(중퇴)이하	34 (100)	0 (0.0)	34 (100)	42 (91.3)	4 (8.7)	46 (100)	50 (98.0)	1 (2.0)	51 (100)
	고졸(중퇴)이하	306 (98.4)	5 (1.6)	311 (100)	686 (99.1)	6 (0.9)	692 (100)	726 (97.7)	17 (2.3)	743 (100)
	대졸(중퇴)이상	1,555 (98.1)	30 (1.9)	1,585 (100)	1,850 (97.5)	48 (2.5)	1,898 (100)	1,649 (96.8)	55 (3.2)	1,704 (100)
	χ^2	.758			15.688***			1.780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중퇴)이하	23 (95.8)	1 (4.2)	24 (100)	37 (97.4)	1 (2.6)	38 (100)	33 (97.1)	1 (2.9)	34 (100)
	고졸(중퇴)이하	378 (99.5)	2 (0.5)	380 (100)	773 (98.5)	12 (1.5)	785 (100)	896 (98.0)	18 (2.0)	914 (100)
	대졸(중퇴)이상	1,575 (98.0)	32 (2.0)	1,607 (100)	1,837 (97.4)	50 (2.6)	1,887 (100)	1,538 (96.9)	50 (3.1)	1,588 (100)
	χ^2	4.693			3.084			3.054		
아버지 직업 유무	없음	81 (97.6)	2 (2.4)	83 (100)	90 (93.8)	6 (6.3)	96 (100)	81 (94.2)	5 (5.8)	86 (100)
	있음	3,421 (98.4)	54 (1.6)	3,475 (100)	3,521 (98.1)	69 (1.9)	3,590 (100)	2,783 (97.4)	75 (2.6)	2,858 (100)
	χ^2	.383			8.786**			3.213		
어머니 직업 유무	없음	2,456 (98.5)	38 (1.5)	2,494 (100)	886 (97.4)	24 (2.6)	910 (100)	732 (96.6)	26 (2.4)	758 (100)
	있음	1,058 (98.6)	15 (1.4)	1,073 (100)	2,737 (98.1)	53 (1.9)	2,790 (100)	2,143 (97.6)	52 (3.4)	2,195 (100)
	χ^2	.081			1.833			2.467		

특성	학대 피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주관적 계층	하	183 (93.4)	13 (6.6)	196 (100)	365 (95.3)	18 (4.7)	383 (100)	389 (93.2)	28 (6.8)	414 (100)
	중	1,583 (98.9)	17 (1.1)	1,600 (100)	1,704 (98.7)	22 (1.3)	1,726 (100)	1,274 (98.3)	22 (1.7)	1,296 (100)
	상	1,777 (98.6)	26 (1.4)	1,803 (100)	1,602 (97.7)	38 (2.3)	1,640 (100)	1,250 (97.6)	31 (2.4)	1,281 (100)
	χ^2	35.674***			18.850***			31.266***		
부모 감독	낮음	910 (96.9)	29 (3.1)	939 (100)	1,000 (96.0)	42 (4.0)	1,042 (100)	726 (95.9)	31 (4.1)	757 (100)
	중간	1,215 (99.1)	11 (0.9)	1,226 (100)	1,488 (98.3)	26 (1.7)	1,514 (100)	1,345 (97.5)	34 (2.5)	1,379 (100)
	높음	1,417 (98.9)	16 (1.1)	1,433 (100)	1,183 (99.2)	9 (0.8)	1,192 (100)	838 (98.1)	16 (1.9)	854 (100)
	χ^2	19.670***			31.082***			8.090*		
부모 애착	낮음	940 (97.1)	28 (2.9)	968 (100)	1,082 (95.7)	49 (4.3)	1,131 (100)	841 (93.7)	57 (6.3)	898 (100)
	중간	1,010 (98.2)	18 (1.8)	1,028 (100)	971 (98.2)	18 (1.8)	989 (100)	849 (98.4)	14 (1.6)	863 (100)
	높음	1,593 (99.4)	10 (0.6)	1,603 (100)	1,618 (99.4)	10 (0.6)	1,628 (100)	1,220 (99.2)	10 (0.8)	1,230 (100)
	χ^2	20.638***			46.218***			65.769***		
부모 일탈	낮음	1,761 (98.9)	19 (1.1)	1,780 (100)	1,733 (98.4)	29 (1.6)	1,762 (100)	1,394 (97.9)	30 (2.1)	1,424 (100)
	중간	1,132 (98.3)	19 (1.7)	1,151 (100)	1,231 (98.2)	22 (1.8)	1,253 (100)	951 (97.7)	22 (2.3)	973 (100)
	높음	649 (97.3)	18 (2.7)	667 (100)	708 (96.3)	27 (3.7)	735 (100)	564 (95.1)	29 (4.9)	593 (100)
	χ^2	8.524*			11.440**			13.407**		
배우자 폭력	낮음	1,771 (99.4)	10 (0.6)	1,781 (100)	1,618 (99.4)	10 (0.6)	1,628 (100)	1,293 (99.2)	10 (0.8)	1,303 (100)
	중간	1,311 (98.3)	22 (1.7)	1,333 (100)	1,324 (98.1)	26 (1.9)	1,350 (100)	1,077 (97.5)	28 (0.9)	1,105 (100)
	높음	461 (95.1)	24 (4.9)	485 (100)	729 (94.6)	42 (5.4)	771 (100)	541 (92.6)	43 (1.4)	584 (100)
	χ^2	48.017***			60.241***			66.801***		

*p < .05, **p < .01, ***p < .001

다. 거주지역 특성과 가정내 학대 피해

지역특성에 따른 초중고생의 가정내 학대 피해를 분석해 보았다. 동네나 등하교길의 물리적 무질서 수준에 따른 학대 피해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나 등하교길의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학대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학대 피해를 더 경험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동네나 등하교길의 사회적 무질서 수준에 따른 학대 피해는 초중고생 모두에게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초중고생 모두 동네나 등하교길의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학대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주민간의 친밀성을 보여주는 이웃관계에 따른 학대 피해는 초중고생 모두에게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는 이웃관계가 친밀할수록 학대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이웃관계가 약한 집단에서 학대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이웃관계가 강한 집단, 중간 집단의 순이었다. 범죄나 괴롭힘 발생시 동네 주민들이 도와 주는 것을 의미하는 이웃참여에 따라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대 피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각각 이웃참여가 높은 집단일수록 학대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도 이웃참여가 높을수록 학대 피해가 적었지만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웃관계의 친밀성이나 이웃참여의 적극성 정도가 낮은 것은 한편으로 부모(혹은 보호자)의 사회적 고립과 관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고립성이 강할수록 자녀에 대한 학대가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웃관계가 활발하고, 이웃참여가 많은 동네일수록 자녀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신체적 학대 예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네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서 중고생의 학대 피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중고생 모두 동네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은 집단일수록 학대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동네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따른 학대 피해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24〉 동네 및 등하교길 특성과 가정내 학대 피해

단위: 명(%)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물리적 무질서	낮음	1,106 (99.1)	10 (0.9)	1,116 (100)	901 (98.3)	16 (1.7)	917 (100)	765 (98.3)	13 (1.7)	778 (100)
	중간	1,711 (98.4)	27 (1.6)	1,738 (100)	1,772 (97.9)	38 (2.1)	1,810 (100)	1,347 (98.2)	25 (1.8)	1,372 (100)
	높음	726 (97.4)	19 (2.6)	745 (100)	998 (97.7)	24 (2.3)	1,022 (100)	798 (94.9)	43 (5.1)	841 (100)
	χ^2	7.982*			.870			25.723***		
사회적 무질서	낮음	1,223 (99.2)	10 (0.8)	1,233 (100)	882 (99.0)	9 (1.0)	891 (100)	871 (98.9)	10 (1.1)	881 (100)
	중간	1,523 (98.6)	22 (1.4)	1,545 (100)	1,698 (98.2)	31 (1.8)	1,729 (100)	1,307 (97.0)	40 (3.0)	1,347 (100)
	높음	796 (97.2)	23 (2.8)	819 (100)	1,091 (96.6)	38 (3.4)	1,129 (100)	732 (95.9)	31 (4.1)	763 (100)
	χ^2	13.237**			14.868**			13.939**		
이웃 관계	약함	923 (97.5)	24 (2.5)	947 (100)	1,183 (97.2)	34 (2.8)	1,217 (100)	1,119 (96.3)	43 (3.7)	1,162 (100)
	중간	1,626 (98.7)	22 (1.3)	1,648 (100)	1,715 (97.9)	36 (2.1)	1,751 (100)	1,237 (98.2)	23 (1.8)	1,260 (100)
	강함	994 (99.0)	10 (1.0)	1,004 (100)	773 (99.1)	7 (0.9)	780 (100)	553 (97.4)	15 (2.6)	568 (100)
	χ^2	8.498*			8.495*			8.077*		
이웃 참여	낮음	966 (96.8)	32 (3.2)	998 (100)	1,970 (96.7)	47 (3.3)	1,417 (100)	1,215 (96.7)	41 (3.3)	1,256 (100)
	중간	1,745 (99.0)	17 (1.0)	1,762 (100)	1,584 (98.4)	25 (1.6)	1,609 (100)	1,257 (97.4)	34 (2.6)	1,291 (100)
	높음	832 (99.2)	7 (0.8)	839 (100)	717 (99.3)	5 (0.7)	722 (100)	438 (98.6)	6 (1.4)	444 (100)
	χ^2	24.620***			19.883***			4.604		
지역 경찰에 대한 신뢰	낮음	1,194 (97.9)	25 (2.1)	1,219 (100)	876 (95.2)	44 (4.8)	920 (100)	901 (96.3)	35 (3.7)	936 (100)
	중간	1,381 (98.9)	16 (1.1)	1,397 (100)	1,762 (98.4)	28 (1.6)	1,790 (100)	1,415 (97.4)	38 (2.6)	1,453 (100)
	높음	967 (98.6)	14 (1.4)	987 (100)	1,033 (99.4)	6 (0.6)	1,039 (100)	594 (98.8)	7 (1.2)	601 (100)
	χ^2	3.638			46.835***			9.356**		

*p < .05, **p < .01, ***p < .001

3. 괴롭힘 및 가정내 학대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친구괴롭힘 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신체적 취약성, 일상활동 보호요인, 비행경험이 있고 가족 특성으로는 주관적 계층, 배우자폭력이 있으며, 친구 특성으로는 친구애착, 친구비행, 친구피해가 있고, 학교 특성으로는 출입문 통제, 학교경찰 인지도, 학교경찰 신뢰도, 학교폭력예방 노력, 학교응집, 교사 지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으로 사회적 무질서와 이웃관계가 있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친구괴롭힘 피해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에 비해 친구괴롭힘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체적으로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일수록 친구괴롭힘 피해가 증가하였다. 일상활동 보호요인은 친구괴롭힘 피해 가능성을 유의한 수준에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경험은 친구괴롭힘 피해 확률을 1.67배 증가시켰다. 주관적 계층은 친구괴롭힘 피해와 부적 관계를 보였다. 배우자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의 학생일수록 친구괴롭힘 피해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친구괴롭힘 피해 위험성은 친구애착과는 부적 관계를 보인 반면, 친구비행과는 정적 관계를 보였다. 특이한 점은 어울리는 친구 중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을수록 친구괴롭힘 피해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결과였다. 학교 특성 중 출입문 통제, 학교경찰 신뢰도, 학교폭력예방 노력, 학교응집 등의 요인들은 친구괴롭힘 피해 위험성 감소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학교경찰인지도는 친구괴롭힘 피해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앞서 폭력범죄 피해에서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친구괴롭힘 피해학생일수록 학교폭력 전담경찰을 인식하거나 이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 가지 의외의 결과는 교사 지지와 친구괴롭힘 피해 확률 사이에 정적 관계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생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학생일수록 친구괴롭힘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해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과관계의 시간순서를 역으로 하여 친구괴롭힘 피해를 당한 학생일수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지지를 경험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의 경우 사회적 무질서는 친구괴롭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고, 이에 반해 친밀한 이웃관계는 감소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대 피해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들로는 성별, 비행경험, 주관적 계층, 부모애착, 배우자폭력이 있었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부모학대 피해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비행경험은 부모학대 피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주관적으로 인식한 가족의 사회적 계층이 낮을수록 부모학대 피해 위험성은 증가하였다.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이 낮은 응답자일수록 부모학대 피해 가능성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일수록 부모학대 피해 위험성이 증가하였다.

〈표 6-25〉 괴롭힘 및 학대피해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모형 분석

구분	변수	항목	괴롭힘 피해		학대 피해		
			b	exp(b)	b	exp(b)	
개인 특성	성별(남자=1)	-	-.84***	.43	-.58***	.56	
	학년	초4	.73***	2.07	.49	1.63	
		초5	1.04***	2.82	.04	1.04	
		초6	1.01***	2.74	.08	1.08	
		중1	1.04***	2.83	-.35	.70	
		중2	.83***	2.28	.33	1.39	
		중3	.49**	1.62	-.11	.89	
		고1	.23	1.26	.45	1.57	
		고2 ^a					
	신체적취약성	na	.15***	1.17	-.05	.95	
	자기통제력	na	-.13	.88	-.00	1.00	
	일상 활동	보호	na	-.21***	.81	na	na
		노출	na	-.00	1.00	na	na
유인성		na	.03	1.04	na	na	
비행경험(있음=1)	-	.51***	1.67	.78***	2.19		
가족 특성	부모결혼상태	이혼·사별 등	.14	1.15	-.15	.86	
		결혼 ^a					
	주관적계층	na	-.09*	.91	-.14*	.87	
	부모감독	na	.04	1.05	.13	1.14	
	부모애착	na	.11	1.11	-.64***	.53	
	배우자폭력	na	.14**	1.15	.73***	2.08	
친구 특성	친한친구수	na	-.01	1.00	na	na	
	친구애착	na	-.13*	.88	na	na	
	친구비행	na	.19**	1.21	na	na	
	친구징계경험(있음=1)	-	.17	1.18	na	na	
	친구학폭위회부(있음=1)	-	-.05	.96	na	na	
	친구피해	na	-.18**	.83	na	na	

구분	변수	항목	괴롭힘 피해		학대 피해	
			b	exp(b)	b	exp(b)
학교 특성	학교규모	200명 미만	-.09	.91	na	na
		200-600명 미만	-.04	.96	na	na
		600명 이상 ^a				
	출입문통제(있음=1)	-	-.21*	.81	na	na
	학교경찰인지도	na	.14**	1.15	na	na
	학교경찰신뢰도	na	-.15**	.86	na	na
	학교폭력예방노력	na	-.15*	.86	na	na
	학교응집	na	-.39***	.67	na	na
지역 특성	학교규칙문화	na	.10	1.11	na	na
	교사지지	na	.25***	1.28	na	na
	물리적무질서	na	-.00	1.00	.02	1.02
	사회적무질서	na	.13*	1.14	.11	1.11
	이웃관계	na	-.11*	.90	-.08	.93
	이웃참여	na	.06	1.06	-.17	.85
	지역경찰신뢰도	na	-.08	1.08	-.01	.99
-2 Log Likelihood(카이제곱)			5656.703(533.74***)		1728.578(358.722***)	
Cox & Snell R ² / Nagelkerke R ²			.050 / .112		.034 / .187	

^a : 기준값 ***p<.001 **p<.01 *p<.05 (2-tailed)

제3절 소결

여기서는 각 피해유형별로 관련요인에 대해 살펴 보았으며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가. 개인적 특성과 범죄피해

개인적 특성 중 성별은 초등학생의 폭력피해(남자가 여자보다 폭력피해를 더 많이 경험), 중학생의 재산범죄 피해(여자가 남자보다 피해를 더 많이 경험), 고등학생의 성폭력 등 피해(여자가 남자보다 피해를 더 많이 경험)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이 범죄피해에 관련되는 경우를 보면, 폭력범죄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전영실·기광도, 2009; 이인선·최지현, 2014). 학년은 초등학생의 폭력피해(학년이 낮을수록 피해가 많음), 고등학생의 재산피해(학년이 낮을수록 피해가 많음)와 관련되었다. 지역규모의 경우는 중학생의 재산범죄 피해와만 관련되었는데, 중소도시에서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읍, 면, 대도시의 순이었다.

개인적 특성 중 신체적 취약성은 초중고생의 범죄피해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재산범죄 피해, 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등 피해(중고생)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등학생의 재산범죄 피해는 신체적 취약성이 중간)높은 집단)낮은 집단 순). 이는 초중고생에 관계없이 신체적 취약성이 있을수록 범죄피해에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기통제력도 초중고생의 범죄피해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폭력 등 피해(중고)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고등학생의 성폭력 등 피해는 자기통제력이 낮은 집단)높은 집단)중간 순). 이는 자기통제력이 범죄 피해와 관련됨을 보여 준 기존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홍영오·연성진, 2014; Shreck et al., 2002; Shreck et al., 2006; Pratt et al., 2014; Kulig et al., 2017).

일상활동 특성 중 보호는 초등학생의 재산, 폭력범죄 피해, 중학생의 폭력피해와 관련되었다. 초등학생의 재산범죄 피해의 경우 보호수준이 중간인 경우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보호수준이 낮은 경우, 높은 경우의 순이었다. 폭력범죄 피해는 보호수준이 높을수록 피해비율이 낮았다. 중학생의 폭력범죄 피해는 보호수준이 낮은 경우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보호수준이 높은 경우, 중간인 경우의 순이었다. 노출은 초등학생, 중학생의 재산범죄 피해, 초등학생의 폭력범죄 피해와 관련되었는데, 노출이 많을수록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나 나이가 어린 청소년의 경우 비구조화된 활동을 많이 할수록 피해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인성은 초등학생의 재산, 폭력범죄 피해, 중학생의 재산, 성폭력 등 피해, 고등학생의 폭력범죄 피해와 관련되었는데, 대체로 유인성이 높을수록 피해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비행경험과 관련해서 보면, 경비행은 초중고생의 재산범죄 피해와 폭력범죄 피해, 중학생의 성폭력 등 피해와 관련되었다. 즉 경비행경험이 있는 경우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더 높았다. 중비행의 경우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재산범죄 피해, 초중고생의 폭력범죄 피해, 중고생의 성폭력 등 피해와 관련되었는데, 중비행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피해경험이 높았다. 비행이 피해와 관련되는 것은 기존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Henson et al., 2010; Tillyer et al., 2011; Zaykowski and Gunter, 2012; Averdijk and Bernasco, 2015).

나. 가족특성과 범죄피해

가족의 구조적 특성에 해당하는 부모의 결혼상태는 초등학생의 범죄피해(부모가 이혼 중인 경우는 결혼인 경우에 비해 재산, 폭력범죄 피해가 많음), 동거가족구성은 중학생의 재산범죄피해(부모없이 사는 경우 피해비율이 높음), 아버지 교육수준은 중학생의 범죄피해(중졸 이하의 집단에서 재산, 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음)와 관련되었다. 어머니 교육수준은 중고생의 성폭력 등 피해와 관련되었는데, 중학생의 경우 어머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어머니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부모 각각의 직업유무와 관련해서 보면, 중학생의 경우 아버지가 직업이 없는 집단에서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주관적 계층에 따라서는 고등학생의 재산, 성폭력 등 피해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주관적 계층이 하에 속하는 집단에서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가 가장 많았다.

가족의 기능적 특성에 해당하는 부모의 감독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범죄 피해, 고등학생의 폭력피해와 관련되었다. 부모감독이 낮을수록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이다. 애착은 초등학생의 범죄 피해, 중고생의 폭력피해, 중학생의 성폭력 등 피해와 관련되었는데, 대체로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낮을수록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부모의 감독 및 부모와의 애착은 특히 초중고생의 폭력피해에 모두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일탈성은 초등학생의 피해와 관련되어서 부모 일탈성이 아동의 피해에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부모의 배우자폭력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범죄피해, 고등학생의 폭력피해에 관련되었는데, 배우자폭력이 많을수록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가정의 기능적 특성들이 초중고생의 범죄피해에 많이 관련되며, 특히 폭력피해에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다. 친구특성과 범죄피해

친구특성에 따른 피해유무를 보면, 친한 친구수는 중고생의 폭력범죄 피해와 관련되었다. 중고생 모두 친한 친구수가 적은 경우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친구와의 애착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폭력피해, 중학생의 재산, 폭력, 성폭력 등 피해와 관련되었다. 대체로 친구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낮았다.

친구의 비행수준과 관련해서 보면, 친구의 비행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범죄피해, 고등학생의 폭력 피해와 관련되었는데, 친구의 비행수준이 높을수록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친한 친구의 지난 1년간 징계경험과 학폭위 회부여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범죄피해, 고등학생의 폭력범죄 피해와 관련되었다. 비행친구가 있는 경우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친구의 비행은 폭력범죄 피해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친구의 피해수준은 초등학생, 중학생의 범죄피해, 고등학생의 폭력범죄 피해와 관련되었으며, 대체로 친구의 피해수준이 높을수록 피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의 피해가 피해에 관련됨을 보여준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Chouhy et al., 2017).

라. 학교특성과 범죄피해

학교의 객관적 특성은 학교규모에 따른 중학생의 폭력피해, 출입문통제 여부에 따른 중학생의 재산범죄 피해를 제외하고는 범죄피해에 관련되지 않았다.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인지여부는 초중고생의 범죄피해와 관련되지 않았지만,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는 초중고생의 재산, 폭력, 성폭력 등(중고생) 피해와 관련되었다. 즉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학교의 폭력예방 노력은 초중고생의 피해와 관련되었는데, 대체로 학교의 폭력예방

노력이 많을수록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낮았다. 학교의 응집성은 초등학생의 범죄 피해, 중학생의 폭력, 성폭력 등 피해, 고등학생의 재산, 폭력범죄 피해와 관련되었는데, 학교의 응집성이 높을수록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았다. 학교규칙문화의 적정성은 초등학생의 폭력범죄 피해, 중고생의 범죄피해와 관련되었는데, 학교 규칙문화의 적정성이 낮은 집단에서 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교사 지지의 경우는 초등학생의 폭력범죄 피해, 중학생의 폭력, 성폭력 등 피해, 고등학생의 재산, 폭력피해에 관련되었다. 대체로 교사의 지지가 낮은 집단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학교의 객관적 특성보다는 학교의 폭력예방노력, 응집성, 규칙문화의 적정성, 교사의 지지가 초중고생의 범죄피해에 더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특히 초중고생의 폭력피해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거주지역 특성과 범죄피해

동네 및 등하교길 특성에 따른 피해를 보면,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는 초중고생의 범죄피해와 관련되었는데,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웃관계는 초중고생의 범죄피해와 관련되지 않았으며, 이웃참여는 중학생의 폭력, 고등학생의 성폭력 등 피해와 관련되었다. 주변의 범죄나 괴롭힘 발생시 이웃주민의 참여가 낮은 경우 청소년의 폭력성 범죄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경찰에 대한 신뢰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의 폭력, 중학생의 폭력, 성폭력 등 피해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체로 동네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은 집단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바.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재산, 폭력범죄 피해,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보면, 재산범죄 피해에는 개인적 특성 중 성별(남)여, 학년(비교집단 고2에 비해 초6의 피해확률이 낮으며, 고1의 피해확률이 높음), 보호, 노출, 유인성, 비행, 학교특성 중 출입문통제여부, 거주지역 특성 중 사회적 무질서가 관련되었다. 보호는 피해가능성을 낮추는 반면, 노출과 유인성, 비행경험은

피해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문을 통제하는 학교의 학생들의 재산범죄 피해 확률이 더 낮았으며,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 피해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 피해에는 개인적 특성 중 학년, 신체적 취약성, 보호, 비행경험, 가족특성 중 주관적 계층, 친구 특성 중 친구의 피해, 학교특성 중 학교경찰인지도, 학교폭력예방 노력, 지역 특성 중 사회적 무질서가 관련되었다. 학년의 경우 비교집단 고등학교 2학년에 비해 초등학교 4,5,6학년, 중학교 2학년의 폭력범죄 피해확률이 높았다. 또한 신체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보호수준이 낮을수록, 비행경험이 있는 경우,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친구피해가 많을수록, 학교폭력예방노력이 약할수록, 거주지역의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피해 확률이 높았다. 한 가지 의외의 결과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인지하는 학생일수록 폭력범죄 피해확률이 증가하였다는 점인데, 이는 피해과정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고생 대상으로 하여 성폭력 등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여)남), 학년(비교집단 고2와 비교해서 중2의 피해확률이 높음), 비행, 학교의 폭력예방노력이었다.

2. 괴롭힘 및 가정내 학대 피해 취약성 요인

가. 괴롭힘 피해 취약성 요인

첫째, 개인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성별에 따라서 괴롭힘 피해 유무가 차이를 보였는데, 초중고생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선행연구 중에서도 괴롭힘 피해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Sampasa-Kanyinga, 2017). 학년에 따른 피해를 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학생의 경우는 학년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경우는 학년이 낮을수록 피해를 많이 경험하였다. 이는 미국의 6-10학년생(주로 우리나라의 13-17세에 해당)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연구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괴롭힘 피해가 낮아진 것을 보여준 결과와도 통하는 것이다(Wang et al., 2009). 지역규모는 초등학생의 괴롭힘 피해와 관련되었는데, 중소도시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읍, 면지역, 대도시의 순이었다.

신체적 취약성 및 자기통제력과 관련해서 보면, 초중고생 모두 신체적 취약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상활동 특성 중에서는 보호수준이 초중고생의 괴롭힘 피해와 관련되었는데, 보호수준이 낮을수록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일상활동 특성 중 노출과 유인성은 초등학생의 괴롭힘 피해에만 관련되었다. 개인적 특성 중 마지막으로 경비행, 중비행 경험유무와 관련해서 보면, 초중고생 모두 비행경험이 있는 경우가 비행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둘째, 가족특성과 관련해서 보면, 가족의 구조적 특성 중에는 부모 결혼상태가 중고생의 피해와 관련되었으며(이혼 등인 경우 피해비율이 더 높음), 아버지 교육수준이 고등학생의 피해(부적 관계), 아버지 직업유무가 초등학생의 피해(직업이 없는 경우 피해비율이 더 높음)와 관련되었다. 이 외에 주관적 계층은 초중고생 모두의 괴롭힘 피해와 관련되었는데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주관적 계층이 초·중학생의 범죄피해와는 관련되지 않았지만, 괴롭힘 피해와는 관련됨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괴롭힘 피해와 관련됨을 보여준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Bowes et al., 2013).

가족의 기능적 특성에 해당하는 부모의 감독, 부모와의 애착, 부모 일탈성, 배우자 폭력수준은 모두 초등학생의 괴롭힘 피해와 관련되어서 아동의 경우 가족의 기능적 특성이 괴롭힘 피해에도 관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중고생의 경우를 보면 부모와의 애착, 배우자폭력만이 고등학생의 괴롭힘 피해에 관련되었다.

셋째, 친구특성에 따른 괴롭힘 피해를 보면, 초중고생 모두 친한 친구수가 적은 집단에서 많은 집단에 비해 괴롭힘 피해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의 애착과 관련해서 보면 초중고생 모두 대체로 애착수준이 낮을수록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친구의 비행과 친구의 피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괴롭힘 피해와 관련되었다. 친구 비행, 친구피해가 낮은 집단에서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았다.

넷째, 학교특성에 따른 괴롭힘 피해를 보면, 학교규모는 고등학생의 괴롭힘 피해에 관련되었는데 학생수 200-600명 미만인 경우 피해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200명 미만, 600명 이상의 순이었다.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서 보면, 초중

고생 모두 대체로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신뢰할수록 괴롭힘 피해비율이 낮았다. 학교의 폭력예방노력, 학교응집성, 학교규칙문화의 적정성도 초중고생의 괴롭힘 피해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교사의 지지는 고등학생의 괴롭힘 피해(지지가 낮을수록 피해비율 높음), 성적은 초등학생의 피해(성적이 낮을수록 피해비율높음)와 관련되었다.

다섯째, 거주지역특성에 따른 괴롭힘 피해를 보면, 물리적 무질서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사회적 무질서는 초중고생의 괴롭힘 피해와 관련되었다. 이웃관계의 친밀성은 중학생, 이웃참여는 초등학생의 괴롭힘 피해와 관련되었다. 어린 아동의 경우 이웃에서 괴롭힘이나 범죄발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을수록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동네 경찰에 대한 신뢰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괴롭힘 피해에 관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지역 특성이 초등학생, 중학생의 괴롭힘 피해에 더 관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가정내 학대 피해 취약성 요인

첫째, 학대피해와 관련되는 개인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고등학생의 경우 유의미하였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 중 신체적 취약성은 고등학생, 자기통제력은 중고생의 학대피해와 관련되었는데 신체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경비행 경험 유무는 중학생, 중비행 경험 유무는 초중고생의 학대피해와 관련되었는데 비행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학대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개인의 신체적 취약성이나 자기통제력 등이 아동보다는 청소년의 학대피해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족특성 중 구조적 특성은 주로 중학생의 학대피해와 관련되었는데, 학대피해와 관련되는 요인은 동거가족구성(부모와 살지 않는 경우 피해비율이 높음), 아버지 교육수준(중졸이하 집단에서 피해비율이 가장 높음), 아버지 직업유무(직업이 없는 경우 피해비율이 더 높음)였다. 주관적 계층의 경우 초중고생 모두 학대피해와 유의미하게 관련되었는데 주관적 계층이 하인 경우 피해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상, 중의 순이었다. 가족의 기능적 특성에 해당하는 부모의 감독, 부모와의 애착, 부모의

일탈성, 배우자폭력에 따라서 초중고생의 학대피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서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아동·청소년의 학대피해가 관련됨을 보여준다.

셋째, 거주지역 특성으로 물리적 무질서는 초등학생, 고등학생의 학대피해, 사회적 무질서는 초중고생의 학대피해에 관련되었다. 이웃관계의 친밀성은 초중고생의 학대피해, 이웃참여는 초등학생, 중학생의 학대피해와 관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지역의 사회적 통합이 학대피해 예방에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어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 대응이 가정내 학대피해 예방에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다. 괴롭힘 및 학대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먼저 괴롭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특성 중 성별, 학년, 신체적 취약성, 보호, 비행경험이며, 가족특성 중 주관적 계층, 배우자폭력, 친구특성 중 친구와의 애착, 친구 비행, 친구 피해, 학교특성 중 출입문통제,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 학교의 폭력예방노력, 학교응집성, 거주지역 특성 중 사회적 무질서, 이웃관계였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피해가능성이 높으며, 학년별로는 비교집단인 고2에 비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피해확률이 높았다. 신체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보호수준이 낮을수록 괴롭힘 피해가능성이 높았으며, 비행경험은 괴롭힘 피해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배우자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의 학생일수록 친구 괴롭힘 피해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친구특성과 관련해서는 친구와의 애착이 약할수록, 친구의 비행수준이 높을수록, 친구의 피해경험이 적을수록 괴롭힘 피해가능성이 증가하였다. 학교특성 중 출입문통제, 학교경찰 신뢰도, 학교폭력예방 노력, 학교응집 등의 요인들은 괴롭힘 피해 위험성 감소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학교경찰인지도는 친구괴롭힘 피해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었는데, 이는 앞서 폭력범죄 피해와 마찬가지로 괴롭힘 피해 학생일수록 학교폭력 전담경찰을 인식하거나 이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교사의 지지와 이웃관계 친밀성은 각각 괴롭힘 피해와 정적, 부적 관계를 보였는데, 교사 지지의 경우 괴롭힘당하는 학생이 보다 교사의 지지를 경험할 수 있고, 교사와의 관계를 중요시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가정내 학대 피해와 유의한 관계를 보인 요인은 성별, 비행경험, 주관적 계층, 부모애착, 배우자폭력이다. 남자에 비해 여자가 학대 피해확률이 높았으며, 비행 경험도 학대 피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낮을수록, 배우자폭력이 많을수록 학대 피해 위험성은 증가하였다.

제 7 장



범죄에 대한 두려움 실태

전 영 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실태

제7장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실태를 살펴 본 후 두려움과 관련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두려움 관련요인 분석은 범죄-즉,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폭력 등-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구체적인 두려움 관련요인은 피해관련요인과 유사하게 개인적 특성, 가족·친구·학교·지역사회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으며, 개인적 특성으로 피해경험을 추가하였다.

분석은 표준화된 가중치를 적용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단위가 정수가 아닌 경우 반올림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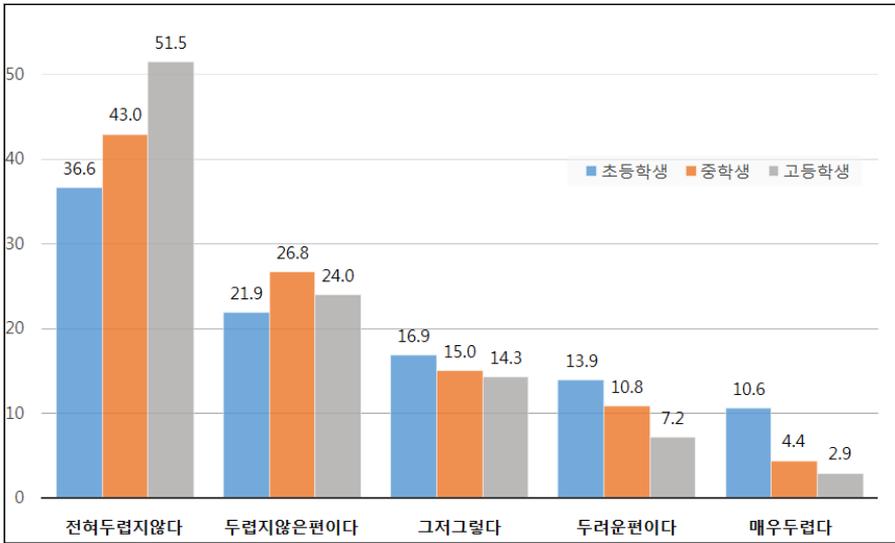
제1절 범죄에 대한 두려움 실태

1.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가. 일반적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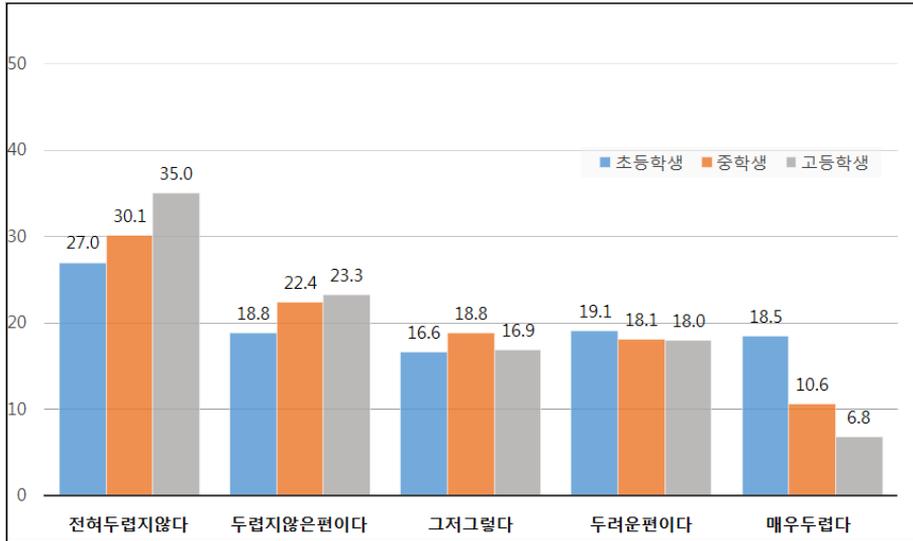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은 두 가지 항목을 통하여 살펴 보았다. 먼저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는 항목에 대해서 초등학생의 경우 두렵지 않다('전혀 두렵지 않다'와 '별로 두렵지 않다'를 합한 비율)는 응답이 58.5%였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각각 69.8%, 75.5%였다. 학교에 관계없이 두렵지 않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지만 이에 해당하는 비율은 고등학생의 경우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중학생, 초등학생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렵다('두려운 편이다'와 '매우 두렵

다'를 합한 비율)는 응답은 초등학생의 경우 24.5%였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각각 15.2%, 10.1%였다.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는 비율은 초등학생의 경우 20%대였으며, 중고생의 경우에는 10%대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1]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다음으로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에 대해서는 두렵지 않다('전혀 두렵지 않다'와 '별로 두렵지 않다'를 합한 비율)는 응답이 초등학생 45.8%, 중학생 52.5%, 고등학생 58.3%이었다. 밤에 혼자 동네 길을 걸을 때 두렵다는 응답('두려운 편이다'와 '매우 두렵다'를 합한 비율)는 초등학생이 37.6%였으며, 중학생은 28.7%, 고등학생은 24.8%였다. 밤에 혼자 동네 길을 걸을 때 두렵다는 응답은 초등학생의 경우 30%대로 가장 높고, 다음은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의 항목에 비해서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2]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밤에 혼자 걸을 때

나. 범죄유형별 두려움

일반적 두려움에 이어서 유형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 보았다. 초등학생의 경우를 보면 '내 돈이나 물건을 도둑맞을까봐 두렵다'는 항목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이 78.0%였으며, 그저 그렇다가 12.7%, 두렵다는 응답('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이 9.4%였다. '누군가에게 속아서 내 돈이나 물건을 잃거나 손해볼까봐 두렵다'의 경우에는 두렵지 않다는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이 80.5%였으며 그저 그렇다가 10.5%, 두렵다는 응답('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이 9.0%였다. '누군가 내 물건을 일부러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봐 두렵다'의 경우 두렵지 않다는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은 86.1%였으며, 그저 그렇다가 7.9%, 두렵다는 응답('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이 6.1%였다. 폭력범죄의 경우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위협당하거나 맞아서 내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길까봐 두렵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이 81.3%였으며,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10.1%, 그렇다

는 응답('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이 8.6%였다. '친구, 선후배, 주변 어른, 모르는 사람 등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맞는 등 폭행당할까봐 두렵다'는 항목의 경우 두렵지 않다는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이 82.9%였으며,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8.8%, 두렵다는 응답('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은 8.4%였다. '부모님이나 같이 살고 있는 다른 보호자(할아버지, 할머니 등)에게 맞는 등 폭행당할까봐 두렵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이 88.0%,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6.2%, 그렇다는 응답('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이 5.9%였다. '다른 아이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따돌릴까봐 두렵다'는 항목의 경우 두렵지 않다는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이 79.5%였으며, 그저 그렇다와 두렵다('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는 응답은 각각 10.3%, 10.2%였다. 표에서 제시된 각 유형에 대한 평균을 보면 절도 피해의 두려움이 평균 1.8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괴롭힘이 1.76점, 사기와 금품갈취 피해가 각각 1.73점, 1.72점, 폭행피해가 1.65점, 기물파손 피해가 1.56점, 학대피해가 1.48점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2점 미만이어서 두려움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유형별 평균을 보면 절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으며, 학대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피해가능성에 대한 평균을 보면 두려움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절도의 발생가능성 점수가 가장 높고, 다음은 사기, 괴롭힘, 기물파손, 금품갈취, 폭행, 학대의 순이었다. 괴롭힘이나 금품갈취 등의 경우 발생가능성과 두려움의 평균 차이가 다른 항목에 비해 컸다. 즉, 이 두 유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발생가능성에 비해 두려움이 큰 것이다.

〈표 7-1〉 범죄유형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초등학교

단위: 명(%)

범죄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피해 가능성 평균*
재산 범죄	절도피해 두려움	1,917 (53.3)	887 (24.7)	457 (12.7)	211 (5.9)	126 (3.5)	3,598 (100)	1.82	1.63
	사기피해 두려움	2,119 (58.9)	777 (21.6)	376 (10.5)	202 (5.6)	124 (3.4)	3,598 (100)	1.73	1.50
	기물파손피해 두려움	2,373 (66.0)	722 (20.1)	286 (7.9)	135 (3.8)	82 (2.3)	3,598 (100)	1.56	1.44
폭력 범죄	금품갈취피해 두려움	2,132 (59.2)	794 (22.1)	365 (10.1)	172 (4.8)	136 (3.8)	3,598 (100)	1.72	1.41
	폭행피해 두려움	2,300 (63.9)	685 (19.0)	315 (8.8)	171 (4.8)	128 (3.6)	3,598 (100)	1.65	1.32
학대피해 두려움		2,611 (72.6)	554 (15.4)	223 (6.2)	106 (3.0)	104 (2.9)	3,598 (100)	1.48	1.20
괴롭힘피해 두려움		2,103 (58.4)	758 (21.1)	372 (10.3)	216 (6.0)	150 (4.2)	3,598 (100)	1.76	1.46

* 피해가능성 평균은 두려움과 동일한 항목들에 대한 피해 가능성을 묻는 질문으로 '매우 낮다' 1점, '다소 낮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다소 높다' 4점, '매우 높다' 5점을 주어 평균을 낸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해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나타낸다.

초등학교에 이어서 중학생의 경우를 보면, 절도 범죄 피해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이 77.6%였으며, 그저 그렇다가 14.8%,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는 응답이 7.7%였다. 사기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에는 80.5%가 두렵지 않다고 응답했으며('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 그저 그렇다가 13.0%, 두렵다는 응답('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이 6.4%였다. '누군가 내 물건을 일부러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봐 두렵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86.6%가 두렵지 않다고 응답했으며('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9.8%, 두렵다는 응답('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이 3.6%였다. 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당하거나 맞아서 내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길까봐 두렵다'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이 83.6%였으며, 그저 그렇다와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는 응답은 각각 11.3%, 5.0%로 나타났다. '친구, 선후

배, 주변 어른, 모르는 사람 등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맞는 등 폭행당할까봐 두렵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이 85.8%였으며, 그저 그렇다와 그렇다는 응답('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이 각각 9.4%, 4.8%로 나타났다. '부모님이나 같이 살고 있는 다른 보호자(할아버지, 할머니 등)에게 맞는 등 폭행당할까봐 두렵다'의 경우에는 두렵지 않다는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이 90.7%였으며, 그저 그렇다가 6.2%, 두렵다는 응답('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이 3.1%를 차지하였다. '다른 아이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따돌릴까봐 두렵다'는 항목의 경우 두렵지 않다는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이 79.8%였으며, 그저 그렇다와 두렵다는 응답('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은 각각 10.9%, 9.3%로 나타났다.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이나 괴롭힘을 당할까봐 두렵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이 85.4%였으며, 그저 그렇다와 그렇다는 응답('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은 각각 8.9%, 5.7%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각 항목의 평균을 보면,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절도 피해의 두려움이 가장 높았으며(1.92점), 다음은 사기와 괴롭힘(각각 1.81점), 금품갈취(1.66점), 성폭력 등(1.61점), 기물파손과 폭행(각각 1.59점), 학대(1.4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 피해가능성의 평균을 보면,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절도피해 가능성의 경우 평균이 2.06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사기(1.81점), 기물파손과 괴롭힘(각각 1.60점), 금품갈취(1.58점), 폭행(1.48점), 성폭력 등(1.46점), 학대(1.29점)였다. 절도와 기물파손의 경우 가능성에 비해 두려움이 낮았으며, 사기의 경우 가능성과 두려움의 평균이 같았다. 즉,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항목들의 경우 자신에게 일어날 발생가능성에 비해 두려움이 낮거나 비슷한 것이다. 이 외 나머지 항목의 경우에는 가능성에 비해 두려움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생가능성보다 이것에 대한 정서적 두려움이 더 큰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7-2〉 범죄유형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중학생

단위: 명(%)

범죄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피해 가능성 평균*
재산 범죄	절도피해 두려움	1,502 (40.1)	1,406 (37.5)	554 (14.8)	217 (5.8)	70 (1.9)	3,749 (100)	1.92	2.06
	사기피해 두려움	1,950 (52.0)	1,070 (28.5)	488 (13.0)	188 (5.0)	53 (1.4)	3,749 (100)	1.81	1.81
	기물파손피해 두려움	2,217 (59.1)	1,031 (27.5)	366 (9.8)	105 (2.8)	31 (0.8)	3,749 (100)	1.59	1.60
폭력 범죄	금품갈취피해 두려움	2,123 (56.6)	1,013 (27.0)	422 (11.3)	148 (3.9)	43 (1.1)	3,749 (100)	1.66	1.58
	폭행피해 두려움	2,320 (61.9)	897 (23.9)	352 (9.4)	120 (3.2)	60 (1.6)	3,749 (100)	1.59	1.48
학대피해 두려움		2,706 (72.2)	693 (18.5)	234 (6.2)	75 (2.0)	41 (1.1)	3,749 (100)	1.41	1.29
괴롭힘피해 두려움		1,930 (51.5)	1,060 (28.3)	408 (10.9)	260 (6.9)	92 (2.4)	3,749 (100)	1.81	1.60
성폭력 등 피해 두려움		2,282 (60.9)	918 (24.5)	334 (8.9)	147 (3.9)	67 (1.8)	3,749 (100)	1.61	1.46

* 피해가능성 평균은 두려움과 동일한 항목들에 대한 피해 가능성을 묻는 질문으로 '매우 낮다' 1점, '다소 낮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다소 높다' 4점, '매우 높다' 5점을 주어 평균을 낸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해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나타낸다.

고등학생의 피해유형별 두려움에 대해서 보면, '내 돈이나 물건을 도둑맞을까봐 두렵다'는 항목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이 72.6%였으며, 그저 그렇다가 18.1%, 그렇다는 응답('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이 9.3%였다. '누군가에게 속아서 내 돈이나 물건을 잃거나 손해볼까봐 두렵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이 80.3%였으며 그저 그렇다와 그렇다는 응답('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이 각각 13.9%, 5.9%였다. 기물파손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누군가 내 물건을 일부러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봐 두렵다'에 대해서는 두렵지 않다는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이 87.2%였으며, 그저 그렇다와 두렵다는 응답('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이 각각 9.9%, 2.9%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에게 위협당하거나 맞아서 내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길까봐 두렵다'에 대해서 두렵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이 84.4%,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11.7%, 두렵다는 응답('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이 3.9%였다. '친구, 선후배, 주변 어른, 모르는 사람 등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맞는 등 폭행당할까봐 두렵다'에 대해서는 두렵지 않다는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이 87.2%였으며, 그저 그렇다와 두렵다는 응답('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이 각각 9.2%,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이나 같이 살고 있는 다른 보호자(할아버지, 할머니 등)에게 맞는 등 폭행당할까봐 두렵다'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이 90.3%,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6.7%, 그렇다는 응답('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이 3.0%였다. '다른 아이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따돌릴까봐 두렵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이 81.9%였으며, 그저 그렇다와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는 응답이 각각 12.2%, 6.0%였다.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이나 괴롭힘을 당할까봐 두렵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두렵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86.1%였으며,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8.0%, 두렵다는 응답이 5.8%였다. 이러한 각 항목들에 대해서 평균을 보면, 초·중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2.03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사기(1.76점), 괴롭힘(1.70점), 금품갈취(1.64점), 성폭력 등(1.61점), 기물파손(1.57점), 폭행(1.54점), 학대(1.42점)로 나타났다. 피해가능성에 대한 평균을 보면,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절도 피해가능성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2.29점), 다음은 사기(1.91점), 금품갈취(1.63점), 괴롭힘(1.61점), 기물파손(1.57점), 폭행(1.53점), 성폭력 등(1.52점), 학대(1.35점)의 순이었다.

초중고생의 피해유형별 두려움을 보면 공통적으로 절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으며, 가정내 신체적 학대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각 유형별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평균이 두려움 평균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발생가능성에 비해 정서적 두려움이 큰 것을 보여 주었다. 이에 비해 중고생의 경우에는 대체로 재산범죄의 경우 발생가능성에 비해 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절도나 사기, 기물파손 피해에 대해서 발생가능성 인식

보다도 두려움이 낮은 것이다. 폭력범죄나 괴롭힘, 성폭력 등, 학대의 경우에는 초중고 생에 관계없이 발생가능성 인식보다 두려움이 큰 것을 보여 주었다.

〈표 7-3〉 범죄유형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 : 고등학생

단위: 명(%)

범죄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피해 가능성 평균*
재산 범죄	절도피해 두려움	1,070 (35.8)	1,099 (36.8)	541 (18.1)	229 (7.6)	52 (1.7)	2,991 (100)	2.03	2.29
	사기피해 두려움	1,512 (50.6)	888 (29.7)	415 (13.9)	147 (4.9)	29 (1.0)	2,991 (100)	1.76	1.91
	기물파손피해 두려움	1,787 (59.7)	823 (27.5)	295 (9.9)	66 (2.2)	20 (0.7)	2,991 (100)	1.57	1.57
폭력 범죄	금품갈취피해 두려움	1,694 (56.6)	831 (27.8)	351 (11.7)	94 (3.2)	21 (0.7)	2,991 (100)	1.64	1.63
	폭행피해 두려움	1,886 (63.1)	721 (24.1)	275 (9.2)	93 (3.1)	16 (0.5)	2,991 (100)	1.54	1.53
학대피해 두려움		2,148 (71.8)	552 (18.5)	200 (6.7)	68 (2.3)	22 (0.7)	2,991 (100)	1.42	1.35
괴롭힘피해 두려움		1,647 (55.1)	800 (26.8)	365 (12.2)	142 (4.8)	35 (1.2)	2,991 (100)	1.70	1.61
성폭력 등 피해 두려움		1,808 (60.5)	767 (25.6)	241 (8.0)	133 (4.4)	43 (1.4)	2,991 (100)	1.61	1.52

* 피해가능성 평균은 두려움과 동일한 항목들에 대한 피해 가능성을 묻는 질문으로 '매우 낮다' 1점, '다소 낮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다소 높다' 4점, '매우 높다' 5점을 주어 평균을 낸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해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나타낸다.

다. 학교별 두려움 비교

초중고생의 일반적 두려움 및 유형별 두려움에 대한 평균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일반적 두려움에 대해서 보면, 초등학생의 평균이 2.62점,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평균이 각각 2.32점, 2.12점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어릴수록 일반적 두려움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 사기, 기물파손에 대한 두려움을 합한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평균 1.7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중학생이 1.75점, 초등학생이 1.71점으로 나타났다. 금품갈취와 폭행을 합한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1.6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은 1.62점, 고등학

생은 1.59점으로 나타났다. 가정내 신체적 학대의 경우에도 초등학생의 두려움이 1.4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각각 1.42점, 1.41점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에는 다른 항목과 달리 중학생의 평균이 1.8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초등학생 1.76점, 고등학생 1.70점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제외한 중고생의 경우 성폭력 등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조사하였으며, 중고생의 두려움을 비교해 본 결과 중고생에 따라 성폭력 등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 학교별 두려움

구분	초등학생 (3,598)		중학생 (3,749)		고등학생 (2,991)		F값/T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일반적 두려움	2.62	1.31	2.32	1.17	2.12	1.09	148.822***
재산	1.71	.95	1.75	.79	1.79	.75	7.891***
폭력	1.68	1.00	1.62	.84	1.59	.78	10.203***
가정내 학대	1.48	.95	1.41	.79	1.42	.78	7.490**
괴롭힘	1.76	1.12	1.81	1.04	1.70	.94	8.312***
성폭력 등			1.61	.94	1.61	.92	.201

p < .01, *p < .001

2. 피해가능성 및 두려움의 관계

초중고생별로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제시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를 보면, 일반적 두려움의 경우 모든 피해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학대피해가능성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는 다른 피해가능성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유형별 두려움은 해당 유형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상대적으로 강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표 7-5〉 피해가능성과 두려움의 관계(초등학생)

피해가능성 \ 두려움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가정내 학대 두려움	괴롭힘 두려움
재산범죄 가능성	.178***	.456***	.400***	.297***	.410***
폭력범죄 가능성	.158***	.408***	.410***	.305***	.376***
가정내 학대 가능성	.046**	.248***	.246***	.339***	.259***
괴롭힘 가능성	.157***	.355***	.327***	.237***	.497***

p < .01, *p < .001

중학생의 경우도 일반적 두려움 및 재산, 폭력, 학대, 괴롭힘, 성폭력 등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재산, 폭력, 학대, 괴롭힘, 성폭력 등 피해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유형별 두려움은 해당 유형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6〉 피해가능성과 두려움의 관계(중학생)

피해가능성 \ 두려움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가정내 학대 두려움	괴롭힘 두려움	성폭력 등 가능성
재산범죄 가능성	.278***	.581***	.483***	.314***	.440***	.314***
폭력범죄 가능성	.250***	.474***	.519***	.356***	.405***	.405***
가정내 학대 가능성	.134***	.289***	.316***	.462***	.250***	.248***
괴롭힘 가능성	.235***	.407***	.400***	.277***	.540***	.330***
성폭력 등 가능성	.178***	.385***	.394***	.271***	.351***	.515***

***p < .001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두려움 및 각 유형별 두려움이 각 유형별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초중고생 모두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 학대, 괴롭힘, 성폭력 등(중고생의 경우) 피해에 대한 두려움 및 재산, 폭력, 학대, 괴롭힘, 성폭력 등(중고생의 경우) 피해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범죄유형별 두려움과 해당 범죄유형의 발생가능성 인식이 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는데, 이는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기반해서 두려움이 형성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표 7-7〉 피해가능성과 두려움의 관계 (고등학생)

피해가능성 \ 두려움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가정내 학대 두려움	괴롭힘 두려움	성폭력 등
재산범죄 가능성	.280***	.629***	.534***	.337***	.437***	.377***
폭력범죄 가능성	.282***	.521***	.607***	.418***	.459***	.445***
가정내 학대 가능성	.146***	.351***	.424***	.577***	.331***	.312***
괴롭힘 가능성	.232***	.472***	.482***	.370***	.603***	.395***
성폭력 등 가능성	.211***	.394***	.453***	.321***	.379***	.610***

***p < .001

제2절 범죄에 대한 두려움 관련요인

1. 각 특성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가. 개인적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1) 초등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일반적 두려움과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관련요인을 살펴 보았다. 이 세 가지의 경우 대표적인 범죄피해이며, 초·중·고생에게 공통적인 피해유형이다. 참고로 앞서 살펴 본 두려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일반적 두려움이나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두려움 관련요인은 피해관련요인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특성 및 가족·친구·학교·지역사회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으며, 개인적 특성으로 피해경험이 추가되었다.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를 보면, 개인적 특성 중 성별은 일반적 두려움 뿐만 아니라 재산, 폭력범죄와 관련되었다. 즉 여자가 남자에 비해 두려움이 큰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학년의 경우에는 일반적 두려움과 관련되어서 학년이 낮을수록 두려움이 컸다. 지역규모의 경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었는데, 규모가 작을수록 폭력범죄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읍, 지역의 경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이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신체적 취약성과 자기통제력은 세 가지 두려움에 모두 관련되었다. 즉 자신의 신체적 한계가 있다고 인식할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일반적 두려움과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을 보여 준다. 경비행 경험(음주, 흡연, 무단결석, 가출, 음란물보기, 괴롭힘이나 왕따시키기) 유무에 따라 일반적 두려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차이를 보였다. 즉, 경비행 경험이 있는 경우 재산과 폭력범죄 두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비행 경험(다른 사람 때리기, 물건이나 돈 훔치기, 다른 사람에게 겁줘서 돈이나 물건 뺏기, 일부러 남의 물건이나 학교기물 망가뜨리기)의 경우 폭력범죄 두려움과 관련되었는데, 경비행과 마찬가지로 중비행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에 비해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비행 경험에 이어서 피해경험에 따른 두려움의 차이를 보면, 학대피해경험에 따른 일반적 두려움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의 피해경험 유무별로 일반적 두려움과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차이를 보였다. 즉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일반적 두려움과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7-8〉 초등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구분		사례 수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성별	남자	1,854	2.29	1.27	1.60	.92	1.57	.95
	여자	1,745	2.96	1.27	1.81	.97	1.80	1.04
	t 값		-15.725***		-6.621***		-7.007***	
학년	4학년	1,035	2.73	1.37	1.67	1.00	1.66	1.06
	5학년	1,244	2.63	1.30	1.69	.93	1.67	.97
	6학년	1,320	2.52	1.27	1.74	.94	1.71	.99
	F값		7.808***		1.717		.789	
지역 규모	대도시	1,457	2.61	1.29	1.66	.91	1.63	.95
	중소도시	1,534	2.59	1.31	1.72	.95	1.70	1.00
	읍,면 지역	607	2.69	1.37	1.76	1.03	1.78	1.12

구분		사례 수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F값	1.243		2.708		5.506**		
신체적 취약성	낮음	2,779	2.55	1.31	1.62	.89	1.60	.95	
	중간	502	2.81	1.29	1.93	.99	1.87	1.02	
	높음	317	2.91	1.34	2.10	1.22	2.09	1.23	
	F값		16.926***		55.198***		44.636***		
자기 통제력	낮음	949	2.74	1.34	1.93	1.07	1.91	1.13	
	중간	1,213	2.65	1.30	1.71	.91	1.68	.97	
	높음	1,437	2.50	1.30	1.55	.87	1.54	.91	
	F값		10.299***		46.363***		40.928***		
경비행	없음	3,194	2.61	1.31	1.68	.93	1.66	.10	
	있음	405	2.69	1.34	1.90	1.00	1.85	1.04	
	t값		-1.054		-4.127***		-3.585***		
중비행	없음	2,890	2.61	1.32	1.66	.93	1.65	.99	
	있음	708	2.65	1.27	1.87	1.00	1.84	1.03	
	t값		-.777		-5.080		-4.618***		
피해 경험	재산 피해	없음	3,129	2.60	1.31	1.66	.92	1.64	.97
		있음	469	2.76	1.34	2.02	1.11	1.96	1.17
		t값		-2.596**		-6.665***		-5.625***	
	폭력 피해	없음	3,319	2.60	1.31	1.68	.93	1.66	.98
		있음	280	2.80	1.39	1.98	1.16	1.94	1.19
		t값		-2.445*		-4.226***		-3.752***	
	학대 피해	없음	3,543	2.62	1.31	1.70	.95	1.68	.99
		있음	56	2.44	1.51	2.08	1.12	2.21	1.27
		t값		.881		-2.541*		-3.162**	
	괴롭힘	없음	3,241	2.58	1.30	1.67	.93	1.66	.98
		있음	357	2.99	1.35	1.98	1.07	1.91	1.13
		t값		-5.664***		-5.192***		-3.979***	

*p < .05, **p < .01, ***p < .001

2) 중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중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보면 <표 7-9>와 같다. 먼저 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에 비해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일반적 두려움의 경우 학년이 낮을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일반적 두려움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일반적 두려움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 중학교 1학년의 평균이 가장 높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거주지역 규모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보면,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 중소도시의 중학생이 가장 두려움이 높았으며, 다음은 읍면 지역, 대도시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에는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의 두려움 정도가 같았으며, 다음은 대도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의 중학생들이 재산범죄나 폭력범죄의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 두려움의 경우에는 지역 규모에 따라 두려움 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신체적 문제 때문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항목은 신체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체적 취약성 수준별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보면 일반적 두려움과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신체적 문제 때문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을 때가 많다고 응답할수록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문제가 있을수록 대인 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특성 중 하나로 자기통제력에 따른 두려움 차이를 보면, 자기통제력이 낮은 중학생일수록 일반적 두려움이나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위험한 행동을 선호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이와 관련하여 두려움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경비행 경험 유무와 관련해서 보면, 경비행 경험이 없는 중학생이 경비행 경험이 있는 중학생에 비해 일반적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비행 경험 유무에 따라서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비행에 이어서 개인의 재산, 폭력비행 경험, 즉 중비행 경험 유무에 따라서 두려움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중비행 경험이 없는 중학생이 중비행 경험이 있는 중학생에 비해 일반적 두려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비행경험 유무에 따른 일반적 두려움 수준 차이에서와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중비행 경험 유무에 따른 재산범죄 두려움의 차이를 보면,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즉, 중비행 경험이 있는 중학생이 중비행 경험이 없는 중학생에 비해 재산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중비행 경험 유무에 따른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개인적 특성 중 개인의 지난 1년간 피해경험 유무별로도 두려움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재산범죄 피해경험이 있는 중학생은 그렇지 않은 중학생에 비해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산범죄 피해경험이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에도 관련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재산범죄 피해경험 유무에 따라서 일반적 두려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1년간의 폭력범죄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두려움 정도를 보면, 재산범죄 피해경험과 마찬가지로 재산범죄,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지난 1년간 폭력범죄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산범죄, 폭력범죄 각각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 피해경험 유무에 따라서 일반적 두려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학생의 지난 1년간 성폭력 등 피해유무에 따라서 두려움 수준을 보면,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 두려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지난 1년간 성폭력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일반적 두려움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재산범죄나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산, 폭력범죄와 달리 성폭력 등의 피해경험이 일반적 두려움과도 관련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중학생의 지난 1년간 부모나 다른 보호자로부터의 신체적 학대 피해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학생의 지난 1년간 괴롭힘 피해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일반적 두려움과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 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일반적 두려움이 높았으며,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피해경험 유무별로 두려움의 차이를 보면, 재산, 폭력범죄 피해경험은 각각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었으며,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괴롭힘 피해경험은 일반적 두려움과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련되었다. 한편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신체적 학대 피해경험은 두려움과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9〉 중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구분	사례 수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성별	남자	1,951	1.91	1.04	1.66	.75	1.53	.79
	여자	1,797	2.76	1.14	1.86	.81	1.73	.88
	t 값		-24.011***		-7.745***		-7.288***	
학년	1학년	1,150	2.43	1.20	1.77	.80	1.66	.86
	2학년	1,188	2.33	1.18	1.76	.78	1.62	.84
	3학년	1,411	2.21	1.13	1.73	.79	1.59	.82
	F값		11.056***		.860		2.189	
지역 규모	대도시	1,549	2.28	1.15	1.70	.75	1.58	.80
	중소도시	1,629	2.35	1.19	1.81	.81	1.65	.85
	읍,면 지역	570	2.33	1.19	1.75	.80	1.65	.89
	F값		1.259		7.702***		3.757*	
신체적 취약성	낮음	2,850	2.28	1.16	1.69	.74	1.55	.78
	중간	588	2.41	1.17	1.94	.85	1.85	.95
	높음	311	2.46	1.26	1.98	.97	1.87	1.00
	F값		5.921**		39.157***		48.460***	
자기 통제력	낮음	1,063	2.37	1.18	1.92	.86	1.83	.93
	중간	1,564	2.35	1.16	1.78	.80	1.63	.83

구분		사례 수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높음	1,122	2.22	1.17	1.56	.65	1.42	.71	
	F값		5.856**		59.346***		68.704***		
	경비행	없음	2,337	2.41	1.18	1.76	.80	1.64	.87
	있음	1,412	2.16	1.13	1.74	.77	1.60	.80	
		t값	6.554***		.824		1.237		
중비행	없음	3,058	2.36	1.18	1.74	.78	1.61	.84	
	있음	690	2.13	1.11	1.82	.80	1.67	.82	
			t값	4.783***		-2.322*		-1.784	
피해 경험	재산 피해	없음	3,020	2.31	1.16	1.71	.76	1.60	.83
		있음	728	2.35	1.19	1.93	.85	1.72	.86
				t값	-.752		-6.529***		-3.321**
	폭력 피해	없음	3,546	2.92	1.17	1.73	.77	1.60	.83
		있음	203	2.36	1.14	2.09	.94	1.97	1.00
				t값	-.566		-5.214***		-5.135***
	성폭력 등 피해	없음	3,672	2.31	1.17	1.74	.78	1.61	.83
		있음	77	2.68	1.18	2.22	1.02	2.13	1.12
				t값	-2.710**		-4.034***		-3.995***
	학대 피해	없음	3,671	2.32	1.17	1.75	.79	1.62	.84
		있음	78	2.36	1.23	1.87	.83	1.80	.90
				t값	-.297		-1.285		-1.822
	괴롭힘 피해	없음	3,374	2.29	1.17	1.72	.77	1.60	.83
		있음	375	2.54	1.18	2.03	.90	1.82	.91
				t값	-3.882***		-6.363***		-4.354***

*p < .05, **p < .01, ***p < .001

3) 고등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고등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일반적 두려움과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과 지역규모별로는 일반적 두려움과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문제 때문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을수록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자기통제력 수준에 따른 두려움 차이를 보면,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자기통제력 수준이 낮을수록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비행과 중비행 경험 유무별로 두려움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경비행 경험 유무에 따라서 두려움의 차이를 보면 일반적 두려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경비행 경험이 없는 경우가 경비행 경험이 있는 경우에 비해 일반적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경비행 경험 유무에 따라서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등학생의 중비행 경험 유무에 따른 두려움 차이를 보면, 중비행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의 경우 재산, 폭력범죄의 가해와 피해의 중첩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중비행 경험 유무에 따라서 일반적 두려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등학생의 가해 경험에 이어서 피해경험에 따른 두려움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먼저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의 재산범죄 피해경험 유무별로 두려움의 차이를 보면, 재산범죄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는 피해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일반적 두려움과 재산, 폭력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의 폭력피해경험 유무별로 보면,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경우가 폭력피해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피해경험 유무에 따라서 일반적 두려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등학생의 지난 1년간 성폭력 등 피해유무별로 두려움 차이를 보면, 성폭력 등의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일반적 두려움이 높았으며,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았다.

지난 1년간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신체적 학대 피해경험 유무별로도 두려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신체적 학대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는 피해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일반적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으며,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 본 초등학생의 경우 학대피해 경험이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었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학대피해가 두려움과 관련

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고등학생의 경우 학대 피해가 재산범죄,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일반적 두려움과도 관련되었다.

지난 1년간의 괴롭힘 피해유무별로 두려움 차이를 보면, 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는 괴롭힘 피해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일반적 두려움과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피해경험 유무별로 두려움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피해경험이 일반적 두려움 뿐만 아니라 폭력,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련되었다. 즉 재산, 폭력범죄, 성폭력 등, 학대, 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는 피해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이다(폭력범죄 피해경험과 일반적 두려움의 관계는 제외).

〈표 7-10〉 고등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구분	사례 수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성별	남자	1,561	1.66	.86	1.71	.73	1.49	.72
	여자	1,430	2.63	1.09	1.87	.77	1.69	.82
	t 값		-26.784***		-6.014***		-6.959***	
학년	1학년	1,423	2.13	1.11	1.78	.77	1.58	.79
	2학년	1,568	2.11	1.07	1.79	.74	1.59	.77
	F값		.399		-.140		-.506	
지역 규모	대도시	1,258	2.10	1.08	1.77	.72	1.58	.76
	중소도시	1,288	2.15	1.09	1.79	.76	1.59	.77
	읍,면 지역	445	2.11	1.12	1.81	.82	1.59	.83
	F값		.590		.741		.074	
신체적 취약성	낮음	2,350	2.07	1.08	1.72	.70	1.52	.73
	중간	423	2.30	1.08	1.99	.84	1.82	.86
	높음	219	2.36	1.17	2.12	.88	1.85	.89
	F값		13.378***		48.644***		41.890***	
자기 통제력	낮음	822	2.27	1.12	1.98	.85	1.78	.86
	중간	1,232	2.15	1.05	1.79	.74	1.60	.77
	높음	937	1.95	1.08	1.60	.62	1.40	.65
	F값		19.297***		56.818***		54.920***	
경비행	없음	1,460	2.25	1.10	1.79	.74	1.60	.78
	있음	1,531	2.00	1.06	1.78	.76	1.57	.77

구분		사례 수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값	6.461***		.498		1.039		
중비형	없음	2,692	2.12	1.08	1.77	.74	1.57	.76	
	있음	299	2.11	1.13	1.94	.85	1.79	.87	
	t값		.258		-3.428**		-4.286***		
피해 경험	재산 피해	없음	2,368	2.10	1.08	1.73	.72	1.56	.76
		있음	623	2.21	1.12	1.98	.83	1.69	.84
		t값		-2.396*		-6.933***		-3.602***	
	폭력 피해	없음	2,859	2.12	1.09	1.77	.74	1.58	.77
		있음	132	2.20	1.08	2.11	.88	1.86	.84
		t값		-.851		-4.299***		-3.802*	
	성폭력 등 피해	없음	2,950	2.12	1.08	1.78	.75	1.58	.77
		있음	41	2.56	1.27	2.08	.89	1.96	.92
		t값		-2.245*		-2.590*		-3.097**	
	학대 피해	없음	2,910	2.11	1.08	1.77	.74	1.57	.76
		있음	81	2.68	1.18	2.26	.95	2.10	1.01
		t값		-4.739***		-4.618***		-4.671***	
	괴롭힘 피해	없음	2,807	2.10	1.08	1.77	.74	1.58	.77
		있음	184	2.49	1.17	2.00	.86	1.76	.88
		t값		-4.826***		-3.618***		-2.686*	

*p < .05, **p < .01, ***p < .001

나. 가족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1) 초등학생의 가족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개인적 특성에 이어서 가족특성에 따른 두려움 차이를 살펴 보았다.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를 보면, 가족의 구조적 특성에 해당하는 부모의 결혼상태, 동거가족, 부모 각각의 교육수준 및 직업유무의 경우 거의 대부분 일반적 두려움 및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가족구성만 일반적 두려움과 관련되었는데, 편부모와 형제자매 등과 같이 동거하는 경우 일반적 두려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부모+형제자매, 부모, 형제자매 등, 편부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 각각의 교육수준 및 부모 각각의 직업유무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특성 중 주관적 계층의 경우 세 가지 두려움과 모두 관련되었는데,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일반적 두려움 수준이 높았으며,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기능적 특성에 해당하는 부모의 감독, 부모와의 애착은 재산범죄,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보면, 부모 감독이 낮을수록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았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이 낮을수록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애착과 감독에 따라서 초등학교의 일반적 두려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 각각이 자주 술취하는 정도로 측정한 부모 일탈성의 경우도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어서 부모일탈성이 높을수록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일탈성이 초등학교의 일반적 두려움과는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폭력정도에 따라서는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배우자폭력이 많을수록 초등학교의 일반적 두려움과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1〉 초등학교의 가족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구분		사례 수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부모님 결혼 상태	결혼	3,333	2.61	1.30	1.70	.94	1.68	.99
	이혼 등	265	2.66	1.43	1.81	1.12	1.80	1.16
	t값		-.456		-1.598		-1.653	
동거 가족	편부/편모	53	2.19	1.33	1.78	1.14	1.75	1.17
	부모	370	2.47	1.26	1.69	.84	1.68	.91
	부모+형제자매 등	2,901	2.64	1.31	1.70	.95	1.67	.99
	편부/편모 +형제자매 등	267	2.72	1.40	1.82	1.10	1.85	1.17
	형제자매, 친척 등	37	2.46	1.53	1.62	.95	1.58	.90
	F값		3.267*		1.099		1.935	

구분		사례 수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아버지 교육 수준	중졸(중퇴)이하	35	2.59	1.34	1.74	1.22	1.71	1.23
	고졸(중퇴)이하	311	2.59	1.29	1.76	.92	1.75	.93
	대졸(중퇴)이하	1,584	2.59	1.31	1.64	.90	1.62	.96
	F값		.000		2.676		2.454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중퇴)이하	25	2.09	1.34	1.78	1.30	1.96	1.30
	고졸(중퇴)이하	380	2.58	1.27	1.70	.93	1.68	.98
	대졸(중퇴)이하	1,607	2.58	1.30	1.65	.90	1.62	.94
	F값		1.733		.844		1.126	
아버지 직업 유무	없음	83	2.43	1.16	1.78	1.07	1.75	1.06
	있음	3,475	2.62	1.32	1.70	.94	1.68	1.00
	t값		1.694		.612		.445	
어머니 직업 유무	없음	1,073	2.64	1.28	1.74	.95	1.71	1.00
	있음	2,494	2.61	1.33	1.69	.95	1.67	1.00
	t값		.559		2.530		1.241	
주관적 계층	하	196	2.88	1.31	2.00	1.04	1.94	1.13
	중	1,600	2.67	1.27	1.75	.95	1.74	.99
	상	1,803	2.54	1.35	1.63	.93	1.60	.99
	F값		8.716***		17.991***		15.106***	
부모 감독	낮음	939	2.62	1.32	1.86	1.01	1.84	1.07
	중간	1,227	2.61	1.26	1.76	.93	1.73	.99
	높음	1,433	2.62	1.36	1.56	.91	1.54	.95
	F값		.037		32.900***		28.319***	
부모 애착	낮음	968	2.63	1.28	1.90	.99	1.88	1.04
	중간	1,028	2.67	1.28	1.70	.91	1.67	.95
	높음	1,603	2.57	1.35	1.59	.94	1.58	.99
	F값		1.768		32.674***		26.776***	
부모 일탈	낮음	1,780	2.60	1.34	1.63	.92	1.61	.97
	중간	1,151	2.62	1.27	1.71	.91	1.71	.97
	높음	667	2.67	1.30	1.90	1.06	1.85	1.11
	F값		.682		19.785***		15.327***	
배우자 폭력	낮음	1,781	2.56	1.35	1.60	.93	1.60	.99
	중간	1,333	2.64	1.26	1.74	.91	1.70	.95
	높음	485	2.78	1.31	1.97	1.09	1.93	1.13
	F값		5.923**		30.662***		20.994***	

*p < .05, **p < .01, ***p < .001

2) 중학생의 가족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초등학생에 이어서 중학생의 가족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 보았다. 부모님의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중학생의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동거가족 구성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보면, 편부 혹은 편모하고만 사는 경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편부/편모와 형제자매 등과 같이 사는 경우, 형제자매나 친척 등과 같이 사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 등이 같이 사는 경우,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양부모와 같이 사는 중학생의 경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모 각각의 교육수준과 직업유무에 따라서 두려움 차이를 보면,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중학생의 경우에도 부모 각각의 교육수준이나 직업유무에 따라서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사대상자들이 응답한 주관적 계층에 따라서 두려움 수준을 살펴 보면, 주관적 계층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으며,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경우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부모감독과 관련해서 보면, 부모의 감독이 약할수록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감독은 한편으로 부모의 관심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부모의 자녀 일상에 대한 관심이 적을수록 자녀의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부모애착 정도에 따른 두려움 수준을 보면, 부모와의 애착이 약할수록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와의 애착과 감독수준에 따라서 중학생의 일반적 두려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 각각의 술취하는 정도로 측정한 부모의 일탈성 수준에 따라서는 중학생의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부모의 일탈성이 강할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으며,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배우자폭력수준에 따른 두려움의 차이를 보면,

배우자폭력이 많을수록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폭력 수준에 따라서 중학생의 일반적 두려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12〉 중학생의 가족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구분		사례 수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부모님 결혼 상태	결혼	3,324	2.32	1.17	1.75	.78	1.61	.84
	이혼 등	424	2.33	1.19	1.80	.83	1.70	.87
	t값		-.300		-1.186		-1.908	
동거 가족	편부/편모	62	2.31	1.30	1.91	.80	1.80	.85
	부모	349	2.19	1.19	1.74	.82	1.56	.85
	부모+형제자매 등	2,968	2.32	1.16	1.74	.77	1.61	.83
	편부/편모 +형제자매 등	313	2.43	1.22	1.84	.87	1.73	.91
	형제자매, 친척 등	57	2.19	.88	1.73	.74	1.68	.82
	F값		2.007		1.650		2.550*	
아버지 교육 수준	중졸(중퇴)이하	46	2.07	1.15	1.74	.79	1.85	.96
	고졸(중퇴)이하	693	2.34	1.15	1.74	.77	1.61	.79
	대졸(중퇴)이하	1,897	2.37	1.19	1.72	.76	1.58	.82
	F값		1.573		.083		2.565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중퇴)이하	38	2.09	1.03	1.71	.68	1.66	.81
	고졸(중퇴)이하	785	2.37	1.20	1.73	.72	1.59	.76
	대졸(중퇴)이하	1,888	2.34	1.16	1.73	.77	1.59	.82
	F값		1.070		.025		.150	
아버지 직업 유무	없음	96	2.25	1.17	1.80	.74	1.71	.89
	있음	3,589	2.32	1.17	1.75	.79	1.62	.84
	t값		.372		.311		1.024	
어머니 직업 유무	없음	910	2.37	1.20	1.78	.80	1.65	.87
	있음	2,790	2.30	1.16	1.74	.78	1.61	.83
	t값		2.389		1.405		1.347	
주관적 계층	하	382	2.44	1.19	1.89	.83	1.80	.89
	중	1,726	2.33	1.13	1.76	.79	1.64	.85
	상	1,640	2.28	1.20	1.72	.77	1.57	.82

구분	사례 수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F값	3.185*		8.022***		12.424***		
부모 감독	낮음	1,042	2.27	1.12	1.89	.86	1.79	.91
	중간	1,514	2.34	1.13	1.77	.79	1.64	.85
	높음	1,193	2.33	1.26	1.61	.69	1.45	.72
	F값	1.115		35.976***		48.998***		
부모 애착	낮음	805	2.39	1.20	1.94	.87	1.82	.89
	중간	1,315	2.32	1.08	1.80	.80	1.69	.86
	높음	1,628	2.28	1.22	1.62	.70	1.47	.77
	F값	2.284		49.404***		53.596***		
부모 일탈	낮음	1,761	2.27	1.20	1.68	.78	1.54	.84
	중간	1,252	2.29	1.09	1.77	.77	1.63	.80
	높음	735	2.49	1.22	1.89	.80	1.80	.89
	F값	9.657***		18.165***		25.097***		
배우자 폭력	낮음	1,627	2.30	1.20	1.68	.76	1.53	.82
	중간	1,350	2.29	1.14	1.77	.78	1.63	.82
	높음	771	2.39	1.16	1.87	.84	1.80	.88
	F값	2.047		16.198***		28.283***		

*p < .05, **p < .01, ***p < .001

3) 고등학생의 가족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분석한 결과는 <표 7-1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부모님의 결혼상태는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었다. 부모가 결혼상태인 경우는 이혼·사별·재혼·별거 등인 경우에 비해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으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과 달리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부모 결혼상태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됨을 보여준다. 부모 결혼상태에 따라서 일반적 두려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동거가족구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보면, 부모 결혼상태와 마찬가지로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었다. 동거가족 구성에 따른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보면, 편부/편모와만 사는 경우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부모없이 형제자매나 친척 등과 사는 경우, 편부/편모와 형제자매 등과 같이 사는 경우, 부모 및 형제자매

등과 같이 사는 경우, 부모와 사는 경우 등의 순이었다. 동거가족 구성에 따른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보면, 부모없이 형제자매나 친척 등과 같이 사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편부/편모와 사는 경우, 편부/편모와 형제자매 등과 같이 사는 경우, 부모 및 형제자매 등과 같이 사는 경우, 부모와 사는 경우 등의 순이었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부모와 같이 살지 않거나 편부/편모와 사는 경우는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 비해 재산범죄나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동거가족 구성에 따라서 고등학생의 일반적 두려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 각각의 교육수준에 따른 두려움을 보면,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등학생의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일반적 두려움이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일반적 두려움은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재산범죄,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부모 각각의 직업유무에 따른 두려움을 보면, 아버지의 직업유무에 따라서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가 직업이 없는 경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 평균이 1.80점으로 아버지가 직업이 있는 경우의 1.57점에 비해 높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아버지가 직업이 없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폭력범죄에 대해 더 두려워하는 것을 보여준다.

고등학생들이 응답한 주관적 계층에 따른 두려움을 보면,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낮았다. 이와 더불어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재산범죄나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높았으며, 재산범죄,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감독수준에 따른 두려움을 보면,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감독수준이 낮을수록 이러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의 집 밖에서의 일상에 대해 잘 알고 있을수록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감독수준에 따른 일반적 두려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고등학생의 부모 애착에 따른 두려움을 살펴 보면,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애착이 약할수록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높게 나타났다.

부모 각각의 술취하는 정도로 측정한 부모의 일탈성에 따른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 보면, 부모의 일탈성 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배우자폭력정도에 따른 두려움을 보면, 배우자폭력이 많을수록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이나 중고생에 비해 가족특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더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13〉 고등학생의 가족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구분		사례 수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부모님 결혼 상태	결혼	2,624	2.12	1.08	1.77	.74	1.57	.76
	이혼 등	367	2.14	1.12	1.88	.82	1.72	.87
	t값		-.380		-2.295*		-3.154***	
동거 가족	편부/편모	82	2.16	1.03	1.95	.77	1.78	.87
	부모	337	2.09	1.13	1.73	.71	1.51	.70
	부모+형제자매 등	2,260	2.12	1.08	1.77	.74	1.57	.76
	편부/편모 +형제자매 등	253	2.17	1.15	1.88	.86	1.69	.89
	형제자매, 친척 등	59	2.09	.97	1.93	.75	1.86	.89
	F값		.224		.3.250*		5.326***	
아버지 교육 수준	중졸(중퇴)이하	51	2.08	1.13	1.84	.90	1.64	.94
	고졸(중퇴)이하	743	2.15	1.11	1.78	.73	1.56	.77
	대졸(중퇴)이하	1,704	2.13	1.09	1.76	.74	1.57	.75
	F값		.155		.400		.217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중퇴)이하	35	2.56	1.09	1.88	.80	1.68	.90
	고졸(중퇴)이하	913	2.17	1.11	1.78	.75	1.59	.77
	대졸(중퇴)이하	1,588	2.11	1.08	1.76	.74	1.56	.75
	F값		3.544*		.671		.884	
아버지	없음	86	2.08	1.04	1.85	.82	1.80	.93

구분		사례 수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직업 유무	있음	2,857	2.12	1.09	1.78	.75	1.57	.77
	t값		.092		.720		7.164**	
어머니 직업 유무	없음	759	2.15	1.10	1.78	.76	1.57	.79
	있음	2,195	2.11	1.08	1.79	.75	1.59	.77
	t값		.669		.062		.399	
주관적 계층	하	414	2.22	1.13	1.95	.83	1.78	.91
	중	1,296	2.16	1.07	1.79	.76	1.59	.76
	상	1,281	2.05	1.09	1.73	.71	1.52	.73
	F값		5.359**		13.869***		18.126***	
부모 감독	낮음	758	2.09	.99	1.89	.81	1.73	.82
	중간	1,379	2.16	1.08	1.80	.73	1.61	.77
	높음	854	2.09	1.18	1.66	.70	1.43	.71
	F값		1.586		20.934***		30.371***	
부모 애착	낮음	898	2.23	1.05	1.94	.81	1.79	.85
	중간	863	2.13	1.04	1.81	.74	1.59	.75
	높음	1,230	2.04	1.14	1.65	.68	1.44	.70
	F값		8.054***		39.922***		55.948***	
부모 일탈	낮음	1,424	2.01	1.06	1.70	.71	1.49	.73
	중간	973	2.17	1.07	1.81	.75	1.62	.79
	높음	593	2.32	1.14	1.97	.80	1.78	.83
	F값		18.943***		28.501***		30.552***	
배우자 폭력	낮음	1,303	2.03	1.09	1.68	.71	1.49	.73
	중간	1,105	2.15	1.09	1.80	.72	1.61	.76
	높음	584	2.26	1.07	1.98	.85	1.77	.86
	F값		9.106***		31.673***		28.340***	

*p < .05, **p < .01, ***p < .001

다. 친구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1) 초등학생의 친구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친구특성일 것이다. 여기서는 초중고생별로 친구특성에 따른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초등학생의 경우를 보면, 친한 친구수가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수가 4명 이하인 경우는 친한 친구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

비해 일반적 두려움과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와의 애착도 초등학생의 두려움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와 애착이 강할수록 일반적 두려움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재산범죄,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의 비행수준에 따라서도 초등학생의 두려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친구의 비행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친한 친구의 비행에 대해 조사대상자 개인이 응답하는 친구의 비행 수준으로 살펴 보았다. 이와 더불어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지난 1년간 친한 친구의 징계(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등) 경험 유무 및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유무를 통해서도 친한 친구의 비행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보았다. 지난 1년간 친한 친구의 징계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의 두려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1년간 친한 친구의 학폭위 회부 유무에 따라서는 일반적 두려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폭위에 회부된 친구가 없는 사람이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에 비해 일반적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친한 친구의 학폭위 회부 유무에 따라서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친한 친구의 피해경험(괴롭힘과 폭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의 두려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친한 친구가 괴롭힘이나 폭행 피해를 당할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높았다. 또한 친한 친구가 괴롭힘이나 폭행 피해를 당할수록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4〉 초등학교의 친구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구분		사례 수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친한 친구 수	4명 이하	536	2.77	1.31	1.83	.99	1.78	1.05
	5명 이상	3,063	2.60	1.31	1.68	.94	1.67	.99
	t값		2.880**		3.440**		2.259*	
친구애착	낮음	886	2.74	1.32	1.89	1.02	1.84	1.05
	중간	1,484	2.61	1.27	1.71	.91	1.69	.98
	높음	1,229	2.54	1.36	1.56	.92	1.56	.98
	F값		5.686*		31.494***		20.866***	
친구비행	낮음	1,503	2.56	1.34	1.60	.91	1.60	.96
	중간	1,331	2.64	1.26	1.74	.93	1.71	.99
	높음	765	2.70	1.35	1.85	1.03	1.82	1.09
	F값		3.299*		19.492***		13.110***	
친구징계 경험유무	없음	3,256	2.62	1.31	1.70	.94	1.68	.99
	있음	342	2.58	1.32	1.78	1.05	1.74	1.07
	t값		.576		-1.365		-1.068	
친구 학폭위 회부유무	없음	3,425	2.63	1.32	1.71	.95	1.69	1.00
	있음	173	2.42	1.25	1.67	.94	1.67	.99
	t값		.045*		.495		.244	
친구 피해	낮음	2,500	2.58	1.33	1.62	.92	1.31	.96
	중간	969	2.71	1.24	1.88	.97	1.85	1.05
	높음	130	2.60	1.45	1.96	1.16	1.93	1.21
	F값		3.429*		32.460***		24.764***	

*p < .05, **p < .01, ***p < .001

2) 중학생의 친구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중학생을 대상으로 친구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분석한 결과는 〈표 7-15〉에 제시되어 있다. 친한 친구수와 관련해서 보면, 친한 친구수에 따른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친한 친구수가 4명 이하인 경우는 5명 이상인 경우에 비해 일반적 두려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친한 친구수가 5명 이상인 경우가 4명 이하인 경우에 비해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와의 애착정도에 따른 두려움 차이를 보면, 친한 친구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았으며, 친구와의 애착이 약할수록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친구의 비행수준별로 보면, 친구의 비행수준이 낮을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비행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적 두려움은 낮았다. 반면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는 반대로 나타났다. 즉 친한 친구의 비행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두려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친한 친구의 지난 1년간 징계 유무에 따라서 두려움을 살펴 보면, 지난 1년간 징계받은 친구가 없는 경우는 징계받은 친구가 있는 경우에 비해 일반적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친구의 징계 경험 유무에 따라서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친한 친구의 지난 1년간 학폭위 회부경험 유무에 따라서도 일반적 두려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친한 친구의 지난 1년간 징계경험 유무와 마찬가지로 지난 1년간 학폭위에 회부된 친구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해 일반적 두려움이 높았다. 친한 친구의 지난 1년간 학폭위 회부경험 유무에 따라서 중학생의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친한 친구의 피해(괴롭힘, 폭행)경험에 따라서는 중학생의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친한 친구가 피해를 많이 당할수록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으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한 친구의 피해수준에 따라서 일반적 두려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15〉 중학생의 친구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구분		사례 수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친한 친구 수	4명 이하	607	2.45	1.16	1.64	.89	1.79	.91
	5명 이상	3,142	2.29	1.17	1.72	.76	1.59	.82
	t값		3.066**		5.779***		4.986***	
친구애착	낮음	778	2.44	1.15	1.98	.92	1.85	.93
	중간	1,723	2.34	1.12	1.76	.76	1.65	.84
	높음	1,247	2.20	1.24	1.60	.70	1.45	.74
	F값		10.472***		58.234***		57.414***	
친구비행	낮음	1,752	2.38	1.22	1.69	.77	1.57	.84
	중간	1,009	2.34	1.11	1.77	.76	1.62	.82
	높음	987	2.19	1.12	1.84	.84	1.72	.87
	F값		8.491***		11.864***		9.998***	
친구징계 경험유무	없음	2,965	2.36	1.17	1.77	.78	1.64	.85
	있음	784	2.16	1.17	1.71	.80	1.58	.82
	t값		4.141***		1.870		1.794	
친구 학폭위 회부유무	없음	3,213	2.34	1.17	1.76	.78	1.62	.83
	있음	536	2.21	1.18	1.74	.85	1.61	.89
	t값		2.408*		.487		.293	
친구 피해	낮음	2,647	2.33	1.19	1.69	.76	1.57	.82
	중간	800	2.28	1.09	1.83	.79	1.68	.82
	높음	301	2.31	1.20	2.07	.94	1.97	.98
	F값		.452		36.208***		35.176***	

*p < .05, **p < .01, ***p < .001

3) 고등학생의 친구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고등학생의 친구특성에 따른 두려움 차이를 보면, 친한 친구수에 따른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수가 4명 이하인 경우는 친한 친구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 비해 일반적 두려움이 높았으며,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게 나타났다. 친한 친구수가 적은 고등학생의 경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친한 친구와의 애착수준별로도 세 가지 유형의 두려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친한 친구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친한 친구와의 애착이 약할수록 일반적인 두려움 뿐만 아니라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게 나타났다.

친한 친구의 비행수준에 따른 두려움 차이를 보면, 친구의 비행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적 두려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구의 비행수준이 낮을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높았다. 이와는 반대로 친구의 비행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높게 나타났다.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도 대체로 친구의 비행수준이 높을수록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친한 친구의 지난 1년간 징계경험 유무와 관련해서는 일반적 두려움과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 두려움의 경우를 보면, 친한 친구가 징계경험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 두려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는 친한 친구의 징계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두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의 지난 1년간 징계경험 유무별로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친한 친구의 지난 1년간 학폭위 회부 유무에 따른 두려움 정도도 앞의 징계 경험 유무에 따른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친한 친구가 학폭위에 회부된 적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해 일반적 두려움이 높았다.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친한 친구가 학폭위에 회부된 적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친한 친구의 지난 1년간 학폭위 회부여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친한 친구의 범죄피해 경험(괴롭힘당하거나 맞는 것)에 따른 두려움을 보면, 친한 친구가 피해를 당할수록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가 피해를 당할 경우 목격하거나 인지한 상태에서 재산범죄나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표 7-16〉 고등학생의 친구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구분		사례 수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친한 친구 수	4명 이하	676	2.24	1.09	1.94	.80	1.74	.84
	5명 이상	2,315	2.09	1.08	1.74	.73	1.54	.75
	t값		3.272**		5.855***		5.549***	
친구애착	낮음	904	2.26	1.05	1.95	.79	1.76	.83
	중간	1,139	2.12	1.06	1.80	.74	1.60	.76
	높음	948	1.99	1.14	1.61	.68	1.41	.70
	F값		14.248***		51.581***		49.243***	
친구비행	낮음	1,151	2.21	1.14	1.74	.73	1.54	.78
	중간	1,135	2.11	1.06	1.76	.72	1.54	.72
	높음	705	2.00	1.04	1.90	.81	1.73	.84
	F값		7.642***		11.450***		16.688***	
친구징계경험유무	없음	2,299	2.17	1.09	1.80	.75	1.58	.78
	있음	692	1.95	1.05	1.75	.76	1.60	.77
	t값		4.864***		1.354		-.364**	
친구 학폭위회부유무	없음	2,565	2.15	1.08	1.79	.75	1.58	.77
	있음	426	1.96	1.11	1.76	.78	1.63	.82
	t값		3.227**		.678		-1.278*	
친구 피해	낮음	2,203	2.11	1.11	1.71	.71	1.50	.73
	중간	559	2.16	1.01	1.95	.78	1.76	.80
	높음	229	2.13	1.04	2.11	.88	2.02	.89
	F값		.472		47.548***		68.144***	

*p < .05, **p < .01, ***p < .001

라. 학교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1) 초등학교의 학교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초등학교의 학교 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분석한 결과는 〈표 7-17〉에 제시되어 있다. 학교규모별로 보면, 일반적 두려움의 경우 학교규모가 200-600명 미만인 경우 두려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6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학교규모 200-600명 미만인 경우에 두려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6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규모가 작은 경우에 일반적 두려움이나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경비원 유무에 따른 두려움 차이를 보면, 학교에 경비원이 있는 경우 일반적 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범죄나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경비원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의 출입문통제에 따라서는 세 가지 두려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사대상자들에게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인지여부 및 신뢰여부에 대해 살펴 보았으며, 이러한 요인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 보았다. 먼저 학교전담경찰관 인지여부에 따른 두려움 차이를 보면, 학교전담경찰관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알고 있는 경우에 비해 일반적 두려움과 재산, 폭력범죄 두려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당할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잘 도와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른 두려움 차이를 보면, 잘 도와 줄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았다. 반면, 일반적 두려움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의 폭력예방노력 정도에 따른 일반적,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의 폭력예방노력이 적을수록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의 폭력예방노력이 많을수록 세 가지 두려움이 낮았다. 학교의 응집력 수준과 관련해서 보면, 학교의 응집력이 낮을수록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규칙의 적정성은 학교 학생들의 규칙준수정도, 규칙위반에 대한 처벌의 공정성, 규칙적용의 엄격성 등에 대한 인식을 합하여 구성되었다. 학교규칙 문화의 적정성에 따른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초등학생들이 학교 학생들의 규칙준수정도가 낮으며, 규칙적용이 엄격하지 않고, 규칙위반에 대한 처벌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이다.

교사의 지지와 관련해서 보면, 교사의 지지 수준에 따라서 초등학생의 일반적 두려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교사의 지지가 약할수록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초등학생이 응답한 자신의 학교성적과 관련해서 보면,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학교성적을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례는 제외함). 반면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이 세 가지 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7-17〉 초등학생의 학교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구분		사례수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학교규모	200명 미만	97	2.36	1.33	1.53	.87	1.53	.93
	200-600명 미만	812	2.69	1.33	1.78	1.01	1.76	1.07
	600명 이상	2,689	2.61	1.31	1.69	.93	1.67	.98
	F값		3.152*		5.031**		4.076*	
경비원 유무	없음	326	2.78	1.41	1.65	.96	1.66	1.04
	있음	3,272	2.60	1.30	1.71	.95	1.69	1.00
	t값		2.249*		-1.132		-.498	
출입문 통제	없음	346	2.52	1.32	1.64	.98	1.65	1.05
	있음	3,253	2.63	1.31	1.71	.95	1.69	1.00
	t값		-1.481		-1.245		-.695	
학교전담경찰관 인지도	모름	1,903	2.68	1.30	1.76	.97	1.74	1.02
	알고 있음	1,695	2.54	1.32	1.65	.92	1.63	.97
	t값		3.172**		3.425**		3.296**	
학교전담경찰관 신뢰	낮음	160	2.79	1.37	1.94	1.01	1.84	1.06
	중간	577	2.67	1.30	1.81	.96	1.79	1.00
	높음	2,861	2.60	1.31	1.67	.94	1.65	1.00
	F값		2.292		10.490***		6.347**	
학교폭력에 방노력	낮음	1,210	2.71	1.33	1.85	1.00	1.82	1.06
	중간	1,600	2.63	1.26	1.68	.91	1.65	.95
	높음	789	2.44	1.38	1.53	.92	1.53	.98
	F값		10.566***		29.262***		21.945***	
학교응집	낮음	957	2.74	1.28	1.84	.97	1.82	1.02
	중간	1,627	2.64	1.30	1.71	.94	1.68	.98
	높음	1,014	2.46	1.34	1.56	.93	1.57	1.00

구분		사례수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F값			12.378***		22.286***		16.313***	
학교규칙문화 적성	낮음	1,080	2.73	1.31	1.80	.98	1.79	1.04
	중간	1,573	2.60	1.29	1.71	.94	1.68	1.00
	높음	946	2.51	1.35	1.58	.92	1.56	.95
	F값		7.401**		14.836***		13.251***	
교사지지	낮음	795	2.70	1.28	1.80	.93	1.78	.99
	중간	1,261	2.57	1.26	1.73	.93	1.70	.96
	높음	1,542	2.61	1.37	1.63	.98	1.62	1.04
	F값		2.451		8.845***		7.424**	
학교성적	하	276	2.73	1.33	2.06	1.14	1.97	1.10
	중	996	2.70	1.30	1.70	.93	1.69	.98
	상	1,848	2.54	1.30	1.61	.88	1.58	.94
	F값		6.290**		28.976***		21.205***	

*p < .05, **p < .01, ***p < .001

2) 중학생의 학교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특성에 따른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분석해 보았다. 학교의 객관적 특성 중 하나인 학교규모에 따른 두려움을 보면, 학교규모가 200명 미만인 경우 일반적 두려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200-600명 미만, 600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높은 것이다. 이 외에 학교규모에 따라서 재산범죄나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에 경비원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는 일반적 두려움이나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에서 출입문 통제를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는 일반적 두려움이 차이를 보였다. 출입문 통제가 없는 경우는 출입문 통제가 있는 경우에 비해 일반적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출입문 통제여부에 따른 재산범죄,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조사대상이 되는 중학생에게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이를 두 개로 분류하였다(‘전혀 모른다’와 ‘거의 모른다’/‘어느 정도 안다’와

‘매우 잘 안다’). 이러한 학교전담경찰관 인지여부에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일반적 두려움이 낮았으며,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수준도 두려움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전담경찰관이 피해를 당할 경우 잘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일반적 두려움 및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폭력예방노력 정도, 학교 응집성, 규칙문화 적정성에 따른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폭력예방노력과 관련해서 보면, 학교에서 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할수록 일반적 두려움과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의 응집력이 높을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낮았으며,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규칙문화(학생들의 규칙준수정도, 규칙위반에 대한 처벌의 공정성, 규칙적용의 엄격성) 적정성에 대한 인식도 두려움과 관련되었는데, 학교 규칙문화가 긍정적일수록 일반적 두려움과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지지에 따라서도 세 가지 유형의 두려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사의 지지가 강할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자기보고식 성적수준과 관련해서 보면, 성적이 재산범죄,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었는데, 그 내용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학교성적인 상인 경우에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성적이 하, 중인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성적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성적이 하인 경우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중, 상으로 순이었다.

〈표 7-18〉 중학생의 학교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구분	사례 수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학교규모	200명 미만	137	2.64	1.20	1.74	.68	1.56	.73
	200-600명 미만	1,728	2.32	1.17	1.76	.81	1.65	.87
	600명 이상	1,884	2.30	1.16	1.74	.78	1.60	.82
	F값		5.539**		.280		1.643	
경비원 유무	없음	957	2.34	1.19	1.74	.79	1.60	.84
	있음	2,791	2.31	1.16	1.76	.79	1.63	.84
	t값		.672		-.627		-1.160	
출입문 통제	없음	817	2.40	1.22	1.77	.77	1.61	.83
	있음	2,932	2.29	1.15	1.75	.79	1.63	.84
	t값		2.430*		.767		-.542	
학교전담경찰관 인지여부	모름	2,230	2.36	1.17	1.78	.80	1.65	.86
	알고 있음	1,518	2.26	1.17	1.72	.77	1.59	.81
	t값		2.639**		2.322*		2.182*	
학교전담경찰관 신뢰	낮음	313	2.46	1.26	1.90	.92	1.80	.95
	중간	1,082	2.38	1.13	1.84	.80	1.71	.85
	높음	2,354	2.27	1.17	1.69	.76	1.56	.82
	F값		5.988**		17.943***		19.199***	
학교폭력에 방노력	낮음	1,142	2.44	1.18	1.89	.85	1.78	.90
	중간	1,605	2.35	1.12	1.75	.77	1.60	.81
	높음	1,003	2.14	1.22	1.60	.70	1.48	.78
	F값		17.882***		37.539***		37.413***	
학교응집	낮음	1,379	2.43	1.15	1.91	.86	1.77	.89
	중간	1,334	2.35	1.14	1.75	.76	1.64	.84
	높음	1,036	2.12	1.21	1.56	.66	1.41	.72
	F값		21.279***		61.240***		56.998***	
학교규칙문 화 적정성	낮음	1,310	2.45	1.14	1.89	.86	1.77	.91
	중간	1,103	2.40	1.18	1.77	.78	1.65	.83
	높음	1,336	2.12	1.17	1.60	.69	1.46	.75
	F값		30.099***		47.779***		47.660***	
교사지지	낮음	1,410	2.43	1.17	1.86	.83	1.73	.87
	중간	1,432	2.28	1.13	1.74	.76	1.63	.83
	높음	907	2.20	1.22	1.61	.74	1.45	.79
	F값		12.622***		29.029***		29.865***	
학교성적	하	957	2.36	1.23	1.73	.78	1.72	.91
	중	1,036	2.31	1.13	1.71	.75	1.60	.79
	상	1,525	2.30	1.17	1.83	.84	1.58	.83
	F값		.801		6.635**		8.483***	

*p < .05, **p < .01, ***p < .001

3) 고등학생의 학교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고등학생의 학교 특성에 따른 두려움 차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는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의 경비원 유무에 따라서 두려움을 보면, 경비원이 없는 경우는 경비원이 있는 경우에 비해 일반적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 경비원 유무에 따른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교 출입문 통제여부에 따른 두려움을 보면, 출입문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통제하는 경우에 비해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약간 높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인지여부는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었다. 즉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정도에 따른 두려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 두려움과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가 중간인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신뢰가 낮은 집단, 신뢰가 높은 집단의 순이었다.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에는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집단에서 두려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두려움에서 공통적인 것은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집단에서 두려움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학교의 폭력예방노력에 따른 두려움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학교에서 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할수록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응집력의 경우에도 응집력이 강할수록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교규칙문화(학생들의 규칙준수정도, 규칙위반에 대한 처벌의 공정성, 규칙적용의 엄격성)의 적정성과 교사의 지지에 따른 두려움들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 학교규칙문화가 긍정적일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낮았으며,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낮았다. 교사의 지지수준별로 보면, 교사의 지지가 강할수록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자기보고식 성적 수준에 따라서는 일반적 두려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 두려움의 경우 성적이 낮을수록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적이 하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일반적 두려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중, 상의 순이었다.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보고식 성적 수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7-19〉 고등학생의 학교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구분	사례수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학교규모	200명 미만	36	1.98	1.09	1.95	.88	1.63	.91
	200-600명 미만	566	2.19	1.12	1.78	.79	1.62	.80
	600명 이상	2,389	2.11	1.08	1.78	.74	1.58	.77
	F값		1.702		.905		.759	
경비원 유무	없음	625	2.23	1.13	1.78	.75	1.61	.78
	있음	2,366	2.09	1.08	1.79	.75	1.58	.78
	t값		2.806**		-.050		.733	
출입문 통제	없음	544	2.15	1.10	1.79	.75	1.60	.03
	있음	2,447	2.12	1.09	1.78	.75	1.59	.02
	t값		.655		.248		.373	
학교전담 경찰관 인지여부	모름	1,948	2.13	1.09	1.80	.76	1.61	.79
	알고 있음	1,043	2.10	1.09	1.75	.73	1.54	.74
	t값		.706		1.842		2.399**	
학교전담 경찰관 신뢰	낮음	383	2.21	1.11	1.86	.81	1.64	.83
	중간	1,007	2.22	1.11	1.84	.76	1.67	.79
	높음	1,601	2.04	1.06	1.73	.72	1.52	.75
	F값		10.825***		7.989***		12.554***	
학교폭력예방 노력	낮음	1,071	2.27	1.09	1.89	.78	1.73	.81
	중간	1,279	2.16	1.07	1.79	.75	1.58	.77
	높음	641	1.80	.95	1.59	.66	1.37	.67
	F값		39.901***		33.283***		44.143***	

구분		사례수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학교응집	낮음	1,060	2.31	1.10	1.95	.81	1.76	.84
	중간	1,146	2.15	1.07	1.79	.74	1.59	.75
	높음	785	1.82	1.03	1.55	.61	1.36	.65
	F값		48.466***		65.091***		63.152***	
학교규칙문화 적정성	낮음	926	2.31	1.11	1.94	.83	1.74	.85
	중간	1,353	2.16	1.07	1.79	.73	1.60	.76
	높음	712	1.80	1.02	1.58	.64	1.36	.64
	F값		47.761***		47.484***		49.276***	
교사지지	낮음	889	2.30	1.09	1.91	.79	1.73	.83
	중간	1,190	2.16	1.06	1.79	.73	1.62	.76
	높음	912	1.90	1.09	1.66	.71	1.41	.70
	F값		33.037***		26.790***		40.198***	
학교성적	하	963	2.18	1.13	1.79	.76	1.60	.78
	중	914	2.12	1.04	1.80	.75	1.59	.77
	상	977	2.05	1.09	1.75	.75	1.54	.77
	F값		3.159*		1.145		1.783	

*p < .05, **p < .01, ***p < .001

마. 거주지역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1) 초등학교생의 거주지역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여기서는 동네나 등학교길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 보았다. 초등학교생에 대한 자료는 <표 7-20>과 같다. 동네의 물리적 무질서 수준별로 보면, 동네의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동네의 물리적 무질서가 심할수록 재산범죄,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무질서의 경우를 보면, 물리적 무질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높았으며, 재산범죄,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았다.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에 따른 두려움 차이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관계에 따른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 두려움의 경우 이웃관계의 친밀성이 중간인 경우에

두려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이웃관계의 친밀성이 약한 경우, 친밀성이 강한 경우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이웃관계의 친밀성이 낮을수록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사람들이 주변에서 피해를 당할 경우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이웃참여와 두려움의 관계를 보면, 일반적 두려움은 이웃참여가 중간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이웃참여가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의 순이었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이웃참여가 높을수록 두려움이 낮았으며, 이웃참여가 낮을수록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동네 경찰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두려움의 관계를 보면, 경찰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강할수록 초등학교생의 일반적 두려움이 낮았으며,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동네나 등하교길 특성이 초등학교생의 일반적 두려움이나 구체적인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거주지역의 응집, 무질서 환경 개선, 지역사회 경찰활동 등이 초등학교생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표 7-20〉 초등학교생의 동네 및 등하교길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구분	사례수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물리적 무질서	낮음	1,116	2.40	1.31	1.52	.83	1.50	.89
	중간	1,737	2.69	1.28	1.74	.93	1.71	.98
	높음	745	2.75	1.35	1.91	1.10	1.90	1.16
	F값		21.916***		40.364***		38.101***	
사회적 무질서	낮음	1,234	2.48	1.31	1.53	.86	1.52	.92
	중간	1,545	2.64	1.29	1.70	.91	1.67	.94
	높음	819	2.78	1.35	1.98	1.09	1.96	1.16
	F값		13.510***		57.385***		49.091***	
이웃관계	약함	946	2.64	1.35	1.76	.98	1.73	1.03

구분		사례수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중간	1,647	2.66	1.27	1.71	.93	1.70	.99
	강함	1,005	2.52	1.33	1.64	.95	1.61	.99
	F값		4.257*		3.691*		4.401*	
이웃참여	낮음	998	2.61	1.32	1.78	.95	1.77	1.02
	중간	1,762	2.64	1.26	1.69	.91	1.66	.94
	높음	839	2.58	1.41	1.65	1.03	1.63	1.08
	F값		.530		5.431**		5.847*	
지역경찰에 대한 신뢰	낮음	1,219	2.68	1.27	1.78	.95	1.76	1.00
	중간	1,398	2.64	1.30	1.73	.95	1.71	1.01
	높음	982	2.51	1.37	1.58	.95	1.56	.99
	F값		4.956*		12.271***		11.659***	

*p < .05, **p < .01, ***p < .001

2) 중학생의 거주지역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중학생의 동네 및 등하교길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분석한 결과는 <표 7-21>과 같다. 동네 및 등하교길의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에 따른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물리적 무질서와 관련해서 보면, 물리적 무질서가 심할수록 중학생의 일반적 두려움이 높았으며, 재산범죄,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및 등하교길의 사회적 무질서의 경우도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높아질수록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동네 및 등하교길 무질서가 청소년의 두려움에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웃간의 친밀성, 통합성을 보여주는 이웃관계와 두려움의 관계를 보면,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이웃들간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았으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관계에 따른 일반적 두려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동네에서 범죄피해나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동네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묻는 이웃참여의 경우를 보면, 이웃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웃 참여 수준이 낮을수록 두려움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동네 경찰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서 보면, 동네 경찰에 대해 신뢰할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낮았으며,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도 초등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네 및 등하교길 특성이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7-21〉 중학생의 동네 및 등하교길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구분		사례수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물리적 무질서	낮음	917	2.08	1.15	1.56	.66	1.42	.72
	중간	1,810	2.35	1.15	1.77	.76	1.64	.82
	높음	1,021	2.48	1.19	1.90	.90	1.77	.93
	F값		30.720***		45.474***		45.490***	
사회적 무질서	낮음	891	2.10	1.20	1.54	.65	1.40	.69
	중간	1,729	2.32	1.11	1.76	.74	1.63	.81
	높음	1,129	2.49	1.21	1.90	.91	1.79	.95
	F값		27.134***		54.630***		54.005***	
이웃관계	약함	1,217	2.33	1.15	1.79	.83	1.66	.88
	중간	1,751	2.35	1.13	1.75	.75	1.63	.82
	강함	780	2.24	1.28	1.70	.78	1.55	.82
	F값		2.106		3.199*		4.188*	
이웃참여	낮음	1,417	2.35	1.13	1.82	.82	1.69	.87
	중간	1,610	2.37	1.17	1.74	.75	1.61	.81
	높음	722	2.05	1.23	1.64	.80	1.51	.84
	F값		11.761***		13.157***		11.316***	
지역경찰에 대한 신뢰	낮음	920	2.45	1.18	1.90	.85	1.78	.89
	중간	1,790	2.34	1.11	1.77	.77	1.64	.83
	높음	1,039	2.16	1.24	1.60	.72	1.45	.77
	F값		15.690***		37.163***		41.630***	

*p < .05, **p < .01, ***p < .001

3) 고등학생의 거주지역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고등학생의 동네 및 등하교길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동네 및 등하교길의 물리적 무질서 수준에 따른 두려움을 보면,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높았다.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및 등하교길의 사회적 무질서 수준별로 보면,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높았으며,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주민간의 친밀성, 통합성을 보여주는 이웃관계에 따른 두려움을 보면,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웃관계가 친밀할수록 재산범죄,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것이다. 이웃관계 친밀성에 따른 일반적 두려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동네에서 피해나 괴롭힘을 당할 경우 이웃이 도와줄 것이라는 항목을 통해 측정된 이웃참여 정도에 따른 두려움을 보면, 이웃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이웃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를 당할 경우 주변에서 도와줄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 두려움이나 구체적인 범죄유형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네 경찰에 대한 신뢰정도에 따른 두려움을 보면, 동네 경찰에 대해 신뢰할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네 경찰에 대해 신뢰할수록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낮았다. 이러한 차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7-22〉 고등학생의 동네 및 등하교길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구분	사례수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물리적 무질서	낮음	778	1.80	1.02	1.61	.63	1.39	.69
	중간	1,372	2.11	1.05	1.78	.74	1.59	.75
	높음	841	2.43	1.12	1.96	.83	1.76	.85

구분	사례수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F값	71.524***		45.646***		46.325***		
사회적 무질서	낮음	880	1.87	1.05	1.61	.64	1.40	.68
	중간	1,347	2.14	1.05	1.81	.75	1.60	.76
	높음	763	2.37	1.14	1.94	.82	1.78	.86
	F값	43.280***		43.031***		51.021***		
이웃관계	약함	1,163	2.14	1.10	1.76	.73	1.60	.76
	중간	1,260	2.15	1.06	1.83	.76	1.63	.78
	강함	568	2.03	1.12	1.73	.76	1.53	.79
	F값	2.664		4.294*		3.500*		
이웃참여	낮음	1,257	2.23	1.10	1.90	.79	1.70	.82
	중간	1,291	2.12	1.04	1.75	.71	1.55	.74
	높음	444	1.83	1.12	1.56	.68	1.36	.71
	F값	23.221***		35.518***		34.114***		
지역경찰에 대한 신뢰	낮음	936	2.26	1.09	1.91	.79	1.73	.84
	중간	1,453	2.17	1.08	1.78	.74	1.58	.75
	높음	601	1.79	1.05	1.59	.67	1.39	.69
	F값	36.974***		35.389***		35.353***		

*p < .05, **p < .01, ***p < .001

2.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개인적 특성, 가족 특성, 친구 특성, 학교 특성, 거주지역 특성 변수들을 포함하는 다변량 분석을 시도하였다. 범죄피해에 대한 다변량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변량 분석(t-검정 또는 ANOVA)에 사용된 독립변수들 가운데 종속변수와의 유의한 상관성이 확인된 변수들을 위주로 선별하되, 독립변수들 간 상관성이 크거나 결측치가 많은 변수들을 제외시키거나 병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범죄피해경험과 관련하여 전체피해와 모든 범죄유형들에 대한 피해를 독립변수로 포함시킬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우려되어 가장 대표성이 큰 전체피해만 포함시켰다.⁴⁴⁾ 아울러 이변량 분석과 마찬가지로 보호, 노출, 유인성 등 일상활동에 관한 변수들은 두려움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에 가까워 다변량 분석에서도 제외했

44) 실제 모든 유형의 범죄피해경험을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일부 피해경험 변수들이 두려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등 회귀계수의 왜곡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였다.

다. 최종적으로 31개의 독립변수들로 이루어진 모형이 구축되었는데, 해당 변수들에 대한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본 모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결과보고는 지면관계상 생략하였다. 범죄피해와 달리 두려움은 5점 척도로 측정되어 연속변수로 간주하는 관례에 따라 다중회귀모형을 구축·분석하였다.

일반적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은 성별, 학년, 신체적 취약성, 자기통제력, 피해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과 저학년의 일반적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컸다. 신체적으로 취약하거나 과거 범죄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일수록 두려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통제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두려움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가족 특성 중에는 주관적 계층, 부모감독, 부모애착, 부모 이탈성, 배우자폭력이 일반적 두려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두려움은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부모의 감독수준,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 부모의 이탈정도, 배우자폭력과 일반적 두려움은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부모의 감독수준 및 애착수준 관련 결과는 다소 의외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평소 부모가 자녀의 안전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환기시킨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친구 특성 중에는 친구애착, 친구비행, 친구징계경험이 일반적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친구피해는 일반적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 특성 중에는 학교경찰 인지도, 학교 규칙문화가 일반적 두려움과 부적 관계를 보인 반면 학교폭력예방 노력은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 역시 학교 측의 학교폭력예방 노력으로 인해 안전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주위와 관심이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 특성에 있어서는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가 일반적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웃참여 수준이 일반적 두려움과 정적 관계를 나타낸 점은 의외의 결과이다.

〈표 7-23〉 두려움에 대한 다중회귀모형 분석

구분	변수	항목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b	t	b	t	b	t
개인 특성	성별	남자	-.80***	-33.68	-.19***	-11.35	-.22***	-12.41
		여자 ^a						
	학년	초4	.57***	11.66	-.11**	-3.24	.08*	2.22
		초5	.47***	10.34	-.08*	-2.42	.10**	3.01
		초6	.33***	7.63	-.07*	-2.30	.10**	2.94

구분	변수	항목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b	t	b	t	b	t
		중1	.26***	5.80	-.05	-1.43	.04	1.21
		중2	.20***	4.58	-.03	-1.04	.02	.44
		중3	.05	1.12	-.07*	-2.50	-.03	-.82
		고1	.01	.74	.03	.85	.02	.59
		고2 ^a						
	신체적취약성	na	.09***	7.37	.09***	10.95	.09***	10.20
	자기통제력	na	-.08***	-4.03	-.08***	-5.65	-.09***	-6.12
	비행경험	있음	-.04	-1.72	-.03	-1.57	-.03	-1.60
	피해경험(전체)	있음	.08**	3.02	.17***	9.62	.09***	4.70
	가족 특성	부모결혼상태	이혼·사별 등	-.03	-.86	-.01	-.54	.01
결혼 ^a								
주관적계층		na	-.03**	-2.70	-.02**	-2.97	-.03**	-3.22
부모감독		na	.03*	2.22	-.02*	-2.11	-.03**	-3.00
부모애착		na	.08***	4.50	-.01	-1.04	-.03*	-2.08
부모일탈성		na	.06***	3.71	.04**	3.38	.04***	3.83
배우자폭력		na	.04*	2.18	.04**	3.35	.04***	3.50
친구 특성	친한친구수	na	-.01	-.77	-.03***	-3.85	-.02**	-3.38
	친구애착	na	-.07***	-3.83	-.07***	-5.40	-.07***	-4.71
	친구비행	na	-.04*	-2.11	-.04**	-2.61	-.05**	-3.25
	친구징계경험	있음	-.07*	-2.13	-.03	-1.46	-.03	-1.24
	친구학폭위화부	있음	-.04	-.97	-.08**	-2.72	-.04	-1.25
	친구피해	na	.07**	2.99	.12***	7.44	.14***	8.75
학교 특성	학교규모	200명 미만	.01	.19	-.08	-1.58	-.10*	-1.99
		200-600명 미만	.05	1.82	.02	1.23	.04*	2.14
		600명 이상 ^a						
	출입문통제	있음	-.04	-1.50	.02	.76	.02	1.09
	학교경찰인지도	na	-.02**	-1.40	.00	.32	.00	.06
	학교경찰신뢰도	na	-.01	-.88	.24*	2.17	.03**	2.79
	학교폭력예방노력	na	.04*	2.18	-.01	-.78	-.01	-.85
	학교응집	na	-.04	-1.66	-.00	-.24	.03	1.69
	학교규칙문화	na	-.04*	-2.47	-.02	-1.44	-.02	-1.18
교사지지	na	.03	1.67	.02	1.89	.00	.23	
지역 특성	물리적무질서	na	.13***	7.24	.06***	4.27	.06***	4.17
	사회적무질서	na	.05**	2.66	.07***	5.27	.07***	5.59
	이웃관계	na	-.01	-.49	.02	1.95	.02	1.32
	이웃참여	na	.04*	2.33	.00	.34	.01	.98
	지역경찰신뢰도	na	-.02	-1.19	-.01	-.95	-.02	-1.39
R ² (adjusted R ²)			.186(.183)		.122(.118)		.117(.114)	

^a : 기준값 ***p<.001 **p<.01 *p<.05 (2-tailed)

재산범죄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은 성별, 학년, 신체적 취약성, 자기통제력, 피해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컸고 초등학교, 중3학생의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컸다. 신체적으로 취약할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재산범죄 두려움이 증가하였다. 가족 특성 중에는 주관적 계층, 부모감독이 부적 관계를, 부모일탈성과 배우자폭력이 정적 관계를 보였다. 친구 특성 중에는 친한 친구 수가 적을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수준이 낮을수록, 주변에 비행을 저지르거나 학폭위에 회부된 친구가 없을수록, 피해를 당하는 주변친구가 많을수록 재산범죄 두려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특성으로는 예상과 달리 학교경찰신뢰도와 재산범죄 두려움이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지역 특성으로는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가 두려움 증가 요인이었다.

폭력범죄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신체적 취약성, 자기통제력, 피해경험이었다. 여학생과 초등학교의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체적 취약성과 피해경험은 두려움을 증가시켰고, 자기통제력은 감소시켰다. 가족 특성 중 주관적 계층, 부모감독, 부모애착은 폭력범죄 두려움과 부적 관계를, 부모일탈성과 배우자폭력은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친구 특성의 경우 재산범죄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친한 친구수, 친구애착, 친구비행은 폭력범죄 두려움을 감소시켰고, 반면에 친구피해는 증가시켰다. 학교 특성 중 학교규모에 있어서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 학생의 폭력범죄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200-600명 수준의 중규모 학교 학생의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와 달리 학교경찰신뢰도와 폭력범죄 두려움은 정적 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는 폭력범죄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제3절 범죄피해 예방조치

범죄예방활동은 세 가지 항목을 통하여 살펴 보았다.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단약을 대비해서 호신도구(호신용 스프레이나 호신엽 등)를 가지고 다닌다'는 항목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이 87.8%였으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이 5.3%였다. 대부분의 초등학생은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0.4%, 그렇다는 응답이 31.4%로 나타났다.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다닌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52.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1.3%였다. 즉 초등학생의 경우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피해 다니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표 7-24〉 범죄피해 예방 : 초등학생

단위: 명(%)

예방활동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호신도구 가지고 다님	2,561 (71.2)	597 (16.6)	251 (6.9)	110 (3.1)	79 (2.2)	3,598 (100)	1.49
밤에 누군가와 같이 다님	932 (25.9)	882 (24.5)	654 (18.2)	640 (17.8)	490 (13.6)	3,598 (100)	2.69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 피함	645 (17.9)	482 (13.4)	602 (16.7)	855 (23.8)	1,014 (28.2)	3,598 (100)	3.31

중학생의 경우를 보면,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구(호신용 스프레이나 호신엠편 등)를 가지고 다닌다'는 항목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이 92.9%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항목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은 2.4%였다.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66.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그렇다는 응답은 17.0%였다.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7.1%였으며, 그렇다는 응답은 33.5%로 나타났다.

〈표 7-25〉 범죄피해 예방 : 중학생

단위: 명(%)

예방활동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호신도구 가지고 다님	2,893 (77.2)	590 (15.7)	175 (4.7)	61 (1.6)	29 (0.8)	3,749 (100)	1.33
밤에 누군가와 같이 다님	1,484 (39.6)	990 (26.4)	638 (17.0)	478 (12.8)	158 (4.2)	3,749 (100)	2.16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 피함	1,071 (28.6)	694 (18.5)	728 (19.4)	865 (23.1)	391 (10.4)	3,749 (100)	2.68

고등학생의 응답결과를 보면,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구(호신용 스프레이나 호신 앱 등)를 가지고 다닌다'는 항목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이 94.1%로 상당히 많았으며, 그렇다는 응답('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은 1.4%에 불과하였다.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3.0%, 그렇다는 응답이 11.6%로 나타났다.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의 경우에는 51.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29.5%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7-26〉 범죄피해 예방 : 고등학생

단위: 명(%)

예방활동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호신도구 가지고 다님	2,420 (80.9)	395 (13.2)	132 (4.4)	31 (1.0)	12 (0.4)	2,991 (100)	1.27
밤에 누군가와 같이 다님	1,402 (46.9)	782 (26.1)	460 (15.4)	286 (9.6)	61 (2.0)	2,991 (100)	1.94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 피함	1,013 (33.9)	524 (17.5)	570 (19.1)	673 (22.5)	211 (7.0)	2,991 (100)	2.51

초중고별로 범죄피해예방활동 평균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위에서 살펴 본 범죄피해예방활동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평균 2.4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중학생 2.06점, 고등학생 1.9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방활동을 보다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7-27〉 학교별 범죄피해 예방 평균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값
초등학생	3,598	2.49	0.94	421.908***
중학생	3,749	2.06	0.85	
고등학생	2,991	1.91	0.80	

*** $p < .001$

제4절 소결

여기서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 실태 및 관련요인 등에 대해 살펴 보았으며, 주요 조사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범죄에 대한 두려움 실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일반적 두려움과 유형별 두려움을 통하여 살펴 보았다. 먼저 일반적 두려움의 평균을 보면 초등학생이 2.62점,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2.32점, 2.12점으로 초등학생의 두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두려움은 초중고생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 1점대로 나타났다.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고등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중학생, 초등학생의 순인 반면,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살펴 본 피해자 발생율에서 재산범죄는 고등학생>중학생>초등학생, 폭력범죄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의 순이었던 결과와 통하는 것이다.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은 중학생의 경우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초등학생, 고등학생의 순이었는데, 이것도 앞서 살펴 본 피해자 발생율의 순서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가정내 학대에 대한 두려움은 초등학생의 경우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고등학생, 중학생의 순이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폭력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중고생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 등에 대한 두려움은 중고생간에 차이가 없었다.

2. 두려움 관련요인

가. 개인적 특성에 따른 두려움

개인적 특성 중 성별과 관련해서 보면 초중고생 모두 여자가 남자에 비해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다. 여자가 남자에 두려움이 높은 것은 기존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홍영오·연성진, 2014; Tillyer et al., 2011). 학년과 관련해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학년이 낮을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중학생의 재산범죄(중소도시) <읍,면> <대도시>,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중소도시) <읍,면> <대도시>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것을 보여준다.

신체적 취약성과 자기통제력은 초중고생의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었는데, 신체적 취약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동성이 높을수록 두려움이 높았던 것을 보여준 연구와도 통하는 것이다(Tillyer et al., 2011).

비행경험에 따라서 두려움을 보면, 경비행의 경우 초등학생의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 중고생의 일반적 두려움과 관련되었다. 중비행경험 유무는 초등학생의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 중학생의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 고등학생의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었다. 공통적으로 일반적 두려움은 비행경험이 없는 경우 더 크며,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비행경험이 있는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경험에 따른 두려움을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피해경험이 모든 두려움과 관련

되었으며(학대피해와 일반적 두려움의 경우 제외), 중학생의 경우는 재산, 폭력범죄 피해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성폭력 등 피해와 괴롭힘 피해가 모든 두려움에 관련되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폭력범죄 피해경험이 일반적 두려움과 관련되지 않았던 것을 제외하면, 각각의 피해경험이 모든 두려움과 관련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피해경험이 두려움이 관련됨을 보여주고 있다(홍영오·연성진, 2014; 박현수, 2018; 김준범·김정현, 2018; Addington and Yablon, 2011; Tillyer et al., 2011; Keith, 2018). 또한 이 결과는 피해횟수보다 피해경험 자체가 두려움과 관련됨을 보여준 연구와도 통하는 것이다(Addington and Yablon, 2011).

나. 가족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가족의 구조적 특성은 주로 고등학생의 두려움과 관련되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결혼상태가 이혼 등인 경우, 동거가족구성과 관련해서는 편부/편모와 살거나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경우에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컸으며, 아버지 직업이 없는 경우는 아버지 직업이 있는 경우에 비해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는 동거가족 구성만이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었다(부모와 살지 않는 경우 두려움이 큼). 주관적 계층과 관련해서 보면, 초중고생 모두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감독, 부모와의 애착은 초중고생의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련되었다(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애착이 일반적 두려움에도 관련됨). 부모의 감독수준,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두려움이 낮은 것이다. 부모의 일탈성도 초중고생의 두려움과 관련되었는데(초등학생의 일반적 두려움 제외), 부모 일탈성 수준이 높을수록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폭력은 초등학생의 일반적,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 중학생의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어서 배우자폭력이 상대적으로 어린 아동이나 청소년의 두려움과 관련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 친구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친한 친구수, 친구와의 애착에 따라서 초중고생의 두려움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친한 친구수가 적은 경우, 친구와의 애착이 약할수록 두려움이 높았다(중학생 재산범죄의 경우는 친구수가 많은 경우 두려움이 높음).

친구의 비행수준에 따른 두려움을 보면, 친구 비행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생의 모든 두려움, 중고생의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다. 그러나 중고생의 일반적 두려움은 친구의 비행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서, 중고생의 경우 비행친구 접촉이 없는 사람일수록 일반적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친한 친구의 피해경험은 초등학생의 모든 두려움, 중고생의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었는데, 친구의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두려움이 높았다.

라. 학교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학교규모는 초등학생의 세 가지 두려움과 관련되었으며(200-600명미만)600명 이상)200명 미만, 중학생의 일반적 두려움과 관련되었다(200명 미만)200-600명 미만)600명 이상).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규모가 가장 작은 경우 두려움이 가장 낮았으며, 중학생의 일반적 두려움은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높았다. 이외에 학교의 객관적 특성인 경비원 유무는 초등학생, 고등학생의 일반적 두려움, 출입문통제 여부는 중학생의 일반적 두려움에 관련되었다. 학교에 경비원이 있거나 출입문 통제를 하는 경우 일반적 두려움이 보다 낮은 것이다. 이는 학교의 객관적 안전이 학생들의 일반적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인지여부는 피해경험과는 관련되지 않았지만 두려움과는 관련되었다.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모르는 경우에 비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일반적, 재산, 폭력범죄 두려움이 낮았으며, 고등학생의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았다.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는 피해와도 관련되었으며, 초중고생의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 중고생의 일반적 두려움과도 관련되었다.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경우 두려움이 낮은 것이다.

학교의 폭력예방노력, 응집성, 규칙문화의 적정성, 교사의 지지도 초중고생의 두려

움과 관련되었다(초등학생의 교사의 지지와 일반적 두려움 제외). 이는 초중고생에 관계없이 학교운영 특성, 교사와의 관계가 두려움에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마. 거주지역 특성에 따른 범위에 대한 두려움

동네나 등하교길의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와 관련해서 보면, 이러한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초중고생의 일반적 두려움, 재산, 폭력범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관계의 친밀성은 초등학생의 세 가지 두려움, 중고생의 재산, 폭력범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었는데, 대체로 이웃관계가 친밀할수록 두려움이 낮았다.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범죄 피해발생시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이웃참여수준에 따라서도 초중고생의 두려움이 차이를 보였다(초등학생의 일반적 두려움 제외). 즉 이웃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두려움이 낮은 것이다. 동네 경찰에 대한 신뢰에 따라서도 초중고생의 세 가지 두려움이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경찰에 대해 신뢰할수록 두려움이 낮았다.

3.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적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은 성별, 학년, 신체적 취약성, 자기통제력, 피해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저학년의 일반적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컸다. 신체적으로 취약할수록, 범죄피해가 있는 경우,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일반적 두려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특성 중에는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부모감독과 부모애착이 강할수록, 부모 이탈성, 배우자폭력 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높았다. 부모의 감독수준 및 애착수준 관련 결과는 다소 의외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평소 부모가 자녀의 안전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환기시킨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친구 특성 중에는 친구애착, 친구비행, 친구징계경험이 일반적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친구피해는 일반적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 특성 중에는 학교경찰 인지도, 학교규칙문화가 일반적 두려움과 부적 관계를 보인 반면 학교폭력예방 노력은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 역시 학교 측의 학교폭

력예방 노력으로 인해 안전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주의를 관심이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 특성에 있어서는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일반적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웃참여 수준이 일반적 두려움과 정적 관계를 나타낸 점은 의외의 결과이다.

재산범죄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학년, 신체적 취약성, 자기통제력, 피해경험, 주관적 계층, 부모감독, 부모일탈성과 배우자폭력, 친한 친구수, 친구애착, 친구 비행, 지난 1년간 친한 친구의 학폭위 회부유무, 친구의 피해, 학교경찰신뢰도,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였다. 여성의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컸고 초등학생과, 중3학생의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컸다. 신체적으로 취약할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부모감독이 낮을수록, 부모일탈성과 배우자폭력 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특성 중에는 친한 친구 수가 적을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수준이 낮을수록, 주변에 비행을 저지르거나 학폭위에 소환된 친구가 없을수록, 친구피해가 많을수록 재산범죄 두려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특성으로는 예상과 달리 학교경찰신뢰도와 재산범죄 두려움이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지역 특성으로는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가 두려움 증가 요인이었다.

폭력범죄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특성 중 성별, 학년, 신체적 취약성, 자기통제력, 피해경험, 가족 특성 중 주관적 계층, 부모감독, 부모애착, 부모일탈성, 배우자폭력, 친구특성 중 친한 친구수, 친구애착, 친구비행, 친구 피해, 학교특성 중 학교규모, 학교경찰 신뢰도, 거주지역 특성 중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였다. 개인적 특성과 관련해서 보면, 여자, 초등학생의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신체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특성 중 주관적 계층, 부모감독, 부모애착은 폭력범죄 두려움과 부적 관계를, 부모일탈성과 배우자폭력은 정적 관계를 보였다. 친구 특성의 경우 재산범죄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친한 친구수, 친구애착, 친구비행은 폭력범죄 두려움을 감소시켰고, 반면에 친구피해가 많을수록 두려움이 증가하였다. 학교 특성 중 학교규모에 있어서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 학생의 폭력범죄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200-600명 수준의 중규모 학교 학생의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와 달리 학교경찰신뢰도와 폭력범죄 두려움은 정적 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는 폭력범죄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4. 범죄피해 예방조치

초중고생의 범죄피해 예방조치를 보면, 공통적으로 적극적인 예방(호신도구 소지 등)보다는 소극적인 예방(누군가와 같이 다니거나 무서운 길 회피)이 많았다. 또한 초중고를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의 예방활동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이었다. 이는 초등학생의 두려움이 가장 크고, 다음이 중고생의 순이었던 것과도 통하는 결과이다.

제 8 장

○ —————

**학교밖 청소년 범죄피해
발생 현황 및 실태**

유 진

학교밖 청소년 범죄피해 발생 현황 및 실태

8장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피해조사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밖 청소년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본조사에 더하여 추가로 실시한 조사이므로 피해발생 현황은 4장에서 제시한 학교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세히 살펴보되, 구체적인 피해실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결과와 영향을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 제시한 통계표는 학교조사 결과와 달리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실제 응답수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제1절 범죄피해 발생 현황

1. 일반범죄피해 발생 현황

가. 범죄피해자수 및 피해자율

먼저 학교밖 청소년이 경험한 절도, 사기, 갈취, 폭행·협박, 성폭력 피해의 발생현황을 살펴보았다. 피해유형과 상관없이 한 가지라도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31.4%로 학교조사 결과보다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성폭력범죄를 나누어 살펴보면, 재산범죄 피해자 발생률은 24.5%, 폭력범죄는 14.8%, 성폭력범죄는 3.2%였다.

기관유형별로는 단기숙터·이동숙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피해 경험률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보호관찰 대상자인 응답자 중에는 33.8%,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가운데에는 24.7%가 하나 이상의 피해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기관유형별 응답자의 피해 경험률은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경우 모두 쉼터 응답자가 가장 높았으며, 보호관찰소,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피해자 발생률은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모두 남자 응답자가 여자 응답자보다 높았으나 그 차이는 범죄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재산범죄의 경우, 남자 응답자 중 26.7%가 피해경험을 보고하여 여자 응답자(21.0%)보다 다소 높았으나, 폭력범죄의 피해자 발생률은 남자 15.0%, 여자 14.4%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재산범죄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서도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피해자 발생률이 차이를 보였는데, 12세에서 16세 사이의 응답자는 폭력범죄 피해자 발생률이 25.7%로 재산범죄 피해자 발생률(20.0%)보다 높았으나, 17세에서 19세 사이의 응답자의 경우에는 재산범죄 피해 경험률이 24.9%로 폭력범죄 피해 경험률(15.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피해의 경우, 지원센터의 응답자 가운데 6.5%가 피해경험을 보고하여 기관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자 응답자 중 7.2%가 성폭력피해 경험을 보고하였으며 남자 응답자 중에는 2명(0.7%)이 성폭력피해를 보고하였다.

〈표 8-1〉 일반범죄 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재산범죄	30 (17.6)	15 (38.5)	63 (27.3)	73 (26.7)	35 (21.0)	7 (20.0)	101 (24.9)	108 (24.5)
폭력범죄	19 (11.2)	12 (30.8)	34 (14.7)	41 (15.0)	24 (14.4)	8 (22.9)	57 (14.1)	65 (14.8)
성폭력범죄	11 (6.5)	0 (0.0)	3 (1.3)	2 (0.7)	12 (7.2)	1 (2.9)	13 (3.2)	14 (3.2)
전체범죄	42 (24.7)	18 (46.2)	78 (33.8)	92 (33.7)	46 (27.5)	12 (34.3)	126 (31.1)	138 (31.4)
총응답자	170 (100)	39 (100)	231 (100)	273 (100)	167 (100)	35 (100)	405 (100)	440 (100)

재산범죄의 유형별로 피해자 발생률을 살펴보면 절도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비율이 17.3%이었으며 사기피해자 비율은 10.9%였다. 기관유형에 따른 차이 역시 절도가 사기보다 크게 나타나, 쉼터 응답자 중 28.2%가 절도피해를 경험하였던 것으로 보고된 반면 보호관찰소 응답자 중 절도피해자 발생률은 19.9%, 지원센터는 11.2%였다. 성별에 따라 피해자율을 살펴보면 절도피해는 남자(19.4%)가 여자(13.8%)보다 많이 경험한 것에 반해, 사기는 여자(11.4%)가 남자(10.6%)보다 약간 높은 피해자 발생률을 보였다. 연령대로 나누어 보면, 12~16세의 응답자 가운데 사기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1건에 그쳤으나, 17~19세 응답자의 경우 사기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11.6%였으며 절도피해 경험은 17.0%로 나타났다.

〈표 8-2〉 재산범죄 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절도	19 (11.2)	11 (28.2)	46 (19.9)	53 (19.4)	23 (13.8)	7 (20.0)	69 (17.0)	76 (17.3)
사기	15 (8.8)	6 (15.4)	27 (11.7)	29 (10.6)	19 (11.4)	1 (2.9)	47 (11.6)	48 (10.9)
총응답자	170 (100)	39 (100)	231 (100)	273 (100)	167 (100)	35 (100)	405 (100)	440 (100)

폭력범죄피해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폭행·협박으로 전체 응답자 중 12.5%가 피해를 보고하였다. 기관유형별 폭행·협박피해자 발생률은 보호관찰소와 지원센터가 각각 11.7%와 10.6%였으며, 쉼터의 경우 25.6%로 다른 두 기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피해자율을 보였다. 연령대에 따라 살펴보면 12~16세 응답자의 20.0%가 폭행·협박 피해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17~19세 응답자(11.9%)에 비해 피해자 비율이 높았다. 성별에 따른 피해자 발생률은 폭행·협박피해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갈취피해의 경우 남자(5.1%)가 여자(2.4%)보다 다소 높은 피해자율을 보였다.

〈표 8-3〉 폭력범죄 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 센터	쉼터	보호 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갈취	2 (1.2)	3 (7.7)	13 (5.6)	14 (5.1)	4 (2.4)	3 (8.6)	15 (3.7)	18 (4.1)
폭행·협박	18 (10.6)	10 (25.6)	27 (11.7)	33 (12.1)	22 (13.2)	7 (20.0)	48 (11.9)	55 (12.5)
총응답자	170 (100)	39 (100)	231 (100)	273 (100)	167 (100)	35 (100)	405 (100)	440 (100)

나. 중복피해와 반복피해 현황

절도, 사기, 갈취, 폭행·협박, 성폭력 피해 중 1가지 유형 이상의 피해를 중복적으로 경험한 비율은 전체 피해자 가운데 41.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가지 유형의 피해를 보고한 응답자 비율은 23.9%였으며, 3가지 유형은 12.3%, 4가지 유형은 4.3%였고, 모든 유형의 피해경험을 보고한 사례도 1명이 있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복피해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전체 피해자 발생률이 가장 높은 쉼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쉼터 응답자 가운데 중복피해를 보고한 비율은 절반이 넘는 55.6%였다.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자(35.9%)보다 여자(52.2%)가 중복피해자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17~19세 응답자(42.1%)가 12~16세 응답자(33.3%)보다 중복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4〉 중복피해 현황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 센터	쉼터	보호 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1유형	24 (57.1)	8 (44.4)	49 (62.8)	59 (64.1)	22 (47.8)	8 (66.7)	73 (57.9)	81 (58.7)
2유형	8 (19.0)	5 (27.8)	20 (25.6)	20 (21.7)	13 (28.3)	2 (16.7)	31 (24.6)	33 (23.9)
3유형	9 (21.4)	5 (27.8)	3 (3.8)	9 (9.8)	8 (17.4)	1 (8.3)	16 (12.7)	17 (12.3)
4유형	1 (2.4)	0 (0.0)	5 (6.4)	4 (4.3)	2 (4.3)	0 (0.0)	6 (4.8)	6 (4.3)
5유형	0 (0.0)	0 (0.0)	1 (1.3)	0 (0.0)	1 (2.2)	1 (8.3)	0 (0.0)	1 (0.7)
계	42 (100)	18 (100)	78 (100)	92 (100)	46 (100)	12 (100)	126 (100)	138 (100)

각 피해유형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비율을 살펴보면, 갈취의 반복피해율이 77.8%로 가장 높았으며, 지난 1년간 5회 이상 갈취피해를 입은 경우가 33.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절도피해를 2회 이상 경험한 경우는 63.2%, 폭행·협박을 2회 이상 경험한 비율은 65.5%였으며, 사기피해를 수회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응답자 비율은 이의 절반 수준인 31.2%였다. 한편, 폭행·협박피해자 가운데 5회 이상 피해를 입은 비율은 23.6%로, 갈취나 폭행·협박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다수의 반복피해를 입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5〉 반복피해 현황

단위: 명(%)

	절도	사기	갈취	폭행·협박
1회	28 (36.8)	33 (68.8)	4 (22.2)	19 (34.5)
2회	29 (38.2)	8 (16.7)	4 (22.2)	19 (34.5)
3회	7 (9.2)	4 (8.3)	2 (11.1)	2 (3.6)
4회	2 (2.6)	1 (2.1)	2 (11.1)	2 (3.6)
5회 이상	10 (13.2)	2 (4.2)	6 (33.3)	13 (23.6)
계	76 (100)	48 (100)	18 (100)	55 (100)

다. 생애피해자수 및 피해자율

지난 1년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위에서 살펴본 피해유형 중 하나라도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교밖 청소년의 비율은 4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 중에는 쉼터의 응답자 중 절반을 상회하는 56.4%가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여 가장 높은 생애피해자 비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는 17~19세의 생애피해자 발생률이 45.4%였으며 12~16세는 34.3%로 나타났다. 성별 에 따른 생애피해자 비율의 차이는 남자 44.7%, 여자 44.3%로 크지 않았다. 범죄유형 별로 나누어보면 재산범죄의 생애피해자율이 35.7%로 폭력범죄(23.6%)보다 높았다.

〈표 8-6〉 일반범죄 생애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재산범죄	56 (32.9)	20 (51.3)	81 (35.1)	100 (36.6)	57 (34.1)	9 (25.7)	148 (36.5)	157 (35.7)
폭력범죄	39 (22.9)	14 (35.9)	51 (22.1)	60 (22.0)	44 (26.3)	8 (22.9)	96 (23.7)	104 (23.6)
전체범죄	71 (41.8)	22 (56.4)	103 (44.6)	122 (44.7)	74 (44.3)	12 (34.3)	184 (45.4)	196 (44.5)
총응답자	170 (100)	39 (100)	231 (100)	273 (100)	167 (100)	35 (100)	405 (100)	440 (100)

재산범죄의 구체적인 피해유형에 따른 생애피해자 발생률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절도피해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27.7%였고 사기피해의 경우 16.1%였다. 기관유형별로는 쉼터의 응답자가 절도피해자 비율이 38.5%로 지원센터(24.7%)와 보호관찰소(28.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기피해의 경우 지원센터 응답자가 18.8%로 다른 기관의 응답자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별로 나누어보면, 절도피해는 남자(28.9%)가 여자(25.7%)보다 피해자 발생률이 높았으나 사기피해는 여자(19.2%)가 남자(14.3)%보다 다소 많은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7〉 재산범죄 생애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절도	42 (24.7)	15 (38.5)	65 (28.1)	79 (28.9)	43 (25.7)	9 (25.7)	113 (27.9)	122 (27.7)
사기	32 (18.8)	7 (17.9)	32 (13.9)	39 (14.3)	32 (19.2)	2 (5.7)	69 (17.0)	71 (16.1)
총응답자	170 (100)	39 (100)	231 (100)	273 (100)	167 (100)	35 (100)	405 (100)	440 (100)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폭행이나 협박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응답자는 전체적으로 20.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쉼터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30.8%가 폭행·협박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보고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지원센터와 보호관찰소 응답자의 경우 이러한 비율이 각각 20.6%와 18.6%로 조사되었다. 한편, 학교밖 청소년 조사에서는 여자 응답자 중 폭행·협박피해 경험을 보고한 비율이 24.6%에 달하여 남자(17.9%)보다 높은 피해자 발생률을 보였다. 반면, 갈취피해는 남자(9.5%)가 여자(4.8%)보다 많이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갈취피해자 생애발생률은 7.7%였다.

〈표 8-8〉 폭력범죄 생애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갈취	9 (5.3)	4 (10.3)	21 (9.1)	26 (9.5)	8 (4.8)	3 (8.6)	31 (7.7)	34 (7.7)
폭행·협박	35 (20.6)	12 (30.8)	43 (18.6)	49 (17.9)	41 (24.6)	7 (20.0)	83 (20.5)	90 (20.5)
총응답자	170 (100)	39 (100)	231 (100)	273 (100)	167 (100)	35 (100)	405 (100)	440 (100)

2. 가정내 학대·괴롭힘피해 발생현황

가. 범죄피해자수 및 피해자율

지난 1년간 가정내 학대, 또래 괴롭힘, 성적 괴롭힘 중 한 가지 유형이라도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각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또래 괴롭힘피해 경험률이 11.1%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내 학대는 8.0%, 성적 괴롭힘은 6.4%였다. 전체 피해자 발생률은 쉼터의 응답자가 46.2%로 지원센터(24.1%)의 2배 이상, 보호관찰소(10.8%)의 4배 이상에 달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가정내 학대피해에서 두드러져, 쉼터 응답자 중 지난 1년간 가정내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8%로 지원센터(7.1%), 보호관찰소(4.8%)에 비해 매우 높은 피해자 발생률을 보였다. 성별

에 따라 살펴보면, 여자 응답자의 전체 피해자 발생률이 32.9%였으며, 모든 유형의 피해를 남자 응답자보다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전체 피해자 발생률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가정내 학대피해는 12~16세 응답자(14.3%)가 17~19세 응답자(7.4%)보다 높은 피해자율을 보인 반면, 또래 괴롭힘은 17~19세(11.6%)가 12~16세(5.7%)보다 많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9〉 가정내 학대·괴롭힘 피해자수 및 피해자율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가정내 학대	12 (7.1)	12 (30.8)	11 (4.8)	13 (4.8)	22 (13.2)	5 (14.3)	30 (7.4)	35 (8.0)
또래 괴롭힘	27 (15.9)	6 (15.4)	16 (6.9)	15 (5.5)	34 (20.4)	2 (5.7)	47 (11.6)	49 (11.1)
성적 괴롭힘	17 (10.0)	3 (7.7)	8 (3.5)	4 (1.5)	24 (14.4)	1 (2.9)	27 (6.7)	28 (6.4)
전체피해	41 (24.1)	18 (46.2)	25 (10.8)	29 (10.6)	55 (32.9)	7 (20.0)	77 (19.0)	84 (19.1)
총응답자	170 (100)	39 (100)	231 (100)	273 (100)	167 (100)	35 (100)	405 (100)	440 (100)

나. 중복피해와 반복피해 현황

가정내 학대, 또래 괴롭힘, 성적 괴롭힘 중 2가지 이상의 피해를 중복 경험한 피해자의 비율은 27.4%로 나타났다. 중복피해자 비율은 지원센터 응답자 중 31.7%, 보호관찰소 응답자는 32.0%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쉼터의 응답자는 이보다 낮은 11.1%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응답자 중 36.4%가 중복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어 남자(10.3%)보다 다양한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0〉 중복피해 현황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 센터	쉼터	보호 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1유형	28 (68.3)	16 (88.9)	17 (68.0)	26 (89.7)	35 (63.6)	6 (85.7)	55 (71.4)	61 (72.6)
2유형	11 (26.8)	1 (5.6)	6 (24.0)	3 (10.3)	15 (27.3)	1 (14.3)	17 (22.1)	18 (21.4)
3유형	2 (4.9)	1 (5.6)	2 (8.0)	0 (0.0)	5 (9.1)	0 (0.0)	5 (6.5)	5 (6.0)
계	41 (100)	18 (100)	25 (100)	29 (100)	55 (100)	7 (100)	77 (100)	84 (100)

가정내 학대와 또래 괴롭힘을 지난 1년간 2회 이상 경험한 반복피해자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먼저, 가정내 학대의 경우 피해가 일회성에 그친 사례는 35명 중 5명이었으며 나머지 30명(85.7%)는 2회 이상 반복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괴롭힘의 반복피해자율은 이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59.2%였으나, 5회 이상의 피해경험을 보고한 비율은 28.6%에 달하였다.

〈표 8-11〉 반복피해 현황

단위: 명(%)

	가정내 학대	또래 괴롭힘
1회	5 (14.3)	20 (40.8)
2회	10 (28.6)	9 (18.4)
3회	9 (25.7)	6 (12.2)
4회	1 (2.9)	0 (0.0)
5회 이상	10 (28.6)	14 (28.6)
계	35 (100)	49 (100)

다. 생애피해자수 및 피해자율

지난 1년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가정내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6%였으며, 또래 괴롭힘의 생애피해자 발생률은 17.5%였다. 가정내 학대의 경우, 쉼터 응답자 중 41.0%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으며, 이러한 비율은 지원센터 응답자 12.9%, 보호관찰소 응답자 9.5%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내 학대의 생애피해자 발생률은 여자(21.0%)가 남자(9.2%)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12~16세(17.1%)가 17~19세(13.3%)보다 다소 높은 차이를 보였다. 여자 응답자는 가정내 학대 뿐만 아니라 또래 괴롭힘의 생애피해자율도 29.3%로 남자(10.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관유형별로는 지원센터 응답자 중 27.6%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또래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여 가정내 학대와 달리 기관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7~19세 응답자 중 18.5%, 12~16세 응답자 중 5.7%가 또래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표 8-12〉 가정내 학대·괴롭힘 피해자수 및 피해자율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가정내 학대	22 (12.9)	16 (41.0)	22 (9.5)	25 (9.2)	35 (21.0)	6 (17.1)	54 (13.3)	60 (13.6)
또래 괴롭힘	47 (27.6)	9 (23.1)	21 (9.1)	28 (10.3)	49 (29.3)	2 (5.7)	75 (18.5)	77 (17.5)
전체피해	59 (34.7)	21 (53.8)	33 (14.3)	44 (16.1)	69 (41.3)	7 (20.0)	106 (26.2)	113 (25.7)
총응답자	170 (100)	39 (100)	231 (100)	273 (100)	167 (100)	35 (100)	405 (100)	440 (100)

제2절 범죄피해실태

1. 일반범죄피해 발생 실태

가. 재산범죄피해

1) 피해 결과

가) 재산피해

재산범죄피해의 실태는 피해결과와 영향, 피해발생 후 피해자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절도피해를 보고한 응답자 가운데 피해액을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피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 결과 평균 피해액은 5만8천원 가량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한 경우는 29만원이었다. 기관유형별로 피해를 보고한 응답자의 평균 피해액은 보호관찰소 응답자가 8만8천원 가량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원센터와 쉼터는 각각 3만1천원, 3만9천원 가량이었다.

〈표 8-13〉 절도범죄 피해액

단위: 천원, 건

	기관유형			성별		연령		전체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평균 피해액	31.5	39.8	88.5	64.4	44.4	23.8	62.5	58.1
표준편차	41.7	25.7	76.3	64.7	54.4	18.9	63.9	61.6
최소값	5	15	15	5	5	5	5	5
최대값	150	100	290	290	200	50	29	290
사례수	11	9	15	24	11	4	31	35

사기범죄의 평균 피해액 역시 보호관찰소 응답자가 11만4천원 가량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원센터와 쉼터 응답자의 경우 4만4천원 정도로 보고되었다. 사기피해의 경우 남자 피해자의 평균 피해액이 11만원 가량으로 여자 피해자(2만5천원)보다 피해액이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4〉 사기범죄 피해액

단위: 천원, 건

	기관유형			성별		연령		전체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평균 피해액	43.8	44.0	114.4	110.5	25.5	-	64.5	64.5
표준편차	81.6	48.1	88.7	104.0	16.0	-	81.9	81.9
최소값	2	10	22	10	2	-	2	2
최대값	300	125	299	300	50	-	300	300
사례수	12	5	7	11	13	0	24	24

나) 피해의 영향

재산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피해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절도피해를 입은 후 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다고 보고한 응답자는 전체적으로 22.4%로 학교조사 응답자(13.4%)에 비해 피해의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쉼터 응답자 중 정신적 후유증을 보고한 사례는 1명에 불과하였으나, 지원센터와 보호관찰소 응답자의 경우 후유증을 보고한 비율이 절도피해자 중 각각 26.3%와 23.9%로 나타났다. 절도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한 비율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의 경우 11.3%가 후유증을 보고한 반면 여자 피해자의 절반에 가까운 47.8%가 한 가지 이상의 후유증을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8-15〉 절도범죄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우울함	4 (21.1)	0 (0.0)	3 (6.5)	1 (1.9)	6 (26.1)	0 (0.0)	7 (10.1)	7 (9.2)
고립감	1 (5.3)	0 (0.0)	3 (6.5)	0 (0.0)	4 (17.4)	0 (0.0)	4 (5.8)	4 (5.3)
두려움	3 (15.8)	0 (0.0)	3 (6.5)	0 (0.0)	6 (26.1)	0 (0.0)	6 (8.7)	6 (7.9)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2 (10.5)	1 (9.1)	5 (10.9)	2 (3.8)	6 (26.1)	1 (14.3)	7 (10.1)	8 (10.5)
부정적 자존감	1 (5.3)	0 (0.0)	4 (8.7)	0 (0.0)	5 (21.7)	1 (14.3)	4 (5.8)	5 (6.6)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	0 (0.0)	0 (0.0)	4 (8.7)	0 (0.0)	4 (17.4)	1 (14.3)	3 (4.3)	4 (5.3)
가족관계·친구 관계 어려움	0 (0.0)	0 (0.0)	3 (6.5)	1 (1.9)	2 (8.7)	0 (0.0)	3 (4.3)	3 (3.9)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받음	2 (10.5)	0 (0.0)	6 (13.0)	2 (3.8)	6 (26.1)	1 (14.3)	7 (10.1)	8 (10.5)
해당 없음	14 (73.7)	10 (90.9)	35 (76.1)	47 (88.7)	12 (52.2)	5 (71.4)	54 (78.3)	59 (77.6)
계	19 (100)	11 (100)	46 (100)	53 (100)	23 (100)	7 (100)	69 (100)	76 (100)

사기범죄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을 보고한 피해자 비율 역시 22.9%로 절도범죄피해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보고된 후유증은 우울함으로 20.8%가 이러한 괴로움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기관유형별로는 쉼터 응답자가 5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남자(10.3%)보다 여자(36.8%)가 사기범죄피해로 인한 우울함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표 8-16〉 사기범죄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우울함	4 (26.7)	3 (50.0)	3 (11.1)	3 (10.3)	7 (36.8)	0 (0.0)	10 (21.3)	10 (20.8)
고립감	1 (6.7)	0 (0.0)	2 (7.4)	0 (0.0)	3 (15.8)	0 (0.0)	3 (6.4)	3 (6.3)
두려움	1 (6.7)	0 (0.0)	2 (7.4)	0 (0.0)	3 (15.8)	0 (0.0)	3 (6.4)	3 (6.3)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0 (0.0)	1 (16.7)	2 (7.4)	0 (0.0)	3 (15.8)	0 (0.0)	3 (6.4)	3 (6.3)
부정적 자존감	2 (13.3)	1 (16.7)	2 (7.4)	0 (0.0)	5 (26.3)	0 (0.0)	5 (10.6)	5 (10.4)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	1 (6.7)	0 (0.0)	2 (7.4)	0 (0.0)	3 (15.8)	0 (0.0)	3 (6.4)	3 (6.3)
가족관계·친구관 계 어려움	2 (13.3)	0 (0.0)	2 (7.4)	1 (3.4)	3 (15.8)	0 (0.0)	4 (8.5)	4 (8.3)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받음	1 (6.7)	1 (16.7)	0 (0.0)	1 (3.4)	1 (5.3)	0 (0.0)	2 (4.3)	2 (4.2)
해당 없음	10 (66.7)	3 (50.0)	24 (88.9)	25 (86.2)	12 (63.2)	1 (100.0)	36 (76.6)	37 (77.1)
계	15 (100)	6 (100)	27 (100)	29 (100)	19 (100)	1 (100)	47 (100)	48 (100)

절도피해가 발생한 후 이로 인한 행동적 영향을 알아본 결과, 사람을 피해서 이사 또는 전학을 간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9%였으며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학교에 결석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15.8%,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하룻밤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응답자는 14.5%로 나타났다. 이사·전학, 무단결석, 가출 중 한 가지라도 보고한 비율은 여자가 30.4%로 남자(13.2%)보다 높았으며, 12~16세가 42.9%로 17~19세(15.9%)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행동적 영향이 없었던 응답자 비율은 81.6%였다.

〈표 8-17〉 절도범죄피해의 행동적 영향(중복응답)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 센터	쉼터	보호 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이사 또는 전학	0 (0.0)	1 (9.1)	2 (4.3)	1 (1.9)	2 (8.7)	0 (0.0)	3 (4.3)	3 (3.9)
무단결석	0 (0.0)	2 (18.2)	10 (21.7)	6 (11.3)	6 (26.1)	2 (28.6)	10 (14.5)	12 (15.8)
가출	0 (0.0)	3 (27.3)	8 (17.4)	6 (11.3)	5 (21.7)	3 (42.9)	8 (11.6)	11 (14.5)
해당 없음	19 (100.0)	8 (72.7)	35 (76.1)	46 (86.8)	16 (69.6)	4 (57.1)	58 (84.1)	62 (81.6)
계	19 (100)	11 (100)	46 (100)	53 (100)	23 (100)	7 (100)	69 (100)	76 (100)

사기범죄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이로 인한 행동적 영향을 보고한 비율은 10.4%로 절도범죄 피해자보다는 많지 않았지만 학교조사결과(2.8%)에 비하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어나 전학을 간 사례는 1명이었고, 무단결석이나 가출을 보고한 사례는 각각 4명이었다.

〈표 8-18〉 사기범죄피해의 행동적 영향(중복응답)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 센터	쉼터	보호 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이사 또는 전학	0 (0.0)	0 (0.0)	1 (3.7)	1 (3.4)	0 (0.0)	0 (0.0)	1 (2.1)	1 (2.1)
무단결석	0 (0.0)	0 (0.0)	4 (14.8)	4 (13.8)	0 (0.0)	0 (0.0)	4 (8.5)	4 (8.3)
가출	0 (0.0)	1 (16.7)	3 (11.1)	4 (13.8)	0 (0.0)	0 (0.0)	4 (8.5)	4 (8.3)
해당 없음	15 (100.0)	5 (83.3)	23 (85.2)	24 (82.8)	19 (100.0)	1 (100.0)	42 (89.4)	43 (89.6)
계	15 (100)	6 (100)	27 (100)	29 (100)	19 (100)	1 (100)	47 (100)	48 (100)

2) 피해자의 사후 대응

절도범죄피해를 경험한 후 피해자의 대응을 살펴본 결과, 피해사실에 대해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였다고 보고한 비율은 32.9%, 선생님에게 이야기한 경우는 9.2%였다. 부모님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경우는 지원센터 응답자와 보호관찰소 응답자가 각각 31.6%와 37.0%였으며, 심터 응답자의 경우 이보다 낮은 18.2%였다. 성별로는 여자 피해자 중 43.5%가 부모님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남자 피해자의 경우 이러한 비율은 28.3%로 다소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12~16세 피해자(14.3%)가 17~18세 피해자(34.8%)가 절도피해 사실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26.3%였으며, 이러한 비율은 기관유형 중 보호관찰소 응답자가 28.3%로 가장 높았고 지원센터 응답자는 26.3%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자 피해자 중 28.3%가 아무에게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21.7%)보다 다소 높았다. 한편, 17~19세 응답자는 피해사실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한 비율과 친구에게 이야기한 비율이 각각 34.8%와 37.7%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12~16세 응답자는 이러한 비율이 14.3%와 57.1%로 나타나 부모님보다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19〉 절도범죄피해 보고여부 및 대상(중복응답)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심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부모님	6 (31.6)	2 (18.2)	17 (37.0)	15 (28.3)	10 (43.5)	1 (14.3)	24 (34.8)	25 (32.9)
부모님 외 가족	2 (10.5)	0 (0.0)	5 (10.9)	4 (7.5)	3 (13.0)	0 (0.0)	7 (10.1)	7 (9.2)
선생님	4 (21.1)	5 (45.5)	8 (17.4)	8 (15.1)	9 (39.1)	1 (14.3)	16 (23.2)	17 (22.4)
친구	9 (47.4)	5 (45.5)	16 (34.8)	20 (37.7)	10 (43.5)	4 (57.1)	26 (37.7)	30 (39.5)
경찰관	2 (10.5)	0 (0.0)	3 (6.5)	3 (5.7)	2 (8.7)	0 (0.0)	5 (7.2)	5 (6.6)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상담가, 의사	2 (10.5)	0 (0.0)	0 (0.0)	1 (1.9)	1 (4.3)	0 (0.0)	2 (2.9)	2 (2.6)
그 외 다른 사람	0 (0.0)	1 (9.1)	6 (13.0)	6 (11.3)	1 (4.3)	0 (0.0)	7 (10.1)	7 (9.2)
보고 안함	5 (26.3)	2 (18.2)	13 (28.3)	15 (28.3)	5 (21.7)	2 (28.6)	18 (26.1)	20 (26.3)
계	19 (100)	11 (100)	46 (100)	53 (100)	23 (100)	7 (100)	69 (100)	76 (100)

사기범죄피해의 경우, 아무에게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5.4%로 절도범죄피해에 비해 다소 높았다. 특히 지원센터 응답자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6.7%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대상을 살펴보면, 친구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에게 이야기한 경우는 18.8%에 불과하였다.

〈표 8-20〉 사기범죄피해 보고여부 및 대상(중복응답)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부모님	2 (13.3)	0 (0.0)	7 (25.9)	5 (17.2)	4 (21.1)	1 (100.0)	8 (17.0)	9 (18.8)
부모님 외 가족	1 (6.7)	0 (0.0)	2 (7.4)	3 (10.3)	0 (0.0)	0 (0.0)	3 (6.4)	3 (6.3)
선생님	2 (13.3)	0 (0.0)	3 (11.1)	4 (13.8)	1 (5.3)	0 (0.0)	5 (10.6)	5 (10.4)
친구	6 (40.0)	2 (33.3)	13 (48.1)	14 (48.3)	7 (36.8)	0 (0.0)	21 (44.7)	21 (43.8)
경찰관	0 (0.0)	0 (0.0)	1 (3.7)	1 (3.4)	0 (0.0)	0 (0.0)	1 (2.1)	1 (2.1)
상담가, 의사	0 (0.0)	2 (33.3)	1 (3.7)	3 (10.3)	0 (0.0)	0 (0.0)	3 (6.4)	3 (6.3)
그 외 다른 사람	1 (6.7)	1 (16.7)	1 (3.7)	3 (10.3)	0 (0.0)	0 (0.0)	3 (6.4)	3 (6.3)
보고 안함	7 (46.7)	1 (16.7)	9 (33.3)	10 (34.5)	7 (36.8)	0 (0.0)	17 (36.2)	17 (35.4)
계	15 (100)	6 (100)	27 (100)	29 (100)	19 (100)	1 (100)	47 (100)	48 (100)

학교밖 청소년들이 경험한 절도범죄피해의 경찰 신고율은 14.5%로 나타났다. 경찰 신고율은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기관유형별로는 지원센터 응답자와 보호관찰 응답자의 피해가 경찰에 신고된 비율은 각각 15.8%와 15.2%로 비슷하였으나 쉼터 응답자의 경우 11건 중 1건(9.1%)에 불과하였다.

〈표 8-21〉 절도범죄피해 경찰신고 여부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신고했다	3 (15.8)	1 (9.1)	7 (15.2)	8 (15.1)	3 (13.0)	1 (14.3)	10 (14.5)	11 (14.5)
신고하지 않았다	16 (84.2)	10 (90.9)	39 (84.8)	45 (84.9)	20 (87.0)	6 (85.7)	59 (85.5)	65 (85.5)
계	19 (100)	11 (100)	46 (100)	53 (100)	23 (100)	7 (100)	69 (100)	76 (100)

사기범죄피해의 경찰 신고율은 절도범죄피해에 비해 다소 낮은 8.3%였다. 특히 지원센터 응답자가 경험한 사기피해가 경찰에 신고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으며, 여자 청소년이 경험한 피해 역시 경찰에 신고된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표 8-22〉 사기범죄피해 경찰신고 여부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신고했다	0 (0.0)	1 (16.7)	3 (11.1)	4 (13.8)	0 (0.0)	0 (0.0)	4 (8.5)	4 (8.3)
신고하지 않았다	15 (100.0)	5 (83.3)	24 (88.9)	25 (86.2)	19 (100.0)	1 (100.0)	43 (91.5)	44 (91.7)
계	15 (100)	6 (100)	27 (100)	29 (100)	19 (100)	1 (100)	47 (100)	48 (100)

나. 폭력범죄피해

1) 가해자 특성

폭력범죄피해 실태와 관련하여서는 피해결과 및 피해발생 후 대응 외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추가로 살펴보았다. 우선, 갈취피해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경우가 61.1%로 절반을 넘었으며, 학교조사결과(53.5%)와 비교해보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경험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3〉 갈취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아는 사람	0 (0.0)	3 (100.0)	8 (61.5)	9 (64.3)	2 (50.0)	2 (66.7)	9 (60.0)	11 (61.1)
모르는 사람	2 (100.0)	0 (0.0)	6 (46.2)	6 (42.9)	2 (50.0)	1 (33.3)	7 (46.7)	8 (44.4)
계	2 (100)	3 (100)	13 (100)	14 (100)	4 (100)	3 (100)	15 (100)	18 (100)

폭행·협박피해의 경우,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경험이 81.8%로 나타났으며, 특히 쉼터의 응답자는 모두 아는 사람에게 폭행·협박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호관찰소의 경우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33.3%로 다른 기관의 응답자에 비해 높았다.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자(78.8%)보다 여자(86.4%)가 아는 사람에게 폭행·협박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12~16세의 경우 아는 사람이 가해자라고 답한 비율이 85.7%로 17~19세(81.3%)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8-24〉 폭행·협박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단위: 건(%)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아는 사람	17 (94.4)	10 (100)	18 (66.7)	26 (78.8)	19 (86.4)	6 (85.7)	39 (81.3)	45 (81.8)
모르는 사람	2 (11.1)	0 (0.0)	9 (33.3)	8 (24.2)	3 (13.6)	1 (14.3)	10 (20.8)	11 (20.0)
계	18 (100)	10 (100)	27 (100)	33 (100)	22 (100)	7 (100)	48 (100)	55 (100)

2) 피해 결과

가) 신체피해

갈취피해 당시 폭행이 동반되어 신체피해를 입은 경우는 18명 중 3명(16.7%)으로 보고되었다. 이 가운데 가벼운 멍이 드는 등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신체피해를 입은 경우와 가벼운 치료가 필요한 정도,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의 신체피해를 입은 경우가 각각 1건씩 있었다.

〈표 8-25〉 갈취의 신체피해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다치지 않았음	2 (100.0)	2 (66.7)	11 (84.6)	11 (78.6)	4 (100.0)	2 (66.7)	13 (86.7)	15 (83.3)
가벼운 멍이 드는 등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 다침	0 (0.0)	1 (33.3)	0 (0.0)	1 (7.1)	0 (0.0)	1 (33.3)	0 (0.0)	1 (5.6)
집이나 학교 의무실 등에서 가벼운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다침	0 (0.0)	0 (0.0)	1 (7.7)	1 (7.1)	0 (0.0)	0 (0.0)	1 (6.7)	1 (5.6)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다침	0 (0.0)	0 (0.0)	1 (7.7)	1 (7.1)	0 (0.0)	0 (0.0)	1 (6.7)	1 (5.6)
계	2 (100)	3 (100)	13 (100)	14 (100)	4 (100)	3 (100)	15 (100)	18 (100)

금품갈취가 동반되지 않은 폭행피해를 보고한 41명 중 피해로 인해 다쳤다고 보고한 응답자는 27명(65.9%)으로 학교조사결과(29.7%)보다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특히 남자 응답자가 70.4%로 여자(57.1%)보다 다소 높았으며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신체피해의 정도를 살펴보면, 가벼운 멍이 드는 등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라고 보고한 경우가 39.0%, 가벼운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다쳤다는 응답이 7.3%였으며,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의 신체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한 경우도 19.5%에 달하였다. 특히, 쉼터의 응답자 중 절반은 폭행피해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다쳤다고 응답하였다.

〈표 8-26〉 폭행의 신체피해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다치지 않았음	5 (41.7)	2 (33.3)	7 (30.4)	8 (29.6)	6 (42.9)	2 (33.3)	12 (34.3)	14 (34.1)
가벼운 멍이 드는 등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 다침	6 (50.0)	1 (16.7)	9 (39.1)	10 (37.0)	6 (42.9)	3 (50.0)	13 (37.1)	16 (39.0)
집이나 학교 의무실 등에서 가벼운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다침	0 (0.0)	0 (0.0)	3 (13.0)	2 (7.4)	1 (7.1)	1 (16.7)	2 (5.7)	3 (7.3)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다침	1 (8.3)	3 (50.0)	4 (17.4)	7 (25.9)	1 (7.1)	0 (0.0)	8 (22.9)	8 (19.5)
계	12 (100)	6 (100)	23 (100)	27 (100)	14 (100)	6 (100)	35 (100)	41 (100)

나) 피해의 영향

갈취피해를 경험한 후 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다고 응답한 피해자는 38.9%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후유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한 응답자가 22.2%로 가장 많았으며, 불면증·악몽 등, 부정적 자존감을 보고한 경우가 각각 16.7%였다. 갈취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고 보고한 응답자는 18명 중 3명(16.7%)이었다.

〈표 8-27〉 갈취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우울함	0 (0.0)	1 (33.3)	1 (7.7)	1 (7.1)	1 (25.0)	1 (33.3)	1 (6.7)	2 (11.1)
고립감	0 (0.0)	0 (0.0)	1 (7.7)	0 (0.0)	1 (25.0)	0 (0.0)	1 (6.7)	1 (5.6)
두려움	1 (50.0)	0 (0.0)	3 (23.1)	3 (21.4)	1 (25.0)	0 (0.0)	4 (26.7)	4 (22.2)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0 (0.0)	0 (0.0)	3 (23.1)	2 (14.3)	1 (25.0)	0 (0.0)	3 (20.0)	3 (16.7)
부정적 자존감	1 (50.0)	1 (33.3)	1 (7.7)	3 (21.4)	0 (0.0)	1 (33.3)	2 (13.3)	3 (16.7)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	0 (0.0)							
가족관계·친구관계 어려움	0 (0.0)	1 (33.3)	0 (0.0)	1 (7.1)	0 (0.0)	1 (33.3)	0 (0.0)	1 (5.6)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받음	0 (0.0)	0 (0.0)	3 (23.1)	2 (14.3)	1 (25.0)	0 (0.0)	3 (20.0)	3 (16.7)
해당 없음	1 (50.0)	2 (66.7)	8 (61.5)	8 (57.1)	3 (75.0)	2 (66.7)	9 (60.0)	11 (61.1)
계	2 (100)	3 (100)	13 (100)	14 (100)	4 (100)	3 (100)	15 (100)	18 (100)

폭행·협박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을 살펴보면, 우울함과 고립감을 경험한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27.3%였으며, 두려움과 부정적 자존감을 겪은 비율은 각각 21.8%, 불면증·악몽 등, 그리고 가족관계·친구관계의 어려움을 보고한 경우는 각각 20.0%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 이상의 정신적 후유증을 보고한 비율은 36.4%였으며, 이러한 비율은 지원센터 응답자 중 61.1%로 쉼터(10.0%), 보호관찰소(29.6%)보다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피해자 중 59.1%가 폭행·협박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보고하여 남자 피해자(21.2%)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연령대별로는 17~19세(37.5%)가 12~16세(28.6%)보다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8〉 폭행·협박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단위: 건(%)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우울함	7 (38.9)	2 (20.0)	6 (22.2)	5 (15.2)	10 (45.5)	0 (0.0)	15 (31.3)	15 (27.3)
고립감	6 (33.3)	2 (20.0)	7 (25.9)	6 (18.2)	9 (40.9)	0 (0.0)	15 (31.3)	15 (27.3)
두려움	6 (33.3)	2 (20.0)	4 (14.8)	6 (18.2)	6 (27.3)	0 (0.0)	12 (25.0)	12 (21.8)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5 (27.8)	2 (20.0)	4 (14.8)	4 (12.1)	7 (31.8)	1 (14.3)	10 (20.8)	11 (20.0)
부정적 자존감	5 (27.8)	2 (20.0)	5 (18.5)	4 (12.1)	8 (36.4)	0 (0.0)	12 (25.0)	12 (21.8)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	3 (16.7)	2 (20.0)	3 (11.1)	4 (12.1)	4 (18.2)	0 (0.0)	8 (16.7)	8 (14.5)
가족관계·친구관계 어려움	5 (27.8)	2 (20.0)	4 (14.8)	4 (12.1)	7 (31.8)	0 (0.0)	11 (22.9)	11 (20.0)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받음	5 (27.8)	0 (0.0)	5 (18.5)	5 (15.2)	5 (22.7)	1 (14.3)	9 (18.8)	10 (18.2)
해당 없음	7 (38.9)	9 (90.0)	19 (70.4)	26 (78.8)	9 (40.9)	5 (71.4)	30 (62.5)	35 (63.6)
계	18 (100)	10 (100)	27 (100)	33 (100)	22 (100)	7 (100)	48 (100)	55 (100)

갈취피해가 발생한 후 이로 인하여 이어나 전학을 가게 되었다고 보고한 응답자는 18명 중 2명(11.1%), 무단결석이나 가출을 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각각 5명(27.8%)이었다. 갈취피해 이후 행동적 영향을 보고한 비율은 기관유형 중 보호관찰소의 응답자가 46.2%로 가장 높았으며 남자가 42.9%로 여자(25.0%)보다 다소 높았다.

〈표 8-29〉 갈취피해의 행동적 영향(중복응답)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이사 또는 전학	0 (0.0)	0 (0.0)	2 (15.4)	2 (14.3)	0 (0.0)	0 (0.0)	2 (13.3)	2 (11.1)
무단결석	0 (0.0)	1 (33.3)	4 (30.8)	4 (28.6)	1 (25.0)	1 (33.3)	4 (26.7)	5 (27.8)
가출	0 (0.0)	1 (33.3)	4 (30.8)	5 (35.7)	0 (0.0)	1 (33.3)	4 (26.7)	5 (27.8)
해당 없음	2 (100.0)	2 (66.7)	7 (53.8)	8 (57.1)	3 (75.0)	2 (66.7)	9 (60.0)	11 (61.1)
계	2 (100)	3 (100)	13 (100)	14 (100)	4 (100)	3 (100)	15 (100)	18 (100)

폭행·협박피해로 인한 행동적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한 비율 역시 기관유형 중 보호관찰소 응답자가 33.3%로 가장 높았으며, 지원센터 응답자 중에는 11.1%, 쉼터 응답자 가운데는 30.0%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도 갈취피해와 마찬가지로 남자(33.3%)가 여자(13.6%)보다 행동적 영향이 나타난 경우가 많았으며, 연령대에 따라서는 12~16세 응답자 중 42.9%가 행동적 영향을 보고하여 17~19세 연령대(22.9%)보다 비율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폭행·협박피해로 인하여 무단결석이나 가출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5.5%와 20.0%였으며, 이사나 전학을 갔다고 답한 경우는 10.9%였다.

〈표 8-30〉 폭행·협박피해의 행동적 영향(중복응답)

단위: 건(%)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이사 또는 전학	0 (0.0)	2 (20.0)	4 (14.8)	5 (15.2)	1 (4.5)	1 (14.3)	5 (10.4)	6 (10.9)
무단결석	2 (11.1)	3 (30.0)	9 (33.3)	11 (33.3)	3 (13.6)	3 (42.9)	11 (22.9)	14 (25.5)
가출	0 (0.0)	2 (20.0)	9 (33.3)	8 (24.2)	3 (13.6)	3 (42.9)	8 (16.7)	11 (20.0)
해당 없음	16 (88.9)	7 (70.0)	18 (66.7)	22 (66.7)	19 (86.4)	4 (57.1)	37 (77.1)	41 (74.5)
계	18 (100)	10 (100)	27 (100)	33 (100)	22 (100)	7 (100)	48 (100)	55 (100)

3) 피해자의 사후 대응

갈취피해가 발생한 후 피해사실을 누구에게 이야기하였는지 알아본 결과,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다는 응답이 61.1%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에게 이야기한 경우는 이보다 절반 수준인 27.8%로 나타났다. 그 외에 부모님 외 가족이나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다고 보고한 경우가 각각 16.7%였다.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16.7%였으며, 이러한 비율은 기관유형 중 보호관찰소 응답자가 23.1%였으며, 성별로는 남자 피해자 중 21.4%가 아무에게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1〉 갈취피해 보고여부 및 대상(중복응답)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부모님	2 (100.0)	3 (100.0)	6 (46.2)	7 (50.0)	4 (100.0)	2 (66.7)	9 (60.0)	11 (61.1)
부모님 외 가족	0 (0.0)	0 (0.0)	3 (23.1)	1 (7.1)	2 (50.0)	0 (0.0)	3 (20.0)	3 (16.7)
선생님	0 (0.0)	0 (0.0)	3 (23.1)	1 (7.1)	2 (50.0)	0 (0.0)	3 (20.0)	3 (16.7)
친구	0 (0.0)	0 (0.0)	5 (38.5)	4 (28.6)	1 (25.0)	0 (0.0)	5 (33.3)	5 (27.8)
경찰관	0 (0.0)	0 (0.0)	1 (7.7)	1 (7.1)	0 (0.0)	0 (0.0)	1 (6.7)	1 (5.6)
상담가, 의사	0 (0.0)	0 (0.0)	1 (7.7)	1 (7.1)	0 (0.0)	0 (0.0)	1 (6.7)	1 (5.6)
보고 안함	0 (0.0)	0 (0.0)	3 (23.1)	3 (21.4)	0 (0.0)	1 (33.3)	2 (13.3)	3 (16.7)
계	2 (100)	3 (100)	13 (100)	14 (100)	4 (100)	3 (100)	15 (100)	18 (100)

폭행·협박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피해자 중 18.2%였으며, 지원센터 응답자가 22.2%로 가장 높았고 보호관찰소 응답자 18.5%, 쉼터 응답자 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자 피해자가 아무에게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경우가 22.7%로 남자(15.2%)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이러한 비율이 17~19세 응답자 중 12.5%였으나 12~16세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1%가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행·협박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대상은 친구가 56.4%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에게 이야기한 경우도 40.0%로 나타났다.

〈표 8-32〉 폭행·협박피해 보고여부 및 대상(중복응답)

단위: 건(%)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부모님	6 (33.3)	4 (40.0)	12 (44.4)	14 (42.4)	8 (36.4)	1 (14.3)	21 (43.8)	22 (40.0)
부모님 외 가족	4 (22.2)	3 (30.0)	1 (3.7)	3 (9.1)	5 (22.7)	0 (0.0)	8 (16.7)	8 (14.5)
선생님	4 (22.2)	3 (30.0)	5 (18.5)	10 (30.3)	2 (9.1)	0 (0.0)	12 (25.0)	12 (21.8)
친구	11 (61.1)	7 (70.0)	13 (48.1)	17 (51.5)	14 (63.6)	2 (28.6)	29 (60.4)	31 (56.4)
경찰관	1 (5.6)	1 (10.0)	7 (25.9)	5 (15.2)	4 (18.2)	1 (14.3)	8 (16.7)	9 (16.4)
상담가, 의사	2 (11.1)	1 (10.0)	2 (7.4)	3 (9.1)	2 (9.1)	1 (14.3)	4 (8.3)	5 (9.1)
그 외 다른 사람	2 (11.1)	1 (10.0)	4 (14.8)	5 (15.2)	2 (9.1)	0 (0.0)	7 (14.6)	7 (12.7)
보고 안함	4 (22.2)	1 (10.0)	5 (18.5)	5 (15.2)	5 (22.7)	4 (57.1)	6 (12.5)	10 (18.2)
계	18 (100)	10 (100)	27 (100)	33 (100)	22 (100)	7 (100)	48 (100)	55 (100)

갈취피해가 발생한 후 피해사실이 경찰에 신고된 경우는 18건 중 5건으로 27.8%의 신고율을 보였다. 그러나 지원센터와 쉼터의 응답자가 경험한 갈취피해는 1건도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으며, 여자 응답자나 12~16세 응답자가 경험한 피해사실 역시 경찰에 신고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표 8-33〉 갈취피해 경찰신고 여부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신고했다	0 (0.0)	0 (0.0)	5 (38.5)	5 (35.7)	0 (0.0)	0 (0.0)	5 (33.3)	5 (27.8)
신고하지 않았다	2 (100.0)	3 (100.0)	8 (61.5)	9 (64.3)	4 (100.0)	3 (100.0)	10 (66.7)	13 (72.2)
계	2 (100)	3 (100)	13 (100)	14 (100)	4 (100)	3 (100)	15 (100)	18 (100)

폭행·협박피해의 경찰 신고율은 29.1%로 갈취피해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기관유형 별로는 보호관찰소 응답자의 피해사실이 경찰에 신고된 경우가 48.1%로 신고율이 가장 높았으며 지원센터 응답자의 피해사실은 모두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피해자의 경우 18.2%, 남자 피해자의 36.4%가 피해사실이 경찰에 신고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연령대에 따른 경찰 신고율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표 8-34〉 폭행·협박피해 경찰신고 여부

단위: 건(%)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신고했다	0 (0.0)	3 (30.0)	13 (48.1)	12 (36.4)	4 (18.2)	2 (28.6)	14 (29.2)	16 (29.1)
신고하지 않았다	18 (100.0)	8 (80.0)	18 (66.7)	25 (75.8)	19 (86.4)	5 (71.4)	39 (81.3)	44 (80.0)
계	18 (100)	10 (100)	27 (100)	33 (100)	22 (100)	7 (100)	48 (100)	55 (100)

다. 성폭력피해

1) 가해자 특성

성폭력피해경험을 보고한 사례에서 가해자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을 포함한 친인척인 경우는 1건이었으며, 이 사례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모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에게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12명 중 8명으로 66.7%였으며,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는 3건(25.0%)이었다.

〈표 8-35〉 성폭력범죄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친인척 (가족 포함)	1 (10.0)	0 (0.0)	0 (0.0)	0 (0.0)	1 (9.1)	0 (0.0)	1 (8.3)	1 (8.3)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7 (70.0)	0 (0.0)	1 (50.0)	0 (0.0)	8 (72.7)	0 (0.0)	8 (66.7)	8 (66.7)
모르는 사람	2 (20.0)	0 (0.0)	1 (50.0)	1 (100)	2 (18.2)	0 (0.0)	3 (25.0)	3 (25.0)
계	10 (100)	0 (0.0)	2 (100)	1 (100)	11 (100)	0 (0.0)	12 (100)	12 (100)

2) 피해의 영향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한 가지 이상 겪었다고 보고한 응답자는 13명 중 8명(61.5%)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우울함, 고립감, 두려움을 보고한 응답자가 각각 6명(46.2%)이었다. 그 외에 불면증·악몽 등, 또는 부정적 자존감을 보고한 응답자는 각각 4명(30.8%)이었으며, 성폭력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역시 4명(30.8%)이었다.

〈표 8-36〉 성폭력범죄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 센터	쉼터	보호 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우울함	6 (54.5)	0 (0.0)	0 (0.0)	1 (100.0)	5 (41.7)	0 (0.0)	6 (46.2)	6 (46.2)
고립감	5 (45.5)	0 (0.0)	1 (50.0)	1 (100.0)	5 (41.7)	0 (0.0)	6 (46.2)	6 (46.2)
두려움	6 (54.5)	0 (0.0)	0 (0.0)	1 (100.0)	5 (41.7)	0 (0.0)	6 (46.2)	6 (46.2)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4 (36.4)	0 (0.0)	0 (0.0)	1 (100.0)	3 (25.0)	0 (0.0)	4 (30.8)	4 (30.8)
부정적 자존감	4 (36.4)	0 (0.0)	0 (0.0)	1 (100.0)	3 (25.0)	0 (0.0)	4 (30.8)	4 (30.8)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	1 (9.1)	0 (0.0)	0 (0.0)	0 (0.0)	1 (8.3)	0 (0.0)	1 (7.7)	1 (7.7)
가족관계·친구관계 어려움	3 (27.3)	0 (0.0)	0 (0.0)	1 (100.0)	2 (16.7)	0 (0.0)	3 (23.1)	3 (23.1)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받음	3 (27.3)	0 (0.0)	1 (50.0)	1 (100.0)	3 (25.0)	0 (0.0)	4 (30.8)	4 (30.8)
해당 없음	4 (36.4)	0 (0.0)	1 (50.0)	0 (0.0)	5 (41.7)	0 (0.0)	5 (38.5)	5 (38.5)
계	11 (100)	0 (0.0)	2 (100)	1 (100)	12 (100)	0 (0.0)	13 (100)	13 (100)

성폭력피해경험의 영향이 행동적 측면으로 나타났는지 알아본 결과, 피해발생 후 이로 인하여 이사나 전학을 갔다고 응답한 사례가 1명, 가출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명이었다. 이러한 행동적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된 경우는 총 13명 중 3명(23.1%)이었다.

〈표 8-37〉 성폭력범죄피해의 행동적 영향(중복응답)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이사 또는 전학	1 (9.1)	0 (0.0)	0 (0.0)	0 (0.0)	1 (8.3)	0 (0.0)	1 (7.7)	1 (7.7)
무단결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가출	1 (9.1)	0 (0.0)	1 (50.0)	1 (100.0)	1 (8.3)	0 (0.0)	2 (15.4)	2 (15.4)
해당 없음	9 (81.8)	0 (0.0)	1 (50.0)	0 (0.0)	10 (83.3)	0 (0.0)	10 (76.9)	10 (76.9)
계	11 (100)	0 (0.0)	2 (100)	1 (100)	12 (100)	0 (0.0)	13 (100)	13 (100)

3) 피해자의 사후 대응

성폭력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3명 중 3명(23.1%)였으며, 해당 응답자는 모두 지원센터에서 조사에 참여한 17세에서 19세 사이의 여자 청소년이었다. 전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대상은 친구가 61.5%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과 상담가·의사가 각각 38.5%로 동일하였다.

〈표 8-38〉 성폭력범죄피해 보고여부 및 대상(중복응답)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부모님	3 (27.3)	0 (0.0)	2 (100.0)	1 (100.0)	4 (33.3)	0 (0.0)	5 (38.5)	5 (38.5)
부모님 외 가족	1 (9.1)	0 (0.0)	0 (0.0)	0 (0.0)	1 (8.3)	0 (0.0)	1 (7.7)	1 (7.7)
선생님	1 (9.1)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7.7)	1 (7.7)
친구	6 (54.5)	0 (0.0)	2 (100.0)	1 (100.0)	7 (58.3)	0 (0.0)	8 (61.5)	8 (61.5)
경찰관	0 (0.0)	0 (0.0)	2 (100.0)	0 (0.0)	2 (16.7)	0 (0.0)	2 (15.4)	2 (15.4)
상담가, 의사	4 (36.4)	0 (0.0)	1 (50.0)	1 (100.0)	4 (33.3)	0 (0.0)	5 (38.5)	5 (38.5)
그 외 다른 사람	2 (18.2)	0 (0.0)	0 (0.0)	0 (0.0)	2 (16.7)	0 (0.0)	2 (15.4)	2 (15.4)
보고 안함	3 (27.3)	0 (0.0)	0 (0.0)	0 (0.0)	3 (25.0)	0 (0.0)	3 (23.1)	3 (23.1)
계	11 (100)	0 (0.0)	2 (100)	1 (100)	12 (100)	0 (0.0)	13 (100)	13 (100)

그렇다면 성폭력피해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13건 중 2건이 신고되어 15.4%의 신고율을 보였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관찰소 응답자가 경험한 피해사실 2건은 모두 경찰에 신고된 반면, 지원센터 응답자의 피해사실 11건 가운데 경찰에 신고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표 8-39〉 성폭력피해 경찰신고 여부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신고했다	0 (0.0)	0 (0.0)	2 (100.0)	0 (0.0)	2 (16.7)	0 (0.0)	2 (15.4)	2 (15.4)
신고하지 않았다	11 (100.0)	0 (0.0)	0 (0.0)	1 (100.0)	10 (83.3)	0 (0.0)	11 (84.6)	11 (84.6)
계	11 (100)	0 (0.0)	2 (100)	1 (100)	12 (100)	0 (0.0)	13 (100)	13 (100)

2. 가정내 학대·괴롭힘 피해 실태

가. 가정내 학대 피해

1) 가해자 특성

학교밖 청소년이 경험한 가정내 학대피해의 가해자는 아버지가 62.9%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어머니가 학대한 경우는 37.1%였고 그 외 다른 보호자에게 학대피해를 입은 경우도 11.4%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버지에게 학대피해를 당한 비율은 지원센터 응답자와 쉼터 응답자가 각각 75.0%로 보호관찰소 응답자(36.4%)에 비해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가 가해자인 경우가 69.2%로 어머니가 가해자인 경우(30.8%)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여자 청소년이 가정내 학대피해를 보고한 사례에서는 가해자가 아버지인 경우가 59.1%로 어머니가 가해자인 경우(40.9%)보다 많았으나 그 차이는 남자 피해자보다 작았다. 연령대에 따라 살펴보면, 17~19세 응답자는 아버지에게 학대피해를 당한 비율이 66.7%로 12~16세(40.0%)보다 높았으며, 어머니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는 36.7%로 12~16세 피해자(40.0%)보다 약간 낮았다.

〈표 8-40〉 가정내 학대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아버지	9 (75.0)	9 (75.0)	4 (36.4)	9 (69.2)	13 (59.1)	2 (40.0)	20 (66.7)	22 (62.9)
어머니	4 (33.3)	4 (33.3)	5 (45.5)	4 (30.8)	9 (40.9)	2 (40.0)	11 (36.7)	13 (37.1)
기타 다른 보호자	1 (8.3)	1 (8.3)	2 (18.2)	2 (15.4)	2 (9.1)	1 (20.0)	3 (10.0)	4 (11.4)
계	12 (100)	12 (100)	11 (100)	13 (100)	22 (100)	5 (100)	30 (100)	35 (100)

2) 피해의 지속성 및 피해 결과

가) 피해의 지속성

가정내 학대피해를 보고한 사례에서 피해가 일회성에 그친 경우는 68.6%였으며, 반복적인 가정내 학대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31.4%로 학교조사 대상자(13.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쉼터 응답자가 지속적인 가정내 학대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절반이 넘는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16세 응답자(40.0%)가 17~19세 응답자(30.0%)보다 지속적인 가정내 학대피해를 당한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8-41〉 가정내 학대피해의 지속성 여부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 센터	쉼터	보호 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일시적으로 한번	10 (83.3)	5 (41.7)	9 (81.8)	8 (61.5)	16 (72.7)	3 (60.0)	21 (70.0)	24 (68.6)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2 (16.7)	7 (58.3)	2 (18.2)	5 (38.5)	6 (27.3)	2 (40.0)	9 (30.0)	11 (31.4)
계	12 (100)	12 (100)	11 (100)	13 (100)	22 (100)	5 (100)	30 (100)	35 (100)

가정내 학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 피해의 지속기간을 알아본 결과 1년 내내 지속되었다고 보고된 비율이 36.4%로 가장 많았다. 가정내 학대의 지속기간이 1개월 미만이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18.2%였으며, 2개월 미만은 9.1%, 3개월 미만과 6개월 미만은 각각 18.2%로 나타났다.

〈표 8-42〉 가정내 학대피해의 지속기간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1개월 미만	1 (50.0)	1 (14.3)	0 (0.0)	1 (20.0)	1 (16.7)	0 (0.0)	2 (22.2)	2 (18.2)
1~2개월 미만	0 (0.0)	1 (14.3)	0 (0.0)	0 (0.0)	1 (16.7)	1 (50.0)	0 (0.0)	1 (9.1)
2~3개월 미만	0 (0.0)	1 (14.3)	1 (50.0)	2 (40.0)	0 (0.0)	0 (0.0)	2 (22.2)	2 (18.2)
3~6개월 미만	1 (50.0)	1 (14.3)	0 (0.0)	0 (0.0)	2 (33.3)	0 (0.0)	2 (22.2)	2 (18.2)
1년	0 (0.0)	3 (42.9)	1 (50.0)	2 (40.0)	2 (33.3)	1 (50.0)	3 (33.3)	4 (36.4)
계	2 (100)	7 (100)	2 (100)	5 (100)	6 (100)	2 (100)	9 (100)	11 (100)

나) 피해 결과

가정내 학대피해로 인해 신체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치지 않았다는 응답은 31.4%에 불과하여 어느 정도 신체피해를 입은 경우가 68.6%에 달하였다. 이 가운데 가벼운 멍이 드는 등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피해를 보고한 경우는 40.0%, 가벼운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다쳤다는 응답은 20.0%였으며,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다쳤다고 보고한 경우도 8.6%로 나타났다. 병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신체피해를 보고한 비율은 쉼터 응답자가 16.7%로 지원센터나 보호관찰소 응답자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성별로는 남자 피해자가 23.1%, 연령대별로는 12~16세 피해자가 40.0%로 조사되었다.

〈표 8-43〉 가정내 학대피해의 신체피해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다치지 않았음	6 (50.0)	2 (16.7)	3 (27.3)	3 (23.1)	8 (36.4)	2 (40.0)	9 (30.0)	11 (31.4)
가벼운 멍이 드는 등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 다침	3 (25.0)	5 (41.7)	6 (54.5)	6 (46.2)	8 (36.4)	1 (20.0)	13 (43.3)	14 (40.0)
집이나 학교 의무실 등에서 가벼운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다침	3 (25.0)	3 (25.0)	1 (9.1)	1 (7.7)	6 (27.3)	0 (0.0)	7 (23.3)	7 (20.0)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다침	0 (0.0)	2 (16.7)	1 (9.1)	3 (23.1)	0 (0.0)	2 (40.0)	1 (3.3)	3 (8.6)
계	12 (100)	12 (100)	11 (100)	13 (100)	22 (100)	5 (100)	30 (100)	35 (100)

다) 피해의 영향

학교밖 청소년이 가정내 학대피해를 경험한 경우, 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다고 보고한 비율은 68.6%로 학교조사 대상자(38.2%)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원센터와 쉼터의 응답자 가운데 83.3%가 가정내 학대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보고하였으며, 남자 청소년(53.8%)보다 여자 청소년(77.3%)의 경우 정신적 후유증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정신적 후유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정적 자존감을 보고한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48.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우울함을 보고한 경우가 45.7%, 가족관계·친구관계의 어려움이 42.9%, 두려움이 40.0%, 고립감이 37.1%로 나타났다. 가정내 학대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고 보고한 경우는 전체적으로 20.0%였다.

〈표 8-44〉 가정내 학대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우울함	10 (83.3)	4 (33.3)	2 (18.2)	1 (7.7)	15 (68.2)	1 (20.0)	15 (50.0)	16 (45.7)
고립감	8 (66.7)	3 (25.0)	2 (18.2)	0 (0.0)	13 (59.1)	1 (20.0)	12 (40.0)	13 (37.1)
두려움	6 (50.0)	6 (50.0)	2 (18.2)	3 (23.1)	11 (50.0)	3 (60.0)	11 (36.7)	14 (40.0)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5 (41.7)	3 (25.0)	2 (18.2)	0 (0.0)	10 (45.5)	2 (40.0)	8 (26.7)	10 (28.6)
부정적 자존감	9 (75.0)	6 (50.0)	2 (18.2)	3 (23.1)	14 (63.6)	2 (40.0)	15 (50.0)	17 (48.6)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	3 (25.0)	2 (16.7)	1 (9.1)	1 (7.7)	5 (22.7)	3 (60.0)	3 (10.0)	6 (17.1)
가족관계·친구관계 어려움	6 (50.0)	8 (66.7)	1 (9.1)	4 (30.8)	11 (50.0)	2 (40.0)	13 (43.3)	15 (42.9)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받음	5 (41.7)	2 (16.7)	0 (0.0)	1 (7.7)	6 (27.3)	0 (0.0)	7 (23.3)	7 (20.0)
해당 없음	2 (16.7)	2 (16.7)	7 (63.6)	6 (46.2)	5 (22.7)	1 (20.0)	10 (33.3)	11 (31.4)
계	12 (100)	12 (100)	11 (100)	13 (100)	22 (100)	5 (100)	30 (100)	35 (100)

가정내 학대피해가 발생한 후 이로 인하여 가출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5명 중 7명으로 20.0%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특히 쉼터 응답자 중 75.0%로 매우 높았으며, 보호관찰소 응답자 가운데에는 18.2%가 가출을 하였고 지원센터 응답자 가운데 가출경험을 보고한 사례는 없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가정내 학대피해를 경험한 후 가출을 한 경우가 53.8%로 절반을 약간 넘었으며, 여자 청소년 가운데는 18.2%가 가출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별로는 12~16세 응답자 중 60.0%가 가출경험을 보고하여 17~19세(26.7%)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외에 가정내 학대피해 이후 이로 인하여 이사나 전학을 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8.6%, 무단결석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0.0%였다.

〈표 8-45〉 가정내 학대피해의 행동적 영향(중복응답)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 센터	쉼터	보호 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이사 또는 전학	2 (16.7)	0 (0.0)	1 (9.1)	1 (7.7)	2 (9.1)	0 (0.0)	3 (10.0)	3 (8.6)
무단결석	0 (0.0)	5 (41.7)	2 (18.2)	5 (38.5)	2 (9.1)	2 (40.0)	5 (16.7)	7 (20.0)
가출	0 (0.0)	9 (75.0)	2 (18.2)	7 (53.8)	4 (18.2)	3 (60.0)	8 (26.7)	11 (31.4)
해당 없음	10 (83.3)	3 (25.0)	9 (81.8)	6 (46.2)	16 (72.7)	2 (40.0)	20 (66.7)	22 (62.9)
계	12 (100)	12 (100)	11 (100)	13 (100)	22 (100)	5 (100)	30 (100)	35 (100)

3) 피해자의 사후 대응

가정내 학대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였는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1.4%로 나타났다.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대상은 친구가 34.3%로 가장 많았으며, 상담가나 의사에게 이야기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25.7%, 그 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경우 2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다는 응답은 각각 17.1%와 8.6%였다.

〈표 8-46〉 가정내 학대피해 보고여부 및 대상(중복응답)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부모님	3 (25.0)	0 (0.0)	0 (0.0)	0 (0.0)	3 (13.6)	0 (0.0)	3 (10.0)	3 (8.6)
부모님 외 가족	2 (16.7)	0 (0.0)	0 (0.0)	0 (0.0)	2 (9.1)	0 (0.0)	2 (6.7)	2 (5.7)
선생님	1 (8.3)	3 (25.0)	2 (18.2)	4 (30.8)	2 (9.1)	2 (40.0)	4 (13.3)	6 (17.1)
친구	3 (25.0)	4 (33.3)	5 (45.5)	6 (46.2)	6 (27.3)	2 (40.0)	10 (33.3)	12 (34.3)
경찰관	3 (25.0)	2 (16.7)	0 (0.0)	1 (7.7)	4 (18.2)	1 (20.0)	4 (13.3)	5 (14.3)
상담가, 의사	4 (33.3)	4 (33.3)	1 (9.1)	2 (15.4)	7 (31.8)	2 (40.0)	7 (23.3)	9 (25.7)
그 외 다른 사람	3 (25.0)	3 (25.0)	1 (9.1)	2 (15.4)	5 (22.7)	1 (20.0)	6 (20.0)	7 (20.0)
보고 안함	3 (25.0)	4 (33.3)	4 (36.4)	5 (38.5)	6 (27.3)	1 (20.0)	10 (33.3)	11 (31.4)
계	12 (100)	12 (100)	11 (100)	13 (100)	22 (100)	5 (100)	30 (100)	35 (100)

학교밖 청소년이 가정내 학대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이 경찰에 신고된 사례는 35건 중 8건으로 22.9%의 신고율을 보였다. 기관유형별로는 쉼터 응답자의 피해사실이 경찰에 신고된 경우가 33.3%로 가장 높았으며, 지원센터 피해자의 가정내 학대피해가 경찰에 신고된 경우도 25.0%로 보고된 것에 반해 보호관찰소 응답자의 경우 경찰 신고율은 9.1%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피해사실의 경찰 신고율이 12~16세 응답자의 경우 40.0%, 17~19세의 경우는 20.0%였으며, 성별에 따른 피해 신고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8-47〉 가정내 학대피해 경찰신고 여부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 센터	쉼터	보호 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신고했다	3 (25.0)	4 (33.3)	1 (9.1)	3 (23.1)	5 (22.7)	2 (40.0)	6 (20.0)	8 (22.9)
신고하지 않았다	9 (75.0)	8 (66.7)	10 (90.9)	10 (76.9)	17 (77.3)	3 (60.0)	24 (80.0)	27 (77.1)
계	12 (100)	12 (100)	11 (100)	13 (100)	22 (100)	5 (100)	30 (100)	35 (100)

나. 괴롭힘 피해

1) 사건당시 재학여부

또래 괴롭힘의 경우, 피해 당시 응답자가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재학 중에 괴롭힘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비율이 49.0%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특히 쉼터 응답자의 경우 재학 당시 괴롭힘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66.7%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12~16세 응답자의 경우 괴롭힘피해를 보고한 2명 모두 재학 당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48〉 괴롭힘피해 당시 재학여부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 센터	쉼터	보호 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재학중	13 (48.1)	4 (66.7)	7 (43.8)	6 (40.0)	18 (52.9)	2 (100)	22 (46.8)	24 (49.0)
재학중 아님	14 (51.9)	2 (33.3)	9 (56.3)	9 (60.0)	16 (47.1)	0 (0.0)	25 (53.2)	25 (51.0)
계	27 (100)	6 (100)	16 (100)	15 (100)	34 (100)	2 (100)	47 (100)	49 (100)

2) 가해자 특성

괴롭힘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학교친구였던 경우가 63.3%로 가장 많았으나, 학교조사결과에서 이러한 비율이 85.1%인 것을 고려해보면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친구 외에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네친구와 동네 선후배에게 괴롭힘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한 비율이 각각 20.4%와 16.3%였다. 기관유형별로는 쉽터 응답자 6명 중 5명이 학교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반면, 보호관찰소 응답자는 학교친구에게 괴롭힘피해를 입은 경우가 50.0%에 그쳤고 동네친구가 가해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25.0%, 동네 선후배와 얼굴만 아는 사람이 가해자라고 보고한 경우가 각각 18.8%였다.

〈표 8-49〉 괴롭힘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 센터	쉽터	보호 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학교친구	18 (66.7)	5 (83.3)	8 (50.0)	10 (66.7)	21 (61.8)	2 (100.0)	29 (61.7)	31 (63.3)
동네친구	6 (22.2)	0 (0.0)	4 (25.0)	2 (13.3)	8 (23.5)	0 (0.0)	10 (21.3)	10 (20.4)
학교 선후배	3 (11.1)	0 (0.0)	0 (0.0)	0 (0.0)	3 (8.8)	0 (0.0)	3 (6.4)	3 (6.1)
동네 선후배	5 (18.5)	0 (0.0)	3 (18.8)	3 (20.0)	5 (14.7)	0 (0.0)	8 (17.0)	8 (16.3)
잘 아는 이웃	1 (3.7)	0 (0.0)	1 (6.3)	0 (0.0)	2 (5.9)	0 (0.0)	2 (4.3)	2 (4.1)
얼굴만 아는 사람	1 (3.7)	0 (0.0)	3 (18.8)	1 (6.7)	3 (8.8)	0 (0.0)	4 (8.5)	4 (8.2)
기타	0 (0.0)	1 (16.7)	1 (6.3)	1 (6.7)	1 (2.9)	0 (0.0)	2 (4.3)	2 (4.1)
계	27 (100)	6 (100)	16 (100)	15 (100)	34 (100)	2 (100)	47 (100)	49 (100)

3) 피해의 지속성 및 피해 결과

가) 피해의 지속성

또래 괴롭힘피해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한 비율은 26.5%였다. 특히 지원센터의 응답자 중 40.7%는 괴롭힘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쉼터 응답자의 경우 16.7%, 보호관찰소 응답자 중 6.3%가 지속적인 피해경험을 보고하였다.

〈표 8-50〉 괴롭힘피해의 지속성 여부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일시적으로 한번	16 (59.3)	5 (83.3)	15 (93.8)	12 (80.0)	24 (70.6)	2 (100.0)	34 (72.3)	36 (73.5)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11 (40.7)	1 (16.7)	1 (6.3)	3 (20.0)	10 (29.4)	0 (0.0)	13 (27.7)	13 (26.5)
계	27 (100)	6 (100)	16 (100)	15 (100)	34 (100)	2 (100)	47 (100)	49 (100)

괴롭힘피해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 1년 내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한 비율은 23.1%, 지속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었다고 답한 비율은 30.8%로, 절반 이상이 3개월 이상 괴롭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51〉 괴롭힘피해의 지속기간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1개월 미만	1 (9.1)	1 (100.0)	0 (0.0)	1 (33.3)	1 (10.0)	0 (0.0)	2 (15.4)	2 (15.4)
1~2개월 미만	2 (18.2)	0 (0.0)	0 (0.0)	0 (0.0)	2 (20.0)	0 (0.0)	2 (15.4)	2 (15.4)
2~3개월 미만	2 (18.2)	0 (0.0)	0 (0.0)	0 (0.0)	2 (20.0)	0 (0.0)	2 (15.4)	2 (15.4)
3~6개월 미만	4 (36.4)	0 (0.0)	0 (0.0)	0 (0.0)	4 (40.0)	0 (0.0)	4 (30.8)	4 (30.8)
1년	2 (18.2)	0 (0.0)	1 (100.0)	2 (66.7)	1 (10.0)	0 (0.0)	3 (23.1)	3 (23.1)
계	11 (100)	1 (100)	1 (100)	3 (100)	10 (100)	0 (0.0)	13 (100)	13 (100)

나) 피해의 영향

괴롭힘피해를 경험한 후 정신적 후유증을 한 가지 이상 겪었다고 보고한 응답자는 전체 피해자 중 63.3%로 학교조사 대상자(30.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구체적인 후유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울함을 보고한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운 49.0%로 가장 많았으며, 고립감을 보고한 경우가 40.8%, 부정적 자존감이 38.8%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 두려움이나 불면증·악몽 등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22.4%와 24.5%였다. 한 가지 이상의 정신적 후유증을 보고한 비율은 지원센터 응답자 중 77.8%, 쉼터 응답자 중 83.3%로 매우 높았으며, 보호관찰소 응답자 가운데 후유증을 보고한 경우는 37.5%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이 괴롭힘피해로 인한 후유증을 겪은 경우가 80.0%로 여자 청소년(58.8%)보다 다소 많았다.

〈표 8-52〉 괴롭힘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 센터	쉼터	보호 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우울함	18 (66.7)	2 (33.3)	4 (25.0)	8 (53.3)	16 (47.1)	0 (0.0)	24 (51.1)	24 (49.0)
고립감	14 (51.9)	2 (33.3)	4 (25.0)	5 (33.3)	15 (44.1)	0 (0.0)	20 (42.6)	20 (40.8)
두려움	8 (29.6)	0 (0.0)	3 (18.8)	3 (20.0)	8 (23.5)	0 (0.0)	11 (23.4)	11 (22.4)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10 (37.0)	0 (0.0)	2 (12.5)	3 (20.0)	9 (26.5)	0 (0.0)	12 (25.5)	12 (24.5)
부정적 자존감	14 (51.9)	1 (16.7)	4 (25.0)	4 (26.7)	15 (44.1)	0 (0.0)	19 (40.4)	19 (38.8)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	11 (40.7)	1 (16.7)	4 (25.0)	3 (20.0)	13 (38.2)	1 (50.0)	15 (31.9)	16 (32.7)
가족관계·친구관계 어려움	14 (51.9)	0 (0.0)	3 (18.8)	3 (20.0)	14 (41.2)	0 (0.0)	17 (36.2)	17 (34.7)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받음	9 (33.3)	2 (33.3)	1 (6.3)	5 (33.3)	7 (20.6)	0 (0.0)	12 (25.5)	12 (24.5)
해당 없음	6 (22.2)	1 (16.7)	10 (62.5)	3 (20.0)	14 (41.2)	1 (50.0)	16 (34.0)	17 (34.7)
계	27 (100)	6 (100)	16 (100)	15 (100)	34 (100)	2 (100)	47 (100)	49 (100)

행동적 측면에서 나타난 괴롭힘 피해의 영향을 살펴보면, 무단결석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14.3%로 나타났으며, 남자의 경우 이러한 비율이 20.0%로 여자(11.8%)보다 높았다. 그 외에 가출을 하였다고 보고한 비율은 8.2%였는데, 특히 보호관찰소 응답자 가운데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후 이로 인하여 가출을 하였다고 보고한 비율이 18.8%였다. 전체적으로 괴롭힘 피해로 인한 행동적 영향을 하나라도 보고한 응답자는 전체 괴롭힘 피해자 가운데 20.4%로 나타났다.

〈표 8-53〉 괴롭힘피해의 행동적 영향(중복응답)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이사 또는 전학	1 (3.7)	0 (0.0)	1 (6.3)	0 (0.0)	2 (5.9)	0 (0.0)	2 (4.3)	2 (4.1)
무단결석	3 (11.1)	1 (16.7)	3 (18.8)	3 (20.0)	4 (11.8)	0 (0.0)	7 (14.9)	7 (14.3)
가출	1 (3.7)	0 (0.0)	3 (18.8)	1 (6.7)	3 (8.8)	1 (50.0)	3 (6.4)	4 (8.2)
해당 없음	22 (81.5)	5 (83.3)	12 (75.0)	12 (80.0)	27 (79.4)	1 (50.0)	38 (80.9)	39 (79.6)
계	27 (100)	6 (100)	16 (100)	15 (100)	34 (100)	2 (100)	47 (100)	49 (100)

4) 피해자의 사후 대응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괴롭힘피해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6.5%로, 학교조사 대상자(28.9%)와 큰 차이가 없었다. 괴롭힘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상대는 친구가 55.1%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에게 이야기한 경우는 34.7%, 선생님에게 이야기한 경우도 28.6%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 피해자의 경우 선생님에게 이야기한 비율이 4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구 40.0%, 부모님 20.0%의 순이었다. 이와 달리 여자 피해자는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고 보고한 경우가 61.8%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한 비율이 41.2%였으며, 선생님에게 이야기한 경우는 20.6%였다.

〈표 8-54〉 괴롭힘피해 보고여부 및 대상(중복응답)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부모님	10 (37.0)	3 (50.0)	4 (25.0)	3 (20.0)	14 (41.2)	0 (0.0)	17 (36.2)	17 (34.7)
부모님 외 가족	3 (11.1)	1 (16.7)	0 (0.0)	0 (0.0)	4 (11.8)	0 (0.0)	4 (8.5)	4 (8.2)
선생님	5 (18.5)	5 (83.3)	4 (25.0)	7 (46.7)	7 (20.6)	0 (0.0)	14 (29.8)	14 (28.6)
친구	16 (59.3)	4 (66.7)	7 (43.8)	6 (40.0)	21 (61.8)	1 (50.0)	26 (55.3)	27 (55.1)
경찰관	0 (0.0)	0 (0.0)	1 (6.3)	0 (0.0)	1 (2.9)	0 (0.0)	1 (2.1)	1 (2.0)
상담가, 의사	5 (18.5)	0 (0.0)	1 (6.3)	3 (20.0)	3 (8.8)	0 (0.0)	6 (12.8)	6 (12.2)
그 외 다른 사람	0 (0.0)	1 (16.7)	1 (6.3)	2 (13.3)	0 (0.0)	0 (0.0)	2 (4.3)	2 (4.1)
보고 안함	8 (29.6)	0 (0.0)	5 (31.3)	5 (33.3)	8 (23.5)	1 (50.0)	12 (25.5)	13 (26.5)
계	27 (100)	6 (100)	16 (100)	15 (100)	34 (100)	2 (100)	47 (100)	49 (100)

학교조사 대상자의 경우 괴롭힘피해 사실의 경찰 신고율이 2.2%였으나, 학교밖 청소년의 괴롭힘피해 사실이 경찰에 신고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표 8-55〉 괴롭힘피해 경찰신고 여부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신고했다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신고하지 않았다	27 (100.0)	6 (100.0)	16 (100.0)	15 (100.0)	34 (100.0)	2 (100.0)	47 (100.0)	49 (100.0)
계	27 (100)	6 (100)	16 (100)	15 (100)	34 (100)	2 (100)	47 (100)	49 (100)

다. 성적 괴롭힘 피해

1) 가해자 특성

강간(미수 포함),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동반하지 않은 성적 괴롭힘 피해 사건 중 피해자가 가해자를 인지한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르는 사람이 가해를 한 경우가 30.8%였으며,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는 69.2%로 나타났다. 가족을 포함한 친인척이 성적 괴롭힘 가해를 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표 8-56〉 성적 괴롭힘 피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응답)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친인척 (가족 포함)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5 (71.4)	2 (66.7)	2 (66.7)	0 (0.0)	9 (75.0)	0 (0.0)	9 (69.2)	9 (69.2)
모르는 사람	2 (28.6)	1 (33.3)	1 (33.3)	1 (100.0)	3 (25.0)	0 (0.0)	4 (30.8)	4 (30.8)
계	7 (100)	3 (100)	3 (100)	1 (100)	12 (100)	0 (0.0)	13 (100)	13 (100)

2) 피해의 영향

성적 괴롭힘 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한 가지라도 보고한 응답자는 52.6%로, 학교조사 대상자(26.6%)보다 두 배 가량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지원센터와 쉼터 응답자 중 66.7%가 성적 괴롭힘 피해로 인한 후유증을 보고하였으며, 보호관찰소 응답자 가운데 이러한 비율은 28.6%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정신적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울함과 부정적 자존감을 보고한 비율이 각각 31.6%였으며, 가족관계·친구관계 어려움이 26.3%, 고립감이 21.1%로 나타났다.

〈표 8-57〉 성적 괴롭힘 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우울함	2 (22.2)	2 (66.7)	2 (28.6)	0 (0.0)	6 (37.5)	0 (0.0)	6 (33.3)	6 (31.6)
고립감	1 (11.1)	1 (33.3)	2 (28.6)	0 (0.0)	4 (25.0)	0 (0.0)	4 (22.2)	4 (21.1)
두려움	1 (11.1)	1 (33.3)	1 (14.3)	0 (0.0)	3 (18.8)	0 (0.0)	3 (16.7)	3 (15.8)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1 (11.1)	0 (0.0)	0 (0.0)	0 (0.0)	1 (6.3)	0 (0.0)	1 (5.6)	1 (5.3)
부정적 자존감	4 (44.4)	1 (33.3)	1 (14.3)	0 (0.0)	6 (37.5)	0 (0.0)	6 (33.3)	6 (31.6)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	2 (22.2)	1 (33.3)	0 (0.0)	0 (0.0)	3 (18.8)	0 (0.0)	3 (16.7)	3 (15.8)
가족관계·친구 관계 어려움	3 (33.3)	1 (33.3)	1 (14.3)	0 (0.0)	5 (31.3)	0 (0.0)	5 (27.8)	5 (26.3)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받음	1 (11.1)	0 (0.0)	0 (0.0)	0 (0.0)	1 (6.3)	0 (0.0)	1 (5.6)	1 (5.3)
해당 없음	3 (33.3)	1 (33.3)	5 (71.4)	3 (100.0)	6 (37.5)	1 (10.00)	8 (44.4)	9 (47.4)
계	9 (100)	3 (100)	7 (100)	3 (100)	16 (100)	1 (100)	18 (100)	19 (100)

성적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후 이로 인한 행동적 측면의 영향은 이사·전학을 간 사례가 1건 보고되었다. 그 외에 성적 괴롭힘 피해경험으로 인하여 무단결석이나 가출을 한 적이 있다고 보고된 사례는 없었다.

〈표 8-58〉 성적 괴롭힘 피해의 행동적 영향(중복응답)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이사 또는 전학	0 (0.0)	0 (0.0)	1 (14.3)	0 (0.0)	1 (6.3)	0 (0.0)	1 (5.6)	1 (5.3)
무단결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가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해당 없음	9 (100.0)	3 (100.0)	6 (85.7)	3 (100.0)	15 (93.8)	1 (100.0)	17 (94.4)	18 (94.7)
계	9 (100)	3 (100)	7 (100)	3 (100)	16 (100)	1 (100)	18 (100)	19 (100)

3) 피해자의 사후 대응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성적 괴롭힘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6.3%로 학교조사대상자(43.9%)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지원센터와 쉼터의 응답자는 각각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적 괴롭힘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상대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구가 57.9%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응답자는 31.6%, 선생님에게 이야기한 경우도 26.3%였다.

〈표 8-59〉 성적 괴롭힘 피해 보고여부 및 대상(중복응답)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 센터	쉼터	보호 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부모님	4 (44.4)	0 (0.0)	2 (28.6)	0 (0.0)	6 (37.5)	0 (0.0)	6 (33.3)	6 (31.6)
부모님 외 가족	1 (11.1)	0 (0.0)	1 (14.3)	0 (0.0)	2 (12.5)	0 (0.0)	2 (11.1)	2 (10.5)
선생님	3 (33.3)	1 (33.3)	1 (14.3)	0 (0.0)	5 (31.3)	0 (0.0)	5 (27.8)	5 (26.3)
친구	6 (66.7)	2 (66.7)	3 (42.9)	2 (66.7)	9 (56.3)	0 (0.0)	11 (61.1)	11 (57.9)
경찰관	0 (0.0)	0 (0.0)	1 (14.3)	0 (0.0)	1 (6.3)	0 (0.0)	1 (5.6)	1 (5.3)
상담가, 의사	1 (11.1)	0 (0.0)	1 (14.3)	0 (0.0)	2 (12.5)	0 (0.0)	2 (11.1)	2 (10.5)
보고 안함	1 (11.1)	1 (33.3)	3 (42.9)	1 (33.3)	4 (25.0)	1 (100.0)	4 (22.2)	5 (26.3)
계	9 (100)	3 (100)	7 (100)	3 (100)	16 (100)	1 (100)	18 (100)	19 (100)

학교밖 청소년이 경험한 성적 괴롭힘피해는 또래 괴롭힘피해와 마찬가지로 경찰에 신고된 사례가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60〉 성적 괴롭힘 피해 경찰신고 여부

단위: 명(%)

	기관유형			성별		연령		계
	지원 센터	쉼터	보호 관찰	남자	여자	12-16세	17-19세	
신고했다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신고하지 않았다	9 (100.0)	3 (100.0)	7 (100.0)	3 (100.0)	16 (100.0)	1 (100.0)	18 (100.0)	19 (100.0)
계	9 (100)	3 (100)	7 (100)	3 (100)	16 (100)	1 (100)	18 (100)	19 (100)

제3절 소결

본 장은 12세부터 19세 사이의 학교밖 청소년 440명을 대상으로 한 피해조사결과를 살펴보았다. 소결에서는 피해유형별 발생 현황과 피해의 영향을 중심으로 조사결과를 정리하였다.

1. 피해 발생 현황

가. 일반범죄피해 발생 현황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 사이에 절도, 사기, 갈취, 폭행·협박,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학교밖 청소년은 440명 중 31.4%인 138명으로 학교조사 대상자에 비하여 10%이상 높은 피해자 발생률을 보였다. 피해유형별 피해자 발생률은 재산범죄 24.5%, 폭력범죄 14.8%, 성폭력범죄 3.2%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피해자 발생률을 살펴본 결과, 단기쉼터·이동쉼터 응답자가 4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보호관찰 대상자 33.8%,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응답자 2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응답자가 33.7%가 하나 이상의 피해경험을 보고하여 여자 응답자 27.5%에 비하여 다소 높은 피해자 발생률을 보였다.

구체적인 범죄유형별 피해자 발생현황을 살펴본 결과, 재산범죄 중 절도피해자는 응답자 중 17.3%, 사기피해자는 10.9%였으며, 폭력범죄의 경우 갈취피해를 보고한 응답자는 4.1%, 폭행·협박 피해를 보고한 경우는 12.5%로 나타났다. 학교조사 대상자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피해유형은 폭행·협박으로 학생 중 3.8%가 1년간 폭행·협박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것에 비하여, 학교밖 청소년은 이보다 3.3배 가량 피해자 발생률이 높았다.

2가지 유형 이상의 피해를 경험한 중복피해자 비율 역시 학교밖 청소년이 학생조사 대상자(24.7%)보다 높게 나타나 41.3%에 달하였다. 기관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쉼터 응답자가 전체적인 피해자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중복피해자 비율도 보호관찰소나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2회 이상 경험한 반복피해 비율이 갈취피해의 경우 77.8%, 폭행·협박피해는 65.5%로

이 역시 학교조사대상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가정내 학대·또래 괴롭힘·성적 괴롭힘 피해 발생 현황

학교밖 청소년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가정내 학대, 또래 괴롭힘, 성적 괴롭힘을 하나라도 경험한 응답자는 19.1%로, 학교조사 대상자 중 이러한 비율이 10.9%인 것과 비교하면 피해자 발생률이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범죄피해와 마찬가지로 쉼터 응답자의 피해자 발생률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가정내 학대피해를 경험한 쉼터 응답자는 30.8%로 다른 기관의 응답자들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학생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15배에 가까운 피해자율을 보였다.

각 피해유형별 피해자 발생률을 살펴보면, 가정내 학대의 피해자율은 8.0%, 또래 괴롭힘 피해자율은 11.1%, 성적 괴롭힘 피해자율은 6.4%로 나타났다. 학교조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또래 괴롭힘 피해자율의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가정내 학대와 성적 괴롭힘 피해자율은 학교밖 청소년이 학교조사 대상자의 4배 가량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학교밖 청소년 중 성별에 따른 피해자율은 일반범죄피해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과 달리, 가정내 학대와 또래 괴롭힘, 성적 괴롭힘은 모두 남자보다 여자 응답자의 피해자 발생률이 더 높았다.

가정내 학대, 또래 괴롭힘, 성적 괴롭힘 중 2가지 이상의 중복피해자 비율은 27.4%였으며, 여자 피해자 중 중복피해를 보고한 비율이 36.4%로 남자 응답자 10.3%보다 높았다.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반복 경험한 비율은 가정내 학대 피해자 중 85.7%, 또래 괴롭힘 피해자 중 59.2%로 나타났다.

2. 피해의 영향

가. 일반범죄피해의 결과와 영향

학교밖 청소년의 재산범죄피해액은 절도피해의 경우 평균 5만8천원, 사기피해는 평균 11만4천원으로, 학교조사대상자에 비하여 피해액이 많았다. 폭력범죄로 인한 신체피해를 입은 비율 역시 갈취피해자 중 16.7%, 폭행피해자 중 65.9%로, 이러한

비율이 각각 6.4%와 29.7%로 조사된 학교조사 대상자에 비하여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조사 대상자에 비하여 피해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과 행동적 측면의 영향을 보고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먼저, 재산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한 가지 이상 보고한 피해자는 절도피해의 경우 22.4%, 사기피해는 22.9%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조사 대상자 중 절도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 보고율이 16.4%, 사기피해의 후유증 보고율이 13.4%인 데 비하여 학교밖 청소년이 재산피해를 경험한 후 정신적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보다 많음을 보여준다. 폭력범죄피해의 정신적 후유증 역시, 갈취피해자 중 정신적 후유증을 겪은 응답자는 38.9%, 폭행·협박피해자 중 36.4%로 학교조사 대상자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학교밖 청소년 중 여자 응답자는 각 피해유형별로 정신적 후유증을 보고한 비율이 절도피해자 중 47.8%, 사기피해자 중 36.8%, 폭행·협박피해자 중 59.1%로 나타났다. 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보고한 비율은 성폭력피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61.5%가 한 가지 이상의 후유증을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행동적 측면에서 나타난 피해의 영향을 살펴보면, 학교밖 청소년은 피해경험을 한 후 이로 인하여 이사·전학을 가거나 무단결석·기출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절도피해자 중 18.4%, 사기피해자 중 10.4%, 갈취피해자 중 38.9%, 폭행·협박피해자 중 25.5%, 성폭력피해자 중 23.1%로 나타났다.

나. 가정내 학대·또래 괴롭힘·성적 괴롭힘 피해의 결과와 영향

학교밖 청소년이 가정내 학대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는 31.4%로 학교조사 대상자(13.1%)보다 많았으며, 지속기간 역시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내 학대로 인한 신체피해를 입은 비율도 학교조사 대상자의 경우 46.3%인 것에 비하여 학교밖 청소년 피해자 중 68.6%가 신체피해를 보고하였다. 즉, 학교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피해 정도가 학교조사 대상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괴롭힘 피해가 지속된 경우도 26.5%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보고한 학교밖 청소년은 가정내 학대의 경우

68.6%, 괴롭힘 피해자 중 63.6%, 성적 괴롭힘 피해자 중 66.7%였다. 같은 유형의 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다고 응답한 학교조사 대상자 비율이 30%대 이하에 머무른 것에 비하여 학교밖 청소년은 피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보다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적 측면에서 나타난 피해의 영향도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였다. 가정내 학대를 경험한 학교밖 청소년 중 이로 인하여 이사·전학을 가거나 무단결석·가출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1%, 또래 괴롭힘 피해자 중 20.4%로 나타났으며, 성적 괴롭힘의 경우 이러한 비율은 5.3%로 다른 피해유형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 9 장



요약 및 결론

전 영 실

요약 및 결론

제1절 주요 조사결과 요약

1. 범죄피해 발생현황

일반적인 범죄와 관련해서 피해자 발생률을 보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가운데 지난 1년간 절도, 사기, 성폭력, 갈취, 폭행·협박 피해경험이 있었던 경우는 786,283명으로 추정되며 피해자 발생률은 20.8%로 나타났다. 학교급 별로는 고등학생의 피해자 발생률이 23.1%로 가장 높았으며 252,057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학생 역시 피해자 발생률이 22.4%로 고등학생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며, 초등학생은 이보다 5% 가량 낮은 17.3%의 피해자 발생률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피해자 발생률은 재산범죄가 17.6%로 폭력범죄 6.2%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성폭력범죄(초등학생 제외)의 경우 피해자 발생률은 0.6%였다. 학교급 별 피해자 발생률은 피해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재산범죄의 경우 고등학생의 피해율이 20.8%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 19.4%, 초등학생 13.0%의 순으로 낮아졌다. 반면, 폭력범죄는 초등학생 중 7.8%가 1건 이상의 피해를 보고하여 피해자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 5.4%, 고등학생 4.4%로 나타났다. 성폭력피해는 초등학생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0.6%의 피해자 발생률을 보여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조사결과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4년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결과와 비교해보았다. 2014년 조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번 조사결과 중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응답결과를 중심으로 비교해보면, 재산

범죄의 경우 절도와 사기 피해자 발생률이 2014년 조사에서는 각각 7.6%와 4.5%인데 비해(홍영오·연성진, 2014: 82), 이번 조사에서는 14.2%와 8.2%로 높게 나타났다. 폭력범죄의 경우에도 2014년 조사에서 나타난 갈취, 폭행, 협박 피해자 발생률은 1.3%, 0.7%, 1.2%였으나(홍영오·연성진, 2014: 82),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비율이 각각 2.1%, 1.8%, 1.7%로 비교적 높았다. 즉, 모든 피해유형에서 2014년 조사결과보다 올해 조사에서 피해자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4년 조사와 이번 조사의 문항구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두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동·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피해유형으로 가정내 학대·또래 괴롭힘·성적 괴롭힘과 관련해서 지난 1년간의 피해경험을 조사한 결과, 또래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는 8.9%, 가정내 학대는 2.1%, 성적 괴롭힘은 1.7%(초등학생 제외)의 비율을 보였다. 피해유형별로 피해정도를 학교급에 따라 살펴보면, 또래 괴롭힘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 피해경험을 보고한 비율이 각각 9.9%와 10.0%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고등학생은 이보다 다소 낮은 6.2%였다. 반면, 가정내 학대는 고등학생이 가장 높은 피해자 발생률을 보여 2.7%였으며, 중학생 2.1%, 초등학생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 괴롭힘은 중학생 중 피해자 발생률이 2.1%로 고등학생 1.3%보다 약간 높았다.

2. 범죄피해실태

가. 재산범죄 피해실태

재산범죄의 피해실태를 보면, 기초조사표에서 절도나 사기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최근에 발생한 피해를 기준으로 사건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한 결과,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계절은 여름이 가장 많았으며 절도피해 중 58.7%, 사기피해 중 59.7%가 6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하였다. 구체적인 발생시각은 알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낮부터 오후사이(12~18시)에 발생한 경우가 절도 35.4%, 사기 30.6%로 가장 많았다.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장소는 학교나 학교근처가 가장 많았으며 절도피해 중 62.1%, 사기피해 중 46.8%였다. 그 외에는 절도피해가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 18.3%였으며, 사기피해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경우가 20.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재산범죄피해자의 사후 대응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절도피해자 중 27.9%, 사기피해자 중 38.2%는 피해사실에 대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피해의 경찰 신고율은 절도피해 3.6%, 사기피해 4.8%에 불과하였다.

나. 폭력범죄 피해실태

폭력범죄피해실태를 보면, 폭력범죄의 발생계절은 재산범죄와 마찬가지로 여름이 많았다. 갈취피해의 경우 여름에 발생한 사건이 59.9%였으며 다음으로 가을에 발생한 사건 비율이 15.9%였다. 폭행·협박 역시 여름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사건이 56.2%로 가장 많았으며, 봄에 발생한 사건이 24.6% 등이었다. 구체적인 발생시각은 갈취피해 중 24.4%, 폭행·협박피해 중 38.1%가 한낮부터 오후사이(12~18시)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폭행·협박피해의 경우 저녁부터 심야사이(18~06시)에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등학생 중 24.1%, 중학생 중 21.4%로 초등학생에 비해 늦은 시간대에 폭행·협박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폭력범죄피해는 절반 이상이 학교나 학교근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유형별로는 갈취피해 중 51.2%, 폭행·협박피해 중 55.2%가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폭력범죄의 가해자 관계를 보면, 가해자가 아는 사이인 경우는 갈취피해 중 53.5%, 폭행·협박피해 중 78.2%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가해자가 학교친구인 사건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폭력범죄피해로 인하여 한 가지 이상의 정신적 후유증을 보고한 응답자는 갈취피해자 중 12.7%, 폭행·협박피해자 중 22.2%로 재산범죄피해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폭행·협박피해자 중 13.4%는 피해로 인하여 우울함을 겪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외에도 고립감, 두려움, 부정적 자존감,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각각 10% 가량으로 조사되었다. 갈취피해로 인하여 이사·전학, 무단결석, 가출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4%였으며, 폭행·협박피해자 중에는 8.5%였다.

피해자의 사후대응에 대해서 보면, 폭력범죄피해사실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응답자는 갈취피해자 중 45.6%, 폭행·협박피해자 중 36.1%였으며, 이 가운데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73.5%

와 63.9%였다. 폭력범죄피해사실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한 피해자의 비율은 재산범죄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높았다. 경찰에 신고된 사건 비율은 갈취피해 중 6.8%, 폭행·협박피해 중 7.3%로 재산범죄피해보다 경찰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건 신고율은 초등학생이 4%대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절반 수준이었다.

다. 성폭력피해실태

강간(미수 포함),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해는 여름에 발생한 사건이 32.4%로 가장 많았으나 봄과 가을에 발생한 사건도 각각 24.3%로 나타나 재산범죄나 폭력범죄에 비해 계절의 편향성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발생시각은 33.3%가 한낮에서 오후사이(12~18시)에 발생하였으며, 아침과 오전사이(06~12시)와 저녁에서 밤사이(18~24시)에 각각 7건(19.4%)이 발생하였다. 성폭력피해가 발생한 장소는 학교나 학교근처가 58.3%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교실에서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집에서 발생한 사건이 25.0%를 차지하였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누구인지 인지하였다고 답한 경우에 한하여 성폭력피해의 가해자 특성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가족을 포함한 친인척이 가해자인 사건은 30.0%였으며, 친인척 외 아는 사람인 사건은 66.7%로 이 가운데 79.8%가 학교친구였다.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은 강간(미수 포함)이 11.1%,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성적으로 몸을 만진 경우가 55.6%, 가해자의 몸을 만지도록 강요한 경우는 16.7%였으며,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피해는 30.6%로 나타났다.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신적 후유증을 보고한 피해자는 25.3%였으며 이러한 비율은 중학생 피해자의 경우 29.0%로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정신적 후유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면증·악몽·환청·두통을 보고한 사례가 11.4%로 가장 많았으며, 두려움(10.0%), 부정적 자존감(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동적 측면에서 나타난 피해의 영향을 살펴보면 성폭력피해로 인해 이사나 전학을 갔다고 보고한 응답자가 21.6%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피해자의 사후 대응을 보면, 성폭력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피해자 비율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40% 가량으로 비슷하였다. 중학생은 부모님에게 이야

기한 비율이 친구에게 이야기한 경우보다 2배 이상이었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님보다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피해 사실이 경찰에 신고된 경우는 총 2건(5.6%)에 불과하였다.

라. 가정내 학대·괴롭힘 피해실태

1) 가정내 학대 피해실태

가정내 학대의 피해발생 시각은 저녁부터 밤사이(18~24시)가 32.7%로 가장 많았고, 이러한 비율은 중학생 39.0%, 고등학생 34.6%로 초등학생 21.4%보다 다소 높았다. 피해유형의 특성 상 집에서 발생한 사건이 83.2%로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학교나 학교근처에서 보호자에 의한 학대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9.8%로 나타났다.

가정내 학대 피해실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학대를 한 경우가 45.8%, 어머니가 학대한 경우는 41.4%였으며,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달리 중고생의 경우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 학대피해를 입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내 학대가 일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고한 경우는 피해자 중 13.1%였으며, 특히 고등학생이 지속적인 가정내 학대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17.3%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내 학대로 인한 신체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한 경우는 46.3%였으며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신체피해를 보고한 경우는 10.2%로 조사되었다.

가정내 학대피해자 가운데 정신적 후유증을 한 가지 이상 보고한 비율은 38.2%였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 중 절반이 넘는 52.8%가 후유증을 겪었다고 답하였다.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정적 자존감을 보고한 응답자가 23.6%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함 22.9%, 고립감 17.5%, 두려움 16.3%로 나타났다. 가정내 학대피해가 발생한 후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한 상대는 친구가 28.0%로 가장 많았으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41.1%였다. 가정내 학대피해의 경찰신고율은 4.7%였으며, 신고자는 가족이 가장 많았다.

2) 괴롭힘 피해실태

다음으로 괴롭힘 피해실태를 보면, 또래 괴롭힘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계절 역시 다른 피해유형과 마찬가지로 여름이 5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봄, 가을, 겨울의 순이었다. 피해발생시각은 아동·청소년이 주로 학교에서 생활하는 한낮부터 오후 사이(12~18시)와 아침부터 오전사이(06~12시)가 각각 32.8%와 12.0%로 나타났다.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64.2%를 차지한 학교나 학교근처였으며, 이외에도 온라인에서 발생한 피해도 13.0%로 조사되었다. 온라인에서 괴롭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한 경우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14.6%와 16.2%로 초등학생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학교친구가 85.1%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괴롭힘 피해가 다수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전체적으로 9.9%였으며, 이러한 비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 괴롭힘의 내용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심한 욕을 하거나 피해자의 약점이나 외모를 가지고 놀린 경우가 각각 63.9%와 52.8%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피해자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거나 소문을 내는 방식의 괴롭힘이 56.5%로 가장 많았다.

괴롭힘 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보고한 응답자는 피해자 중 30.1%였으며, 우울함을 보고한 사례가 23.2%로 가장 많았고 고립감 14.2%, 부정적 자존감 14.0%,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피해로 인하여 이사·전학, 무단결석, 가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3.6%의 비율을 보였다. 괴롭힘 피해사실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한 피해자는 41.4%, 선생님에게 이야기한 피해자는 18.2%였으며, 아무에게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8.9%로 나타났다. 괴롭힘 피해사실의 경찰신고율은 2.2%로 조사되었다.

3) 성적 괴롭힘 피해실태

성적괴롭힘 피해실태를 보면, 성적 괴롭힘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계절은 여름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봄, 가을, 겨울의 순이었다.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한낮부터 오후사이(12~18시)로 26.8%였으며, 다음으로 아침부터 오전사이(06~12시)에 발생한 사건은 12.2%를 차지하였다. 성적 괴롭힘 피해 중 절반이 약간 넘는 51.9%는 학교나 학교근처에서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온라인에서 발생한 피해

가 19.8%로 나타났다. 성적 괴롭힘 피해가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 페이스북 등 SNS와 카카오톡 등 인스턴트 메신저에서 발생한 사건이 각각 44.4%와 27.8%로 조사되었다. 성적 괴롭힘의 가해자 인지율은 45.8%로,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해자가 확인된 사건에 한하여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가해자인 사건이 62.2%, 여자가 가해자인 사건은 21.6%였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중학생 피해자의 경우 87.4%가 동일 연령대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반면, 고등학생 중 동일 연령대의 가해자에게 성적 괴롭힘피해를 입은 사례는 44.3%였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인 경우가 95.9%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대다수는 학교친구가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후 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한 가지 이상 보고한 피해자는 26.6%였다. 중학생의 경우, 부정적 자존감과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피해자가 각각 19.1%와 18.5%인데 반하여, 고등학생 피해자의 경우 두려움(15.1%), 우울함(15.0%), 고립감(13.7%)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고되었다. 피해자의 사후 대응을 살펴본 결과,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43.9%였으며, 부모님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경우는 19.5%에 불과하였고 친구에게 이야기한 비율은 이보다 높은 39.8%로 나타났다. 성적 괴롭힘 피해사실의 경찰 신고율은 2.4%였다.

3.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가. 일반적인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재산, 폭력범죄 피해,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보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는 이변량 분석(카이제곱검정)에서 종속변수와 유의한 상관이 확인된 변수를 우선 선정하고, 결측치가 많은 변수들을 제외 또는 병합하였다. 결과를 보면, 재산범죄 피해에는 개인적 특성 중 성별(남>여), 학년(비교집단 고2에 비해 초6의 피해 확률이 낮으며, 고1의 피해확률이 높음), 보호, 노출, 유인성, 비행, 학교특성 중 출입문 통제여부, 거주지역 특성 중 사회적 무질서가 관련되었다. 보호는 피해가능성을 낮추

는 반면, 노출과 유인성, 비행경험은 피해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문을 통제하는 학교의 학생들의 재산범죄 피해 확률이 더 낮았으며,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 피해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 피해에는 개인적 특성이 주로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력범죄 피해에는 개인적 특성 중 학년, 신체적 취약성, 보호, 비행경험, 가족특성 중 주관적 계층, 친구 특성 중 친구의 피해, 학교특성 중 학교경찰인지도, 학교폭력예방 노력, 지역 특성 중 사회적 무질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비교집단 고등학교 2학년에 비해 초등학교 4,5,6학년, 중학교 2학년의 폭력범죄 피해 확률이 높았다. 또한 신체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보호수준이 낮을수록, 비행경험이 있는 경우,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친구피해가 많을수록, 학교폭력예방노력이 약할수록, 거주지역의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피해 확률이 높았다. 한 가지 의외의 결과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인지하는 학생일수록 폭력범죄 피해확률이 증가하였다는 점인데, 이는 피해과정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여 성폭력 등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성별(여>남), 학년(비교집단 고2와 비교해서 중2의 피해확률이 높음), 비행(정적 관계), 학교의 폭력 예방노력(부적 관계)이었다.

일반범죄 피해에 관련되는 요인을 보면,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폭력 등 피해에서 공통적으로 비행경험이 있는 경우 피해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년이 관련되는데, 재산범죄의 경우는 고등학생의 피해가능성이 높은 반면, 폭력과 성폭력 등 피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린 층에서 피해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나이가 어린 층이 폭력성 범죄에 특히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피해의 경우 일상활동 특성 중 보호요인이 관련되어서 보호수준을 높이는 것이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학교의 폭력예방노력이 폭력과 성폭력 등 피해와 관련되어서 학교차원에서의 폭력예방에 대한 관심 및 합리적 해결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나. 괴롭힘 및 가정내 학대 피해 관련요인

먼저 괴롭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특성 중 성별, 학년, 신체적 취약성, 보호, 비행경험, 가족특성 중 주관적 계층, 배우자폭력, 친구특성 중 친구와의 애착, 친구 비행, 친구 피해, 학교특성 중 출입문통제,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신뢰, 학교의 폭력예방노력, 학교응집성, 거주지역 특성 중 사회적 무질서, 이웃관계였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피해가능성이 높으며, 학년별로는 비교집단인 고2에 비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피해확률이 높았다. 이는 미국의 6-10학년생(주로 우리나라의 13-17세에 해당)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연구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괴롭힘 피해가 낮아진 것을 보여준 결과와도 통하는 것이다(Wang et al., 2009). 신체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보호수준이 낮을수록 괴롭힘 피해가능성이 높았으며, 앞의 일반적 피해결과와 마찬가지로 비행경험은 괴롭힘 피해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괴롭힘 피해가능성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괴롭힘 피해와 관련됨을 보여준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Bowes et al., 2013). 또한 배우자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의 학생일수록 친구괴롭힘 피해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친구특성과 관련해서는 친구와의 애착이 약할수록, 친구의 비행수준이 높을수록, 친구의 피해경험이 적을수록 괴롭힘 피해가능성이 증가하였다. 학교특성 중 출입문통제, 학교전담경찰 신뢰도, 학교폭력예방 노력, 학교응집 등의 요인들은 괴롭힘 피해 위험성 감소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학교경찰인지도는 친구괴롭힘 피해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었는데, 이는 앞서 폭력범죄 피해와 마찬가지로 괴롭힘 피해 학생일수록 학교폭력 전담경찰을 인식하거나 이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교사의 지지와 이웃관계 친밀성은 각각 괴롭힘 피해와 정적, 부적 관계를 보였는데, 교사 지지의 경우 괴롭힘당하는 학생이 보다 교사의 지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가정내 학대 피해와 유의한 관계를 보인 요인은 성별, 비행경험, 주관적 계층, 부모애착, 배우자폭력이다. 남자에 비해 여자가 학대 피해확률이 높았으며, 비행경험도 학대 피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낮을수록, 배우자폭력이 많을수록 학대 피해 위험성은 증가하였다.

4. 범죄에 대한 두려움 실태

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일반적 두려움과 유형별 두려움을 통하여 살펴 보았다. 먼저 일반적 두려움의 평균을 보면 초등학생이 2.62점,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2.32점, 2.12점으로 초등학생의 두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유형별 두려움을 보면,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고등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중학생, 초등학생의 순인 반면,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은 중학생의 경우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초등학생, 고등학생의 순이었고, 가정내 학대에 대한 두려움은 초등학생의 경우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고등학생, 중학생의 순이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폭력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중고생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 등에 대한 두려움은 중고생간에 차이가 없었다.

나. 두려움 관련요인

일반적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은 성별, 학년, 신체적 취약성, 자기통제력, 피해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보다는 여자, 저학년의 일반적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으로 취약할수록, 범죄피해가 있는 경우,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일반적 두려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특성 중에는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부모감독과 부모애착이 강할수록, 부모 이탈성, 배우자폭력 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높았다. 부모의 감독수준 및 애착수준 관련 결과는 다소 의외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평소 부모가 자녀의 안전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환기시킨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친구 특성 중에는 친구애착, 친구비행, 친구징계경험이 일반적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요인, 친구피해는 일반적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 특성 중에는 학교경찰 인지도, 학교규칙문화가 일반적 두려움과 부적 관계를 보인 반면 학교폭력예방 노력은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 역시 학교 측의 학교폭력예방 노력으로 인해 안전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주의와

관심이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 특성에 있어서는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일반적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웃참여 수준이 일반적 두려움과 정적 관계를 나타낸 점은 의외의 결과이다.

재산범죄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특성 중 성별, 학년, 신체적 취약성, 자기통제력, 피해경험, 가족특성 중 주관적 계층, 부모감독, 부모일탈성과 배우자폭력, 친구특성 중 친한 친구수, 친구애착, 친구 비행, 지난 1년간 친한 친구의 학폭위 회부 유무, 친구의 피해, 학교특성 중 학교경찰신뢰도, 거주지역 특성 중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였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초등학생과, 중3학생의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컸다. 신체적으로 취약할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부모감독이 낮을수록, 부모일탈성과 배우자폭력 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특성 중에는 친한 친구 수가 적을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수준이 낮을수록, 주변에 비행을 저지르거나 학폭위에 회부된 친구가 없을수록, 친구피해가 많을수록 재산범죄 두려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특성으로는 예상과 달리 학교경찰신뢰도와 재산범죄 두려움이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지역 특성으로는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가 두려움 증가 요인이었다.

폭력범죄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특성 중 성별, 학년, 신체적 취약성, 자기통제력, 피해경험, 가족 특성 중 주관적 계층, 부모감독, 부모애착, 부모일탈성, 배우자폭력, 친구특성 중 친한 친구수, 친구애착, 친구비행, 친구 피해, 학교특성 중 학교규모, 학교경찰 신뢰도, 거주지역 특성 중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였다. 개인적 특성과 관련해서 보면, 여자, 초등학생의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신체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특성 중 주관적 계층, 부모감독, 부모애착은 폭력범죄 두려움과 부적 관계를, 부모일탈성과 배우자폭력은 정적 관계를 보였다. 친구 특성의 경우 재산범죄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친한 친구수, 친구애착, 친구비행은 폭력범죄 두려움을 감소시켰고, 반면에 친구피해가 많을수록 두려움이 증가하였다. 학교 특성 중 학교규모에 있어서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 학생의 폭력범죄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200-600명 수준의 중규모 학교 학생의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와 달리 학교경찰신뢰도와 폭력범죄 두려움은 정적관계를 보였다. 거주지역 특성 중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는 폭력범죄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일반적 두려움, 재산범죄,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보면, 개인적 특성 중 성별, 학년, 신체적 취약성, 피해경험, 자기통제력이었다. 또한 가족특성 중 주관적 계층, 부모감독, 부모 일탈성, 배우자폭력, 친구특성 중 친구애착, 친구비행, 친구 피해, 거주지역 특성 중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였다. 즉 이러한 요인들이 초중고생의 두려움에 중요하게 관련됨을 보여준다. 특히 범죄피해경험이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것은 기존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홍영오·연성진, 2014; 박현수, 2018; 김준범·김정현, 2018; Addington and Yablon, 2011; Tillyer et al., 2011; Keith, 2018).

다. 범죄피해 예방조치

초중고생의 범죄피해 예방조치를 보면, 공통적으로 적극적인 예방(호신도구 소지 등)보다는 소극적인 예방(누군가와 같이 다니거나 무서운 길 회피)이 많았다. 또한 초중고를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생의 예방활동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중학생, 고등학교생의 순이었다.

5. 학교밖 청소년 피해조사 주요결과

12세부터 19세 사이의 학교밖 청소년 440명을 대상으로 한 피해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피해발생 현황과 관련하여, 일반범죄피해 발생 현황을 보면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 사이에 절도, 사기, 갈취, 폭행·협박,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학교밖 청소년은 440명 중 31.4%인 138명으로 학교조사 대상자에 비하여 10% 이상 높은 피해자 발생률을 보였다. 피해유형별 피해자 발생률은 재산범죄 24.5%, 폭력범죄 14.8%, 성폭력범죄 3.2%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피해자 발생률을 살펴본 결과, 단기쉼터·이

동설텐터 응답자가 4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보호관찰 대상자 33.8%,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응답자 2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응답자 33.7%가 하나 이상의 피해경험을 보고하여 여자 응답자 27.5%에 비하여 다소 높은 피해자 발생률을 보였다. 구체적인 범죄유형별 피해자 발생현황을 살펴본 결과, 재산 범죄 중 절도피해자는 응답자 중 17.3%, 사기피해자는 10.9%였으며, 폭력범죄의 경우 갈취피해를 보고한 응답자는 4.1%, 폭행·협박 피해를 보고한 경우는 12.5%로 나타났다. 학교조사 대상자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피해유형은 폭행·협박으로 학생 중 3.8%가 1년 간 폭행·협박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한 것에 비하여, 학교밖 청소년은 이보다 3.3배 가량 피해자 발생률이 높았다.

가정내 학대·또래 괴롭힘·성적 괴롭힘 피해 발생 현황을 보면, 학교밖 청소년 조사 결과, 지난 1년 간 가정내 학대, 또래 괴롭힘, 성적 괴롭힘을 하나라도 경험한 응답자는 19.1%로, 학교조사 대상자 중 이러한 비율이 10.9%인 것과 비교하면 피해자 발생률이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범죄피해와 마찬가지로 설텐터 응답자의 피해자 발생률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가정내 학대피해를 경험한 설텐터 응답자는 30.8%로 다른 기관의 응답자들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학생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15배에 가까운 피해자율을 보였다. 각 피해유형별 피해자 발생률을 살펴보면, 가정내 학대의 피해자율은 8.0%, 또래 괴롭힘 피해자율은 11.1%, 성적 괴롭힘 피해자율 6.4%로 나타났다. 학교조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또래 괴롭힘 피해자율의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가정내 학대와 성적 괴롭힘 피해자율은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조사 대상자의 4배 가량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학교밖 청소년 중 성별에 따른 피해자율은 일반범죄피해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과 달리, 가정내 학대와 또래 괴롭힘, 성적 괴롭힘은 모두 남자보다 여자 응답자의 피해자 발생률이 더 높았다.

피해의 영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조사 대상자에 비하여 피해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과 행동적 측면의 영향을 보고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제2절 조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의 아동·청소년범죄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면, 첫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폭행·협박피해의 70%대, 갈취피해의 50%대가 아는 사람에게 의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폭력예방 교육에서 아는 사이에서의 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응과 관련한 교육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참고로 영국에서 13-16세 903명을 대상으로 한 가족외 피해조사 결과에서도 학교나 거주지역에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아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과 학대에 관하여 교육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Jackson et al., 2016: 354).

또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콘텐츠,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근거해서 학교폭력예방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일선 교사와의 자문에 의하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은 주로 인쇄물이나 영상물 시청 등으로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폭력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지식을 통하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을 삼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속에서 폭력을 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역할체험극 프로그램 등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자문을 구한 일선 교사도 역할체험극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이후 서로 느낀 점을 공유한다면 학교폭력예방교육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콘텐츠, 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폭력예방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 사기 등 사이버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기피해의 경우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가 20.2%였다(초등 18.0%, 중등 19.0%, 고등 23.3%). 또한 괴롭힘 피해의 13.0%, 성적 괴롭힘 피해의 19.8%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문제부모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정의 기능적 특성들이 아동·청소년의 범죄피해에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지지가 괴롭힘 피해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도 있다(Claes et al., 2015).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한다면 피해예방 및 피해의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서 가족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부모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을 통하여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자녀와의 애착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⁴⁵⁾ 이와 더불어 교육내용에 자녀의 피해발생시 대응 방법 등에 대한 부분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은 자녀의 만성적 피해를 예방하는데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부모가 일탈성이 강하거나 배우자폭력이 있는 가정에 대한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⁴⁶⁾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일탈성이나 배우자폭력이 아동·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폭력은 괴롭힘 피해와 학대 피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한다면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및 지원을 통하여 가정폭력 가정에 대한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정내 학대 피해자 중 5회 이상 반복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5.1%였다. 즉 가정내 학대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반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이에 반해 가정내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교사에게 이야기한 비율은 6% 정도로 다른 폭력범죄나 괴롭힘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폭행·협박과 괴롭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각각 15.7%, 18.2%). 이와 관련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이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교사 입장에서 학대 피해에 대해 인지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교사대상 아동학대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교사대상

45) 최근 부모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양한 직군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적 양육방법을 교육하기도 한다(보건복지부 보도 자료, “아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위한 순회교육 실시, 2018.7.5.,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5323&page=1, 최종검색: 2018. 11.10). 이러한 부모교육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6) 이러한 측면에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호자교육 프로그램에서 학대나 가정폭력이 있는 보호자를 인지할 경우 상담, 치료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동학대 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지는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해 인지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차원에서의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의 폭력예방 노력, 학생이 공감할 수 있는 규칙문화 형성, 응집성 강화 등 학교차원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학교의 객관적 특성보다는 학교 응집성, 학교의 폭력예방노력, 규칙문화 적정성 등이 범죄피해 및 두려움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의 폭력예방노력은 폭력피해, 성폭력 등 피해, 괴롭힘 피해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기존 연구에 의하면 학교분위기는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이후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Yang et al., 2018). 또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온정적일수록 학교내 괴롭힘 피해를 목격할 경우 자율적으로 피해자를 방어해 주려는 동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Jungert et al., 2016). 이러한 결과들은 학교의 폭력예방 노력 및 학생간, 학생과 교사간의 관계개선이 폭력감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차원에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폭력 등의 피해발생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학생들이 공감하는 폭력예방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 학교차원에서 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통한 응집성 강화, 학생이 공감할 수 있는 학교규칙의 제정 및 엄격한 적용 등의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여섯째, 학교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이 중 하나 이상을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반해 피해학생에 대한 내용은 동법 제16조에 있는데, 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이나 일시보호, 치료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16조의 2에는 이 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장애학생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지하게 된 이후부터 피해자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

는 매뉴얼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정신적 후유증이 있다는 비율이 괴롭힘 피해의 경우 30.1%, 폭행이나 협박 피해의 경우 22.2%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심리상담 등을 통한 지원이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지원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매뉴얼이 아동·청소년에게 공유된다면 피해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활동에 대해 알리고,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하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선도보호를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신뢰할수록 괴롭힘 피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학교전담경찰관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 및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최근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 쉼터 등과 협력하여 가정밖, 학교밖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전문기관 연계와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⁴⁷⁾ 이러한 활동은 학교밖 청소년의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거주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무질서가 중요한데,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무질서는 아동·청소년의 재산피해, 폭력피해, 괴롭힘 피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CPTED를 통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범죄피해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 학교 중심으로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자율방범활동, 배움터 지킴이 등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사회적 무질서를 개선

47) 경찰청 보도자료, ‘학교전담경찰관(SPO), 위기의 청소년을 보듬다’(2018.7.2.)
(<https://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11&nttId=20411&menuNo=200488>: 최종검색: 2018.10.30.).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피해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아홉째, 소년 비행자에 대한 처우에서 피해 요소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비행이 피해와 관련되었으며, 이는 기존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Henson et al., 2010; Tillyer et al., 2011; Zaykowski and Gunter, 2012; Averdijk and Bernasco, 2015). 또한 Pereda 등(2017)이 소년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이들의 상당수가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자문을 구한 보호관찰 담당자에 의하면, 보호관찰대상자 중 가정내 학대나 다른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로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보호관찰대상자의 30%대가 범죄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다면 소년 비행자에 대한 처우에서 체계적으로 피해경험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피해가 치유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열째,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컴퓨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피해 파악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컴퓨터 이용자의 범죄피해를 조사한 결과 일반 학생보다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컴퓨터 이용자의 피해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컴퓨터 등에서 이용자의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연계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러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피해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개발 및 보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컴퓨터 등과 피해자 지원기관이나 상담기관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절 향후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를 위한 제언

아동·청소년의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서는 이들의 피해실태 및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가 정례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의 정례화를 계획하고 있다. 전국범죄피해조사가 격년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2016년에 실시된 상업범죄피해조사와 아동·청소년범죄피해조사가 4년 주기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향후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를 위한 개선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1. 학생 특성을 고려한 조사시기 및 피해기간 설정

이번 조사는 새롭게 조사표를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 설문조사는 6-7월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기간을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 즉 2017년 7월-2018년 6월으로 설정하였다.⁴⁸⁾ 이러한 피해기간 설정은 학생에게 지난 학년과 현재 학년의 경험을 회상해야 하는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의 피해경험으로 질문할 경우 이전 학교와 현재 학교에서의 경험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는 어려움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현재 학년에서의 피해 등으로 질문하기도 한다(Wilcox, 2009: 254).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피해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피해조사의 피해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경우 지난 해(1-12월) 혹은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로 할 경우 1, 2월이 포함되어서 3-12월까지와는 다른 학년, 학교의 경험을 회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조사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 학생이며, 학생의 피해에서 학교관련 특성을 포함해야 한다면 학기를 기준으로 피해기간을 질문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즉, 조사시기를 3월로 하고,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3월부터 올 해 2월까지의 피해를 질문한다면 조사대상자 입장에서 지난 학년을 기준으로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피해 회상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 파악 등을 위한 보완 조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

48) 피해조사의 피해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청소년범죄피해조사, 전국범죄 피해조사 등 다른 피해조사와의 일관성을 고려해서이다.

계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 부모 교육수준 및 부모 직업유무만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도 정확히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면, 이번 조사에서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학력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40%대에 달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동·청소년대상 피해조사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보완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조사표는 청소년용과 보호자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가구소득과 같이 청소년이 잘 알지 못하는 문항은 보호자용 조사표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의 전국아동 폭력피해조사(National Survey of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는 전화조사방법을 이용하여 보호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가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를 참고로 하여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시 보호자용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사를 통하여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해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호자 조사에서 자녀의 피해나 두려움에 대한 보호자의 의견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응답자를 배려한 설문지 구성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는 조사대상이 어린 아동과 청소년이며, 조사의 주된 내용이 피해에 대한 것이므로 대상자 입장에서 응답하기 어렵거나 응답을 원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 피해조사의 목적이 피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긴 하지만 조사대상자가 응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대답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앞서 살펴 본 영국의 범죄피해조사(10-15세 대상)의 경우 아동이 조사 도중 응답하고 싶지 않으면 사전에 받은 빨간색 카드를 조사원에게 제시하고, 조사원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각 질문에 모두 응답해야만 설문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모든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사대상자 입장에서는 응답을 원치 않는 항목에 대해서도 모두 응답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응답을 원치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하나의 응답범주로 ‘응답을 원치 않는다’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조사대상자가 응답하기 어렵거나 원치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몇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피해유형별 사건조사표 구성

이번 연구에서는 재산범죄(절도, 사기), 폭력범죄(갈취, 가족외 폭행, 가족외 협박), 성폭력·성적 괴롭힘, 가정내 학대, 괴롭힘 등 각 피해유형별로 거의 동일한 사건조사표를 구성하여 피해실태를 파악해 보았다. 그러나 재산범죄나 폭력범죄 등 일반적인 범죄피해와 괴롭힘이나 가정내 학대 피해 등의 경우 피해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건조사표를 달리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가정내 학대의 경우 가해자 성별(가해자와의 관계를 통해 파악 가능), 발생장소 등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앞서 영국의 범죄피해조사의 경우 ‘간이 피해양식’(mini victim form)과 ‘정식 피해양식’(full victim form)으로 나누어서 간이 피해양식은 피해 사실과 관련한 몇 가지 추가질문이 포함되며, 정식 피해양식에는 범죄피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앞으로의 조사에서는 피해유형에 따라 사건조사표를 달리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5. 성폭력과 성적 괴롭힘의 구분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따라서 성폭력과 성적 괴롭힘을 하나의 유형으로 하여 조사하고, 이에 대한 사건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다만 피해율은 예시에 나온 응답을 토대로 성폭력과 성적 괴롭힘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청소년범죄피해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미국의 전국아동폭력피해조사 등에서는 성폭력(혹은 성범죄) 피해에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피해와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 피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괴롭힘이 중요한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피해율을 추정할 때 성적

괴롭힘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율을 추정하는 것은 법적인 의미에서 맞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과 성적 괴롭힘을 구분하여 피해조사를 하고, 별도 사건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별도 조사 수행

이 연구에서는 학생 대상 조사에 대한 보완조사로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피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구성하여 간단하게 피해실태를 살펴 보았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범죄피해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예방 대책 수립과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학생 이외에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별도 조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학교밖 청소년의 피해조사에서는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설문구성(예, 학교생활보다는 현재의 일상활동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현재와 같이 학생조사에 부가해서 이루어지는 방식, 즉, 학생조사와 동일한 질문으로 하고,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별도 조사를 통하여 이들의 피해특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면접조사 등 보완적인 자료를 통하여 피해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찰청 보도자료, '학교전담경찰관(SPO), 위기의 청소년을 보듬다'(2018.7.2.)
<https://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11&nttId=20411&menuNo=200488>: 최종검색: 2018.10.30.).
- 경찰청 홈페이지, 분야별 치안자료 1.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최종검색: 2018. 11.1 :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838>)
- 교육부. (2018).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2018.08.28) (URL: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5144&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503&opType=N>: 최종검색: 2018.09.05.)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 2017 교육통계연보.
- 김미숙·전진아·하태정·김효진·오미애·정은희·최은진·이봉주·김선숙. (2013). 아동
종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지·김희진. (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 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
태조사 통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지·김희진·이민희·박선영. (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 총괄보고
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재엽·황성결. (2017). 여자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 한국사회
복지학, 69(4), 75-97.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준범·김정현. (2018).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및 학교요
인에 대한 연구 -두려움 수준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14(1): 49-66
- 김준호·노성호. (1990).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성호. (2009). 부모가 청소년의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학연구, 17(1),
217-240.
- 노성호. (2013). 범죄피해, 범죄의 두려움과 청소년의 삶의 질. 피해자학연구, 21(1),
83-110.
- 노성호·김성연·이동원·김지선. (1999).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노윤채·신정숙·박희서. (2012).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한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자살충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7(8), 171-179.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7(<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jsp>, 최종검색: 2018.11.1.).

박현수. (2018). 청소년의 구체적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2), 91-121.

보건복지부. (2017). 아동종합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위한 순회교육 실시, 2018.7.5.,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5323&page=1, 최종검색: 2018. 11.10)

백혜정.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신재현·김상운. (2015). 무질서로 인한 폭력경험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1), 74-82.

양계민·강경균. (2017).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V: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박주희. (2014).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I: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신현옥·박주희. (2014).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이인선·최지현. (2014).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교폭력의 중복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5(3), 259-281.

이종원·이순래·정윤미. (2016). 한국 아동 청소년 패닐조사 VIII: 기초분석보고서I -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분석: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종원·모상현·강형철·정윤미·한지형. (2016). 한국 아동·청소년 패닐조사 VII: 사업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충권·양혜린. (2017). 가정에서의 학대·방임 피해경험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 영향: 부모애착, 교사애착, 또래애착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 연구, 19(1), 29-55.
- 전영실·기광도. (2009). 저연령 소년의 비행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노성훈. (2011).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실태 및 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신동준.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 연구원.
- 전용태. (2018). 초등학생이 인식하는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호경비학회지, 55, 97-116.
- 장현석. (2017).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 학교폭력(왕따) 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13(1), 227-254.
- 정문경. (2015).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성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2), 195-211.
- 조운오. (2012). 학교폭력 피해와 우울증간의 관계에서 교사 및 부모관계 조절효과. 피해자학연구, 20(2), 233-256.
- 최수형·조영오. (2017).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은희·황미영.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가정폭력피해와 또래폭력가해와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8), 597-609.
- 최인재·이경상·김정숙·장근영. (2015).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index>, 최종검색: 2018. 10.2.).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a).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b).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한시언·장재홍. (2017).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가해, 피해경험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4(1), 69-87.
- 홍영오. (2008). 2008년 청소년대상 범죄피해조사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영오·연성진. (2014).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지영·유정이. (2013). 학교폭력 사건 피해학생 학부모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1), 107-145.
- 황여정·김지경·이윤주·정윤미·신정민·전현정. (2016).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Addington, L. A. and Yablou, Y. B. (2011). How Safe Do Students Feel at School and While Traveling to School? A Comparative Look at Israel and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117, 465-493.
- Aho, Nikolas., Gren-Landell, Malin., and Svedin, Carl Göran. (2016). The Prevalence of Potentially Victimizing Events, Poly-Victimization, and Its Association to Sociodemographic Factors: A Swedish Youth Surve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1(4), 620-651.
- Averdijk, M. and Bernasco, W. (2015). Testing the Situational Explanation of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52(2), 151-180.
- Berg, Mark T., Stewart, Eric A., Schreck, Christopher and Simons, Ronald L., The Victim-Offender Overlap in Context: Examining the Role of Neighborhood Street Culture. *Criminology*, 50(2), 359-389.
- BMRB. (2010). British Crime Survey 2009-10 Technical Report: TNS-BMRB Report.(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16673/bcs0910tech1.pdf, 최종검색: 2018. 7. 22)
- Bouchard, Martin., Wang, Wei., and Beauregard, Eric. (2012). Social Capital, Opportunity, and School-Based Victimization. *Violence and Victims*, 27(5), 656-673.
- Bowes, Lucy., Maughan, Barbara., Ball, Harriet., Shakoor, Sania., Ouellet-Morin, Isabelle., Caspi, Avshalom., Moffitt, Tessir E., and Arseneault, Louise. (2013). Chronic Bullying Victimization across School Transitions: The Role of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5(2), 333-346.
-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17).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2016: Technical Documenta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 Carter, Bonnie Bell. and Spencer, Vicky G. (2006). The Fear Factor : Bullying and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1(1), 11-23.

- Chester, Kayleigh L., Callaghan, Mary., Cosma, Alina., Donnelly, Peter., Craig, Wendy., Walsh, Sophie., and Molcho, Michal. (2015). Cross-National Time Trends in Bullying Victimization in 33 Countries among Children Aged 11, 13 and 15 from 2002 to 2010. *The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25(suppl_2), 61-64.
- Chouhy, Cecilia., Madero-Hernandez, Arelys., and Turanovic, Jillian J. (2017). The Extent, Nature, and Consequences of School Victimization: A Review of Surveys and Recent Research. *Victims & Offenders*, 12(6), 823-844.
- Claes, Laurence., Luyckx, Koen., Baetens, Imke., Van de Ven, Monique., and Witteman, Cilia. (2015). Bullying and Victimization, Depressive Mood, and Non-Suicidal Self-Injury in Adolescents: The Moderating Role of Parental Suppor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 3363-3371.
- Cuevas, C. A., Finkelhor, D., Shattuck, A., Turner, H., and Hamby, S. (2013).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and the Intersection between Delinquency and Victimization. *OJJDP Juvenile Justice Bulletin* (<https://www.ojjdp.gov/pubs/240555.pdf>, 최종검색: 2018.10.1.)
- Ferguson, K. M., and Mindel, C. H. (2007). Modeling Fear of Crime in Dallas Neighborhoods: A Test of Social Capital Theory. *Crime and Delinquency*, 53(2), 322-349.
- Finkelhor, D. and Ormrod, R. (2000). Characteristics of Crimes against Juveniles, *OJJDP Juvenile Justice Bulletin*. (<https://www.ncjrs.gov/pdffiles1/ojjdp/179034.pdf>, 최종검색: 2018.7.4.)
- Finkelhor, D. and Turner, H. (2014a).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III(NatSCEV III) 2014: User's Guide, U.S.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C. (<https://www.icpsr.umich.edu/icpsrweb/NACJD/studies/36523/staff#>, 최종검색: 2018. 7. 25)
- Finkelhor, D. and Turner, H. (2014b).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III, 1997-2014: Questionnaire. (<https://www.icpsr.umich.edu/icpsrweb/NACJD/studies/36523/staff#>, 최

종검색: 2018. 7. 25)

- Fisher, Helen L., Caspi, Avshalom., Moffitt, Terrie E., Wertz, Jasmin., Gray, Rebecca., Newbury, Joanne., Ambler, Antony., Zavos, Helena., Danese, Andrea., Mill, Jonathan., Odgers, Candice L., Pariante, Carmine., Wong, Chloe C. Y., and Arseneault, Louise. (2015). Measuring Adolescents' Exposure to Victimization: The Environmental Risk (E-Risk) Longitudinal Twin Stud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7(4pt2), 1399-1416.
- Hamby, S., Finkelhor, D., Turner, H., and Ormrod, R. (2011). Children's Exposure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Other Family Violence. U.S.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 D.C.
(<https://www.ncjrs.gov/pdffiles1/ojdp/232272.pdf>, 최종검색: 2018. 7. 25)
- Henson, Billy., Wilcox, Pamela., Reyns, Bradford W., and Cullen, Francis T. (2010). Gender, Adolescent Lifestyles, and Violent Victimization: Implications for Routine Activity Theory. *Victims & Offenders*, 5(4), 303-328.
- Henson, B., and Reyns, B. W. (2015).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and Crime: the Current State of the Fear of Crime Literature and Where it should go Next, *Sociology Compass* 9(2), 91-103.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inkle, J. (2015). Emotional Fear of Crime vs. Perceived Safety and Risk: Implications for Measuring " Fear" and Testing the Broken Windows Thesis,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The Journal of the Southern Criminal Justice Association* 40, 147-168.
- Huang, F. L., and Cornell, D. G. (2015). The Impact of Definition and Question Order on the Prevalence of Bullying Victimization Using Student Self-Reports. *Psychological Assessment*, 27(4), 1484-1493.
- ICPSR (2015).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School Crime Supplement: Codebook(ICPSR 36354)
(<https://www.icpsr.umich.edu/icpsrweb/NACJD/studies/36354#>, 최종검

- 색: 2018. 8. 17)
- Jackson, Vicki., Browne, Kevin., and Joseph, Stephen. (2016). The Prevalence of Childhood Victimization Experienced Outside of the Family: Findings from an English Prevalence Study. *Child abuse & Neglect*, 51, 343-357.
- Jungert, T., Piroddi, B., and Thornberg, R. (2016). Early Adolescents' Motivations to Defend Victims in School Bullying and Their Perceptions of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Journal of Adolescence*, 53, 75-90.
- Keith, S. (2018). How Do Traditional Bullying and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ffect Fear and Coping among Students? An Applic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3(1), 67-84.
- Kulig, Teresa C., Pratt, Travis C., Cullen, Francis T., Chouhy, Cecilia and James, D. (2017). Explaining Bullying Victimization: Assessing the Generalizability of the Low Self-Control/Risky Lifestyle Model. *Victim & Offenders*, 12(6), 891-912.
- Lessne, D. and Cidade, M. (2017). Split-Half Administration of the 2015 School Crime Supplement to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Methodology Report(NCES 2017-004), U.S. Department of Education,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http://nces.ed.gov/pubsearch>, 최종검색: 2018. 9. 2).
- May, D. C., Rader, N. E., and Goodrum, S. (2010). A Gendered Assessment of the "Threat of Victimization": Examining Gender Differences in Fear of Crime, Perceived Risk, Avoidance, and Defensive Behaviors. *Criminal Justice Review*, 35(2), 159-182.
- Moses, Mindi. and Williford, Anne. (2017). Individual Indicators of Self-Reported Victimization among Elementary School-Age Students: A Latent Class Analysi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83, 33-40.
- Musu-Gillette, L., Zhang, A., Wang, K., Zhang, J., and Oudekerk, B. A. (2017).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16, NCES, 2017(<https://nces.ed.gov/pubs2017/2017064.pdf>, 최종검색: 2018. 8. 16).
- Millard, B. and Flatley, J. (2010). Experimental Statistics on Victimization of

Children Aged 10 to 15: Findings from the British Crime Survey for the Year Ending December 2009. Home Office, U.K.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16413/hosb1110.pdf, 최종검색: 2018. 8. 13)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7). 2017-18 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 10-15 Year Old Questionnaire.

Peguero, Anthony A. (2011). Violence, Schools, and Dropping Out: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in the Educational Consequence of Student Victimiz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18), 3753-3772.

Pereda, N., Abad, J., and Guilera, G. (2017). Victimization and Polyvictimization of Spanish Youth Involved in Juvenile Justi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2(21), 3272-3300.

Popp, Ann Marie., and Peguero, Anthony A. (2011). Routine Activities and Victimization at School: The Significance of Gende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12), 2413-2436.

Pratt, Travis C., Turanovic, Jillian J., Fox, Kathleen A., and Wright, Kevin A. (2014). Self-Control and Victimization: A Meta-Analysis. *Criminology*, 52(1), 87-116.

Pratt, Travis C. and Turanovic, Jillian J. (2016). Lifestyle and Routine Activity Theories Revisited: The Importance of "Risk" to the Study of Victimization. *Victims & Offenders*, 11(3), 335-354.

Raskauskas, J. (2010). Multiple Peer Victimization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lations with Social-Emotional Problems.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13, 523-539.

Sampasa-Kanyinga, Hugues. (2017). Co-Occurring Cyberbullying and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and Associations with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Canadi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Violence and Victims*, 32(4), 671-687.

Schreck, Christopher J., Wright, Richard A., and Miller, J Mitchell. (2002). A Study of Individual and Situational Antecedents of Violent Victimization. *Justice Quarterly*, 19(1), 159-180.

- Schreck, Christopher J. and Fisher, Bonnie S. (2004). Specifying the Influence of Family and Peers on Violent Victimization: Extending Routine Activities and Lifestyles Theori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9), 1021-1041.
- Schreck, Christopher J., Stewart, Eric A., and Fisher, Bonnie S. (2006). Self-Control, Victimization, and their Influence on Risky Lifestyles: A Longitudinal Analysis Using Panel Data.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22(4), 319-340.
- Schwartz, David., Lansford, Jennifer E., Dodge, Kenneth A., Pettit Gregory S., and Bates, John E. (2015). Peer Victimization during Middle Childhood as A Lead Indicator of Internalizing Problems and Diagnostic Outcomes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4(3), 393-404.
- Stavrinos, Panayiotis., Nikiforou, Militsa., and Georgiou, Stelios. (2015). Do Mothers Know?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Knowledge, Bullying, and Victimiza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2(2), 180-196.
- Sulkowski, M. L. and Simmons, J. (2018). The Protective Role of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gainst Peer Victimization and Psychosocial Distress. *Psychology in the Schools*, 55(2), 137-150.
- Tillyer, Maria S., Fisher, Bonnie S., and Wilcox, P. (2011). The Effects of School Crime Prevention on Students' Violent Victimization, Risk Perception, and Fear of Crime: A Multilevel Opportunity Perspective. *Justice Quarterly*, 28(2), 249-277.
- Turner, Hather A., Shattuck, A., Finkelhor, D., and Hamby, S. (2016). Polyvictimization and Youth Violence Exposure across Contex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8(2), 208-214.
- Turner, Hather A., Shattuck, A., Finkelhor, D., and Hamby, S. (2017). Effects of Poly-Victimization on Adolescent Social Support,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2(5), 755-780.
- Vaillancourt, T., Trinh, V., McDougall, P., Duku, E., Cunningham, L., Cunningham, C., Hymel, S., and Short, K. (2010). Optimizing Population

- Screening of Bullying in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School Violence*, 9(3), 233-250.
- Wang, Jing., Iannotti, Ronald J., and Nansel, Tonja R. (2009). School Bullying among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Physical, Verbal, Relational, and Cyber.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5(4), 368-375.
- Widom, Cathy. Spatz., Czaja, S. J., and Dutton, M. A. (2008). Childhood Victimization and Lifetime Revictimization. *Child abuse & Neglect*, 32(8), 785-796.
- Widom, Cathy Spatz., Czaja, Sally J., Bentley, Tyrone., and Johnson, Mark S. (2012). A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Physical Health Outcomes in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New Findings From a 30-year Follow-up.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2(6), 1135-1144.
- Wiesner, Margit. and Rab, Saira. (2015). Self-Control and Lifestyles: Associations to Juvenile Offending, Violent Victimization, and Witnessing Violence. *Victims & Offenders*, 10(2), 214-237.
- Wilcox, Pamela., Tillyer, Marie Skubak., and Fisher, Bonnie S. (2009). Gendered Opportunity? School-Based Adolescent Victimiz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6(2), 245-269.
- Wu, Lili., Zhang, Dajun., Su, Zhiqiang., and Hu, Tianqiang. (2015). Peer Victimization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tic Review of Links to Emotional Maladjustment. *Clinical Pediatrics*, 54(10), 941-955.
- Yang, C., Sharkey, J. D., Reed, L. A., Chen, C., and Dowdy, E. (2018). Bullying Victimization and Student Engagement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Moderating Role of School Climate. *School Psychology Quarterly*, 33(1), 54-64.
- Zaykowski, H. and Gunter, W. (2012). Youth Victimization: School Climate or Deviant Lifesty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3), 431-452.

Abstract

Korean Crime Victim Survey (VIII) : Juvenile Victimization in 2017

Jeon, Young-sil · Yu, Jin · Roh, Sung-hoo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xtent and characteristics of juvenile victimization across nation and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victimization and fear of crime. The survey population for this study is children and adolescents between th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and the 2nd grade of high school. The school survey was conducted with a total of 10,338 respondents. In addition, we conducted a survey of youth out of school with a total of 440 respondents.

The major findings of the school survey are as follows. First, the victimization rates of violence and property crime were estimated at 20.8%. By school level, high school students had the highest rate of victimization at 23.1%, while middle school student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showed the victimization rates of 22.4% and 17.3%, respectively. Overall, the victimization rate of property crime was 17.6%, while the victimization rate of violent crime was 6.2 %.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victimization rate of sexual crime was estimated at 0.6%.

Second, factors affecting property crime victimization included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protection, exposure, attractiveness, delinquency,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such as social disorder. Also, respondents who attend schools with entrance control reported fewer property crime victimization. In terms of violence victimizati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cluding age, physical vulnerability, protection, delinquency, were found to affect victimization. Other factors that affected violence victimization included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victimization of friends, school police awareness, school violence prevention efforts, and social disorder.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was found to be affected by gender, age, delinquency, and school violence prevention efforts. The risk of bullying was related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gender, age, physical vulnerability, protection, and delinquency, the family characteristics of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and spousal violence, the peer characteristics of attachment to friends, delinquent friends, the school characteristics of entrance control, trust in school police officers, school violence prevention efforts and cohesiveness, and the community characteristics of social disorder and neighbor relationships. The factors that affected familial abuse included gender, delinquency,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attachment to parents, and spousal violence.

Third, the general fear of crime was the highest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llow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Regarding specific fears of crime, high school students reported higher fear of property crime tha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while the fear of violence victimization was the highest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Middle school students showed higher fear of bullying than the other age groups. In terms of familial abuse,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ported higher fear th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ourth, the victimization rates of violence and property crime among youth out of school were 31.4%, which was more than 10% higher than those of students. By victimization type, the rate of property crime victimization was 24.5% and the rate of violent crime victimization was 14.8%, while the rate of sexual crime victimization was 3.2%. The type of victimization that showed the biggest difference compared to students was assault, where youth out of school reported victimization 3.3 times higher than students. The victimization rates of familial abuse, bullying, and sexual harassment were 8.0%, 11.1%, and 6.4%, respectively.

Based on this study, it can be suggested that several issues be considered for a future survey of juvenile victimization. First, it can be helpful to set the survey period in a way that a survey is conducted during March and asks questions

about victimization that occurred in the last year. Second, a supplementary survey is needed to identify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Third,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offering a response option that respondents can choose when they do not want to answer the ques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cident survey forms that include different sets of questions depending on the victimization type. Fifth, it can be helpful to distinguish between sexual assault and sexual harassment regarding the classification of victimization. Sixth, it will be necessary to conduct a separate survey of youth out of school.

부록

[부록] 설문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기초조사표



아동 · 청소년

생활안전 실태조사 중/고

인사 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생활, 일상활동 및 안전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이예요. 이러한 조사를 통해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보고, 여러분이 좀 더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이 설문지의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으니 여러분이 생각하는대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한 질문도 빠짐없이 대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ANTAR PUBLIC**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주관 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인권·미래정책연구실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수행 기관	칸타퍼블릭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택빌딩 2층
-------	--	-------	------------------------------------

응답자 정보					
LIST ID				학교명	
학년	① 초4	② 초5	③ 초6	시도	_____시/도
	④ 중1	⑤ 중2	⑥ 중3	시군구	_____시/군/구
성별	⑦ 고1	⑧ 고2		출생년도	(_____)년
	① 남자	② 여자			
남녀공학 구분	① 남학교	② 여학교		학교유형 (고등학교만 해당)	① 일반고 ② 자율고 ③ 특성화고 ④ 특목고 ⑤ 기타(_____)
	③ 남녀공학				

I

등하교길

* 먼저 여러분의 동네나 등하교길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1 여러분 동네나 등하교길에 대한 질문이에요. 잘 읽어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다 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둡고 구석진 곳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주변에 내버려진 차나 빈 건물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기초질서(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등)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무리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6) 큰 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동네 사람들은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동네 사람들은 동네에서 범죄피해를 당하는 사람을 본다면 도와 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동네 사람들은 동네 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여러분의 동네 경찰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다 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동네 경찰이 잘 도와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동네 경찰은 우리들에게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동네 경찰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동네 경찰은 우리들이 겪는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Ⅱ 학교 생활

*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 친구, 가족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 먼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이에요.

3 아래의 내용은 여러분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각각에 대해 대답해 주세요.

다 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는 괴롭힘이나 폭력이 없게 하려고 많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교는 학생간의 싸움이나 괴롭힘 등이 일어날 경우 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게 걱정거리나 문제가 생길 경우 도와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학교 선생님은 학생에게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잘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학교 학생들은 서로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학교 선생님과 학생은 서로를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생들은 학교규칙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11) 학교규칙을 어긴 학생에 대해서는 누구든 상관없이 똑같이 처벌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학교규칙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전담경찰관(10개 학교 정도씩 맡고 있는 경찰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① 전혀 모른다 ② 거의 모른다
 ③ 어느 정도 안다 ④ 매우 잘 안다

5 학교전담경찰관은 여러분이 피해를 당할 경우 잘 도와 줄 거라고 생각하나요?

① 전혀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② 별로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잘 도와 줄 것이다 ⑤ 매우 잘 도와줄 것이다

6 여러분의 학교에는 위클래스(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상담실)가 있나요?

① 없다 ② 있다 ③ 잘 모르겠다

7 여러분의 학교에는 일진이 있나요?

① 없다 ② 있다 ③ 잘 모르겠다

8 여러분의 성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전체적으로 여러분의 성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① 상 ② 중상 ③ 중간
 ④ 중하 ⑤ 하 ⑥ 잘 모르겠음

※ 아래의 질문들은 여러분의 친한 친구에 대한 것이에요. 친한 친구란 '요즘 자주 어울리는 친구'로 예전 학교친구, 동네친구 및 선후배도 포함될 수 있어요.

9 여러분은 친한 친구가 몇 명인가요?

① 친한 친구가 없다 ② 1-2명 ③ 3-4명
 ④ 5-6명 ⑤ 7-8명 ⑥ 9명 이상

10 다음은 여러분이 요즘 잘 어울리는 친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각각에 대해 표시해 주세요.

다	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도움을 구하면 내 친구들은 나를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내 친구들에게 잘 얘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친구들과 매우 가깝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친구들은 술, 담배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때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자주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지난 1년간(2017.7.-2018.6.) 여러분의 친한 친구 중에 학교에서 징계(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등)를 받은 사람이 있나요?

① 없다 ② 있다

III

평소 생각

* 다음은 여러분의 평소 생각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16 아래의 질문들은 여러분의 평소 생각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평소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다 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사람만큼 중요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기운이 없고 기분이 가라앉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8) 외롭다	①	②	③	④	⑤
9) 마음이 답답하고 쓸쓸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1)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2) 모든 일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3) 종종 재미삼아 위험한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일이 복잡해지면 포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쉽게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16) 머리 쓰는 일보다 몸으로 하는 일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앞으로 일어날 일보다는 지금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더라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신체적 문제 때문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내 또래 아이들보다 힘이 세다	①	②	③	④	⑤

N

평소 생활

* 다음은 여러분의 평소생활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17 여러분의 평소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다 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주로 혼자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2) 혼자서 잘 돌아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3) 친구들과 특별한 일 없이 오랜 시간 길거리를 잘 돌아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4)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여기저기 잘 돌아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5) pc방이나 노래방, 공원, 당구장 등에 자주 간다	①	②	③	④	⑤
6) 평소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7) 유명브랜드의 비싼 옷이나 물건을 자주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여러분의 하루 중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얼마나 되나요?(평일기준)

- ① 1시간 미만 ② 1-3시간 미만 ③ 3-5시간 미만
 ④ 5-10시간 미만 ⑤ 10시간 이상

19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나요?

다 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0 다음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나요?

다 음	매우 낮다	다소 낮다	그저 그렇다	다소 높다	매우 높다
1) 내 돈이나 물건을 도둑맞는 것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사람에게 위협당하거나 맞아서 내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기는 것	①	②	③	④	⑤
3) 누군가에게 속아서 내 돈이나 물건을 잃거나 손해보는 것	①	②	③	④	⑤
4) 친구, 선후배, 주변 어른, 모르는 사람 등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맞는 등 폭행당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이나 같이 살고 있는 다른 보호자(할아버지, 할머니 등)에게 맞는 등 폭행당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이나 따돌림 당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7) 누군가 내 물건을 일부러 부수거나 못쓰게 만드는 것	①	②	③	④	⑤
8)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이나 괴롭힘	①	②	③	④	⑤

21 여러분은 다음의 일을 당할까봐 얼마나 두려워하나요?

다 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돈이나 물건을 도둑맞을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사람에게 위협당하거나 맞아서 내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길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3) 누군가에게 속아서 내 돈이나 물건을 잃거나 손해볼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4) 친구, 선후배, 주변 어른, 모르는 사람 등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맞는 등 폭행당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이나 같이 살고 있는 다른 보호자(할아버지, 할머니 등)에게 맞는 등 폭행당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아이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따돌릴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7) 누군가 내 물건을 일부러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8)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이나 괴롭힘을 당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2 여러분은 평상시에 다음의 것들을 하고 있나요?

다 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구(호신용 스프레이나 호신 앱 등)를 가지고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2)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3)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V

지난 1년 동안 한 일

* 다음은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한 일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23 여러분은 지난 1년간(2017.7.~2018.6.) 아래와 같은 행동을 얼마나 하였나요?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다 음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6개월에 1-2번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매일
1) 담배피우기	①	②	③	④	⑤	⑥
2) 술 마시기(제사, 성찬식에서 마시는 것은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3) 부모 허락 없이 결석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4) 가출(2일 이상 허락 없이 집에 안 들어가기)	①	②	③	④	⑤	⑥
5) 음란물(음란사진이나 음란동영상) 보기	①	②	③	④	⑤	⑥
6) 다른 친구를 괴롭히거나 왕따시키기	①	②	③	④	⑤	⑥
7) 다른 사람 때리기	①	②	③	④	⑤	⑥
8) 물건이나 돈 훔치기	①	②	③	④	⑤	⑥
9) 다른 사람에게 겁줘서 돈이나 물건 빼기	①	②	③	④	⑤	⑥
10) 일부러 남의 물건이나 학교 기물 망가뜨리기	①	②	③	④	⑤	⑥

V 피해 경험

* 문항 24번부터 31번까지는 지난 1년간(2017.7.~2018.6.) 피해 경험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해 경험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가지 보기를 들었어요. 각각에 대해 여러분의 경험을 대답해 주세요.

24 여러분의 돈이나 물건을 도둑맞은 적이 지난 1년간(2017.7.~2018.6.) 한 번이라도 있나요? 다음에서 해당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 여러분이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나, 다른 사람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겁을 주어서 빼앗아간 것은 제외하세요.

	도둑맞은 물품	있다	없다
1	현금, 수표, 상품권	①	②
2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	①	②
3	학용품, 책, 공책, 가방 등	①	②
4	휴대전화, 노트북, 게임기 등	①	②
5	옷, 신발, 시계 등	①	②
6	화장품, 악세사리 등	①	②
7	킥보드, 롤러블레이드, 자전거, 오토바이 혹은 그 부속품	①	②
8	그 외 다른 물건	①	②

① '있다'는 응답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 24-1 번으로 ② '있다'는 응답이 없는 경우 → 24-2 번으로

24-1 이런 일이 지난 1년간(2017.7.~2018.6.) 모두 몇 번 있었나요? (사건조사표 A 절도 응답 대상자)

-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번 ⑤ 5번 이상

24-2 그 전에는(2017.6. 이전)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 ① 예 → 24-3 번으로 ② 아니오 → 25 번으로

24-3 그 전에(2017.6. 이전) 이런 일이 모두 몇 번 있었나요? → 응답 후 25 번으로

- ① 1번 ② 2~3번 ③ 4~5번 ④ 6~10번 ⑤ 11~20번
 ⑥ 21번 이상 ⑦ 정확히 몇 번인지 모르겠음

25 물건을 도둑맞는 것 외에도, 속아서 돈이나 물건을 잃거나 손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속아서 돈이나 물건을 잃거나 손해 본 적이 지난 1년간(2017.7.~2018.6.) 한 번이라도 있나요? 다음에서 해당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겁을 주어서 빼앗아간 것은 제외하세요.

속아서 돈이나 물건을 잃거나 손해 본 경우		있다	없다
1	다른 사람이 내 돈이나 물건을 빌려가서 일부러 돌려주지 않음	①	②
2	인터넷 중고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였으나 구매한 물건을 배송 받지 못함	①	②
3	인터넷 중고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으나 구매한 것과 다르거나 가짜 상품을 배송 받음	①	②
4	인터넷 중고매장에서 내 물건을 사기로 한 사람이 물건만 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음	①	②
5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공짜, 할인, 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하게 함	①	②
6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하게 속여 판매함	①	②
7	그 외 속임(사기)으로 인한 돈이나 물건 피해	①	②

① '있다'는 응답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 **25-1** 번으로 ② '없다'는 응답이 없는 경우 → **25-2** 번으로

25-1 이런 일이 지난 1년간(2017.7.~2018.6.) 모두 몇 번 있었나요?(사건조사표 **B** 속임(사기) 응답 대상자)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번 ⑤ 5번 이상

25-2 그 전에는(2017.6. 이전)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① 예 → **25-3** 번으로 ② 아니오 → **26** 번으로

25-3 그 전에는(2017.6. 이전) 이런 일이 모두 몇 번 있었나요? → 응답 후 **26** 번으로
 ① 1번 ② 2~3번 ③ 4~5번 ④ 6~10번 ⑤ 11~20번
 ⑥ 21번 이상 ⑦ 정확히 몇 번인지 모르겠음

26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맞아서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적이 지난 1년간(2017.7.~2018.6.)** 한 번이라도 있나요? 다음에서 해당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

빼앗긴 물품		있다	없다
1	현금, 수표, 상품권	①	②
2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	①	②
3	학용품, 책, 공책, 가방 등	①	②
4	휴대전화, 노트북, 게임기 등	①	②
5	옷, 신발, 시계 등	①	②
6	화장품, 악세사리 등	①	②
7	게임 아이템, 사이버머니 등	①	②
8	키보드, 롤러블레이드, 자전거, 오토바이 혹은 그 부속품	①	②
9	그 외 다른 물건	①	②

① '있다'는 응답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 **26-1** 번으로 ② '있다'는 응답이 없는 경우 → **26-2** 번으로

26-1 이런 일이 지난 1년간(2017.7.~2018.6.) 모두 몇 번 있었나요? (사전조사표 **C** **갈취** 응답 대상자)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번 ⑤ 5번 이상

26-2 그 전에는(2017.6. 이전)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① 예 → **26-3** 번으로 ② 아니오 → **27** 번으로

26-3 그 전에는(2017.6. 이전) 이런 일이 모두 몇 번 있었나요? → 응답 후 **27** 번으로
 ① 1번 ② 2-3번 ③ 4-5번 ④ 6-10번 ⑤ 11-20번
 ⑥ 21번 이상 ⑦ 정확히 몇 번인지 모르겠음

27 여러분은 친구, 선후배, 주변의 어른, 모르는 사람 등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맞는 등 폭행을 당한 적이 지난 1년간(2017.7.~2018.6.)** 한 번이라도 있나요? 다음에서 해당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

친구/ 선후배/ 주변어른/모르는 사람이 실제로 때린 경우		있다	없다
1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리거나 발로 참	①	②
2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거칠게 밀거나 목을 조름	①	②
3	여러 사람이 무리지어 나에게 달려들거나 공격함	①	②
4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다른 도구로 때림	①	②
5	그 외 다른 방식으로 맞음	①	②

① '있다'는 응답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 **27-1** 번으로 ② '있다'는 응답이 없는 경우 → **27-2** 번으로

27-1 이런 일이 지난 1년간(2017.7.~2018.6.) 모두 몇 번 있었나요? (사전조사표 **D** **가족 외 폭행** 응답 대상자)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번 ⑤ 5번 이상

27-2 그 전에는(2017.6. 이전)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① 예 → **27-3** 번으로 ② 아니오 → **28** 번으로

27-3 그 전에는(2017.6. 이전) 이런 일이 모두 몇 번 있었나요? → 응답 후 **28** 번으로
 ① 1번 ② 2-3번 ③ 4-5번 ④ 6-10번 ⑤ 11-20번
 ⑥ 21번 이상 ⑦ 정확히 몇 번인지 모르겠음

28 여러분은 친구, 선후배, 주변어른/ 모르는 사람 등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맞지는 않았지만 때리겠다고 겁을 주거나 협박당한 적이 지난 1년간(2017.7.~2018.6.)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다음에서 해당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

	친구/ 선후배/ 주변어른/ 모르는 사람이 때리겠다고 협박한 경우	있다	없다
1	나를 때리겠다는 등 말로 겁을 주거나 협박함	①	②
2	막대기나 다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겁을 주거나 협박함	①	②
3	SNS나 온라인에서 나를 실제로 찾아와 때리겠다는 등의 겁을 주거나 협박함	①	②
4	뒤쫓아오거나 주위를 에워싸서 겁을 주거나 협박함	①	②
5	그 외 다른 방식으로 때리겠다고 겁을 주거나 협박함	①	②

① '있다'는 응답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 **28-1** 번으로 ② '있다'는 응답이 없는 경우 → **28-2** 번으로

28-1 이런 일이 지난 1년간(2017.7.~2018.6.) 모두 몇 번 있었나요? (사건조사표 **E** 가족 외 협박 응답 대상자)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번 ⑤ 5번 이상

28-2 그 전에는(2017.6. 이전)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① 예 → **28-3** 번으로 ② 아니오 → **29** 번으로

28-3 그 전에는(2017.6. 이전) 이런 일이 모두 몇 번 있었나요? → 응답 후 **29** 번으로
 ① 1번 ② 2~3번 ③ 4~5번 ④ 6~10번 ⑤ 11~20번
 ⑥ 21번 이상 ⑦ 정확히 몇 번인지 모르겠음

29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같이 살고 있는 다른 보호자(할아버지, 할머니 등)에게 맞는 등 폭행을 당한 적이 지난 1년간(2017.7.~2018.6.)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다음에서 해당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

	부모/보호자가 실제로 때린 경우	있다	없다
1	부모님 또는 나와 같이 사는 어른이 나를 때리거나 발로 참	①	②
2	부모님 또는 나와 같이 사는 어른이 나를 거칠게 밀거나 목을 조름	①	②
3	부모님 또는 나와 같이 사는 어른이 그릇, 의자 등을 나에게 던짐	①	②
4	그 외 다른 방식으로 맞음	①	②

① '있다'는 응답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 **29-1** 번으로 ② '있다'는 응답이 없는 경우 → **29-2** 번으로

29-1 이런 일이 지난 1년간(2017.7.~2018.6.) 모두 몇 번 있었나요? (사건조사표 **F** 부모 학대 응답 대상자)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번 ⑤ 5번 이상

29-2 그 전에는(2017.6. 이전)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① 예 → **29-3** 번으로 ② 아니오 → **30** 번으로

29-3 그 전에는(2017.6. 이전) 이런 일이 모두 몇 번 있었나요? → 응답 후 **30** 번으로
 ① 1번 ② 2~3번 ③ 4~5번 ④ 6~10번 ⑤ 11~20번
 ⑥ 21번 이상 ⑦ 정확히 몇 번인지 모르겠음

30 다른 사람이 위협이나 실제로 때리는 것 외에도 다른 식으로 괴롭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협이나 신체적인 폭력이 아닌 다른 식으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지난 1년간 (2017.7.~2018.6.) 한 번이라도 있나요? 다음에서 해당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우		있다	없다
1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심한 욕을 하거나 내 약점이나 외모(키, 몸무게, 얼굴 생김새 등)를 가지고 놀림	①	②
2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거나 소문을 냄	①	②
3	일부 아이들이 일부러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따돌림	①	②
4	다른 아이들이 채팅방에 강제로 초대해서 괴롭힘	①	②
5	다른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SNS(메세지, 카톡, 페이스북 등)에 나에게 대한 안 좋은 이야기나 사진을 올림	①	②
6	다른 아이들이 나를 일부러 발을 걸어 넘어뜨림	①	②
7	다른 아이들이 강제로 숙제를 대신 시키거나, 가방이나 짐을 들게 함	①	②
8	다른 아이들이 나를 화장실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함	①	②
9	그 외 다른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거나 따돌림	①	②

① '있다'는 응답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 **30-1** 번으로 ② '있다'는 응답이 없는 경우 → **30-2** 번으로

30-1 이런 일이 지난 1년간(2017.7.~2018.6.) 모두 몇 번 있었나요? (사건조사표 **G** 괴롭힘 응답 대상자)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번 ⑤ 5번 이상

30-2 그 전에는(2017.6. 이전)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① 예 → **30-3** 번으로 ② 아니오 → **31** 번으로

30-3 그 전에는(2017.6. 이전) 이런 일이 모두 몇 번 있었나요? → 응답 후 **31** 번으로
 ① 1번 ② 2~3번 ③ 4~5번 ④ 6~10번 ⑤ 11~20번
 ⑥ 21번 이상 ⑦ 정확히 몇 번인지 모르겠음

31 강제적이거나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은 가족, 친구, 애인, 학교 선후배, 주변의 어른,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이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적이 지난 1년간(2017.7.~2018.6.) 한 번이라도 있나요? 다음에서 해당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이나 성적인 괴롭힘		있다	없다
1	나에게 성적인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갖게 하는 말을 함	①	②
2	인터넷이나 SNS, 온라인게임 상에서 성적모욕이나 성희롱을 함	①	②
3	내가 원치 않거나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성적인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갖게 하는 사진을 찍음	①	②
4	강간을 하거나 강간을 시도함	①	②
5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내 몸을 만짐	①	②
6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상대방의 몸을 만지도록 강요함	①	②
7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성적으로 접촉하거나 괴롭힘	①	②

① '있다'는 응답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 **31-1** 번으로 ② '있다'는 응답이 없는 경우 → **31-2** 번으로

31-1 이런 일이 지난 1년간(2017.7.~2018.6.) 모두 몇 번 있었나요? (사전조사표 **H** 성적 괴롭힘 응답 대상자)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번 ⑤ 5번 이상

31-2 그 전에는(2017.6. 이전)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① 예 → **31-3** 번으로 ② 아니오 → **Ⅶ** 가족에 대한 질문 으로

31-3 그 전에는(2017.6. 이전) 이런 일이 모두 몇 번 있었나요?
 ① 1번 ② 2~3번 ③ 4~5번 ④ 6~10번 ⑤ 11~20번
 ⑥ 21번 이상 ⑦ 정확히 몇 번인지 모르겠음

Ⅶ

가족에 대한 질문

1 여러분의 집은 최근 5년간(2013년부터 7월부터 지금까지) 몇 번 이사를 했나요?

- ① 이사한 적 없음 ② 1번
 ③ 2번 ④ 3번 이상

2 여러분은 지금 동네에서 산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 ① 1년 미만 ② 1년~2년 미만
 ③ 2년~4년 미만 ④ 4년 이상

3 현재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형제자매
 ④ 할아버지, 할머니 ⑤ 친척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4 여러분 부모님의 결혼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 ① 결혼 ② 이혼 ③ 사별(한 분이 돌아가심)
 ④ 재혼 ⑤ 별거 ⑥ 두 분 모두 돌아가심

5 여러분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 중 외국인이나 귀화하신 분이 계신가요?

- ① 안 계심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아버지와 어머니

6 아버지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① 초등학교 졸업(중퇴)	② 중학교 졸업(중퇴)	③ 고등학교 졸업(중퇴)				
④ 대학교 졸업(중퇴)	⑤ 대학원 이상	⑥ 잘 모름				
⑦ 아버지 안계심						
7 어머니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① 초등학교 졸업(중퇴)	② 중학교 졸업(중퇴)	③ 고등학교 졸업(중퇴)				
④ 대학교 졸업(중퇴)	⑤ 대학원 이상	⑥ 잘 모름				
⑦ 어머니 안계심						
8 아버지는 직업이 있으신가요?						
① 있음	② 없음	③ 아버지 안계심				
9 어머니는 직업이 있으신가요?						
① 있음	② 없음	③ 어머니 안계심				
10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제일 못하는 집을 1로 하고, 제일 잘사는 집을 7로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가장			중간			가장
못 사는 집						잘 사는 집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건조사표

**아동 · 청소년
생활안전 실태조사** **증/고**



인사 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생활, 일상활동 및 안전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이예요. 이러한 조사를 통해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보고, 여러분이 좀 더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이 설문지의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으니 여러분이 생각하는대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한 질문도 빠짐없이 대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주관 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인권·미래정책연구실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수행 기관	칸타퍼블릭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택빌딩 2층
-------	--	-------	------------------------------------

522 전국범죄피해조사 (Ⅷ)

응답자 정보					
LIST ID				학교명	
학년	① 초4	② 초5	③ 초6	시도	_____시/도
	④ 중1	⑤ 중2	⑥ 중3	시군구	_____시/군/구
성별	⑦ 고1	⑧ 고2		출생년도	(_____)년
	① 남자	② 여자			
남녀공학 구분	① 남학교	② 여학교		학교유형	① 일반고 ② 자율고 ③ 특성화고
	③ 남녀공학고			(고등학교만 해당)	④ 특목고 ⑤ 기타(_____)

A 절도

- 앞에서 지난 1년간(2017.7.~2018.6.)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도둑맞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지난 한 해 동안 그러한 피해가 여러 번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 하나를 떠올리면서 그 사건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1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그 일은 현재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일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학교에 다니기 이전에 일어난 것인가요?

① 현재 학교에 다니는 동안 ② 현재 학교에 다니기 이전

A2 그 일은 언제쯤 일어났나요?

① 2017년 7월 ② 2017년 8월 ③ 2017년 9월 ④ 2017년 10월
 ⑤ 2017년 11월 ⑥ 2017년 12월 ⑦ 2018년 1월 ⑧ 2018년 2월
 ⑨ 2018년 3월 ⑩ 2018년 4월 ⑪ 2018년 5월 ⑫ 2018년 6월

A3 그 일은 대략 몇 시경에 일어났나요?

① 새벽(03 ~ 06시 전) ② 아침(06 ~ 09시 전) ③ 오전(09 ~ 12시 전)
 ④ 한낮(12 ~ 15시 전) ⑤ 오후(15 ~ 18시 전) ⑥ 저녁(18 ~ 21시 전)
 ⑦ 밤(21 ~ 00시 전) ⑧ 심야(00 ~ 03시 전) ⑨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겠음

A4 그 일은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① 집	① 우리 집 ② 상대방의 집 ③ 다른 사람의 집
② 학교나 학교 근처	① 교실 ② 복도·계단·옥상 ③ 화장실·라커룸 ④ 도서관, 체육관, 강당, 매점 등 학교 내부시설 ⑤ 운동장 ⑥ 학교 담장 주변, 학교 근처 골목 ⑦ 학교 근처 공터나 주차장 ⑧ 학교 뒷산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③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	① 학원, 독서실 ②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③ 가게(상점), 식당, 백화점, 마트 등 상업건물 ④ 극장, 공연장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④ 그 외의 장소	① 그 외의 장소 (구체적으로: _____)

A5 그 일에서 도둑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현금, 수표, 상품권
- ②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
- ③ 학용품, 책, 공책, 가방 등
- ④ 휴대전화, 노트북, 게임기 등
- ⑤ 옷, 신발, 시계 등
- ⑥ 화장품, 약세서리 등
- ⑦ 키보드, 롤러블레이드, 자전거, 오토바이 혹은 그 부속품
- ⑧ 그 외 다른 물건(구체적으로: _____)

A5-1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일로 도둑맞은 물건 가격이나 돈은 얼마인가요?

- ① _____ 만 _____ 천 원
- ② 모르겠다

A6 누가 그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나요?

- ① 예 → **A6-1** 번으로
- ② 아니오 → **A7** 번으로

A6-1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은 모두 몇 명이었나요?

- ① 1명
- ② 2명
- ③ 3명
- ④ 4명 이상
- ⑤ 모르겠다

A6-2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여러 명인 경우,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 | | | |
|--------------------|----------|-----------|-------------|
| ① 아는 사람 | ① 학교친구 | ② 동네친구 | ③ 학교 선후배 |
| | ④ 동네 선후배 | ⑤ 잘 아는 이웃 | ⑥ 얼굴만 아는 사람 |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 |
| ② 전혀 모르는 사람 | | | |

A6-3 그 사람(들)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 ① 남자
- ② 여자
- ③ 남녀 모두
- ④ 모르겠다

A6-4 그 사람(들)은 몇 살 정도인가요? 정확히 모른다면 대략 짐작하는 대로 응답해 주세요.

(※ 여러 명일 경우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13세 이하(초등학생)
- ② 14세~16세(중학생)
- ③ 17세~19세(고등학생)
- ④ 20대
- ⑤ 30대
- ⑥ 40대
- ⑦ 50대
- ⑧ 60대 이상
- ⑨ 모르겠다

A7 그 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나 고통을 얼마나 겪었는지 응답해 주세요.

항목	전혀 없었다	별로 없었다	그저 그랬다	약간 있었다	매우 있었다
1) 우울함(무력감, 자신감 상실)	①	②	③	④	⑤
2) 고립감(외로움, 갇힌 느낌)	①	②	③	④	⑤
3)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 등)	①	②	③	④	⑤
4)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①	②	③	④	⑤
5) 부정적 자존감(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가치가 없다는 느낌)	①	②	③	④	⑤
6)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7) 가족관계나 친구관계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A7-1 그 일로 인해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적 어려움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거나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진료 받은 적이 있었나요?

- ① 있었다 ② 없었다

A8 그 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나요?

항목	있었다	없었다
1) 사람을 피해서 이사(또는 전학)	①	②
2)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학교에 결석함	①	②
3)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하룻밤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음	①	②

A9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다
- ② 형제자매 등 부모님 외 가족에게 이야기했다
- ③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다
- ④ 친구에게 이야기했다
- ⑤ 경찰관에게 이야기했다
- ⑥ 상담가, 의사에게 이야기했다
- ⑦ 그 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
- ⑧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 **A9-1** 번으로

A9-1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 ①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 ②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해서
- ③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 ④ 이야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서
- ⑥ 보복이 두려워서
- ⑦ 내가 겪은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A10 여러분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경찰에 신고했나요?

- ① 신고 했다 → **A10-1** 번으로
- ② 신고하지 않았다

A10-1 누가 경찰에 신고했나요?

- | | |
|-----------|---------------------------|
| ① 나 | ② 가족(부모 또는 형제 등) |
| ③ 선생님 | ④ 친구 |
| ⑤ 상담가, 의사 | ⑥ 그 외 다른 사람(구체적으로: _____) |

B **속임(사기)**

- 앞에서 지난 1년간(2017.7.~2018.6.)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속아서 돈이나 물건을 잃거나 손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지난 한 해 동안 그러한 피해가 여러 번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 하나를 떠올리면서 그 사건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B1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그 일은 현재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일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학교에 다니기 이전에 일어난 것인가요?

① 현재 학교에 다니는 동안 ② 현재 학교에 다니기 이전

B2 그 일은 언제쯤 일어났나요?

① 2017년 7월 ② 2017년 8월 ③ 2017년 9월 ④ 2017년 10월
 ⑤ 2017년 11월 ⑥ 2017년 12월 ⑦ 2018년 1월 ⑧ 2018년 2월
 ⑨ 2018년 3월 ⑩ 2018년 4월 ⑪ 2018년 5월 ⑫ 2018년 6월

B3 그 일은 대략 몇 시경에 일어났나요?

① 새벽(03 ~ 06시 전) ② 아침(06 ~ 09시 전) ③ 오전(09 ~ 12시 전)
 ④ 한낮(12 ~ 15시 전) ⑤ 오후(15 ~ 18시 전) ⑥ 저녁(18 ~ 21시 전)
 ⑦ 밤(21 ~ 00시 전) ⑧ 심야(00 ~ 03시 전) ⑨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겠음

B4 그 일은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① 집	① 우리 집 ② 상대방의 집 ③ 다른 사람의 집
② 학교나 학교 근처	① 교실 ② 복도·계단·옥상 ③ 화장실·라커룸 ④ 도서관, 체육관, 강당, 매점 등 학교 내부시설 ⑤ 운동장 ⑥ 학교 담장 주변, 학교 근처 골목 ⑦ 학교 근처 공터나 주차장 ⑧ 학교 텃밭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③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	① 학원, 독서실 ②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③ 가게(상점), 식당, 백화점, 마트 등 상업건물 ④ 극장, 공연장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④ 온라인	①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네이버메신, 텔레그램, 위비톡 등) ②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스토리, 네이버밴드, 트위터 등) ③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 등 ④ 온라인 게임 ⑤ 온라인 쇼핑몰(중고나라 등) ⑥ 이메일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⑤ 그 외의 장소	① 그 외의 장소(구체적으로: _____)

B5 그때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준으로 **하나만** 응답해 주세요.

- ① 다른 사람이 내 돈이나 물건을 빌려가서 일부러 돌려주지 않음
- ② 인터넷 중고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였으나 구매한 물건을 배송 받지 못함
- ③ 인터넷 중고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으나 구매한 것과 다르거나 가짜 상품을 배송 받음
- ④ 인터넷 중고매장에서 내 물건을 사기로 한 사람이 물건만 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음
- ⑤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공짜, 할인, 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하게 함
- ⑥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하게 속여 판매함
- ⑦ 그 외의 속임(사기)으로 인한 돈이나 물건을 잃음

B5-1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일로 잃은 물건 가격이나 돈은 얼마인가요?

- ① _____ 만 _____ 천 원
- ② 모르겠다

B6 누가 그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나요?

- ① 예 → 응답 후 **B6-1** 번으로
- ② 아니오 → 응답 후 **B7** 번으로

B6-1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은 모두 몇 명이었나요?

- ① 1명
- ② 2명
- ③ 3명
- ④ 4명 이상
- ⑤ 모르겠다

B6-2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여러 명인 경우,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아는 사람	① 학교친구	② 동네친구	③ 학교 선후배
	④ 동네 선후배	⑤ 잘 아는 이웃	⑥ 얼굴만 아는 사람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② 전혀 모르는 사람			

B6-3 그 사람(들)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 ① 남자
- ② 여자
- ③ 남녀 모두
- ④ 모르겠다

B6-4 그 사람(들)은 몇 살 정도인가요? 정확히 모른다면 대략 짐작하는 대로 응답해 주세요.

(※ 여러 명일 경우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13세 이하(초등학생)
- ② 14세~16세(중학생)
- ③ 17세~19세(고등학생)
- ④ 20대
- ⑤ 30대
- ⑥ 40대
- ⑦ 50대
- ⑧ 60대 이상
- ⑨ 모르겠다

B7 그 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나 고통을 얼마나 겪었는지 응답해 주세요.

항목	전혀 없었다	별로 없었다	그저 그랬다	약간 있었다	매우 있었다
1) 우울함(무력감, 자신감 상실)	①	②	③	④	⑤
2) 고립감(외로움, 갇힌 느낌)	①	②	③	④	⑤
3)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 등)	①	②	③	④	⑤
4)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①	②	③	④	⑤
5) 부정적 자존감(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가치가 없다는 느낌)	①	②	③	④	⑤
6)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7) 가족관계나 친구관계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B7-1 그 일로 인해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적 어려움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거나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진료 받은 적이 있었나요?

- ① 있었다 ② 없었다

B8 그 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나요?

항목	있었다	없었다
1) 사람을 피해서 이사(또는 전학)	①	②
2)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알려지 않고 학교에 결석함	①	②
3)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하루밤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음	①	②

B9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다
- ② 형제자매 등 부모님 외 가족에게 이야기했다
- ③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다
- ④ 친구에게 이야기했다
- ⑤ 경찰관에게 이야기했다
- ⑥ 상담가, 의사에게 이야기했다
- ⑦ 그 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
- ⑧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 **B9-1** 번으로

B9-1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 ①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 ②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해서
- ③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 ④ 이야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서
- ⑥ 보복이 두려워서
- ⑦ 내가 겪은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B10 여러분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경찰에 신고했나요?

- ① 신고 했다 → **B10-1** 번으로
- ② 신고하지 않았다

B10-1 누가 경찰에 신고했나요?

- | | |
|-----------|---------------------------|
| ① 나 | ② 가족(부모 또는 형제 등) |
| ③ 선생님 | ④ 친구 |
| ⑤ 상담가, 의사 | ⑥ 그 외 다른 사람(구체적으로: _____) |

C **갈취**

- 앞에서 지난 1년간(2017.7.~2018.6.) 누군가가 여러분을 때리는 등 폭력을 사용하거나 겁을 주어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간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지난 한 해 동안 그러한 피해가 여러 번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 하나를 떠올리면서 그 **사건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C1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그 일은 현재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일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학교에 다니기 이전에 일어난 것인가요?

① 현재 학교에 다니는 동안 ② 현재 학교에 다니기 이전

C2 그 일은 언제쯤 일어났나요?

① 2017년 7월 ② 2017년 8월 ③ 2017년 9월 ④ 2017년 10월
 ⑤ 2017년 11월 ⑥ 2017년 12월 ⑦ 2018년 1월 ⑧ 2018년 2월
 ⑨ 2018년 3월 ⑩ 2018년 4월 ⑪ 2018년 5월 ⑫ 2018년 6월

C3 그 일은 대략 몇 시경에 일어났나요?

① 새벽(03 ~ 06시 전) ② 아침(06 ~ 09시 전) ③ 오전(09 ~ 12시 전)
 ④ 한낮(12 ~ 15시 전) ⑤ 오후(15 ~ 18시 전) ⑥ 저녁(18 ~ 21시 전)
 ⑦ 밤(21 ~ 00시 전) ⑧ 심야(00 ~ 03시 전) ⑨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겠음

C4 그 일은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① 집	① 우리 집 ② 상대방의 집 ③ 다른 사람의 집
② 학교나 학교 근처	① 교실 ② 복도·계단·옥상 ③ 화장실·라커룸 ④ 도서관, 체육관, 강당, 매점 등 학교 내부시설 ⑤ 운동장 ⑥ 학교 담장 주변, 학교 근처 골목 ⑦ 학교 근처 공터나 주차장 ⑧ 학교 뒷산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③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
④ 그 외의 장소	① 그 외의 장소(구체적으로: _____)

C5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방식으로든(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실제로 신체적인 공격을 했나요?

① 신체 공격을 했다 → **C6** 번으로
 ② 실제로 공격은 안했지만, 폭행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 **C7** 번으로

C6 그때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발로 차거나 손이나 주먹으로 때림
- ② 몸을 거칠게 밀거나 목을 조름
- ③ 막대기, 유리병 등 물건을 사용하여 때림
- ④ 돌, 의자 등 무거운 물건을 나에게 던짐
- ⑤ 여러 사람이 무리지어 나에게 달려들거나 공격함
- ⑥ 그 외 다른 폭행

→ 응답 후 **C8** 번으로

C7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겁을 주었나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때리거나 죽이겠다고 말로 겁을 줌
- ② 칼이나 막대기 등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을 보여주며 겁을 줌
- ③ 뒤쫓아 오거나 주위를 에워싸서 겁을 주거나 협박함
- ④ 그 외 다른 방법으로 겁을 줌

→ 응답 후 **C10** 번으로

C8 그 일로 인해 다치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었나요?

- ① 다치지 않았음 → **C10** 번으로
- ② 가벼운 멍이 드는 등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 다침 → **C10** 번으로
- ③ 집이나 학교 의무실 등에서 가벼운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다침 → **C10** 번으로
- ④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다침 → **C9** 번으로

C9 그 일로 입은 상처를 병원에서 검사하거나 치료했나요?

- ① 예 → **C9-1** 번으로
- ② 아니오

C9-1 병원에 입원을 했나요?

- ① 예 → _____ 일
- ② 아니오

C10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과 여러분 이외에 다른 사람이 그곳에 같이 있었나요?

- ① 예 → **C10-1** 번으로 ② 아니오

C10-1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과 같이 있던 사람 중 여러분과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나요?

- ① 있었다 → _____ 명 ② 없었다

C11 그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다음 중 어떻게 했나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상대방에게 맞서 몸싸움을 함
- ②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경고를 함
- ③ 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사정함
- ④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함
- ⑤ 도망가거나 숨는 등 자리를 피함
- ⑥ 가만히 있었음
- ⑦ 그 외의 행동

C12 그 일에서 빼앗긴 것은 무엇인가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현금, 수표, 상품권
- ②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
- ③ 학용품, 책, 공책, 가방 등
- ④ 휴대전화, 노트북, 게임기 등
- ⑤ 옷, 신발, 시계 등
- ⑥ 화장품, 약세사리 등
- ⑦ 게임 아이템, 사이버머니 등
- ⑧ 키보드, 롤러블레이드, 자전거, 오토바이 혹은 그 부속품
- ⑨ 그 외 다른 물건(구체적으로: _____)

C12-1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일로 빼앗긴 물건 가격이나 돈은 얼마인가요?

- ① _____ 만 _____ 천 원 ② 모르겠다

C13 그 일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C13-1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은 모두 몇 명이었나요?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⑤ 모르겠다

C13-2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여러 명인 경우,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아는 사람	① 학교친구	② 동네친구	③ 학교 선후배
	④ 동네 선후배	⑤ 잘 아는 이웃	⑥ 얼굴만 아는 사람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② 전혀 모르는 사람			

C13-3 그 사람(들)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 ① 남자 ② 여자 ③ 남녀 모두 ④ 모르겠다

C13-4 그 사람(들)은 몇 살 정도인가요? 정확히 모른다면 대략 짐작하는 대로 응답해 주세요.

(※ 여러 명일 경우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13세 이하(초등학생) ② 14세~16세(중학생) ③ 17세~19세(고등학생)
 ④ 20대 ⑤ 30대 ⑥ 40대
 ⑦ 50대 ⑧ 60대 이상 ⑨ 모르겠다

C13-5 그 일이 일어날 당시 그 사람(들)은 술을 마신 상태였나요?

(※ 여러 명일 경우 한 사람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그렇다'로 선택해 주세요.)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C14 그 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나 고통을 얼마나 겪었는지 응답해 주세요.

항목	전혀 없었다	별로 없었다	그저 그랬다	약간 있었다	매우 있었다
1) 우울함(무력감, 자신감 상실)	①	②	③	④	⑤
2) 고립감(외로움, 갇힌 느낌)	①	②	③	④	⑤
3)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 등)	①	②	③	④	⑤
4)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①	②	③	④	⑤
5) 부정적 자존감(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가치가 없다는 느낌)	①	②	③	④	⑤
6)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7) 가족관계나 친구관계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C14-1 그 일로 인해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적 어려움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거나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진료 받은 적이 있었나요?

- ① 있었다 ② 없었다

C15 그 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나요?

항목	있었다	없었다
1) 사람을 피해서 이사(또는 전학)	①	②
2)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학교에 결석함	①	②
3)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하룻밤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음	①	②

C16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다
- ② 형제자매 등 부모님 외 가족에게 이야기했다
- ③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다
- ④ 친구에게 이야기했다
- ⑤ 경찰관에게 이야기했다
- ⑥ 상담가, 의사에게 이야기했다
- ⑦ 그 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
- ⑧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 **C16-1** 번으로

C16-1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 ①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 ②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해서
- ③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 ④ 이야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서
- ⑥ 보복이 두려워서
- ⑦ 내가 겪은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C17 여러분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경찰에 신고했나요?

- ① 신고 했다 → **C17-1** 번으로
- ② 신고하지 않았다

C17-1 누가 경찰에 신고했나요?

- | | |
|-----------|---------------------------|
| ① 나 | ② 가족(부모 또는 형제 등) |
| ③ 선생님 | ④ 친구 |
| ⑤ 상담가, 의사 | ⑥ 그 외 다른 사람(구체적으로: _____) |

D

가족 외 폭행

- 앞에서 지난 1년간(2017.7.~2018.6.)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맞는 등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지난 한 해 동안 그러한 피해가 여러 번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 하나를 떠올리면서 그 사건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D1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그 일은 현재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일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학교에 다니기 이전에 일어난 것인가요?

- ① 현재 학교에 다니는 동안 ② 현재 학교에 다니기 이전

D2 그 일은 일시적으로 한번 일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일어난 것인가요?

- ① 일시적으로 한 번 → **D3** 번으로 ② 지속적으로 꾸준히 → **D2-1** 번으로

D2-1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맞은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개월 미만 ② 1~2개월 미만 ③ 2~3개월 미만
④ 1학기 내내(6개월) ⑤ 1년 내내

D3 그 일은 언제쯤 일어났나요?

- ① 2017년 7월 ② 2017년 8월 ③ 2017년 9월 ④ 2017년 10월
⑤ 2017년 11월 ⑥ 2017년 12월 ⑦ 2018년 1월 ⑧ 2018년 2월
⑨ 2018년 3월 ⑩ 2018년 4월 ⑪ 2018년 5월 ⑫ 2018년 6월

D4 그 일은 대략 몇 시경에 일어났나요?

- ① 새벽(03 ~ 06시 전) ② 아침(06 ~ 09시 전) ③ 오전(09 ~ 12시 전)
④ 한낮(12 ~ 15시 전) ⑤ 오후(15 ~ 18시 전) ⑥ 저녁(18 ~ 21시 전)
⑦ 밤(21 ~ 00시 전) ⑧ 심야(00 ~ 03시 전) ⑨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겠음

D5 그 일은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① 집	① 우리 집	② 상대방의 집	③ 다른 사람의 집
	① 교실	② 복도·계단·옥상	③ 화장실·라커룸
② 학교나 학교 근처	④ 도서관, 체육관, 강당, 매점 등 학교 내부시설		⑤ 운동장
	⑥ 학교 담장 주변, 학교 근처 골목		⑦ 학교 근처 공터나 주차장
	⑧ 학교 뒷산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③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	① 학원, 독서실	②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③ 가게(상점), 식당, 백화점, 마트 등 상업건물	④ 극장, 공연장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④ 그 외의 장소	① 그 외의 장소(구체적으로: _____)		

D6 그때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발로 차거나 손이나 주먹으로 때림
- ② 몸을 거칠게 밀거나 목을 조름
- ③ 막대기, 유리병 등 물건을 사용하여 때림
- ④ 돌, 의자 등 무거운 물건을 나에게 던짐
- ⑤ 여러 사람이 무리지어 나에게 달려들거나 공격함
- ⑥ 그 외 다른 폭행

D7 그 일로 인해 다치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었나요?

- ① 다치지 않았음 → **D9** 번으로
- ② 가벼운 멍이 드는 등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 다침 → **D9** 번으로
- ③ 집이나 학교 의무실 등에서 가벼운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다침 → **D9** 번으로
- ④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다침 → **D8** 번으로

D8 그 일로 입은 상처를 병원에서 검사하거나 치료했나요?

- ① 예 → **D8-1** 번으로
- ② 아니오

D8-1 병원에 입원을 했나요?

- ① 예 → _____ 일
- ② 아니오

D9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과 여러분 이외에 다른 사람이 그곳에 같이 있었나요?

- ① 예 → **D9-1** 번으로
- ② 아니오

D9-1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과 같이 있던 사람 중 여러분과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나요?

- ① 있었다 → _____ 명
- ② 없었다

D10 그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다음 중 어떻게 했나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상대방에게 맞서 몸싸움을 함 → **D10-1** 번으로
- ②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경고를 함
- ③ 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사정함
- ④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함
- ⑤ 도망가거나 숨는 등 자리를 피함
- ⑥ 가만히 있었음
- ⑦ 그 외의 행동

D10-1 먼저 몸싸움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① 나 ② 상대방 ③ 함께 있던 다른 사람 ④ 모르겠음

D11 그 일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D11-1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은 모두 몇 명이었나요?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⑤ 모르겠다

D11-2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여러 명인 경우,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아는 사람	① 학교친구 ② 동네친구 ③ 학교 선후배 ④ 동네 선후배 ⑤ 잘 아는 이웃 ⑥ 얼굴만 아는 사람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② 전혀 모르는 사람	

D11-3 그 사람(들)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① 남자 ② 여자 ③ 남녀 모두 ④ 모르겠다

D11-4 그 사람(들)은 몇 살 정도인가요? 정확히 모른다면 대략 짐작하는 대로 응답해 주세요.
 (* 여러 명일 경우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13세 이하(초등학생) ② 14세~16세(중학생) ③ 17세~19세(고등학생)
- ④ 20대 ⑤ 30대 ⑥ 40대
- ⑦ 50대 ⑧ 60대 이상 ⑨ 모르겠다

D11-5 그 일이 일어날 당시 그 사람(들)은 술을 마신 상태였나요?
 (* 여러 명일 경우 한 사람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그렇다'로 선택해 주세요.)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D12 그 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나 고통을 얼마나 겪었는지 응답해 주세요.

항목	전혀 없었다	별로 없었다	그저 그랬다	약간 있었다	매우 있었다
1) 우울함(무력감, 자신감 상실)	①	②	③	④	⑤
2) 고립감(외로움, 갇힌 느낌)	①	②	③	④	⑤
3)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 등)	①	②	③	④	⑤
4)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①	②	③	④	⑤
5) 부정적 자존감(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가치가 없다는 느낌)	①	②	③	④	⑤
6)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7) 가족관계나 친구관계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D12-1 그 일로 인해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적 어려움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거나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진료 받은 적이 있었나요?

- ① 있었다 ② 없었다

D13 그 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나요?

항목	있었다	없었다
1) 사람을 피해서 이사(또는 전학)	①	②
2)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학교에 결석함	①	②
3)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하루밤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음	①	②

D14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다
- ② 형제자매 등 부모님 외 가족에게 이야기했다
- ③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다
- ④ 친구에게 이야기했다
- ⑤ 경찰관에게 이야기했다
- ⑥ 상담가, 의사에게 이야기했다
- ⑦ 그 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
- ⑧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 **D14-1** 번으로

D14-1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 ①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 ②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해서
- ③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 ④ 이야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서
- ⑥ 보복이 두려워서
- ⑦ 내가 겪은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D15 여러분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경찰에 신고했나요?

- ① 신고 했다 → **D15-1** 번으로
- ② 신고하지 않았다

D15-1 누가 경찰에 신고했나요?

- | | |
|-----------|---------------------------|
| ① 나 | ② 가족(부모 또는 형제 등) |
| ③ 선생님 | ④ 친구 |
| ⑤ 상담가, 의사 | ⑥ 그 외 다른 사람(구체적으로: _____) |

E
가족 외 협박

- 앞에서 지난 1년간(2017.7.~2018.6.) 친구, 학교 선후배, 주변의 어른 등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맞지는 않았지만 때리겠다고 겁을 주거나 협박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지난 한 해 동안 그러한 피해가 여러 번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 하나를 떠올리면서 그 사건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1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그 일은 현재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일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학교에 다니기 이전에 일어난 것인가요?

① 현재 학교에 다니는 동안
② 현재 학교에 다니기 이전

E2
그 일은 일시적으로 한번 일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일어난 것인가요?

① 일시적으로 한 번 → E3 번으로
② 지속적으로 꾸준히 → E2-1 번으로

E2-1
여러분이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겪은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1개월 미만
② 1~2개월 미만
③ 2~3개월 미만

④ 1학기 내내(6개월)
⑤ 1년 내내

E3
그 일은 언제쯤 일어났나요?

① 2017년 7월

② 2017년 8월

③ 2017년 9월

④ 2017년 10월

⑤ 2017년 11월

⑥ 2017년 12월

⑦ 2018년 1월

⑧ 2018년 2월

⑨ 2018년 3월

⑩ 2018년 4월

⑪ 2018년 5월

⑫ 2018년 6월

E4
그 일은 대략 몇 시경에 일어났나요?

① 새벽(03 ~ 06시 전)

② 아침(06 ~ 09시 전)

③ 오전(09 ~ 12시 전)

④ 한낮(12 ~ 15시 전)

⑤ 오후(15 ~ 18시 전)

⑥ 저녁(18 ~ 21시 전)

⑦ 밤(21 ~ 00시 전)

⑧ 심야(00 ~ 03시 전)

⑨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겠음

E5 그 일은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① 집	① 우리 집 ① 교실	② 상대방의 집 ② 복도·계단·옥상	③ 다른 사람의 집 ③ 화장실·라커룸
② 학교나 학교 근처	④ 도서관, 체육관, 강당, 매점 등 학교 내부시설 ⑥ 학교 담장 주변, 학교 근처 골목		⑤ 운동장 ⑦ 학교 근처 공터나 주차장
③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	⑧ 학교 텃산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① 학원, 독서실 ③ 가게(상점), 식당, 백화점, 마트 등 상업건물	②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④ 극장, 공연장
④ 온라인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①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네이버메신저, 텔레그램, 위비톡 등) ②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스토리, 네이버밴드, 트위터 등) ③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 등	
⑤ 그 외의 장소	④ 온라인 게임 ⑤ 온라인 쇼핑몰(중고나라 등) ⑥ 이메일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① 그 외의 장소(구체적으로: _____)

- E6** 그때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때리거나 죽이겠다고 말로 겁을 줌
 - ② 막대기나 칼 등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을 보여주며 겁을 줌
 - ③ 뒤쫓아 오거나 주위를 에워싸서 겁을 주거나 협박함
 - ④ SNS나 온라인에서 나를 실제로 찾아와 때리겠다고 등의 겁을 줌
 - ⑤ 그 외 다른 방식으로 때리겠다고 겁을 주거나 협박함

- E7**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과 여러분 이외에 다른 사람이 그곳에 같이 있었나요?
- ① 예 → **E7-1** 번으로 ② 아니오
- E7-1**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과 같이 있던 사람 중 여러분과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나요?

① 있었다 → _____ 명 ② 없었다

- E8** 그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다음 중 어떻게 했나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경고를 함
 - ② 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사정함
 - ③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함
 - ④ 도망가거나 숨는 등 자리를 피함
 - ⑤ 가만히 있었음
 - ⑥ 그 외의 행동

E9 그 일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E9-1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은 모두 몇 명이었나요?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⑤ 모르겠다

E9-2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여러 명인 경우,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아는 사람	① 학교친구 ② 동네친구 ③ 학교 선후배 ④ 동네 선후배 ⑤ 잘 아는 이웃 ⑥ 얼굴만 아는 사람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② 전혀 모르는 사람	

E9-3 그 사람(들)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 ① 남자 ② 여자 ③ 남녀 모두 ④ 모르겠다

E9-4 그 사람(들)은 몇 살 정도인가요? 정확히 모른다면 대략 짐작하는 대로 응답해 주세요.

(※ 여러 명일 경우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13세 이하(초등학생) ② 14세~16세(중학생) ③ 17세~19세(고등학생)
④ 20대 ⑤ 30대 ⑥ 40대
⑦ 50대 ⑧ 60대 이상 ⑨ 모르겠다

E9-5 그 일이 일어날 당시 그 사람(들)은 술을 마신 상태였나요?

(※ 여러 명일 경우 한 사람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그렇다'로 선택해 주세요.)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E10 그 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나 고통을 얼마나 겪었는지 응답해 주세요.

항목	전혀 없었다	별로 없었다	그저 그랬다	약간 있었다	매우 있었다
1) 우울함(무력감, 자신감 상실)	①	②	③	④	⑤
2) 고립감(외로움, 갇힌 느낌)	①	②	③	④	⑤
3)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 등)	①	②	③	④	⑤
4)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①	②	③	④	⑤
5) 부정적 자존감(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가치가 없다는 느낌)	①	②	③	④	⑤
6)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7) 가족관계나 친구관계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E10-1 그 일로 인해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적 어려움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거나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진료 받은 적이 있었나요?

- ① 있었다 ② 없었다

E11 그 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나요?

항목	있었다	없었다
1) 사람을 피해서 이사(또는 전학)	①	②
2)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학교에 결석함	①	②
3)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하루밤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음	①	②

E12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다
- ② 형제자매 등 부모님 외 가족에게 이야기했다
- ③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다
- ④ 친구에게 이야기했다
- ⑤ 경찰관에게 이야기했다
- ⑥ 상담가, 의사에게 이야기했다
- ⑦ 그 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
- ⑧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 **E12-1** 번으로

E12-1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 ①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 ②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해서
- ③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 ④ 이야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서
- ⑥ 보복이 두려워서
- ⑦ 내가 겪은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E13 여러분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경찰에 신고했나요?

- ① 신고 했다 → **E13-1** 번으로
- ② 신고하지 않았다

E13-1 누가 경찰에 신고했나요?

- | | |
|-----------|---------------------------|
| ① 나 | ② 가족(부모 또는 형제 등) |
| ③ 선생님 | ④ 친구 |
| ⑤ 상담가, 의사 | ⑥ 그 외 다른 사람(구체적으로: _____) |

F5 그 일은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① 집	① 우리 집	② 상대방의 집	③ 다른 사람의 집
② 학교나 학교 근처	① 교실	② 복도·계단·옥상	③ 화장실·라커룸
	④ 도서관, 체육관, 강당, 매점 등 학교 내부시설		
	⑤ 운동장		
	⑥ 학교 담장 주변, 학교 근처 골목		
③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 장소	⑦ 학교 근처 공터나 주차장		
	⑧ 학교 뒷산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④ 그 외의 장소	① 학원, 독서실	②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③ 가게(상점), 식당, 백화점, 마트 등 상업건물	④ 극장, 공연장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⑥ 그 외의 장소(구체적으로: _____)		

F6 그때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발로 차거나 손이나 주먹으로 때림
- ② 몸을 거칠게 밀거나 목을 조름
- ③ 막대기, 허리띠 등 물건을 사용하여 때림
- ④ 그릇, 의자 등 무거운 물건을 나에게 던짐
- ⑤ 그 외 다른 폭행

F7 그 일로 인해 다치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었나요?

- ① 다치지 않았음 → **F9** 번으로
- ② 가벼운 멍이 드는 등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 다침 → **F9** 번으로
- ③ 집이나 학교 의무실 등에서 가벼운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다침 → **F9** 번으로
- ④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다침 → **F8** 번으로

F8 그 일로 입은 상처를 병원에서 검사하거나 치료했나요?

- ① 예 → **F8-1** 번으로
- ② 아니오

F8-1 병원에 입원을 했나요?

- ① 예 → _____ 일
- ② 아니오

F9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과 여러분 이외에 다른 사람이 그곳에 같이 있었나요?

① 예 → **F9-1** 번으로 ② 아니오

F9-1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과 같이 있던 사람 중 여러분과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나요?

① 있었다 → _____ 명 ② 없었다

F10 그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다음 중 어떻게 했나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상대방에게 맞서 몸싸움을 함
 ②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경고를 함
 ③ 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사정함
 ④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함
 ⑤ 도망가거나 숨는 등 자리를 피함
 ⑥ 가만히 있었음
 ⑦ 그 외의 행동

F11 그 일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F11-1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은 모두 몇 명이었나요?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⑤ 모르겠다

F11-2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여러 명인 경우,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할아버지나 할머니 ④ 기타 다른 보호자

F11-3 그 사람(들)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① 남자 ② 여자 ③ 남녀 모두 ④ 모르겠다

F11-4 그 사람(들)은 몇 살 정도인가요? 정확히 모른다면 대략 짐작하는 대로 응답해 주세요.
 (* 여러 명일 경우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⑥ 모르겠다

F11-5 그 일이 일어날 당시 그 사람(들)은 술을 마신 상태였나요?
 (* 여러 명일 경우 한 사람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그렇다'로 선택해 주세요.)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F12 그 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나 고통을 얼마나 겪었는지 응답해 주세요.

항목	전혀 없었다	별로 없었다	그저 그랬다	약간 있었다	매우 있었다
1) 우울함(무력감, 자신감 상실)	①	②	③	④	⑤
2) 고립감(외로움, 갇힌 느낌)	①	②	③	④	⑤
3)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 등)	①	②	③	④	⑤
4)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①	②	③	④	⑤
5) 부정적 자존감(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가치가 없다는 느낌)	①	②	③	④	⑤
6)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7) 가족관계나 친구관계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F12-1 그 일로 인해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적 어려움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거나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진료 받은 적이 있었나요?

- ① 있었다 ② 없었다

F13 그 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나요?

항목	있었다	없었다
1) 사람을 피해서 이사(또는 전학)	①	②
2)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학교에 결석함	①	②
3)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하룻밤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음	①	②

F14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다
- ② 형제자매 등 부모님 외 가족에게 이야기했다
- ③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다
- ④ 친구에게 이야기했다
- ⑤ 경찰관에게 이야기했다
- ⑥ 상담가, 의사에게 이야기했다
- ⑦ 그 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
- ⑧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 **F14-1** 번으로

F14-1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 ①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 ②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해서
- ③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 ④ 이야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서
- ⑥ 보복이 두려워서
- ⑦ 내가 겪은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F15 여러분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경찰에 신고했나요?

- ① 신고 했다 → **F15-1** 번으로
- ② 신고하지 않았다

F15-1 누가 경찰에 신고했나요?

- | | |
|-----------|---------------------------|
| ① 나 | ② 가족(부모 또는 형제 등) |
| ③ 선생님 | ④ 친구 |
| ⑤ 상담가, 의사 | ⑥ 그 외 다른 사람(구체적으로: _____) |

65 그 일은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① 집	① 우리 집	② 상대방의 집	③ 다른 사람의 집
	① 교실	② 복도·계단·옥상	③ 화장실·라커룸
② 학교나 학교 근처	④ 도서관, 체육관, 강당, 매점 등 학교 내부시설		⑤ 운동장
	⑥ 학교 담장 주변, 학교 근처 골목		⑦ 학교 근처 공터나 주차장
	⑧ 학교 뒷산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③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	① 학원, 독서실	②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③ 가게(상점), 식당, 백화점, 마트 등 상업건물	④ 극장, 공연장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④ 온라인	①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네이버 메신저, 텔레그램, 위챗 등)		
	②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트위터 등)		
	③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 등		
	④ 온라인 게임		
	⑤ 온라인 쇼핑몰(중국나라 등)		
	⑥ 이메일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⑤ 그 외의 장소	① 그 외의 장소(구체적으로: _____)		

66 그때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심한 욕을 하거나 내 약점이나 외모(키, 몸무게, 얼굴 생김새 등)를 가지고 놀림
- ②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거나 소문을 냄
- ③ 일부 아이들이 일부러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따돌림
- ④ 다른 아이들이 채팅방에 강제로 초대해서 괴롭힘
- ⑤ 다른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SNS(메세지, 카톡, 페이스북 등)에 나에게 대한 안 좋은 이야기나 사진을 올림
- ⑥ 다른 아이들이 나를 일부러 발을 걸어 넘어뜨림
- ⑦ 다른 아이들이 강제로 숙제를 대신 시키거나, 가방이나 짐을 들게 함
- ⑧ 화장실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함
- ⑨ 그 외 다른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거나 따돌림

G7 그 일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G7-1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은 모두 몇 명이었나요?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⑤ 모르겠다

G7-2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여러 명인 경우,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친구 ② 동네친구 ③ 학교 선후배
 ④ 동네 선후배 ⑤ 잘 아는 이웃 ⑥ 얼굴만 아는 사람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G7-3 그 사람(들)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 ① 남자 ② 여자 ③ 남녀 모두 ④ 모르겠다

G7-4 그 사람(들)은 몇 살 정도인가요? 정확히 모르다면 대략 짐작하는 대로 응답해 주세요.

(※ 여러 명일 경우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13세 이하(초등학생) ② 14세~16세(중학생) ③ 17세~19세(고등학생)

G8 그 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나 고통을 얼마나 겪었는지 응답해 주세요.

항목	전혀 없었다	별로 없었다	그저 그랬다	약간 있었다	매우 있었다
1) 우울함(무력감, 자신감 상실)	①	②	③	④	⑤
2) 고립감(외로움, 갇힌 느낌)	①	②	③	④	⑤
3)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 등)	①	②	③	④	⑤
4)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①	②	③	④	⑤
5) 부정적 자존감(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가치가 없다는 느낌)	①	②	③	④	⑤
6)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7) 가족관계나 친구관계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G8-1 그 일로 인해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적 어려움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거나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진료 받은 적이 있었나요?

- ① 있었다 ② 없었다

G9 그 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나요?

항목	있었다	없었다
1) 사람을 피해서 이사(또는 전학)	①	②
2)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학교에 결석함	①	②
3)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하룻밤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음	①	②

G10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다
- ② 형제자매 등 부모님 외 가족에게 이야기했다
- ③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다
- ④ 친구에게 이야기했다
- ⑤ 경찰관에게 이야기했다
- ⑥ 상담가, 의사에게 이야기했다
- ⑦ 그 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
- ⑧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 **G10-1** 번으로

G10-1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 ①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 ②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해서
- ③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 ④ 이야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서
- ⑥ 보복이 두려워서
- ⑦ 내가 겪은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G11 여러분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경찰에 신고했나요?

- ① 신고 했다 → **G11-1** 번으로
- ② 신고하지 않았다

G11-1 누가 경찰에 신고했나요?

- | | |
|-----------|---------------------------|
| ① 나 | ② 가족(부모 또는 형제 등) |
| ③ 선생님 | ④ 친구 |
| ⑤ 상담가, 의사 | ⑥ 그 외 다른 사람(구체적으로: _____) |

H

성적 괴롭힘

- 앞에서 지난 1년간(2017.7.~2018.6.)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이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지난 한 해 동안 그러한 피해가 여러 번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 하나를 떠올리면서 그 **사건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H1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그 일은 현재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일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학교에 다니기 이전에 일어난 것인가요?

- ① 현재 학교에 다니는 동안 ② 현재 학교에 다니기 이전

H2 그 일은 언제쯤 일어났나요?

- ① 2017년 7월 ② 2017년 8월 ③ 2017년 9월 ④ 2017년 10월
 ⑤ 2017년 11월 ⑥ 2017년 12월 ⑦ 2018년 1월 ⑧ 2018년 2월
 ⑨ 2018년 3월 ⑩ 2018년 4월 ⑪ 2018년 5월 ⑫ 2018년 6월

H3 그 일은 대략 몇 시경에 일어났나요?

- ① 새벽(03 ~ 06시 전) ② 아침(06 ~ 09시 전) ③ 오전(09 ~ 12시 전)
 ④ 한낮(12 ~ 15시 전) ⑤ 오후(15 ~ 18시 전) ⑥ 저녁(18 ~ 21시 전)
 ⑦ 밤(21 ~ 00시 전) ⑧ 심야(00 ~ 03시 전) ⑨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겠음

H4 그 일은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① 집	① 우리 집	② 상대방의 집	③ 다른 사람의 집
② 학교나 학교 근처	① 교실	② 복도·계단·옥상	③ 화장실·라커룸
	④ 도서관, 체육관, 강당, 매점 등 학교 내부시설		⑤ 운동장
	⑥ 학교 담장 주변, 학교 근처 골목		⑦ 학교 근처 공터나 주차장
	⑧ 학교 뒷산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③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	① 학원, 독서실	②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③ 가게(상점), 식당, 백화점, 마트 등 상업건물	④ 극장, 공연장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④ 온라인	①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네이버메신, 텔레그램, 위비톡 등)		
	②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스토리, 네이버밴드, 트위터 등)		
	③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 등		
	④ 온라인 게임		
	⑤ 온라인 쇼핑몰(중고나라 등)		
	⑥ 이메일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⑤ 그 외의 장소	① 그 외의 장소(구체적으로: _____)		

H5 그때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나에게 성적인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갖게 하는 말을 함
- ② 인터넷이나 SNS, 온라인게임 상에서 성적모욕이나 성희롱을 함 → H13 번으로
- ③ 내가 원치 않거나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성적인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갖게 하는 사진을 찍음
- ④ 강간을 하거나 강간을 시도함
- ⑤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내 몸을 만짐
- ⑥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상대방의 몸을 만지도록 강요함
- ⑦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성적으로 접촉하거나 괴롭힘

H6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성적인 접촉 외에 어떤 방식으로든(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실제로 신체적인 공격을 했나요?

- ① 신체 공격을 했다 → H7 번으로
- ② 실제로 공격은 안했지만, 폭행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 H8 번으로
- ③ 신체 공격이나 위협(협박)은 없었다 → H13 번으로

H7 그때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발로 차거나 손이나 주먹으로 때림
- ② 몸을 거칠게 밀거나 목을 조름
- ③ 막대기, 유리병 등 물건을 사용하여 때림
- ④ 돌, 의자 등 무거운 물건을 나에게 던짐
- ⑤ 여러 사람이 무리지어 나에게 달려들거나 공격함
- ⑥ 그 외 다른 폭행

→ 응답 후 **H9** 번으로

H8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겁을 주었나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때리거나 죽이겠다고 말로 겁을 줌
- ② 칼이나 막대기 등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을 보여주며 겁을 줌
- ③ 뒤쫓아 오거나 주위를 에워싸서 겁을 주거나 협박함
- ④ 그 외 다른 방법으로 겁을 줌

→ 응답 후 **H11** 번으로

H9 그 일로 인해 다치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었나요?

- ① 다치지 않았음 → **H11** 번으로
- ② 가벼운 멍이 드는 등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 다침 → **H11** 번으로
- ③ 집이나 학교 의무실 등에서 가벼운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다침 → **H11** 번으로
- ④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다침 → **H10** 번으로

H10 그 일로 입은 상처를 병원에서 검사하거나 치료했나요?

- ① 예 → **H10-1** 번으로
- ② 아니오

H10-1 병원에 입원을 했나요?

- ① 예 → _____ 일
- ② 아니오

H11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과 여러분 이외에 다른 사람이 그곳에 같이 있었나요?

- ① 예 → **H11-1** 번으로
- ② 아니오

H11-1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과 같이 있던 사람 중 여러분과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나요?

- ① 있었다 → _____ 명
- ② 없었다

H12 그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다음 중 어떻게 했나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상대방에게 맞서 몸싸움을 함
- ②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경고를 함
- ③ 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사정함
- ④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함
- ⑤ 도망가거나 숨는 등 자리를 피함
- ⑥ 가만히 있었음
- ⑦ 그 외의 행동

H13 누가 그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나요?

- ① 예 → 응답 후 **H13-1** 번으로
- ② 아니오 → 응답 후 **H14** 번으로

H13-1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은 모두 몇 명이었나요?

- ① 1명
- ② 2명
- ③ 3명
- ④ 4명 이상
- ⑤ 모르겠다

H13-2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여러 명인 경우,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친인척 (가족 포함)	① 부모	② 조부모	③ 형제·자매
	④ 삼촌·사촌 등 기타 친인척		
②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⑤ 학교친구	⑥ 동네친구	⑦ 학교 선후배
	⑧ 동네 선후배	⑨ 애인(전 애인 포함)	⑩ 선생님
	⑪ 잘 아는 이웃	⑫ 얼굴만 아는 사람	
	⑬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③ 전혀 모르는 사람			

H13-3 그 사람(들)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 ① 남자
- ② 여자
- ③ 남녀 모두
- ④ 모르겠다

H13-4 그 사람(들)은 몇 살 정도인가요? 정확히 모르다면 대략 짐작하는 대로 응답해 주세요.

(※ 여러 명일 경우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13세 이하(초등학생)
- ② 14세~16세(중학생)
- ③ 17세~19세(고등학생)
- ④ 20대
- ⑤ 30대
- ⑥ 40대
- ⑦ 50대
- ⑧ 60대 이상
- ⑨ 모르겠다

H13-5 그 일이 일어날 당시 그 사람(들)은 술을 마신 상태였나요?

(※ 여러 명일 경우 한 사람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그렇다'로 선택해 주세요.)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③ 모르겠다

H14 그 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나 고통을 얼마나 겪었는지 응답해 주세요.

항목	전혀 없었다	별로 없었다	그저 그랬다	약간 있었다	매우 있었다
1) 우울함(무력감, 자신감 상실)	①	②	③	④	⑤
2) 고립감(외로움, 갇힌 느낌)	①	②	③	④	⑤
3)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 등)	①	②	③	④	⑤
4)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①	②	③	④	⑤
5) 부정적 자존감(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가치가 없다는 느낌)	①	②	③	④	⑤
6)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7) 가족관계나 친구관계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H14-1 그 일로 인해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적 어려움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거나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진료 받은 적이 있었나요?

- ① 있었다 ② 없었다

H15 그 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나요?

항목	있었다	없었다
1) 사람을 피해서 이사(또는 전학)	①	②
2)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학교에 결석함	①	②
3)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하룻밤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음	①	②

H16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다
- ② 형제자매 등 부모님 외 가족에게 이야기했다
- ③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다
- ④ 친구에게 이야기했다
- ⑤ 경찰관에게 이야기했다
- ⑥ 상담가, 의사에게 이야기했다
- ⑦ 그 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
- ⑧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 **H16-1** 번으로

H16-1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만 골라주세요.

- ①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 ②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해서
- ③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 ④ 이야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서
- ⑥ 보복이 두려워서
- ⑦ 내가 겪은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H17 여러분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경찰에 신고했나요?

- ① 신고 했다 → **H17-1** 번으로
 ② 신고하지 않았다

H17-1 누가 경찰에 신고했나요?

- ① 나
- ② 가족(부모 또는 형제 등)
- ③ 선생님
- ④ 친구
- ⑤ 상담가, 의사
- ⑥ 그 외 다른 사람(구체적으로: _____)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실태조사 조사원 기입표		
조사원 기입 사항	학교 코드	
	학교명	
	조사원명	

※ 기본 기입사항

1. 지역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농어촌지역
2. 행정구역	-----시(도) -----구(군) -----동(면)
3. 조사한 학년/반	----- 학년 ----- 반
4. 학교규모 <i>(선생님께 문의)</i>	전교생수 -----명
5. 학급규모 <i>(선생님께 문의)</i>	1) 학급 전체 인원 수 -----명
	2) 조사에 참여한 인원 수 -----명

※ 학교 방법 정도

6. 학교 출입문통제	1) 없음 2) 있음
7. 학교 경비원	1) 없음 2) 있음
8. 교내 방범카메라 <i>(선생님께 문의)</i>	1) 없음 2) 있음(-----대)
9. 학교주변(약 100m이내) 방범카메라	1) 없음 2) 있음 3) 모르겠음
10. 학교주변(약 100m이내) 파출소	1) 없음 2) 있음 3) 모르겠음

연구총서 18-B-01

전국범죄피해조사 (Ⅷ)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17 -

발 행 | 2018년 12월

발 행 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 한 인 섭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 가 | 15,000원

인 쇄 | 고려씨엔피 02-2277-1508/9

I S B N | 979-11-965704-2-2 9333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